

농업농촌 발전계획 ②

농업·농촌 발전  
세부추진계획

2004. 12.

농림부

## <추진배경 및 경과>

- 개방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대책·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업·농촌종합대책」 확정('04.2.23)
  -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 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
  - 종합대책을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회 제출('04.5.23) 및 시·도 통보
-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에 대하여는 전문가, 농업인 대표들과 공감대를 형성
  - 농정여건 변화, 계획 첫해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필요
  - 또한, 실제 수요자인 농업인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참여농정, 현장농정의 원칙을 구현
- 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안 및 의견 수렴절차 진행('04.6~8월중)
  - 지역·품목별로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대책 설명 및 의견수렴('04.3~6월)
  - 투융자 심사·평가 시스템 혁신방안 수립·시행('04.5.1)
- 농민단체 등의 대안 및 의견수렴 결과를 보완 및 조정('04.9~12월중)
  - 농림부·농진청·산림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 워크숍 개최('04.10.15~16)
  - 중앙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세부추진계획안 심의·의결('04.12.20)
  -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04.12.24)

# 목 차

I. 농업·농촌의 실상 .....	1
1. 농업·농촌의 실상 .....	1
2.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	3
3.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점 과제 .....	4
II.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 .....	7
1. 농정비전과 기본틀 .....	7
2. 향후 농정 추진체계 .....	8
III. 농업의 체질강화 .....	9
1. 시장을 지향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	10
1-1.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규모화 촉진 .....	11
1-1-1. 영농규모화 사업 .....	13
1-1-2.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	17
1-2.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중점 육성 .....	22
1-2-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24
1-2-2.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	36
1-2-3. 농업인 교육훈련 .....	41
1-2-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46
1-2-5. 유통전문인력양성 .....	49
1-2-6. 농업벤처 육성 .....	54
1-2-7. 농업경영체 활성화 .....	56
1-3.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육성 ..	70
1-3-1. 여성농업인정책 추진기반 구축 .....	71
1-3-2.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제도 도입 .....	73
1-3-3. 농·소·정 협력사업 지원 .....	74

1-4.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76
1-4-1. 공공비축제 도입 .....	78
1-4-2. 채소계약재배 안정화사업 .....	80
1-4-3. 원유가격 결정시스템 개선 .....	84
1-5. 시대 변화에 맞게 농지제도를 혁신 .....	87
1-5-1. 농지 소유와 이용규제 완화 .....	89
1-5-2. 적정농지의 보전 .....	92
1-5-3. 농지전용제도의 혁신 .....	95
1-5-4. 농지 종합관리기능 도입(농지은행) .....	99
1-6. 수익자 위주의 선진 농업금융제도로 개편 .....	103
1-6-1. 농업종합자금 지원 .....	105
1-6-2.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109
1-6-3. 정책자금 취급금융기관 확대 .....	111
1-6-4. 농신보 및 대손보전기금 건전화 .....	115
1-6-5. 정책자금 대출방식 개선 .....	120
1-7. 구조조정 보완대책 확충 .....	122
1-7-1. 경영이양직접지불제 확대 개편 .....	124
1-7-2. 한·칠레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127
1-7-3.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	141
1-7-4. 양념류 주산지 구조개선 지원사업 .....	145
1-7-5. 무·배추 전처리 및 소포장 시설지원사업 .....	156
1-7-6.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 .....	161
1-7-7. 부적지 감귤과원 정비사업 .....	166
2.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업으로 발전 .....	170
2-1.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 .....	171
2-1-1.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 .....	173
2-1-2.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	175

2-1-3.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177
2-1-4.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 체계구축 .....	179
2-1-5.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	181
2-1-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정비 .....	183
2-1-7. 밭토양 유실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	185
2-1-8. 농업환경 계측시스템 구축 .....	186
2-1-9. 비료 수급관리 .....	187
2-1-10.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	190
2-1-11. 겨울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193
2-1-12. 농촌 폐비닐 수거 .....	195
2-1-13.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	197
2-1-1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204
2-1-15. 유기축산 시범사업 지원 .....	206
<b>2-2.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b>	<b>208</b>
2-2-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	211
2-2-2. 농산물 안전성 조사 .....	216
2-2-3. 「농식품안전자문단」 운영 .....	221
2-2-4. 축산물위생안전성 제고 .....	223
2-2-5. 육류 이력추적시스템 시범도입 .....	233
2-2-6. 정부수매물량 품종별 관리체계 구축 .....	236
2-2-7. 정부쌀 검사규격 개정 .....	238
2-2-8. 고품질 품종 보급확대 .....	240
2-2-9. 소비자단체의 시중유통쌀 점검·평가방안 .....	242
2-2-10. 사료사업지원 .....	244
2-2-11. 원산지표시 및 GMO관리제도 운영 .....	247
2-2-12. 수확후관리기술 보급지원 .....	251
2-2-13. 축산물위생 전문인력 양성 .....	259

2-2-14. 축산물등급판정사업 .....	262
2-2-15. 품질고급화장려금(거세장려금) .....	265
2-2-16. 가축개량사업 .....	267
2-2-17. 가축질병 방역대책 .....	274
2-2-18. 동물보호 종합대책 .....	278
2-2-19. 동물보호소 설치 .....	283
2-2-20. 축산업 등록제 .....	285
<b>2-3.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 .....</b>	<b>288</b>
2-3-1.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	292
2-3-2. 산지유통센터 지원 .....	297
2-3-3.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산지 쌀 유통 중심체로 육성 .....	306
2-3-4. 화훼류 유통구조개선 .....	308
2-3-5. 축산물가공시설지원 .....	312
2-3-6. 축산물가공시설운영자금 .....	315
2-3-7.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운영개선 .....	318
2-3-8.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관리 .....	321
2-3-9.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	327
2-3-10.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제고 .....	333
2-3-11. 산지공판장 운영혁신 및 도매기능 강화 .....	342
2-3-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및 운영활성화 .....	347
2-3-13. 생산자단체운영 소매유통시설 현대화 .....	353
2-3-14.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 .....	357
2-3-15. 한우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 .....	359
2-3-16. 농산물 물류 효율화 .....	361
2-3-17.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	368
2-3-18. 농산물 산지·유통정보화 사업 .....	373
2-3-19.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	379

2-3-20. 농산물 직거래 내실화 .....	383
2-3-21. 고품질과실 브랜드 유통 활성화 사업 .....	387
2-3-22. 시설원예 기반구축사업 .....	392
2-3-23. 인삼계열화사업 .....	405
2-3-24. 버섯 종합배지 생산시스템 구축사업 .....	409
2-3-25. 녹차 신제품 증식 묘포장 설치·운영사업 .....	415
2-3-26. 송아지생산기지조성 .....	421
2-3-27. 가축계열화 .....	423
2-3-28. 경주마생산사업 .....	424
2-3-29. 양봉산업 육성 .....	426
<b>3.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b>	<b>429</b>
<b>3-1. 농업혁신을 주도할 기술개발 촉진 .....</b>	<b>430</b>
3-1-1. 농림기술개발사업 .....	432
3-1-2. 농업과학기술개발 .....	435
3-1-3. 농업생명공학연구 .....	442
3-1-4. 농업기술 농가보급 .....	445
3-1-5. 농업기술개발보급의 정보화촉진 .....	447
3-1-6. 종자관리사업 지원 .....	450
<b>3-2.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b>	<b>452</b>
3-2-1. 외식산업 및 식재료 산업육성 .....	454
3-2-2. 새로운 식품개발 및 원료발굴 .....	459
3-2-3. 식품산업 관련제도 개선 및 인프라 지원 .....	462
<b>3-3. 본격적인 수출농업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b>	<b>467</b>
3-3-1. 수출농산물 공급체계 지원 .....	469
3-3-2. 해외시장개척활동 강화 .....	474
3-3-3.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개선 .....	479
<b>3-4. 농식품 소비촉진으로 확고한 내수기반 구축 .....</b>	<b>481</b>

3-4-1. 학교우유 급식 .....	482
3-4-2.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 구입지원 .....	485
3-4-3. 농산물 소비홍보 강화 .....	489
3-4-4. 축산물 소비홍보 .....	493
3-4-5. 한국형 식생활지침 등 개발·보급 .....	494
3-4-6. 농촌가공산업육성 .....	497
<b>3-5. 농업경영·IT 접목으로 과학영농과 영농효율화를 뒷받침·</b>	<b>501</b>
3-5-1.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농업경영 선진화 .....	503
1. 농업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보활용 강화 .....	503
2. 농업인 정보화 교육 .....	506
3. 농업경영 S/W 및 시스템 구축지원 .....	509
3-5-2.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512
3-5-3. 농지, 농업용수, 토양 등 농업자원 정보화 .....	515
1. 농지정보화 .....	515
2. 농촌용수 물관리 정보화 .....	517
3. 농업환경 정보 DB화 .....	520
<b>4.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공간 확충 .....</b>	<b>522</b>
4-1. 경제림 육성 및 산림의 효율적 이용 .....	522
4-1-1. 경제림 육성 .....	523
4-1-2. 경제림 육성기반 정비 .....	527
4-1-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 .....	530
4-1-4. 임업경쟁력 제고 및 임업인 소득증대 .....	534
4-1-5. 남북 및 국제 산림협력 강화 .....	538
4-1-6. 임업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	541
4-2. 산림경영 개선 .....	545
4-2-1. 사유림 경영 촉진 .....	546
4-2-2.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	549



4-3.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고 .....	553
4-3-1.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강화 .....	554
4-3-2. 산림의 맑은 물 공급 및 탄소흡수저장 기능 확충 ...	559
4-3-3.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관리 .....	562
4-3-4. 도시 숲 확충 .....	565
4-3-5. 산림휴양·문화 진흥 .....	568
4-3-6. 산촌을 살기좋은 거주공간으로 개발 .....	572
<b>IV.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b>	<b>574</b>
1. 직접지불제 대폭 확충 .....	575
1-1-1. 쌀 농가 소득보전 방안 .....	579
1-1-2. 적정 벼재배면적 유지 대책 .....	582
1-1-3. 소득안정계정 도입 .....	585
1-1-4. 친환경 실천농가 소득보전 .....	587
1-1-5.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	590
1-1-6.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594
1-1-7.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	599
2. 경영안정 장치 강화 .....	603
2-1. 경영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	603
2-1-1.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605
2-1-2. 가축공제사업 .....	609
2-1-3. 농업재해관리대책 추진 .....	611
2-2. 가격하락에 대비한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정착 .....	614
2-2-1. 농산물 자조금 .....	615
2-2-2. 농산물 유통명령조절제 .....	619
2-2-3. 축산 자조활동자금 사업 .....	622
2-2-4. 축산물 자율수급조절 지원 .....	625

2-2-5.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628
2-2-6. 우량 암소 및 송아지 경매시장 설치 .....	630
2-2-7. 농업관측 사업 .....	632
2-2-8. 채소수급안정사업 .....	635
<b>2-3. 경영회생지원제 운영 내실화 .....</b>	<b>639</b>
2-3-1.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	640
2-3-2. 채무조정프로그램 마련 .....	642
<b>2-4. 자연재해 예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b>	<b>643</b>
2-4-1. 재해대비 시설안전 강화 .....	645
2-4-2. 수자원 개발 및 이용 .....	650
2-4-3. 안정영농을 위한 기반정비 .....	654
2-4-4. 농업용수 등 자원관리 .....	660
2-4-5.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	677
2-4-6. 노지채소 농기계 임대사업 .....	672
<b>3. 다양한 농외소득원 적극 발굴 .....</b>	<b>677</b>
3-1. 농촌 어메니티 증진 등 농촌관광 활성화 .....	678
3-1-1. 농촌관광 활성화 .....	679
3-1-2. 농산어촌 경관지표 개발 .....	681
3-2.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	683
3-2-1. 향토산업육성사업 .....	684
3-3. 소득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687
3-3-1. 농공단지조성사업 .....	688
<b>V.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b>	<b>691</b>
1. 범정부적 농촌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 .....	692
1-1-1. 범정부적 농촌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	693
1-1-2. 농촌정책개발연구 .....	695

2.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698
2-1-1.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복지부) .....	700
2-1-2.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701
2-1-3. 농업인 안전공제 개선 .....	703
2-1-4.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705
3. 교육의료 등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	707
3-1. 농촌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	708
3-1-1. 농촌 학교학생의 학습권 보장(교육부) .....	710
3-1-2. 농촌지역의 교육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교육부) .....	714
3-1-3. 우수교원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교육부) .....	718
3-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719
3-1-5. 농업계 고교 특성화·내실화(교육부) .....	721
3-1-6.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	722
3-1-7.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문광부) ..	724
3-1-8.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 .....	725
3-1-9.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노동부) .....	726
3-2. 농촌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	727
3-2-1. 농촌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복지부) .....	728
3-2-2. 농촌 의료인프라 확충(복지부) .....	729
3-2-3. 농업인 재해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	731
3-2-4. 사고농가 영농지원 .....	735
3-3. 여성농업인·노인복지 강화 .....	737
3-3-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738
3-3-2.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	740
3-3-3. 농가도우미 지원 .....	743
3-3-4. 농촌여성 소외농가 이동봉사단 지원 .....	745
3-3-5. 여성농업인 소규모 특화사업 창업지원 .....	747
3-3-6. 농촌 노인복지 증진 .....	749

4. 농촌지역 개발 활성화 .....	753
4-1. 거점개발형 지역개발 전략 추진 .....	754
4-1-1. 농촌마을 종합개발 .....	755
4-1-2.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 .....	759
4-1-3.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	762
4-1-4.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	764
4-2. 기초 생활여건의 종합적 개선 .....	766
4-2-1. 농촌주거환경개선(행자부) .....	767
4-2-2.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	769
4-2-3. 농촌 생활용수 개발(환경부) .....	772
4-2-4. 농촌하수도 정비(환경부) .....	774
4-2-5. 농촌폐기물처리 시설지원(환경부) .....	776
4-2-6. 농어촌 도로정비사업(행자부) .....	777
4-2-7. 오지 교통지원(건교부) .....	779
4-3. 투자유치·인력 유입 촉진 .....	781
4-3-1. 농촌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혁 .....	782
4-3-2. 저수지 주변개발사업 .....	785
4-3-3. 도농교류 활성화 .....	787
4-3-4. 전원마을 조성사업 .....	789
4-3-5. 농촌지역주체 역량 강화 .....	792
VI. 지역농업 및 남북농업 발전지원 .....	794
1. 지역농업발전지원 .....	794
1-1.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업화의 추진 .....	796
1-1-1. 지역특화사업 .....	797
1-1-2.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	800
1-1-3.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R&D) .....	804

2.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	808
2-1-1.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	809
2-1-2. 내실있는 북한농업연구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811
<b>VII. 농정조직 개편 및 법령 정비 .....</b>	<b>813</b>
1. 조직개편 방향 .....	813
1-1. 농림부 및 소속기관 .....	813
1-2. 농촌진흥청 .....	815
1-3. 농수산물유통공사 .....	816
1-4. 농업기반공사 .....	818
1-5.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협동조합 개편 ...	820
1-5-1. 협동조합 개혁 .....	821
1-5-2. 농업협동조합 건전육성 .....	830
2. 법령 정비계획 .....	832
3.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 .....	834
<b>VIII. 중장기 투융자 계획 .....</b>	<b>841</b>
1. 중장기 투융자 계획 .....	841

# I. 농업·농촌의 실상과 과제

## 1. 농업·농촌의 실상

□ UR 협상을 계기로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42조 ('92~'98) 및 45조 투융자 계획('99~'04)을 수립·시행

○ 총 투융자 규모('92~'02) : 약 82조원

\* 82조원 내역 : 국고 62조원(보조 39, 융자 23), 지방비 10, 자부담 10

○ 경지정리·유통시설 등 농업인프라(SOC) 위주로 투·융자한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성과를 폭넓게 공유

- 현대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기계화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 '92/'02 : 벼농사 기계화율 84% / 99, 양돈 전업비중 24% / 71, 도매시장 6개 / 30

- 농산물 실질 가격하락, 연중 생산 등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

\* 농촌경제연구원('03.7) : 가계지출 감소분(약 15조원), 생산요소 비용절감(약 16조원)

□ 반면,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해 부채문제 등이 심화

○ 국가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중

- 도·농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95 : 95% → '02 : 73)

- 농가 고령화와 가구원 수 감소로 농외소득 증대도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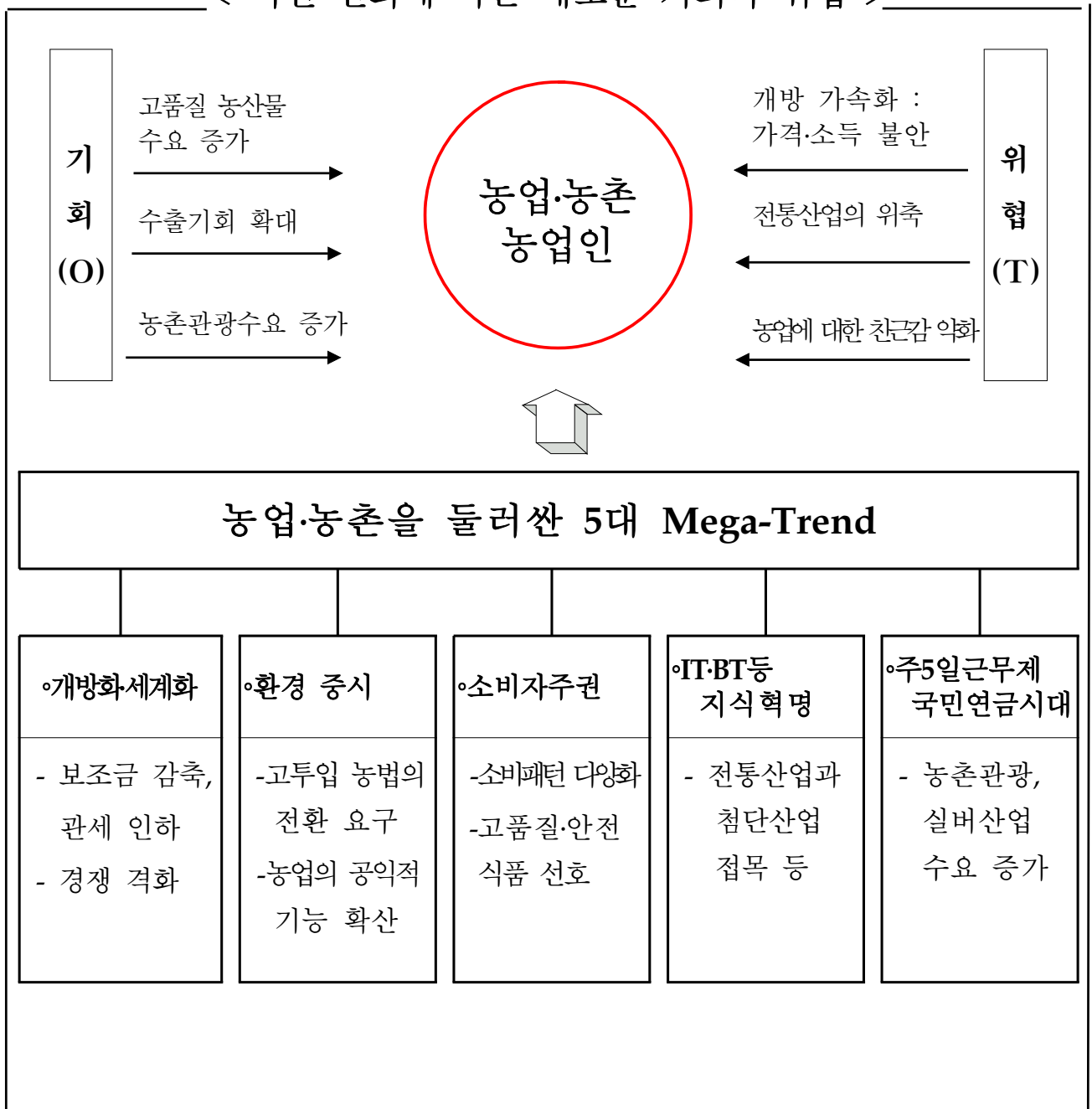
· 농외소득비율은 '99년이후 53% 수준에서 정체(일본 86.9, 대만 82.4)

- 규모화·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한데 비해 소득안정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
  - 생산성 향상 및 소비둔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불안정, 자연 재해, 가축질병 등의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
  - 자본 차입이 많아 농가의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
    - \* 30~40대, 화훼·과수·축산농가의 부채는 평균보다 1.4~2배정도 높은 수준
  - 직불제, 재해보험 등은 시행초기로서 아직 농가소득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취약
  
- 교육·의료 등 열악한 농촌생활여건이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인구감소는 생활편의시설 유치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 초래
  
- DDA 협상의 초점은 개방의 여부가 아니라 개방의 속도와 폭에 있으므로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특단의 국내 대책과 증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이 필요
  
- 구조조정을 완료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개방피해 보완, 구조조정·체질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하는 상황
  - 주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커 국제경쟁력이 아직도 취약
  
- 개방의 영향으로 급격한 소득하락이 불가피하여 직접지불제 확충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이 시급

## 2.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 우리농업·농촌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의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직면

### <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위협 >





### 3.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점 과제

#### 가. 향후 농정과제 도출 (SWOT 분석)

<p>* SWOT :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등 4가지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경영기법</p>		<p><b>강점(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지정리·도매시장·RPC 등 농업 SOC 시설은 상당 수준 정비</li> <li>· 선진경영체와 영세농·고령농 세분화</li> <li>· 농정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 확산</li> </ul>	<p><b>약점(W)</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생산비용, 규모의 영세성 등 전반적인 농업경쟁력 약세</li> <li>·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인한 농업의 자체 성장동력 미흡</li> <li>· 농가의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활력 저하</li> <li>·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식품산업 간의 연계 미약</li> <li>· 농업인·농민단체의 농정에 대한 불만·불신 상존</li> </ul>
<p><b>기회(O)</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친환경농산물, 외식산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li> <li>·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관광 등 여가수요 증가</li> <li>· 세계화의 진전으로 대일본·중국 등 수출기회 증대</li> </ul>	<p><b>&lt;S-O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및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필요</li> <li>·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대책 필요</li> <li>· 시장개방에 대응한 적극적인 농산물 해외시장개척</li> </ul>	<p><b>&lt;W-O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필요</li> <li>· 농가소득의 제고 및 소득 안전망 마련 필요</li> <li>· 농촌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의 증진 필요</li> <li>· 농업인·농민단체를 농정에 적극 참여시켜 농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동력으로 유도</li> </ul>
	<p><b>위협(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DDA 협상, FTA 확산 등 수입개방 가속화</li> <li>·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내 시장 잠식 등 악영향</li> <li>· 비관세장벽에 따른 무역분쟁</li> <li>· 정보화·지식기반 경제화 진행으로 산업기반의 혁명적 변화</li> <li>· 도시민이 가지는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경제의 걸림돌)</li> </ul>	<p><b>&lt;S-T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규범에 따른 시장 지향적 산업정책 필요</li> <li>· 경쟁력있는 농업중심으로 구조 조정 촉진 필요</li> <li>· 농업과 IT산업의 접목 등 타산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li> </ul>

## 나. 향후 해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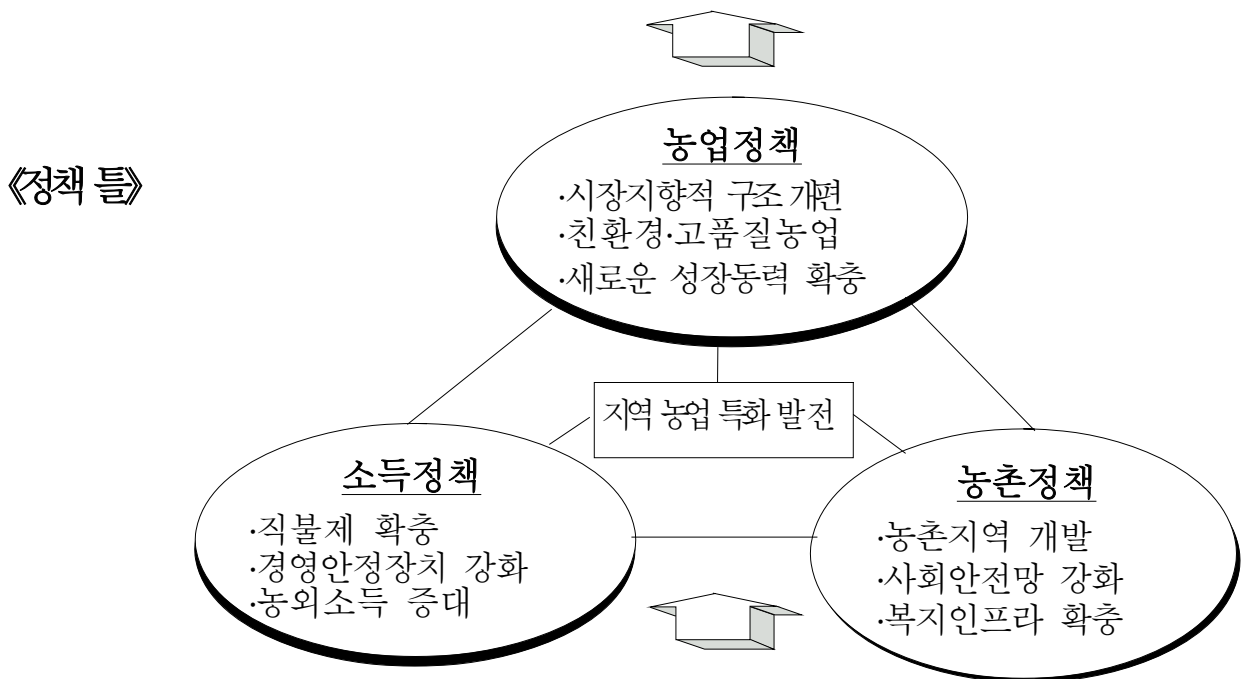
-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로 재편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
  - 경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지원
  - DDA 이후 작동이 어려운 쌀 수매제,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대체할 시스템 개발
  - 환경보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도록 친환경 농업, 농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을 과감히 추진
  -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특화 발전노력을 지원
  
-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하락에 적극 대비하고,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 보상시스템으로 직불제 확충
  -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가위험관리 프로그램 개발
  -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농외소득원 창출
  
-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 균형발전 실현
  - 연금, 건강보험, 상해공제 등 농촌형 사회 안전망 확충
  - 교육 환경, 의료 시설 등 기초 복지 인프라 개선
  - 생활환경, 관광편의시설 등 정주·휴식공간으로서 농촌개발 촉진

- UR이후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소득 감소 및 노령화 등의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닌 선진 각국이 겪는 공통된 현상
  - 개방확대와 농산물 수요정체, 생산성향상으로 국제 원료 농산물 가격은 '96년 이후 대폭 하락
    - 국제 곡물가격이 '96년 대비 '01년 미곡 37%, 소맥 32, 옥수수 42, 대두 38 하락
  - UR타결로 우리 등 수입국 농가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미국·영국·호주 등 농업선진국들도 농가경제가 어려워지는 현상
    - 가격하락, 소비자 선택 확대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생산자(농민)의 농업소득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
- WTO체제 출범이후 가격지지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여 농업정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는 추세
  - 특히, 농업소득 급감에 대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직접지불제 확대 등 직접적인 소득지지 정책을 강화
- \* 각국 농업예산중 직불제 예산 비중('01) :
  - 미국 36%    EU 70%    일본 13%    한국 7%('03)
- 아울러,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과정에서 보듯이 가격지지 정책 축소를 농촌개발투자 확대로 보완하는 것이 정책 방향

## II.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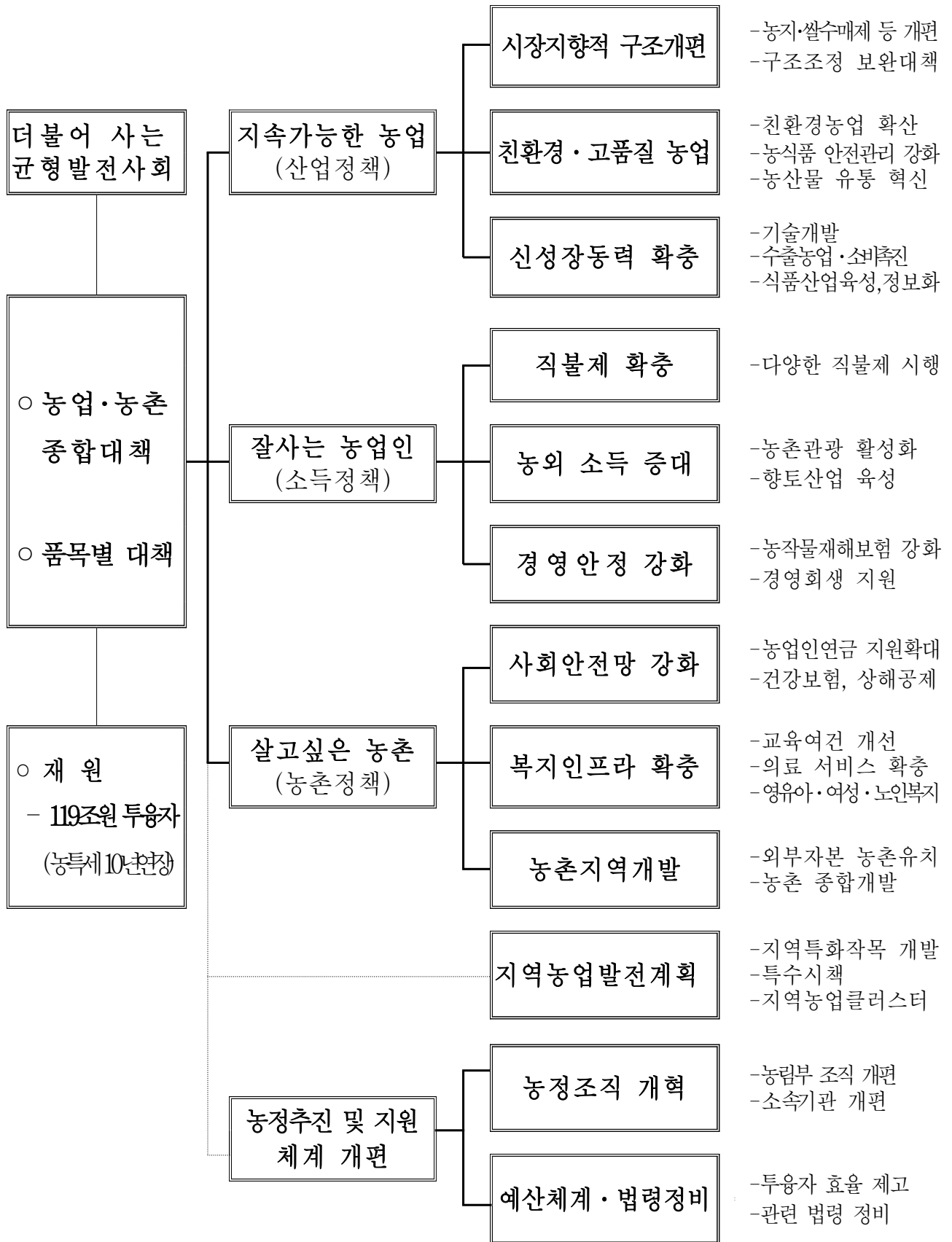
### 1. 농정비전과 기본틀

	<b>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b>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 업 :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li> <li>◇ 농업인 :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li> <li>◇ 농 촌 :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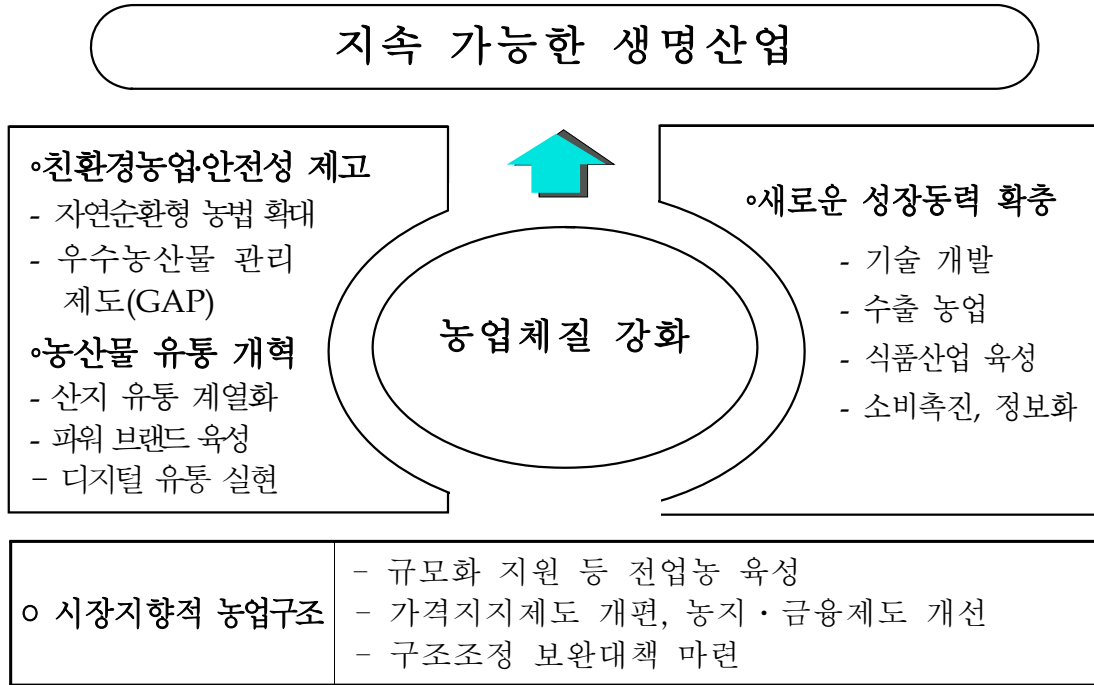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정책과 사회정책의 혼재 → 엄격히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시장원리, 농업인과 농촌: 소득·복지 정책으로 대응</li> </ul> </li> <li>◇ 재정의 산업간·부문간 이익 조정자 역할 강화</li> <li>◇ 농업인·지자체·정부 등 농정주체간 역할 분담</li> </ul>
-------	---

## 2. 향후 농정 추진체계



### Ⅲ. 농업의 체질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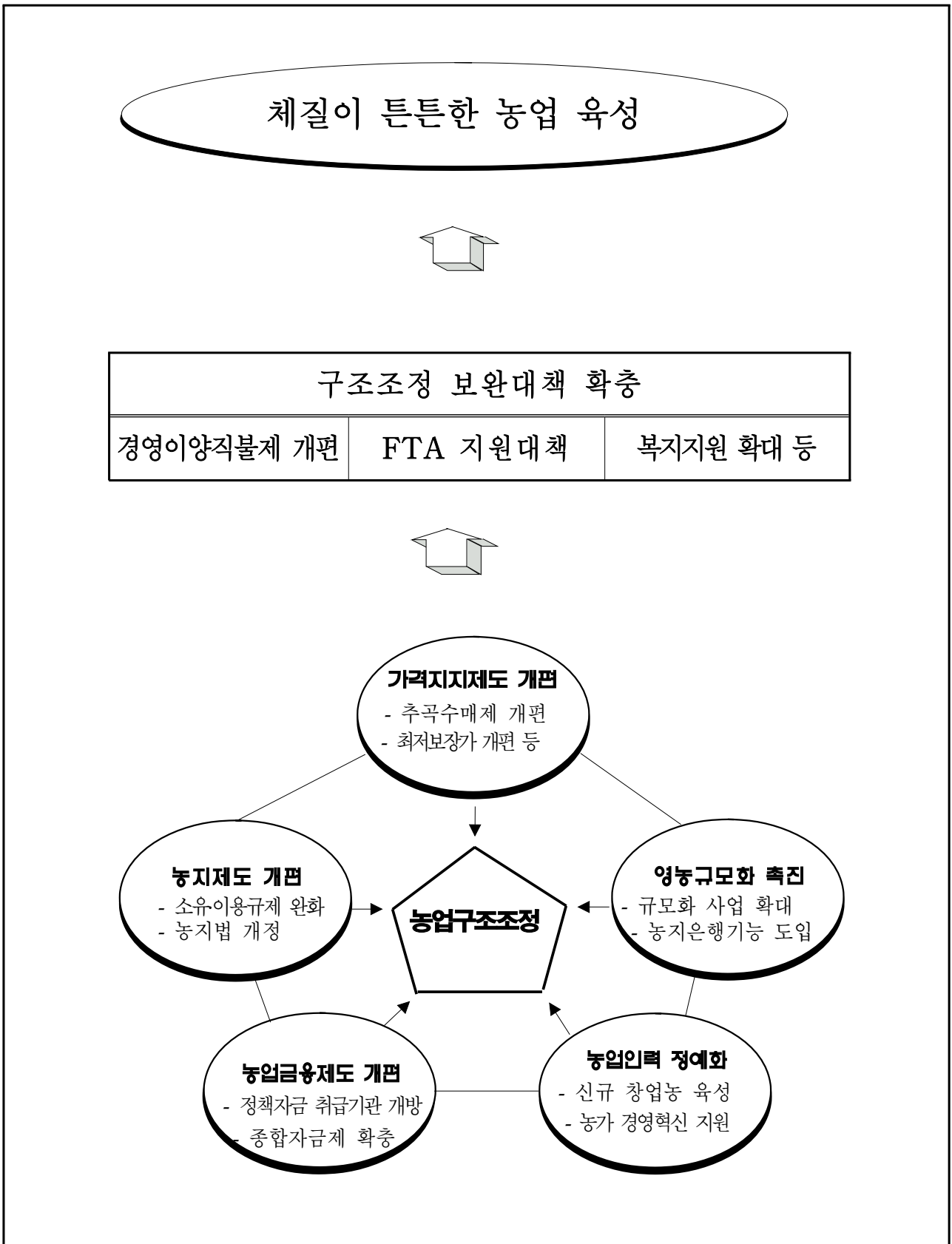
#### 《비전과 전략》



#### 《 로 드 맵 》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 )
<b>시장지향적 농업 구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제도 개편</li> <li>○ 경영이양 직불제 : 연금 방식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05)</li> <li>○ 최저보장가격제도 개편('06)</li> <li>○ 농지은행제도 도입('05)</li> <li>○ 진흥지역 밖 우량농과 진흥지역내 밭으로 확대('05)</li> </ul>	
<b>친환경농업 안전성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질비료 공급 : 60만톤</li> <li>○ GAP 도입근거 마련</li> <li>○ 생산이력제 시범 실시</li> <li>○ 산지공동마케팅 조직 : 20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농산물 : 5%('05)</li> <li>○ 70만톤('05)으로 확대</li> <li>○ 수출농산물 등 시범 실시('05) 후 전품목으로 확대('06)</li> <li>○ 96개 품목 실시('06)</li> <li>○ 100개소('08)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로 확대('10)</li> <li>○ 150만톤으로 확대('13)</li> <li>○ 200개소('13)로 확대</li> </ul>
<b>새로운 성장 동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육성법 제정</li> <li>○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05)</li> <li>○ 농산물영양성 판체 도입('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수출 50억불('13)</li> </ul>

# 1. 시장을 지향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 1-1.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 규모화 촉진

◇ 농지규모 확대에 치중해 온 기존정책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쌀 전업농육성을 위한 현장후보군 관리, 규모화촉진, 품질 및 경영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 □ '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0천호를 집중 육성

- 연차별 규모화 지원 면적을 과거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총 124천ha의 영농 규모화를 지원
  - 전체 규모화 필요면적(164천ha)중 40천ha는 농가 자력으로 규모화하되, 정부지원 면적은 경영이양직불제와 연계하여 추진
- 경영규모·연령 등을 고려, 성장 가능한 농가위주로 정예화하여 선정 지원
  - 6ha수준 규모확대를 지향한 7만호 후보군을 조성하여 관리
- 쌀 전업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확보를 위하여 매매 사업보다는 임대차 사업 중심으로 지원
  - 영농규모화 사업중 임대차 사업으로 65%이상 지원
  - 매매·임대차 사업 비율은 지역여건 및 개별 경영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규모화 지원 외에 기술 및 경영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실시
  - 고품질생산기법 등 시장지향적 경영능력 배양위주의 전문경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쌀산업 핵심 주체로 육성
  - 쌀전업농 전용 종합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화 역량강화



□ 다양한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경영규모확대를 통한 적정소득수준 유지를 근간으로 직불제 확충, 재해지원 확대 및 보험제도 도입, 복지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
- 전업농 쌀의 생산과 유통은 RPC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기계 적정보유 및 효율적 이용 촉진 유도

□ 영농규모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업방식을 고령농가 경영이양농지 공급 중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규모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지유동화 촉진
- 농지매매자금의 금리인하 및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 단가 인상
- 평야지 지원상한 규모 확대 등 지역 특성별 규모화방안 마련
-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농지수급조절 및 농지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전업농의 농지규모화 촉진

\* 필요시 신규 간척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논 중심의 영농규모화 지원을 밭 분야로 확대

- 채소주산지, 밭 기반정비가 완료된 지역의 집단화가 가능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규모화 지원
- 밭작물의 다양성, 작목전환의 불가피성 등 밭작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 구분없이 밭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 1-1-1. 영농규모화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88년부터 농지매입 및 임차 대금을 용자 지원하여 136천ha의 영농규모화에 기여
  - 3ha이상 논농가 : ('90) 18천호, 1.2% → ('03) 44천호, 4.6%
  - \* 지원농가 호당 경영규모 확대 : 1.69ha → 3.76ha
- '95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쌀전업농(46천호)를 대상으로 77천ha를 집중적으로 규모화
- 농지의 공급 촉진을 통한 규모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97년부터는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추진
- WTO/DDA 및 쌀 협상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와 안정적 재원 마련 필요
  - 쌀값 및 농지값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서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0천호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
  - 영농규모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

### 나. 향후 추진방향

- 쌀 영농규모화는 쌀값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하여도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6ha정도로 규모화 사업 확대 추진
  - 호당 평균 6ha 쌀 재배시 도시근로자 소득수준(5천여만원) 확보 전망('10년 기준)
- 연도별 쌀 전업농 육성계획

	'03	'06	'08	'10
3ha이상 농가수	42.5	50.3	58.3	70 천호
평균 경영규모(호당)	3.8	4.5	5.2	6.0 ha

\* '03년 실적은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04.7) 수립시 목표 재설정(당초 2.9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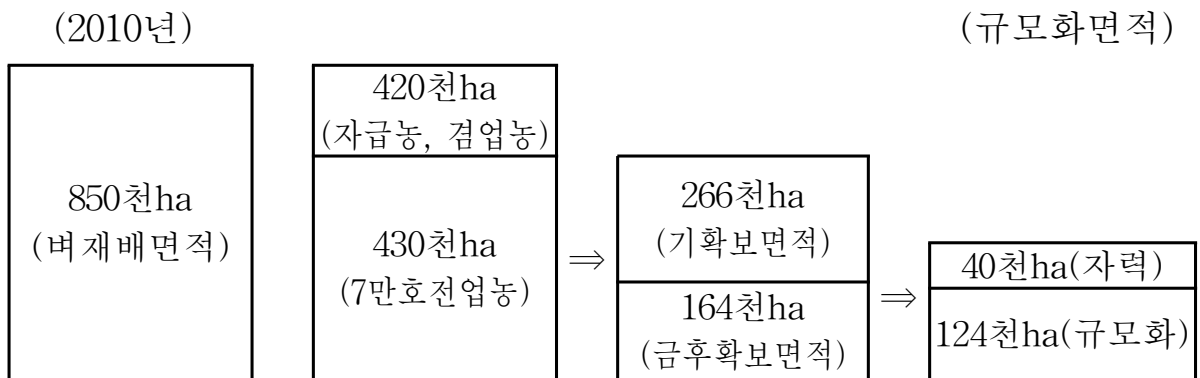
## 다. 세부 추진내용

- 70천호가 6ha수준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164천ha의 규모화가 필요
  - '10년까지 연평균 규모화 추진면적을 18천ha로 확대하여 추진
    - \* '88~'03년까지 연 평균 추진면적 : 8.5천ha
  - 규모화 필요면적(164천ha)중 124천ha는 정부의 영농규모화 사업을 통해, 40천ha는 농가자력으로 규모화를 유도
    - \* 매매사업 40천ha, 임대차사업 84천ha 추진
    - 124천ha중 59천ha는 경영이양농지, 65천ha는 비농업인 및 이농 농지를 활용
    - 영농규모화사업은 2~5ha규모 농가에 집중 지원하고, 10ha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력을 통한 규모화를 유도
- 쌀전업농의 농지매입여건이 약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규모 확대를 위하여 농지매입보다는 임대차중심의 사업 추진
  - 영농규모화사업(124천ha)중 임대차사업으로 65%이상 지원
    - \* 경영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균형을 고려할 경우, 현행 소유구조(소유54%,임차46%)를 개선(소유45%, 임차55%)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비중을 확대
  - 매매 및 임대차 사업 비율은 지역여건 및 개별 경영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사업 추진
  - 사업방식을 고령농가 경영이양농지 공급 중심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규모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지유동화 촉진

- 영농규모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 농지매매사업 자금의 금리인하와 경영이양 직불단가 인상검토
    - 매입지원 농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매자금 금리 적정수준 인하 및 농지유동화촉진과 은퇴 고령농의 소득안정이 되도록 경영이양 직불단가 인상검토
  - 임대차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 임대차 수요촉진을 위해 현재의 임차료 고정분할납부 방식에서 쌀값연동 산정방식으로 개선 검토
    - 임대차 공급촉진 방안으로 고령농이 임대만료 농지를 쌀전업농에게 재임대 할시 경영이양 직불금 재지급 추진(현재는 재임대율이 15% 내외로 저조)
    - 비농업인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에게 임대할 경우 1ha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추진
- DDA, 쌀 협상 이후 쌀값 하락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
  - 농지매매 등 농지유동화 정보 제공과 수급조절용 농지의 신탁기능을 통해 전업농의 규모확대를 지원
  - 필요시 농지은행을 통해 신규 간척농지를 쌀전업농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영농규모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대폭 개편
  - '05년 이후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추진 (매년 1~ 2천억 수준)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계정간 전·출입을 허용하고 계정간 통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쌀전업농 70천호를 경쟁력이 있는 쌀산업의 중추로 육성
  - 전업농 70천호가 전체 쌀 생산의 50% 수준인 430천ha 담당
    - 전업농 70천호 재배면적 : 266천ha→ 430
  - 전업농을 3ha이상의 청·장년층 위주로 재 선정하고, 경영체별 경영진단을 통한 지원 추진
    - '10년까지 3ha이상 전업농 28%→ 100%, 50대 이하 전업농 92%→ 98%
    - 전업농에 대한 경영규모, 농기계보유 및 영농의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영체별 경영상황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추진
    - RPC계열화사업 및 농림사업, 지자체가 추진하는 쌀 관련사업을 전업농 위주로 유도
  - 전업농에 대한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및 경영 교육과 정보 네트워크 구축
    - 고품질생산기법, 선진경영 및 마케팅기법 등 시장지향적 경영능력 배양 교육·훈련 강화
    - 쌀전업농 전용 종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화 역량강화

〈추진체계도〉



라. 추진 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영농규모화 사업방식 개선	○ 매매자금 금리인하 추진('04~)	○ 지원조건 개선 ('06)	○ 2단계 규모화(10ha) 사업계획 수립
○ 영농규모화사업 재정 건전화	○ 정부출연금 증액 (1,000억원 수준)	○ 정부출연금 증액 (1,500억원 수준)	

## 1-1-2. 밭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밭농업 경영농가의 경우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노령농가가 대다수를 차지
  - 밭농업 농가 중 0.5ha 미만이 72%, 60세 이상 노령농가가 52%이상
- DDA이후 경쟁력이 가능한 밭농업 경영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규모화를 지원,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제고 필요
  - 논('90), 과원('04)에 시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을 밭에도 확대 필요

#### □ 문제점

- 밭은 대부분 소규모 면적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규모화가 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음
- 밭작물은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파종, 이식, 제초, 수확 등의 기계화율이 저조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DDA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 확대로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념채소류의 재배면적은 감소 예상
- 구조조정에 의하여 주산지중심의 규모화된 전문농가와 자가 소비형의 영세농가로 양극화될 전망
- 채소의 소비는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신선채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 추진방향

영농의 규모화 및 농지의 집단화로 밭농업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세, 노령농가의 구조조정과 주산지 선도농가 중심으로 영농규모화 추진
  - 이·탈·은퇴농가의 농지를 선도농에게 이양하는 경영이양직불제 사업과 연계
- 1ha이상 경영농가의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으로 달성

## 다. 세부 추진내용

### □ 사업목표

- '16년까지 경영규모 1ha 이상의 밭농업 경영농가를 148천호 ('03년 127천호)로 육성
  - 경영규모 1ha이상의 농가의 주요 밭작물 생산비중을 45%에서 50%로 확대
  - ('03) 127천호(45%) → ('08) 130(46) → ('13) 138(48)→('16) 148(50)

### □ 추진사업 종류

- 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밭농업 경영농가 등에게 매도

○ 임대차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 부터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이를 밭농업 경영농가 등에게 장기임대

\* 매매 및 임대차사업 추진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과 연계

□ 지원 대상자

○ 영농규모화 지원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밭농업 경영농가

- 최근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을 한 밭농업 경영농가가 경영 규모를 1ha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밭농업 선도농가의 청·장년화 촉진을 위하여 연령 제한

○ 밭농업 위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내 주산지 및 받기반정비가 완료된 지역의 집단화가 가능한 우량농지 우선 지원.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접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도 지원가능

- 장기적으로 타용도로 전용 가능성,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

□ 지원방법 : 융자(농지관리기금) 100%

□ 지원상한 및 자부담

○ 지원상한 : 매매사업 40,000원/평, 임대차사업 2,000원/평

○ 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 자부담(지원상한 금액은 전액 자부담)



□ 매입가격 및 임차료 결정

- 매입가격 : 공시지가,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 및 공사의 현지 조사 등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결정
- 임 차 료 :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매매사업	최대 2ha	3%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 상환·체증식 상환
임대차사업	최대 2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실제 농지가격 및 관행 임대차 등을 감안 매입 및 임대차, 농지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지원규모와 지원상한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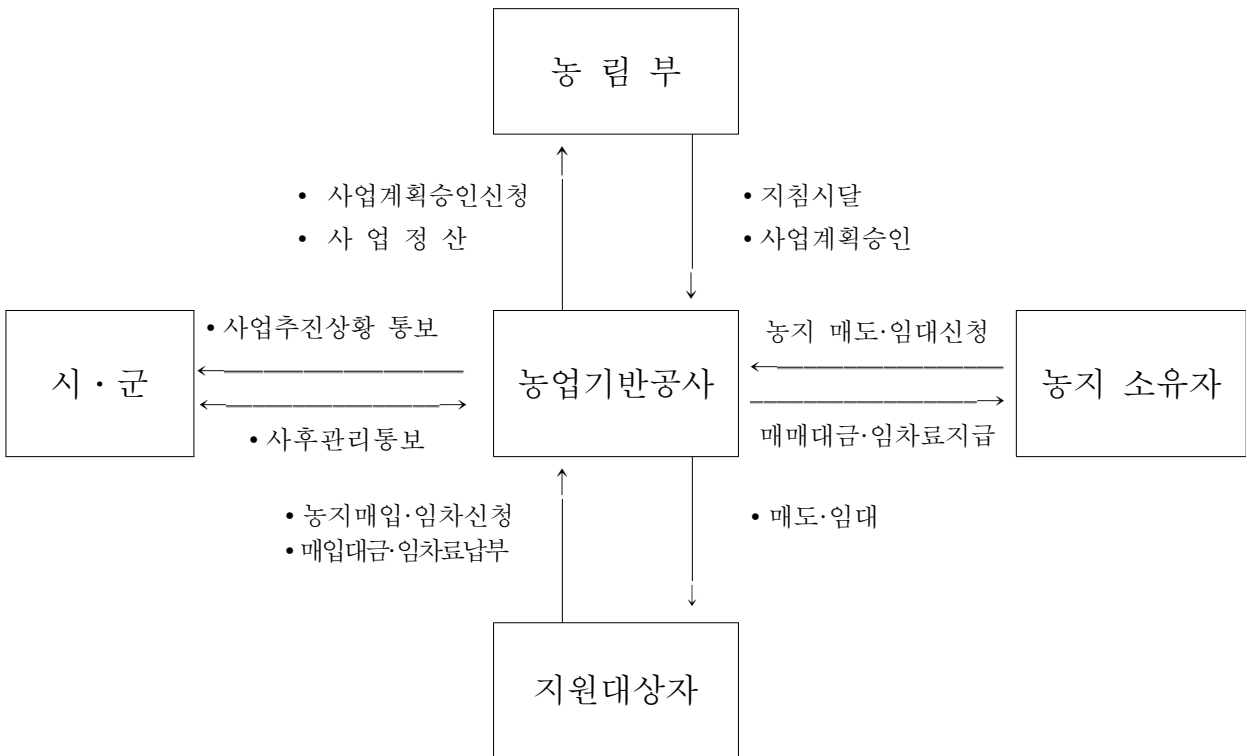
□ 사업 담당기관 : 농업기반공사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13 )
○ 발농업규모화사업	○ 중장기종합대책 수립 ○ 토론회 개최 ○ 수요조사 및 예산 확보	○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참고>

발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체계(안)



## 1-2.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중점 육성

-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신규 정예농업인력을 적극 양성
  -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매년 4,500여명의 우수 신규인력 유입 필요
- ◇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 (1) 신규 창업농을 집중 육성

-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를 창업농으로 중점 선발
  - 농업관련학교 졸업자 등 35세 미만의 유능한 인력의 창업을 지원
  - 대학생(3~4학년)을 대상으로 창업 연수과정 설치·운영
    - 방학기간을 이용, 현장실습 위주교육 및 국내·외 선진농업연수 실시
  - 미취업 청(소)년의 영농분야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농업인턴제 도입
-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현행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 위주로 전환하고, 영농정착자금도 대폭 현실화(현행 1억원 → 최고 2억원)
  - 「창업농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농 정착을 밀착 지도
  - 여타의 신규 농업인은 경영능력, 사업성을 평가하여 종합자금으로 영농정착자금 지원
-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기능 강화('05)
  - 전문대학과정 위주에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강화
    - 창업단계의 위험관리 교육 등 기술·경영·마케팅 위주로 개편

- 현행 3년제 학과 과정 외에 전문 직업훈련과정 신설
  - 교육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6개월·1년·2년 등으로 품목별 훈련과정 신설
  - 농과계 졸업생은 전공심화과정·창업설계지도, 비농과계 졸업생은 품목생산·경영에 필요한 실습 등 전공기술 중점 교육

1단계(2004)	2단계(2005)	3단계(2006~ )
○ 한국농업전문학교 발전 방안 연구용역	○ 학교 발전방안 확정 ○ 직업훈련과정에 필요한 시설 등 마련	○ 직업훈련과정 실시

-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협, 유통공사, 대학 등에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유통이론, 현장실습, 해외 선진사례 연수를 포함하되, 현장 애로 해결능력 배양에 중점
  - 교육이수자를 고용한 유통조직, 컨설팅 사업자 등을 우대 지원

## (2) 농업인의 경영혁신 유도

- 농업인 교육은 집합식 교육에서 현장밀착형 컨설팅 위주로 전환
  - 농업인, 법인 경영체에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단위의 공동 컨설팅 제도 도입('06)
  - 농업인 교육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
- 농업인의 경영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농가를 선별·지원
  - 농업인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운동 참여단체의 교육·홍보비 등 지원방안 강구
  - \* 예 : 성공사례 발표회, 품질·안전성 제고운동, 공동계산·공동출하 운동 등

## 1-2-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81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종사 의욕을 가진 젊고 유능한 청장년에게 신규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 '04년부터 전문인력 신규 유입을 위해 35세미만의 창업농으로 전면 개편하여 최고 1억까지 지원(연리 4%, 5년거치 10년상환)
  - \* 기존농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종합자금제에 의거 경쟁력 위주로 지원
  - '03년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 122천명에 대해 2조2,076억원 지원
  - \* '04년도 : 1,125명 선정, 800억원 지원 계획

#### □ 문제점

- 농촌의 청년층 급감 및 고령화 등으로 후계인력육성 애로
  - 젊은 인력의 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는 추세('03말기준 60세이상 경영주 : 57.7%)
  - 농업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농업계 학교의 역할 미흡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안정적 영농정착 및 경영혁신 지원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를 인원 확대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젊은 인력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내실화 추진
  - 농촌의 젊은 인력 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창업농 중심으로 외부인력 유입을 촉진
  -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설치·운영 및 농업인턴제도 도입 등 청소년의 영농정착 동기 부여
- 영농정착자금 현실화 및 「창업농 후견인」제도 도입으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다. 세부추진내용

-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조기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지원 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농과계 학교교육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연계강화로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35세미만) 인재를 선발
  - 창업농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단가를 현실화(연차적으로 1인당 2억원까지 지원)
  -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농 후견인」 제도 도입('05)
  - 사업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우수농가 Incentive 지원('06)
- 대학생 창업연수 및 농업인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젊은 인력의 영농정착 동기 부여
  - 대학생의 영농실무연수를 지원하는 대학생 창업연수 도입('05년, 100명)
  - 농업인턴제('05년, 100명)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영농정착전 선농가에서의 연수지원 추진
  - \* 정예농업인력육성 연구용역, 시·도, 농업인 토론회 등을 거쳐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마련('04년 12월)
- \* 세부내용은 별첨

## 라. 추진일정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력육성 기본계획 수립('04.7)</li> <li>○ 농업인력육성 종합계획 마련('04년말)</li> <li>○ 창업농 중심으로 후계 농업인육성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부터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매년 1,000명 이상 육성</li> </ul> </li> <li>○ '05부터 창업농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 및 농업인턴제도 시범도입</li> <li>○ 유입단계, 교육단계 평가시스템 시범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까지 지원단가를 2억원 수준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및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개선</li> </ul> </li> <li>○ '06부터 우수농가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사업비 사업 시범도입</li> </ul> </li> <li>○ 단계별 평가 본격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정착단계 평가도입</li> </ul> </li> <li>○ 창업농 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 및 농업인턴제 본격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농지원(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부터 우수농가 추가 지원 규모 확대</li> </ul> </li> <li>○ 신규인력 유입 성과분석 및 개선</li> <li>○ 지원평가 및 feed back</li> </ul>

<참고>

창업농 후견인제도

1. 필요성

-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할 필요
  - 영농경험이 적은 창업농은 기존농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은 낮으나
  - 기존 농업경영컨설팅은 규모화된 농가 위주로 자부담(50%)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초기창업농을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아울러, 창업농은 영농개시부터 대규모 농업투자를 하게됨으로 부실경영 방지를 통한 위험부담 경감 필요

2. 창업농후견인제 개요

- 후견(後見, guardianship)인 개념
  - 창업농 후견 : 창업농이 필요로 하는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을 후견인이 조언·교육·지도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
    -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소요 비용 및 서비스 대가 보상
  - \* 타부처 유사 제도 : 벤처업체의 대학생 창업자 후견제도(중기청), 소년소녀 가장 후견인 제도(보건복지부)
  - \* 일반 개념 :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들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일(민법)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창업농에 대한 전담지도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혁신 유도
- 지원대상 :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사업비 : ('05년) 5억원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3. 시행 방안

### □ 지원 대상 : 창업농 후계농업인 (영농기반이 마련된 자)

- '05년도 : '04년~'05년도 창업농 후계농업인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어 자금을 지원받아 영농기반이 마련(중인)된 자
- '06년도 이후 : 시범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확대 검토  
- 창업농 후계농업인중 대상확대, 신규후계농업인 포함 여부 등

### □ 후견인 자격조건 : 농대교수, 신지식농업인 등 전문가

- 시·도지사는 지역별·품목별(분야별) 농업부문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시

### □ 지원 규모 : 후계농업인 100명, 1인당 5백만원 한도

- 사업비 한도 : 후계농업인 1인당 5백만원 (후견인에게 지급)  
- 계약금액이 사업비 한도 초과시 초과액은 후계농업인이 자부담
- 지원대상 규모 : ('05년) 후계농업인중 100명을 선발 지원

□ 후견 범위 : 경영·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교육·상담·지도

- 현장 방문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을 통한 자료 제공 등을 허용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한도내에서 증감 가능

□ 영농종사의무 부여 여부 : '05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 성격이므로, 별도의 영농종사의무 등을 부여하지 않되, 향후 참여성과에 따라 추가 검토

\* 후견인은 사후평가를 거쳐 우수한 인력 Pool 확보 추진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대상 선정 : 시·군·구청장은 후견인(선정·지원)을 원하는 농업인과 전문가를 연계
  - 창업농과 후견인간 업무협약서를 체결(지원기간·범위·방법·비용 등)하되,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약서 체결시 입회하고, 평가·사후관리 담당
  - 선정절차 : 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량배정(농림부) → 사업대상자 확정·시행(시군구)

□ 예산소요 : ('05) 350백만원 → ('06) 700 → ('09) 770

- '06년부터 매년 200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되, 연차별 추가 확대 및 사업단가 인상 여부는 사업추진 상황 및 농업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개선 추진

# 농업인턴제

## 1. 필요성

- 농업부분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영농에 관심있는 잠재인력에 대한 유인책 필요
  - 관심 수준의 잠재인력에 대해 실제 영농을 체험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 확보 가능
- 아울러, 조기에 영농을 체험함으로써 영농정착단계까지 신속한 정착을 유도할 수 있어 젊은 신규 인력 육성 가능
  - 사전 영농체험을 통해 후계농 선정후 영농포기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영농정착 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 가능

## 2. 농업 인턴제 개요

- 인턴(Internship) 개념
  - 농업인턴제 :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영농분야 실무연수 지원
    - \* 타부처 유사 제도 : 노동부의 취업인턴제(실업대책사업으로 채용 유도 측면 강함)
    - \* 일반 개념 :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거치는 직업연수 과정
  - 인턴을 수용하여 연수하는 선도농가에 소요 비용 및 교육서비스 대가를 지원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연수과정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잠재농업인력의 영농 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지원대상 : (인턴대상) 청(소)년, (자금지원대상) 선도농가
- 사업비 : ('05년) 5억원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3. 시행 방안

### □ 인턴 대상 : 18~32세의 미취업 청(소)년

- 추가 조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젊은 인력 유입을 고려하되, 인턴과정 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농 지원사업의 대상자격(35세 미만)과도 연계 필요

- 우대 조건 : 농과계(대)학교 졸업자 우선 선정 및 여성 우대

### □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등 우수 경영체

- 시·도지사는 지역별·품목별(분야별)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공시

### □ 지원 규모 : 인턴 100명, 1인당 5백만원 한도

- 사업비 한도 : 인턴 1인당 5백만원 (선도농가에게 지급)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정부는 선도농가에 월보수의 50% 범위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대상 규모 : ('05년) 인턴 100명을 선발

□ 연수과정 : 선도농가의 주사업장에서 연수

- 인턴 대상자는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현장실습을 하되, 현장 배치전에 정부의 기본교육(농업정책, 정신교육 등) 이수
-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한도내에서 증감 가능

□ 기타 조건

- '05년도 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임을 감안하여, 지원자에 대한 사후 영농종사 의무는 부여하지 않되, 향후 참여성과에 따라 추가 검토
- 인턴과정 이수자는 창업농지원사업 대상선정시 우선 배려
  - \* 선도농가는 사후평가를 거쳐 우수한 현장실습 Pool 확보 추진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원대상 선정 : 시 · 군 · 구청장은 인턴대상자(선정 · 지원)을 원하는 선도농가(등록, 평가)와 연계
  - 인턴과 선도농가간 협약(지원기간 · 범위 · 방법 · 비용 등)을 체결하되,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약서 체결시 입회하고, 평가 · 사후관리 담당
  - 선정절차 : 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량배정(농림부) → 사업대상자 확정 · 시행(시군구)

□ 예산소요 : ('05) 350백만원 → ('06) 700 → ('09) 770

- '06년부터 매년 200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되, 연차별 추가 확대 및 사업단가 인상 여부는 사업추진 상황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개선 추진

## 대학생 창업연수제

### 1. 필요성

-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 및 경영 기법을 갖춘 정예인력 육성이 절실
  - 영농에 관심이 있으나, 영농체험이 부족한 고학력자를 실제 농업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수과정 필요
  - 대학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영농개시는 대학재학 기간만큼 늦어짐으로 고교이하의 일반 창업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 따라서,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에 영농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인력을 농업부분으로 유도할 필요

### 2. 시행 방안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부분에 우수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사업내용 :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수기관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에서는 연수기관에 연수 비용 지원
  - 사업비 : ('05년) 3억원 (국고보조 100%)

□ 연수 대상 : 32세 미만의 대학 재학생

- 세부조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3학년생(전문대학은 1학년생)
  - 우대조건 : 농과계 대학생 우선 선정, 여성 우대
  - \* 젊은 인력 유입을 고려하되, 연수과정 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농 지원사업의 대상자격(35세 미만)과도 연계 필요

□ 연수기관 : 한농전 및 특성화대학 등 우수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 다만, 1개 교육기관내에 20명 이상 연수시 대학 자체내에 연수과정 신설 가능

□ 지원 규모 : 대학생 100명, 1인당 3백만원 한도

- 사업비 한도 : 대학생 1인당 3백만원 (연수기관에 지급)
  - 연수기관은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으로 지급 가능
- 지원대상 규모 : ('05년) 대학생 100명을 선발

□ 연수과정 : 이론, 실기·현장체험으로 구성

- 이론 과정은 대학내의 지정된 농업관련 필수 과목과 별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농업정책, 정신교육 등) 이수
- 실기·현장체험은 연수기관이 선도농가, 우수경영체 등과 협의하여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행
-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한도내에서 조정 가능

## □ 기타 조건

- '05년도 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임을 감안하여, 지원자에 대한 사후 영농종사 의무는 부여하지 않되, 향후 참여성과에 따라 추가 검토
- 연수과정 이수자는 창업농지원사업 대상선정시 우선 배려
  - \* 선도농가는 사후평가를 거쳐 우수한 현장실습 Pool 확보 추진

##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과계 대학 등 교육기관 (실무조정은 한농전)
- 연수기관 선정 : 연수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림부에 신청
  - 연수인원 확보 계획, 연수 프로그램, 기반시설 등을 평가하여 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공지
- 연수대상 선정 :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희망하는 연수기관에 신청
  - 선정절차 : 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신청(연수기관) → 사업량배정(농림부) → 사업대상자 확정·시행(연수기관)
  - \* 대학생과 연수기관, 연수기관과 농림부(한농전)와 연수협약을 체결

## □ 예산소요 : ('05) 300백만원 → ('06) 600 → ('09) 660

- '06년부터 매년 200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되, 연차별 추가 확대 및 사업단가 인상 여부는 사업추진 상황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개선 추진



## 1-2-2.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학교현황

- 한국농업전문학교 · 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대통령령 제14742호, '95.7.27)에 의거 설치
- 교육과정 : 실기 실습 및 현장 실습위주의 Sandwich System 교육
- 재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 수업료, 실습비 등 학비 전액 지원
- 입학정원 720명(학년별 240명), 1부 3과 · 6학과 · 7부속시설 · 1법인
- 졸업생 1,043명을 배출하여 현장 농업을 선도(영농정착률 95.4%)

#### □ 문제점

- 고졸 인원감소, 농가자녀의 영농승계 기피 등으로 지원을 저조
- 우수학생 유치의 어려움 및 학생간 수학능력 격차 심화
- 장기 현장 실습 부실 : 현장 실습 학생을 지도할 교수 인력 부족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직업의식, 경영능력, 국제적인 안목 등을 두루 갖추고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미흡
  - 매년 240명의 젊고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공사례가 농과계 학교로 확산되지 못함
- 영농에 종사중인 졸업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고학력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 운영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 방향

### □ 전망

- 산업화 영향 등으로 농가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
  - 농가인구(%) : ('70)14,422천명(44.7%)→('90)6,661(15.5)→('03)3,530(7.4)
  - 40세미만 경영주 급감, 60세이상 고령층은 급증 : 40세 미만 경영주 전체 농가의 3.5%, 60세 이상은 57.7% ('03년)
  - 앞으로도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는 계속될 전망
-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력 필요
  - FTA, DDA, 쌀 협상 등 급변하는 농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예 농업인력 육성이 시급
-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역할 중요
  - 매년 240명 수준의 정예인력을 양성하는 한농전의 기능 확대 필요
  - 농업인 재교육과 단기간내 농업인력 양성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 필요

### □ 추진 방향

- 비전 : 국가 농업인력 양성정책의 교두보 및 농업 교육의 메카
- 과정별 개편 방향
  - 정규과정 개편 : 매년 전공이론과 실무능력을 보유한 240명 정도의 한국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정예인력을 양성
  - 직업훈련과정 신설 : 단기간내 세부작목별 실무능력을 갖춘 매년 최소 200명 정도의 우수 창업농을 양성하고 전국 권역별 직업훈련과정 총괄 관리

## 다.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방향

### ① 한농전 정규과정 개편

- 학제 개편 : 3+1년제 (기존 3년제 틀 유지, 추가 교육과정 신설)
  - 영농경험 3년 이상인 졸업생이 추가 1년을 수료하면 학사학위 수여
    - \* 편입생은 2학년에 편입하여 2년 교육후 전문학사 수여
  - 영농정착 기간중 애로기술 해결, 전공심화과정, 가공·유통·마케팅, 경영, 관광 등의 교육 내용으로 +1년 교육 실시
- 우수 신입생 확보 및 재학생 면학분위기 조성
  - 우수 신입생 선발위해 입학생 추천기관 확대, 영농의지 점수 확대 반영 및 인문고, 타대학 등에 입시 홍보 강화
  - 성적 장학금 차등 지급, 우수 졸업생 상(賞)사업비 지원 및 성적미달자 유급제 도입 등 재학생 면학분위기 조성
- 학과 계열화 및 임업경영계열 증설
  - 입학부터 전공범위를 한정하여 변화하는 교육 요구를 충족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과 계열화 추진(현행6개학과→4개 계열8개 전공)
- 현장실습제도 개선
  - 가장 효과적인 과정이면서도 운영체계의 미흡으로 효과 미약
  - 이수단위 세분화, 실습수당을 인턴십제 수준으로 상향조정, 현장교수 지원 강화 등 운영 체계 개선
- 영농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졸업생에 대한 다양한 Incentive 지원

## 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신설

### □ 직업훈련과정 설치 기본 방향

- 전국 4대 권역별 직업훈련과정 신설하여 연간 800명 규모의 신규 창업농을 육성하되, 한농전이 총괄 관리 역할 수행
  - '06년에 한농전에서 시범운영한 후 '07년부터 4대 권역으로 확대

### □ 직업훈련과정 운영 및 시범 교육 계획

#### <직업훈련과정 운영(안)>

- 교육 대상 : 만 44세 미만인 자로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사업 가능자
- 훈련 인원 : 6학과 11전공 220명(전공별 20명 기준)
- 과정운영 계획 : 단기과정(3~6개월), 장기과정(10~12개월)
  - 한농전의 Sandwich 교육 시스템 축소 모형 적용
-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하며, 수료자는 한농전 졸업생에 준하여 지원 및 의무 부여(정책자금은 일반 창업농과 동일한 기준)
- 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과 같이 교육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검토
  - \* 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 : 훈련수당 20만원, 교통비 5, 식비 5(비합숙) 등 훈련생의 특성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

#### <직업훈련과정 시범운영 계획>

- 운영규모 : 직업훈련과정 인원의 20% 시범교육 실시 ⇒ 45명
- 3, 6, 10개월 세 가지 교육프로그램 모형으로 합숙 교육

### ③ 조직개편 및 기타 기능 강화

#### □ 학교 명칭 변경 : 한국농업대학

- 학교의 명칭을 교육수준에 걸맞게 변경하여 졸업생의 자긍심 고취

#### □ 조직 개편

- (현행) 1부 3과 · 6학과 → (개편) 2처 1과 · 4계열 8전공

- 교학처 신설 : 정규과정의 지원 강화로 증가되는 행정수요 충족
- 평생교육처 신설 : 직업훈련과정 및 기존 농업인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교육지원 강화 및 시설 확충

- 교육의 질 향상 위한 교수 역량강화 및 평가체계 구축

- 교수 연구년제 도입 및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 및 교수 재임용제 도입
- \* 예산, 인사 등 학교 운영의 독립성 강화하여 교육의 전문성 확보

- 교육시설 확충으로 자체실습을 강화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경쟁력있는 창업농 전문양성 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한농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4)	○ 한농전 정규과정 개편 ○ 직업훈련과정 신설에 따른 시설확충 및 시범 교육실시 ○ 품목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 실시	○ 직업훈련과정 중간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재설정

### 1-2-3. 농업인 교육훈련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업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갖춘 지식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예비농·창업농단계 및 정착·성숙단계별 교육 실시
  - '82~'03까지 289억원을 지원, 115만명에 대해 지식·기술·정보화 교육
- 농업인 e-교육정보시스템(AEIS) 구축, '03부터 서비스 제공

##### □ 문제점

- 새로 농업에 진입하는 신규 창업농 교육 과정의 문제점
  - 신규농, 기존농 및 농과계 학교 졸업자 등 교육생의 수준과 성향에 따른 분리 교육이 되지 않아 교육효과가 미흡
  - 신규 진입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 기관 부재
    -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이 기존 농업인 위주의 단기 기술 교육 중심으로 편성되어 신규 진입자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미흡
- 기존 농업인 교육훈련의 문제점
  -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교육수요 반영 및 프로그램 다양화 미흡
  - 공급자 중심, 집합 교육 위주의 효율성이 낮은 교육
  - 농업인 발전단계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
    - 수요자의 수준에 따른 교육보다는 하향 평준화된 교육으로 교육 수요자의 관심과 참여 미약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욕구 증가
-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필수적 과정으로 교육 수요 증가 예상

### □ 추진방향

- 농업인력 센서스 실시하여 농업인력 수급상황 및 인력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결정 등 최적의 교육훈련 계획수립
- 품목별, 단계별 『모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신규농, 기존농 등 『대상별 특화된 교육』 실시
  - 기존 농업인과 신규 창업농 등 교육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수준별 교육 실시
  - 발전단계별, 수준별 모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교육의 성과 제고
-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공모 추진 및 교육 성과 평가 정례화로 교육의 질 향상
  - '04년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기관 공모 선정으로 교육의 질 향상
    - 경북대, 충북대 등 8개 농과대학에서 창업농 교육 실시
  - 교육기관, 프로그램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의한 교육비 지원 수준 조정
- 교육훈련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할 농촌홍보센터 설립
  - 모델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이버·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 개발, 교육 교재·자료 개발 등
- 품목별 기술교육보다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제고·마케팅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 반복적인 이론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실습교육은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원거리교육 부담 해소 및 양질의 교육 확보

## 다. 세부 추진 내용

### □ 신규 창업농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 ○ 한농전 정규과정 강화로 핵심 인력 육성

- 한농전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농전을 우수 농업인력 양성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 우수한 학생의 입학을 촉진하고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체계 개선 및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 직업훈련과정 신설을 통한 우수 인력 육성

-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1,000명 규모의 신규 창업농 육성
- 이론·실습+현장실습+영농설계 등 한농전의 sandwich식 교육 과정 도입
- 직업훈련과정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 시행
  - 4대 권역별(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특성화 농과대학 등에 직업훈련과정 개설하여 확대 추진하며, 한농전에서 과정 총괄 관리

### □ 기존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 ○ 경영 및 마케팅 교육 강화로 부가가치 창출 위한 교육 추진

- 현재 단기 처방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경영, 마케팅 및 농촌관광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
- 농업인 경영능력 배양 및 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 시스템으로 개편



## ○ 수요자 위주의 교육 훈련

- On·Off-Line 및 미디어 등을 결합한 『입체적 교육시스템』 구축
  - Cyber 교육 및 EBS 방송 등 On-Line 교육활성화
- 전국의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강사, 교육시설 등 교육 정보 DB를 완비하여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개체 역할
- 발전 단계별 필요한 기술, 경영에 관한 사항 및 성장 단계별 (상·중·하 등)필요한 교육내용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 제시

## ○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

- 교육훈련 바우처(voucher)의 개념 및 취지
  - 일정 자격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 교육훈련 수요자가 교육 훈련을 받을 때 수강료를 대신 지불하겠다는 지불보증전표
  - 교육훈련 수요자가 필요시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제도
- 시범 운영 과정은 쿠폰형 바우처 형태로 추진 시범도입
- '05년 시범 운영으로 문제점 파악후 '06년부터 점진적 확대추진하여 '13년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

## ○ 수요자의 요구 및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

- 경영컨설팅과 교육훈련 연계
  - 경영컨설팅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경영체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하여 컨설팅의 효과 제고
- 생산자단체의 요구에 의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별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훈련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작목별 역량 동시 제고

○ 농업의 비전 제시위한 농업인 성공사례 전파 교육 강화

- 성공한 농업인의 성공사례 및 기술 전파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의 비전 제시로 우수 인력의 유인책으로 활용
- 농고, 농대, 4-H 등 잠재 농업인에 대한 성공사례 전파 교육 강화 하여 우수 인력의 조기 확보
- 성공사례 전파 등은 기존 농업인 사례 위주로 실시하여 농업분야에서 성공 가능과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의 가치 제고

○ 교육이수 실적과 수준에 따라 일정 자격을 부여하고, 부여 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발적 교육참여 유도

- 자격증 소지자 활용 : 농업인 교육시 교관자격 부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양질의 전문 농업 교육추진과 프로그램 다양화	○ 교육비 지원 교육 기관·단체 평가 후 경쟁력 있는 기관만 지원 ○ 창업후계농업인 교육 기관 공모 후 교육실시 ○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05)	○ 교육기관공모확대 ○ 맞춤형 교육훈련 시범 도입 ○ 농업인력센서스 실시 ○ 농업인자격제 도입 ○ 학생4-H등 잠재인력 교육홍보 강화 ○ 직업훈련과정 도입	○ 교육기관 공모 전면실시 ○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 전면 도입 ○ 맞춤형 교육훈련 전면 도입

## 1-2-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가의 생산·재배기술 확립, 합리적 경영기법 도입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99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
- 2003년까지 추진사업비 : 208억원(국고 68억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9	'00	'01	'02	'03	계
사업량	220	441	553	759	855	2,828
사업비	1,710	3,388	4,427	5,586	5,696	20,807
국 고	668	1,227	1,499	1,676	1,709	6,779

#### □ 문제점

- 농업·농촌구조개선사업성으로 농업생산 및 기반조성 등 농업 부문의 하드웨어 측면은 정상궤도에 진입하였으나, 농업 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에 부응한 경영기법 등 소프트웨어 측면은 아직 부족한 수준
  - 농업경영에 대한 인식과 교육 부족 등으로 경영운영 시스템 취약
  - 농업경영 회계기준에 대한 기준 미비로 전통적인 경영장부식 기장을 선호
- 농업분야별 전문컨설턴트의 부족으로 인한 전문기술 및 자원활용 미흡
  - 농업경영의 다변화·전문화 등으로 인하여 농업분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컨설턴트의 육성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추진방향

### □ 향후 전망

- 앞으로 농업부문의 소득증대와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농업기술·생산관리를 비롯, 회계·재무관리, 유통정보 등 농업경영측면의 농업인 수요에 맞추어 경영컨설팅 패키지에 의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규모화 된 농가에 경영마인드 제고, 투융자사업의 부실방지 및 인력양성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민간컨설팅 효과에 대한 농업인들의 높은 기대로 참여 희망 농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물량 확대 필요

### □ 추진방향

- 전문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체계적인 지원system 마련
  - 민간컨설팅 역할 확대 및 전문가 집단의 연계 강화
- 현장밀착형 컨설팅지원강화를 통하여 합리적 경영기법 도입 및 경영능력향상 등 기업적 경영마인드 제고
  - 사업비단가 인상(2→3천만원), 국고보조율 인상(30→50%)
- 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대상 확대
  - 컨설팅대상을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쌀전업농으로 확대
- 농업전문가를 컨설턴트로 활용하여 현장애로 해결 및 농업 경영개선 효과를 위한 「농업경영 명예컨설턴트제」를 도입
-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경영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 다. 세부추진내용

###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원예·특작, 축산, 가공, RPC, APC 경영체
- 지원내역 : 경영컨설팅비용의 70% 정부지원(국고 50, 지방비 20)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여건 성숙시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
- 사업비(예산) 소요액 : 1,218억원(국고700, 지방비105, 자부담413)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년)	2단계('06~'08)	3단계('09~)
지원개소수	1,000개소 이하	1,200개소	1,500개소

\* 국고보조에는 매년 우수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액('06~'09, 12억원) 및 명예 컨설팅제('06~'13, 208억원) 포함

## 1-2-5. 유통전문인력 양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유통부문 투융자 확대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이를 충분하게 활용할 전문인력은 부족
  - 기존 유통교육과정은 단기과정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현실 응용능력이 낮음
- 국가공인자격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선발 이후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나 실제 활용 실적이 미미
- 농산물 유통 구조조정 및 개혁작업 지속에 따른 유통종사 인력의 단합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나 관련 시책이 부족한 실정
  - \* 유통종사인력 : '04.10월 기준 51,196명(도매시장 21,520, 산지유통인 7,928, 농협 20,077, 종합유통센터 1,671)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고품질·안전 농산물 상품화 및 브랜드개발 등, 마케팅 활동이 가능한 핵심인력 육성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으로 부각
- 분야별로 특화된 농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산물 유통개혁을 선도할 인적 기반을 구축
  - 단기·일반과정 위주의 기존 유통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의 특화된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
    - \* 농산물유통전문인력을 '13년까지 4,500명 양성(매년 450명수준)
    -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효과 제고
-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농산물품질관리사 활용도 제고
- 농산물 유통개선 우수사례 전파, 유통인 사기진작 및 교류확대를 위한 “농산물유통대상” 신설 및 농산물유통 성공사례 발표

## 다. 세부추진내용

### ① 농산물유통 전문인력육성 및 활용

#### □ 분야별·대상별 「농산물유통전문교육」 운영 지원

##### ○ 농산물유통 전문교육기관 육성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을 개편, '04년부터 마케팅전문과정 시범교육기관으로 육성(2개 과정)

\* 유통교육원 지방 신축 이전으로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06~'07까지 : 210억 소요)

- 지역대학, 연구소, 생산자단체 중에서 교육기관 별도 공모 ('04~'05년 9개대학) 후 교육참여지역 추가 확대(강원·제주)

##### ○ 농산물유통 핵심 종사인력을 중심으로 교육비 지원

- 농산물 유통종사인력(총 15천명 수준 추정) 중 매년 400~500명 수준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비 일정부분(70%수준) 지원

- 특히, 산지유통과 신유통업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교육, 지방자치단체 농산물유통업무 담당 공무원 참여확대(지자체 지원)

##### ○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세부 전문교육 분야 확대

- 산지마케팅, 소비지 마케팅, 품목별 마케팅, 유통업 경영혁신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세부분야는 연차별로 확대

\* 연차별 확대계획 : ('05) 12개과정 → ('06) 16개과정 → ('07) 20개과정

##### ○ 유통이론 교육외에 현장실습·선진사례 연수 실시(150시간, 6개월이내)

- 국내의 우수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성공사례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습하는 참여·체험과정 운영

- 해외 선진유통의 현장을 방문·실습하고 새로운 기술습득

\* 해외 유통전문 교육기관과 제휴하여 해외 연수단 파견 및 교수진 교류 등 추진 (예시 : 프랑스 청과연합회 교육훈련센터)

## □ 농산물유통전문교육 평가 및 지원체계 강화

- 교육기관별로 교과과정의 적정성, 교수진 구성, 교육생 모집 및 호응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교육대상기관 재선정시 반영
  - 2년 주기로 평가심사하고 평가결과 하위 20% 교체
- 유통전문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체, 정부 등 학식과 경험을 갖춘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유통교육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전문교육 기본계획의 심의, 지역별 전문과정 선정심사, 중장기 유통인력 양성 방안 등을 자문·심의하는 역할 담당
- 지방대학의 유통전문교육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참여 확대

## □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및 채용 인센티브 제공

-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로 최신 유통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등 인적기반 구축
  - \* 농진청, 농경연, 한식연, 농대 등의 연구진과 민간유통기업, 생산자단체, 품목별 유통조직 등의 전문가를 네트워크로 연결
    - 농산물유통전문교육 이수자로 구성된 “유통전문가 협의회”구성 운영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통교육원에서 홈페이지 구축 지원
- 전문과정 이수자를 고용하는 산지전문유통조직 등은 각종 유통사업 정부지원에서 우대하는 방안 강구

##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육성 및 활용제고

- 매년 300명수준의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선발하여 출하조직 관리·상품 및 브랜드 개발·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 산지유통 담당
- 품질관리사 선발기준, 시험주관기관 위탁 등 제도개선 추진하고 선발된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 품질관리사의 관리자 채용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산지유통전문조직이 품질관리사 고용시 인센티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 품질관리사 고용시 1인당 6천만원~1억4천만원까지 무이자 용자('04 : 250억원), 유통전문교육 수강시 수강료 70% 지원
- 품질관리사를 확보하고 있는 APC 및 유통조직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우선 지원
-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생산이력제 등 확대 도입시 정책모니터링 및 전문인력으로 활용 검토
- 민간 품질인증기관 허가시 품질관리사 의무고용 검토

③ “농산물유통대상” 신설 및 농산물유통 성공사례 발표

- 경영개선과 농산물 유통개혁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단체 및 개인공로가 있는 사람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 시책의 추진력 제고 및 사기 앙양('05부터 실시계획)
  - 시행체계 : (주최) 농림부, (주관) 농수산물 유통공사
  - 시상부문(안) : 산지유통,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물류혁신, 안전농산물, 지방자치단체 등 부문별 장관표창 및 시상금 수여
    - \* 시상금(안) : 최우수 1점 1천만원, 우수상 2점, 5백만원
    - \* 시상식 행사비, 시상위원 심사비, 홍보비 등 운영비(안) : 8천만원
  - 심사평가체계 :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현지 실사 담당
- 농산물유통 성공사례집 발간 배포('05)
  - 매년 농산물유통구조 성공사례를 발굴, 사례집 발간·배포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유통전문인력 교육과정개설	○ 기본계획 수립 ○ 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및 지역별 마케팅 전문과정 개설	○ 유통공사 유통교육원 전문교육 과정중심 으로 개편 ○ 매2년마다 교육기관 재선정	○ 사업정착 및 장기적 으로 생산자단체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환
○ 농 산 물 품 질 관리사 육성	○ 품질관리사 선발 및 육성방안 마련	○ 품질관리사 선발기준 등 제도개선 및 인센 티브 부여 ○ 품질관리사제도 시험전문기관 위탁	○ 품 질 관 리 사 제 도 정착 및 활성화
○ 농산물유통대상 신설	○ “농산물유통대상” 신설('05) - 선발기준 등 운영 계획 마련		

## 1-2-6. 농업벤처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03년 12월 현재 중기청 확인을 받은 농업분야 벤처는 202여개로 전체 벤처기업(7,702개)의 2.6%이며, 이중 코스닥 등록 업체는 20여개임
- 농업벤처 창업활성화 및 투자 기반구축 추진
  - 창업보육센터지원(3개소), 창업경연대회개최, 기술평가기관 지정(한식연)
  -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2개, 180억원), 농업벤처 투자박람회 개최

#### □ 문제점

- 농업인의 사업화 능력 부족 및 창업지원 인프라 열악
  - 자체 보유한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평가능력이 부족하고 사업화 및 벤처 창업시 창업정보 접근이 어려움
-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등 외부지원 부족
  - IT에 비해 자본 회수기간이 길어 투자위험도가 높으며 가족농 중심의 경영구조로 자본참여 애로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기술개발 및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한 농업벤처 저변확대
- 농업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농업벤처의 투자유치 지원 등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 \* 전문가를 참여시킨 농업벤처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운영

## 다. 세부추진내용

- 농업인 등의 농업벤처 창업마인드 제고 및 창업분위기 확산
  - 농업인, 교수, 연구원 등 대상으로 농업벤처 창업경연대회 개최
  - 농업분야 벤처 기술평가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통해 기술성·사업성이 있는 농업인 등의 기술·아이디어 적극 발굴
- 농업분야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지원기능 활성화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창업 보육센터를 권역별로 추가지정 추진
  - 가능성 있는 보육졸업업체에 대한 추가보육을 위한 POST-BI 사업 추진
- 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투자박람회 개최
  - 향후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펀드) 추가결성

## 라. 추진일정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활성화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보육센터 지원</li> <li>- 창업경연대회 개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창업보육센터 추가지정 및 보육사업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호남권에 각1개씩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설립</li> <li>- 사업성과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li> </ul> </li> <li>○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까지 농업벤처 활성화 및 성장기반을 다진 후 민간이양(시장기능 강화)</li> </ul>

## 1-2-7. 농업경영체 활성화

### 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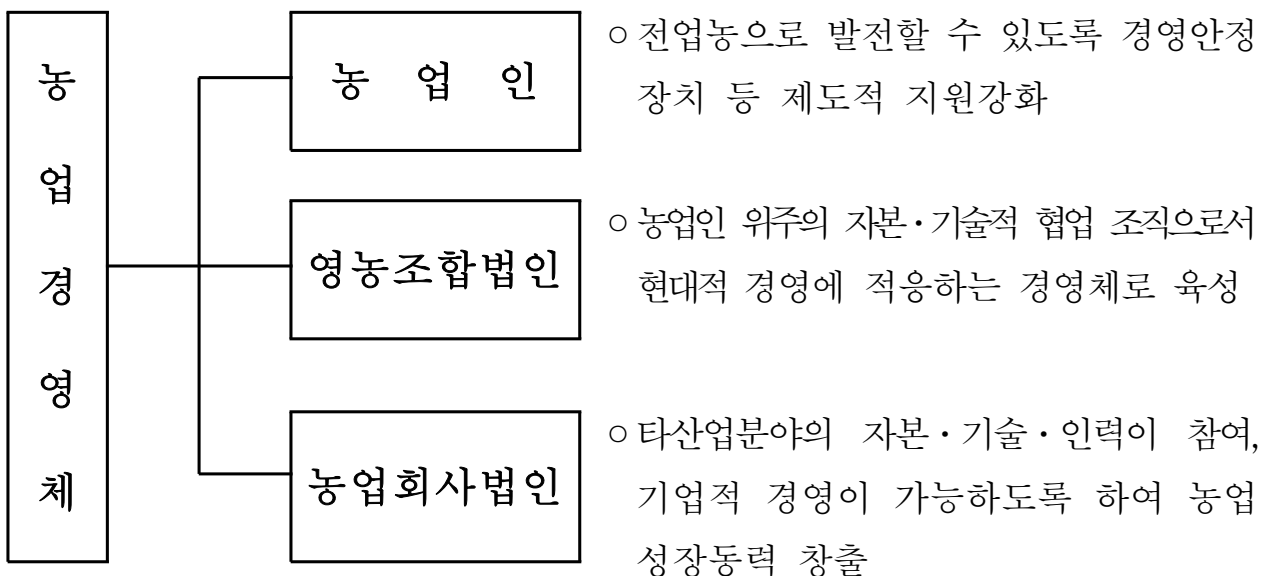
- 그동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결과 농업인프라는 크게 개선되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기업적 농업경영체 출현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
  - 영농조합법인 4,274개, 농업회사법인 1,158개 운영중('03. 12말 현재)
- 농업을 둘러싼 여건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에 대한 제도와 지원시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농업 위주
  -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농업인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
    - \* 농가인구: ('03) 353만명, 60세 이상 경영주 57% → ('13년 전망) 175만명, 70%이상
  - 개방화와 공급과잉 시대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 농업경쟁력을 좌우
  - 농업분야도 전문화 및 상업적 경영이 촉진되고, 유통·저장 등 2차산업, 컨설팅 등 3차산업과의 연관성도 증가
- 따라서, 농업경영체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업농과 농업법인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 농업경영에 자본, 기술 및 인력이 진입하여 농업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전문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농촌종합대책 성공가능성 확보 및 농업분야 혁신 추구

⇒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 필요

## II. 기본방향

- 농업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전문화된 농업경영의 주체로 양성
    - 농업인중 규모화되고 능력있는 경영체는 개방화시대에 견딜 수 있는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장치 등 제도적 지원 강화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이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협업 조직으로 현대적 경영환경에 적응하도록 육성
    - 농업회사법인은 타산업분야의 자본·기술·인력이 자유롭게 진입하여 농업분야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관련제도 개선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 등 진입제한 완화
- \*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 Ⅲ. 농업경영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 1. 농업경영체에 대한 세제 개선

- ◇ 전환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업의 전문화·상업화가 진전될 때까지 세제 지원 강화
- ◇ 자연인인 농업인 위주로 되어있는 세금제도가 농업경영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 가.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소득세(지방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세율구조로 농업인과 법인에 일괄적으로 부과
  - 농업소득세율의 누진구조가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보다 가파르게 되어 있어 대규모 영농에 장애로 작용

과세표준	농업소득세율	소득세율	법인세율
400만원 이하	3%	-	-
1,000만원 이하	10%	9%	-
4,000만원 이하	20%	18%	-
8,000만원 이하	30%	27%	-
8,000만원 초과	40%	36%	-
10,000만원 이하	-	-	13%(05.1월부터)
10,000만원 초과	-	-	25%(상동)

- \* 농업소득세 : 시·군세로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의 종자를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 (벼, 화훼, 과실, 특용작물 등)
- \* 농업소득세 징수실적 : (96) 39억원 → (00) 33 → (01) 13 → (02) 27

##### □ 개선방안

- 농업소득세 부과를 '05년부터 향후 5년간 중단하고 세율은 추후 농업소득세율 개정시 소득세율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반영
  - \* 대만의 경우도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과세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나.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경비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법)인이 농지구입을 위해 임차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농업소득세에서 경비처리되지 않아 영농규모화 의욕 저해

\* 법인세·소득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의 구입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경비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자산가격에 부과하여 감가상각 처리

### □ 개선방안

- 농업(법)인이 농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로 처리되도록 행자부 해석지침을 변경

## 다. 농업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법인의 특성상 작물재배·축산업 경영을 위해 농지·초지  
취득이 필요하므로 창업시점에 부동산 취득관련 세부담이 큼
  - 현재 농업법인의 경우 취·등록세를 계속 50% 감면 받지만 사업시작  
후 최초 몇 년간 자기자본 충원을 위한 지원 필요
- 대부분의 농업법인이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이 곤란하며, 조합원들로부터의 농지나 부동산 현물출자도  
취·등록세 부담으로 곤란

### □ 개선방안

- 농업법인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  
취득하는 것은 현행대로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 120조)



## 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문제

###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농업의 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66, 67조)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농업소득에 대한 감면혜택을 일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작물재배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최저한세(10%) 적용업종이 아니므로 농업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15%의 최저한세를 적용

### □ 개선방안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단, 농업소득이 아닌 소득은 최저한세 적용)
- 작물재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마. 농업용 건물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구입의무 면제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자체에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 농업인에 대해서는 주택채권구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 개선방안

- 농업법인이 “농업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구입의무를 면제하여 영농 규모화를 촉진(주택법 시행령 별표12 개정)

## 바. 친환경농업용자재 VAT 영세율 적용

###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한 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허용된 유기질비료 등 118종이 규정되어 있음
  - 이중에 비료관리법이나 농약관리법에 의해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된 친환경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음
  - 자재의 특성상 비료나 농약으로 공정규격을 갖출 수 없어서 비료 또는 농약으로 등록되지 못한 자재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농가의 자재비 부담가중 및 법 적용의 형평성문제 야기
- 따라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 개선방안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농업용 자재는 농가부담경감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재경부와 실무협의
  -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세제지원효과가 기대되는 자재에 한정 (품질규격이 고시된 키토산·목초액·천적 등 3종)
    - \* 생산유통규모 : 연간 320억원(키토산 100, 목초액 90, 천적 130)
    - \* 세제지원효과 : 3년간 62억원(키토산 30, 목초액 27, 천적 5)

## 2. 농업회사법인 진입제한 완화

- ◇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제한을 완화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주체 제한을 완화
- \* 현재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한정

### 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 소유제한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참여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농지 소유가 제한
  -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집행이사의 1/2이상이 농업인이며, 총지분의 1/2이상이 농업인 지분인 경우만 농지소유 가능(농지법 제2조)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지분 상한 확대(1/2→3/4, 04. 4월시행)

#### □ 개선방안

- 대표이사, 집행이사 및 농업인 지분제한 규정 개선(농지법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지분제한(총지분의 1/2이상)을 폐지
  - 전문경영인의 농업법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집행이사 제한 규정을 삭제

## 나.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활동을 하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농업법인과 동일한 농업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과 달리 취급

- 구미원예수출공사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므로 국고보조 없이 용자지원만 받았으며, 구미원예농단은 40% 국고보조 지원
- '04년 부채대책 지원의 경우 농업인과 농업법인에만 해당되므로 농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을 하는 법인은 전혀 혜택이 없음
- 세법상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은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법인의외의 농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음

\*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03)

임금지급액 708,469천원, 보험가입액 26,589, 퇴직금지급액 68,751, 위로금지급액 16,269 ▷ 계 820,071, ▷ 년고용인원 23,700명 (일일고용단위)

-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농업법인 출자수요 증가 예상

### □ 개선방안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지자체가 설립·운영중인 농업관련 공기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
  -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에 농지소유,자금지원 및 세제상 혜택을 농업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 3.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 ◇ 창업에서 퇴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농업경영체의 사업 원활화를 위한 관련 지원체계를 확충
- 창업지원, 사업자 등록제도, 컨설팅 및 경영체 종사자 지원 등 현대적 경영환경에 맞게 개선

#### 가. 농업부문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부문도 벤처기업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의해 타 산업 부문과 동일하게 지원되어 농업의 특수성에 따른 지원 곤란
- 농업부문의 벤처창업 및 투자실적이 미미
  - 중기청 확인을 받은 농업벤처는 202개로 전체의 2.6%수준이나, 대부분 생명공학 분야
  - 농업분야 창업보육센터는 3개(서울대, 한농전, KREI)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편중
  - 2개의 농업투자전문조합(펀드)을 결성하여 9개회사에 64억원 투자

##### □ 개선방안

- 농업벤처 창업에 소요되는 초기 창업자금 지원 원활화
  -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중기청의 정책자금이 농업분야에 활용 되도록 홍보
- 농업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고 창업지원 기능 활성화
- 농업투자전문조합(펀드)의 투자 활성화와 펀드추가결성 검토

## 나.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문제

### □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 직접판매 등으로 수입을 늘리려는 개인 사업형 농가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 판매, 카드결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 사업자 등록 없이는 카드결제, 인터넷 판매 및 계산서 발행 곤란
  - \* 전문여신금융업법에는 카드가맹점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운영상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이를 요구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사업자등록증 요구
- 작물재배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현재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농업인 지원혜택이 배제되어 다시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
  - \* 농가가 부업으로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함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 □ 개선방안

- 근본적인 사업자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 우선적으로 작물재배업의 경우 농림부가 사업자 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공식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농업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공식증명서 발급을 전제로 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카드사에 협조요청
  - 통신판매업자 등록 요구서류에 농업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공식증명서 제출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근본적인 사업자 등록제도의 운영주체(행자부 또는 국세청)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다. 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경영체 교육이 산발적·비체계적이고 농업인이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미약한 상황
  - 농업인 교육훈련은 39개 기관에서 80여개 과정을 운영('04년)
- 농업경영체의 장부작성 노력과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등 경영 마인드가 미흡
  - \* 농업법인 중 결산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52.5%에 불과하며, 간이 장부 작성 사업체와 미기장 사업체는 각각 25.0%, 22.6% ('02년 기준)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1년전에 신청하는 등 효과적인 컨설팅이 곤란
  - 컨설팅 공급업체 74개소, 농업경영체 873개 선정('04년)

### □ 개선방안

- 농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컨설팅 추진을 위한 조직과 기능 확충
  - 관련 전문가와 교육수요자(농업경영자)간 네트워크 원활화
  - 품목별·대상자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
- 농업경영체가 장부 작성과 컨설팅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컨설팅 지원 확대 및 건설경영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
  - 사업비 확대 및 국고 지원비율 상향 검토
  - 컨설팅 3년이상,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영체에 추가 혜택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체계와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농업경영컨설팅 공급업체의 자격 및 등록기준 등을 정부에서 관리
  - 농업경영체가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분야를 적기에 컨설팅

## 라. 농업경영체 경영회생지원 보완

### □ 현황 및 문제점

- '03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대한 상설화된 부채경감대책으로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운영
  - 재해·가축질병·가격급락 등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에 대해 저리의 부채상환 자금을 융자 지원
  - \* '04년 지원기준 : 2,000억원 규모, 금리 3%, 3년거치 7년 상환
- 향후 농업법인 등 기업적 경영체를 중심으로 회생지원시 경영체의 경영능력평가 보완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

### □ 개선방안

- 회생 가능한 경영체를 선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 금융기관별로 대출기관, 보증기관 및 경영분석가 등을 포함
  - 운용 : 회생가능 여부, 경영체의 자구노력, 지원 소요액 등을 심사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지원대상 선정시 경영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 \* 협약 불이행시 지원 금액 회수 또는 추가 지원 중단 조치
- 회생이 불가능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퇴출 차원의 청산절차 이행
  - 퇴출을 조건으로 기존 채무의 상환연기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 농업관련 시설물의 유희화 방지 및 재활용을 위한 인수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운영



## 마. 농업법인에 대한 불리한 지원조건 정비

###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때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규정
- 농업법인의 사업영역이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곤란
  -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①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②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③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①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③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④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사업
    -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에 한정

### □ 개선방안

-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림사업실시규정 개정)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하는 규정 폐지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을 ‘조합원 5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를 완화(총 출자액의 25%이하 → 폐지)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기회 확충
  - 주말농원, 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자가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등 소득사업을 허용

## 바. 농업경영체 종사자에 대한 지원특례

### □ 현황 및 문제점

####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제한적으로 규정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업경영체는 임의가입 대상

	법인 사업장	개인 사업장
5인 이상	당연 가입	당연 가입
5인 미만	당연 가입	임의 가입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어 근로자 보호에 미흡

#### ○ 농업경영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시고용 근로자 포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경감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 건강·연금보험 : 1월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 건강·연금보험의 경우 농업인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일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 개선방안

#### ○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도 고용,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 포함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 농업경영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종사자에 대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허용 검토

#### ○ 농업경영체 종사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일정한 증명이 있는 경우 농업인으로 간주하여 건강·연금보험료 감면 혜택 부여 검토

### 1-3.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육성

- ◇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대응,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
-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기반구축,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
  - 제1차 5개년계획('01~'05)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제2차 5개년계획('06~'10) 수립
    - ('04년) 중간평가 → ('05년) 제2차 5개년계획 수립
  - 여성농업인단체·전문가·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상시 협의채널 유지 등 정책수행 인프라 구축
    -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연대 협력 강화
  
- 여성농업인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성 인지적 관점 (gender-sensitive)에서 농림사업 추진 유도
  -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제도 도입, 사업별 개선방향 제시
    - '04년 시범사업에 이어 '05년부터 본격 추진
  
- 농업내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 저연령층의 고학력 집단을 중심으로 경영적 마인드를 가진 핵심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
  - 여성농업인의 리더쉽 육성과 경영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
  - 여성농업인을 단순보조자 지위에서 탈피, 『전문직업인』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지위인정 방안 강구
  -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농업의 혁신과 지역사회 중심 역량화를 위해 농업관련위원회, 농협 등에 여성 참여 확대

## 1-3-1. 여성농업인정책 추진기반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01년부터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01~'05)을 수립·추진중
  - 제1차 계획은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응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 강화, 지위향상 촉진, 삶의 질 제고,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기반 구축에 초점
    - \* 여성농업인육성법령을 완비하여 5개년계획 추진을 뒷받침
      - 여성농어업인육성법('01.12),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02.7) 제정
-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
  -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사업 수행
    - 농림부, 농진청, 각 시·도, 농업연수부, 농협중앙회, 여성관련 단체 등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그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진단하여 변모된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정책 개발
  - 제1차 5개년계획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발전방안 모색
  -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차 5개년계획 시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질적 도약의 계기 마련
- 정책 중간평가와 제2차 5개년계획 시안 마련이 연계되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의 기본전략도 반영

## 다. 세부추진 내용

### □ 제1차 5개년계획 중간평가

- 목 적
  -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그동안 정책의 성과와 제한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 실시
- 사업기간 : '04. 8 ~ '05. 1월(5개월)
- 주요 연구내용
  - 정책 추진체계 및 자원분석, 평가지표 개발, 정책내용 분석, 총괄평가 및 핵심과제별 세부평가, 1차계획 후반기 추진방향 등

### □ 제2차 5개년('06~'10)계획(시안) 수립

- 목 적 : 그간의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위상 구현
- 시안 수립 방법 :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 실시
- 연구기간 : '05. 1 ~ 9월(9개월)
- 주요 연구내용
  - '06~'10년 기간 여건 전망, 정책요구 분석,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핵심 과제 및 과제별 추진계획 등
    - < 주요 정책방향 >
      - 여성농업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확대
      -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지위향상 촉진
      - 핵심 여성농업인 발굴 및 소득원 개발 지원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 \* 종합대책의 기본전략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시행과제 발굴
- 기본계획 확정('05.9~12월)
  - 2차 5개년계획 시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으로 확정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5개년계획 중간 평가('04)</li> <li>- 연구용역 완료</li> <li>○ 제2차 5개년계획 수립('05)</li> <li>- 시안 연구용역 완료 및 기본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li> </ul>

## 1-3-2.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제도 도입

###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토록 함
- 여성부 주관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제도 시행
  - '04년은 시범사업, '05년부터 전 중앙·지방행정기관으로 확대
- 정책, 프로그램, 법제에는 여전히 남녀 동등한 참여와 기회를 고려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요소 잔재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정책 입안단계부터 남녀균등한 정치·경제·사회적 이익과 책임을 공유하는데 있어 마이너스 영향을 축소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자율적으로 정책에 환류하고 혁신사례로 활용토록 유도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업내용
  - '04년은 “농업인력육성분야”를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용역 평가 실시
  - '05년부터 매년 1개분야 정책을 선정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개선되도록 유도

### 라. 추진일정

추진 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성별영향분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실시('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력육성분야 (연구용역)</li> </ul> </li> <li>○ 매년 1개분야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환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 전 영역으로 단계적 확대</li> </ul>

### 1-3-3. 농·소·정 협력사업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업인과 도시민간 상호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업인의 소비자 지향적으로 영농유도
- 도시 소비자의 농촌방문 등 체험·소비활동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도·농간 연계망 구축과 도시소비자와 농업인간 상호교류를 통한 적극적 “참여농정” 실현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문제점

- 가족단위·농업과 관련이 없는 직장인·각종 전문가 집단 등 참여 확대 필요
- 1회성 관광이나 방문으로 교류가 지속되지 않고, 방문지역도 대도시와 가까운 경기·충청 지역에 집중하는 문제 등 개선 필요
- 사업참여단체의 평가방식이 서류로만 이루어져 사업선정시 불만 야기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간 상호교류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 교류지역의 분산, 참여 계층 및 교류 유형이 다양하게 추진되도록 사업추진 단체 선정 시 사업평가결과 반영과 함께 선택과 집중방식 적용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업내용
  - 농업·농촌체험사업, 농업·농촌 바로알리기 사업,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 농촌지역을 위한 문화사업, 소비자 농업교육 등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지원조건 : 정액보조(자발적 Matching fund 투입단체는 선정 또는 자금배분에 우선권 부여)
- 지원내용 : 선정단체별로 평가 후 1억 이내 지원(신규지원 단체는 1천만원 이내)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 라. 추진일정

추진 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지원규모	○ 41개 단체 10억원	○ 매년 15억원	○ 매년 20억원 지원



## 1-4.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시장원리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곡수매제, 최저보장가격제, 원유가 결정시스템 개편

### (1) 추곡 수매제 개편 및 공공비축제도 도입

-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수매보조금 감소(연간 750억원)로 소득지지 효과가 크게 약화
  - 쌀 보조가능액(AMS)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경우 수매제도 유지가 사실상 곤란
  - 생산량 중 수매량 비중이 급격히 하락: ('94) 1,050만석, 30% → ('03) 521, 17
- 수매제도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
  - 적정재고 600만석 내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수준을 시가로 매입·방출
  - 공공비축 물량, 매입·방출방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 검토
    - \* '04년말까지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도입 근거 마련(11.9 국회제출)
- 수확기 쌀값 안정 및 소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소득안정장치도 대폭 보장
  - RPC의 수확기 원료벼 매입량을 유통량의 70% 수준(1,100만석)까지 확대('03:21%)하고, 부실 RPC 통합 등 경영개선 추진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개선·보완하고,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고정형직불과 변동형 직불로 개편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

## (2)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 개편

- 주요 채소류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현행 계약재배에 의한 최저가 수매방식에서 **계약재배 사업의 결손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
  -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하락(예시 : 평년가격의 85%이하)하는 경우 최소 허용보조(de-minimis) 범위 내에서 지원
  - '04~'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6년부터 품목별·단계별 제도 전환
    - 마늘은 '07년까지 수매제를 유지하고, '08년부터 도입
- 계약재배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 개선**
  -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03 : 11→'13 : 20%)하고, 계약재배 사업 주체도 산지농협 중심에서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 다양화

## (3) 원유수급 및 가격결정의 시장기능 강화

- 원유 수급안정을 위해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 조절토록 유도
  - 낙농진흥회의 원유 집유 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 체제로 전환**
  - 낙농진흥회는 낙농정보 수집·제공, 우유소비홍보 등의 기능으로 개편하거나 해산
- 원유가격은 생산자(또는 조직)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
  - \* 현재는 생산자와 유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일반 유업체는 이를 준용

## 1-4-1. 공공비축제 도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UR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수매보조금이 감축되어 수매물량이 줄어들어 소득지지 등 수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

\* 수매량 : ('95) 960만석 → ('00) 629 → ('03) 521

- 정부는 매년 양곡사업(국내산 수매, MMA수입등) 수행 등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

- 최근 재고 과잉으로 조작비 등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계절진폭이 낮아지는 등 양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재정 수요가 매년 증가

\* 양곡수매 사업지원(재정지원액)

('99) 1,828억원→('00) 2,066→('01) 3,570→('02) 5,297→('03) 10,078

#### □ 문제점

- DDA협상에서 큰폭의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매 물량 축소로 식량안보에 필요한 적정량의 비축도 어려울 전망

- 정부는 적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추진

\*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시가로 매입하고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도입시기, 비축물량, 매입·매출방법은 쌀협상 및 DDA협상 등을 감안하여 농민단체, 관계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 적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해 공급과잉 해소, 재고 감축을 추진
  - '05년까지 재고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수급균형을 회복
- 정부 기능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쌀 유통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
  - RPC활성화를 통해 수확기 매입물량을 생산량의 40%('03년 21%) 수준으로 확대

## 다.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 공공비축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05)
- 수매중심의 양곡관리법을 공공비축제와 민간유통기능 중심으로 개편추진('05)

\* 공공비축제 도입근거 마련 등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04.11.9)

## 1-4-2. 채소계약재배안정화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채소류의 수급 및 농가소득안정, 산지농협 판매능력 강화를 위해 채소류수급안정사업 도입(노지채소 '95년, 시설채소 '01년)
  - 사업자금 : 농안기금(80%), 농협(20%) 공동 조성
  - '04년 사업비 : 8,022억원(농안기금 5,917, 농특 500, 농협 1,605)
- 최저보장가격제도는 계약재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98년부터 도입
  - 최저보장가격을 사전에 예시하고, 가격폭락시 계약물량을 대상으로 수매·폐기 실시
  - 최저가격 결정은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경영안정측면과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 문제점

- 최저보장가격제도는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문제, 외국농산물의 수입유발문제 등 부작용 초래로 제도전환 불가피
  - 앞으로 개방이 확대될 경우 최저보장가격제도에 의한 시장가격지지는 의미 상실
    - 개방체제의 진전으로 수입산의 국내시장 점유비중이 커져 수입가격이 국내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최저보장가격을 최저소득보장가격으로 인식하여 무리한 인상요구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 협상타결에 따른 관세 추가인하 및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하여 채소류에 대한 피해예상
  - 특히 마늘, 고추, 양파 등 고율관세 품목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현행 계약재배에 의한 최저보장가격 수매·폐기방식에서 계약재배사업의 결손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
  - 도상연습, 시범사업 등 사전준비 철저와 농업인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등으로 제도 조기정착
  - 농가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 등 검토

## 다. 세부추진내용

### □ 기본 개편방향

- 채소류 생산·유통 등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도록 정부주도의 가격지지정책을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현행 계약재배에 의한 최저보장가격 수매·폐기방식에서 계약재배사업의 결손 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
  -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하락(기준가격의 85%이하)하는 경우 정부가 계약재배 주체의 손실 중 일부지원
- 농가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밭농업직불제 도입 등 검토
  - 점진적 가격하락과 구조조정에 대비, 다양한 직불제 도입추진
- 철저한 사전준비와 농업인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등으로 제도 조기정착
  - '04년 하반기~'05년 : 도상연습, 시범사업, 지역토론회 등 실시
  - '06년부터 : 문제점이 없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 계약재배안정화사업 시행방안

- 사업주체와 농가간에 계약가격에 따라 사업추진 후 先정산
- 사업주체에서 시장가격이 정부지원 발동요건에 충족시 농협중앙회에 지원금 신청(중앙회는 현지 확인후 농림부에 신청)
  - 정부지원발동요건 : 농가와 사업주체간 계약재배사업 물량의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85% 이하로 하락시 정부지원이 발동되며, 기준가격 85%와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80%를 지원
    - 손실금액 : (기준가격의 85% - 시장가격)×80%×출하물량
  - 산출주기 : 품목별 주출하기 순별로 작성
  - 근거자료 : 사업주체의 전산자료(일일 출하물량 및 가격자료)
    - \* 기준가격 : 최근 5년간 공영도매시장 상품 평년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
    - \* 시장가격 : 당년도 공영도매시장 주출하기 상품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
- 정부지원 대상물량 :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중 출하된 물량
- 정부지원액 사용 : 손실이 발생한 적립금 또는 자체 충당금 보전
- 손실보전대상기간 : 품목별 성출하기에 한하여 손실보전
  - 무·배추 : 봄 5~6월, 고랭지7~10, 가을10~12, 월동12~익년 3월
  - 양념채소 : 양파 4~7월, 마늘 5~8, 고추 8~10월 등

## □ 생산과잉시 산지폐기 등 보완대책

- 계약재배사업 적립금을 활용하여 농협 자체적으로 산지폐기 추진
  - 농협과 품목별 사단법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산지폐기(1단계)
- 유통협약·유통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수급조절 추진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협약·명령제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2단계)

## □ 금후추진계획

- 계약재배 안정화사업 도상연습('04~'05)
  - 대상품목 : 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 도상연습 결과를 반영하여 시범사업('05~'06)
  - 대상품목 : 무·배추, 고추, 양파, 대파, 당근
  - 예산 : 출하조절사업자금
- 지역토론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 병행추진
  - 주기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
- 농가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밭농업직불제 도입 등 검토
  - 점진적 가격하락과 구조조정에 대비, 다양한 직불제 도입추진
- 시범사업 및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재배안정화사업」 시행('06년)
  - '06년 신규 예산확보(농안기금)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품목별·단계별로 추진
    - 마늘은 '07년까지 수매제 유지로 '08년부터 도입

### 《외국사례》

- 미국 : 농작물담보융자제도(Marketing Loan)
  - 농작물을 담보로 융자지원하고, 시장가격이 용자가격(단가)보다 낮을 경우 시장가격으로 용자금 상환
- 일본 : 지정야채가격안정사업
  - 기준연도(과거 9년) 평균가격의 90%를 기준으로 실판매가격이 이를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가격보전기금에서 지원
  - \* 가격보전기금 분담비율 : 정부 60%, 지자체 20, 출하단체 20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계약재배안정화 사업	○ 연구용역('04) ○ 도상연습 실시 ○ 관련 생산자단체 등 의견수렴 ○ 시범사업 실시('05)	○ 계약재배안정화 사업시행('06)	○ 사업 정착



### 1-4-3.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와 일반유업체에서 전량 집유
  - 진흥회는 집유조합 등을 통해 원유를 집유하여 유업체에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분유로 제조·판매
  - 일반유업체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직접 집유
- 낙농진흥회 참여 농가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정
  - \* 가격산출 : 기본가격(502원) + 체세포 5등급 + 세균수 5등급 + 유지방율 15등급
  - 일반유업체는 낙농가대표와 협의하여 자율 결정(진흥회 가격 준용)
- 원유 기본가격은 유지하되, 잉여원유에 대한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하
  - ① '02.11.1 이전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집유 및 전량 높은 가격 보장
  - ② '02.11.1 이후 :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시행
    - 기준원유량(유업체 계약량) 정상유대(620원) + 기준원유량의 6% 정상유대 + 기준원유량의 11%는 정상유대의 70%(434원) + 초과량은 수입가격(200원)
    - \* 일반유업체 : 평균 9% 수준의 감산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량에 대해 정상유대의 50% 또는 분유 지급
  - ③ '03.7.16 : 원유 생산감축대책 시행
    - 농가별 9% 감산하여 감축후생산목표량 부여(잉여원유 차등가격) + 감축후생산목표 초과량(분유 지급)

##### □ 문제점

- '98년 기본가격 결정후 생산비가 5% 이상 변동하였으나, 낙농가의 반대로 한번도 조정하지 못함(평균가격 620원/kg, 생산비 445원)
- 유지방 등급간 가격차가 커서 불필요하게 생산비가 증가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시유는 유통문제 등으로 경쟁력이 있으나, 유제품은 생산비가 높아 DDA 이후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원유가격결정시스템을 시장수급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원유 집유체계의 직결체제 전환시 합리적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탄력적 원유가격 적용 도모

## 다. 세부 추진내용

- 낙농가와 유업체의 직결체제 전환을 통해 수급조절체제의 효율성 제고
  - 직결체제 전환에 대한 공론화 추진 및 의견수렴
    -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개최, 낙농가 및 유업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등
  - 직결체제 전환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낙농가, 유업체, 집유조합 등)간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집유선 전환
    - 근거리 공장 원칙에 의해 집유선을 조정, 진흥회 물량(농가)를 일괄 이관 추진
    - 계약공급량을 초과하는 이관물량에 대하여는 유업체에 일정 기간 차액보전
- 원유가격은 생산자(또는 조직)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
  - 원유 직결체제 추진과 병행하여 수급상황에 따라 유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원유가격 결정산식 개발

-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이해 당사자간 합의시스템 구축
  - 낙농가, 유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전년도 기준가격과 생산비 변동수준 및 경제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조정안 도출
  - 조정안을 토대로 낙농가 및 유업체가 합의안을 도출토록 유도
- 체세포·세균수·유지방 등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으로 유질 개선 및 위생수준 제고
  - 체세포 하위등급(4,5등급)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세균수 하위등급(3,4등급)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유지방률 구간 및 구간간 가격차 축소 조정
    - 현행 15개등급 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15→10→5→3)
    - 유지방의 가격비중을 낮추고 등급구간간 가격차 축소 조정
    - 유지방에서 제외된 가격효과를 체세포 상위등급에 반영

#### 4.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개선	○ 원유 직결체제 전환 추진 ○ 원유가격 결정 시스템 개선 검토	○ 체세포·세균수·유지방 등 원유 가격 산정 체계 개선	

## 1-5. 시대 변화에 맞게 농지제도를 혁신

◇ 농정환경변화를 반영,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 개선을 추진

□ 규모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

○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

\* 현재 농지법시행('96) 이후 취득한 농지는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 허용

○ 상속받은 농지, 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1ha 미만 소유 제한은 유지하되,

-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안에서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

- 농업인출자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대표이사 및 집행이사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을 폐지

\*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규모는 현행 300평을 유지하되, 농업인의 정의 개편 등을 고려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완화
  - 중장기적으로 식량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적정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농업진흥지역은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중심으로 조정
    - 농업진흥지역 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보전
  
-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을 현행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영농규모화 재원 등으로 활용
  
- 농지가격 하락, 농지매도 및 임대 수요 증가 등 농지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고령 등으로 이농·탈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은퇴 및 전업을 지원
  -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농가에 장기간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

◇ 농지제도 개편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농정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개선

## 1-5-1. 농지 소유와 이용 규제 완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헌법상 경자유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자경하도록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제한
- '02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당 1,000㎡미만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농지의 임대차 및 휴경은 금지

#### □ 문제점

-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이 낮고 임대차와 휴경이 금지되어 있어 도시자본의 유입과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한계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WTO/DDA, 쌀 협상 등 농업 개방이 본격화
  - 쌀과 양념류 등 고관세 작물의 재배면적 축소가 불가피
- 지방화시대, 주5일 근무제의 도래로 도·농 균형발전과 농촌을 찾는 여가 수요가 크게 확대
  - 농촌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기초로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로 촉진

## □ 추진 방향

-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개선 필요
  -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과도한 소유제한과 농업생산에 한정된 농지이용제도의 문제점 보완
  - 식량공급·환경보전·균형발전 등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고려

## 다. 세부추진내용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취득 허용
  - 대표이사와 집행이사 1/2이상 농업인 요건 및 총출자액중 농업인출자 지분 1/2 초과 요건 폐지
    -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설립하고,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3/4이내에서 출자 가능
-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한 특화사업자에 대해 특구토지 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 취득 및 소유 허용
  - 지역특화발전특구(농업특구)의 지정목적 실현을 위해 농지 소유규제 폐지
  - 농업특구에서 특화사업자가 경작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는 취득 및 소유가 제한됨
    - 지역특구 안에서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농지는 특화사업자가 취득 가능
-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경우 상속·이농 농지소유상한의 예외 허용
  - 상속농지·이농후 계속소유 농지의 소유상한(1ha)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규모화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

□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임대 허용

○ 현재 '96년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약 50만ha)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 금지

\* '96년 농지법 시행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제한없이 임대 허용

○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임차료 안정 및 영농규모화 촉진

※ 농업생산성과 농지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헌법에 부합**

\* 헌법 제121조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소유상한(세대당 1,000㎡ 미만)확대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등 농업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1,000㎡ 이상 경작)와 연계하여 장기과제로 검토

□ 과도하게 엄격한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절차와 내용을 보완하는 등 취득농지 사후관리 완화

○ 처분통지를 받고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매도위탁한 경우 3년간 처분명령 유예

\* 지금까지 미처분시 즉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시까지 매년 부과

□ 중장기적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를 완화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이후)
농지제도 개선	농지제도 연구 및 토론회	농지제도 개선방안 마련('04상반기) 농지법 개정·시행('05년)	



## 1-5-2. 적정농지의 보전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03 국토연구원 용역결과('20년 적정농지면적 1,445천ha)와 통일을 대비한 농지소요 면적을 감안 적정농지면적 160만ha를 보전
  - 제4차 국토종합계획('00~'20)에서 2020년 적정농지면적을 170만ha로 전망
-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 보전정책을 유지
- 최근 5년간 농지감소면적은 연간 평균 12.2천ha
  - 전용허가권이 전부 지자체로 위임된 '95-'96년에는 농지가 크게 감소

구 분	'92	'95	'96	'98	'99	2000	2001	2002	2003
농지면적	2,070	1,985	1,945	1,910	1,899	1,889	1,876	1,863	1,846
전년대비	△14	△48	△40	△14	△11	△10	△13	△14	△18

#### □ 문 제 점

- 농업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적정농지면적의 재설정 필요
  -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및 통일대비 등 현재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20년 적정농지면적은 1,455~1,600천ha 수준으로 추정
- 농업진흥내 신규 경지정리 중단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 여건 변화를 감안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이 요구
- 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 세분화시 적정한 면적이 생산보전관리지역에 편입되도록 할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농작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예상되는 유휴농지의 증가 및 여건 변화를 감안한 진흥지역제도 및 전용제도 등에 대한 개선 요구를 수용하면서 식량생산과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를 추진

### □ 추진방향

-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및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농지 보전

\*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적정농지를 보전

## 다. 세부추진내용

### □ 적정농지면적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등을 재조정

- 적정농지는 진흥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진흥구역을 재조정하고, 보호구역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조정
- 진흥지역해제 농지와 진흥지역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관리

### □ 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 강화

- 논직불금 차등지원, 농지보전직불금 지원 등으로 규제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상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고, 하고, 진흥지역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규모화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구획 정리, 용·배수 개선 등 생산기반 확충 우선 지원
- 논직불금 차등지원 확대 등 정책적 지원 강화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3)	2단계('04~'05)	3단계('06이후)
농지제도 개선	농지제도 연구 및 토론회	농지제도 개선방안 마련('04상반기) 농지법 개정·시행('05년)	농지지원확대('07)

### 1-5-3. 농지전용제도의 혁신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기반정비 및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는 완화
  - 진흥지역안 농지 : 1,062천ha(58%), 진흥지역밖 농지 : 784천ha(42%)
-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농지개량 행위만 허용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오염물질배출시설,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공장(1천㎡이상), 공동주택(2천㎡이상) 등은 금지
- 도시지역 등 개발용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농업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제한제도 운영
-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 농지조성비 부과
  - 전용하는 농지의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10,300원~21,900원/㎡ 차등부과

##### □ 문제점

-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조정문제 대두
  - '94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농업환경 변화로 지정목적 상실했거나 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조정 필요
-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 list)을 적용하는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내용의 불합리
  - 축사·목욕탕·공장(1,000㎡이하)이 허용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금지되는 휴게음식점(500㎡미만)도 허용
- 현행 농지조성비는 농지기반투자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농지가격이 낮은 지역의 부담이 오히려 과중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지방화시대, 주5일 근무제, 국민연금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촌을 찾는 여가수요가 크게 확대
- 국토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농지관리체계를 국토관리 체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

### □ 추진방향

-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농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완화
  - 농업진흥지역에 소득 및 편의 증대시설을 허용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제한을 완화
  - 농촌투자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농지조성비 제도 개선

## 다. 세부추진내용

### □ 농지조성비제도를 개편하여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대도시 근교의 농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촌투자 재원으로 활용

- 농지조성비 명칭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과 기준을 농지조성 원가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편

\* 현행 : 10,300원/m<sup>2</sup>(기타농지) ~ 21,900원/m<sup>2</sup>(경지정리·용수개발이 된 논)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조성자금 외에 영농규모화사업지원, 농지비축자금 등으로 용도를 확대

\* 시행 중인 농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매입 재원으로 활용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조정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편의 증대, 농업보호구역의 농업환경 보호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농지개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 금지하였으나

⇒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의 증대 시설 허용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시설·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였으나

⇒ 행위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

○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설치 확대

\*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 (현행) 폐수배출시설 금지 →  
(개선) 기준이하 폐수배출시설 허용

○ 농업인의 공동편의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여 농업인단체 (농협 등)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추가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전용 제한을 시설별 면적기준에서 시설 기준으로 전환하여 농촌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뒷받침

○ 현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설별 면적기준에 따라 전용 제한

-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난개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농지법상 별도의 시설 및 면적제한으로 난개발 방지

- 개편된 국토이용체계에서는 난개발시설의 시설제한이 강화되어 농지법에서 면적을 제한할 실익이 감소

\*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 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시설, 일반공장 등 난개발 시설의 개별건축을 제한

○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상 생산(보전)관리지역내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중 농지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은 추가로 전용을 제한

\*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을 유지하고, 전용허가시 농지 및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전용심사기준 보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3)	2단계('04~'05)	3단계('06이후)
농지제도 개선	농지제도 연구 및 토론회	농지제도 개선방안 마련('04상반기) 농지법 개정·시행('05년)	

## 1-5-4. 농지 종합관리기능 도입(농지은행)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DDA협상·쌀 협상 등 개방확대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및 수급불안 등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의 도입을 추진
  -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 발표 ('04.2)
  - 농지은행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04.6~9)
  - 농지은행 T/F를 구성, 사업별 세부 시행방안 논의 ('04.5~ )
- 농업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채농가의 경영희생지원, 영세·고령농의 이·탈농 지원대책 등도 강구
- 연구용역 결과 및 T/F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농지은행 도입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 수립('04.11)
-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 등 관련법 개정추진 ('04.1~ )

#### □ 문제점

- 농지시장 급변 및 유동성 증가에 대비,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가 필요
- 농지은행사업과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의 유사기능을 감안, 농업구조개선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농지은행은 농지시장안정보다 농업구조개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할 전망
- 장기적으로 농지은행은 신규 창업농의 정착지원, 농지총량 관리 및 공공비축 등 농지 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

## 다. 세부 추진계획

-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①농지의 매입·비축 ②농지의 수탁관리(매매·임대차) ③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④농지유동화정보관리 기능도 도입
- 농지은행기능의 도입시기는 개정 농지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05. 7.1부터 농지유동화정보관리·농지수탁관리 기능을 우선 도입하고, 농지매입·비축기능은 '06년부터 도입
- 농지은행의 운영은 재정부담 최소화 및 조직·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 당분간 기존 규모화사업조직인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 추후 사업량 확대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담당기관 확대 검토
- 농지은행 재원으로 119조 투융자계획에 의한 농지관리기금 출연금과 농지수탁관리(매도·임대)수수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농지보전부담금의 활용도 검토

- 농지은행사업과 기존 영농규모화사업과의 통합 추진
  - 농지은행의 핵심기능인 구조개선사업과 기존 영농규모화사업과의 유사성을 감안, 당분간 두 사업을 병행 추진하되, '07년경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적인 통합방안 수립
  - 농지은행과 영농규모화사업의 통합시 총 가용재원은 약 7조 5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영농규모화사업에 '10년까지 4조원 반영(6ha 7만호 육성)
- 농지은행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 개정
  - 농지은행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관련 규정의 개정도 병행 추진

<참고: 농지은행 주요기능>

- 농지유통화 정보관리기능
  - 농지유통화 포털사이트 구축 등 전업농의 영농규모화·집단지 축진을 위해 다양한 농지유통정보를 제공, 분석하여 농지유통화 및 농지 매매, 임대 등 거래를 활성화
    - \* '10년 6ha규모 7만호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 농지가격에 대한 시황 및 시세변동 추이분석 등 농지가격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여 농지은행 사업의 기초 정보로 활용
  - 농지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감안, 조사가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존의 농지가격 조사표본 필지수의 확대 추진

○ 농지수탁(임대차·사용대차)관리기능

- 농지수탁 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소유농지를 임대·사용 임대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농업법인 등에 장기임대하여 영농규모화를 촉진
- 전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임대기간 5년이상 보장, 임차료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
- 매도수탁 사업은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매입자를 구할 수 없는 농업인의 매도농지를 중개

○ 농지매입·비축기능

- 매입대상 지역은 전업농의 규모화 촉진 및 시장안정을 위해 진흥지역내 농지를 우선 매입하되, 필요시 진흥지역 밖으로 확대하고, 매입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을 활용
- 매입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복귀자 등에 우선적으로 매도 또는 장기 임대하여 영농규모화를 지원
- 매입사업 기능으로 농지가격 지속 하락시 농지시장안정을 위한 농지매입, 부채농가 경영회생을 지원 농지매입(5년 이상 재임대 및 환매권보장), 이·탈농 지원 등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영세·고령농 농지 매입, 대규모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간척농지 매입사업 등을 추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7)	3단계('08~)
○ 농지은행제도 도입시행	○ 세부도입방안 수립 ○ 관련법개정 ○ 정보관리 및 농지 수탁기능 도입('05)	○ 농지매입기능도입('06) ○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사업 도입 ○ 농지은행사업평가('07)	○ 영농규모화사업과 통합추진('08) ○ 기능확대 검토('08)

## 1-6. 수익자 위주의 선진농업금융제도로 개편

- ◇ 정책자금은 대출기관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서 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일원화
- ◇ 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단계적 개편

-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단계적 통합
  - '07년까지 운영자금 성격의 50%를 종합자금으로 전환('13년까지 완료)
    - 대상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구매선도금·배합사료원료 구입 등 회전자금
  - 회계교육, 장부기록 등을 유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 대출심사시 경영장부제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추진
- 농특회계 용자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농특회계 관리기관을 독립·운영하고, 정책자금 취급에 경쟁체제를 도입
  - (가칭)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하여 농특회계 용자금에 대한 검사·감독체계를 강화
    - \* 설립위원회 및 설립사무국을 구성, 실무작업 완료 후 별도법인 출범('04)
  - 점포수 및 점포분포도, 유사상품 취급경험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중은행에 취급권한 부여
    - 운영자금 등 단순히 금융기관을 경유해 지원되는 자금부터 개방
      - \* '05년 : RPC 운영자금, 가축계열화 사업, '06년이후 : 농기계 구입자금 등
  - 농신보 보증제도를 개편, 시중은행에도 보증 허용

- 개방체제의 진전 등에 따른 부실농업 경영체 증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워크아웃시스템 구축
- 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04년부터 「경영회생지원제」 상설화
  - \* 운영규모 : 2,000억원, 금리 : 3%,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
- 회생이 어려운 농가는 파산신청,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퇴출이 되도록 「농가파산제」 도입을 검토
- 농업수익성·투자회임기간 등을 고려,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
  - 고정금리 방식에서 시중 CD금리 또는 국고채 금리의 일정 수준 이하로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전환 ('05)
    - 조기상환자에 대한 금리할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상환 유도
  - 거치 및 상환기간도 자본회임기간, 내구연수 등을 반영하여 장기화(예 : 현행 10년 수준에서 20년 이상)
-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및 자구노력 강화로 신용보증여력 확충
    - 금융기관 출연율 인상, 여유자금 운용 다양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부분보증제 책임제를 확대하여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 \* 부분 보증율 : (현재) 10% → (개선) 30%

## 1-6-1. 농업종합자금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금융기관의 심사·평가를 통해 경영능력과 사업성이 인정되는 농업 경영체에 대해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수요에 의거 자금 지원

(단위 : 억원)

연 도	'00	'01	'02	'03	'04.10
농특회계	1,285	2,053	1,478	1,065	1,158
농협융자	320	370	4,765	3,458	4,765
합 계	1,605	2,423	6,243	4,523	5,923

- 1999년 축산·시설원예부문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이후 연차적으로 24개 사업을 통합, 시설, 개보수, 운전,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나눠 지원

2000	2002	2003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농육성지원자금</li> <li>▪ 원예특작생산유통 지원자금</li> <li>▪ 축종별경쟁력강화 자금</li> <li>▪ 축산단지 조성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업 경영자금</li> <li>▪ 전업축산 경영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지원</li> <li>▪ 관광농원개발</li> <li>▪ 농촌민박마을 조성</li> <li>▪ 농기계구입자금 (대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농업인육성자금 (신규후계농업인)</li> <li>▪ 농기계 구입자금(중형)</li> <li>▪ 농기계생산지원자금</li> <li>▪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자금</li> <li>▪ 객토사업 자금</li> </ul>

- 사업계획대비 매출이익실현률이 80%이상인 우수 및 양호 경영체가 이 자금을 이용하는 비율이 73.4%이고, 사업부진 경영체는 26.6% 수준으로 사업상태가 전년보다 2.8%P 개선

## □ 문제점

- 정책자금의 대부분이 아직도 행정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시스템이 지속
- 농업인의 경영관리 능력 취약, 회계기록 작성 미흡 등으로 사업계획 수립상 애로요인 상존
- 농업금융기관의 대출심사·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심사 인력 육성 및 대출심사기법 개선노력 미흡
  - 특히, 농신보 보증 등으로 심사능력 제고를 위한 유인도 저조
- 단기 운전자금 대출비중이 높고, 농업종합자금으로의 자금 통합으로 기존의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축소

## 나. 향후 전망 및 방향

- 자금지원전에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자금 지원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자금제의 수요는 더 커질 전망
-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종합자금제로 통합하되, 사업심사·평가능력 제고 등을 통해 적격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다. 세부추진내용

- 경영체에 대한 융자지원방식 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연차별 통합

-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자금을 중심으로 통합하되,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해당재원을 회계로 전입받아 통합가능
  - 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 등 다수의 이해와 직결된 공공적 성격의 사업 보조 및 보조·융자혼합사업 등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합자금 방식의 평가·심사 시스템을 벤치마킹
- 농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자금이용에 따르는 농가 불편사항 해소
- 준전업농(미작기준 2ha 이상농가)이상 농가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한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 지원규모 설정
  - 제출서류는 지원자금의 성격이나 규모에 맞게 차별화하고, 중복되는 서류는 단일화하고, 대출기관의 대행서비스 강화
  - 회계기록 제출대상자 현실화 및 회계교육이수증 제출은 폐지
- 심사전문인력 양성, 효과적인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한 대출심사 평가의 객관성제고
- 품목별·경영체별 경영능력 평가를 위한 전문심사인력 배치 및 EVA분석 등 분석기법 개발 및 관리체계의 전산화 추진
    - 영농경력, 출하방법, 거주기간 이외에 지식노하우 수준, 마케팅 능력, 재배기술 수준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
  - 비재무평점에 비해 낮은 재무평점의 비중을 높이고 재무제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 회계기관 지정 검토



□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기록 대행, 경영컨설팅 등으로 농가 경영 관리의 종합지원

○ 농업기술센터, 회계법인, 민간 컨설팅회사 등 전문기관에서 경영기록을 대행하여 작성·제출하고 경영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수행

- 농가는 영수증 등 경영기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경영기록은 대출심사시에 가점부여 하고, 사후 경영관리시에는 작성·제출의 의무화

- 부기자격증 소지자등 회계교육 이수자는 대출심사시 가점으로만 활용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 )
◇ 용자사업의 종합 자금으로 통합	○ 자금통합 기본방안마련 ○ 농기계 구입자금(1~2천만원)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자금 통합	○ 미통합된 농특회계 자금 통합 추진	○ 기금 및 타 재원 사업통합
◇ 자금지원 대상 및 규모 조정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하여 농어민의 책임경영 유도	
◇ 농가불편사항 해소		○ 제출서류 간소화 - 재무제표 제출농가를 총부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 - 회계교육 이수증 제출폐지 - 등기부등본 등 인터넷 발급서류 농협이 대행	
◇ 심사체제 등 관련제도 개선	○ 대출심사기법 개발 및 관리체계의 전산화	○ 재무평점의 강화	
◇ 농가경영관리 종합지원			○ 유사자금 통합 완료

## 1-6-2.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영농기에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원활한 농업경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일반농업경영자금(쌀), 전문농업경영자금(원예특작), 일반축산경영자금(축산), 재해대책경영자금(재해시 특별지원)으로 구분·운용
  - 수확기 쌀홍수출하 완화 및 쌀값안정 등을 위해 쌀농가에 지원되는 일반농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을 조정(3~12월 → 1년)

#### □ 문제점

- 신용불량여부 파악과 같은 기본적인 대출심사만을 거쳐 무보증 신용대출로 지원
  -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심사가 부족하여 대손보전기금을 통한 대손보전액의 상당부분을 농축산 경영자금이 차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점차적인 농가수 감소로 자금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융자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대출심사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장기적으로 농업종합자금으로의 통합을 검토

#### 다. 세부추진내용

- 지원대상자별 경지면적 등 경영비 산출 근거자료를 수집, 경영비에 근거한 자금의 차등지원 방안 강구
- 대출심사기능을 강화
  - 부분보증제 도입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능 강화를 검토
- 농가수의 연평균 감소율을 감안하여 용자규모를 축소
  - 감축분만큼 직불금 또는 농업종합자금 확대를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단계
제도 정비	대출심사기능 강화 방안 마련	점진적인 용자규모 축소 종합자금으로 단계별 통합

### 1-6-3. 정책자금 취급금융기관 확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업정책자금은 개별법령, 훈령 및 사업시행지침서 등에 의거하여  
농협 및 산림조합 등 주로 생산자단체를 통해 지원
  - 농협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규모('03말) : 13조 3,500억원

##### □ 문제점

- 정책금융 취급이 농협에 편중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질 및  
정책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
  - \* 학계 및 금융계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업금융개혁위원회」는  
취급기관의 다원화 필요성 건의('00.11)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금융시장의 규모화, 대형화 및 자금수요 부족으로 인한 저금리  
추세 등으로 농업정책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정책자금의  
조달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전망
- 향후, 농업정책자금시장 개방을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Road-map)을  
작성하되, 개방이 용이한 자금부터 단계적으로 일반시중은행에 개방

## 다. 세부추진 내용

### □ 연구용역 결과(요약)

#### ○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의 선정기준 등

- 전국규모의 영업망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①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②농업정책금융 전문성, ③정책금융 수요자의 편의성, ④정부예산의 절약가능성 등으로 함
-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금융기관과 일반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이들 금융기관간의 취급업무와 한도 등에 차이를 둠

\* 취급금융기관간 경쟁유도 및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 ○ 농업정책금융의 개방기준 및 순서

-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전업농에 대한 지원자금, 단기운영자금, 대출 평균금액이 큰 자금, 농업인의 개방수요가 많은 자금부터 우선 추진

### □ 축산발전기금 취급금융기관 개방추진

#### ○ 축발기금 용자사업 중 취급기관 다원화의 효과가 크고, 가금 산업과 직접 연관된 사업을 우선개방

- 가축계열화사업, LPC경영안정자금, 축산관련경영안정자금 등 3개 사업

#### ○ 대출 취급기관

- 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축발기금의 대출을 취급하기 희망하는 금융기관

#### ○ 자금대여 등 관리업무 수행기관

- 축발기금 위탁관리자인 농협중앙회 축발기금사무국이며 취급금융 기관과 대여약정계약 체결

## □ 향후 추진 계획

- 개방대상 자금은 회계, 기금 등 원칙적으로 농업정책자금 전부를 대상으로 함

\* (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기금) 촉발기금, 농안기금, 농지기금, FTA기금

- 정책자금 개방은 개방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추진

- 1단계로 규모가 큰 자금, 취급 전문성이 낮은 자금, 비교적 단기자금, 개방 수요가 큰 자금을 우선적으로 개방

\* 우선개방 대상(예시) : RPC운영자금(농특회계), 농축산경영자금(재특회계), 축산물 판매시설현대화, 축산물생산유통지원(촉발기금)

- 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취급수수료 등 취급 조건으로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

\* 선정시 고려사항 : 취급수수료,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농업정책금융의 취급의지·전문성, 공익 목적의 사업수행 경험, 수요자의 편의성, 정부예산의 절약가능성 등

-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금융기관과 일반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취급업무와 한도 등을 차별화하는 등 금융기관간 경쟁 유도

- 정책자금 관리조직 기능강화 및 제도정비

- 농특회계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향후 모든 정책자금의 대여 및 관리·감독업무 수행

\* 금융기관 선정관련 업무, 계약당사자로서의 역할, 사후관리 업무, 이차보전을 위한 기준금리 산정 및 취급수수료 지급 등

○ 취급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신용보증제도 보완 등 제도정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기관을 신규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으로 확대

\* 현 대상기관: 농·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농림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칙(재경부) 등 관련규정 정비

라. 세부 추진일정

1단계('04)	2단계('05~'07)	3단계('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추진</li> <li>○ 축발기금의 일부사업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계열화사업 등 3개사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차보전대상사업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C운영자금</li> <li>- 농기계구입자금</li> <li>- 농업종합자금</li> <li>- 농축산경영자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개방</li> </ul>

## 1-6-4. 농신보 및 대손보전기금 건전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로 농림수산업자가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지원

- \* 보증대상자 : 농어업인, 농림수산업 관련단체 및 법인
- \* 보증대상자금 : 농림수산업 관련자금(생산, 유통, 가공)
- \* 신용보증 취급금융기관 :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와 일선조합, 농산물유통공사

#### < 연도별 기금출연액 >

(단위 : 억원)

년 도	'02까지	'03	'04	'05(P)
금 액	15,334	1,000	3,478	4,000

-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정책자금 대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대손보전기금 설치·운영

- \* 기금출연 : 농특회계 및 농안기금의 융자금 취급수수료 중 0.5%p 해당액
- \* 출연기관 : 농·수협 및 산림조합
- \* 대상자금 : 농림수산정책자금(축발기금과 농신보보증대출 제외)
- \* 관련근거 : 농림부훈령 제807호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95.1.1)



## <대손보전기금 운용현황>

(단위 : 억원)

	'00이전	'01	'02	'03	'04.7월말	계
○ 기금조성	1,649	486	394	360	156	3,045
- 기금출연	1,406	430	346	304	136	2,622
- 채권회수	4	6	7	20	12	49
- 운용수익	239	50	41	36	8	374
○ 기금운용	787	374	416	602	365	2,544
- 대손보전	695	361	403	587	343	2,389
- 사업비용	92	13	13	15	22	155
○ 기금잔액	862	974	952	710	501	-
○ 구상채권잔액	688	1,043	1,439	2,005	2,337	-

### □ 문제점

- 농신보 운영과정에서 일반신보, 기술신보 등과 같은 경영·기술평가, 신용평가 정보수집 기능이 취약하고, 보증확대로 인한 보증여력 감소 및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 등 제도개선 시급
- 대손보전기금의 경우 농특회계융자금 규모축소로 기금출연은 감소하는 반면, 부채대책 등에 따른 대손보전은 매년 증가하여 기금잔액 감소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부채대책에 대한 보증잔액 급증등으로 대위변제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기금부족이 심화될 전망
- 농신보 및 대손보전기금의 건전한 운영으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신용경색 예방

## 다. 세부추진 내용

### (1) 농신보 운영 개선을 통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 대출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분보증제를 확대('05부터)하고 부분보증비율도 강화

○ 대상자금 확대 : (현행) 비농업인의 모든자금, 농업인의 일반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인 정책자금중 직접보증분

\* 재해대책자금 및 농어업인의 30백만원 이하인 자금은 제외

□ 농신보의 자구노력 강화를 통한 자체수입 및 정부출연 확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방법 다양화로 운용 효율성 제고

○ 위탁보증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인하 및 구상권회수율 제고

- 수수료 인하 : (현행) 보증료의 20% → (개선안) 10%

- 구상권회수율제고 : ('03말) 8.8% → ('07까지) 15%이상으로 증대

#### < '03말 타신보 구상권 회수율 >

구 분	신 보	기술신보	주택신보	농 신 보
회수율(%)	26.6	26.8	16.3	8.8

○ 위탁보증제도 개선(예시 : 5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다만, 위탁보증 기준금액을 낮출 경우 소요인력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가 예상됨으로 금액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

○ 아울러 금융기관 출연을 상향 및 정부출연 지속 방안 등을 농신보 관리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출연율 : 농·수협 출연기준대출금 평잔의 0.2%('03년 321억원 출연)

- 비재무평가 항목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증 심사업무의 효율성, 보증지원 결정의 합리성 제고
  - 기초자료 수집, 모델개발 및 신용정보 D/B구축 등
    - '05부터 연구용역 추진 등 개발 착수

## (2) 대손보전기금의 안정성 확보 대책 추진

- 자구노력을 통한 기금확충방안 추진('05부터)
  - 상환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보전 제외 등 이자보전범위 축소
  - 기금규모를 감안할 때 한도없이 대손보전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동일인당 대손보전 최고한도 설정
  - 대출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분대손보전 대상 및 비율 확대
    - 현행 : 대출일 현재 대손보전대상대출금 총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규대출금
  - 금융기관과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채권추심 업무를 자산관리회사로 일원화하여 실효성 확보
- 기금출연 대상자금 확대 및 보전대상 제한을 통한 기금확충
  - 기금출연 없이 대손보전 받는 자금에 대한 기금출연 확대추진
    - 보전대상자금 중 미출연 자금 : 재특회계자금, 금융기관 조달자금(이자보전대상자금)
  - 기금출연 없는 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손보전에서 제외
  - 정책자금 대출시 대상자 심사의 정밀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기금의 역할 축소 및 폐지 검토

라. 세부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신보 운영 개선	○ 농신보 부분보증제 등 자구노력 시행	○ 자구노력 및 정부 출연을 통한 보증 여력 확충 ○ CSS 개발	
◇ 대손보전기금 개선	○ 기금 안정화방안 수립	○ 안정성 확보대책 추진	

## 1-6-5. 정책자금 대출 방식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정책자금 용자는 농림부의 대출업무규정, 농협중앙회 여신업무 방법서 등 여신관계 제규정에 따라 단위조합 및 농민에게 공급

#### □ 문제점

- 정책자금을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다소 획일적인 대출조건을 적용
  - 예) 고정금리적용, 수시입출금 통장제 미적용, 원금균등분할 방식, 이자납입주기(1년 후취) 등
- 농업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관리능력제고를 위한 전문심사 인력 육성 및 대출심사기법 개선노력 필요

### 나. 향후 전망 및 방향

- 일반 금융시장에서는 고객의 편의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는 바, 농업인의 경영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조건 설정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질 전망
-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자금성격을 구별하여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일시상환 등 대출조건을 차별화
- 특히, 운영자금을 중심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예산절약, 농업인 부담경감 도모

## 다. 세부추진내용

- 정책자금 대출에 일반상업금융기관의 대출관리방식 도입
  - 운영자금에 수시입출금 통장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로 갚을 수 있도록 편의 부여
    - 우선, 종합자금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 시설자금 대출농가 사업초기 이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분할 상환기간 중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도입, 농업인의 선택권부여
    - \* 현재는 원금분할 방식으로 분할 상환초기 이자부담 큼
- 농업수익성·투자회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책자금의 대출 조건(금리·기간) 개선
  - 현행 고정금리 방식에서 기준 CD금리 또는 국고채 금리의 일정수준 이하로 연동하는 변동금리제 도입 추진
    - 농협관계자 등과 작업반을 구성, 제도 도입방안 검토
  - 농업인의 정상적인 채무상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인센티브 부여 검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 )
정책자금 대출 방법개선	○ 정책자금 대출방법 개선 작업반 구성 - 농협금융부, 전산부, 농경연, 자금관리단 등 참여 - 관련제도 및 규정 검토	○ 대출방식개선(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 수시입출금 통장제, 변동금리제, 금리인 센티브 도입 등	○ 단계적으로 확대

## 1-7. 구조조정 보완대책 확충

### (1)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개편

◇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단가를 대폭 확대하여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급방식도 일시급에서 분할 지급방식으로 개편

□ 고령농이 농지 이양 후 영농 은퇴를 희망하는 경우 경영이양 직불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

○ 10년이상 쌀 농사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 농가의 진흥지역 내 논(2ha이내)을 대상으로 만 70세까지 지급

○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금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

- 지급단가 : (현행) 289만원/ha, 1회 → (개선) 월 241천원/ha, 최장 8년

\* 장기 임대시에는 2,977천원/ha를 일시불로 지급

- 농지 매매대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하되, 일시불 지급비율도 다양화(50%, 70%)하여 농가선택권 보장

\* 0.5ha미만 농가와 금융기관 담보 및 부채 농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불 지급 추진

□ '05년 이후에는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진흥지역 밖의 우량논과 진흥지역 내 밭으로 확대 추진

○ 중장기적으로 진흥지역 밖, 한계농지 등을 소유한 농가가 재춘탈농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2) 농지관리기능 확충

◇ 농지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농지가격 불안에 대비하여 농지관리기능을 확충

○ DDA협상, 쌀 협상 등 개방확대에 따른 쌀값하락시 진흥지역 논을 중심으로 농지가격이 상당수준 떨어질 가능성

\* '01.6~12월간 쌀값은 6.1%하락, 농지가격(평야지대)은 10% 수준 하락

□ 농지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농지알선·신탁기능 등을 우선 담당('05)

○ 농지매매 정보 수집·제공, 알선 및 신탁업무 등을 통해 매매·임대차 등 농지유동화 촉진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4)을 통해 조직 및 제도 정비

□ 단기·급격한 농지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비축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06)

○ 쌀 협상 이후 진흥지역내 논부터 우선 대상

○ 비축농지는 전업농 등에 장기 저리 임대 또는 매도하여 영농규모화를 지원

○ 부채과다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후 재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재정 또는 농지채권 발행 등 농지은행 운영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사전 강구



## 1-7-1. 경영이양직접지불제 확대 개편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7년부터 고령농업인 은퇴를 통한 쌀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소득 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도입
- '97~'03년까지 50천명의 고령농업인에게 891억원(1인당 178만원)을 지급하여 영농은퇴 유도 및 소득지원 효과
- \* 고령농업인 논 33천ha를 쌀전업농 33천명에게 이양(1인당 1ha규모 확대)

#### □ 문제점

- 고령농의 소득보전을 통한 영농은퇴 수단으로서는 미흡
  - 경영이양대상 연령층이 대부분 직접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연령으로, 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 고령농 은퇴동기 부여 지난
-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되므로 향후 쌀값 및 농지가격 하락시 쌀전업농들의 장기임대·농지매입 기피로 경영이양직불사업 악화 우려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고령농업인이 영농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불금 확대 개편 필요
  - 연구·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적정수준 인상추진
  - 경영이양농지 여건변화를 감안 사업대상을 확대

#### □ 추진방향

- '10년까지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고령농 경영이양 집중 추진
-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단가 등 제도 개선
- 고령농의 은퇴촉진을 통한 전업농의 규모화 유도

다. 세부추진내용

□ 추진목표 :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

○ 경영이양 : 89.9천ha(논 59천ha, 밭 14.2천ha, 과수 16.0천ha)

< 연도별 추진계획 >

(단위 : 천ha)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계
계	5.3	8.2	13.2	14.1	15.1	16.2	17.8	89.9
- 매매	1.9	2.1	3.3	3.5	3.8	4.0	4.5	23.1
- 임대차	3.4	6.1	9.9	10.6	11.3	12.2	13.3	66.8
논 사업량	5.3	8.2	7.2	8.1	9.1	10.2	11.6	59.7
- 매매	1.9	2.1	1.8	2.0	2.3	2.5	2.9	15.5
- 임대차	3.4	6.1	5.4	6.1	6.8	7.7	8.7	44.2
밭 사업량	-	-	2.8	2.8	2.8	2.8	3.0	14.2
- 매매	-	-	0.7	0.7	0.7	0.7	0.8	3.6
- 임대차	-	-	2.1	2.1	2.1	2.1	2.2	10.6
과수 사업량	-	-	3.2	3.2	3.2	3.2	3.2	16.0
- 매매	-	-	0.8	0.8	0.8	0.8	0.8	4.0
- 임대차	-	-	2.4	2.4	2.4	2.4	2.4	12.0

□ 지급대상 농가 및 농지

○ 대상농가 :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63~72세의 고령 농업인

○ 대상농지 : '04년에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을 대상으로 실시

\* '05이후 보조금 지급상한면적 및 직불제 적용대상 농지범위 확대 추진 검토

□ 지급조건 및 지급단가

○ 탈농을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일정규모의 55세이하의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 매도시 : 월 241천원/ha(연 2,896천원/ha)

○ 임대시 : 2,977천원/ha 일시불 1회(70~72세는 매도, 임대 '06년까지 한시지원)

\*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통한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단가를 적정 수준 인상 검토

□ 지급방법

- 매도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부터 만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분할 지급
- 임대이양 및 70~72세의 경우는 1회 일시불 지급

□ 양수대상

- 일정 면적의 경영 규모를 가진 55세 이하 농업인

라.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경영이양직불제	○ 분할지급형, 단가 인상 등 제도 도입('04) ○ 농업진흥지역 밖 우량 논 확대 검토('05)	○ 농업진흥지역 받검토 ('06)	

<참고> : 지자체 건의사항

	건의요지	검토의견
강 원	○ 대상지역 확대 - 진흥지역 밖 논 및 밭	○ '05년 진흥지역 밖 논 포함 검토 ○ '06년부터 밭 확대 검토
충 남	○ 연령상향 조정(80세까지) ○ 지급단가 상향조정	○ 시행규정 4조 개정사항 ○ 기획예산처와 협의 농림부 고시

## 1-7-2. 한·칠레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칠레 FTA가 '04. 4. 1일 발효
- FTA 과수산업 지원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 FTA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FTA이행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과수산업 지원대책 확정
  - FTA지원기금 설치 및 '04년도 FTA지원기금운용계획 수립
    - 201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고, 이행 첫 해인 '04년도에는 1,607억원을 지원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 FTA 확대 등으로 과실시장의 개방 확대가 불가피
  - 한·칠레 FTA로 포도·키위 등 과실의 수입증가가 전망되고, DDA 협상 타결시 국내 과수산업이 상당히 잠식될 전망
-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로 경쟁력이 낮은 농가 중심으로 상당수가 탈농할 전망이므로 과실생산·유통 체계의 재편 가속화
- FTA기금을 개방화에 대비한 과수산업 구조개선의 계기로 활용

## 다. 세부추진 내용

### 1) 지원원칙

- 과수산업이 한·칠레 FTA뿐만 아니라 향후 DDA 개방체제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향후 7년간('04~'10) 경쟁력 제고를 중점추진
  - 품질로써 외국산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생산 및 차별화된 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집중지원
    - 신규과원 조성, 개별농가단위 투입재 구입, 개별유통시설 설치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지원은 배제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도농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품목별 생산·유통조직에 중점 지원
    - 농가단위의 고품질생산시설 지원도 품목조직의 생산·유통 종합 계획에 따라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
-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품목별 자율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우수지역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지원
- 개방으로 직접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하여는 경영안정 지원
  - 칠레산 수입으로 국산가격 하락시 일정부분 보전지원
  - 관세 감축품목 재배농가가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

## 2) 추진 방식

- 사업효율성 제고 및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율계획사업과 중앙추진사업으로 구분
- 지역특성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 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
  - 농림부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방향 및 지원기준을 제시
  - 지자체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 종합사업계획을 자율수립
    - (종전) 개별사업별·개별경영체별 지원계획 수립
    - ⇒ (개선) 품목별 조직단위로 종합사업계획 수립
  - 시·도별로 주요 종합사업계획 단위별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자문 및 검증 실시
    - 필요시 시·군에도 협의체를 두어 활용
  - 농림부는 지자체 사업계획을 심사 후 지원규모 확정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사업추진능력 등을 심사
    - 우수지역(품목별조직)의 사업계획 단위로 예산 일괄지원
  -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환류 실시
    - 사업내용개선 및 지자체에 대한 자원배분 차등
- 전국단위로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관
  - 대상사업 : 폐업지원, 개방화적응소득보전직불, 과원규모화, 연구개발 및 홍보사업

### 3) 지방자율사업 세부내용

#### ◇ 고품질 생산·유통을 뒷받침할 시설·기술 지원

- 품질로써 경쟁 가능하도록 품목별 핵심 고품질 생산시설에 중점 지원
  - 키낮은 사과원, 포도비가림, 참다래 방풍시설, 관배수시설 등
- 품질보증 우량규격묘목의 생산·유통체계 정착
  - 우량묘목 생산기반 확충으로 저위생산과원 갱신촉진
- 고품질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
  - 기술정보 등 다양한 관련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
  - 품목별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할 기술개발 및 지원 체계 상시 운영
- 전문생산 수출단지(49개소)의 생산·출하 기반을 정비
  -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정비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 생산·유통을 주도할 광역품목조직 육성

- 전문농협 육성, 품목연합회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화·전문화·시설화 지원 추진
  - 전국의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거점유통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
  - 공동마케팅 등 유통조직화를 통하여 현대화된 생산·저장·가공·유통 실현을 지원

\* 공동브랜드 유통 : ('02) 9% → ('13) 50%

##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생산시설을 설치

- 고품질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배제
- 생산·유통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유도

□ 지원대상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적합한 농업인으로서, 지역(품목조직)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자

□ 사업개요

- 지원사업 : 고품질생산, 생산비절감, 재해예방, 에너지절감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시설포도·시설과채류의 시설 개보수 포함)

\* 세부사업(예시)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키낮은 사과원, 지주시설, 시설포도 등

\* 지원제외 : 농약·비료 등 직접투입재, 농가단위 사용 농기계,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포도·감귤의 난방시설 등

- 세부사업 지원단가 : 제시된 표준단가를 적용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객관적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조정가능

- 단가조정시는 행정·생산자단체·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조정

- 재원별 부담비율 : 보조50%(국고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25%이상 지원가능



## ② 과수 생산기반정비

-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과 출하기반을  
조기 구축하여 안정영농 및 생산성 향상
  - '08년까지 3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 기반정비 추진
  - 수출단지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
  
-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중 집단화된 50개지구
  - 전문생산(수출)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사업개요
  - 매년 10개지구씩 500ha 생산기반정비 추진(5개년간) : 총 2,500ha
    - 1차년도 : 사업지구 선정,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차년도 : 공사완료
  - 사업내용 : 관개용수 개발, 용수이용시설, 경작로 정비, 과원경지 정리
    - 농가별 관정(용수)개발 사업은 지양
  - 지원단가 : 25,410천원/ha(기본조사비 : 419천원/ha, 국고보조 100%)
    - 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90 ~ 110%(산지는 130%까지)
  - 재원별 부담비율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개소당 규모 : 평균 50ha(최소 30ha이상)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현재 49개단지 지정)
    - 2단계 : 30ha이상 과실 주산단지

###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 대형·고가인 과수용 농기계의 임대지원을 통해 농가들의 구입비 부담경감, 농기계 이용율 제고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
  -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자가 구입하려는 농기계를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내구년한 경과후 임대수입 적립금을 활용하여 대체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업의 계속성 유지
  - 사업대상자는 구입농기계를 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유상임대 실시
-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자체 등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대상기계 : 잔가지파쇄기, 제초기, 과수인공교배기, 트랙터, 퇴비살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구입가격이 3백만원 이상이고, 내구성이 있는 과실생산관련 농기계
    - 부속시설 설치 :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등
  - 지원대상자 : 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지자체 등
  - 지원단가 : 500백만원/개소(부속시설 :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재원별 부담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자부담은 지방비로 지원가능

####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 설치

- 기존유통시설을 계열화하고, 전처리시설·첨단 상품차별화 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품질경쟁력 강화 중점지원
- 지원대상 :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 생산자단체, 지자체
  - 전국단위 품목조직이 수급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산지유통센터 배치계획에 따라 지원
  -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도 전국단위 품목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에 참여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설치·개보수 지원
- 사업개요
  -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에 따라 전국에 20여개소 설치
    - 전처리, 선별(중량, 당도, 선택 등), 포장, 적재까지 자동일괄처리 시설·장비 구축
  - 재원별 부담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50억원/개소(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내용 : 전산처리시설, 비파괴 당도선별기, 형상선별기, 예냉시설 등 수확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
  - 운영방안
    - 다수의 생산자가 참여한 광역 산지전문유통조직
    - 과수를 주품목으로 하면서 연중 가동이 가능한 품목을 확보
    - 기존의 산지유통센터를 계열화하여 규모 있는 출하가 가능한 조직이 담당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의 시행요령을 준용

## 5] 우량묘목생산 지원

□ 품질 보증묘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묘목 생산·검증·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

○ 총 과수면적 150천ha를 20년주기로 갱신 목표를 잡고 매년 갱신 목표량 7천ha의 30%(2천ha)를 지원

○ 무독·건전묘 재식을 통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 정착

□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에 관련규정에 의한 과수묘목 생산이 가능한 농협, 영농법인, 시군기술센터 등

○ 묘목·생산 공급계획,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묘포장조성, 우량모수확보, 병해충검정장비 확보등 우량묘목생산기반 조성을 지원

○ 사업량 : 개소당 연간 과원 100ha를 갱신할 수 있는 규모

- 묘포장 규모 : 사과 10ha(연 20만주 생산), 포도 4ha(10만주)

○ 대상과종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 지원단가 : 개소당 500백만원(사업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 재원별 부담비율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국고융자 20, 자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사후관리

- 사업실시자는 생산묘목에 대해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의 품질 보증을 실시

- 「우량묘목공급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급가격, 하자발생시 보상수준 등 결정

## ⑥ 과실류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

□ 국산과실 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생산비절감이 가능하도록  
가공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

○ 가공용 농산물의 수요개발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국산과실을 이용하여 주류, 주스, 잼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품목별 조직에 속하는 업체 또는 품목별  
조직과 원료공급관련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업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공장증설, 시설개보수, 시설현대화·자동화, 저장 및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시설·장비의 설치·구입을 지원

○ 재원별 부담비율 : 국고용자 100%

- 용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단가(한도) : 개소당 5억원

-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성 등에 따라 증감 가능

#### 4) 중앙사업 세부내용

-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직접피해 농가에 대해서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및 희망농가 폐업지원
  - 칠레산 수입급증으로 국내가격 하락시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가격차의 80% 소득 보전
  - 과원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폐업지원금 지급
    - 폐원(3년간 순수입액 보전), 전업농에 과원 매도시(1년간 순수입액 보전)
- ◇ 최적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선도농을 육성
  - 1.5ha 이상 : ('02) 18천호 → ('10) 22천호(총 생산량의 50% 담당)
  - 규모화 농지구입자금 지원, 선도농 위주 생산·유통체계 지원 등을 통하여 촉진

#### 1] 과원규모화 사업

- 과원규모를 확대하는 농가에 과원매매·장기임대차를 지원
  - 사과·배 등 과수 전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 목표 : 2010년까지 3천ha(매매 2천ha, 임대차 1천ha)
- 지원대상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또는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입(장기임차)하여 과원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개요

○ 사업시행기관 : 농업기반공사

○ 지원단가

- 지원대상자의 전문성·소득 등을 고려,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결정

- 매매사업 지원상한은 40,000원/평(과수목 포함)

· 자부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 지원상한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상한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과원매매	농가	5ha	연리 3.0%	연령에 따라 10~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 상환
	법인	10ha		
○ 과원임대차	농가	5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법인	10ha		

○ '04 지원규모 : 300ha(매매 200ha, 임대차 100ha)

② 개방적응 소득보전직불사업

□ 지원대상 품목 : 시설포도, 키위

○ 향후 단감 등 관세감축품목이 수입될 경우 추가 선정

□ 지원요건

○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인 경우는 전년보다 수입량비율이 증가(10%미만이더라도 전년대비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하고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지원

- 평균가격 : 가락동도매시장의 주출하기 총거래금액÷거래물량
  - 주출하시기 : 시설포도(3~6월), 키위(10~익년 5월)
-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
  -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의 주출하기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지원대상자 및 직불금 산출방법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품목의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법인
- 지원금액 : 재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전국평균생산량 : 당해연도 직전 5년간 평균 생산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생산량
  - 지급단가 : (기준가격-당해연도 평균가격) × 0.8
  - 조정계수(≤1) : 당해품목의 WTO 최소허용보조액 ÷ 지급신청총액

**③ 폐업 희망 과수농가에 폐원 및 양도지원**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한 과원의 과수목 소유권을 지닌 농업인
  - 당해 시·군내의 소유과원 전체를 폐원 또는 양도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 : 폐원면적 × 연간단위면적당 순수입액 × 3년
- 양도 : 양도면적 × 연간단위면적당 순수입액 × 1년



○ 지원 예정금액

- 폐원 : 시설포도 104백만원/ha, 복숭아 34, 키위 41
- 매도 : 시설포도 35백만원/ha, 복숭아 11, 키위 14

□ 폐업지원 관리 등

- 지원받은 농업인이 5년이내에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승 제19조)
- FTA 기금사업으로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현대화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

□ 실시기간 : 2004~2008(5년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FTA특별 대책 <input type="checkbox"/> FTA지원특별법 제정 <input type="checkbox"/> 경쟁력제고 대책 및 경영안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고품질생산기반 확충	제도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FTA지원특별법령 제정 -FTA특별기금설치 -FTA농업지원대책 수립 -기금운용계획수립	구조조정 및 개방 적응 ◦ 희망농가 폐원, 매도지원 ◦ 개방적응 소득보전 직불시행 ◦ 품목별 고품질생산, 유통규모화, 등 경쟁력 제고 추진	경쟁력 제고 완료 ◦ 개방전에 경쟁력 제고 대책 완결 최상품 출하비율 : 60%
	최상품(특품)출하비율 : 30%	최상품출하비율 : 50%	

### 1-7-3.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마늘은 경종작물중 쌀, 고추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농가의 40%정도가 마늘재배에 참여
  - '02년도 마늘생산액은 5,251억원으로 농림업 총생산액 33조원의 1.6% 차지
- '03.1월부터 마늘 S/G종료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국내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마늘산업종합대책 일환으로 경쟁력제고 추진

##### □ 문제점

- 국내산 마늘이 경쟁국보다 품질차별성은 미흡한 반면, 가격경쟁력은 크게 낮아 수입증가시 국내산업에 큰 피해 우려
- 마늘은 기계화율이 낮아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생산비 중 노력비와 종묘비가 68%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쟁력이 약함
- 저장중 감모발생, 다단계 유통과정, 깎마늘 유통체계 미확립 등 유통효율 저하로 물류비에 많은 비용발생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 협상으로 고율관세(깎마늘·신선마늘 : 360% 또는 1,800원/kg)가 대폭 낮아질 경우 국내마늘산업피해는 불가피함
  -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되어 자급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
- 기술력이 있고 규모화 된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 및 경쟁력 제고대책과 유통효율성 제고 등 마늘산업종합대책 추진
  - DDA 타결을 앞둔 과도기에 경쟁력 열위 농가 구조조정 지원

## 다. 세부추진내용

### ① 종구갱신사업

- 사업목표 : 2007년까지 마늘재배면적 17,000ha를 종구갱신
- 사업기간 : 2002~2007
  - '07년이후는 그 동안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지속 추진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주아를 자가채종하여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에 종구생산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800천원/10a(주아과종면적 기준)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마늘주산단지내 900평이상 재배농가
  - 지원기준
    - 국고보조 60%, 지방비보조 40%

### ② 생산기계화사업

- 사업목표 : 2007년까지 마늘재배면적 17,000ha를 기계화
- 사업기간 : 2002~2007
  - '07년이후는 그 동안 기계보급율 등을 감안하여 지속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
  - 공동이용 : 0.5ha미만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이용조직을 결성한 주산단지의 지자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개별이용 : 주산단지내 0.5ha이상의 마늘재배면적 농가중 마늘생산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지원대상 농기계

- 『독립된 형태의 농기계』로서 농업공학연구소의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마늘 생산 농기계
- 대상기종 : 마늘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쪽선별기, 줄기절단기
  - 주아선별기, 주아씨마늘선별기 등 신규 개발기종은 성능인증시 기종 추가

사업량 배정

- 개별이용은 전체 사업량의 10%를 배정하여 공동이용을 촉진
- 공동이용은 전체 사업량의 90%배정(지방자치단체는 30%, 농협 등은 60%)을 원칙

지원조건

- 공동이용
  - 지방자치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농협 등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개별이용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3] 작목전환사업**

사업목표 : 2007년까지 마늘재배면적 7,000ha를 작목전환

사업기간 : 2003~2007(신규사업신청은 2005년까지)

지원내용

- 마늘재배 농가로서 약정된 해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작목 전환 및 휴작하는 경우, 작목전환 및 휴작자금 지원

지원대상

- 마늘주산단지내 거주농가로 본인 소유농지에 10a(300평) 이상 재배한 농가로서 3년간 작목전환 또는 휴작하여 마늘생산을 중단코자 하는 농가

□ 지원단가

- 작목전환 및 휴작 : 매년 183만원/ha(183원/m<sup>2</sup>)씩 3년간 지급(3년간 합계 550만원 수준)
- 생산시설 : 작목전환을 위한 생산시설로 신규대출(예정)된 농업종합자금의 10% 해당금액을 일괄지급
  -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550만원/ha이하인 경우에도 550만원을, 1,100만원/h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만원을 일괄지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07년이후 지원방향 >

- '07년까지는 마늘산업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07년이후는 사업별 추진실적 및 산업여건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검토
-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산지유통조직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생산·유통 계열화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구조조정촉진	○ 작목전환 및 구조 조정계획수립	○ 작목전환 마무리 및 구조조정 추진	○ 주산단지 규모화 정착
○ 생산성향상 -종구갱신 -기계화추진	○ 주아재배 통한 종구갱신 확산 ○ 기계화 지원체계 확립	○ 종구갱신 정착 ○ 현장 적응성 강화 및 신기계 개발	○ 일관기계화 정착
○ 유통개선	○ 산지유통조직화	○ 저장·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산지유통전문 조직 내실화
○ 생산자 자율적 수급안정	○ 품목조직화	○ 품목조직과 유통 조직의 연계	○ 생산자조직 자율적 수급조절 정착

\* SG종료('02)에 따른 한시적인 사업으로 '07년까지 완료, '08년 이후는 주산지 구조개선 및 노지채소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1-7-4. 양념류 주산지 구조개선 지원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양념채소류는 '02년 채소생산액 6조2천억원의 27% 수준인 1조 6천억원을 점유하는 농가의 주요 소득작물임
- 다른작목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농가의 40~70%가 재배에 참여하고 채소 재배면적(333천ha)의 36% (121천ha) 차지
-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제외하고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 □ 문제점

- 국내외 가격차는 크나, 품질 차별성은 미흡하여 DDA이후 관세 감축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등 개방확대시 국내산업은 큰 피해 예상
- 고추·마늘은 개방확대시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과 생산 감소로 집중도가 높은 주산단지 지역경제 타격이 클 전망
- 경쟁력확보가 어려운 농가 및 주산지에 대한 구조조정과 집중도가 높은 주산지의 경쟁력제고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산업기반 붕괴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비주산지는 자가소비용을 제외한 상업용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다양한 직불제 도입으로 소득보전
- 주산단지중 산업여건변화로 재배규모 축소, 재배면적 분산 지역은 구조조정사업으로 다른산업유치, 대체작목개발 지원
- 생산집중도가 높은 주산단지는 생산비절감 등 경쟁력제고 대책과 고품질생산, 가공 및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제고 사업 지원

## 다. 세부추진내용

### < 사업추진방식 >

- 농림부는 주산지 구조조정 및 경쟁력제고 목표, 사업메뉴, 투자규모 등 양념류 구조개선사업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 주산지 산업구조개선 계획을 수립
  - 농업인·대학·연구기관·관련 민간기업·지자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지역산업발전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
  - 우선 지방비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면밀하게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은 필요시 마을, 읍·면, 시·군단위로 수립
- 시·군의 사업계획은 시·도의 예비심사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목표, 타당성, 사업능력, 사업효과, 농업인 참여도 등을 심사

-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사업확정
  - 농림부는 해당산업의 구조조정목표와 시·도지사 심사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심사·확정
  -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사업비는 3년에 걸쳐 분산지원
-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의 수정·보완
  - 농림부는 매년 관계기관 합동평가 또는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의뢰
  -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의 수정, 사업내용의 개선 또는 보완, 사업대상자별 차등지원 등 조치강구
  - 사업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초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본격 사업추진

## ① 양념채소 주산단지 구조조정사업

### □ 추진목표 및 방향

- '13년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주산단지의 고추 재배면적 10천ha, 마늘 3천ha를 감축유도
  - 재배면적 : (고추) 35.1천ha → 24.6(△10.5), (마늘) 20.6 → 17.5(△ 3.1)
-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현행 주산단지중 고추 30%, 마늘 20%를 축소
  - 주산단지 : (고추) 387개소 → 270(△117), (마늘) 177 → 100(△77)
- 대체산업 유치, 대체소득원 개발을 위한 포괄지원과 밭 경영이양 및 소득보전직불로 자가소비용을 제외하고 재배면적 감축



□ 추진방법

- '05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 구조조정사업의 시행모델 개발 (3개 주산단지 : 강원, 충남, 경남)
- '06년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사업대상지역을 확정하고, '07년 부터 사업시행
- 구조조정사업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되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되면 사업시행주체는 해당품목 주산단지내 재배면적을 일괄감축
  - 연도별 평가를 통해 면적감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 주산단지 중 재배면적이 고추 80ha이하, 마늘 50ha이하인 지역
- 대상자는 대체산업유치 사업은 지자체, 대체소득원 개발 사업은 사업참여 품목조직 및 조직구성원

□ 연도별 투자계획 및 지원규모

- 총 투자계획 : 2,400억원(국고 1,920, 지방비 48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계	'07	'08	'09	'10	'11	'12	'13
사업량	280	5	10	15	20	20	20	30
총사업비	2,400	100	200	300	400	400	400	600
국고보조	1,920	80	160	240	320	320	320	480
지방비	480	20	40	60	80	80	80	120

- 지원규모 : 주산단지당 20억원이내(국고 80%, 지방비 20%)로 하되 3개년에 걸쳐 분산지원

## □ 사업계획수립

- 농업인·대학·민간기업·자치단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체산업유치 또는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 중장기 기본 전략 수립
- 주산단지 지정해제후 지역산업발전 중장기 목표수립
- 대체산업유치 또는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해당품목 농업인의 구체적인 참여방안 등

##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주체 : 시·군

## □ 사업내용 예시

- 해당품목 구조조정위원회(가칭) 설치 및 운영비
  - 위원회는 농업인·대학·연구기관·관련 민간기업·지자체로 구성
  - 양념채소 구조조정 및 대체산업유치·대체작물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협의
- 대체산업유치 및 대체작물 교육·경영컨설팅비
  - 대체산업 유치활동 및 대체작물 재배기술과 품질관리 교육
  - 대체산업 가공·유통센터 경영기법 컨설팅
- 대체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 육묘장, 관수시설, 배수시설, 농로 등
  - 재배시설(예 : 버섯재배사), 비가림시설 등
- 가공·유통시설 건축비
  - 소규모 가공공장, 건가시설(예 : 한약재 등), 포장시설, 일반창고 등

- 브랜드개발 및 연합마케팅
  - 대체작물 가공제품 브랜드개발 및 브랜드 가치제고
  - 연합마케팅사업 및 홍보비용
- 소비자 영농체험 기반조성 등
  -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용 시설설치
- 대체산업유치시에는 대체산업유치 활동비 및 기반조성 사업비로 활용가능하며, 항목간 조정도 가능

<대체 작물 예시>

- 수입영향이 적고 지속적으로 수요증가 작물  
예) 약용작물, 버섯 등
-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한 가능한 작물  
예) 허브, 야생식물단지 등
- 국내생산이 부족하고 건강식품으로 수요증가가 가능한 작물  
예) 조, 수수 등 전통 잡곡류

## ② 양념채소 주산단지 경쟁력제고사업

### □ 추진목표 및 방향

- '13년까지 고추·마늘 생산량의 30%를 생산·유통 계열화 하고 생산비를 30%이상 절감하여 경쟁력 제고
- 권역별로 선도농을 중심으로 품목조직을 결성하고 신품종 우선보급, 기계화, 기반정비 등으로 생산성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
- 품목조직과 연계된 산지유통조직에는 일관생산기계, 가공·유통시설설치, 기존시설의 보완, 브랜드개발 지원 등으로 부가가치 제고

## □ 추진방법

- '05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쟁력제고사업의 시행모델 개발 및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06년에 고추 1~2개군 시범사업 추진
  - 모델개발 : (고추) 충북·경북 각 1개소, (마늘) 전남
- 권역별로 품목조직을 결성하고 품목조직과 연계된 산지유통조직에서 생산·가공·유통을 전담

### — <품목조직화 방안> —

- 고추는 마을·주산단지·시·군단위별, 마늘·양파는 유통시설의 원료권역별로 품목조직화
- 조직의 형태는 마늘단위조직과 주산단지의 지역농협에서 결성하는 조직은 생산·유통 일반조직, 시·군단위와 원료권역별 조직은 법인화
  - 일반조직도 품목조직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정
- 조직결성은 마을단위는 재배농가의 90%이상, 주산단지 및 시·군단위는 50%이상 참여해야 함
  - 마늘·양파는 보유 유통시설 원료소요량의 90%이상을 원료권역내 재배농가로 조직결성

### <품목조직과 산지유통조직의 연계>

- 산지유통조직은 품종·생산자재 공동구매 공급 및 재배기술지도, 품목조직은 산지유통조직이 요구대로 작물생산
- 산지유통조직은 품목조직의 생산물량을 전량 수매하여 전처리를 통해 상품성을 높이고 브랜드화 하여 판매
  - 고추 마을단위 품목조직은 생산부터 판매를 전담
- 판매방식은 공동판매·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마늘·양파의 민간업체와 연계된 산지유통조직은 자율판매하되 판매수익의 배분은 품목조직과 협의하여 결정

#### □ 사업대상지역

- '02.11월 지정고시된 채소류 주산단지중 고추는 재배면적이 10ha이상인 마을단위, 마늘·양파는 산지유통시설 원료권역
- 주산단지 재배면적이 고추 150ha이상 60개단지, 마늘·양파는 각각 100ha이상인 70·30개 주산단지
- 연합사업지역은 시·군 재배면적이 고추·마늘 각각 1,000ha 이상인 15·10개 시·군, 양파는 500ha이상인 5개 시·군

#### □ 사업대상자

-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품목조직이 결성된 품목조직 및 품목조직의 구성원
- 가공·유통시설설치 및 시설보완, 브랜드개발·연합마케팅, 홍보사업 등은 품목조직과 연계된 산지유통조직
- 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경영컨설팅, 소비자 영농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체험기반조성 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

□ 연도별 투자계획 및 지원규모

- 총 투자계획 : 3,200억원(국고 2,560, 지방비 64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계	'06	'07	'08	'09	'10	'11	'12	'13
사업량	160	5	5	10	20	20	30	30	40
총사업비	3,200	100	100	200	400	400	600	600	800
국고보조	2,560	80	80	160	320	320	480	480	640
지방비	640	20	20	40	80	80	120	120	160

- 지원규모 : 품목조직 및 산지유통조직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3개년에 걸쳐 분산지원(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계획수립

- 농업인·대학·민간기업·자치단체로 해당품목 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수립
- 주산단지별 사업여건분석 및 발전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사업량
- 사업별 단가 산정기준 및 총 사업비, 자원별 분담액
- 시행사업에 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용계획, 연구용역결과, 컨설팅계획, 재배농업인 참여도 등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주체 : 시·군

## □ 사업내용 예시

### 고추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예시)

- 고추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
  - 위원회는 농업인·대학·연구기관·관련 민간기업·지자체로 구성
  - 고추산업 육성방안, 공동사업을 위한 품목조직·산지유통조직결성 및 연계방안 등의 연구·협의
- 조직결성, 교육 및 경영컨설팅비
  - 품목조직 및 산지유통조직 결성
  -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교육, 가공·유통센터 경영기법 컨설팅
-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사업
  - 공정육묘장 설치, 관정 및 점적시설 설치 등
- 가공·유통시설 설치 지원
  - 저온 및 일반창고, 세척·건조·절단·분쇄·포장시설 및 기자재
  - 기존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시설보완
- 브랜드개발 및 연합마케팅사업
  - 브랜드개발 및 브랜드 가치제고, 연합마케팅사업,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사업
- 홍보사업 및 소비자 영농체험 기반조성 등
  - TV CF광고, 신문, 옥외광고, 축제 등 홍보사업
  - 재배·수확·가공단계의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소비자 체험 시설조성(농장조성, 원예공원조성 등)

## 마늘·양파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예시)

- 마늘·양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
- 조직결성, 교육 및 경영컨설팅비
-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
  - 마늘은 '07년까지 마늘산업종합대책에 의거 추진
  - 양파는 공정육묘장 설치지원
- 가공·유통시설 보완 지원
  - 양파 큐어링시설, 탈피시설, 소포장시설
  - 마늘 건가시설, 열풍건조기, 선별기, 포장시설
- 브랜드개발 및 연합마케팅 사업비
  - 브랜드개발 및 브랜드 가치제고, 연합마케팅사업,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등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주산단지 구조개선	○ 지자체별 추진전략 수립	○ 구조개선사업 도입 및 확대	○ 구조개선 사업평가·보완 및 마무리



## 1-7-5. 무·배추 전처리 및 소포장 시설지원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무·배추는 대부분 주산지 포전에서 수확 후 트럭단위 산물 형태로 출하되고 있음
  - 무는 일부 세척 및 소포장한 형태로 시장에서 차별화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 배추는 일부 김치공장에서 반가공 형태인 절임배추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비중은 미미함
- 소비자는 산물상태의 무·배추보다는 세척무, 완제품 김치, 반가공 형태인 절임배추, 소포장 등 편의성 위주의 구매 형태로 전환

#### □ 문제점

- 부피가 큰 무·배추를 산물형태로 소비지까지 유통됨에 따라 유통비용 과다
  - 수송비, 도시 쓰레기 유발, 신선도 유지비용, 감모 등
-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요구를 시설투자비 부담 등으로 산지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소비자 편의성, 식문화 다양성 등을 감안할 때 세척무 및 절임배추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산지 유통체계 개선 필요
- 무·배추로 인한 도시쓰레기 유발, 악취 등 환경문제 발생
- 세척무, 절임배추 등 소포장 전처리시설을 주산지 생산자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현행 채소계약재배사업과 연계하여 주산지 시·군단위(또는 광역시·군) 시설 지원
- 사업타당성 평가, 사업성과 분석 등 사업관리 강화

## 다. 세부추진내용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절임 등 배추 전처리시설과 세척 등 무 소포장화 시설 지원을 통한 산지 유통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 쓰레기 유발 방지 등 부대효과 창출
- 사업기간 : '06~'13(8년간)
- 사업주관 : 시장·군수 또는 주산지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 750억원(국고 375, 지방비 225, 자부담 150)
  - 재원부담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사업단가 : (배추) 50억원/개소, (무) 5억원/개소
  - \* 부지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량 : 배추전처리 10개소, 무 세척 및 소포장시설 50개소
  - 처리물량 : 배추 80천톤/년간(40톤 × 200일 × 10개소), 개소당 8천톤  
무 250천톤/년간(40톤 × 125일 × 50개소), 개소당 5천톤
  - \* '13년까지 배추는 생산량의 3%, 세척무는 16%수준 전처리할 수 있는 규모
  - 주요시설 : 집하장, 선별장, 절임처리시설, 폐수처리, 포장, 저온창고 등
- 대상자 선정 :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현장실사 등 사업 타당성 사전평가후 선정계획

## □ 사업 추진방식

### < 사업신청 >

- 신청주체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신청체계 : 생산자단체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 · 도지사 → 농림부
  - 아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운영주체(생산자단체)의 일반현황, 자본금현황, 판매사업 현황, 유통시설 보유현황, 부지 확보계획, 자금조달 계획, 무 · 배추 계약 재배현황(최근 3개년), 판로확보 등 판매계획, 손익계산서(시설설치후 2개년사업 추정치), 사업장 관리방안 등
    - 원료 확보계획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사업신청
      - 원료권역이 기존 시설과 중복되지 않고, 작기별 주산지과 연계하여 배추는 연간 8천톤(40톤 × 200일) 이상, 무는 5천톤(40톤 × 125일) 이상 확보
- 예시) 봄 · 가을배추 지역 : 고랭지 및 월동배추 주산지와 연계  
고랭지배추 지역 : 봄 · 가을배추 및 월동배추 주산지와 연계

## < 사업타당성 평가 >

- 평가주관 : 농협중앙회
- 아래 내용을 중점항목으로 하여 별도의 평가세부지침 마련 계획
  -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여건(입지조건, 재무구조, 전담팀 확보 등), 투자 효율성 등
  - 당해 시·군·구 및 인근 지역의 기존 사업체와 경합 등 사업권역 중복여부,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주산지역 시·군·구 단위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권역이 중복되지 않고 동일작기 재배면적이 500ha이상인 시·군·구는 2개소 이내 지원 가능(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은 1개소만 추가)
  - 무 세척 및 소포장 시설은 사업권역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1개 시·군·구에 2개소 이내 지원 원칙
  - 아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등 우선지원
    -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을 시행하는 생산자단체 중 사업평가결과 우수사업체로 선정되는 등 판매사업이 활성화된 사업체
    - 현재 채소 전처리사업, APC 운영 등 연관사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 사업대상자 선정 >

- 사업타당성 평가결과 평점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 <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주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후관리기간 : 10년
- 사후관리기간 중 매년 성과평가 실시(주관 : 농협중앙회)
  - 평가결과 부실 또는 부실이 예상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실시, 경영팀 교체, 운영권 이양 등 적절한 조치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 '05년도에는 예산확보, 사업시행지침 마련, 표준메뉴얼 작성 등 사업준비
  - 시설설치에 대한 표준메뉴얼은 기존의 절임배추, 세척무 시설운영 사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작성
- 사업첫해인 '06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 사업추진체계, 지원단가, 사업추진상 제반 문제점 도출 등을 통해 '07년도 이후 사업계획 보완
- '07년부터 '13년까지 본사업 추진,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관리 병행

<연차별 지원 계획>

- 배추 전처리 시설은 연간 1개소 지원('12~'13년은 2개소)
- 무 세척 및 소포장시설은 연차별 사업량 확대
  - ('06) 2개소 → ('07) 4 → ('08~'09) 6 → ('10~'13) 8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무·배추 전처리 및 소포장 시설지원	사업시행지침, 시설 표준 메뉴얼 작성, 예산확보 등 사업준비	시범사업 추진 -문제점분석·보완	본사업 추진, 성과분석(매년)

## 1-7-6.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지난 10년간 재배면적은 30%, 생산량은 40%이상 증가
  - 재배면적 : ('90) 133천ha → ('95) 174 → ('00) 173
  - 생 산 량 : ('90) 176천ha → ('95) 230 → ('00) 243
- '97년에 과실류가 전면 수입개방 된 후 수입과실과 경합 등으로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
  - 신선과실 수입량 : ('97) 220천톤 → ('00) 323 → ('02) 344
  - 과실생산량 : ('97) 2,451천톤 → ('00) 2,428 → ('02) 2,500

#### □ 문제점

- 현행 관세하(45%수준)에서도 대부분 경쟁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낮으며 관세인하가 추가되면 격차 가중 전망
  - 사과 : 중국의 1.6배, 칠레 1.4, 미국비슷, 일본 1/2
  - 배 : 중국 2.5, 칠레 1.8, 일본 1/2
  - 포도 : 중국의 1.3배, 칠레(시설) 2.3
  - 감귤 : 중국의 90% 수준

\* 품질면에서는 일본보다 낮고, 중국산에 비해 우위
- 개방이 진전될 경우 경영규모와 기술 및 경영능력이 낮은 농가는 수입산과 경쟁이 어려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 등 개방의 확대에 따라 수입과실과 소비경합 등으로 과잉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식물검역상 수입제한 해제시 중국산 과실과 경합 심화

□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 저위 등으로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희망하는 과원에 대해 폐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가소득감소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폐원에 어려움이 있어 폐원 작업비를 지원하여 구조조정 촉진

\* 상·하위(각 10%) 농가 소득격차('02) : 사과 10.5배, 배 15, 감귤 9.4

□ 폐원 방치로 인하여 병해충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폐원을 실시하여 주변과원으로 병해충이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 <배나무 흑성병 발생 및 농약살포 : '03 나주배시험장>

구 분	방치과원	방치과원 인근	일반과원
이 병 율	100 %	53	5.8
농약살포	- 회	20~25	10~15

□ 과잉기초에 있는 6大 과실의 재배면적을 폐원을 희망하는 경쟁력 저위 과원 중심으로 27천ha 감축하는 구조조정 시행

○ 감축규모 : ('03) 140천ha → ('10) 113(△27천ha)

- 사과(26천ha→20), 배(25천ha→20), 단감(21천ha→15), 감귤(26천ha→20), 포도(26천ha→23), 기타(16천ha→15)

## 다. 세부 추진내용

### □ 지원원칙

- 구조조정을 개방에 따른 영세농가의 단순한 퇴출제도가 아닌 지속영농을 하는 우수 선도농의 경쟁력제고 틀로 활용
- 우리과실 적정 공급량 설정 → 차별화 된 고품질 적정량 공급  
→ 우리과실 최고 육성전략 추진
  - 적정공급량 : 사과+배 70만톤, 포도 35, 단감 15, 감귤 50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2,700억원
  - 국고 : 1,350억원
- 사업기간 : 2005~2009(5년간)
- 지원단가 : ha당 10백만원(과종별 단가는 별도 산출)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 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과종 : FTA기금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제외한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등
  - \* 제외과종 : 시설포도(가온), 복숭아, 참다래
- 지원내용 : 폐원에 소요되는 작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폐원대상 과원의 소유자

○ 지원대상 과원

- 습해 및 재해 상습지 등 부적지 과원
- 노목원 등 생산성이 낮은 과원
- 경영주의 고령화 등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영이 어려운 과원

○ 지원제외 대상 과원

- 2003년이후에 신규 조성된 과원
- 국·공유지에 식재되었거나 1년이상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과원
- 건축·도로개설·기타시설물 설치 등 농업의 사용을 목적으로 폐원하는 과원

○ 선정절차

- 희망농가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시·군(읍면)과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현지조사·확인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지원대상자의 엄격한 심사와 현지확인으로 사업관리 철저

○ 농가의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사업시행 적정여부 현지조사·확인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사업시행 적정여부를 확인
- 사업시행 전·중·후 3회이상 현지확인 실시

□ 지원농가는 일정기간 재식재를 금지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 시장·군수는 과원구조정사업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 실시

- 폐원 포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에는 동일 과종을 다시 식재 금지
- 폐원된 포장에 동일 품목을 다시 식재(매매후 타인식재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기간 : 폐원자금을 지원한 익년도부터 5년간

#### 라. 추진 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1천ha)	75% 정비 (20천ha)	100% 정비 (27천ha)

## 1-7-7. 부적지감귤과원 정비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감귤은 제주도에 특화된 작물로서 지역경제에 중요한 위치 점유
  - 감귤 생산액('02) : 4,401억원(제주도 농업생산액의 65%)
- '97 수입개방 후 수입과실과 경합 등으로 공급과잉 구조 지속
  - 수입과실과 참외등 과채류와 경합으로 감귤 소비확대 한계상황
    - 신선과실 수입량 : ('97) 220천톤 → ('01) 331 → ('03) 433
    - 감귤 1인당 소비량 : ('97)14.1kg/1년→ ('01)13.5→ ('03)13.0
  - 수입개방 이후에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과잉 구조 지속
    - 생산량 : ('97) 615천톤 → ('00) 563 → ('02) 643 → ('03) 632
  -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단위당 소득이 5년간 1/2감소
    - 농가판매가 : ('97) 16.4천원/15kg → ('01) 9.6 → ('02) 10.3 → ('03) 8.6
    - 10a당 소득 : ('97) 1,372천원 → ('01) 637 → ('02) 356

#### □ 문제점

- 공급과잉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나 정비율이 낮음
  -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을 '97년부터 시행했으나 실적이 부진
    - 부적지 면적 : 3,310ha(해발 200m이상의 고지대, 동해상습지 등)
    - '02년까지 정비실적 : 510ha(부적지 전체면적의 28% 수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 등 개방의 확대에 따라 수입과실과 소비경합 등으로 과잉구조 지속예상
  - 연중 공급되는 딸기 등 시설 과채류와의 소비경합도 커질 전망
- 과잉해소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04년까지 부적지정비를 완료
  - 부적지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현행 방식에 의한 지원이 계속될 경우 부적지 정비 가능

## 다. 세부 추진내용

- 지원원칙
  - 고지대(해발 200m이상), 암반지대 등 감귤재배 부적지, 재해상습지, 친환경 저해과원 등 감귤생산 부적합 과원정비
  -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감귤산업 구조개선에 중점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993억원('03년까지 기투자액 : 243억원)
    - 국고 : 239억원('02까지 : 57억원, '03년 : 27, '04 : 155)
  - 사업물량 : 3,310ha('03까지 : 510 '03년 : 300ha, '04 : 2,500)
  - 지원수준 : 3년간 순소득 수준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50, 자담 등 20
  - 사업시행 주체 : 제주도지사(시장·군수)

□ 지원대상 과원

- 지원대상 : 재배부적지, 재해상습지, 친환경저해지 등 부적지감골원
- 지원제외대상
  - '97년이후에 신규 조성한 감골원
  - 국·공유지에 재식되었거나, 1년이상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감골원
  - 만감류 재배 감골원
  - 폐원대상 과원 감골나무를 타 지역으로 이식하는 경우와 건축, 도로개설, 기타시설물 설치 등 농업외 사용을 목적으로 폐원하는 감골원

□ 지원대상 농가 선정

- 정비대상 과원 소유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시·군과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 과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후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극조생 감골원중 재배부적지, 재해상습지, 친환경저해지
  - 2순위 : 온주밀감 감골원중 재배부적지, 재해상습지, 친환경저해지
  - 3순위 : 국도변 가시지역내 감골원
  - 4순위 : 1/2간벌, 휴식년제, 참여농가 감골원

□ 사업비 지원

- 지원단가 : ha당 30백만원(수령별 생산력 지수에 의한 차등지원)
- 사업비는 반드시 감골원 정비상황을 현장 확인한 후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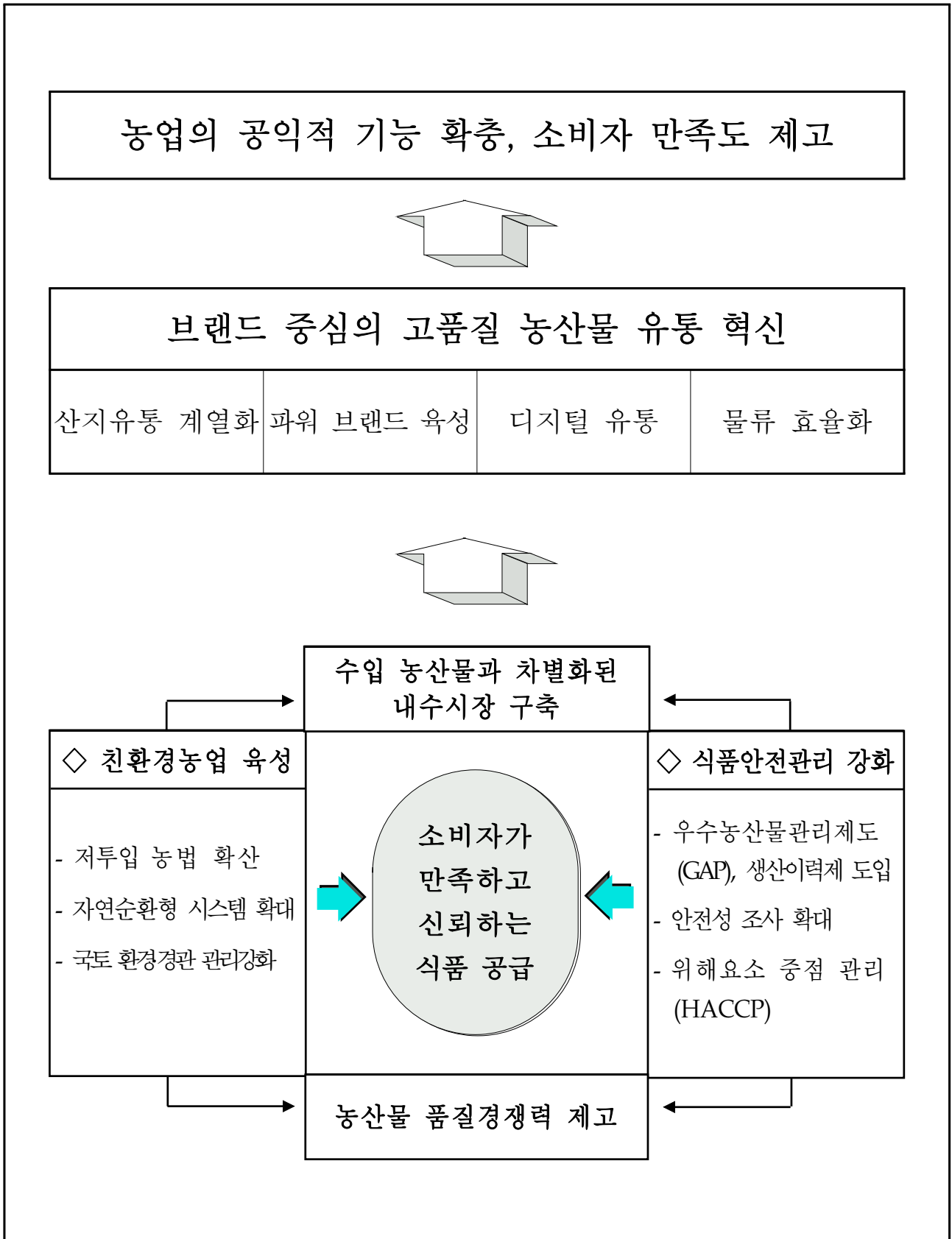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감귤원정비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비된 포장에 대해서는 매매, 임대 등의 경우에도 다시 감귤나무를 식재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폐원된 포장에 감귤나무를 다시 식재(매매후 타인식재 포함)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조치
- 사후관리기간 : 폐원 익년도부터 10년간

라. 추진 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부적지감귤과원정비	100% 정비 (3,310ha)	-	-

## 2.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업으로 발전



## 2-1.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 비료·농약 과다 사용, 집단사육 등 고투입 농법에 의존한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영농**으로 과감하게 전환

□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차별화** 촉진

○ 친환경 농산물 인증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편**

- 저농약 인증농산물은 명칭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05)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물류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 자조금 조성을 활성화하여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현행 3%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 다수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친환경직불제 등 정부 지원도 내실화

○ 생산비 절감 기술, 다양한 친환경 농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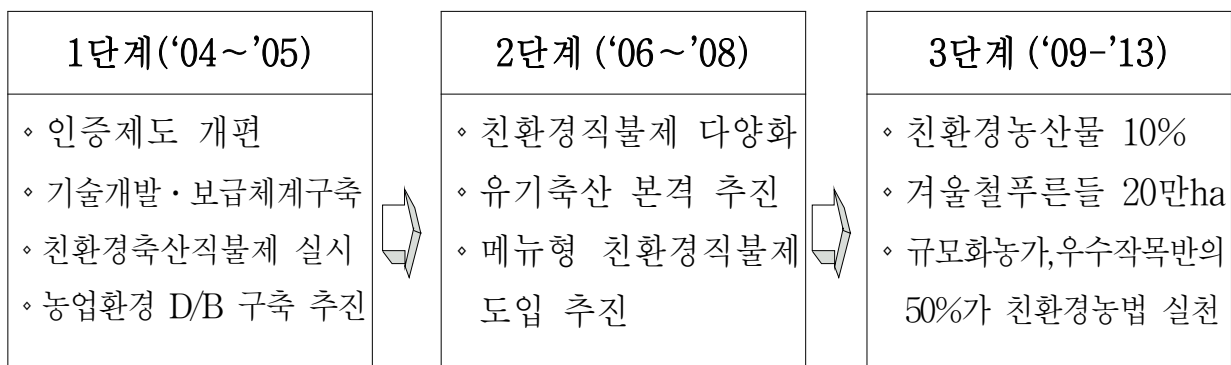
- 농업기술센터별로 전담자 지정, 친환경 농업 시범포 설치 등으로 현장에 밀착된 기술개발 체제 구축

○ 단지화된 작목반, 규모화 농가를 중심으로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초생띠 조성 등 실천 유도



- 인증 농가에 한정된 친환경직불제 지급대상을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일반 농가로 확대
  - 농가여건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메뉴형으로 전환
-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산하고, 지역별 농업환경 계층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 환경·경관 관리를 강화
-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04)
  - \* (소) 초지·조사료 자원 확보 및 분뇨 환원, (돼지·닭) 사육밀도 완화 및 분뇨 환원, (공통) 분뇨처리 경로 확인,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기록, 교육 이수 등
-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확대
  - \* 액비저장조 : ('03) 680기 → ('04~'08) 8,800, 축분비료유통센터 : ('04~'08) 20개소
- 사료영양관리를 통해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고 적정 시비량 대비 분뇨 배출과다 시·군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 추진
- 지역별 농약, 화학비료, 분뇨 등의 환경 위해 정도를 나타내는 농업환경 지도 작성 등 농업환경 계층시스템을 D/B화

### < 추진 일정 >



## 2-1-1.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 사업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지역단위 농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지구를 조성하여 실천함으로써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친환경농업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퇴비화시설, 미생물발효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
- 추진실적 : '03년까지 1,995억원(611개소)지원
- 지원조건 : 국고40%, 지방비40, 자부담20

######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 친환경농업핵심기술인 INM·IPM 교육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 추진실적 : '03년까지 34억원(34개소)지원
-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30, 자부담20
- \* 시범마을은 지구조성사업 규모확대를 위해 '05년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통합운영 계획

#### □ 문제점

- 저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중은 2% 수준으로 선진국의 (유기농산물기준)생산비중 2~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친환경농업 생산비중 확대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생산기반 확대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마을 및 지역단위 친환경농업기반조성 확대 추진
- '04부터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개선
  - 지역별로 특화된 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및 자금지원방식 등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다. 세부추진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10% 달성과 화학비료 및 농약 40% 절감 달성을 위해 마을단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
  - 2013년도까지 법정리(15481里)의 10% 수준인 친환경농업지구 1,500개소 조성
- '04부터 대·소규모 사업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 허용
  - 사업규모는 10ha, 10농가이상으로 단일화, 하한선만 규정
  - 사업내용에 따라 2~10억원 범위내에서 자금규모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기 추진된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은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 유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사업지구확대	'05년까지 721개소 조성 (2개년간 76개소)	'08년까지 933개소 조성 (3개년간 212개소)	'13년까지 1,500개소 조성 (5개년간 567개소)

## 2-1-2.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EU 농업선진국들은 시설원예 해충방제 시 농약대신 90%이상 천적 방제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를 구축
- 우리도 천적방제를 도입하기 위해 95년부터 농진청에 천적연구실을 설치하고 천적발굴과 농가에 적용시험사업을 추진해왔으며,
  - 민간부문에서도 국내 시설원예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충을 천적으로 방제할 수 있을 정도로 천적방제기술이 개발되는 등 천적방제를 국내에 확산하기위한 기반이 조성됨
-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추진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 추세이나 농약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
  - 특히 원예작물의 농약사용량은 '99년 대비 25%이상 큰 폭 증가하여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방법의 획기적 전환 필요
  - \* 원예작물 ('99) 7.5kg/ha → ('02) 9.4 (25%증가)
-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경쟁력 제고와 농약사용량 조기감축을 위해 시설원예작물 화학농약에 의한 방제방식 개선 필요

#### □ 문제점

-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조사결과 병해충방제가 최대 애로 사항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해충방제를 위한 검증된 대책이 필요하지만 천적방제기술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농가가 채택하기가 어려운 실정
- 해충방제방법으로 선진국에서 검증되고 보편화된 천적방제방법을 조기 확산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물학적 방제 정착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13년까지 시설원예재배면적 10만ha중 5만ha(50%)를 천적방제로 전환하여 원예농가에 천적방제 확산 및 농약사용량 절감
  - 시설재배면적의 20%는 정부가 지원하고, 30%는 정부사업의 파급효과로 확산되도록 유도
- '05년도에는 수출농산물 등 과채류 위주로 300ha에 시범사업 추진 후 '06년부터 전국 시도 대상 매년 2,000ha정도 방제 지원계획

## 다. 세부추진내용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상농가에 천적방제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2013년(9년간)
  - 총사업비 : 1,460억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천적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농업인에 천적구입비 지원
- '05년 예산 : 1,195백만원
  - 천적방제면적 : 300ha(ha당 730만원), 1,095백만원
  - 천적컨설턴트양성 : 168개 시군별 1명, 100백만원
- '05년도에는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 등 4개 작목 사업 추진 후 '06년부터는 대상작목과 지원규모를 확대 계획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천적방제면적 확대지원	○ 천적방제기본계획 수립 ○ '05예산확보	○ 천적해충방제면적 확대지원 - 6,800ha	○ 천적해충방제면적 확대지원 - 13,200ha

## 2-1-3.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친환경농산물 수요는 매년 40% 이상 증가하여 2010년 국내 시장규모는 4조원을 상회할 전망
  - 그러나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2%수준에 불과하여 이탈리아,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
- 급증하는 국내 유기농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가진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이 시급
- 또한 집약축산으로 가축분뇨 총발생량은 3,311만톤('03기준) 이지만 이를 양질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유기경종과 유기축산 연계시스템은 미흡
- '95년부터 추진해온 10~50ha 규모의 지구조성사업은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했지만 소규모 사업의 한계로 지역 또는 수계단위의 환경개선에는 미흡
- 친환경농업 기반확충과 축산분뇨 등 농축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해 지구조성사업과 연계한 광역적 친환경 접근방식 도입 필요

#### □ 문제점

- 지구조성사업이 지구내의 축산분뇨 자원화와 농약·비료사용량 감축 등 환경부하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하였음에도 소규모로 추진되어 지역단위 수계 차원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에는 미흡
- 따라서 지역별·수계별 물질균형과 건강한 생태계가 보전되도록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로 높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감축을 위해 4대강유역·새만금상류·시군친환경농업특구 등 환경민감 지역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 조성
- 연차별 추진계획
  - 2005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대상지역 선정, 기초조사 및 단지별 표준사업모델 개발 용역추진
  - 2006년 : 친환경농업실천이 시급한 환경민감지역부터 시범사업 추진
  - 2007년 :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13년(9년간)
  - 총사업비 : 5,004억원 추정(국비60%, 지방비30, 자부담10)
  - 사업규모 : 단지당 1,000ha규모(100억원 수준) 50개소
  - 지원내용 : 환경오염경감시설 등 자원화시설, 친환경생산 유통시설, 생태마을 조성 등
- '05년 예산 : 385백만원
  - 수계별 기초환경조사 (70백만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모형개발 (315백만원)
- '05년도 모형개발 결과에 따라 '06년도에 시범사업 3개소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기본계획수립 ○ '05신규예산 확보	○ 사업모형개발 및 시범광역단지 추진 - 15단지 조성	○ 광역단지 확대추진 - 35개단지 조성

## 2-1-4.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 체계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강조되면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99	'00	'01	'02	'03
농가수(호)	1,306	2,448	4,678	11,892	23,309
생산량(톤)	26,643	35,406	87,279	200,374	365,849
면 적(ha)	875	2,039	4,553	11,239	24,564

- 생산량증가와 소비자의 욕구 증대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형태도 전문화·다양화 되어가고 있음

- 초기 생산자·소비자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직거래 방식에서 친환경농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체인점 형태의 전문매장이 형성되는 등 유통시장의 다양화되고 시장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추정) : ('01) 2,000억원 → ('02) 2,800 → ('03) 3,900

#### □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유통업체별 다품목 소량 취급 등으로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되고, 전체적인 수급조절 및 분산 기능이 취약
- 다양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 System이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생산 목표 : ('05) 5% → ('10) 10
- 안전성이 보장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급증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와 유통시장 확대 전망
- 생산량 증가에 따른 물류의 원활한 공급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도모
-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센터 구축으로 원활한 수집·분산기능의 수행, 물류비용 절감, 적정가격 형성·유지, 적절한 수급조정이라는 사업적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기반 구축
  - 수도권(1) : '10년 대비(친환경농산물 비중 10%) 연간 30만톤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구축
  - 광역권(4) : 연간 10만톤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통기반 연차적으로 구축
- 사업기간 : 2013년까지 5개소 구축
- 주요지원 내용 : 부지 및 물류시설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6~'07)	2단계('08~'09)	3단계('10~)
○ 통합물류센터 구축 : 5개소	○사업량 : 1개소 - 수도권 통합물류 센터 구축	○사업량 : 1개소 - 중부지역 통합물류 센터 구축 확대	○사업량 : 3개소 - 부산등 대도시 통합 물류센터 구축 확대

## 2-1-5.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증가 정책에 힘입어 생산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선호와 웰빙열풍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 확대
  -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01) 87천톤 → ('02) 200 → ('03) 366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현황 ('01) 477개소 → ('02) 602 → ('03) 701
  - 추정매출액 ('02) 2,800억원 → ('03) 3,900억원
-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소비자단체중심의 직거래 위주로 유통되었으나, 최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문판매업체등의 유통 비중이 커지고 있음

#### □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로 인해 직거래 위주의 유통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시장의 유통에서 시장유통으로의 비중증가로 현재의 소규모 개별 유통체계의 비효율성 증가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에 비해 산지를 통한 집산기능이 취약하여 출하처 확보가 곤란하고 이로 인한 농가의 시장 교섭력 저하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확대  
(‘01) 0.2% → (‘03) 2% → (‘05) 5%→ (‘10) 10%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 농협 및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의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산지 거점화로 생산농가의 시장교섭력 고양
- 사업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참여조직별 자금 운영 재량권 부여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업내용
  - 공동계산등을 위한 출하선도금
  -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 유통시설 원료구입자금
  - 직거래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 사업기간 : ‘06~’13
- 조성자금 : 3,000억원(국고 용자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농협, 영농법인, 친환경농업단체등)
- 대상품목 : 친환경농산물 전품목(인증종류별 지원 차등화)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6)	2단계(‘07~’09)	3단계(‘10~ )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유통 활성화 사업 시범실시	○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20% 사업추진	○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30% 사업추진

## 2-1-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정비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친환경농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그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도입·운용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04.9월현재 8개)
  - 인증실적 : ('00) 35천톤 → ('01) 87 → ('02) 200 → ('03) 366

#### □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가 복잡하여 소비자의 식별 곤란
  - 인증종류(4) :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 유통규모(추정) : ('00)1,500억원→('01)2,000→('02)2,800→('03)3,900
- '04.9월 현재 8개 민간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회원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인증하는 등 활동이 미미한 실정
  - 인증심사 전문인력 부족, 새로이 시작된 민간인증제에 대한 신뢰 미성숙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고품질·안전농산물 선호추세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인증수요도 증가 전망
-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위해 인증제도 정비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다. 세부추진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간소화 방안 강구
    - 2005년중 생산자·소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단계인 인증단계 축소 또는 개선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 철저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에 대한 구체적 인증기준 마련 등
  - 민간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행
    - 정부(농관원)의 인증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장기적으로는 민간인증제로 전환
    - 정부(농관원)는 인증기관 관리·감독, 인증농산물의 품질관리 담당
- \* 외국의 인증제도 개요
- 인증종류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 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정부는 인증기관 지정 및 감독업무 수행)
  - 인증대상 : 생산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 라. 추진일정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및 하위규정 정비 : '05년중
  - 인증단계 축소, 유통업자 인증제 도입, 민간인증 활성화방안 등

## 2-1-7. 밭토양 유실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 가. 현황 및 문제점

- 밭 토양유실은 토양내의 비료성분 유실로 추가적인 비료투입 야기
- 유실된 토양 중 질소, 인산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초래
- 따라서 비료·농약의 저투입과 함께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 시행으로 저투입 및 수질오염원 감축 필요
- \* 전국의 밭은 90%가 경사지에 있어 연간 약 2,600만톤의 토양 유실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대상농업인은 밭 토양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등고선재배, 초생띠나두렁 조성, 단작지대에 녹비작물 재배 등 이행
- 이행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접지불금으로 이행비용을 지원
  - 조건불리 직불 시행시 수혜농가는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 의무조건으로 부과
- \* 소규모 농가도 의무이행 여부의 점검 확인이 용이하여 밭농업 상당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데 적절한 사업으로 기대

### 다. 세부추진내용

- 조건불리 직불제 시행시 경사도가 심하고, 하천 인근에 있어 하천으로의 토사유출이 심한 지역을 우선 추진

### 라. 추진일정 : 조건불리 직불제 일정과 연계 추진

## 2-1-8. 농업환경 계측시스템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 농업환경에 대한 기초 데이터 확보 및 농업생산의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 미 농무성은 미 전역에 대해 비료, 농약의 환경위험 정도, 토양침식 정도 등 모든 농업환경 관련 상황을 지도화하여 관리
- 우리도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반 농업환경 상황을 전국적으로 지도화하여 관리하고, 계측업무를 담당할 인력 및 조직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전국 농경지의 환경민감도에 따른 등급구분, 비료·농약 투입 및 환경위험 정도, 토양침식도 등 농업환경 관련사항의 D/B 구축 및 지도 작성
- 연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동 사항을 계측하여 환경여건 및 개선정도를 평가하고 친환경농업정책 결정 기초로 활용
- 기반공사, 농진청, 농업기술센터가 역할 분담하여 추진

### 라. 세부추진내용

- 2004년까지 외국사례 조사 및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료 연구, 조사 및 세부 사업추진 계획 수립
- ARPC 연구과제로 2005년부터 추진

### 마.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업환경 계측 시스템 구축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완료	○ 시스템 활용 및 보완

## 2-1-9. 비료 수급관리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화학비료는 '90년(237만톤)을 정점으로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능력(450만톤)이 소비량을 2배 상회하고 있음
  - 8개 업체가 연간 350만톤을 생산하여 170여만톤을 국내공급하고 나머지는 수출
  - \* 비료소비량(ha당) : ('90) 458kg → ('00) 382 → ('01) 343 → ('02) 338
- 비료소비는 화학비료에서 환경친화형비료로 전환되는 추세임
  - 요소 : ('98)37만톤 → ('99)42 → ('00)39 → ('01)32 → ('02)31
  - \* 환경친화형비료(저농도,완효성비료) : ('98)13.2% → ('00)34.3 → ('02) 54.3
- 유기질비료(퇴비)는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점차 생산·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1,000여개 업체에서 연간 250만톤을 공급
  - \* 소비량(kg/ha) : ('90) 100→('97) 518→('00) 764→('01) 815→('02) 1,238

#### □ 문제점

- '91년부터 시행된 화학비료판매가격에 대한 차손보조는 그동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었지만
  - 농업경영비 중 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과다시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추세의 시대적 흐름과 배치
  - \* 농업경영비중 비료비 비중 : ('65)30.5%→('75)18.9→('85)10.9→('03)5.2
-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확대(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등) 됨에 따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 방향

- '04년부터 정부 화학비료 수급관리계획수립이 폐지되어 가격·생산·공급이 시장기능으로 대체되고 정부는 품질관리에 전념
  - 국제 원자재가격(요소, 납사 등)에 따라 비료가격도 상승·하락
- 화학비료 보조사업은 '03~'05년중 년차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퇴비) 보조사업은 확대
  - 작물과 토양에 적합한 BB·완효성·유기질비료로 수요가 변화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양보전, 자원순환을 위해 퇴비공급 확대
  - 퇴비의 공정규격을 다양화하고 기능성 퇴비의 생산·공급

## 다. 세부추진내용

-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공급감축 및 적정시비 유도
  - '05년까지 화학비료차손보전사업 폐지를 통한 공급감축
  -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시비, 주문배합비료 공급확대 유도
-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
  - '05년부터 유기질비료 보조 단가 및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7년부터는 보조율을 톤당 50,000원으로 인상하고 보조물량을 150만톤으로 확대 ('03년: 보조율 35,000원/톤, 보조물량 60만톤)

- 비료 품질관리 및 불량비료 유통단속 강화
  - 부산물비료(퇴비)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중점관리
- 농업인의 합리적 비료 선택과 사용을 지도·교육
  - 경제적 시비기술, 토양환경오염, 균형시비기술 지도 등
- 비료·농약계정적자보전은 '08년까지 상환완료를 목표로 추진

#### 라. 추진일정

세부사업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화학비료차손보전 사업	화학비료 차손보전을 50% 감축	나머지 50% 감축후 제도 폐지	유기질비료 정부 보조
○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사업체계 마련	사업시행 - 물량 및 보조율 확대	
○ 비료·농약계정적자보전사업		'08년까지 상환완료	

## 2-1-10.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토양은 주로 화강암에서 유래되어 노후화된 산성토양이며,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빨라 전반적으로 지력이 낮은 편임
  - 적정산도 : 6.5pH (현행) 5.7
  - 적정 유효 규산함량 : 130ppm (현행) 86
  - 적정 유기물 함량 : 3.0% (현행) 2.2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실천기반 조성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은 농정의 방향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과제임
- 토양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양개량제(석회, 규산)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토양개량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반영
- 토양 유기물 증대 및 화학비료 감축 등 작물양분의 적기·적량 시비 추진
- 겨울철 녹비·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유지·보전

## 다. 세부 추진대책

### 《 추진목표 》

- 토양산도 : (현재) pH 5.7 → (2013) 적정치 6.5 목표로 추진
- 유효규산함량 : (현재) 86ppm → (2013) 적정치 130 목표로 추진
- 유기물 함량 : (현재) 2.2% → (2013) 적정치 3.0 목표로 추진

### 《 세부 추진내용 》

#### □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추진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에 토양개량제를 4년 1주기로 공급·살포
  - 전체 농경지중 85%에 해당하는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 미만인 논토양과 토양산도(pH) 6.5미만인 밭토양에 공급·살포
  - 물 량 : ('03) 779천톤 → ('04) 674 → ('05~'13) 6,586
  - 지원금액 : ('03) 521억원 → ('04) 449 → ('05~'13) 4,768
- 화학비료 판매가격 단계적 현실화 및 사용량 축소
  - 고농도 질소비료인 요소·유안의 보조제외('03.9월), 나머지 화학비료에 대해 '04~'05 2년차에 걸쳐 보조 폐지
-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개선을 위한 토양객토 유도
  - 폐광산 오염농경지, 연작피해지 등 취약농경지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사업 또는 농업종합자금지원 사업으로 객토 추진
  - 사업량(사업비) : ('03) 2천ha(24억원) → ('04~'13) 20 (240)

□ 토양 유기물 함량증대를 위한 대책추진

- 화학비료 감축에 따른 유기물비료 지원확대
  - 유기물비료 공급을 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
  - 지원액 : ('03) 210억원 → ('04) 210 → ('05~'13) 5,130
- 겨울철 녹비·사료작물재배 확대로 유기물 함량증대 및 지력증진
  - 파종작물 : 자운영,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과 사료작물
  - 재배면적 : ('03) 120천 ha → ('04) 130 → ('05~'13) 1,480

□ 적정시비기술 지도 및 질소비료 감축 등 『흙살리기 운동』 전개

- 토양검정결과, 농가별 시비처방에 따른 적정시비 및 질소질비료 적정량 공급·살포
  - 농진청(농업기술센터) 148개 시·군, 농협 토양진단센터 301개소
- 토양검정 실증시범포 운영을 통한 시비기술 지도 및 홍보
  - ('03년까지) 147개소 → ('10년까지) 157개소
- 농업 토양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을 통한 적정시비 유도
  - ('03년까지) 71개 시·군 → ('06년까지) 전국 170개시군으로 확대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산도(pH)함량	5.7	5.9	적정치 6.5를 목표로 추진
○ 유효규산함량(ppm)	86	90	적정치 130ppm을 목표로 추진
○ 유기물 함량(%)	2.2	2.5	적정치 3.0%를 목표로 추진

## 2-1-11. 겨울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토양은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빨라 유기물함량이 낮고, 전반적으로 지력이 낮음
  - 유기물 함량 : 적정 3.0%, 현행 2.2%
-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 증대 및 고품질·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겨울철에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대를 지역 특화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지원해 왔음
  - 전체 추진실적 : ('00) 46천ha → ('01)67 → ('02)78 → ('03)75
  - 종자대 지원대상 : ('00) 32천ha → ('01)41 → ('02)45 → ('03)51
- 그러나 동 사업을 지역특화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 자치단체장의 의지 또는 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지역특화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의 특성상 동 사업의 유지·확대에 한계가 있음
  - 고품질·친환경농업을 위한 친환경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등과의 연계추진이 더욱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도 현행방식 보다는 구조개선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경지 유기물함량 증대 등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실천기반 조성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은 농정의 방향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
- 토양 유기물 증대 및 지력증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의 보조 확대와 동시에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 확대 필요
  -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이외에도 토양의 물리성 개선, 토양피복효과, 경관조성 등의 효과도 높음

## 다.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 □ 토양 유기물 함량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 화학비료 감축에 따른 유기물비료 지원확대
  - 유기물비료 공급을 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05년부터)
  - 지원액 : ('03) 210억원 → ('04) 210 → ('05~'13) 5,130
- 겨울철 녹비작물재배 확대로 유기물 함량증대 및 지력증진
  - 파종작물 : 자운영,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
  - 추진목표 : (현행) 50천ha → ('09) 70천ha → ('13) 80천ha

### □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확대를 위해 종자대 지원

- 파종작물 : 자운영,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 농경지내 유기물 함량 적정치를 목표로 추진

- 유기물함량 적정치(%) : 3.0%

## 2-1-12. 농촌 폐비닐 수거

### 가. 현황 및 문제점

- '03년 기준 국내 폐비닐 발생량은 257천톤 수준이나 수거량은 151천톤에 그쳐 전체 발생량 대비 수거율은 59% 수준임
  - 수거량 151천톤 : 한국환경자원공사 수거 126천톤, 민간 수거 25
- 지자체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폐비닐 수거보상금』 명목으로 50~100원/kg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일부 지자체는 예산 미확보 등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 폐비닐 수거보상금 확보현황('03) : 조사대상 시군수 180개소, 예산확보 지자체 142개소, 예산미확보 지자체 38개소
- 미수거된 농촌지역 폐비닐로 인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경관이 악화되고 있으며, 농경지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 농촌폐비닐은 생활폐기물로서 해당 지자체에 수거 책임이 있으나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부에서 폐비닐수거비를 30원/kg씩 정액 지원중
  - '04 사업물량 및 사업비 : 85천톤, 2,550백만원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시설재배 작물의 증가 등으로 비닐사용량은 앞으로도 증가 될 전망이나 수거 당사자인 농업인들의 고령화 등으로 폐비닐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농촌 폐비닐의 재고량은 매년 증가 추세임
  - 폐비닐 재고량 : ('00) 302천톤 → ('01) 328 → ('02) 354 → ('03) 394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활성화 및 책임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폐비닐 수거율 제고, 참여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부 예산 지원

## 다.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대해 수거비를 지원
  - 지자체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폐비닐수거비를 지원
- 사업단가는 30원/kg, 정액으로 지원하되 사업물량은 수거 가능량까지 확대하여 지원
  -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2-1-13.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축산분뇨 발생량은 사육규모화에 따라 증가 추세
  - 연간 발생량('03년 기준) : 49,830천톤(1일 137천톤)
  - \* 축종별 구성비 : 한우 15.8%, 젓소 17.3, 돼지 58.1, 닭 8.7
  - 돼지분뇨 발생량 추이 : ('92) 17백톤 → ('97) 22 → ('03) 29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율 및 자원화비율 증가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91~'03년간) : 9,644억원
  - '02년말 설치대상 59천 농가의 98%가 분뇨시설 설치
    - 축산분뇨처리 설치율 : ('92) 60% → ('97) 89 → ('02) 98
    - (자원화시설 설치율) : (19%) → (80) → (92)
  - 설치유형비율 : 퇴비 80%, 액비 3, 퇴비+액비 9, 퇴비+정화 5, 정화처리 3
- 축산분뇨 관리체계는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 농림부는 신고·허가규모 농가 처리시설 지원 및 기술지도
    - \* 신고대상(축사면적) : 소·말 100㎡ 이상, 돼지 50㎡, 닭 150㎡
    - \* 허가대상(축사면적) : 소·말 900㎡ 이상, 돼지 1,000㎡
  - 환경부는 汚糞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신고업무, 축산분뇨 처리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 시·군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지원 : 76개소 (운영중 41, 설치중 35)

## □ 문제점

-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화 수요 한계로 축산분뇨처리 곤란
  -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대부분 슬러리축사(80%)로 수분함량이 많아(95%) 축산분뇨 처리 곤란
  - 퇴비는 화학비료보다 비싸고(4배), 액비는 악취발생 및 운반·살포가 어려워 경종농가의 수요가 적음
- \* 벼 10a당 살포시 : 화학비료 14,820원, 퇴비+화학비료 : 59,010원
-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과 시설·장비의 조기 노후화
- 지자체에서 축산분뇨 부적정 처리자에 대한 단속 소홀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 전 망

- 축산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원농지 등 수요처 감소 및 과잉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
  - 축산분뇨 방치, 무단방류, 부적정처리 등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시 국민적 비난과 함께 환경규제 강화
- 해양배출 기준강화 등 국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축산분뇨 처리정책 추진 필요
  - 해양배출량 규제시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 요구 증가 예상
  - ※ 축산폐수 해양배출량 : ('97) 52천톤 → ('00) 765 → ('03) 2,006

- 수질보전·악취방지 등 환경규제강화, 농·축산물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환경과 조화하는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필요

## □ 추진방향

- 환경과 조화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분뇨 발생량 감축
  - 발생분뇨 처리라는 사후관리 위주에서 지역 환경용량에 부합되는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 사전예방과 수요중심 정책으로 전환
- 농장별 축산분뇨 적정처리 유도
  - 발생분뇨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축산농가 책임하에 처리토록 유도하고, 정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보완자금 지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발생한 축산분뇨는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형 농업 유도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 체계 구축
-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 확대
  - 현행 오분법 규정을 강화 밀집사육지역 등도 가축사육제한 근거 마련 등
- 축산분뇨 관리·이용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강화

## 다. 세부 추진내용

### □ 환경과 조화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으로 적정 사육두수 유도
  -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해 가축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의무화 및 사육밀도 완화를 통한 분뇨발생량 감축
- 가축밀집 사육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집단사육지역 농가분산 유도
  - 밀집사육 지역내 농장의 청정지역 이전시 친환경축사 신축비 등 지원
    - '05~'06 시범사업(5개소) 추진후 확대추진 검토(개소당 11억원 지원 : 국고 용자 10억원, 보조 1억원)
-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 양분총량제 시행 사전 준비('05~'06)
    - 지역환경 용량 산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가축단위(LU) 설정 등 조사·연구 추진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07)
    - 양분공급 현황을 평가, 양분 잉여도가 높은 지역은 차년도 양분총량 감축목표 제시 및 이행
    - \* 양분과다 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축산·비료관련 정책 지원 중단
- 양분총량제 실시후 문제 지속시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11)

###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 현행 오분법 중 축산폐수관리 관련사항과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마련 중심으로 개편('05)
  - 환경부장관 : 오염규제, 공공처리 등 관리·지원
  - 농림부장관 : 퇴·액비 사용 등 자원화관련 제도지원 및 관리
  - \*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이용에 대한 공동인식 및 관리를 통한 축산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환경부와 공동 추진)

## □ 축산분뇨 적정처리 유도를 위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신규 및 보완자금 지속 지원
  - 지원액('91~'03) : 9,644억원 → ('04) 402
- 퇴·액비의 품질향상 등 자원화촉진을 위해 고액(固液)분리가 가능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유도
  - 축산농가의 전(前)처리 시설 설치사업 지원('05)
-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실태 사후관리 강화
  -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D/B화 추진
  - 가동중단·불량시설 농가에 대한 시설설치 및 보완촉구 등사후관리 강화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농가 축산환경개선 지도 지원
  - 일선축협 등을 통한 지도(컨설팅)

## □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 및 이용활성화 유도

- 농협을 통한 유기질비료(축분퇴비) 가격차손보전 연차적 확대 지원
  - ('99~'03) 220만톤/800억원 → ('04) 60/210 → ('05.P) 70/315
-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 액비화이용 활성화 지원
  - 경종농가의 액비활용 유도를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01~'03) 1,262개소 → ('04) 800개소, 136억원(국비 41)
    - \* 1기당(200톤), 2~3만평 살포 가능
  - “축분비료유통센터”에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지원
    - ('03) 35개소 → ('04) 5개소, 10억원(국비 4)

## □ 퇴·액비의 악취저감 및 품질향상

- 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미생물 제제) 첨가를 통한 악취저감 유도('04)
  - 양돈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를 첨가하여 생산토록 배합사료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등 권장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사료공정규격 개정을 통한 발효촉진제 첨가 유도

- 배합사료 가격인상 대비 악취 및 분발생 저감효과 분석 등 추진('05)
- 퇴·액비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
  -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유도되는 퇴·액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비료성분 분석 무료 실시(농협중앙회)
  - 이용편의 및 악취방지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쉽게 판단이 가능한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마련 보급(연구용역 실시) 추진
- 불법·불량비료(퇴·액비)가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강화
  - 부산물 비료(퇴비)의 주요성분 함유량 표기 유도
  - 농촌진흥청, 시·도, 농협의 지속적 지도·단속 실시
- **축종별 가축단위(Livestock Unit) 설정 및 배출단위 재설정**
  - 농가 및 지역단위 양분 평가, 관리대상 규모의 설정 등 정책 평가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단위 설정
  - 배출원단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고시하고, 5년마다 재조사
    - 양돈분뇨 배출량 : (현행) 8.6L일/두 → (현장의견) 5~6L일/두
- **환경부 지원“축분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타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방향 정립 및 지역별 적정처리 모델 보급
  - 현행“오분법”의 축산분뇨관련 부분을 분리하여 “가축분뇨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05년 상반기중 마련
- **축산분뇨처리 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홍보 강화**
  - 축산분뇨의 자원화 처리방법·이용, 악취저감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추진
  - 축산분뇨처리 우수농가 발굴, 사례집 제작·배포 등 교육·홍보 강화
  - 축종별 다양한 표준설계도 및 친환경 축산시설 개발 및 보급
  - 농업기술 교육지원 및 축산환경 교육센터 운영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분퇴비 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01)339가→('02)442→('03)682→('04) 800</li> <li>○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 사업비 : 402억원 ※ 설치율 : 98%</li> <li>○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 -('04)5개소 →('05) 10</li> <li>○ 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 첨가 유도 -행정지도 등 권장 추진</li> <li>○ 축분퇴비판매가격차손 보전 -('04) 60만원/210억원→('05)70/315</li> <li>○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제정 추진('05) -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유도</li> <li>○ 가축밀집사육지역 농가분산 유도('05) -시범사업 실시후 확대 추진</li> <li>○ 배출원 단위재설정 추진('05)</li> <li>○ 사료공정규격 개정을 통한 발효촉진제 첨가 유도 -약취 및 분발생 저감효과 분석 추진('05)</li> <li>○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전처리시설 등 고액분리시설 지원('05)</li> <li>○ 축산환경개선지도지원(매년 2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업등록제('07)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와 연계한 과밀사육 예방</li> <li>○ 축분통합관리운영센터 시범사업 추진(환경부 협조)</li> <li>○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도입 -모니터링구축 등 사전시행 준비('05~'06) -양분총량제 도입('07)</li> <li>○ 축종별 가축단위 (LU) 설정 -연구용역 추진('05~'06) -축종별 가축단위 확정 및 지역별 사육밀도 평가('06)</li> <li>○ 축산환경개선지도지원 (매년 2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가축총량제 도입·검토('11)</li> <li>○ 배출원 단위 재설정 추진 -5년마다 재조사 실시</li> <li>○ 축산분뇨처리 기술 개발 지속 추진</li> <li>○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 설치율목표 : 99%</li> <li>○ 축산환경개선지도 지원(매년 2억원)</li> </ul>



## 2-1-1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조사료 수요량은 4,200천톤으로 이중 850천톤(20%)을 수입
  - 초지·사료작물재배 : 137천ha(초지 47, 사료작물 90)
  - 목·건초 1,346천톤, 볏짚·산야초 2,000, 수입 850
- 축산농가는 이용이 편리한 수입 조사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인력·장비 부족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을 기피
  - 사료작물재배지 확보가 어렵고,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는 연간 사용일수(30일)가 적어 장비구입시 농가자금 부담이 가중
-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 및 조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연결체, 축협조합 등
  - 지원내용 : 초지조성 및 보완, 사료작물재배, 볏짚처리, 기계·장비 등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남는 논·밭에 사료작물 재배를 활성화하여 축산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고, 축산물생산비 절감 및 수입조사료 대체 필요
  -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하여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채벼·보리 생산 확대로 국내 조사료 생산확대

## 다. 세부 추진내용

- 남는 논·밭 등 농경지에 하계 및 동계 사료작물 재배
  - 종자·비료 현물지원, 지역별 적합한 종자공급 및 기술지도
-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채보리 생산·이용 활성화
  - 연차별 계획 : ('03) 859ha→('04) 2,681→('05) 6,281→('10) 8,000
- 조사료 생산·이용 기계화 추진
  - 연차별 계획 : ('03) 20set → ('04) 50 → ('05) 70 → ('10) 100
- 벧짚 암모니아 처리 및 생벧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추진
  - 암모니아 가스 주입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시 비닐 공급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① 조사료 급여 비율 확대	- 급여 비율 : 45%	- 급여 비율 : 50%	- 급여 비율 : 60%
② 총채보리재배면적 확대	- 재배면적 : 2,000 ha	- 재배면적 : 6,000 ha	- 재배면적 : 8,000 ha
③ 사료작물재배면적 확대	- 재배면적: 92천ha	- 재배면적 :110천ha	- 재배면적 :120천ha

## 2-1-15. 유기축산 시범사업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유기가축 및 축산물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제정(친환경 농업육성법시행규칙에 제정, '01.7.31)
    - \* 국내 유기축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표준모델 개발 연구 실시('01.11)
- 국내 유기축산 생산규범이 없을 경우 외국의 유기축산물이 국내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 유기축산시범사업 추진
  - 국내 축산농가는 유기축산에 필요한 유기배합사료 및 조사료 확보가 어려워 생산비는 높은 반면, 가격보장이 불확실하여 참여기피
    - 또한, 유기축산 사양관리기술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미비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관행적인 축산에서 탈피하여 유기축산에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사양관리 기술개발 및 비전 제시
  - 국내에 적합한 유기축산모델을 개발하고 세부사양관리기준 제시
  - 유기축산에 참여하는 농가는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 지원검토

## 다. 세부 추진내용

### □ 한국형 유기축산모델('03~'05)

- 한우·젓소·돼지·닭 등 축종별 유기축산사양관리 모델 개발
  - 시범사업을 분석·평가하여 유기축산을 위한 축산농가의 사양관리 지침을 개발하고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
  - ※ 사육두수 : 한우 52두, 젓소 27두, 돼지 36두(후보돈), 육계 6,000수, 산란계 2,000수
  - 축산분뇨를 초지로 환원하여 유기 조사료 확보

### □ 한국형 유기축산육성 종합대책수립('06)

- 수입 유기축산물 및 유기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세부인증절차 및 표시기준 설정
  - 수입 유기축산물에 대한 세부인증기준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유기축산물 수입 예방 방지
- 유기축산 생산자 조직화
- 유기 축산물 생산에 따른 기술정보 공유
- 유기 축산물 소비자 인식제고 및 판로 공동 개척

### □ 유기축산 홍보활동 강화

- 소비자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강화 및 농촌관광과 연계 검토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유기축산시범사업	○ 시범사업 실시	○ 한국형 유기축산육성 종합대책 수립('06) ○ 전환기 유기축산물 및 유기축산물 인증 ○ 유기조사료 시범 생산포 조성 ○ 시범사업평가 및 사양관리기준 제시	○ 유기축산물 생산 확대 및 제도 정착

## 2-2.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농산물

- 재배·수확·세척·포장·운송과정에서 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본격 도입
  - ‘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한 GAP 관리지침을 마련
    - ‘04년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GAP도입 근거 마련
  - 참여농가가 GAP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구축·운영
  - 생산자 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인증체제로 정착

	‘03하반기	‘04	‘05	‘06 이후
○ 사업 대상	채소·과일류, 특용작물, 수출농산물 등 중심으로 시범사업			품목 확대
○ 제도 정비	- 근거법		근거법마련	하위법령 제정
	- 재배지침	66품목	15품목	15품목
○ 교육		교육체계구축	교육 실시	교육 의무화

-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품의 시장유입 방지
  - 산지 거점 시·군에 정밀분석실을 확충하고 안전성 조사를 확대

\* 정밀분석실 : (‘03) 9개→(‘09) 47, 안전성조사 : (‘03) 58천건→(‘13) 90

- 안전성 조사 범위를 농약, 중금속, 아플라톡신 이외에 병원성 미생물, 생산환경(토양·수질·자재) 등으로 확대('07)
  - 안전성 기준 위반자는 D/B화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법적 제재 뿐 아니라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배방법, 농약사용량 등을 소비자에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본격 실시('06)하고, 각종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편
- GAP농산물, 수출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를 시범 실시('04)하고, '06년부터 96개 품목으로 확대
    - 신속하고 정확한 리콜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농산물에 대한 기초정보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13개의 각종 표시제, 인증제의 통폐합 추진
  - 소비자가 직접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성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농식품안전포털사이트』 구축('05)
-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유해물질 절감기술 등 관련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설정
- '13년까지 미생물 농약 33종을 추가 개발하고, Codex 기준에 부합하는 미생물관리 및 검정기술 개발·보급
  - 생산 단계에서 지켜야 할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1,000개 수준으로 확대('09)

## 축산물

### □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사육단계 :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
    - 사료 내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휴약기간 준수 등 농가 교육을 확대
    -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으로 안전관리 강화('05)
    - 농장단계 HACCP 지침 마련,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도축·가공단계 : 도축검사 강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도입
    - 도축장 검사인력 확충, 미생물·잔류물질 검사 강화 및 결과 공표
    - 잔류물질 위반농가에 대한 지도 강화, 실명출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05)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를 도입('05)하고, 시설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축산물 가공장에 HACCP 적용 확대
  - 유통·판매단계 : HACCP 도입, 축산물위생감시원(명예감시원) 제도 정착
    - 축산물 판매업, 집유업, 보관·운반업에 대해 위생관리기준(SSOP) 준수 의무화 및 HACCP제도 신규 적용
    - 식육판매업 신규 개설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 보유 의무화 검토
    - 위생교육을 받은 관계공무원을 위생감시원으로 활용,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 등 준수여부 지도·감독 강화
- 생산·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물의 이력(출하자, 도축일, 사양관리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우수 브랜드 업체를 대상으로 '04부터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2-2-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품질인증제는 UR타결 이후 농촌구조개선 및 농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
  - 인증물량 : ('00) 178천톤(친환경포함 216) → ('02) 246(446) → ('03) 250(616)
-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증가로 Codex, FAO 등에서 권고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도입 추진
  - \*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산물 생산·수확후처리단계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제도 (주 관리대상 : 농약·비료·중금속·유해생물 등 위해 요인)
-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문제발생시 추적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Recall을 지원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 광우병 발생이후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도입

#### □ 문제점

- 정부주도의 농산물 품질인증은 참여농업인 확대에 어려움
  -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인력 400명으로 6만여 농가 관리('04)
-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적용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APC·RPC 위생설비 미흡
-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는 농업인, 유통업체 등의 기록관리가 필수이나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기록관리가 어려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품질인증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GAP는 민간인증체제로 활성화하여 인증참여농가 확대
  - 품질인증 농산물 : ('08) 3% → ('13) 3
  - GAP/이력관리 과일·채소류 : ('08) 3% → ('13) 10
- 국제수준에 부합되는 GAP제도 정착을 위하여 APC·RPC 위생설비 확충 및 교육시스템 구축 추진
- 이력추적관리제도를 GAP제도 등과 연계하여 확대
  - 생산농업인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GAP, 친환경농산물, 수출농산물 중심으로 우선도입 후 연차적으로 확대

## 다. 세부추진내용

### < GAP, 품질인증 >

- 시범사업, 근거규정 마련 등 GAP 도입기반 구축 ('03~'05)
  - 신선채소·과일, 수출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04~'05)
    - 시범사업 : ('03) 9농가 → ('04) 350 → ('05) 700
    - \* 토양·수질검사, 농약·중금속 검사비 등 지원 ('04년 1억원 → '05년 3억원)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규정 마련 및 외국전문가 자문추진('04~'05)
    - ('04) 근거법령 → ('05) 세부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등)
    - 미국 GAP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추진 ('04. 4/4)
- GAP 농산물이 위생적으로 전처리될 수 있도록 APC·RPC 위생설비 지원
  - APC·RPC 위생관리지침 및 근거규정 마련('04~'05)
  - APC·RPC 위생설비 지원 : ('05) 2개소 → ('08) 30 →('13) 92

- GAP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여 참여농업인이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GAP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
  -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04)
  - 농촌진흥청, 지자체에 GAP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05) 농업전문학교 교육시설구축 → ('06~'08) 도단위 진흥원 → ('09~'13) 시·군 농업기술센터
  - 지자체 공무원, 농협 지역조합직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을 지도·교육시키는 교관 양성('05~'13)
    - 2,000명 수준확보 : ('05) 140명 → ('09) 2,000
- GAP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문분야 연구용역 확대 추진
  - APC·RPC 위생실태 및 주요 식품안전 관리상황 조사, 농산물 전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HACCP 매뉴얼 개발 추진 등 ('04)
  - 생산농업인을 위한 GAP 생산자 매뉴얼 개발, 유통·판매단계의 위생관리기준 마련, 이력추적 매뉴얼 개발 등 ('05)
- GAP 참여농업인 지원을 위한 ERP 구축 및 홍보 추진
  - GAP 재배·관리지침을 적용한 전사적 자원관리체계(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구축
    - 지역별로 GAP농산물이 동일한 재배과정을 거친 후 위생시설이 완비된 APC·RPC에서 전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
    - ('05) ERP 기준마련 및 프로그램개발 → ('06~'08)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ERP 적용 → ('09 이후) GAP 지원체계로 ERP 정착
  -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GAP 홍보체계 마련
    - MBC 등 공중파 방송을 활용 다큐멘터리 제작('03~'05)
    - GAP 농산물 출하기에 맞추어 판매촉진행사 개최('04~'13)
    -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형광고판넬 등 설치 ('05~'13)

□ 민간인증기관 발굴 및 인증인력 양성

- GAP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농수산물유통공사를 '06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 추진
  - GAP 농산물 생산추이에 맞추어 컨설팅·농자재회사 등으로 인증기관 확대
- GAP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증인력 양성
  - GAP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인증사 자격 부여 : ('05) 50명 → ('06) 100 → ('08) 400 → ('13) 1,000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

□ GAP를 중심으로 한 이력추적관리기반 구축('04~'06)

- 문제발생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규정 마련
  - ('04) 근거법령 → ('05) 세부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등)
-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이력추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기준으로 제시 ('04)
- 고령화된 생산농가가 이력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시스템 등 마련
- GAP와 병행하여 시범사업 실시 : ('04) 350 → ('05) 700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본격 도입하되 의무·자율 적용분야로 구분 ('06 이후)

- 의무·자율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인증농산물 및 식품안전성이 문제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의무화

- 전산관리가 가능토록 Code 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05년 Code 기준 마련 후 '06년부터 시스템 구축 지원
- 정부 정보화전략(ISP)의 일환으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관리 제도로 정착
  - ISP 기준마련('05상반기) → 정보시스템 구축('05하반기~'07)

라. 추진일정

<GAP, 품질인증제도>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 도입</li> <li>○ 품질인증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 도입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 기반 확대</li> <li>○ 상품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지속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수준의 제도로 운영</li> <li>○ 좌동</li> </ul>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 수출농가에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관리시스템 도입</li> <li>○ 도입분야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위해관리 시스템으로 정착</li> </ul>

## 2-2-2. 농산물 안전성 조사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안전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96년부터 안전성조사 실시
  - ('96) 33품목 752건 조사 → ('03) 135품목 59,570건으로 확대
  - \* 조사대상 유해물질 :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항생물질 등
  - 부적합 비율 : ('99) 1.80% → ('01) 1.15 → ('02) 1.07 → ('03) 1.48
- 안전성 분석시설 및 장비 확보('02)
  - 분석시설 : 정밀분석실 9개소(5,434m<sup>2</sup>), 속성분석실 80개소
  - 장비 2,410대(정밀 1,475대, 속성935대)
-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은 현재 132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규정상 기준이 없는 품목은 품목군 또는 전체 중 최소기준 적용

#### □ 문제점

- 소비자 욕구충족 및 늘어나는 안전성조사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및 분석인력 부족
  - 안전성조사물량 : ('99) 29천건 → ('02) 56천건 → ('03)58천건(200%)
  - 1인당 조사건수 : ('99) 172건 → ('00) 314건 → ('02) 318건(184%)
- 생산환경(토양·용수·자재 등) 및 생식 과채류의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관리 미흡(관련 장비도 부족)
- 유해물질 허용기준이 132개에 불과하여 기준이 없는 품목은 품목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하는 등 불합리
- 일부 농업인의 농약 과다사용 등 부적합 농산물 지속 발생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농산물 안전성 제고는 우리 농업의 핵심 정책으로 대두
  -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
-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적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정밀분석실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와 적용 기준 등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확충

## 다. 세부추진내용

- 생산·저장 및 출하전 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산물 중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부적합품은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토록 조치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유입을 방지
  - 부적합품 생산농가는 D/B화하여 후작물 조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표준규격출하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
  - 농협 및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 부적합품 생산농가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다각도로 관리
  - 안전성 조사 물량 확대 : ('02) 56천건 → ('03) 60 → ('13) 90
    - 채소류 등 안전성 취약품목(30개)을 중심으로 조사 건수 확대

- 선진국 수준의 분석시설 및 장비확충, 분석효율성 제고 등 지속 추진
  - 정밀분석장비 확충 : ('02) 1,475대 → ('03) 1,570 → ('04이후) 2,000
  - 농관원의 권역별 중심 출장소 38개소에 정밀분석실 설치(총 248억원 투입)
    - ('04) 3개소 → ('05) 3 → ('06) 7 → ('07) 7 → ('08) 7 → ('09) 11
    - 거점분석실 선정기준 : 지원 분석실과의 거리, 시료 수거·운송의 용이성, 안전성조사 물량, 해당 출장소의 건물 확보 가능성 등
  - 조사물량 및 분석시설 확대에 따른 전문분석인력 확충
    - 현행 85명의 분석인원을 120명 수준으로 확대
  
- 생산단계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 '09년까지 총 55억원을 투자하여 1,000개의 기준 제정을 목표로 시험연구 실시
  -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체 시험과 외부시험기관 용역을 통해 작물 중 농약잔류시험 분석 등 시험연구 실시
  - 시험연구 결과를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회에서 검토하여 기준의 객관성 및 과학성 확보
  - 사업절차 : 대상품목 및 농약성분 설정 → 위탁사업자 선정(농약 잔류성 시험기관) → 농약잔류시험 실시 → 중간 및 결과 보고회 → 생산단계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심사평가회 → 기준고시

- 농산물 재배환경과 신선 과일·채소류에 대한 병원성미생물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관리기준 설정 및 개선 방안 마련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03년부터 실시중인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실태를 파악
  - 병원성미생물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생산단계 위생관리 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 기준 설정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프로그램에 병원성미생물 관리 방법이 포함 되도록 하고, APC, LPC 등 시설보완 추진
  - 재배환경 중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개선은 객토, 토양 개량제 시용, 중금속 오염농경지 복원 사업을 통해 실시
    -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중금속 오염농산물의 시중유통을 차단
  
- 안전성의식의 제고와 안전관리의 기술적 지식 함양을 위해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작목반장 등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전문교육과정을 농업연수부에 신설('04)
    - 각 지역에서 지역농업인을 계도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 생산자에 대해 반기별로 안전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추진
    -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농림부 고시) 개정('04)
    - 표준 강의안 및 교육지침을 제작, 통일된 교육 추진('05~)
  - 지자체, 농관원, 농협 등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교육 체계 정비
    - 교육주체 설정, 과정 설계, 관련 교재 및 예산 확보 등 추진



## 라. 추진 일정

추진 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안전성조사 확대	○ 60,000건	○ 72,000건('08)	○ 90,000건까지 확대
○ 안전성 조사범위 확대	○ 생산환경 및 과채류 병원성 미생물 오염 실태 조사(~'06)	○ 관련 기준 설정('07~) ○ 오염방지 프로그램 마련('07~)	
○ 안전 성분 분석 시스템 확충	○ 농관원출장소3개소에 정밀분석실 설치	○ 권역별 정밀분석실 설치 계속	○ 총 38개소 설치('09)
○ 생산단계 위해물질 잔류기준 설정	○ 30개 기준 시험연구	○ 매년 200개 기준 시험 연구	○ 총 1,000개 기준 설정

### 2-2-3. 「농식품안전자문단」 운영

#### 가. 현 황

□ 농축산물 안전관리정책에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하여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코자 '03년 말 장관자문기구로 「농식품안전자문단」 설치

#### □ 구 성

○ 소비자단체·관련기관 대표 및 학계전문가(20인내외) 위촉, 자문단장은 호선

- 소속기관·단체별 직위 변동시 해당직위 승계자가 위원직 승계 (단, 학계전문가는 직위변동과 관계없음)

○ 자문단의 원활한 회의를 돕기 위해 소비자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 운영

- 실무협의회는 자문단 회의안건 사전검토 등의 역할수행

#### □ 운 영

○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 회의 개최

- 연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주요 현안사항 발생시 농림부장관이나 단장의 발의로 수시회의 개최
- 실무협의회는 농림부장관이나 자문단의 요청에 의해 수시 개최
- \* '04년 10월까지 2회 개최('03.12.17, '04.5.27)
- 농식품 안전종합대책, 농산물 안전성조사 발전방향, GAP추진방안 등 논의
- 논의 내용을 당해 안전의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 추진중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 및 소비자요구에 부합하는 농정 추진 필요성의 지속적 증대 전망
- 농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제도화와 소비자 지향적 정책 실현을 위해 「농식품안전자문단」 운영의 활성화·내실화 추진
- 농림부는 자문단 건의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여 이행
- 농식품 안전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 유도

## 2-2-4. 축산물위생안전성 제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 안전한 축산물생산을 위하여 가축사육단계에서 동물약품(123종)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78종)설정 운용
- 도축·가공단계에서 HACCP 적용,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기준(SSOP) 등 의무 적용
  - 소·돼지·닭 도축장(162개소)에 대해 '03.7.1부터 HACCP 의무적용('04. 12월말 현재 125개소 적용중)
  - 축산물가공장의 경우 HACCP는 자율적용('04. 12월말 175개소 적용중)
  - HACCP적용 도축장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미생물학적 검사기준 신설 등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개정('03.7월)
  - 도축장 HACCP미적용 업체 및 위생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행정처분 실시
    - 1차 점검결과 62개소, 2차 32개소, 3차 18개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도축단계에서 안전성검사 실시('03년도)
    - 잔류물질검사 강화를 위한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개정('03.6.11)
    - 잔류물질검사 : (계획) 95,482건 → (실적) 115,360(120.8%)
    - 미생물검사 : (계획) 94,764건 → (실적) 105,036(110.8%)
  - HACCP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도축장 위생수준은 최근 크게 향상
    - \* 도체중의 일반세균수가 '97년  $10^{5-6}$  에서 '03년  $10^{2-3}$  수준으로 감소

- 유통단계에서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축산물 회수(Recall) 제도 운용
  - 보관·운반·판매단계에서의 HACCP 도입 추진
  -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03년 6,860건)
  - 유통·운반·판매단계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SSOP 운용지침을 마련·시달('03.1월)
  - 축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토록 관련법 개정('04.1월)

□ 문제점

- 사육단계에서 일부 농가가 항생제 등 과다사용 및 휴약기간 미 준수 등으로 식육 중에서 잔류물질이 발생
- 도축장 시설은 어느 정도 현대화되었으나 운영면에서 다소 미흡
- 유통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미흡하여 재 오염 사례가 다수 발생
  - \* 축산물 위생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 축산물 수입자유화 및 국제교역증가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유통체계 확립이 필요
- 사육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위생·안전성 제고
  - 사육단계 : 동물약품·사료관리 강화, HACCP
  - 도축·가공단계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등 선진 위생제도 정착
  - 유통단계 : 유통축산물 위생감시강화, 리콜제도정착 및 소비자교육 강화

## □ 수입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수입 후 국내 유통단계의 축산물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 및 축산물 수출 상대국 도축·가공장 점검 강화 등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관리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검역원장으로 전환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1)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사육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 □ 동물약품 안전사용 지도 및 규제강화

-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동물약품별 안전사용기준, 잔류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 잔류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한 규제 등 강화
  -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 연장, 과태료 인상조정 및 부과철회 (100만원), 잔류 위반농가 명단 공개
  - 규제검사 대상 농가 집중 관리 및 규제검사 대상농가에 대한 1농가 1공무원 담당관 제도 운영, 익명출하행위 등에 대해 제재 근거 마련 등
- 동물약품 안전 사용농가에 대한 우대조치
  - 브랜드인증 및 정책자금 지원시 잔류위반비율을 반영

## □ 사료공장 HACCP 도입 및 위해물질 관리강화

- 사료공장에서 적용할 HACCP 도입 및 시행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침 마련 및 홍보물 제작 배포, 교육 실시
    - \* 중요관리점은 사료내 항생제, 아플라톡신, 농약, 중금속, 살모넬라균 등
  - HACCP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우대 조치 : 연간 사료검사 면제, 시행업체 공표, 농가홍보, 브랜드 평가 및 인증기준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 사료내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사료내 중금속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현 8종)
  - 사료내 관리대상 잔류농약 확대 (현 17종→ 확대 40종)
  - 사료내 동물용 의약품 관리 강화 (현 53종→ 감축 30종이내)

#### □ 사육단계의 축종별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도입

- 축종별로 국내 위해요소 실태조사 실시(연구용역) 및 사육단계 HACCP 지침개발 T/F팀 구성
- 사육단계의 HACCP 지침 제정 및 시행
  - 대상 축종 : 돼지, 젓소, 한우(비육우), 산란계, 육계 등 5개 축종
  - SSOP관리방안, HACCP개념, 위해요소결정, 중요관리점 결정 및 제거방법, 검증방법, 기록 및 문서화방법, 개선조치 방법 등
  - 축종별 단계적 시행 : 돼지(06) → 젓소(07) → 한우(08) → 산란계(09) → 육계(10)

## 2) 도축·가공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

#### □ 식육 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강화

- 식육 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물량 확대
  - 잔류물질 검사 물량 : ('04) 102천건 → ('05) 120천건
    - \* 주사자국, 화농부위, 과거 위반이력농가 출하가축에 대해 중점검사
  - 미생물 검사물량 : ('04) 92천건 → ('05) 120천건
    - \* 확대물량 중점검사 : 가공품 원료육 및 판매단계 지육·정육 중점검사

#### □ 도축장 HACCP제도 정착과 사후관리강화

- HACCP운용실태 점검대상 및 방식 개선
  - 시·도 자체점검 후 행정처분한 내용을 시·도간 교차점검을 통한 공정성 확보
- 도축·가공장 HACCP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참여 확대
  - 시·도 교육기관에서 신청시 심사후 지정 확대(지방분권차원)
  - 도축·가공장 영업자 및 종업원 중심으로 운영

##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도입 및 차별화 추진

- HACCP 운영수준이 천차만별로 우수운용도축장에 대한 우대조치가 필요
  - 평가결과 상위권 0%, 중위권 3%금리 자금지원, 하위권은 지원 배제
- HACCP 적용 축산물의 차별화 추진
  - HACCP 적용 축산물 소비 확대추진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HACCP 불법 명칭 사용 규제 (도축장, 가공장) : '04.7.30 이후

## □ 광우병 발생대비 사전 관리 대책

- 사료안전관리 : 동물성 단백질 사료급여 금지, 남은 음식물 관리, 반추동물사료와 잡식성 동물사료 제조라인의 분리 등
- 검사두수확대 및 진단 키트 확보 : 발생 전 · 후의 검사두수
- 특정위험부위 (SRM)처리 : 발생 전 · 후의 제거 및 처리
- SRM 소각장 지정 및 운영 : 발생 전 · 후의 대책

## □ 도축 검사 강화

- 소 · 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 검사관 및 도축검사원 소요인력
  - 검사 필요인원 :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도축장당 10명 수준(검사관 및 도축검사원) 배치를 원칙으로 함
- 도축 검사관 · 도축검사원 충원
  - 검사관 : 지자체 도축검사관(수의직 공무원)확보 추진
  - 도축검사원 : 기금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되 연차적으로 충원
    - \* (05) 100명 → (06) 150 → (07) 200 → (08) 300 → (13) 640
- 가금류 도축장의 도축검사관(수의직 공무원) 배치 검토
  - 닭, 오리 도축장의 도축검사 공영화 추진 검토



## □ 도축장 내에 육가공장 설치 확대

### ○ 도축장내에 육가공장 설치 유도

- 도축장 지육반출과정에 병원성 미생물 등의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도축장내에 육가공장의 설치가 필수적
-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비용을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공개, 홍보 등을 통하여 우선구매 유도
- 도축장내 가공장 설치확대 · 2차오염 최소화를 위한 자금지원
- (현재) 30%수준(LPC85%) → ('13) 70% ('05 예산 : 77억원)
- 소 도축장의 경우 광우병 예방 및 발생시 SRM제거를 위해서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가 불가피

### ○ 축산물 운반차량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

- 적재운반 등 지육의 비위생적 운반, 운반시 냉장온도 준수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수시 점검

## □ 닭·오리고기 지육·정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 추진

### ○ 포장 유통 의무화 기본계획

- 비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오리고기의 재 오염 기회 차단 및 포장 유통(표시)으로 수입 닭·오리고기와 구별로 차별화 가능
- 닭·오리 지·정육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봉인하거나, 개별진공포장을 한 것으로서 외부에 합격검인 및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가 된 제품을 말함

## 3) 유통단계의 재 오염 방지 대책

### □ 축산물 유통(보관·운반·판매·집유)단계 HACCP도입

#### ○ 유통단계 HACCP 지침 개발 및 홍보물 제작 배포, 교육 실시

- 지침제정순위 : 판매업 (04.12) → 집유업(05) → 보관·운반업 (06)
- 시행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적용업소 위생 감시 및 수거검사 면제, 식육판매업소, 집유업소 등에 대한 시설 개수자금 지원

## □ 축산물 위생 감시 체제 정비

### ○ 위생 점검 체제의 정비 및 처벌 강화

- 위생 점검 실명제 및 책임 점검제 등 도입, 재래시장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결과 공개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시 영업장 폐쇄 명령,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분행위기간 연장, 유해식품 제조자에 벌금형 병과
- 형량 하한제 도입, 불명확한 처벌관련조항 개정 추진, 행위유형·위반 정도 등을 감안한 형사고발기준 설정 등

## □ 위해축산물 리콜(Recall)시스템 강화

### ○ 위해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추진('04.1)

-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축산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우려 또는 발생시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폐기토록 함

### ○ 자발적 회수 미공개시 제재 규정 신설

- 언론에 공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 신설(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 축산물 위생 감시원 (명예감시원) 제도 정착

### ○ 축산물위생감시원 (명예감시원) 임명(위촉) 인원 및 대상 확대

- 위생감시원 인원 : (현행) 212명 → (확대) 1,000명  
대상 : (현행) 수의사 (검사관) → (확대)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일정자격 소지자 또는 일정기간 교육이수자 (1주)

\* 자격 : 위생사, 영양사,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미생물학 등

- 명예감시원 인원 : (현행) 1,000명 → (확대) 2,000명  
대상 : (현행) 소비자 단체 → (확대)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축산물 관련 협회 등 소속직원

### ○ 명예감시원의 지역 전담 지정제 운영 및 수당 인상조정

- (현재) 3만원/1일 → (인상) 5만원/1일

## □ 축산물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 중인 축산물 위생관리

### ○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실시

- 검사 대상 : 가공장 보관 포장육용 지·정육 및 가공 원료육, 보관·운반·판매중인 지·정육 (년간 15천건 수준)
-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작업장에 대해 영업자 준수사항·SSOP 준수여부,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반시 행정처분

### ○ 단계별(가공·운반·보관·판매)미생물 허용기준치 설정

- 가공단계부터 축종별·단계별로 5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위험관리기준(허용기준치) 설정 (검역원 '05년도 연구사업)

## 4) 판매·소비단계의 위생·안전성 확보 대책

## □ 식육판매업 영업자 자격요건 강화

### ○ 식육처리기능사 중심 식육판매업 운영 방법 개선

- 식육판매업 신규개설은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토록 함 (기존 영업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영업계속 허용)

## □ 식용란 위생검사 및 처분

### ○ 식용란 검사 기본계획

- 검사대상 :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된 식용란
- 검사결과조치 : 잔류허용기준 초과 알은 식용 또는 가공용 공급불가, 살모넬라균 검출 시에는 가공용으로만 공급 가능

### ○ 식용란에서의 살모넬라균 검사실시

- 대상 및 검사횟수 : 산란계 (2,500농가, 50백만수)에서 생산되는 계란, 농가단위로 매월 1회 시료채취
- 검사결과조치 : 살모넬라균 검출시 그대로 섭취 금지 (가공용 전환), 검출된 농가에 대한 위생관리 등 지도 실시

### ○ 포장 유통 식용란의 합리적인 표시방법(특수성분, 유통기한 등) 설정

## 5) 수입 축산물 위생 관리강화 및 제도 개선

### □ 수입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 수출 상대국 작업장(도축·가공·보관)점검 강화
  - 수출상대국의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구체적인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수입후 국내 유통단계의 축산물 사후관리
  - “축산물위생감시지침”에 반영 : 일정물량 수거 검사 방안 등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보관장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 “축산물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회” 구성·운영

### □ 축산물 수입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

- 수입 축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검역원으로 전환추진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유통·판매 경로가 파악되도록 기록 구체화
-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수입 및 유통 상황 전산화 추진
  - 수입판매업소의 인적사항, 소재지 등 일반사항
  - 수입상대국, 수입종류, 수입물량(부위 포함) 등 수입사항
  - 검역시행장 소재지 등 입고내역, 중간유통상 보관·판매상황 등

## 6)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소비자 단체와 협력 강화

- 소비자 단체와 협력사업 및 위생·안전 관리 홍보 추진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정책추진에 소비자 단체 참여확대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임원 참여 확대 (25%수준)
  - 축산물위생·안전성 연구사업공동수행 및 캠페인 전개유도 등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추진 상황 설명회 개최 (년 2회)
- 축산물 특성 및 위생관리 교육 실시 (수시)
  - 축산물 특성 및 취급요령, 조리방법, 교차 오염예방방법 등 교육

### □ HACCP 확대도입에 따른 전담조직(축산물 HACCP 인증원) 설립추진

- 농장, 사료공장, 판매장, 집유장, 운반·보관장으로 HACCP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HACCP 인증을 위한 별도조직 신설 추진
- 검역원내 공무원 증원이 어려우므로 별도 민간기구 설립 검토
  - \* 호주의 경우 민간단체가 HACCP 인증, 사후관리 담당

□ 도축장 출하돼지 운송차량 (특장차량 5톤 : 40두 수송)확보

- 일반차량 운송에 따른 가축전염성질병 전파위험, 배설물 누출로 인한 도로 등 환경오염, 물돼지(PSE육)발생, 특수차량 제작에 의한 도축용 돼지 운송

- 지원차량(5개년 사업) : 100대 (전국 소요특장차량 10%수준 지원)
- 년도별 차량확보 : (06) 10대 → (07) 20 →(08) 20 →(09) 25→ (10) 25

□ 축산물위생교육원 설립

- 농협 축산연구소 식육교육센터를 농협 축산유통부 소속 (가칭)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확대 개편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①사육단계	○ 사료공장 HACCP 지침마련 및 사료내 동물약품 혼입종류 감축	○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개정 ○ 농장HACCP 지침 마련	○ 사육단계 HACCP 정착 ○ 교육·홍보 지속 ○ 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단계의 안전성검사 지속 지원
②도축·가공단계	○ 도축장HACCP 운용 실태 교차 점검 ○ HACCP제품차별화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 ○ 도축검사 내실화 - 도축검사원제도 도입 ○ SRM제거시설·장비지원	○ 도축장내 식육가공장 설치 ○ 검사관확충 및 도축 검사원 채용확대 ○ 축산물위생교육원 설립 ○ 축산물 HACCP 인증원 설립 ○ 식육가공장에 대한 중점 위생점검·검사 지원 ○ SRM제거시설·장비지원 확대	○ 도축·가공단계 HACCP 정착 ○ 도축검사관·도축 검사원 확충 완료
③유통·소비단계	○ 판매단계 HACCP 지침 마련 ○ 식육교육센터 확대 개편방안 마련 ○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 확충	○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 식육판매업 신규 개설요건 강화 ○ 운반·보관단계 HACCP 지침운용 ○ 가축운송차량 확보 ○ 축산물위생·안전성 제고 연구회 구성	○ 도축·가공 이후 단계 HACCP정착

## 2-2-5. 육류이력추적시스템 시범도입

### 가. 현황 및 문제점

#### 1)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개념 및 필요성

-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임
-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축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기대효과

-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쇠고기 등 육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등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

#### 3) 문제점

- 농가 호응도, 기록관리 및 자율 신고의식 미흡
- 도축장·가공장·판매업소 등의 추가적인 부담
- 정부 가이드라인 부재시 업체별 자율 실시에 따른 소비자 등 혼란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광우병 등 문제발생시 전면 도입을 위한 추적시스템 구축
  - 생산·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의 이동사항을 기록 관리
  - 사양관리 및 위생·안전성 관련 정보는 브랜드경영체 등이 선택적으로 기록관리 및 제공
- 농가의 기록관리 및 자율 신고의식이 미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정착
  - 우선 우수 브랜드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하면서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
-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법령제정 등 전면 실시에 대비한 제도는 사전에 완비('08년까지)
- 쇠고기에 대한 실시결과를 평가한 후 다른 축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여부 검토

## 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세부추진내용

### 1) 추진체계

- 정부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법령 제정 등
- 주관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협중앙회 공동
  - 전산시스템 관리, DNA 동일성검사, 예산집행 등 사업총괄 (축산물등급판정소)
  - 귀표관리, 농가·브랜드경영체·조합 지도 등(농협중앙회)
- 시·도 위생검사기관
  - 도축장에서 귀표 부착 확인 및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
  - 판매장에서 동일성 검사용 샘플을 채취, DNA 검사기관으로 송부

## 2) 신고내용 DB구축 및 정보공개

□ 개체식별번호에 의한 정보를 신고 받아 DB화하여 관리

- 생산단계 : 소유자(성명, 주소, 전화 등), 소유가축(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등
- 도축·가공단계 : 도축장, 도축일, 등급판정결과, 가공장, 가공일 등

□ 입력된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공유하여 사업추진에 활용

## 3) 사후 확인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

- 도축장에서 채취한 샘플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육(판매장)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검사

## 4) 전면 의무실시 대비 법령 제정('08년)

- 추진기관, 농가 및 도축·가공·판매 업자 등의 신고·표시 의무, 정보관리 및 공표방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 규정
- 시행시기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함

## 라. 추진일정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사전준비 및 시범사업	시범사업	전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계획 수립</li> <li>○ 세부실시요령 시달</li> <li>○ 전산시스템 구축</li> <li>○ DNA 동일성검사 시스템 구축</li> <li>○ 시범사업 착수 - 참여두수 : 45천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한우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 - 참여두수 : ('04~'05) 45천두 →('06~'07) 60→('08) 100</li> <li>○ 연계 사업장(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지정</li> <li>○ 법령제정 등 전면실시 대비 제도완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두수 귀표 부착 및 등록 의무화</li> <li>○ 전 사업장 참여, 개체 식별정보 전달</li> <li>○ 소비자에게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li> <li>○ DNA 동일성검사</li> <li>○ 다른 축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여부 검토</li> </ul>



## 2-2-6. 정부수매물량 품종별 관리체계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가재배 품종은 숙기별로 보면 조생종(9%), 중생종(11), 중·만생종(80%)임
  - 품종별로는 남평(17%), 추청(10), 일미(10), 일품(9) 순임
- 정부수매는 지난 '94년부터 도별로 1, 2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수매품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가격도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
  - 이로인해 일부 농가들이 고품질 품종보다는 다수확 품종 선호
-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우리쌀의 품질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나 정부수매의 경우 품종제한·구분수매가 되지 않아 정부수매벼를 원료곡으로 사용하는 RPC 등의 품질관리에 애로
  - 공매는 도별·품종군별(1군, 2군)로만 구분상장하고 군관수용·학교급식용 등 밥쌀용도 등급·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정부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04년산 정부수매물량 부터 시·군별로 선정한 3개 내외 품종을 중심으로 실시
  - 정부수매물량중 RPC에서 산물벼로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RPC별로 3개 품종 이내에서 추가 제한 추진
- '04년산부터 정부수매 물량은 품종·등급별로 구분 보관·방출
  - 효율적인 보관관리 및 방출을 위해 창고별로 단일 품종을 등급별로 보관하고 공매도 품종·등급별로 실시
  - 군관수용·학교급식용 등 밥쌀용도 단일 품종으로 공급

## 다. 세부 추진내용

- '04년산 정부수매물량 품종제한 및 품종별, 등급별 보관·방출
  - 시·군별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RPC 등 민간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3개 품종으로 선정
  - 시군에서는 품종·등급별 구분수매에 따른 보관여석 등 사전준비
- 지자체에서는 시·군별로 선정된 정부수매 품종을 사전에 농가에 홍보
  - 수매 홍보물 제작, 농가의 종자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보급종 확대, 시범포를 통한 종자 알선, 농가간 자율교환 적극 유도 등
  - \* 정부는 품종별 수매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품종별 수매제도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 수매검사와 관련하여 농가의 품종관련 분쟁방지대책 마련
  - 벼 품종식별 분쟁방지를 위한 이의신청 표준처리 절차 마련
  - 수매품종 사전지도, 검사원의 품종식별 능력제고 대책 추진 등

## 라. 추진 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이후~ )
○ '04시군별수매 품종 선정	○ 시군별 정부수매품종 선정	○ 시군별 수매품종 정착 추진	○ 시군별 수매품종 정착 추진
○ 농가홍보및 종자 공급대책	○ 홍보계획 수립 -수매홍보물 제작·배포, 전문지광고 등 ○ 종자확보 대책 수립 -보급종 확대, 농가 자율 교환 등	○ 지속적인 홍보추진 ○ 보급종 종자확대 추진	
○ 보관및방출 체계 구축	○ 보관창고 등 사전준비 ○ 품종별 공매 준비		

## 2-2-7. 정부쌀 검사규격 개정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정부쌀은 학교급식용, 관수용·사회복지용 및 가공용 등의 용도로 공급되고 있으나 검사규격이 단일화(합격) 되어 있음
  - 검사규격은 시중유통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고품질쌀 공급에 한계
    - 시중유통쌀(상등급)의 경우 분상질립·피해립·착색립이 3.5% 이하여야 하나 정부쌀의 경우 6.0%
  - 통일계 검사규격과 수입쌀 검사규격을 별도로 적용

#### □ 문제점

- 쌀 검사규격의 문제점
  - 정부쌀은 학교급식용, 관수용·사회복지용 및 가공용 등의 용도로 공급되고 있으나 검사규격이 단일화(합격)되어 공급용도에 맞는 쌀 생산이 곤란
  - 추곡 수매시 농가에서 품질이 낮은 벼를 정부수매에 우선 출하하는 경향이 있어 시중쌀에 비해 원료벼의 품질이 떨어짐
  -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채산성 악화로 시설투자를 기피하여 민간 RPC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고품질 쌀 생산이 곤란
- 현미 검사규격의 문제점
  - 벼의 재배기술 발달과 품종개량으로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현행 검사규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벼 검사규격과의 연계성 결여(벼는 상위등급 신설 등 규격강화)
  - 국내·외적으로 현미상태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05년부터 검사등급을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반계·통일계·수입쌀로 분리되어 있는 규격을 하나의 규격으로 통합
  - 학교급식용 등 밥쌀용과 가공용은 별도 적용
    - 밥쌀용은 시중유통쌀 수준으로 기준 강화
  - 검사항목 용어에 대한 정의도 시중 쌀 유통규격 및 국제적(미국, 일본 등) 추세에 맞도록 강화
- 정부쌀 검사규격 강화에 따라 도정수율 시험체계도 개편하고 시설보완

## 다.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 정부쌀 검사규격 개정안 검토 ('05)
  - 검사규격 개정에 관한 정부양곡 도정공장, 가공업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및 개정안 확정
- 정부쌀, 현미 검사규격에 관한 농림부 고시 개정 ('05)
- 쌀 검사규격 강화에 따른 도정수율시험 공장 시설보완 ('05 상반기)

## 2-2-8. 고품질 품종 보급확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보급종 생산을 위하여는 상위 단계인 원원종, 원종이 확보 되어야 하며 확보된 원종 범위에서 각 도와 협의하여 생산
- 보급종은 정선 감모량을 감안 공급 가능량을 도별, 시·군별, 읍·면·동별로 사전예시하고 예시량 범위내에서 농가의 신청을 접수하여 공급
- 현재 벼의 경우 종자소요량의 25% 수준을 보급종 종자로 공급
  - 정선 최대능력 : 투입량 16,000톤 → 제품량 15,000톤 수준

#### □ 문제점

-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보급종 종자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종자생산에 장기간 소요, 정선능력 부족으로 보급종 공급에 한계
- 품종에 대한 농가 선호도 변화로 생산계획 수립당시의 수요가 바뀌어 일부품종의 공급잔량 발생
  - 당해연도의 작황, 병해충, 기상재해 등에 따라 품종선호도 급변
- 정부수매가격 수준 공급을 위한 지방비보조액 물량범위내 신청
  - 고품질벼 확대공급을 위하여 벼 보급종을 정부수매 1등가격 수준 공급을 위하여 투입원가와 1등가격 차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 지방비 확보액을 초과하여 종자신청이 있을시 공급 기피경향이 있음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 품종의 보급종 공급능력 확대가 필요
- 고품질 보급종 생산량 및 생산능력 확대 추진
  -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의 현대화 추진
- 고품질품종 재배확대를 위한 수매품종 제한 등 제도개선을 병행

## 다.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07년까지 전국 종자소요량의 50%수준인 22,500톤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 → 2년 1기의 갱신체계 구축
  - 현재 16천톤 수준인 정선능력 제고를 위해 정선시설 현대화 추진

### < 벼 보급종 연차별 공급계획 >

구 분	'03	'04	'05	'06	'07이후
공급계획량	13,464톤	15,000	17,000	20,000	22,500
갱신율(추정)	26.8%	33	38	44	50

- 시험장으로부터 원종급 종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급종을 조기 생산
- 고품질 품종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수매품종 제한 추진(04년산)

## 2-2-9. 소비자단체의 시중유통쌀 점검·평가방안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품질표시제를 강화(포장양곡표시제 개정('03.1.14)하여 '04.1월부터 적용
  - 포장 표시사항은 밥맛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정연월일, 품종 표시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추가
  - 등급규격은 등급항목을 단순화(12개항목 → 4)하되, 등급기준을 강화하여 표시사항을 권장사항으로 함
- 고품질 쌀 생산·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운영
  - 품질인증을 받는 RPC('04) : 226개소
- 시중유통 쌀 브랜드 수는 1,000여개에 이르며, 그 중 300여개만 등록

#### □ 문제점

- 시중 유통브랜드 쌀의 품질 차별화 및 품질관리 노력 미흡으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이고, 소비자의 고품질쌀에 대한 인식도 부족
- 쌀의 품위, 품종 혼합, 식미 등 품질 평가체계 미확립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한계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 쌀 유통체제 확립이 시급
- 산지에서의 정확한 품질관리 유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심의 시중유통 쌀 평가 추진체제 확립
  - 평가추진체제에 대한 사전 홍보강화로 생산자·소비자 등의 평가사업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고품질 쌀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 다.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품종·도정연월일 등 품질관련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양곡관리법 개정)
- 소비자단체 중심의 시중유통 쌀 평가시스템 구축
  - 소비자단체가 시중유통 쌀을 무작위로 수집, 품위·식미·품종판별 및 소비자 기호도 등 품질을 정례적으로 평가, 공표하는 체제 구축
  - 우수브랜드에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쌀 평가 강화



## 2-2-10. 사료사업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축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사료 수요량은 꾸준한 증가세
  - ('80)348→('90)1,053→('95)1,486→('00)1,511→('03)1,534만톤
-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IMF 경제위기, 기후 등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수급불안 경험
  - 사료원료 수입 의존도는 평균 90%이상 차지
  - \* 국내 곡물 등의 생산여건상 부존 사료자원 활용에 한계
- 사료에 대한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
  - 농가는 고품질의 사료를 소비자는 안전한 축산물 요구
  - 사료내 유해물질,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의 허용기준 강화 추세
  -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LMO) 사료의 규제강화 가속화
- 사료로 인한 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요인 사전 차단
  - 사료로 인한 질병발생 개연성이 있는 남은 음식물, 동물성사료 등의 관리강화 필요성 대두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사료 수요는 축산물 수입개방과 환경문제 등으로 현행유지 전망
  - DDA협상결과 추가 관세인하로 축산물 수입량 증가, 환경문제 등에 의한 규제강화로 사육두수 증가요인 둔화 전망
- 국내외 다양한 여건변화로 원료공급 및 가격 불안요인 잠재
  - 국제경기, 환율등락, 기후·환경변화 생산량 감소 요인 등
-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 원료구매자금 지원, 할당관세 운용, 제조시설 지원 등
- 사료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로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 사료공장 HACCP도입, 중금속·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강화
- 가축질병 발생 개연성 사료의 관리 강화
  - 사료내 동물성 단백질 사료 검사강화,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 다. 세부추진내용

###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 ○ 사업내용

- 환율변동, 국제곡물가격 및 곡물 생산량 등락 등 다양한 변화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사료원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원료구입비 지원
- 연간 사료원료 총 구매량의 2%내외 수준 지원
- 제조업체의 연간 사료생산량과 사료공장 HACCP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차등지원, 2004년 24개업체 지원
- \* 사료용 옥수수·소맥 및 부원료 수입자금, 곡물부산물 어류 부산물, 국내 사료부존자원 구입자금

####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상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 사료곡물 할당관세 적용범위 탄력운영, 사료원료 관세인하 및 의제매입세액 상향조정 추진

### □ 사료 제조시설 지원

#### ○ 사업내용

- 국내 부존자원 활용도 제고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섬유질사료 제조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지원
- 사료공장의 HACCP제도 도입과 BSE 예방을 위해 사료 제조시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제조시설 개·보수비 지원

#### ○ 지원대상 : 지역농축협, 사료제조업체 등

## □ 사료 검사장비 지원

### ○ 사업내용

-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관리 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검정장비 지원
- 광우병 등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료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성사료 혼입 여부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 지원

###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에 의거 사료검정업무를 위임받은 기관·단체

- 농협(사료기술연구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사료검정장비는 내구연한(2~3년)을 감안 주기적인 교체 필요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① 생산비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원료 구매 및 제조시설 지원</li> <li>- 할당관세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원료 구매 및 제조시설 지원</li> <li>- 할당관세 적용</li> <li>- DDA협상과 연계 무관세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원료 구매 및 제조시설 지원</li> <li>- 할당관세 적용</li> <li>- 선별적 무관세화 적용</li> </ul>
② 안전성 및 품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검정장비지원</li> <li>- HACCP지침 제정</li> <li>- 중금속·동물약품 등 유해물질 관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검정장비지원</li> <li>- HACCP 및 BSE 예방 시설지원</li> <li>- HACCP제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CCP 현장적용</li> <li>- HACCP시설지원</li> </ul>
③ 질병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검사요령 개정 등 제도정비</li> <li>- BSE 관련 검사장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검사 실시</li> <li>- 안전성 검사장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검사 실시</li> <li>- 안전성 검사장비 지원</li> </ul>

## 2-2-11. 원산지표시 및 GMO관리제도 운영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GMO)관리제도 운영 중
    - 원산지표시제는 '9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 농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수입산 176, 국산 266품목)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단속
    - GMO표시제는 '0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콩, 옥수수, 콩나물콩, 감자를 대상으로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 실시
- \* 단속실적(단속장소/위반) : ('01) 87천개소/10건 → ('02) 105/14 → ('03) 100/7

#### □ 문 제 점

-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국·품목다양화와 위반행위의 지능화로 인해 허위표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단속건수 : ('01) 7,478 → ('02) 6,427 → ('03) 6,327
    - 허위표시적발 : ('01) 3,804 → ('02) 3,722 → ('03) 3,755
- \* 단속반수 : ('01) 314개 → ('02) 292 → ('03) 251
- 새로운 GMO 품종에 대한 검정능력 부족
    -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개발의 어려움으로 국제추세 감안한 검사체계 구축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산물 수입자유화 추세로 국내 농업인과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요구 증대
  - 단속활동의 효율화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범국민적 감시체계 구축
- GMO의 유통상황을 고려하여 표시대상품목 확대, 수입승인 제도 도입 및 안전취급 사후관리 등으로 소비자 지향적으로 GMO 관리
  - 새로운 GMO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GMO 전문분석 인력 육성, 분석기술 개발 및 국내 유통시 안전관리 기반구축

## 다. 세부추진내용

### < 원산지표시제 >

#### □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과학화

- 통관정보(1,149개 품목)등을 이용한 조기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의 활용 확대
- 첨단장비를 활용한 원산지 식별방법 연구개발 확대
  - \* ('03) 71개 품목 → ('06) 90
- 상습위반업소 List를 작성, 중점관리

#### □ 사법경찰관리 지명확대 및 단속활동 강화

- 사법경찰관리 지명인원 : ('03) 383 → ('04) 390 → ('05) 400
- 중앙특별단속반 중심으로 수입물량급증품목, 국민다소비식품 등에 대한 특별기획단속 강화

□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민간 감시기능의 구축

- 명예감시원 위촉 확대 : ('03) 2.6천명 → ('04) 2.8 → ('05) 3.0
- 소비자단체 회원 중심으로 명예감시원을 개편하는 등 민간감시원 정예화를 통한 전방위적 감시체계 구축
-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 전개(연중 실시) 및 단속결과에 대한 언론홍보로 부정유통감시 분위기 확산

□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강화 및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한 단속 강화
-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비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GMO 관리 >

□ GMO의 유통상황을 고려하여 표시대상 품목확대 및 표시기준 강화추진

- 대상품목은 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GMO로 확대 (7품목 내외)
- 표시면제기준 : 비의도적 혼입 3%이하 → 1% 수준으로 강화 검토

□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에 대비한 검정방법 개발

- 현행 검정 가능한 옥수수 7종 → 3종 추가 ('03~'05년)
- 면화, 유채, 밀, 파파야 ('04~'07년)

□ 새로운 GMO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추어 GMO 전문분석 인력·장비 보강 및 분석기술 개발에 주력

- 분석전문 연구사 특채 및 국가간 GMO 검출능력 평가프로그램 참여 확대

- GMO 유통승인 및 취급·표시관리를 통한 국내 농업환경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 GMO 수입 또는생산시 농업환경위해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 결정
  - GMO 취급업체에 대한 보관·운반·이동 등의 과정에서 안전 관리 이행여부 점검

라. 추진일정

<원산지표시>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과학적인 식별법 개발 사법경찰관지명확대 및 민감감시강화	80개 품목 사법경찰관 390명	100개 품목으로 확대 415명으로 확대	개발품목 확대지속 추진 지명 확대지속 추진

<GMO관리>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GMO분석기술 개발	○ 품목 : - 옥수수 1품종 (Mon863)	○ 품목 : - 옥수수(2품종), 면화, 유채 등	○ 품목 : - 새로운 GMO

## 2-2-12. 수확후관리기술 보급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유통업체의 농산물 장기 보존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 필요
  - 농산물은 특성상 부패가 빠르고 호흡작용으로 인한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수확 후 손실 발생
- 2003년부터 수확후관리기술 표준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양파, 결구상추, 파프리카, 단감 등 4개 품목 개발완료('04.8)
- 수확후관리 및 유통기술 연구 인적자원(2002)

연구 기관	연구원/기관전체	수행중인 연구과제	비 고
농촌진흥청 <sup>주)</sup>	42/905	83/844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0/125	35/300*	
대학교	12/173	30*	

\* 주) 각도 농업기술원 포함(자료 : 농업 R&D 경쟁력 제고, 2002 농업학 심포지움)

#### □ 문제점

- 선진국에 비해 수확후 관리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품목별 표준 기술 정립에 어려움이 있음
  - 육종·재배 등 수확전 기술 개발에 치중, 재배생산 기술과 연계한 선별·저장·수송·가공 등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이 낙후
  - \*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술 수준('02): 선진국 50% 수준
  - \* 수확후 손실율 20~30% 수준 (선진국의 경우 5~10%)
  - 파프리카의 경우 국내 도입된 시기가 짧아 수확후 관리기술이 표준화 되지 않았고 타 품목의 경우에도 유사함



○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 개발 수준

항 목	기술수준 (%)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	비고
수확전 관리 기술	60	50	50	
품질관리 기술	30	25	40	
안전성 기술	40	30	40	
전처리 기술	35	30	10	
포장 및 운송 기술	40	35	30	
저장기술	50	40	60	
방사선 이용기술	60	60	50	
마케팅 및 정보화 기술	40	60	80	
기능성 탐색 기술	50	40	50	
소재화 기술	40	40	50	
제품화 기술	30	40	50	

- 수확후 관리기술이 산발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를 보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장 적용이 미흡
  - 재배기술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보급되고 있지만 수확후 관리기술은 보급채널이 미비
  - 농림부, 농진청, 대학, 한식연, 농림기술관리센터 등이 연구개발한 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 체제가 없어 수확후관리기술의 수요자 불편
- 수확후관리기술은 품목별·용도별로 세분화 되지 못해 유통업체의 요구사항 충족 불충분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수확후 관리기술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가격보다는 품질 위주의 소비 문화가 중산층으로 확대 확산
  - 단기 보관용, 장기보관용, 수출용 등 유통과정상의 필요에 따른 세분화된 기술이 필요
  - 유통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수확후 관리기술은 품목별, 용도별로 세분화 되어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관련기관의 연구 실적, 관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이의 통합 및 공동활용이 필요
  - 산지 생산자 조직, 유통업체 등에서 독자적인 필요에 의한 기술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의 공동 활용문제가 대두

### □ 추진방향

-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한 기술 개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영농법인과 공동 연구 경험이 풍부한 과제 책임자를 공개 공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개발 과정을 검증
  - 품목별, 용도별로 세분화된 표준 기술을 연차적으로 개발 축적
- 품목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 농업인에게 정보 또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농촌현장에 제공중인 경영컨설팅 서비스 내용 중에 수확후 품질관리 내용이 포함됨

- 관련기관간 정보 및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 시군 기술센터인력과의 정보 교류가 가능한 사이버 공간 마련
  - 농림부(농산물유통국), 한국농촌경제연구소(농림기술관리센터), 원예연구소(저장이용과), 농업공학연구소(수확후처리공학과),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한국식품연구원(수확후관리기술연구단), 농과대학 자료 공유
- 수확후관리기술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 규모의 공동체 구성
  - 발표된 수확후 관리기술, 표준매뉴얼 무료 제공
  -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컨설팅 실시
  - 품목별 전문가 그룹 DB를 제공하여 전문가와 관리기술 수요자 연계

#### 다. 세부추진 내용

##### □ 수확후관리기술 표준매뉴얼 개발 작업 지속적으로 추진

- 2008년까지 24개 품목(매년 4~6개)에 대한 수확후관리기술 표준 매뉴얼 개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양파	- 사과	- 배추	- 오이	- 가지	- 고구마
- 결구상추	- 토마토	- 풋고추	- 참외	- 버섯	- 깻잎
- 파프리카	- 감자	- 마늘	- 호박	- 인삼	- 복숭아
- 단감	- 배	- 딸기	- 포도	- 장미	- 양란
	- 백합				

- 수확후 관리가 취약한 채소류 위주로 개발(과실류, 화훼류도 추가)
- 정부, 연구자, 현장 농업인, 대학이 포함되는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용 검증(현장과 공동 연구개발 권장)

## □ 수확후관리기술 서비스의 내실화

- 석사급 전담요원을 기술 수요자 전면 배치
  - 수확후관리기술이 필요한 내용 보완, 자료 정리 및 제공
  - 정보 및 기술이 필요한 농업현장과 품목별 전문가의 연결 역할
  - 수확후관리기술 홈페이지 내용 갱신, FAQ, DB갱신
- 홈페이지 홍보 강화
  - 지자체, 지역 농협, 대학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 한국원예협회 연구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조관계 유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현황자료, 성공사례 등을 발굴하여 홍보에 활용
- 표준매뉴얼, 컨설팅 자료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 기술 및 처리시설 등이 발전하고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반영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 품목별 매뉴얼 개발 착수 ○ 홈페이지 구축	○ 품목별 매뉴얼개발 완료(채소류24개 품목)	○ 품목별 수확후관리 기술 고도화 작업

<참고1>

저온유통 단계별 핵심기술 및 국내기술현황

작업 단계	핵심 요소 기술	국내 기술 현황	비 고
수확 선별	품질규격표준화, 포장등급규격화	<p>품질규격: 산물의 특성, 내부 품질인자 적용이 미비함.</p> <p>포장: 저온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기술 개발 필요</p> <p>표준화: 일관수송(Unit load system)을 위한 규격 제정 필요</p>	<p>* 규모의 영세성 표준화된 품질 규격의 적용이 어려움</p> <p>* 유사한 작목은 포장 단위 및 규격의 간소화로 유도</p> <p>* 산지유통전문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필요</p>
예냉	품목별 최적예냉 조건 및 방식	<p>차압통풍: 보급단계</p> <p>수냉식: 초기단계</p> <p>진공식: 개발/도입 필요</p>	<p>* 작목에 적합한 예냉 방식 개발 필요</p>
저장	품목별 저장조건 규명	과일 및 채소	
수송	냉장차량 파렛트 정합성	<p>냉장차량: 일부 보급됨, 청과물 이용도 매우 낮음</p> <p>차량적재함: 파렛트와의 정합성이 결여</p> <p>저온: 냉장용량이 부족</p>	<p>* 파렛트화 부자재 개발 필요</p> <p>* 저온유통용 포장 규격 확립</p>
판매	소비지 물류센터, 슈퍼체인, 백화점	일부 선진화, 급신장	<p>* 유통종사인의 교육 및 훈련 필요</p>

<참고 2>

과실류, 과채류, 관련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수준

작업공정 및 관련기술		산업기술 수준			연구개발 수준		
		단 순 기계화	시스 템 자동화	선진국 수 준	단순 모방	응용 원리	선진국 수 준
예건, 예조		○			×		
예냉		○			○		
저 장	저온저장		○		○		
	CA저장	○			○		
	MA저장	×			○		
	이용기술	○			×		
	에너지절약기술	○			×		
전 처 리	세 정	○					
	세 척	○					
	확 싱	○					
선 별	중량선별			○			○
	색상선별		○				○
	당도선별	○				○	
	산도선별	×			○		
	속도선별	×			○		
	시스템설계	○				○	
포 장	계 량		○		×		
	봉 함		○		×		
수 송	보냉수송	○			×		

<참고 3>

업채류, 근경채류 관련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수준

작업공정 및 관련기술		산업기술 수준			연구개발 수준		
		단 순 기계화	시스 템 자동화	선진국 수 준	단순 모방	응용 원리	선진국 수 준
큐 어 링		×			○		
예 냉	강제통풍	○				○	
	차압예냉	○				○	
	진공예냉	×			×		
	냉수냉각	○			○		
	예냉용포장설계	○				○	
저 장	저온저장		○		○		
	MA 저장	○			○		
	에너지절약기술	×			×		
전 처 리	세 척	○			×		
	세 정	○			×		
선 별	크기선별	○			○		
	무게선별	○			○		
포 장	계 량		○		○		
	봉 합		○		○		
수 송	보냉수송	○			×		

## 2-2-13. 축산물위생 전문인력 양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 식육의 처리, 가공, 판매 및 유통등 식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식육처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선진육류 유통구조 구축을 위한 핵심인력으로 활용

□ 식육의 처리, 가공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 '94~'02년까지 전문인력 2,759명 양성

- 전국 교육대상 인원 48천명의 6% 수준

· 식육유통업계 : 도축장110, 육가공업체2,000, 식육업소42,000개

○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의 한정으로 교육인원 확대에 한계

- 식육처리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이 미흡하여 식육교육 참여 위축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식육 선진화를 위한 식육처리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 식육업계의 전문화 풍토조성

- 식육소매점까지 식육처리기능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 현재의 농협 식육교육센터를 축산물위생·안전성 교육을 전담하는 “축산물 위생교육원”으로 확대개편
  - 기존 식육처리기술교육에서 도축검사관·검사원, 축산물명예감시원, HACCP교육 등을 전담 실시하는 “축산물위생 교육원”으로 확대
- 축산관련단체 및 업체 등에 대한 위탁교육과정의 확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활성화

#### 다. 세부추진내용

- 교육생 Needs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1차 부분육 가공과 2차 가공기술을 망라한 전문교육 실시
  - 즉석 수제햄 소시지 가공제조 기술 습득으로 비선호부위 소비 확대
- 자조금사업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가공·요리 등 신기술 개발 보급
  - 자조금 홍보사업에서 다양하게 개발된 돼지고기 요리기법 전수
-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 도축검사관·검사원 교육, 축산물명예감시원 교육, 사육·사료·도축·가공·운반·보관·판매·집유단계의 HACCP교육
- 신기술 개발보급과 식육관련 연구 및 조사활동 수행
- 집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터넷 등 Cyber교육 확대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교육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과정(60명) : 종합반 11주</li> <li>○ 전문과정(60명) : 식육판매반4주, 식육가공반4주</li> <li>○ 단기과정(60명) : 기능반 1주</li> <li>○ 기타교육과정(300명) : 1~ 5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육교육+</li> <li>도축검사관, 명예</li> <li>감시원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육교육+</li> <li>도축검사관, 명예</li> <li>감시원 교육+</li> <li>위탁교육</li> </ul>

## 2-2-14. 축산물등급판정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축산물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육 유통 촉진으로 국내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보,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95년부터 법에 근거한 본사업 추진
  - 등급판정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고기, 계란
  - '03년부터 등급판정수수료(소, 돼지, 계란에 한함)를 징수하여 재정자립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축종별 수수료 : 소(1,600원/두), 돼지(300원/두), 계란(0.5원/개)

#### □ 문제점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장기발전대책에 따라 격년제로 수수료 단가를 인상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수수료 인상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부담자인 생산자의 반발이 예상됨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축산물등급 판정대상을 점차 확대
  - 소, 돼지 → 계란, 닭고기, 부분육등급표시확인 등
- 축산물등급판정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수수료 징수재원을 늘리고 축종별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 향상

## 다. 세부추진내용

### □ 등급판정사업의 확대 실시

#### ○ 계란·닭고기 등급판정 및 부분육등급표시확인 사업 확대

- 계란 : '04년도에는 유통량의 1%, '08년 2.5%, '13년 4%까지 판정
- 닭고기 : '04년도에는 유통량의 0.3%, '08년 1.6%, '13년 2%까지 판정
- 부분육 : '04년도에는 유통량의 1%, '08년 1.8%, '13년에 4%까지 판정

#### ○ 돼지 냉도체 육질등급판정 실시

- 현행 온도체판정으로 육량·육질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돼지에 대해서도 육질구분을 희망하는 추세에 맞게 냉도체 판정
- '04년 7월부터 근내지방도 기준 등에 의한 육질등급판정 시행
  - 근내지방도에 의한 육질판정으로 돼지도 고품질육 생산이 가능
  - 사양 및 도축전후 취급방법 개선 등으로 물돼지 생산방지 가능

### □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 ○ 현재 소, 돼지, 계란에 대하여 징수하고 있는 등급판정 수수료징수를 닭고기, 부분육 등으로 징수대상을 점차 확대

- 등급판정수수료 단가인상은 자조금 징수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 및 관련협회·단체의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 축산물등급판정과 관련된 대농가 서비스 개선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등급판정결과 분석자료를 농가에 신속히 제공하는 피드백체계 지속보완·구축
  - 전국 시·도 대비 본인 성적분석자료, 체중대별 등급판정 결과 등의 월별 등급판정통계의 추가 제공
  - E-mail 마케팅시스템 도입, 등급판정결과 출하농가에 당일 제공
-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통해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시황 등을 실시간 중계하여 출하농가 경영개선에 기여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유료사업	소·돼지·계란의 등급판정수수료 징수시작	축종별 수수료 단가 인상	축종별 수수료 단가 인상
○ 신규사업	부분육등급표시사업 및 닭고기 등급판정사업의 시범실시	수수료징수시작 검토	수수료 단가인상
○ 자립화율(%)	41	62	65

## 2-2-15. 품질고급화장려금(거세장려금)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가의 거세장려 및 1등급 출현 유도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00.7월부터 추진
  - 지원대상 : 국내 한우 및 육우 거세농가
  - 지원내용 : 시·군의 사업계획에 따라 농가 거세시 두당 10~20만원의 거세장려금 지급
    - 지급단가 : (한우) 20만원/두, (육우) 10만원/두
  - 지원조건 : 기금보조 90%, 지방비 10%
  - 지원실적 : ('00)64천두/93억원→('01)136/180→('02)119/157
- 큰소거세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04.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1등급이상 출현된 한우 거세우에 대해 지급
  - 지급단가 : 20~30만원, 지원기준 : 기금 전액보조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DDA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필요
  - DDA 차기협상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 한우산업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시장차별화 필요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을 통한 농가의 고급육 생산유도로 현재 35%수준인 1등급 출현율을 60%이상 확대 추진

### 다. 세부 추진내용

- 큰소거세 등 기존 거세장려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세장려금은 '03.6월까지 지급하고 '04.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1등급이상 출현된 거세우에 대해 장려금 지급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을 통한 1등급 출현율 상승
  - 1등급출현율 목표 : ('03) 33%→('04) 35→('06) 43→('10) 60
  - 일정수준 1등급출현율 목표 달성시 연차적인 지급단가 축소를 통한 사업종료로 지급중단에 따른 농가충격완화 및 연착륙 유도
- 한우브랜드경영체와 연계, 거세고급육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로확보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①지원대상조정	-1등급이상 출현된 거세우에 대해 지급		
②1등급출현율 확대	-1등급출현율 40%	-1등급출현율 50%	-1등급출현율 60%

## 2-2-16. 가축개량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장기 국가단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고 우량 종축검정·선발, 계획교배 등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 한우·젓소의 경우 축발기금에서 개량 및 검정, 정액보급 지원
  - 보증종모우를 선발, 우량 소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
  - 한국형 보증종모우 선발(연간) : 한우 20두, 젓소 2~3두
  - 국내산 소 정액 공급계획 : ('04) 1,770천str(한우 1,340, 젓소 430)
  - 가축 능력검정사업을 통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 이용
  - \* 가축개량 관련 기금예산 : ('02) 283억원 → ('03) 276 → ('04P) 272
- 돼지·닭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종축개량 및 검정사업 실시
  - 업체수 : 종돈업 124개소, 정액처리업 58, 종계업 243, 부화업 199
  - 종돈업체수 : ('97) 117개소 → ('98) 89 → ('04.11) 124
  - \* 종돈 50두이상, 종계 1천수이상 종축업은 시장·군수에 신고

### ≪가축개량 주요 성과≫

지 표	'95	'02	증 감
한우 18개월 체중(비거세)	491kg	512	4.3%
젓소산유량(305일)	5,836kg	7,017	20.2
돼지 일당증체량	893g	895	0.2
산란계 연간산란수	286개	297	3.8



- 한우검정 참여율 낮고, 보증종모우 선발 신뢰도(한우 0.55, 젃소 0.80)가 낮아 개량효과 제고 필요
  - 부업규모 한우개량농가 등록우 이동관리 철저로 정확한 개량정보를 획득하여 유전평가 신뢰도 제고
-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저가로 정액을 공급함에 따라 결손이 누적되어 축발기금 부담 증가(결손액 : '02년 60억, '03년 32억)
  - 소 정액 공급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저가 공급

《'04 소 정액 생산원가 및 공급가격 비교(평균)》

구 분	정액생산원가(A)	정액공급단가(B)	B/A
한 우	6,626 원/str	4,529	68 %
젃 소	14,128	6,201	44

- 축종별로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관리 분산
  - 가축검정 : 농협, 양돈·양계협회, 종축개량협회 등으로 분산 추진
    - 한우 : 당대검정 ⇒ 가축개량사업소, 후대검정 ⇒ 축산연
    - 돼지 : 검정소 검정 ⇒ 양돈협회, 농장검정 ⇒ 종축개량협회
    - 닭 : 양계협회
  - 종축등록 : 소·돼지·토끼 ⇒ 종축개량협회, 말 ⇒ 마사회
- 종돈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99.1)된 이후 관리·감독에 어려움
  - 업체는 종돈 입식시 질병검사·예방접종 미시행, 민선 자치단체장은 행정처분에 소극적(과태료 부과 전무, 300만원이하)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중장기 가축개량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 ◀ 가축개량 목표 ▶

지 표	'02	목표('10)	순증△감
한우 18개월 체중(비거세)	512kg	610	19.1%
젖소산유량(305일)	7,017kg	8,500	21.1
돼지 일당증체량	895g	980	9.5
산란계 연간산란수	297개	303	2.0

- 가축능력검정 참여율을 높여 가축개량 촉진
  - 검정비 보조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 농가 자율사업으로 전환
- 국내산 소 정액 공급가격을 점차 현실화하고 종모우 능력에 따른 정액 차등가격제 도입 시행

## 다. 세부추진내용

### (1) 한우개량농가의 등록우 및 축협조합 관리 내실화

- 한우능력검정에 소요되는 어미소 확보를 위한 관리두수 · 한우개량모집단 적정두수 유지 및 등록우관리 강화
  - 관리두수 조정 : ('03) 6개월령이상 127천두 → ('04) 12개월령 가임암소 80천두 → ('07) " 60천두(유지)
    - '04 조합관리비 지원대상 : 12개월령이상 가임 혈통 · 고등등록우
    - '04 조합관리비 지원단가 : 검정참여조합은 36천원/두, 미참여 조합은 30천원/두로 차등 지원

- **검정 참여율의 연차적 확대** : ('03) 33% → ('10) 50%
  - 관리조합 전체 126개소중 등록우관리 및 사업실적에 따라 40개소 (등록우 65천두)를 검정 참여조합으로 선정
- **개체관리 정확성을 위해 동일 바코드귀표를 2조 장착 유도**
  - 탈락시 관리조합 신고를 받아 동일 바코드번호 귀표를 공급
- **한우개량농가 조사사례비(관리비)는 조정하되 단계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 조건으로 지원**
- **농가조사사례비 조정** : ('03) 혈통 60, 고등 80천원/두 → ('04) **혈통·고등 50**
- **한우개량농가를 이용한 씨수소 및 고능력 암소선발체계 구축**
- **암소검정을 통한 한우 육종농가 집중관리**
  - 육종농가 : ('05) 10농가, 1,000두 → ('08목표) 40농가 4,000두
  - 대상농가 : 혈통·고등등록우 100두내외로 사육하는 한우개량농가로 계획교배에 의한 계절번식실시 농가
  - 개량농가 중에서 규모화된 우수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암소와 수소를 동시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종모우 선발(년 20두)
- **관리조합의 지도인력 육성 및 지자체 지도감독기능 강화**
- **관리조합 지도원의 업무 표준화로 등록우 관리 강화**
  - 관리조합 지도원의 자격기준 강화, 한우개량지도업무 매뉴얼·문서 관리요령 작성 및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가축개량 총괄기관(축산연) 및 시·군의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관리조합 및 등록우 관리**

- 한우개량 초음파생체단층촬영 및 전산정보체계 보강
  - 한우개량 종합전산실 및 유전능력평가팀 설치·운영
    - 가축개량사업소 : 개량정보의 수집·분산을 위한 전산실 운영
    - 축산연구소 : 개량평가를 위한 유전능력평가팀 구성
  - 한우 초음파생체단층촬영자료 전문교육 실시
    - 초음파생체단층촬영 기술보급·정착 및 개량정보 수집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가축개량사업소)

## (2) 젖소 산유능력검정 확대 및 수정란이식을 통한 개량촉진

- 젖소 산유능력검정은 개량의욕이 높은 농가 중심으로 자율적 참여 확대
  -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대하되 자율적 참여 유도로 검정참여율 제고
    - ('03)140천두, 28억원 → ('04)140천두, 24억원
  - BSE발생이후 종우수입 중단에 따라 수정란이식을 통한 젖소 후보종모우(Young Bull) 생산 공급

## (3) 종돈업 등록제로 관리강화 및 종계검정 참여 확대

- 종돈업의 등록제 전환('03.12.26)등 관리강화 및 품질향상 추진
  - 자유업인 종돈 50두미만 소규모 종돈업의 등록을 의무화
    - '04.7.1부터 혈통증명(확인) 발급 시행 : 종축개량협회
    - 시설·장비기준의 단계적 강화로 영세 종돈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 물돼지 PSE 돈육발생을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종돈의 PSS 유전자 검사 및 종돈검정 확대
    - PSS검사지원 : ('03) 5천두, 43백만원 → ('04) 5천두, 43백만원
    - 종돈장·검정소·AI센타 보유 종돈을 대상으로 PSS 검사
  - 육량형질 이외 육질평가를 위한 검정기준 보완 및 검정사업 추진
    - 검정두수·참여율 : ('03) 41천두, 24% → ('10) 80천두, 50%
    - 종돈검정비 지원 : ('03) 140백만원 → ('04) 115백만원

□ 종계 경제능력검정의 내실화

- 종계 경제능력검정은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면서  
원종계농장(GPS)·종계수입농장의 검정 참여 확대
  - 입식시 계군 검정실시함을 종계업등록자 준수사항으로 법제화
  - 검정 GPS·종계수입농장수 : (현재) 12개소 → (목표) 20개소
  - 검정수수 : ('03) 27천수 → ('04) 30천수(산란 17, 육용 13)
- 종계 검정요원 전문화, 검정방법 공정화 및 시설현대화 추진
  - 검정요원 전문화 교육 : 24명(검정소 4, 농장 20)
  - 검정시설현대화 지원 : ('03) 176백만원 → ('04) 127백만원

(4) 가축개량기관의 기능조정 및 운영개선

□ 가축개량사업소의 기능조정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

- 축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독립성,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중장기적으로 종축등록 및 검정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가축개량추진의 효율성 제고

(5) 가축개량총괄기관의 기능 및 시도(시군) 역할 강화

□ 가축개량 총괄기관(축산연)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 등록업체의 종축생산 및 질병관리 이행 점검 의무화
  - 업체에 대한 정기 확인검사 철저히 질병관리 강화

(6) 개량 대상 가축의 확대 검토

□ 개량 대상 가축에 오리 등 기타 가축 확대 여부 검토

- 축산연구소 및 가축개량협의회의 타당성 검토 후 확대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가축개량>			
○ 한우 18개월 체중	550kg	590	600
○ 젖소산유량(305일)	7,720kg	8,240	8,370
○ 돼지일당 증체량	956g	968	972
○ 산란계 산란율	84.6%	86.2	88.6
<검정참여율>			
○ 한 우	33%	40	41
○ 젖 소	55%	58	46
○ 돼 지	41%	45	46
○ 닭	53%	55	56

## 2-2-17. 가축질병 방역대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종전에는 토착형 일반질병만 발생하였으나 '00년 이후 교역 증가로 인수공통전염병과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이 유입되어 대책이 시급함
- 구제역('00년 최초, '02년 재발) 4,400억원, 가금인플루엔자('03년) 1,500억원, 사슴만성소모성질병('02년), 돼지콜레라('02년 재발) 518억원 피해
- \* 탄저에 걸린 쇠고기를 먹고 1명('94) ·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 5명 사망, 부루세라에 걸린 쇠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12명 감염('03)

#### □ 문제점

- 중국 · 몽고 등과 인접, 교류확대로 해외 병원체 유입 증가
- 축산농가 · 단체 등 민간부문의 축사소독 · 차단방역 등 방역조치 소홀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주도 방역추진에 대한 의존 경향 심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질병 청정화가 어려울 경우 중국 · 남미 등에서 동 · 축산물 수입허용 압력(동등성 요구)에 협상의 폭이 좁아져 해외악성전염병의 유입 경로가 더욱 다양화
-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증대되는 반면, 축산업 위기 의식으로 투자, 방역 소홀로 여건은 한층 불안정해질 전망

#### □ 추진방향

-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제 사전 구축 및 가축사육환경 개선
- 악성가축질병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 농가와 지자체의 소독 · 예찰 등 자율 차단방역 강화

## 다. 세부 추진내용

### □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제 구축

- 광우병 예방대책 및 발생시 대비 사전대책 수립 추진
  -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 광우병검사 강화, 특정위험물질(SRM)처리방안, 소 생산이력제 도입 추진
- 한우 부루세라병 검진체계 확립으로 확산방지
-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및 광견병 방역대책 추진
-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감염 차단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 □ 가축질병발생 사전 차단

- 건강한 가축 사육 환경 조성
  - 축산업등록제 정착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밀도 완화 추진
  - 가축 밀집사육 지역 특별관리 및 분산 유도
- 국경검역 강화로 악성가축질병 유입방지
  -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 및 홍보강화
  - 악성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농가·현지 축산경영자 중점관리
  - 탐지견 투입확대 등으로 질병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집중 검역·검색
  - 검역검사대 추가확보 및 복지부 검역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 개봉 검사 확대
- 국내 차단방역 철저로 주요질병 예방 및 사전대비 강화
  - 지역별 담당관제 운영 등 상시 예찰체계 구축으로 의심축 조기 색출
  - 방역규정 위반농가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강화
  - 농장 소독시설 설치기준 및 소독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농가교육 강화
  - 농장의 외국인 고용실태 정기적 파악 및 리스트 작성 관리, 피고용인 교육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

- 방역 추진실적 등을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및 정책자금 지원 차등화
- “전국일제소독의 날” 마을 “공동방재단” 운영 내실화 및 시·군별 “지역방역협의회(농협·협회등 참여)”를 통한 민간방역 활성화
- 사료·분뇨·차량 등 출입경로 및 가축의 이동(거래)경로를 사전에 파악, D/B화 추진
- 지자체 방역 책임감 고취를 위한 살처분보상금 등의 지방비 부담 규정 신설 추진

○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특별방역관리 및 폐사가축 관리 강화

-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예찰·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강화
- 폐사축은 소각로나 렌더링 열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폐사축을 불법처리하거나 가축에 급여한 자(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 폐사축 수거·운반시스템 구축 및 소각시설 등 설치·운영 지원

○ 질병 발생농장 색출기능 강화

- 민간병성감정기관의 활성화 위한 검사비용 및 진단액류 지원으로 질병 조기 색출
- 농촌지역 개업수의사 확보를 위한 희망자 특례입학제도 및 장학금지급 추진
- 자진 질병발생 신고 유도를 위한 살처분대상 질병 범위 확대 검토

□ 발생시 초동방역 및 종식 후 사후관리 강화

○ 발생시 초동방역체계 강화

- 발생 농가 사람·차량 등 이동통제, 소독 등 관리 강화
- 역학 조사 등 초동대응체계 보완

○ 종식 및 발생지역 사후관리 강화

- 매몰지 정기점검, 인근 지역 수질 검사 등 사후관리 철저

□ 방역조직 및 인력확충

○ 지자체 축산조직 및 인력 확충계획 수립·시행(시·도, 시·군·구)

- 증원 소요인력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조정 확보, 부족인원은 표준정원외 승인(행정자치부)

○ 수의사가 일정기간 가축방역기관에 근무할 경우 방역의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관제 도입 추진

\* 중앙 가축방역조직은 우리부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방안 검토 예정

#### 4.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소부루세라병 최소화	-검사증명서 미첨부 소의 가축시장 거래금지 -관련 규정 제·개정	-검사인력 확보(81명)	-발병 최소화
○ 광우병 예방 -검사강화 -사료안전 관리 지원  -홍보 -검사시설 지원 -연구시설 -검사인력 확보 -신속검사키트 -축산물검사관(수의사) -SRM처리	-3,000두 검사 -분석장비 : 782백만원 -제조라인 구분 -사료추적관리 : 70백만원  -110백만원 -14개소(300백만원/개소)  -28명 숙달교육 -30만두분(1,800백만원)  -도축장 시설보수(2개소) -SRM 조각비용	-5,000두 검사 -1,078백만원 -20개소(3,000백만원/개소)  -매년 110백만원 -5개소 -1개소(연면적 100평) -지속추진 -매년 30만두분(1,800백만원)  -127명 확보 -추가지원 검토 -년간 3,000백만원	-5,000두 검사 -검토 -검토 -검토  -매년 110백만원 -검토 -검토 -검토 -매년 1,800백만원  -250명 증원 -8개소(80억원) -검토
○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1,500억원	-매년 2,000백만원	-매년 2,000백만원
○ 구제역 등 각종 질병 방역	-50,482백만원	-매년 50,000백만원	-매년 100,000백만원
○ 밀집지역 농장 이전	-2,000~3,000백만원 용자 -철거비 ; 15백만원(개소당)	-2,000~3,000백만원 용자 -철거비 ; 15백만원(개소당)	-2,000~3,000백만원 용자 -철거비 ; 15백만원(개소당)
○ 공익수의사 운영	-관련규정 제·개정 추진	-150명 25억원('06) -300명 50억원('07부터)	-매년 75억원
○ 농촌지역 개업수의사 확보를 위한 장학금지급	-제도 마련	-20명 20억원('06) -'11년까지 매년 20명 증가	-매년 12억원
○ 가축방역특별포상제	-281백만원(39개 우수시·도)	-281백만원(39개 우수시·도)	-매년 281백만원
○ 민간병성감정기관 활성화 지원	-지원방안 마련	-270백만원('06부터)	-매년 270백만원
○ 국경검역 -홍보, 탐지견 운용, 검사, 전문가 양성 등	-20억원	-매년 20억원	-매년 30억원
○ 폐사축관리	-폐사축 처리시설 : -	-1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개소당)
○ 방역본부 운영강화	-9본부 40출장소 305명 위생검사업무(100명 신규) 추가	-9본부 40출장소 305명 위생검사업무 100명 추가	-9본부 44출장소 310명 방역·위생업무 정착

## 2-2-18. 동물보호 종합대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① 반려동물 사육 및 유통

○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사육이 매년 증가 추세

- 반려동물 사육(시·군·구 조사) : ('02) 2,156천두 → ('03) 2,23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에서 6가구당 1가구가 개·고양이 사육 추정

☞ 소비자보호원은 전국적으로 약 280만가구에서 반려동물 사육 추정

○ 애견은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주로 번식, 충무로 애견상인연합회 등 사설경매소를 통해 애견센터 등 판매업소에 공급

- 애견판매업소는 '04.5월 현재 서울에만 302개소 영업중(전국에는 1천개소이상으로 추정)

○ 사육자들은 애견센터 등을 통해 주로 구입(60%)하나 이웃·친지로 부터 기증받는 경우도 많음

##### ② 유기동물 및 동물사체 등 관리

○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시·군에서 보호·관리하도록 규정

-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물보호단체 등에 비용을 지급, 보호 위탁하나, 시설이 부족하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안락사 처리

○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립처리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소각처리

- 가정에서 죽은 경우(“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로 수거하여 처리

### ③ 실험동물 생산 및 사용

- 실험동물 공급업체는 8개소이며, 다수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
  - 대규모 공급업체 : 중앙실험동물 · 삼육실험연구소 · 마크로젠 등
- 동물실험은 정부 · 학계 · 업계 등의 500여개 연구기관에서 수행
  - 실험동물은 연간 약 6백만마리(마우스 5, 랫트 등 1) 사용 추정

### □ 문제점

#### ① 동물 학대행위 상존

-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위반시 벌칙도 최고 벌금 20만원으로 너무 낮아 학대 방지효과 미흡
  - 국내 · 외 동물보호단체의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과 법개정 요구지속
- 번식업소 등 집단 사육시설 관리제도 부재로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인한 음성적 학대 지속

#### ② 반려동물 관리제도 미비

- 공공안전 관련 소유자 의무규정 미비로 관리소홀에 따른 민원 증가
  - 개에 물린 위해사고, 소음 · 배설물 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 발생
    - \* '03년중 서울시에서만 교상(咬傷) 사고 5건, 생활민원 363건 접수
  - 광견병 · 개희충증 등 인수공통질병으로 인한 피해우려도 증가
    - \* '99~'04년까지 광견병으로 5명 사망, '03년중 광견병 30건 발생

☞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04.7) 애견배설물 시료 79점중 10점 (12.7%)에서 기생충, 21점(26.6%)에서는 병원성세균 검출  
※ 개희충으로 어린이 실명 사례('04.2월 KBS1 TV 환경스페셜 방영)

○ 동물 판매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판매업 제도화 필요

- 유기동물 감축을 위해서도 어린동물 판매제한 등 제도적 관리 시급

※ 소비자보호원 상담건수 : ('00) 2,133 → ('01) 2,578 → ('02.11) 3,459건

☞ 일본은 판매·훈련 등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 등록제 시행

○ 사체의 인도적·위생적 처리에 필요한 제도·시설 미비

- 동물병원이외에서 발생한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 거부감 때문에 공원 등에 몰래 매장, 지하수 오염우려

※ 서울에서만 연간 320톤의 애완견사체 발생 추정(서울시정개발연구원)

③ 유기동물 보호·관리 미흡

○ 질병, 신상변동에 따른 사육포기, 분실 등으로 유기동물 급증

- 생활불편 민원 증가,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우려

\* 유기동물 포획·처리두수(전국) : ('02) 16천두 → ('03) 25(증 56.3%)

○ 보호시설·예산 부족 등으로 다수가 방치되는 등 보호 미흡

- 인식표가 없어 소유자 확인·처벌 불가능, 대부분 안락사 처리(90%)

④ 실험동물 관련 규정 미비

○ 불요불급한 실험 제한 등 동물보호 차원의 관리 미흡

- 동물보호법에는 실험에 따른 고통 최소화 등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

○ 공중위생, 실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리제도 마련 시급

\* 국·EU 등은 실험계획 사전심사, 특정실험 금지, 시행자 자격제한 등 엄격 관리, EU는 '00.4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 금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동물 학대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기동물 및 실험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
- 동물 소유자·판매자 등의 책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에 의한 질병전파 등 위해를 예방

## 다. 세부추진내용

### (1). 동물 학대행위자 처벌 및 감시 강화

-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위반시 처벌 강화
  -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열거하고 그 범위도 확대(투견 등)
-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 감시활동 강화

### (2). 반려동물 관리제도 정비

- 반려동물 판매업자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책무 강화
  - 개·고양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애견사육자 등록제 실시
    - 동물보호법에 근거 마련, 대상견종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 일본·영국·미국·뉴질랜드·호주·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 전염병 전파 등 위해 예방을 위해 판매업자·소유자 책무 강화
    - 어린동물 판매제한, 광견병예방접종, 외출시 배변봉투 휴대 등
- 반려동물 사체의 인도적·위생적 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 폐기물관리법 : 일반 생활폐기물과 분리, 별도 처리하는 방안 강구
  - 동물보호법 : 반려동물 전용 장묘업제도(신고제) 신규 도입

(3).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기동물 보호의무 강화

○ 대도시지역은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동물보호법에 명시

재유기 예방과 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 입양대상자 자격기준을 설정, 유기동물 임의 포획·판매 금지

(4). 실험동물 관리체계 구축

유통단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험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

○ 실험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원장에게 등록

실험동물 보호 및 위해 예방을 위한 실험시설설치 신고제 도입

○ 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원장에게 신고

(5).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관련시설 종사자, 학생 등 대상 교육 실시(동물보호단체 주관)

매년 일정 기간(또는 날)을 정하여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동물보호법 개정	-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정비('05) - 동물복지업무 인력 보강('05)	-	-

## 2-2-19. 동물보호소 설치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사육증가로 유기동물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질병전파 등 피해 우려
  - 유기동물 포획·처리두수(전국) : ('02) 16천두 → ('03) 25(증 56.3%)
- 개고기, 동물실험 천국 등 동물학대국이라는 외국의 인식과 국내 동물보호단체의 동물보호 실태 개선 요구
  - 외국주재 우리나라 공관 등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시위 및 야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로 국가이미지 개선 필요

#### □ 문제점

- 유기동물 방치시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므로 야생동물과 접촉하여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우려
- 현재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보호 시설이 거의 없고, 사육환경이 열악하여 대부분 안락사 처리하거나 적절한 보호가 곤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유기동물 등 동물보호에 대한 국내·외 사회적 기대감 확대 전망

- 선진국에서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에 대한 동물보호 의식 향상 전망
- 유기동물 증가시 인수공통전염병 전파가 우려되고, 국민들의 생활민원 폭주 예상



## □ 추진방향

- 동물보호소 설치로 유기동물 관리에 의한 국민 공중위생확보 및 민원해소
- 동물복지 향상에 따른 국민정서 함양 및 국가이미지 개선

## 다. 세부추진내용

### □ 대도시 중심으로 동물보호소 설치

- 인구가 많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동물보호소 설치
  -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1개소 이상 설치
  - 설치개소 : 32개소(서울시 10개소, 광역시 6개소, 10개 시·도, 50만 이상 도시 6개소)
  - ※ 50만 이상도시 :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포항
- 동물보호소 중심의 애완동물산업 발전 유도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학대, 유기동물 구조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도 도입 추진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동물보호소 설치	○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동물보호소 설치근거 마련 - 동물학대행위, 애완동물 유기시 처벌 등 근거 규정 마련 - 동물보호감시관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관련규정 제·개정	○ 동물보호소 설치 - 전국에 32개소 설치 - 320억원(10억×32개소) ※ 시설비는 국비,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 동물보호소 중심의 동물보호 활동

## 2-2-20. 축산업 등록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도입배경

- 선진축산의 전제요건인 가축질병 방역,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환경보전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축산업등록제 도입
  - 농장위치, 약품·분뇨·사료차량 이동경로 등 방역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질병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 실시
  - 축산물 이력추적을 위해서는 개체 등록 및 농장등록이 필수적
  - 친환경축산직불제, 축산물브랜드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 세계 각국은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부담 증가, 구제역·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친환경축산을 위한 기반강화 추세
  - 네덜란드는 농가별 분뇨발생 허용량 제한, 벨기에는 농가별 사육두수 상한제정, 프랑스는 대규모 농장허가제 운영

#### □ 주요내용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면적 소·닭·오리 300㎡, 돼지 50㎡ 초과 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
  - 가축사육업은 '05.12.26까지, 계란집하업은 '04.6.26까지 등록
  - \* 미등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
- 가축사육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장비기준 없이 현재상태 그대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해소
  - 가축사육시설이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추면 됨
- 적정숫자 이상 가축 밀집사육 금지('07. 1. 1. 시행)

□ 축산업 등록 활성화를 위한 농가 등 교육·홍보 실시

- 농가, 시·군, 축협, 유업체 등 담당자 (10회) 및 지역 순회교육(2회)
- 리후렛(22만부), 전문지 기획기사(7회)·광고(7회)게재 등

\* '04.12.29일 현재 등록대상 39천여호 중 9,612호(24.5%) 등록

- 종축업 377호, 부화업 174, 계란집하업 22, 한육우 5,307, 젖소 658, 돼지 1,688, 닭 1,360, 오리 37

□ 문제점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였으나, 일부 농가는 등록시 부담이 큰 것으로 잘못 인식
  - 일부 농가는 '10년까지 등록제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반대서명
- 시·군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등록지연 우려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 도입 불가피

- 축산업이 자율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선진축산을 지향한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음

□ 가축사육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장비기준 없이 축사면적, 사육두수 등을 현재상태 그대로 등록하면 되며 추가 부담이 없음

- 소독설비와 분뇨처리시설 구비여부를 확인않고 등록 가능

□ 앞으로 농가들이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 대대적인 농가홍보실시, 지자체별 대책반 운영 등 등록촉진 대책을 마련, '05년말까지 축산업등록 완료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 축산업등록 촉진대책 수립·시행

- 등록제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대대적 홍보 실시
  - 설명서한 발송, 기획기사·광고 및 반상회보 게재 등
  - 조사료생산, 인공수정기술 등 모든 교육시 홍보실시
- 등록촉진대책반을 구성, 상시 점검·지원체계 구축
  - 농림부, 시·도,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 월별·축종별 등록목표 설정, 점검회의 및 현장점검 등 실시
- 관련 생산자단체에 등록제 홍보실적에 따라 비용 지원(교육 교재, 리후렛, 전문지 광고비 등, '05년 100백만원)
- 등록추진 유공자 해외선진지 시찰 및 장관표창 실시(40명)
- 시·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시·군별 전산보조인력 지원 (181명, '05년 1년만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위생·방역강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부화업·종축업, 계란 집하업 등록완료 ○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 완료	-	-

## 2-3.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

### (1) 거점 시설 중심으로 산지 유통을 계열화

◇ APC, RPC 등 산지유통시설을 유통혁신의 거점으로, 산지 공동마케팅조직을 차세대 산지유통주체로 육성

#### □ 생산-유통의 계열화 중심체로서 산지유통조직의 발전 내실화

- 경영혁신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인센티브 자금, 시설 등 집중 지원
  - 계약재배 및 품질기준 단일화, 공동선별·파렛트 출하, 판로개척 등 평가
-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조합간 자율합병 촉진

#### □ 우수 산지유통조직은 결속력이 강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발전 하도록 하여 차세대 기업형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제도화

- 비용·수익이 분명한 독립채산·책임경영제·공동계산 정착으로 경영구조 선진화
  - 규모화된 거점 산지조직형, 사업연합형, 유통기업 공동출자법인형 등으로 다양화
- 지역·품목단위 조합간 공동출자·판매사업 방식 제도화
  - 농협법에 조합간 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공동출자기업 설립기회를 촉진
- 각종 정책자금(고품질 생산, 계약재배, 시설자금 등)을 유통종합 자금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공동마케팅조직에 우선 지원
  - 무이자 계약재배자금을 마케팅 역량있는 우수조직 중심으로 지원

-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세척, 선별, 가공, 전처리시설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가능한 산지유통센터(APC) 설치를 지원
  - 대규모 APC는 지자체 참여 방식으로 군 단위 이상 광역기반 조직, 독립적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공동마케팅조직에 우선 지원
    - APC를 중심으로 소규모 저장·선별시설 계열화 촉진
  - 활용도가 낮은 APC 등 유통시설을 임차 또는 M&A하는 유통조직에 운영비 및 시설보완 우선 지원
  
-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시·군 단위 2개 이상 설치지역(49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영부실 RPC는 통합, 통합이 어려운 지역은 사내분사제 도입을 유도
    - 정부지원 RPC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 우수 RPC에 집중 지원
  - RPC와 농업인간 고품질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내실화
    - 계약재배 내용에 품종·농약사용·시비관리·수확시기 등을 포함
  -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조기 확충
    - '10년까지 수확기에 1,100만석 수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02 : 595만석)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우수 도축장 중심으로 도축·가공 일관처리 및 부분육 유통 활성화로 축산물 품질 향상 도모
  - LPC 등이 브랜드 경영체 및 대형 판매점과 연계한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경영자금 중점 지원
  - 도축장의 시장 차별화를 위해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를 도입하고 도축장 내에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시설자금 우선 지원

## (2) 시장 영향력을 갖는 파워 브랜드 육성

◇ 농축산물 유통의 전략적 축으로서 규모화된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 '13년까지 전체 브랜드 농산물의 50%를 공동 브랜드화

□ 주요 품목별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전국 대표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지자체 중심으로 생산자조직, 지역대학, 연구소 등이 지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을 촉진

- 공동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상표등록 등 초기개발비용 지원(개소당 5천만원, 농안기금 50%)

○ 자조금사업과 연계, 품목별 전국 대표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대표 브랜드(예 : 과수 공동브랜드 "Sunplus")로 발전 유도

- 전국대표브랜드 가입농가, 회원 APC·LPC등을 중심으로 전국대표 조직을 통해 품질·안전관리, 마케팅, 수출, 수급조절 기능까지 담당

○ 지리적 표시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우수브랜드 평가 및 홍보 강화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브랜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도 도입('05)

○ 홍보도 수급상황에 따른 일회성 홍보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

-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축산물 브랜드전, 브랜드 경진대회 등을 활성화

### (3)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등 off-line 유통기반  
바탕 위에 전자상거래 등 on-line 유통을 접목

- 소비자와 산지간 디지털 유통정보·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중심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 촉진
  - 종합유통센터간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하처와 공급망관리시스템(SCM)을 구축
  - 도매시장과 APC, RPC를 연결하는 전자 수·발주 시스템을 도입 하여  
거래 효율성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 품질 위주의 농산물 규격을 정착시키고 도매시장의 품질관리, 시설보완 및  
거래제도 개선을 추진
  -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제도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표준 소비자 보호협약 개발
- 파렛트 출하, 표준하역비 적용 확대 등으로 물류 선진화에 역점
  - 포장재지원 중심의 물류표준화 사업을 공동선별, 파렛타이징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우수조직에 집중 지원
    - '08년 이후는 파렛타이징 중심의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통합
  - 파렛트 출하자 등록제를 실시, 하역비 차등화·경매우선 등 우대
  -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무·배추의 물류표준화 방안을 강구하고,  
하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하역비 제도를 내실화



## 2-3-1.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산지의 규모화·전문화된 출하거점조직으로서 소비자 지향적 농산물 유통을 실현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280개소 육성
  - 수확 후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상품화, 물류체계 개선 및 공동계산·직거래 등 선진유통 방식 확산 도모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매출규모, 공동계산참여율 계속 상승 추세
  - 조직당 매출액 : ('01) 110억원 → ('02) 119 → ('03) 130

#### □ 문 제 점

- 산지유통조직의 판매사업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면단위 사업체계에 머물러 있으며 차별화된 브랜드파워를 가진 전문화·규모화·시설화된 마케팅전문조직 육성은 아직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시장개방 확대,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안전 상품의 개발과 브랜드 마케팅을 주도하는 경쟁력있는 마케팅 조직의 육성이 경쟁력의 관건이 될 전망
  - 전업농가와 전문 마케팅조직과의 자발적 계열화 움직임과 산지유통전문조직간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조정 촉진 전망
- 산지유통조직을 선진적인 마케팅조직으로 규모화·전문화·시설화 유도
  - 공동계산조직, 구성원과 마케팅조직과의 계약출하 확산 유도
  - 광역연합사업 또는 마케팅위주의 독립채산제·회원제 공동 마케팅 조직에 대한 운영 및 시설 집중 지원

## 다. 세부추진내용

- 공동마케팅조직 활성화로 전체 원예농산물 유통량의 50%를 담당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규모화된 농산물유통이 가능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육성('13년까지 200개)
    - 산지유통전문조직(280개소), APC(208개소)의 마케팅 사업혁신을 통해 광역화·전문화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지표 및 발전전략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05)
    - 공동마케팅조직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은 공모·현지실사 후 산지유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정

◆ **공동마케팅조직 : 전업농으로 구성된 회원제출하조직과 고부가가치 상품화 시설·기술을 기반으로 농산품마케팅을 추구하는 기업적 경영체**

① 대상조직

- 농협조직 : 연합판매조직, 광역합병조합, 품목전문조합
- 영농조합법인 및 상법상 법인

② 조직형태 : 독립채산체형태로 운영되는 상법상법인(자회사포함), 영농조합법인,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③ 사업규모

- 매출액 및 판매사업실적으로 100억원이상
- 매출액의 10%(또는 10억원)이상을 공동계산 또는 30%이상계약재배
- 다만, 연합판매조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원료농산물 조달

- 원료농산물조달지역이 현재 3개 읍면이상이고, 향후 3년내 시군단위로 확대
- 농협이외의 지역은 3개 시·군이상의 공급지역을 확보

□ 공동마케팅 조직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① 사업연합·기업형 마케팅법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각 조합 APC간 공동사업법인 법제화 (농협법 개정)
- 품목조합연합회에 지역조합 참여를 허용, 품목사업연합 기초 마련
- 경제사업 출자제한을 해제하여 마케팅 자회사 설립 용이하도록 개선

②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퇴출 방식으로 마케팅혁신 유도

- 산지전문조직 유통자금·시설지원 사업평가 시 경영혁신요소 중점 평가  
- APC독립회계 여부, 판매사업 책임경영체제, 전문인력 배치 정도 평가
- '05년부터 조직 평가를 「유통사업종합평가」로 통합하고 평가전문성 강화

③ 전업농 중심의 「생산·출하협약(안)」 마련, 출하권 출자 도입

- 의무출하, 공동계산, 실질적 판매수수료, 출하협약 위반시 위약금 부과, 품종통일, 재배관리 및 출하시기 약정

④ 공동규격출하지원방식 개편

- 규격출하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공동 선별비 지원으로 전환
- 공동계산·파렛트 출하물량에 한하여 포장재 지원으로 개편

⑤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체제 강화

- 공동계산 정착 및 상품화, 마케팅, 경영혁신 전문컨설팅 체제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사제 도입과 연계,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체계화
  - 산·학·관·연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농산물 마케팅지원 협력체계 구축
- \* 지자체 농림사업평가 및 규모화된 APC 선정평가지 중점 반영

□ 공동마케팅조직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유통종합자금 통합 지원

- 마케팅조직의 유통지원자금을 원료확보자금과 마케팅용도 자금으로 크게 구분·통합하여 유통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② 공동선별비 지원 및 산지 유통시설 지원

- 고품질 상품균일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40~50%)
-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이 APC시설을 확대·보완하는 경우 우선 지원

③ 공동마케팅조직의 전문인력 활용 인센티브 지원

- 외부영입 전문 CEO, 마케팅경력 전문인력 3년간 인센티브 지원 검토
  - 규모화된 APC지원시 전문가공모채용 방식 채용시 가점 검토
- 산지유통센터의 설비관리 및 수확 및 선별 등 실무인력 지원
- 공동마케팅조직 APC를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업체로 지정 추진
  - 공동수확·선별단 운영, 포장 등 상품화업무 집중 투입

④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인센티브부여

- 농업종합자금 용자 지원기준 우대
- FTA농가보조사업지원시 회원농가 우선 지원

⑤ 기타 지원

- 경영컨설팅비 지원, 브랜드개발·홍보비 지원,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지원 등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활성화 및 기반확충</li> <li>- 마케팅 조직의 경영 전문화</li> <li>- 전업농 회원제 정착 지원</li> <li>- 유통자금통합지원</li> <li>- 전문인력 지원</li> <li>- 기술 및 경영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활성화 기반정착 및 내실화</li> <li>- 산지조직 평가시 경영혁신 요소 강화</li> <li>- 공동마케팅조직에 계약 재배자금 우선 지원 및 품목 제한 폐지</li> <li>- 외부영입 전문CEO, 마케팅 전문인력 인센티브 지원</li> <li>- 농산물품질관리사 도입</li> <li>- 수확후관리기술 DB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주체 성장을 위한 제도적, 물적 기반 구축 단계</li> <li>- 유통사업종합평가체계 구축</li> <li>- 공동사업법인, 기업형마케팅 법인 제도적 틀 마련</li> <li>- 생산출하협약(안) 마련</li> <li>- 우수회원농가 정책자금 집중지원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재배자금, 종합자금 우선지원</li> </ul> </li> <li>- 공동규격출하지원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선비전환, 파렛트 출하량 한정 지원</li> </ul> </li> <li>- 유통지원자금 기능별 통합 및 유통사업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체계화</li> <li>- 외국인근로자 우선배정 검토</li> <li>- 지역단위 마케팅지원협력 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화, 규모화, 시설화된 산지마케팅조직 안정 단계</li> </ul>

## 2-3-2. 산지유통센터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2년부터 집하·선별·저온저장 등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종합처리시설로서 산지유통센터 208개소('03) 설치 지원
  - 지원금액(국고기준) : ('01) 146억원 → ('02) 146 → ('03) 85 → ('04) 229
- 최근 APC활용도와 경영성과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APC를 중심으로 한 상품화 및 마케팅 기능도 빠르게 활성화
  - 개소당 연간 평균 취급량 ('01) 3,215톤 → ('02) 4,110 → ('03) 4,145
  - APC의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와의 직거래 및 수출물량 증가 ('01) 154천톤(출하물량의 34.4%) → ('02) 213(35.5%) → ('03) 240(35.5%)

#### □ 문제점

- 고급품 수요 확대, 전처리 상품시장 확대 등 신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APC확보 및 시설현대화 필요
- 일부 시설은 경영능력 취약, 부적정한 입지 선정 등으로 가동율 저조, 적자 누증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
- 농가조직화 등 산지유통규모화 및 마케팅능력제고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향후 추진방향

- 소비지 시장변화와 신선편이·고품질 상품수요 확대경향에 따라 상품화시설 수요는 계속 증대 전망
  - 직거래 수요 증가, 산지마케팅조직 규모화 필요성 증대
- 따라서 변화된 신유통환경에 대응, APC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 APC의 부실·과잉투자방지, APC경영혁신 유도 및 활성화, 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협력적 지원체계 강화

## 다. 세부추진내용

### (1) APC 부실·과잉투자 방지 및 구조조정

#### ① APC지원 3원칙 확립

#####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 안정적 원료기반과 경영계획이 타당한 산지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중심으로 APC 지원
- 민간의 APC 참여확대를 위해 공익지분 조건 완화(50%→30%이상)

##### 기존 APC 확장·상품화설비 보완 우선 추진

- 사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소규모 신규 APC억제
  - 기존 APC·산지조직이 활용중인 유통시설, 산지공판장 등 최대 활용
- 예냉·세척·탈피 등 고부가가치 상품 설비 보완 지원

##### 광역화·규모화된 마케팅이 가능한 거점 APC 지원

- 기존시설 연계활용·구조조정계획 수립 선행
  - 거점 APC계획 제출시 동일원료권내 노후 기존시설 타용도 전환 또는 기존시설과 역할 분담 계획 제출 의무화
- 공공투자 민간운영방식 APC는 지방비를 국고융자로 대체방안 검토

#### ② APC계획수립 및 투자지원 단계 전문성 강화

##### 계획수립시 일정 규모 이상 APC는 컨설팅 의무화 (자부담)

- 원료기반·마케팅목표 등 감안한 적정투자를 위해 사전 컨설팅
  - 사업비 30억원이상 APC, 전처리설비계획은 사전컨설팅 의무화

- 투자단계 전문가 심사기능 강화 및 조건부선정제 활용
  - 「APC투자계획자문단」 구성으로 APC계획수립 체계적 지원
  - 「조건부 선정」 도입, 미보완시 선정취소

### ③ APC사업성과 평가체계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

- 산지유통사업 종합평가체계 도입
  - APC 운영평가를 컨설팅업체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개편
    - '05년부터 APC와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의 평가요소 및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05년 APC평가예산 5억원 신규반영)
- 부진 APC 집중 컨설팅 및 경영개선 권고, 자금 지원 중단
  - 평가결과 2년 연속 하위 30% APC는 집중컨설팅 실시, 경영개선 권고
    - 「APC클리닉」을 통해 취급품목 다변화, 판로 개발, 우수APC와 사업연합등 컨설팅, 회생불가능 APC양수도 정보 공개 등
  - 성과 부진 APC 운영자금 및 시설 지원 중단
    - '05년부터 평가 E그룹(하위 30%이하)은 시설 및 운영자금 중단
- 부실 APC M&A 및 유희설비 양수도 촉진 지원
  - 「시설관리지침」 개정, 보조사업 APC양수도 승인조건 완화
  - 부실 APC 인수·임차하는 경우 시설보완 및 운영자금 우선 지원



## (2) APC 경영혁신 유도 및 활성화 지원

### ① APC 경영구조 혁신 및 공동마케팅 체제 유도

#### □ APC 독립채산제 · 전문가 책임경영체제 도입 촉진

##### ○ APC사업평가시 경영혁신 요소 평가강화, 전문인력 영입 지원

- 독립채산제, 전문가책임경영 도입시 APC평가 우대
- 공동사업법인APC의 전문CEO·마케팅인력 일정기간 인센티브 검토

##### ○ 독립채산 APC 활성화 추진(농협중앙회)

- 조합상호지원기금(5~10억원)지원, 상무급이상 APC사업 전담제

#### □ APC간 공동마케팅으로 사업규모화 및 시설통합 활용 유도

##### ○ APC(조직)간 공동출자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등에 유통정책 자금 집중 지원하여 활성화 ('04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 \* 공동마케팅조직 : 회원제 출하조직과 고부가가치 상품화 시설·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 마케팅을 추구하는 기업적 경영체

##### ○ 각 조합 APC간 공동사업법인 법제화(농협법 개정)

##### ○ 농협간 공동마케팅을 위한 「APC계열화 시범사업」 추진(농협)

- 기능별(저장기능/고부가가치 상품화), 품목별 APC간 역할 분담
- 사업연합계획 참여 APC 시설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지원

## ② APC회원농가제 정착 및 유통정책지원 체계화

- 생산·출하계약방식의 「APC 회원농가제」 정착 촉진
  - 협동조합 APC를 중심으로 농가교육 강화 및 계약생산·출하시스템 구축
    - 「회원제 생산·출하협약」 표준안 마련·보급 (농협중앙회)
    - 공동선별·공동계산시 매출액에 비례하여 운영자금 차등지원
    - \* 핵심내용 : 의무출하, 공동계산, 판매수수료, 위약금 부과 등
  - 회원농가 DB구축하여 회원농가 관리 및 사업 효율성 제고

### □ 농가조직화 촉진 중심으로 유통정책자금 체계화

- 정책자금이 생산-마케팅 계열화 촉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선도금, 산지유통전문조직 자금은 생산출하협약체결 농가 우선 지원
- 물류효율화 지원도 포장재 지원에서 APC공동선별비 지원으로 개편

## ③ APC위생설비·정보화·기술보급 체계화

### □ APC 위생 및 상품화 설비 현대화 지원

- APC위생기준 마련 및 「Green&Clean APC지정」 추진
- 세척·예냉·당도선별기 및 전처리 등 고부가가치 설비 지원

### □ APC 경영 정보화 및 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APC경영통합 등에 대비 APC정보화 표준매뉴얼 마련
- '05년부터 APC경영진단, 마케팅컨설팅 지원(APC당 2천만원 이내)

### □ 수확후관리기술 매뉴얼 DB구축 및 「사이버컨설팅센터」 운영

- 기 개발된 국내외 수확후관리기술을 매뉴얼 DB 구축(농협중앙회)
- 품목별 수확후관리기술 전문가 pool 구축 및 사이버컨설팅 실시

### (3) 지자체 및 농협차원 APC지원 체계화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후관리 책임 강화

- 정부·지자체간 「산지유통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APC정책 공감대 형성, 각 지자체별 APC투자계획 조정협의 등
    - \* 협의회 구성 : 유통국장(위원장), 각 지자체 농산유통과장 등으로 구성
- 지자체 차원 APC사업 사후관리 강화 및 지자체 평가 실시
  -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와 연계, 지자체 APC정책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차년도 APC예산심의, 거점APC심사에 반영

#### ② 농협중앙회 차원의 APC육성 지원체계 강화

- 「APC사업단」 구성하여 APC설치·활용지도 지원 전담('05년)
  - APC시설팀 : 설치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지도
  - APC운영팀 : APC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경영지도
- APC 차등지원 체계화 및 「APC계열화 시범사업」 추진
  - 농림부 성과평가 우수 APC에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
    - 상품화설비(총40억원내외), 개보수자금 무이자 지원 (300억원이내) 등
  - 기능별(저장기능/고부가가치 상품화), 품목별 APC간 역할 분담
    - 계열화계획 참여 APC 시설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지원
- 사무소 업적평가요소 반영 및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 추진
  - 지역본부별, 시군지부별 업적평가요소에 관내 회원조합 APC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조합 APC간 연계 활용도 제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산지유통시설 확충	-전처리시설 등 APC 시설보완 *전처리시설 위생기준설정	-규모화APC보완 확충 등 연간 10여개소  -전처리시설 등 APC 시설 보완 연간 50여개소	-규모화APC보완 확충 등 연간 10여개소씩 총 20여개소  -전처리시설 등 APC 시설 보완 연간 60여개소

<참고>

## APC 발전 방안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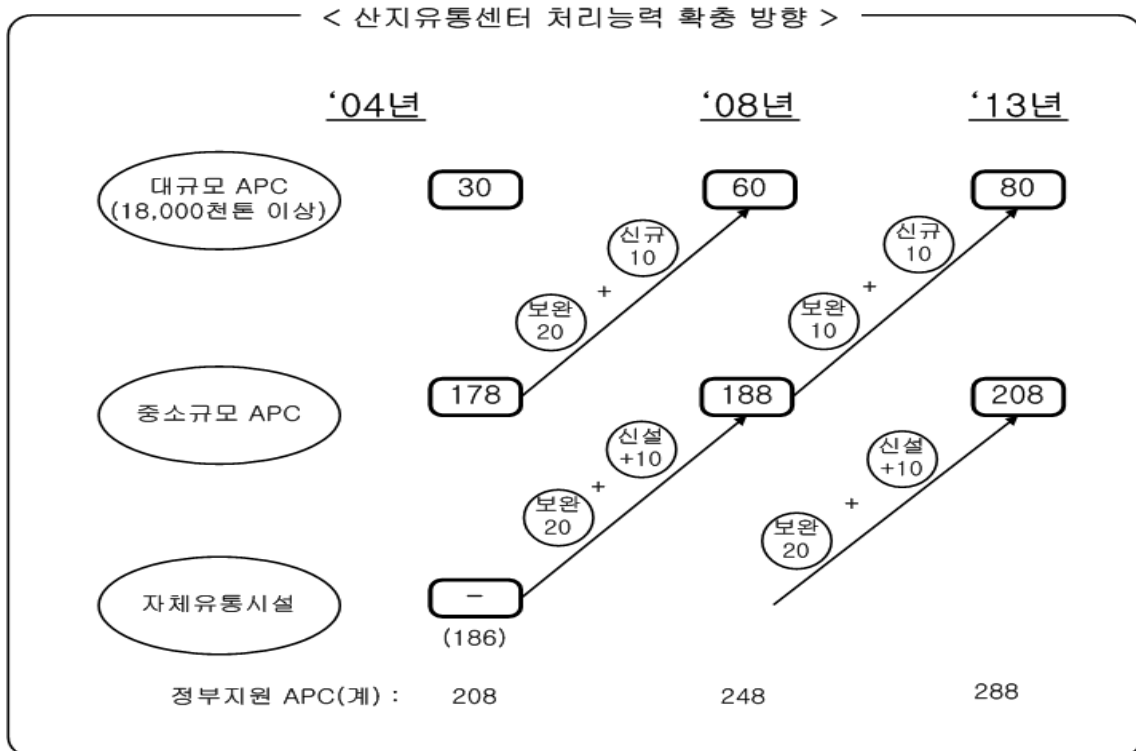
구 분	현 행	개 선
○ 지원방향	○ 중소규모(개소당 10억원) APC 중심 - 영세하고 마케팅능력부족	○ 대규모 거점(30억원이상) APC중심으로 전환,규모화 - 경영평가 후 구조조정 추진
○ 개소수 - 농산물 처리량 - 중점지원	○ 208개소(1,341억원) - 804천톤('03년, 9.4%) * 개소당 4.3천톤 - 신규건설, 중소규모	○ 288개소(3,900억원 거점80개소 포함) - 2,900천톤('13년, 50%) * 개소당 10천톤 - 시군단위이상 대규모 거점 APC화 · 기존시설보완(고부가가치 설비) · 중소규모 APC신규지원 중단
○ 신규사업경제적 타당성검토(대상자 선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전문컨설팅법인 검토(사업자부담) * 사업자 → 컨설팅 → 사업타당성 검토(시도) → 대상자선정(농림부)
○ 운영실태평가 - 평가주체 - 조치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전문컨설팅법인(평가예산 5억원) - 하위 30%이하,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 중단
○ 컨설팅비용 지원(경영진단)	-	○ 경영진단 및 마케팅컨설팅비 지원('05년부터) - APC당 2천만원(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	○ 선정된 조직은 인센티브지원 - 금년 10월까지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실시 선정
○ 농가조직화	○ APC농가회원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계약 위반농가 발생	○ 회원농가 DB구축하여 회원농가 관리 및 사업효율성 제고 - 유통정책자금 우선 지원, 농업종합자금 지원시 우대
○ 부실 APC처리(사업관리지침 개정)	○ 부실APC는 입지 및 운영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회수가 원칙	○ 부실 APC를 APC로 운영할 사업자에게 보조금 회수없이 양수도 승인
○ 지자체 및 농협 APC참여유도	-	○ 지자체별 APC운영평가후 차연도 APC예산편성시 반영 ○ 농협중앙회에 APC사업단을 구성, APC설치 및 경영지도

<참고>

## 2013년까지 산지유통센터 육성 방향

□ 거점 APC 80개소(18천톤급), 중규모 전문APC 208개소 (7천톤급)육성

- APC시설투자자와 함께 경영효율화를 통한 가동율 제고 병행 -



## 2-3-3.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산지 쌀 유통 중심체로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함으로써 수확후 관리 비용절감·미질향상 및 쌀유통구조 개선
- '91년 최초 2개소 RPC 설치 이래 '03년말 현재 RPC 328개소, DSC 568개소 설치('02년도부터 신규RPC 설치지원은 중단)
  - 농협 : RPC 200개소, DSC 387, 민간 : RPC 128개소, DSC 181
- '95년부터 145개소에 운영자금 860억원을 지원하였고,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03년에는 328개소에 10,904억원을 지원
  - '04년 지원계획(9,184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18억원, 특별자금 개소당 10억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이내 상환

#### □ 문제점

- 정부수매량 감축('95: 955 → '04: 494만석)으로 RPC역할이 증대되나, 수급불균형에 따른 계절진폭 축소 등으로 RPC 경영 어려움
-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산물벼 처리 수요는 증가하나 처리능력 부족
  - 저장능력이 644만석으로 일부 야적 불가피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소비자 중심의 대형유통업체 점유비중 증가 및 소비패턴 다양화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쌀값하락 및 쌀 품질·가격경쟁 심화
- RPC의 경영혁신을 통한 민간유통기능 강화 필요
  -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와 경영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 50%(1,100만석), 유통량 대비 RPC 벼매입량 70%를 일관 처리하여 비용절감·미질 향상 및 쌀 유통 기반구축

## 다. 세부 추진내용

### □ RPC 경영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경영평가 지표개발 및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평가우수 RPC 및 통합 RPC에 운영자금 등 집중지원

### □ RPC의 규모화 및 분사제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 사내분사 및 공동사업법인 전환을 통해 RPC 책임경영체제 구축
  - \* '04년부터 통합RPC 지원 시범사업 추진
  - 통합RPC 인센티브 부여 : 건조·저장시설, 운영자금, 수매량 배정 등

### □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

- 건조·저장시설을 2010년까지 740개소 추가설치
-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현실화('06~'07년 : 5억원, '08~'10년 : 6.0억원)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10)
미곡종합처리장	○유통량대비 저장능력 27% ○RPC 벼 매입량 : 유통량 대비 50%	○유통량대비 저장능력 40% ○RPC 벼 매입량 : 유통량 대비 60%	○유통량대비 저장능력 50% ○RPC 벼 매입량 : 유통량 대비 70%



## 2-3-4. 화훼류 유통구조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화훼산업 현황

- 화훼산업중 생산부문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정책지원에 힘입어 상당수준 선진단계에 진입, 고소득 작목으로 인지
  - 생산액 : ('90) 2,393억원 → ('95) 5,090 → ('00) 6,650 → ('03) 8,092
- 생산시설 현대화 등 생산부문 선진단계 진입으로 최근 화훼류 수출부문도 발전의 틀을 갖추어 신선농산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수출액 : ('90) 1,443천\$ → ('95) 6,363 → ('00) 28,888 → ('03) 45,276

#### □ 화훼유통의 문제점

- 화훼류 공영도매시장의 물량처리능력 및 가격형성기능 부족으로 재래시장 중심의 시장구조로 불공정거래 소지가 많음
  - 현행 화훼유통부문은 제도적인 뒷받침은 받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화훼산업이 선진국수준으로 진입하는데 저해
- 도매시장이 분산, 거점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 시장간 물류이동 발생으로 유통비용의 중복발생 및 신선도저하, 상품파손 등 물류의 비효율성 증대

- 포장단위(수량 및 중량)의 표준화 미흡으로 수송하역작업이 어렵고, 상품성 저하, 폐기율 증대요인으로 작용하고 등급간 가격차가 적어 고품위 생산 유도기능이 부족
- 도매시장의 규모영세 및 시설낙후 등으로 전자상거래, 습식유통 등 새로운 선진유통시스템 도입 지남

## 나. 금후전망 및 추진방향

### □ 금후전망

- 화훼생산 및 수출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나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등과 수출시장에서 경쟁 심화 예상
-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과정의 품질보전 및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긴급요 예상
- 자생적인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시 중국 등 경쟁국에 뒤져 우리 화훼산업 위기봉착 예상

### □ 추진방향

-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공영도매시장이 화훼유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영시장의 활성화
- 물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세하게 난립되어 운영중인 도매시장을 통합, 권역별 유통 분담체계 구축
-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도입

## 다. 세부추진계획

### □ 기본방향

-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운영활성화
  - 산지 및 중도매인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 출하품의 규격화 및 파렛트 출하체계 구축
  - 수출물량의 집하 및 물류기능 도입
- 기존 도매시장을 통합, 권역별 화훼유통종합단지 건설
  - 전국을 3대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정비
  - 수도권 시장은 광역집산시장으로, 지방시장은 지역밀착형 도매시장으로 육성
  - 물류효율성 제고와 경매제도 정착을 위해 표준화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한 습식유통 등 선진화체계 도입
-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도입
  - 수출상품, 대형 고정수요처 등을 대상 전자상거래 도입

### □ 사업내용

- 기존도매시장을 통합, 전국을 3대 권역으로 정비한 「화훼유통종합단지」 건설 지원
  - 도매시설 : 첨단 전자경매장, 저온저장시설, 입·출고 시설 등
  - 관련시설 : 수출검역 등 수출관련 시설, 화훼생산·유통자재 판매점, 화훼수출·유통업체 사무실, 화훼양판점(플라워마트), 기타부대시설 등
- 화훼물류 선진화를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은 기존 사업 등을 통해 지원

□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6~2011
- 사업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 사업규모 : 3개소
  - 수도권 , 영남권, 호남권 각 1개소
- 사업자 선정 : 대상지역,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또는 자부담 50%
- 세부계획 수립 : 사업자가 용역 등을 통해, 시장규모 및 기능결정
  - 최첨단 전자식 경매제도를 도입, 거래투명성과 신속성 유지
  - 권역내 기존공판장, 전문조합, 재래시장 및 수출업체가 입주토록 하여 권역별 도매 및 수출기지 기능 수행
  - \* 식물원, 화훼관련자재, 플라워마트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조성 가능
- 화훼종합유통단지 관련 지원방안
  - 화훼물류 선진화를 위한 기기 및 장비 등 지원
  - 신설 종합유통단지의 조기정착을 위해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
  - 출하물량 증대를 위해 산지 작목반, 영농조합 등에 공판장운영활성화 자금 확대지원
  - 표준규격화 및 표준포장규격 출하자에 대한 경매시 인센티브 제공
  -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선취매매자금 지원

라. 추진일정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화훼종합유통 단지건설		○ 수도권 1개소('06~'07)	○ 영남권 1개소('08~'09) ○ 호남권 1개소('10~'11)

## 2-3-5. 축산물가공시설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 축산물종합처리장·공판장 등 도축·가공장 시설구축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 및 냉장·부분육의 유통활성화 측면에 큰 기여

\* 축산물종합처리장은 '97년이후 신규선정 없이 7개소가 건설·운영 중에 있으며, 도매시장·공판장 14개소가 운영중

□ 축산물가공시설의 경영개선 도모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

○ 시설자금 : 308억원('04년)

- 지원대상 : 도축장 통폐합 지원, 도축장시설보완 및 축산물·유가공장 등

□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에 따라 축산물가공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

○ HACCP적용 도축장수('04.11) : 124개소(전국 도축장수 162개소)

○ HACCP적용 육가공장('04.11) : 139개소(전국 육가공장수 2,315개소)

○ HACCP적용 유가공장('04.11) : 32개소(전국 유가공장수 166개소)

□ LPC의 가동율 및 도축점유율이 다소 증가 추세에 있으나, 수출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의 활성화 필요

○ 평균 가동율(돼지기준) : ('01)40% → ('02) 48 → ('04.상) 64

○ 도축 점유율(전체대비) : ('01)11% → ('02) 13 → ('04.상) 16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LPC 등 우수한 시설 운영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

○ 현대화되고 위생적인 시설로 소비자의 높아진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수입축산물에 대응한 축산경쟁력 확보

- 축산물가공시설의 신규시설 지원은 최소화하되 현대화되고 경쟁력 있는 도축·가공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영세하고 비위생적인 도축·가공장 등은 폐업 등 구조조정 유도
  - 육가공장 및 유가공장 HACCP 정착을 위해 시설개선 자금 지원
  - 영호남 지역 시유 가공처리를 위한 시설비 지원
-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계란공판장 설치 및 운영 검토

#### 다. 세부추진내용

- 기존 도축장 등의 시설보완 자금 지원으로 위생관리 수준 지속 관리
  - 지원기준 : 융자 70%(연리 4~5%), 자부담 30%(3년거치 7년상환)
  - \* '05년부터 사슴 등 기타가축 도축시설 지원
- LPC 운영개선 대책 추진
  - LPC 경영평가 및 컨설팅 실시로 운영개선 도모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도입, 시장에서 우수 도축장 차별화 기반 구축, 간접적 도축장 구조조정 유도
  - 도축물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 시장·군수중심의 LPC 운영개선위원회 개최, 지원방안 마련
    - 축산물브랜드사업 추진시 브랜드 경영체와 LPC, 백화점·대형 할인점의 3자 연결시스템 구축
  - 대형유통업체 등 소비처에 대한 구매 촉진 유도(공문발송 등)
- 가공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해 가공시설 지원대상 확대('05년부터)
  - (현행) 돼지·닭 가공업체 → (확대) 축산물 가공
- '03.7.1부터 소·돼지 등 도축장 HACCP 의무적용 시행에 따라 미적용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시설이 우수하고 관리가 양호한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시장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도축장 HACCP운영수준 평가제 도입 등 시장차별화 추진
  - HACCP운영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도축장에 인센티브 지원
    - 상위권에는 금리 0% 및 중위권에는 금리 3% 자금 지원
    - \* '05년 지원계획 : 578억원
- 영호남 지역의 원유수급 조절을 위한 시유가공장(1개소) 설치·지원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추진전략	○ HACCP 미 적용 도축장 행정처분 시행	○ 도축·가공장 HACCP 정착화 및 시장차별화	○ HACCP적용 도축·가공장 중심의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 LPC 도축점유율 확대	소 : 10%, 돼지 15%	소 : 15%, 돼지 20%	소 : 25%, 돼지 30%
○ HACCP적용 육가공장수	150개소	300개소	500개소

## 2-3-6. 축산물가공시설운영자금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축산물종합처리장·공판장 등 도축·가공장 시설구축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 및 냉장·부분육의 유통활성화 측면에 큰 기여

\* 축산물종합처리장은 '97년이후 신규선정 없이 7개소가 건설·운영중에 있으며, 도매시장·공판장 14개소가 운영중

- 축산물가공시설의 경영개선 도모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 1,338억원('04년)
    - 지원대상 : 축산물종합처리장, 도매시장, 도축장 및 축산물·유가공업체 등
  
- 안전하고 품질좋은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에 따라 축산물가공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
  
- LPC의 가동율 및 도축점유율이 다소 증가 추세에 있으나, 수출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의 활성화 필요
  - 평균 가동율(돼지기준) : ('01)40% → ('02) 48 → ('04.상) 64
  - 도축 점유율(전체대비) : ('01)11% → ('02) 13 → ('04.상) 16
  
- 쇠고기 유통시장은 규모화·고급화 되어가고 있으나 국내 한우 산업은 아직 영세한 구조로 시장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 증가로 한우산업기반 위축
  
- 원유집유체제 개편에 따라 농가를 편입하는 유업체에 대해 잉여원유 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LPC 등 우수한 시설 구축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
  - 현대화되고 위생적인 시설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입축산물에 대응한 축산경쟁력 확보
- 축산물가공시설의 신규시설 지원은 최소화하고 현대화되고 경쟁력 있는 도축·가공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영세하고 비위생적인 도축·가공장 등은 폐업 등 구조조정 유도
- 할인점 등 국내 유통시장의 대형화, 규모화에 따라 유통업체의 요구물량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한우 사업 추진체 육성이 필요
- 진흥회 농가의 유업체 이관시 잉여물량으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 및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 원활한 직결체제 전환

## 다. 세부추진내용

- '03.7.1부터 소·돼지 등 도축장 HACCP 의무적용 시행에 따라 미적용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점검
- 시설이 우수하고 관리가 양호한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도축장 HACCP운영수준평가제 도입 등 시장차별화 방안 추진
  - HACCP운영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도축장에 인센티브 지원
    - 상위권에는 금리 0% 및 중위권에는 금리 3% 자금지원
    - \* '05년 지원계획 : 578억원
- 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규모화된 한우 생산추진체를 육성하고, 생산추진체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고기 유통추진체 육성

- 우유수급안정 및 시장원리에 맞는 수급체제 구축을 위한 낙농가, 유업체 직결체제 전환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 용자 100%, 연리 3%, 2년거치 3년 일시상환

#### 다.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추진전략	○ HACCP 미적용 도축장 행정처분 시행	○ 도축·가공장 HACCP 정착화 및 시장차별화 - 운영자금 차등지원	○ HACCP적용 도축·가공장 중심의 축산물 유통 기반 구축
○ LPC 도축점유율 확대	소 : 10%, 돼지 15%	소 : 15%, 돼지 20%	소 : 25%, 돼지 30%

## 2-3-7.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운영개선

### 가. 현황 및 애로사항

#### < LPC 사업 개요 >

- ◆ LPC(Livestock Packing Center)는 생산, 도축·가공, 유통판매를 일괄처리하는 주체로서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가공, 판매, 수출 등은 LPC가 담당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94~'01까지 9개소 건설·운영
  - 2개소(익산, 포항)는 각각 '98년, '00년 부도로 인해 제3자가 인수·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부관리 LPC는 7개소임

#### □ 건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총 건설비 : 180,685백만원
  - 용자 103,304, 보조 4,916(국고 1,366, 지방비 3,550), 자부담 72,465
  - 국고 보조는 생산자단체의 참여지분 20%를 보조로 지원
  - \* 지원조건 : 연리 3%, 7년거치 10년상환
- 운영자금 지원('04) : 163억원, 연 4%, 1년상환

#### □ 업체별 운영내역(7개소, '04년 상반기 기준)

구분	경기성 안성	강원주 원주	충북		충남성 홍성	전북체 김제	경북위 경주	
			청원	제천				
업체명	안성축공 외 3개사	하이미트	한냉	박달재	홍주미트	농협	동아	
가 동 율	소	14%	104	34	24	11	-	12
	돼지	70%	132	66	68	51	56	51
손익(백만원)	△203	△94	△3,524	△692	△270	△2,818	△1,070	

\* 전국 도축장 110개소의 평균 가동율 : 소 16%, 돼지 51%

## < 애로사항 >

### 막대한 시설투자로 인한 금리 부담 과중

\* LPC 평균 건설비 : 180억원, 일반 도축장 건설비 : 20억원 내외

### 일반 도축장수 과다로 LPC 도축가동률 저조(평균 : 돼지 64%)

○ 전체 도축장수 110개소 / 평균 돼지 도축가동률 51%

### 위생수준은 일반도축장보다 높으나, 도축 수수료를 일반 도축장보다 높게 받을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지관리비(온도 12~15℃) 과다소요

\* 1년간 산업용전기료 약 500백만원 소요(돼지 1천두 도축규모)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진 현실이며, 향후에도 LPC와 같이 우수 도축·가공장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관리·지원이 필요

### 시설이 우수하고 관리가 양호한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도축장 HACCP운영수준평가제 도입 등 시장차별화 방안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LPC 경영평가 및 컨설팅 실시로 운영개선 도모

○ 기간 : '04.9~12, 비용 : 50백만원, 컨설팅업체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신청업체 : 정부지원 6개 LPC(안성, 원주, 제천, 청원, 홍성, 군위)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도입, 시장에서 우수 도축장 차별화 기반 구축, 간접적 도축장 구조조정 유도
  - HACCP운영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권에는 금리 0% 및 중위권에는 금리 3%의 자금을 차등지원
    - 소비자단체에서 '05년 1/4분기부터 분기별로 평가
    - \* '05년 지원계획 : 57,832백만원(1년거치 일시상환)
  
- 도축물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 시장·군수중심의 LPC 운영개선위원회 개최, 지원방안 마련
    - 시장·군수, 생산자단체, 업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
  - 축산물브랜드사업 추진시 브랜드 경영체와 LPC, 백화점·대형할인점의 3자 연결시스템 구축
    - 브랜드사업체에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대형유통업체 등 소비처에 대한 구매 촉진 유도
  - 소비자가 우수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홍보추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도축장 HACCP 운영 실태 평가제 추진		←	→
○도축장 인센티브 지원		←	→
○경영평가및 컨설팅 실시	←		
○계열화사업 및 브랜드사업 연계확대		←	→
○HACCP 점검 강화	←		→

## 2-3-8.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관리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03년말 현재 농축산물 총 브랜드 수는 5,188개 임.
  - 브랜드 수 증가추이 : ('00) 4,701 → ('02) 4,955 → ('03) 5,188
  - 공동브랜드는 1,059개로 전체 브랜드 농축산물의 20.4%를 점유
  -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브랜드는 1,756개로서 총 브랜드 농산물의 33.8%가 상표등록되어 있음.
  
- 안정적인 물량공급 및 품위유지가 가능한 공동브랜드 개발·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 '03과워브랜드 전시회 수상브랜드 16개중 11개 브랜드가 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수 증가 : ('00) 619개 → ('03) 1,059개 (71.1% 증)
  
- 또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각 자치단체도 지역브랜드 개발 및 판매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임.
  -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시·군 공동브랜드 개발·보급 및 홍보
    - 안성마춤 : 안성군 5개 농산물 공동브랜드(쌀, 배, 포도, 인삼, 한우)
    - 청원생명쌀 : 인기가수 활용 홍보, 브랜드 관리지침 마련 등

## □ 문제점

- 개별브랜드 및 유사브랜드 혼재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차별성 저하
  - 영세생산자조직이나 농가중심의 단순 브랜드 네이밍 및 포장 개선 등 브랜드화로 소비자의 인지도 저하
  - 지역명, 조합명 위주의 차별성이 없는 브랜드 확산
- 브랜드 경영체의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품질의 균일성 유지와 안정적인 물량공급에 어려움이 있음.
  - “동일브랜드 동일품질”이라는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곤란
    - 공동생산·공동계산제도 미정착, 표준화·규격화 미흡
  - 대형유통업체 등에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애로
- 우수브랜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좋은 브랜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택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품질보다는 특정 지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
-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홍보 등 사후관리 부족
  - 브랜드 개발후 품질관리, 마케팅, 홍보 등 체계적인 관리 미흡
  - 개별브랜드의 상표등록율 저조로 법적 보호 불가능
  - 업체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대중매체 등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가 어려워 브랜드 파워구축이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 국제여건 : FTA, DDA 등 개방화 논의 본격화

- 앞으로 농업보호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브랜드, 판촉홍보 등 비 보조성격의 농업정책으로 전환 모색

#### ○ 소비지 : 품질·안전성 중시 구매패턴의 확대

- 친환경, 브랜드 농축산물 선호
- 산지로부터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희망

#### ○ 산지 : 우수한 농산물 생산 움직임 증대

-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농산물 생산, 소포장화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상품화 노력은 증대

### □ 추진방향

#### ○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규모화 된 우수브랜드 육성을 통한 브랜드 파워 제고

- 우수한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마케팅 및 홍보 등

#### ○ 유통중인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발전시키도록 관리 강화

- 브랜드 평가·정보제공, 고품질·안전농산물 유통촉진 제도시행 등



## 다. 세부추진계획

### ① 농산물 브랜드 육성

#### □ 우수한 브랜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 규모화 된 우수브랜드 농산물 생산주체 육성 및 산지유통 시설을 우수브랜드 생산거점으로 활용

- 혁신요소를 갖춘 산지공동마케팅조직 선정 및 APC 활용
  - 회원제 출하조직, 공동브랜드, 품질 관리, 광역원료권 확보 등
  - 공동마케팅조직 표준 「회원제 생산·출하협약」 마련
- 지역거점 또는 품목거점이 가능한 APC 지원
- RPC를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농가와 RPC간 고품질 쌀 계약재배('04. 30만ha) 확대
  - 시·군단위 2개이상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RPC 통합합을 유도하여 경영 개선 촉진 및 시·군별 통합브랜드 육성

#### □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개발·보급

##### ○ 우수브랜드 발굴을 위한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농식품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을 공모하여 산지에 보급
- 입상브랜드에 대한 보급기준 마련, 보급 브랜드 사후관리

#####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 등 초기 개발비용 지원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지원 시범사업 실시(농안기금 )
  - 농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개발, 상표등록 및 홍보비 등 지원
- 개발된 공동브랜드는 컨설팅 지원 등으로 브랜드 선도그룹으로 육성

## □ 브랜드 농산물 판촉·홍보 강화

### ○ 우수브랜드 농산물의 판매확대 지원

- 농축산물 브랜드전시회 등을 통해 브랜드화, 분위기 확산 및 판매촉진
-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개최 등

### ○ 우수브랜드 농산물 홍보

- 유통공사, 농협 등 웹사이트를 통한 농축산물브랜드 상시 홍보
- 관련사이트 : 유통공사(www.agribrand.co.kr), 농협

## ② 농산물 브랜드 관리

## □ 브랜드 농산물 평가·정보 제공

### ○ 소비자에 의한 시중유통 농산물 브랜드 선호도 조사·발표

- 농축산물 브랜드 파워 조사
  - 브랜드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전국의 주부, 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브랜드 파워를 조사
- 시중유통 브랜드 쌀 품질평가 실시
  - 소비자단체에 의해 시중유통 쌀 평가(식미, 품위, 소비자 만족도 등) 실시

## □ 고품질·안전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 ○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확대 시행

-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시행
  -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특산물, 전통식품 등
- 포장양곡표시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 이력추적제(Traceability) 도입
  - 시범사업 추진 : ('03) 9농가 → ('04) 350 → ('05) 700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p>&lt;브랜드 육성&gt;</p> <p>○ 브랜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p>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시범사업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좌 동
○ 우수 브랜드 개발 보급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파워있는 공동브랜드 육성
○ 브랜드 농산물 판매 홍보 강화	파워브랜드 전시회 개최	브랜드파워대전 개최	브랜드 농축산물 판매홍보 지원강화
<p>&lt;브랜드 관리&gt;</p> <p>○ 브랜드 평가 정보 제공</p>	시중 유통쌀 품질평가,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조사 발표	좌 동	농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파워브랜드 관리 강화
○ 고품질·안전 농산물 유통촉진제도 운영	농축산물 품질인증제 확대, 포장양곡 표시제 지도·점검, GAP, Traceability 시범사업 실시	좌 동 " GAP, Traceability 본사업 실시	좌 동 " "

## 2-3-9.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03.6월 현재 축산물 브랜드 수는 700개로 매년 빠르게 증가
  - 상표등록 브랜드 수 : ('99) 194개소 → ('01) 342 → ('03.6) 428
  - 가축사육두수중 브랜드 경영체 비율 : 한우 18%, 돼지 40, 육계 61
- 최근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산
  - 도단위 지자체 중심의 특징 있는 광역브랜드 출현
  - 지자체(시·군), 협동조합, 농가 등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 추진체 운영
- 돼지·닭의 경우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가 상당수 존재
  - 축산물 중 브랜드 유통물량은 닭고기가 약 95%로서 가장 높고 돼지고기는 52% 수준임

#### □ 문제점

- 우수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사양지침 등도 미비
  - 종축·사료·사양관리에서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농가 등이 지켜야 할 지침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
- 대부분의 브랜드경영체가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안정적 물량 공급이 어려움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등 판매망 확보에 애로
- 대형 할인점 등에서 브랜드축산물 취급에 다소 소극적
  - 일부 선도적인 유통업체는 브랜드경영체와 장기적인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자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나 많은 유통업체는 아직 미온적
- 생산·재무관리 등 경영컨설팅이 주로 농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브랜드 주체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전무한 실정
- 브랜드축산물 품질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차이가 없는 반면 가격만 비싸다는 일부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축산물시장을 규모화된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고, 고품질·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 소비의 양극화로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층과 중저가 축산물의 소비층이 분화되고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증가
- 수출국들의 국내소매시장의 공격적인 판촉활동 강화
  -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신선·위생을 컨셉으로 할인 및 적극적인 프로모션 추진
-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부응하고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영체 조직을 규모화, 전문화하고 우수브랜드 위주의 생산·유통 강화
  - 광역단위의 브랜드 및 계열화에 의거 양축농가의 경영·소득보장
  - 브랜드화를 통한 원산지, 위생·안전성, 고품질 보장
    - 소포장 부분육 중심의 선진화된 유통구조로 발전

## 다. 세부추진내용

-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경영체 중점 육성
  - 브랜드 주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조직화하여 생산·판매 관련 규약을 제정하고 농가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
    - 종축, 사료, 사양관리, 위생적 가공·판매 등 관련 규약 제정
  - 지자체는 지역대학,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경영지원
  -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브랜드경영체에 집중 지원
    - '04년부터 조합경제활성화 지원을 줄이고 우수브랜드 육성 위주로 운용

## □ 전문화된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 농협중앙회에 브랜드컨설팅 전담기구 신설·운영('04~)
  - 브랜드지원팀을 신설하고 회원조합 등 지도
- 민간 브랜드컨설팅 전문업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사양, 경영, 브랜드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브랜드 전문 컨설팅 업체 지정기준 제시('04)로 내실있는 컨설팅 도모
- 농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경영지침서 발간·보급('05)
  - 혈통관리·사료·사양관리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제시
- 브랜드 경영 및 관리 자가진단프로그램 개발·보급('05.3)
  - 생산실태, 유통, 브랜드경쟁력, 마케팅 활동 등 경영자료를 자가입력 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진단 수단 제공

## □ 브랜드축산물의 위생수준 제고

-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과 가공장 이용을 유도하여 차별화된 위생·안전성 확보
  - 소비자 단체 주도의 도축장 HACCP운영실태 평가제 도입 추진
    - \* 상위권, 중위권에 대해서는 차등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하위권은 지원 배제
  - 우수 브랜드 인증시 HACCP 인증 가공장 이용 여부를 중점 평가

## □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연계체계 구축 지원

- 브랜드경영체와 대형유통업체 정례협의회 개최로 판로개척 지원
  - 브랜드 사업 초기부터 수요자(유통업체)의 요구사항을 파악토록 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체와의 컨센서스 형성 유도
- 장기계약 거래 등 브랜드육 판매 우수 유통업체에 정부시상 추진
-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브랜드에 부분육 포장비 일부 보조지원

## □ 우수 브랜드 축산물 판매 확대 지원(농협)

- 농협 유통(하나로클럽)에 생산자브랜드 축산물 판매비율 확대
  - ('04) 10% → ('05) 20% → ('10) 50%
- 아파트 등 인구밀집 지역내 대형 브랜드축산물 전문판매장 개설
  - 농협 자체 자금으로 1개소 설치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방안 강구

## □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 마련

- 우수 브랜드 인증지침 마련('04)하여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물 브랜드 인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 추진
  - 브랜드 인증 지침 및 인증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우수 브랜드 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의 신청('04.8월)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경영체 발표('05.1월)
  - 브랜드 인증 지침을 제정하여 인증기준, 평가방법, 신청절차 등을 규정
  - 브랜드 인증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한 후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브랜드를 우수브랜드로 인증

## □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다양화

- 브랜드 활성화 심포지엄, 지역별 토론회 개최로 브랜드화 분위기 확산
  - 브랜드 발전방향 모색 및 정부의 브랜드정책 소개를 위한 심포지엄개최
  - 지역 토론회를 통해 브랜드 성공사례 소개, 우수브랜드로의 발전방안 토의
- 축산물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구축('04.12)
  - 소비자에게 우수브랜드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참여업체간 정보교류, 인증관련 업무 소개 등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 정보 제공
- 우수 브랜드 홍보책자 발간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 TV기획프로, 일간지 기획기사 게재 등 입체적인 홍보 추진
- 유통단계·규모별 브랜드축산물 판매 및 소비동향 조사·분석

## □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의 내실화

- 우수 브랜드에 대한 홍보, 소비자 인식제고 및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마련
- 우수 브랜드에 대한 시상금 상향조정 및 시상확대 추진('04)
  - 우수브랜드 평가지침 및 경영지침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홍보비에 활용토록 추진
  - 시상 훈격 상향 조정 : 국무총리상 1점 신설(한우, 돼지 율변수상)
    - 축종별 시상금('04) : 대상1점(20백만원+무이자10억원융자), 최우수2점(5백만원+무이자5억원융자), 우수3점(무이자2억원융자)
  - 분야별 수상 분야 다양화 : 고품질, 위생·안전성
    - 축종별 시상금('04) : 위생·안전부문 1점(무이자 2억원 융자), 품질부문 1점(무이자 2억원 융자)

## □ 축산물 브랜드 인증 등 사업대상을 증장기적으로는 닭고기, 육우고기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브랜드육성대책 수립</li> <li>○ 브랜드경진대회 개최</li> <li>○ 생산자 중심의 브랜드 경영체 육성</li> <li>○ 우수브랜드 인증제 도입</li> <li>○ 브랜드 컨설팅체계 구축</li> <li>○ 우수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C, 유통업체 중심의 브랜드 경영체 육성</li> <li>○ 유통업체 판로개척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육과 일반축산물과 차별화 된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환경 조성</li> </ul>

## 2-3-10.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제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85년 서울 가락시장 개장 이후 금년 광주서부, 강서시장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은 마무리
    - 도매시장 건설 사업비 총액은 1조 4,367억원이며, 국고에서 38.3%인 5,504억원을 지원
    - '99년부터는 노후시설보완, 경매장·저온저장고 등 필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270억원을 투입, 시설을 현대화
  - 그동안 공정거래 정착과 경매제도의 경직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경매·시장도매인제도 도입·시행
    - '00년부터 전자경매를 도입·지원함에 따라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 \* 전자경매율 : ('00) 4.0% → ('02) 55.5% → ('03) 64.2
    -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 각종 규제철폐 등을 통하여 시장의 거래 체도를 다양화(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 '04. 6. 14)
  - '03년도 도매시장 청과물 거래량은 549만톤으로 '85년 도매시장 개장 이후 13배로 대폭 증가
    - 청과물 거래량 : ('85) 42만톤 → ('95) 412 → ('03) 549
- ⇒ 농산물 거래중심이 비제도권에서 제도권으로 이동

## □ 문제점

- 신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경로의 다원화에 따라 도매 시장 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
  - 직거래 등의 확대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량은 점차 감소세
    - \* 점유율 : ('02) 43.0%(564만톤) → ('03) 40.9%(549만톤)
  - 일본의 경우에도 '99년부터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감소(86%→79), 도매시장의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 도매시장 시설의 노후화 및 구조조정 지연으로 고품질 농산물 공급에 한계 및 과도한 물류비 발생 초래
  - 건설한지 오래된 시장에서는 저온저장고 등 필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시장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남
  - 수작업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하역체계는 비용 증가 등 도매시장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역비 총액 630억원)
    - \* 대형유통업체 하역기계화율은 65%,도매시장은 1% 수준에 불과
  
- 현행 규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방식으로는 생산자의 출하욕구와 소비자의 수요 변화 등에 적극적인 대응 곤란
  - 경직적인 거래제도와 商物일치 원칙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을 도매 시장으로 유인하는데 어려움
  - 도매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는 전자상거래, 무점포 거래 등 새로운 유통시스템과 경쟁하는데 한계
    - \* 일본은 도매법인·중도매인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매시장법 개정('04. 6)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이 폭넓게 추진될 경우 도매시장 거래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다만, 신유통 흐름에 맞게 노후시설보완, 필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수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 \* 가락시장 리모델링 등 시장여건에 맞게 시설을 보완·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 도매시장에서 수요자의 수요와 출하자의 이윤동기가 조화될 수 있도록 시장 지향적으로 제도와 운영기법을 개선
  - \* 물류효율 증진 등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거래체계 개선 추진
  - \*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종사자의 영업규제는 과감하게 개선
- 거래질서를 개선하면서도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업무처리체제 개발

## 다. 세부추진내용

### ① 거래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 법인의 산지출하 활동을 강화하고, 신유통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취매매,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
- 품목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거래제도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매제도 원칙위에서 경직성을 보완

○ 규모화된 출하물량 등 시장 교섭력이 확보된 경우 정가·수의 매매 허용범위를 확대

\* 출하자가 가격을 정하여 판매 요청한 경우, 경매참여 중도매인이 적어 경매가 곤란한 경우 등도 포함

□ 경매의 효율성 제고, 고품질 농산물·지역 특산품 등이 도매시장을 통하여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거래체계를 개발

○ 가락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에 품목별 경매 최저단위제를 시범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특히, 출하농산물 定量·定品이 定時에 거래될 수 있도록 예약 상대거래, 전자상거래 방식 등 적용 검토

\*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화, 품질고급화 실현

□ 전국 최초로 도입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는 모범적 운영형태를 지향토록 하는 등 연착륙을 추진

○ 향후 시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다른 시장에서 도입할 경우 표준모델을 제시

○ 강서시장에 대한 그동안 운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방안 마련 추진

\* '05년 상반기중 농안법시행령 부칙 개정절차 이행

□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규제완화 추진

○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취상장 및 경영사업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

- 산지 유통시설(APC)과 연계, 산지 농산물 포장·가공·판매 사업 협력체계 방안 강구
- 파렛트 등 시장 교섭력이 일정부분 전제된 출하물량에 대하여 매취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중도매인의 운영 효율화, 영업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범위확대, 규제완화 방안 마련
  - \* 중도매인 정수조정, 법인화 유도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극대화

## ② 도매시장 평가·관리 전문성 제고

- 도매시장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 권역별로 도매시장 관리를 통합하여 공사화 또는 유통공사 등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 도매시장 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도매시장 실태조사 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평가전담 기관으로 변경, 관리의 전문성 제고
    - \* 도매시장 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 전담체계 마련(유통공사 조직 개편시 반영)
  - 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강화 및 사전경고제, 3진 아웃제를 실질적으로 운영, 평가의 실효성 확보
  - 주요 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경영실적 등을 평가·조치하는 등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촉진

### ③ 「도매시장 시설보완 계획」 수립·추진

□ 가락시장은 거래량 포화 등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후 단계적 시설보완 추진

- 도·소매 분리, 하역기계화, 저온저장고 설치 등 도매시장 기능제고 추진

#### < 가락시장 단계별 추진계획 >

- ▷ 1단계 : 도·소매 분리 및 별도의 소매 유통시설 확충
- ▷ 2단계 : 도매시설 재건축(경매장·중도매인 점포 등)
- ▷ 3단계 : 농산물 물류시설 신축(직판상가 등 활용)

□ 다른 시장은 연구용역 결과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시설활용도 극대화 방안 마련 추진

- 기존시설 재건축, 이전, 필요시설 확충 등으로 세분화하여 도매시장별 시설보완 기본방향을 정립

- \* 재건축 :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경우
- \* 이 전 : 시설노후화 및 도매시장 인근 도심화가 진전된 경우
- \* 필요시설 확충 : 기존시설을 보완, 도매시장 제기능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주요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개선·보완 방안도 강구

- 소도시 시장은 선별·포장·물류·소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적 유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저온저장·주차시설 등 부족한 필수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추진

- \* 소규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 ④ 하역기계화 기반마련 및 유통정보화

- 표준하역비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品目群別로 위탁수수료를 차등 정률제로 개선
  - 규격출하품 지정 최소범위 지정,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흡수하는 방안 강구
  - 파렛트 사용확대를 위한 우선하역·하역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물류기기 구입, 규격출하 지원 대폭 강화
    - 가락시장은 '05년부터 파렛트 출하품에 대해 하역비 면제
    - \* 중장기적으로는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법인의 고유업무로 정의
- 도매시장 공판장 파렛트 시범 실시 : 가락, 강서, 광주서부시장
  - 엽채류·양념류의 산지 선별포장 후 출하유도를 통하여 소비지시장 환경개선 및 공판장의 소비자 이미지 제고 노력
- 비포장 농산물 반입 제한 : 마늘 시범실시 후 전품목 확대 노력
  - 반입제한에 따른 유통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단계적으로 도입·실시
    - \* 회의를 개최, 유통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확정·시행('05 상반기중)
- 공정성·투명성 증진과 다양한 유통정보 제공
  - 경락가격, 거래량 등 다양한 도매시장 유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도매시장 거래정보 시스템 보완·개선
    - \*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와 출하지원시스템 통합 운영



- 시장법인별 경락가격·물량 등 유통정보 제공의 의무화를 통하여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출하자·산지유통인·도매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DB화를 통하여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

#### 5] 농협공판장을 통한 도매시장 유통 선도

- 정부정책 수행노력 등을 도매시장법인과 별도 관리하는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 운영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개선
  - 표준하역비·전자경매 추진노력을 분기별로 평가, 실적이 부진한 경우 출하촉진자금 감액 등 제재
    - \* 향후 해당 공판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자금지원에서도 제외
  - 출하전 산지 안전성 검사 실시 및 인증기관과 연계, 인증품의 대폭적인 반입을 유도
  - 우선경매, 별도 경매장 설치 등을 통하여 출하자 편의 제공 및 중도매인의 분산능력 향상 교육·지도
- 도매시장 입주 공판장에 대한 우대조항 등 폐지
  - 시설이용·면적배정 편의제공 등 법인과의 차별적 대우를 폐지, 공정한 경쟁관계를 유도
  - 도매시장법인에 준하여 공판장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둘 수 있도록 개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거래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거래제도 개선 추진 계획 확정 * 연구용역 실시 ○농안법시행규칙 개정 ('05상반기) ○도매시장 관련 국제 세미나('05년중)	○농안법령 개정 추진단 구성·운영('05~'06)	○제도개선 효과 점검 및 추가과제 추진
○도매시장 평가관리 전문성 제고	○평가계획 수립·시행 ('04.12)	○평가결과 환류 추진 ○평가관련 제도개선 기본 방향 마련·추진	○평가결과 활용도 점검 ○세부 과제 등 발굴·개선 추진
○소비자 유통시설 현대화	○가락시장 리모델링 계획 수립('04.12)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용역 추진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 ○시설현대화 관련 평가 체계 마련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 ○사업평가 및 부진사업 전환 추진
○하역 기계화 및 유통정보화	○파렛트 활용 확대방안 마련 ○파렛트 공동이용 지원 강화 추진 ○마늘 포장화 대책 추진('05)	○파렛트 출하율을 10% 까지 확대 ○물류기계화 지원 추진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 보완 방안 마련·추진	○파렛트 출하율을 30% 까지 제고 ○비포장 농산물 반입 제한 지속 추진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관리체제 정착
○농협공판장 도매 시장 유통 선도	○평가결과 정책자금 등 차등 지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추진('05~'06)	○농협공판장 교육 강화	○교육 시스템 정착 ○제도개선 효과 점검 및 환류

## 2-3-11. 산지공판장 운영혁신 및 도매기능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04. 6월말 현재 전국에 개장·운영중인 공판장은 88개소이며, 청과부류 산지공판장은 49개소

- 산지공판장 : ('01) 59개소 → ('02) 56 → ('03) 51 → ('04) 49

#### < 농산물 공판장 현황 >

합 계	청 과	시 장	산 지	화 훼	양 곡	비 고
88	82	33	49	5	1	

- '02년부터 도매기능이 부족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공판장에 대하여 용도전환 등을 추진, 시설활용도를 제고

- 집하장, 하나로마트 및 산지유통센터 등으로 용도전환 또는 폐쇄 등 추진

\* 용도전환(6개소) : 괴산, 아산원협, 논산동부, 진도, 진해, 부여

\* 폐쇄(4개소) : 경북의성, 군위, 효령, 송정

- 거래물량은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업체의 증가와 용도전환·폐쇄 등에 따른 개소수의 감소 등으로 점진적인 감소세 유지

- 거래물량 : ('01) 685천톤 → ('02) 578 → ('03) 522

## □ 문 제 점

- 유통경로의 다원화에 따라 산지공판장 취급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취약
  - 청과부류 산지공판장 51개소중 9개소(17.6%)가 적자시현('03)
  - \* 적자 공판장(9개소) : 광주송정, 동두천, 대관령, 논산동부, 포항채소, 경산, 칠곡왜관, 영주, 예천
- 시설의 노후화, 저온저장고·선별기 등 시설의 현대화가 미흡, 소비지 및 소비자의 욕구에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
-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산지공판장에 대해 정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공판장이 소극적으로 추진
- 지역 특산물의 출하시기에 집중·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도매인이 소규모·영세하여 분산능력이 부족
  - 6개월 미만 개장한 공판장이 10개소(산지공판장 평균 개장일 258일)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산지 직거래 등 유통경로 다양화 확대로 산지공판장의 고유기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산지공판장 기능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
  - 선별·포장 등 시설보완, 적자 공판장의 용도 전환 등 추진
- 농산물 도매기능 강화를 위한 공판장 종사자 교육
  - 중도매인 육성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한 분산 능력 제고

## 다. 세부추진내용

### □ 시설현대화 및 공판장 평가계획 강화

- 농산물 수집·분산기능 외에 선별·포장·단순가공 등이 가능하도록 자체 시설개선 및 기능보완 추진
- 공판장 평가계획에 출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안전성 관리 노력을 신설

\* 출하자 서비스 제고 노력(5점), 품질관리 강화 노력(3점)

### □ 시설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도전환·폐쇄 등 지속 추진

- 평가계획에 반영하여 부진공판장을 중심으로 자체 경영진단 및 운영개선을 추진
  - 2회연속 부진 : 자체 경영진단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추진
  - 3회연속 부진 : 산지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 다른 유통시설로 용도전환 등 추진

### □ 농산물 거래 활성화와 유통종사자 분산능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다각화 추진

- 산지농협과 공판장간 온라인 출하·거래 시스템 구축·활용
- 분산축진을 위한 사업 및 거래방식 개발, 유통정보화 시스템 구축, 경영관리 방법 개선 등 추진

### □ 공판장 유통종사자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 신규 중도매인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도매인 분산 및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 산지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2,230명 대상으로 150명 교육 실시

- 공판장 종사자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공판장 임·직원 900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50명, 위탁교육 100명 교육 실시
- 평가결과 우수이상 공판장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 실시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공판장 운영활성화	○ 시설운영 실태파악 ○ 공판장 평가실시	○ 자체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공판사업 컨설팅 실시	○ 시설현대화 사업 확대 ○ 공판사업 안정화
○ 공판장 기능전환	○ 산지공판장 운영 등 실태파악	○ 기본 대책 마련 및 용도 전환 등 추진	○ 공판장 용도전환 등 마무리
○ 교육·해외연수 실시	○ 교육 300명 해외연수 70명	○ 교육 1,200명 해외연수 280명	○ 교육 1,500명 해외연수 350명

< 참 고 >

첫 과 부 류 사 지 국 파 장 혁 화

□ 중앙회 공판장( 1개소) : 대구공판장

□ 회원농협공판장(48개소)

시·도	공 판 장	시·도	공 판 장	시·도	공 판 장
경기 (2)	동두천농협	경북 (20)	경주농협	경남 (7)	통영농협
	부천원협		경주건천		삼천포농협
강원	대관령원협		경산농협		고성농협
충북	제천농협		칠곡왜관		창녕농협
충남 (4)	공주농협		김천농협		창녕남지
	논산동부농협		상주농협		창녕이방
	서산원협		문경점촌		밀양농협
	예산능금농협		영주농협	제주	제주농협
전북 (5)	남원원협		영주풍기	소계	48개소
	전주농협		영주부석		
	군산원협		영천농협		
	김제원협		청도농협		
	장수장계농협		청도각남		
전남 (7)	목포원협		상 주(원)		
	여수원협		포항농협채소		
	여수여천		경북능금(영천)		
	나주원협		경북능금(청도)		
	광양원협		성주참의원협		
	나주남부농협		예천농협		
	고흥녹동농협		안동(고추)		

## 2-3-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및 운영활성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소비지 유통경로 다양화,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
  -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배송 및 보관, 소포장, 가공, 현장 판매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도·소매 종합유통시설
    - \* '94.9.1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에 따라 '95년부터 건설

#### < 개장 및 건설현황 >

구 분	개장된 곳	건설중인 곳
공공유형(8)	성남, 고양, 달성, 수원, 목포	김해, 울산, 금산
생산단체형(5)	양재, 창동, 전주, 청주, 부산	
컨소시엄형(3)	천안, 군위, 대전	
16	13	3

-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 수취가격제고 및 소비지 판매가격 인하
  - 농산물유통단계 축소 : (도매시장) 6~7단계 → (유통센터) 3~4단계
  -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소비지 판매가격 인하
  - 계약직, P/T고용 등으로 연간 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 도매시장의 구조조정 촉진 및 물류 효율화
  - 경매제도, 중도매인제 등 도매시장의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
    -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가시화
    - \*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 정착 촉진
    - \* 신규 도매시장에서의 하역이 용역회사에 의해 이루어짐
  - 물류기기 이용확대 및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 효율화 촉진
    - \* 지게차 사용 등 하역기계화로 도매시장 대비 하역비 30%절감
    - \* 파렛트 출하확대로 도매시장 산물출하 대비 물류비용 25% 절감



## □ 문제점

- 콜드체인시스템 등 신유통시설 미비
  - 저온저장고 등 신설농산물 저장시설 미비 및 고객편의 시설미흡
  - 공공유형의 유통센터 시설개보수·현대화 미흡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상 문제점
  - 신규 개장 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2~3년간 적자상태 및 적자지속 우려
    - \* '03년말 적자액 : 36억원(13개 유통센터 총액 기준임)
  - 「적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경영개선대책 미흡
    - \* 경영목표제 및 책임경영체제구축이 미흡하여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감 결여
    - \* 농협중앙회의 무분별한 인력파견 등은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고 방만한 운영이 되어 적자요인으로도 작용
  - 유통센터별 별도 구매에 따른 비효율·비경제성 잔존
- 종합유통센터 본래의 기능인 농산물 도매기능 미흡
  - \* '03년말 매출액 : 2조7천억원(도매매출 1조5천억원, 54.7%→ 직영점 제외 30)
  - 민간 대형유통업체는 「자기 브랜드」 사용출하품목 확대로 산지직거래 확대
  - 일반소매상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세원노출에 대한 우려와 외상거래 제한으로 이용 기피(중도매인과 무자료 외상거래 선호)
  - 반가공, 규격·등급화·소포장화 등 상품개발기능 미흡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제도적인 문제점
  - 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중복투자 가능성 대두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개보수 현대화에 대한 소극적 자세 견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산지생산자조직, 지역농협의 산지유통 역할 증대
  - 지역농협은 합병·연합을 통해 산지유통에 대한 역할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유통업체간 경쟁심화로 종합유통센터 경영애로
  - 농산물 판매가 백화점, 할인점, 슈퍼,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으로 다양화
  - 업체간 경쟁심화로 고품질 규격농산물을 싸게 조달하기 위해 도매 시장 구입보다 산지로부터 직거래 수요증가
    - \* 민간유통업체의 자기상표 개발 및 소비자유통망 확충
- 친환경·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 소득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 맛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독신자의 증가 등으로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는 가공농산물, 전처리농산물 수요증가

### □ 추진방향

- 종합유통센터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경영목표제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제 실현
- 종합유통센터 도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산지농협과의 직거래 시스템 구축
- 종합유통센터 시설현대화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추진
  -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농산물 위생관리 강화 및 전처리·반가공시설 확충
  -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으로 지정 추진하여 성과중심 지원

## 다. 세부추진내용

###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경영개선

- 종합유통센터 공동구매사업 확대 및 운영통합 추진
  - 종합유통센터 전산시스템 통합, 상품코드체계 통일화, 회원고객 통합관리, 유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CM 체계 구축 등 추진
  - \* 유통센터간 유통정보시스템 통합 및 산지 출하처와의 인터넷 기반 수발주 시스템 구축
  - 종합유통센터 운영 통합 추진
    - \* 농협중앙회 분사(5개소 : 성남·고양·달성·수원·목포) 운영 통합 : 2005.12
    - \* (주)농협유통(4개소 : 양재·창동·전주·청주) 및 통합분사간 운영통합 : 2006.12
    - \* 전체 종합유통센터 운영통합 출범 : 2007.1
- 유통센터별 경영목표제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제 실현
  - 매출·순익에 대한 목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책임경영제 실현
  - 적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요인 발굴
  - \* 경영정상화 및 경비절감을 위한 CEO퇴진, 파견인력·정원 감축 등을 추진
  - \* 책임경영실현 대상 종합유통센터 : 대전, 목포, 달성, 수원, 군위

### □ 농산물 도매기능 활성화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직영점 사업 확대
  - ('04) 24개 → ('05) 28 → ('06) 32 → ('07) 36
- 일반 슈퍼마켓 농산물 체인화 추진((주)농협유통)
  - 지역중소형 슈퍼마켓을 고정 투자없이 농산물판매 거점화
- 소매거래처에 대한 이익환원금 일부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거래처 유지
- 소매유통업체의 요구에 부응한 상품 개발 및 농산물수출확대 추진
  - 반가공품 개발 및 포장단위 개선 등 상품개발 기능을 강화
  - 동북아 주둔 미군 및 L.A, N.Y 등에 청과류 수출 확대((주)농협유통)
- 농협계통 판매장의 이용을 제고 및 민간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 친환경·고품질안전농산물, 전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강화
- 식자재공급사업, 학교급식 사업을 확대하고 온라인 시장을 개발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개선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시설 확대

- 신선농산물의 취급확대를 통하여 민간대형유통점과의 차별화 및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위한 예냉실,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
- \* 흑자운영 중인 유통센터 중 시설개선의 여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농안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단, 냉동탑차, 컨테이너는 물류기기 구입자금에서 보조지원(50%)

< 시설개선 계획 >

- \* ('06) 25억원, 전주·청주·군위·성남·고양 등 ⇒ ('07) 17, 양재 등 ⇒ ('08) 10, 수원 ⇒ ('09) 4, 목포 등

○ 고객편의시설 및 물류기기 현대화

□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추진 및 신규추가 건립

(억원)

구분	총사업비	'03까지 지원	'04	'05이후	비고
금산	269	201	68	-	'05완공
김해	542	327	171	44	'05완공
울산	433	109	180	144	'06완공
계	1,244	637	419	188	

- \* 광주종합유통센터(총사업비 : 322억원)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계획 확정 지연으로 사업계획 취소('04.7.9), 울산종합유통센터의 경우 총사업비 증액(392억원)을 검토중이며 '06년 준공 예정

○ 민간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참여확대에 따라 정부의 추가 건설은 신중히 결정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 종합유통센터 개보수·현대화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으로 지정

- 지방정부의 독단적인 판단과 운영을 견제하고 성과중심의 지원을 추진

○ 농수산물유통센터 수입금에 대한 농산물유통센터의 개보수 및 현대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운영 감사를 강화하고 패널티 부여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종합유통센터 경영개선 -공동구매사업확대  -운영통합	-전산시스템통합 및 상품코드통일 기반 구축  -운영통합기반구축	-전산시스템통합 -고객통합관리 -SCM체계기반 구축 및 시행 -인터넷수발주 시행  -중앙회분사, (주)농협 유통 운영 통합	-전유통센터 공동 구매 및 운영통합 시행
○책임경영실현	-경영목표제도입	-책임경영실천 ·CEO퇴진, 파견 인력·정원감축 추진 ·대상: 대전·목포·달성 수원·군위 등	-책임경영의 정착 및 흑자기조 유지
○농산물도매기능 활성화 -판매망 구축 확대  -수출확대	-직영점사업의 정착 -채임화 사업의 기반 구축  -주한미군에 대한 수출	-직영점의 확대 ('04)24→('08)40 -체인점화사업의 정착 및 확대  -동북아주둔 미군 ('08) : 23백만불	-LA, NY 등 확대 ('10) : 45백만불
○종합유통센터시설 개선 -저온저장고 건설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	-저온저장고 건설 및 냉동탑차, 컨테이너 지원 ·양재 등 8개소	-저온저장고 건설 및 냉동탑차, 컨테이너 지원 ·목포 등 7개소
○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 운영지침	-지침개정시행		
○종합유통센터 건설	13개소	16개소	

## 2-3-13. 생산자단체운영 소매유통시설 현대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대도시 생산자단체 운영 소매유통 시설
  - 7대도시 102개 조합에서 183개소 설치·운영
  - 평균매장 규모 103.2평(300평이상 9개소)
  - 농축산물 취급비중 67.0%
  - 농축산물 구매선 : 산지조합 및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
- 대도시 생산자단체의 소매유통시설 운영성과
  - 도시 소비자협동조합 역할 수행
    - 직거래장터 운영,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판로 제공
    - 하나로마트 매출액 : 연간 14,044억원(7대도시 : 25% 수준인 3,545억원)
  - 산지조합 농산물 구매자금 지원
    - 농산물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합 경제사업에 지원(458억원, 30개조합)
  - 민간유통업체의 독과점력 견제
    - 가격횡포, 입점료 부과 등의 불공정 문제 해소를 농업인 수취가격 제고
    - 산지와와의 직거래 확대(54.7%)를 통한 유통효율성 제고
  - 고품질 안전농산물 전문판매로 소비자 신뢰 구축
    -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잔류농약 원산지표시 등 안전성 관리 체계 완비
  - 신상품 농산물 판매 전초기지 역할
    - 절임배추, 예냉딸기, 게르마늄참외 등 산지농협의 신상품을 시험판매
  - 도시·농촌간의 교류의 장 제공
    - 브랜드전, 지역농산물 축제 등 관측행사와 농촌관련 이벤트 개최로 도시민의 농업·농촌 이해 기회 제공

## □ 문제점

- 생산자단체의 소비자유통시설 투자여력 부족
  - 고지가(高地價)에 따른 부지확보자금 과다로 매장 대형화를 위한 자금 여력 부족
- 민간대형유통업체 산지 장악에 의한 농업인 수취가격 하락
  - 민간유통업체의 판촉행사에 따른 저가격 공급 요구
- 민간 유통업체의 P.B상품 개발로 산지농협과 농업인 고유브랜드 소멸
  - E-mart의 「e-plus」, 롯데마트 「롯데농산물」 등
- 민간 유통업체의 수입농산물 판매량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 시장 위축
  - 마진이 높은 수입농산물 판매를 선호
    - 수입농산물 판매비중 : ('99) 5.1% → ('02) 18.9%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선진외국의 유통업체의 판매영역 확대와 시설의 대형화·현대화
  - 넓은 매장과 주차공간으로 쾌적한 쇼핑공간 구축
  - 품목을 고루 갖추어 원-스톱 쇼핑 가능매장 구성
- 국내 대기기업의 유통업 참여 확대
  - 풍부한 자금력 바탕으로 멀티프렉스, 문화센터, 은행, 약국 등 다기능화
    - 소매업체의 규모화·체인화 증대 및 재래시장·소규모 영세수퍼 탈락 심화
  - 가격파괴형 신입태 증가 및 산자유통과의 직거래 가속
- 소비자 기호변화
  -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소비의 고급화
  - 쾌적한 쇼핑공간 및 원스톱 쇼핑 공간 선호

## □ 추진방향

- 민간유통업체의 산지장악 추세에 대비, 생산자단체 소비자유통 지원
  -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적정수준의 우리 농산물 판매망 구축
- 도시소재 생산자단체의 소비자조합으로서의 역할 증대
  - 도·농교류의 장 제공, 산지조합의 지원확대 등
  - 대도시 생산자단체 운영 소매유통시설 지원 확대
  - 근거법령 : 농안법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2항

## 다. 세부추진내용

- 대도시 생산자단체 운영 소매유통시설 지원 목적
  - 산지농협과의 직거래를 통한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산물가격의 안정 도모
  - 우리 농산물판매망 확보 및 우리 농산물 가격의 왜곡 방지
  - 산지농협, 농업인의 신개발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전초기지 마련
- 지원내용
  - 대도시 소재 생산자단체가 운영중인 농산물소매 유통시설에 대한 증·개축에 대한 건설사업비 용자 지원
    - 부지매입비, 시설비, 기타지원 시설 등
- 지원대상자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시킬 수 있는 생산자단체
  - 7대도시 소재 생산자단체중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이면서 고정투자한도 여유액이 100억원이상인 단체
  - 순수 매장면적이 2,000평이상이며 이중 1/3이상을 농·특산물 전용으로 운영중인 생산자단체
  - 500평이상 매장을 10년이상 운영하여 노하우가 축적된 단체
  - 기존 소매매장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
    - \* 단, 생협, 한살림 등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매유통시설지원과 생산자단체 운영 소매유통시설 지원에 대한 조건완화는 추후 검토
- 지원조건 :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안기금 용자 50%(자부담 50%)
  - 단, 연리 2%이하,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생산자 단체 운영 소매 유통시설 지원 계획 수립('04)</li> <li>○ 생산자단체지원 대상선정 및 농안기금 수요 조사('05)</li> <li>○ 농안기금의 융자지원('06)</li> <li>○ 소매유통시설지원 성과분석('09)</li> <li>○ 소매유통시설지원 확대('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조건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요건에 맞는 대상생산자단체 선정 및 수요 조사</li> <li>○ 년리 2%이하, 3년거치, 7년 상환의 자금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생산자단체에 대한 매출동향 및 운영성과 분석</li> <li>○ 운영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지원</li> </ul>

## 2-3-14.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소매단계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육 판매망 구축 및 정예화, 브랜드화 촉진
  - 지원내용 : 판매장 시설, 점포구입비(건물임차료 포함), 건축비 등
- '04년부터 식육소매유통시설, 브랜드가맹점, 닭고기체인점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제 형식으로 전환하여 지원
  - 행정기관 및 관련협회 추천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대출
    - \* 관련협회 추천은 '05년부터 닭고기가맹점에 대해 실시

#### □ 문제점

- 식육판매업소(정육점)는 47천개소이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10평미만이 80%이상)하므로 위생적이고 규모화된 시설이 요구됨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소비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구매 패턴에 따라 판매 장소인 식육판매업소 시설 규모 및 환경 개선
  - 비위생적이고 영세한 동네정육점의 일부는 도태되거나转业 예상
- 축산물 소매단계 규모화·현대화 구축 필요
  - 규모화·현대화된 축산물 소매유통 구축을 위하여 식육판매업소 지원대상을 최소 10평 이상으로 확대
  - 브랜드육 판매촉진을 위한 직영점 및 가맹점 설치 지원

### 다. 세부추진내용

- 일정규모(10평)이상의 식육소매시설을 개설하거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신규설치 : 140백만원이상, 시설개선 : 20백만원이상
-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체인점 등 유통망 확대 지원
  - 브랜드가맹점(10평이상) : 140백만원이상, 닭고기체인점 : 30백만원이상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①판매업소 규모화·현대화	-지원시설기준 · 식육판매업소 10평이상 · 음식점겸영업소 40평이상	-지원시설기준 · 식육판매업소 10평이상 · 음식점겸영업소 40평이상	-지원시설기준 · 식육판매업소 10평이상 · 음식점겸영업소 40평이상
②브랜드 육성	브랜드육 판매	브랜드육 판매	브랜드육 판매

## 2-3-15. 한우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쇠고기의 불법유통 및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신으로 한우소비 감축
  -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소비자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등 둔갑 판매의 개연성 매우 큼
- \* 소비자가격('04.10월) : 수입쇠고기 7,488원/500g, 한우 27,522(3.7배)

#### □ 문제점

-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 미 실시로 단속효과 미약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한우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 실시

- 식육 판매점 및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정착 유도

### 다. 세부추진계획

- 사업주관 : 전국한우협회
- 인증관리위원회 구성 운영(7인)
  - 소비자단체 3인, 생산자단체 2, 학계 1, 정부 1
  - 매장의 관리 감독 지도요원 확보(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3인)
  - 인증매장의 관리 감독규정 제정 시행
- DNA 동일성 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
  - 검사결과 인터넷 공개 등

## 라. 추진일정

구분	1단계('06)	2단계('07~'08)	3단계('09~ )
관리매장수	100	500	이력추적시스템 전면실시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로 대체
관리요원	3	6	
재원부담	정부보조	자조금	

## 2-3-16. 농산물 물류 효율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 농산물유통비용과 물류비 현황

- 농산물물류비 : 7조 3,376억원
- \* 운송비 27,117억원, 포장비 22,140, 보관비 6,908, 하역비 6,894, 감모·청소비 등 10,317

##### < 농산물유통비용과 물류비 비중 >

생산자 출하액	유통비용(24조 8,205억원)		소비자 구입액
	물류비	기타유통비용	
30조 3,362억원(55.0%)	7조 3,376 (13.3%)	17조 4,829 (31.7%)	55조 1,567 (100%)

##### ○ 농산물의 파렛트 이용물량은 8% 미만, 공산품 분야에 비해 미흡

- 국내 농산물 물류량 13,137천톤 중 약8%인 1,015천톤이 Pallet 이용
- \* 물류기기 사용가능 유통량의 14% 수준임

##### ○ 대형유통업체는 파렛트화가 급격히 진행, 도매시장은 상대적으로 미흡

	<u>대형유통업체</u>	<u>도매시장</u>	<u>재래시장</u>
- 파렛트이용농산물 :	953천톤	62천톤	-
- 파렛트이용율 :	('00)20%→('03)65	('00)0.1%→('03)1.1	0%

#### □ 문제점

##### ○ 도매시장의 시설여건 및 거래관행

- 데크시설 등 하역기계화 시설 미비, 공간 협소로 파렛트 공치장 부족
- 시장내 소매행위로 인한 하역장비 운영 지남
- 중도매인의 분산능력 영세성으로 파렛트 단위 구매 어려움
  - \* 파렛트 단위 구매시 소매상에게 재판매 후 잔품에 대한 처리부담으로 경락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존재
  - \* 파렛트 농산물을 하역 후 해체하여 소포장하는 경우도 존재

- 파렛트 단위 거래시 세원노출에 대한 불안감 및 거래물량의 투명성은 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의 경우 일자리 상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구조조정 지연되어 농산물 하역기계화에 애로

#### ○ 산지출하조직의 파렛트 출하 환경 및 기반 미흡

- 표준규격화 출하부진으로 인한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매입 기피
- 단위차량당 다품목 소량적재 및 다수 거래처별 소량 분배
- 농산물의 수확시기가 달라 출하시기가 분산
- 산지의 파렛트출하, 지게차 운영, 광폭차량 운행 등에 대한 기반 미구축

#### ○ 파렛트 등 물류기기 관리체계 문제점

- 하역노조와 물류기기 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는 하나, 손망실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 \* 물류기기 이동에 따른 취급주체(도매법인·도매인)의 공조 미흡
  - \* 도매시장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불분명
  -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 거래·하역 주체가 상이하여 물류기기회사와 이용계획을 맺을 당사자 선정이 곤란
  - \* 하역노조에서는 관리는 해 주나,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재고관리 책임주체 부재
- 임대사용료의 책정기준이 되는 손망실율은 연간 12%이나, 실제로는 22~40%에 이르러 풀회사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
  - \* '03손망실율 : KPP 입고량의 22%, KALS 입고량의 40%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농업인 고령화 및 농업노임의 상승은 산지 생산자조직의 경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생력화·공동화등을 급격히 진행시킬 전망
- 대형민간유통업체 및 도매시장등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물류효율화를 급속히 추진할 전망
  - 물류기기구입 및 공동이용을 위한 유인책 시행 및 지원 확대
- 신선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온저장유통의 수요증가 전망
  - 냉동탑차, 저온저장고 등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기기 및 시설개보수 지원 확대
- 물류기기공급 독점에 따른 가격인상, 공급횡포등 부작용 발생 우려
  - (주)농협물류의 시장 참입 유도 필요

### □ 추진방향

- '07년까지 전체 농산물유통량의 13% 수준, 물류기기 사용가능 유통량의 25%수준 달성 추진
  - 파렛트화가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책 추진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활용, 산지부터 파렛트출하 체계 구축
  - 전산화 등을 통한 물류기기의 공급 및 회수관리 체계 개선
- '13년까지 전체 농산물유통량의 25% 수준, 물류기기 사용가능 유통량의 50% 수준 달성 추진
  - 도매시장 : ('03)1.1% ⇒ ('07)8.7 ⇒ ('13) 36.9
  - 대형유통점 : ('03)65% ⇒ ('07)80.0 ⇒ ('13) 90.0
  - \* 재래시장, 전자상거래 등은 물류기기 사용 불가능



## 다. 세부추진내용

### □ 도매시장 파렛트 출하 촉진대책

#### < 단기대책 >

- 파렛트·지게차·윙바디·냉동탑차 등 구입지원 ('04년; 59억원)
- 파렛트출하시 파렛트풀이용료중 자부담분(40%)도 출하자에게 추가지원(쓰레기유발부담금), 파렛트 출하촉진
  - 기본 954원외에 795원을 추가 지원하여 사용료 1,749원(기본1,590원+부가세159원) 전액을 지원(100% 보조)
- 파렛트하역시 하역노조에게 파렛트하역촉진보조금(10,000원/매)을 지원하여 하역노조 구조조정을 촉진
  - 하역촉진보조금 : 국고 5,000원, 시장개설자 5,000원 ('03년84백만원)
- 도매시장내 소매상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물류 동선 확보
- 파렛타이징 제고를 위한 노력을 도매시장 평가항목에 신설·반영
  -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동안 매년 당기순이익의 3%를 별도적립, 하역기계화장비구입 등 물류기기 시설확충에 사용한 실적
- 출하촉진자금을 파렛트 출하 취급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리 차등화 : (현행) 5% → (우수법인 및 중도매인) 4%
  - 출하촉진자금 지원 : ('04) 171억원 → ('05) 250 → ('06) 230 → ('07) 210
- 강서도매시장, 광주서부도매시장을 파렛타이징 시범시장으로 육성
  - 시범사업 품목을 선정 효율적으로 추진
- 산지유통인·우수법인·중도매인에 대한 표창 및 해외연수실시

## < 중장기대책 >

- 도매시장별 파렛타이징 목표설정 연차적으로 추진
  - 계획실행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
- 도매시장의 데크, 저온저장고 등 시설개보수 및 현대화
- 파렛트 단위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중도매인의 법인화 및 규모화 촉진
- 하역노조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매법인의 하역자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
- 표준규격출하품목에 대한 하역비는 도매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매법인 재지정
  - 하역비 문제를 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간의 자율적인 해결 유도

## □ 산지 파렛트화 촉진대책

- 산지유통센터(APC) 등에 연차별로 일정율의 파렛트 목표 출하제 도입
  - 파렛트출하율 : ('05) 10% → ('06) 20 → ('07) 30 → ('13) 50
  - 단, 산지유통센터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
- 매년 운영실태 평가와 연계 확인,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퇴출 등 패널티 부여, 우수조직에는 인센티브(무이자 자금)지원
  - 우수산지조직 인센티브 : ('04) 278억원 → ('05) 560 → ('06) 310 → ('07) 310
- 파렛트 출하실적에 따라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보조지원을 차별화
  - (현행) 10% → (개선) 5%~10%
  - \* 규격포장재비 지원 : ('04)446 → ('05)450 → ('06)420 → ('07)390억원
  - \* 공동선별비 지원 : ('04) 70 → ('05)120 → ('06)150 → ('07)180억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 자금지원을 파렛트 규격출하사업과 연계 지원
  - 포장재비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표준규격품표시 농산물 중 파렛트 출하 농산물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지정

- 파렛트 규격출하 지원기준을 연차적으로 차등화
  - \* 완전 파렛타이징 출하시 지속적으로 포장재비의 30% 보조지원
  - \* 파렛타이징을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는 연차적으로 지원비율 차등지원
  - \* 지원비율 감축계획 : ('04) 25% → ('05) 20 → ('06) 15 → ('07) 10

○ 물류기기 이용사업 연차적 지원 확대

- 물류기기 구입지원은 생산자 조직의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지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에 우선 지원(보조율 : 50%)
  - \* 연차별 지원계획 : ('04) 59 억원 → ('05) 67 → ('06) 70 → ('07) 75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대폭 확대하여 유통비용 절감(보조율 : 60%)
  - \* 연차별 지원 확대 : ('04) 64 억원 → ('05) 76 → ('06) 89 → ('07) 112

□ 파렛트 P-box 등 물류기기 공급·관리체계 개선

- 인터넷의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물류기기 공급 및 회수시스템을 구축 시범 시행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실시간별로 농업인·도매법인·중도매인 등이 이동현황을 인터넷에 입력하여 회수율 제고
    - \* 미입력시 손망실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 물류기기공급 독점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농협물류의 시장참입 유도
- 장기적으로 파렛트에 전자칩을 부착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식별방식)를 도입하여 파렛트 풀시스템 운영

## 라. 추진 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도매시장파렛트출하 촉진대책	○ 지게차등 물류장비 구입 지속 지원  ○ 파렛트 하역촉진 보조금의 지속 지원  ○ 소매상인관리 감독을 통합 물류동선 확보  ○ 도매법인 평가항목에 파렛타이징 제고 노력을 반영  ○ 파렛트출하시범 시장 선정	○ 파렛트풀이용료중 국고지원60%외에 자부담분(40%)는 쓰레기유발부담금 에서 지원(가락시장)  ○ 파렛트출하자에 대한 하역비면제 (5천원) - 도매법인20%, 시장개설자80%  ○ 출하촉진자금의 차등 지원  ○ 도매시장별 자체 파렛트 출하계획 수립  ○ 우수도매법인 중도매인에 대한 해외연수  ○ 도매시장시설보완	○ 도매시장시설 현대화  ○ 중도인의 법인화 및 규모화  ○ 도매법인의 하역 책임의무화
○ 산지의 파렛트화 촉진대책	○ 산지유통인연합회의 물류기기공동이용 주체 선정        ○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의 지속 확대 추진	○ 산지유통센터별 파렛트출하계획 수립 ('07) : 30%  ○ 우수산지조직에 대한 무이자자금 지원  ○ 파렛트출하실적에 따른 포장재비· 공선비 연계 지원	○ 산지유통센터별 파렛트출하계획 수립 ('13) : 50%
○ 파렛트, p-box 등 물류기기 공급· 관리체계 개선	○ 인터넷상의 통합 전산망을 활용한 물류기기 회수	○ RFID 도입 기반 구축  ○ (주)농협물류 시장 참입	○ RFID 도입

## 2-3-17.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산물규격상품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84년부터 사업 실시
  - 포장재비 지원 : ('00까지) 1,142억원 → ('01) 626 → ('02) 492 → ('03) 509
  - 공동선별비 지원 : ('02) 24억원 → ('03) 34
- 현재 127개 품목에 대해 포장규격(640개) 및 등급규격(특·상·보통)을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운영 중
- 규격출하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규격화 및 포장화 진전
  - 표준규격화율 : ('99) 27% → ('01) 46 → ('02) 50 → ('03) 54
  - 포장화율 : ('97) 72% → ('01) 89 → ('02) 90 → ('03) 87

#### □ 문제점

- 규모화된 조직에 집중 지원하지 않고 개별농가 및 소규모 생산자조직까지 분산 지원함에 따라 지원효과 저감
- 표준규격 포장화율이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물류표준화사업 및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과의 연계성 미약
- 상품규격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로 표준규격 설정에 애로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망

- 물류비용 절감, 신용거래 정착,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쓰레기 발생 억제, 산지출하조직의 시장교섭력 증대, 농가수취 가격의 제고 등을 위해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 포장화율이 제고되어 감에 따라 단순 포장재비 지원 보다는공동선별비 지원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
- 소포장농산물 등 소비자의 다양한 규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업체별·지역별로 자체 규격상품 출하 사례 증가 예상

### □ 추진방향

- 포장재비 지원 위주에서 공동선별비 지원 중심으로 전환
- 소규모 작목반·조합단위까지의 분산지원을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규모화된 조직에 집중 지원
- 표준규격 포장화율이 낮은 품목과 높은 품목간의 차등 지원으로 지원효과 제고
- 표준규격공동출하·물류기기공동이용·물류표준화 사업의 통·폐합으로 사업간 연계성 제고('08년도 이후)
-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다. 세부추진 내용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조직에 대한 공동선별비 확대 지원
  - 포장재비 지원은 연차적으로 감축하되, 공동선별비는 확대 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계획 : ('04) 70억원 → ('05) 120 → ('07) 250 → ('08) 570 → ('13) 466
  - 공동선별비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을 확대
    - 지원단가 현실화 : ('03) 80원이하/kg → ('04~'05) 200원이하/kg
    - 국고지원을 확대 : ('04) 30~40% → ('05이후) 30~50%
  
- 공동선별·광역 출하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사업효과 제고
  -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 지속 확대
  - 전문적 경영·광역화를 위하여 공동마케팅 조직에 공동선별비 10%P 가산하여 지원
  
- 표준규격 출하율 향상을 위해 품목간 차등 지원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이하인 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보조금 지원율 : ('04) 30% → ('05이후) 40
  -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인 품목에 대한 지원을 축소
    - 보조금 지원율 : ('03) 25% → ('04이후) 20
  
- 농산물 물류효율화 관련 사업의 통·폐합으로 사업간 연계성 제고
  - 개별시설 및 경영단위별로 분산지원하고 있는 3개 사업 (물류표준화사업,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08년부터 통합 추진
  - 파렛타이징 출하 표준규격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지원율을 5%P 가산

□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취급 및 거래기준과 소비자의 구매 기준을 조사, 현행 127개 품목에 대하여 부류별·품목별로 '04~'06까지는 매년 40개 품목씩 보완·정비
  - '07이후부터는 소비자와 생산자 요구 등을 감안하여 보완·정비
- 농산물 표준규격 홍보강화 및 가격정보 제공기준이 되는 등급 규격(특·상·보통)의 표준화로 정확한 유통정보 제공
  - '04년 현재 37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안 마련, 농협·농민단체·학교급식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협의 중

□ 사업 추진상황 및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실시로 지원 효과 증대 도모

- '08년부터는 공동선별비 지원 중심으로 전환 추진
  - \* 매년 사업 평가를 하여 제도개선 및 사업방향 설정
-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원내용 조정
  - 친환경인증 농산물 중 저농약 인증 농산물은 '05년도부터 생산자 조직 평가 후 지원
  - '06년도부터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중 품질인증(유기·전환기·무농약)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자 조직 평가 후 지원
  - 친환경인증·품질인증 농산물 중 곡류·두류는 양곡관리법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원되므로 '05년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장화우대품목(무, 배추, 마늘, 양배추) 조정
  - 마늘을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포장화우대품목에서 제외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산물 규격상품화 촉진 및 물류표준화 제고	○ 표준규격출하율 55%	○ 표준규격출하율 60% ○ '08년부터 물류기기 구입, 물류기기 공동 이용, 표준규격 공동 출하사업 통합 추진	○ 표준규격출하율 65% 이상

## 2-3-18. 농산물 산지·유통정보화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산물의 산지, 유통, 소비지 부분의 규모화 달성

구 분	시 설 명	개 소
소비지·유통	공영 도매시장	32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	14
	농산물 공판장	90
산 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08
	농산물 간이 집하장	691
	산지 가공 공장	122
	미곡 종합 처리장	328
	축산물 종합 처리장	7

-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다양화에 주력
  - 법정 도매시장(48개소): 공영 도매시장(32), 일반도매시장(16), 민영 도매시장(3)
  - 유사도매시장(17개소)
- 종합유통센터 경영통합 및 산지-소비지간 연계 필요
  - 공동 마케팅, 연합 판매 등 협동조합 기능 필요
- 물류·유통 효율성 측면이 증가하고 있음
  - 파렛트 출하촉진, B2B, B2C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

## □ 문제점

- 산지 유통시설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나 경영, 유통, 마케팅, 연합판매 등을 위한 정보화 수준 미흡
  - \* 재배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마케팅, 경영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변화
- 생산, 유통, 소비 단계의 물류와 상류가 동시에 이동하여 비효율화 발생
  - \* 농산물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따라 실제 농산물이 이동을 하고 있어 많은 비용, 손실이 발생
- 산지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 및 분석이 안 되고 있음
  - \*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지원 시스템이 필요
- 산지·소비자간 연계 마케팅, 전자상거래 성과 미흡
  - \* 특히 생산자 조직과 유통, 대량 소비자간 B2B 거래 미흡
- 차세대 물류 표준이 될 RFID(무선인식장치), 표준코드 미흡
  - \* 지자체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RFID를 도입 => 정보의 공유 및 활용 곤란
  - \* 현재 농산물 거래에 사용되는 코드는 생산자, 유통업체별로 상이하여 농산물 물류 거래 정보화 곤란
- 수요 창출,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준비 미흡
  - \* 새로운 농산물 수요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마케팅 하기 위한 준비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효율적인 농산물 물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
  - \*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생산자, 유통인, 농산물 정보의 공유
-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이 농산물 생산, 유통 부문의 핵심 역량으로 대두
  - \* 산지유통시설, 종합물류센터, 도매시장의 운영 능력에 의해 우리 농산물 유통 시장의 성패가 좌우
  - \* 비전제시, 위기관리, 마케팅 능력이 CEO의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
- 농산물 유통의 신속성, 안전성, 투명한 거래에 대한 요구 증대
  - \*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가격, 물량, 품질,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 수요 증가
  - \* 생산농가, 중도매인, 도매법인 등의 거래 내용의 정보화를 통한 과학적인 관리
- 농산물 신규 수요창출,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 \* 식품 산업 육성, 농산물 수출 확대, 학교 급식 등 대규모 급식개발
  - \* 농산물 자조금 조성,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계약재배 및 약정 출하

## □ 추진방향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종합물류센터, 영농업인 등의 정보화
  - \* 기관, 단체에서 필요한 소규모 정보시스템 지원(품목별 소규모 ERP, 경영 분석 시스템 및 경영 교육)
  - \* 보조, 지자체 부담, 자부담 형태로 지원
  
- 차세대 물류표준이 될 농산물 RFID 표준화 작업(표준코드 포함)
  - \* RFID의 전체적인 기반표준은 산자부, 정통부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 분야의 표준 규격은 농림부에서 표준화 작업해야 함
  - \* 현재 제정된 표준 코드는 품목, 품질, 포장단위 수준으로 시장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농수산물정보센터에서 운영)
  - \* GAP, 이력추적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표준 코드 제정 필요
  
- 농산물 전자 상거래 지원센터
  - \* 현재의 B2C 위주에서 B2B 형태의 기업간 거래를 지원할 조직 육성
  - \* 거래 인증, 거래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제공 등 역할 담당
  
- 산지, 유통, 소비 분야의 정보화를 통한 수요창출 전략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향상
  - \* 각 단계별 모든 거래, 종사자, 단체 등의 자료를 DB화 하여 정책 결정, 집행 능력 향상
  - \* 농산물 수요조절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판단 및 자금 지원을 위해서 기초 정보, 자료의 축적

## 다. 세부추진 내용

### □ 생산조직, 유통조직에 정보화 기반 마련

- '13년까지 208개 산지 유통센터에 경영 지원 시스템 구축
  - \* 산지유통센터의 경영능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정보시스템 지원
  - \* 품목별 소규모 ERP 템플릿 개발 보급
- 정보화 기반 설비는 중앙 집중형으로 개발 지원
  - \* 산지, 유통업체에는 정보화 전문인력, 운영시설이 미흡하므로 중앙에서 집중 관리
  - \* 정보시스템, DB의 공동 활용을 통한 효율성 강화
- 수요 예측,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기초 DB 구축
  - \* 산지, 유통, 소비 분야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조직, 물류, 상류에 대한 기초 정보를 축적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
  - \* 정책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 수립
  - \* 정성적인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내용을 설명 가능한 정량적인 평가 모델을 만들어 활용 (예: 정책결정 Tree 활용)

### □ RFID 표준화 작업

- RFID 기반기술 표준, 정보 교환방식은 국가 표준으로 제정
  - \* 정보교환방식, 기반 기술 등은 국제 표준을 수용하여 국가표준화됨
  - \* 농산물 특성에 따른 생산 및 유통 정보 교환 체계는 농림부에서 표준화 작업을 실시
  - \* 과채류, 화훼류, 식량류,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을 대상
  - \* 현재 BPR/ISP 작업이 진행 중인 GAP, 이력추적제 내용 포함

□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 **기업대 소비자관계(B2C) 전자상거래 지원**

- \* 기업대 소비자 관계인 B2C를 위한 홈페이지는 성숙단계
- \* 홈페이지 신규 개발은 지양하고 기 구축된 홈페이지 운영 지원은 계속 서비스 (농림수산정보센터)
- \* 고객관리, 마케팅 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여 지원

○ **기업대 기업관계(B2B) 전자상거래 지원**

- \* 기업간 정보 교환, 거래 인증을 담당 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 \* B2B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단체, 회사에 대한 정보 지원 서비스 실시

□ **유통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강화**

○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능력 향상**

-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재배, 출하예약, 재고관리, 고객관리, 회계자료 정리 등에 활용하여 경비 절감 및 업무처리 시간 절감
- \* DB로 구축된 과거자료, 현재자료,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영 능력 향상에 초점

○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실시**

- \* 유통교육원, 농협교육원, 농림수산정보센터의 교육과정에 공식 교육과정 편성
- \* CEO 과정, 실무자 과정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5)	2단계('06~'12)	3단계('13~ )
○ 정보시스템 지원 ○ RFID 표준규격제정	○ 경영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RFID규격 제정	○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경영전문교육 실시	○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 2-3-19.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유통체계 구축, 유통마진 축소 등을 위해 '99년 이후 농가 홈페이지 구축, 농산물 통합쇼핑몰 운영 지원, 전자상거래 경영교육 실시 및 운영 활성화 자금 지원
  -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 : '03까지 1,500농가(관련기관 포함시 5,800농가)
  - 농산물통합쇼핑몰 구축 운영 지원('04년 2,500농가 입점)
-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업인은 도매가격보다 21.8% 높은 가격에 판매, 소비자는 소매가격보다 19.1%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04년 조사)
  - \* 농산물 전자상거래 거래규모 : ('00) 500억원 → ('01) 2,949 → ('02) 5,497 → ('03) 6,119
  - \* 전자상거래 품목별 거래비중 : 가공식품(33%), 화훼(16%), 약용(14%), 곡물(13%)

#### □ 문제점

- 전자상거래 기반은 확산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및 소비자보호의식 부족 등으로 홈페이지 및 쇼핑몰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진
- 소비자들은 직접 대면·확인 후 농산물을 구매하는 관행이 있어, 비대면거래인 전자상거래 농산물에 대한 신뢰 부족
- 농산물 통합쇼핑몰의 민간쇼핑몰과의 경합성 문제로 인한 민영화 필요성 제기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개방화시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확대 전망
  -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에 따른 전자상거래 유통량 증가 전망

### □ 추진방향

- 민간 주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정부의 기반조성정책의 조화 모색
  - 전자상거래 농업인 및 쇼핑몰의 경영능력 제고 및 고객만족 경영 마인드 확산 추진
  - 전자상거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장치 마련

## 다. 세부추진내용

### □ 전자상거래 경영교육 내실화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민간 경영능력 제고 지원

- 인터넷마케팅 등 실무위주의 전자상거래 경영교육 확대 실시
- 수준별 교육편성 및 소비자보호 등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연중교육 실시
  - 수준별 교육과정 개설('05), 인터넷 교육실시('04 시범실시, '05이후 확대)
- 전자상거래 운영농가 및 신규구축농가에 대한 창업·운영 전략수립 등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04 시범사업 실시, '05이후 별도사업으로 확대 실시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우수농가사례집 발간, 농업인 공동 홍보행사지원을 확대하여 자율홍보·책임경영 유도

## □ 소비자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제도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표준 소비자보호협약 개발 추진
  - 품질관리·신선도 유지 등 농산물 거래 특성을 반영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안전성·신뢰성을 평가하는 인증기준 개발('05년)
  - 사이트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홍보 및 보급 확대('06 이후)
  - 주요 농산물 쇼핑몰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표준 소비자보호협약 개발 추진('05이후)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전자상거래 경영교육,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자 교육 등 관련교육에 소비자 보호내용 추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강연 실시
- 쇼핑몰 판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식종합서비스시스템 및 전자(e) 카달로그 개발('05~'06)

## □ 전자상거래 비용절감을 위한 기반 확충

- 통합택배시스템 확대로 전자상거래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
  - '04 시범실시, '05 이후 홍보 및 보급 확대
- 전자상거래 유통업체에 직거래 매취자금 지속 지원
- 농산물 통합쇼핑몰을 중장기적으로 민간이양 혹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전환
  - '05~'08 : 쇼핑몰 기능조정 추진, '09이후 기능조정에 따른 업무추진

□ 농산물 전자상거래 정책추진체계 정비

- 정부, 지자체 및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구성,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기반 구축
  - 공공부문 중심의 「시·도 전자상거래협의회」를 소비자,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
  -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는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의 협의·평가 기능 수행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자율 경영 능력 제고(전자상거래 경영교육 및 컨설팅)	경영교육 내실화 및 인터넷교육·컨설팅 시범 실시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인터넷교육·컨설팅 확대	지속 추진
○ 소비자 신뢰성 제고	실태조사 및 사이트인증제 개발 추진	사이트인증제 개발·홍보, 표준소비자보호협약 개발, 지식종합서비스시스템 개발	사이트인증제 확대보급
○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	통합택배시스템 시범 실시	통합택배시스템 확대, 쇼핑몰 기능조정 추진	기능조정에 따른 업무추진
○ 전자상거래 정책추진체계 정비	시·도 전자상거래 협의회 운영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 2-3-20. 농산물 직거래 내실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8년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고효율·저비용 유통 체계인 농산물 직거래의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
- '99부터 직거래 장터·파머스마켓 시설 및 직거래자금 지원 등을 지원 ('03년 직거래추진실적 : 9조 8,902억원)
  - 직거래장터 : 지방자치단체가 유희지를 이용한 간이 직거래장터 설치 운영 (고정식 11개소, 이동식 152개소, 3,398백만원-국고 보조 70%, 지방비 30%)
  - 파머스마켓 : 지역농협이 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21개소 지원(10,635백만원 -국고보조 50%, 용자 20%, 자부담 30%)
  - 직거래자금지원 : 생산·소비자단체의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03년 29,882백만원)

#### □ 문제점

- 경제성 검토없는 외형적 사업확대로 일부 비효율성 초래
  - 고정식직거래장터는 사후관리연한(3년) 이후 폐쇄사례 발생(3개소)
- 일부 장터 등은 생산자의 상품·서비스 개선의지 미흡으로 소비자 신뢰 저조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비용 절감 필요성 등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 향후에는 직거래의 외형적 확대보다는 소비자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직거래 내실화 도모
  - 고품질 안전농산물 직거래지원사업 강화 및 효율적인 직거래 유형발굴·지원
  -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홍보
  -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으로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유통업체의 직거래 사업 활성화 유도

## 다. 세부추진내용

- 소비자밀착형 직거래 등 효율적인 직거래유형 발굴·지원
  - 소비자밀착형 소규모물류시설 지원
    - 안전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에 소규모물류시설 지원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도모
    - 농산물의 체계적인 유통활성화를 위한 집·배송장, 저온창고, 하역장 및 부대시설 등의 물류시설 건설비 지원
    - '04 신규사업(2개소 지원), '05~'08 : 전국에 8개소 지원
  - 소비자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선진형 직거래유형 개발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 해외 직거래사례 조사('05), 선진형 직거래유형 개발 및 사업 추진('06이후)

## □ 직거래 홍보 지원

- 우수농축산물상품설명회를 통해 우수농축산물을 민간유통업체에 홍보하여 산지와 소비자 유통업체의 직거래 확대 도모
- 우수 직거래사업을 평가, 인센티브 부여
  - 직거래시설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거래 실적을 연도별 평가하여 우수 직거래 시설 선정, 시상금 수여('05이후 지자체를 평가대상에 포함)
  - 농림부에서 평가하는 시·도별 농정종합평가에 직거래 추진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
- 친환경 안전농산물 취급 장터 등 우수 직거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 추진
  -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새로운 홍보방안 개발·추진('05이후)

## □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 최근 1년간 직거래 추진성과가 우수한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민간유통업체에게 직거래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자금 지원
  - 생산자·소비자단체에 직거래 자금 지원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 유도
  - 백화점·할인점 등 민간유통업체에 산지 직거래 자금 지원으로 농산물 취급확대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매유통 개선 촉진
  - \* 생산자·소비자단체 연 3%, 민간유통업체 연 4.5%
  - 지원금액의 125%(소비자단체), 250%(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체)이상 1차농산물 구입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실적 관리
  - 직거래매취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안 강구 및 실시('05이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효율적 직거래 유형 발굴지원	소비자중심물류체계지원	소비자중심물류체계자금지원 및 효율적직거래 유형 추가 발굴	좌동
직거래 홍보지원	우수농축산물 상품설명회, 직거래시설평가 중점 추진	새로운 홍보방안 개발·추진	홍보개발·추진
매취자금지원	자금지원계속	자금지원계속	자금지원계속

## 2-3-21. 고품질과실 브랜드 유통 활성화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생산기반시설과 저온 저장고 등 유통시설은 상당부분 확충되었으나 체계화되지 못해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 등 질적 개선미흡
  - '90년대 중반 연간 900억원 이상이 투·융자
  - 생산자단체 공동출하 : (사과) 20% → 55
- 정부의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자체 자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및 브랜드 난립 및 유통과 연계되지 못함
  - 정부인증 : 농산물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제, 표준규격출하,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 지자체인증 : 경기도 G마크, 전남 도지사품질인증 등
  - 생산자단체 브랜드 : 4,955개(공동 966, 개별 3,989)
- 소비지 유통이 대형유통업체 등장,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출하단위 물량의 규모화 등이 절실하며, 특히 개방화가 진전되면 더욱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

#### □ 문제점

- 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별로 다양한 인증품과 브랜드가 있으나 소비자가 믿고 구입 할만한 대표브랜드가 없어 혼란 가중
-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개발과 생산자조직의 활성화가 아직 시작단계로 이를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 전략이 필요함
  - 농가 개인별 분산출하, 개별농가지원 체제를 생산자조직을 통한 공동출하 및 조직을 통한 지원체제로 개편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소비자들의 고품질·안전농산물 선호가 뚜렷해짐에 따라 동일 품목내에서도 품질 및 브랜드에 따라 가격차는 심해질 것이며, 생산자들의 품질차별화 노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사과외의 경우 동일 중량에서도 7~8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

### □ 추진방향

- 고품질 과실생산 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직 육성
- 수급조절과 유통개선을 주도할 품목조직이 사용하는 고품질 과실브랜드 개발
  - 선도 농가를 고품질 과실 브랜드 회원으로 하여 브랜드를 통해 출하
  - 품목단체의 자조금 조성 및 소비확대 노력을 적극 지원
- 생산회원제, 생산자 조직을 통해 소비자유통환경 및 수출에 대한 적응력 강화
  - 실천사업 : 거점 APC 설치, 자조금, 대표조직 유통활성화

## 다. 세부추진 내용

### □ 사업추진원칙

- 생산농가가 고품질과실브랜드 「예 : Sunplus」 회원으로 가입, 고품질과실브랜드 유통센터로 출하하는 체계확립
  - 통합브랜드를 활용, 마케팅 규모화
    - 공동브랜드에 의한 공동출하 및 물량 규모화로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교섭력 향상

- 철저한 브랜드(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추진
  - 상품의 특성을 알리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4대불신(속박이, 원산지 위반, 바가지, 안전성 불안)해소
- 4대 신뢰요소(定量, 定品, 定時, 定價)부응 등 새로운 유통패턴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 농산물보다 신뢰받도록 상품화를 수행하는 거점 APC 건설지원(FTA 기금사업)
  - 소비자 4대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4대 신뢰요소를 실천하는 유통 실현
- 과실계약출하사업 등 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 국내유통은 물론 고가수출 전략을 추진할 핵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 품목 조직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과 유통개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 품목조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실시 및 결과는 향후 지원계획에 반영

## □ 장기목표

- 고품질과실브랜드 유통 사업량 규모를 시장출하량의 20%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수급조절 실시
  - 사업량 : ('04) 145천톤 → ('05) 160 → ('13) 330
  - 사업비 : ('04) 2,660억원 → ('05) 3,010 → ('13) 7,135
  - 사업비중 : ('04) 9% → ('05) 10 → ('13) 20

## □ 사업내용

- 과실수급안정사업을 고품질과실브랜드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변경

○ 정부와 품목대표조직이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품목 대표조직에 지원

- 재원분담비율 : 정부 80%, 품목조직 20%
- 지원조건 : 10년간 무이자
- 사업대상품목 : 사과·배·단감·감귤 등
- 사업주체 : 품목대표조직

○ 사업자는 지원 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계약(약정)을 체결

- 지원절차 : 회원농가에게 출하선도금 지원
  - 출하계약과 동시에 지급
  - 계약물량을 출하하지 않거나 계약농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징수

#### □ 계약물량의 판매 및 상품성 제고

○ 사업자는 농가계약물량에 대하여 수급 및 가격동향, 소비자 구매성향 등을 감안하여 판매처, 판매시기, 판매방법, 판매 물량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

○ 일정기간 저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임대 시설을 이용하여 저장 실시

○ 소비자의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상품개발

- 소포장·기능성 포장 개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선별규격 강화, 자체 고유브랜드 개발 및 홍보

- 회원전용 포장박스 개발 등

## □ 안정적 판로확보 및 홍보강화

- 출하물량의 규모화·규격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 공동선별·공동계산 확대로 및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제고
  - 상품성향상 및 지속적인 거래처 확보로 안정적 판매 추진
    - 백화점, 할인점, 외식업체 등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

## □ 출하조절 추진

- 사업자는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농가와 계약 체결시 출하시기 분산배정
  - 단경기 30%이상 의무출하로 출하조절
  - 관측자료, 시장가격동향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출하시기 조절
  - 사업전산화를 통한 실시간 물동량 관리로 홍수출하 방지
- 과수농가 소득향상과 생산자단체의 출하조절 능력 배양으로 과실수급안정 도모 및 소비자에게는 고품질과실 공급
  - 계약농가에 대해 과실가격 하락시 일정수준의 판매가격 보전
  - 품목조직은 고품질과실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조정 등 자율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고품질과실 브랜드 유통 활성화 사업	○ 과수연합회 등 품목 대표조직 육성 ○ 고품질과실 브랜드 개발 시범사업 추진	○ 품목대표조직의 역할 등에 대한 제도개선 ○ 고품질과실 브랜드 회원제 확대단계	○ 고품질과실 브랜드 정착 및 수출상품화 단계

## 2-3-22. 시설원예 기반구축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시설원예는 유리온실, 자동환경조절장치 등 현대적 시설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원예작물을 년중 생산하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임  
 ⇒ 다른 경종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토지에 자본·기술 투입으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가 가능한 분야임

○ 시설원예 생산액('02)은 농업 총생산액의 10%(3조1,720억원) 수준으로 생산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딸기(5,682억원), 수박(5,225), 오이(5,053), 풋고추(4,517), 참외(4,012), 토마토(2,399)

\* 노지작물 : 고추(9,043), 배추(5,465), 마늘(5,251), 무(3,845)

○ 시설원예 농가는 약 23만호로 전체 농가의 18% 수준

- 전업농 규모인 1,000평이상 농가는 63,788호(시설농가의 27%)

계	<500평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이상
233,998호	134,428	35,762	54,457	7,535	1,796

○ 전체 시설면적은 52천ha로 철골온실이 338ha(0.7%), 비닐 하우스가 51,583ha(99.3%) 수준임

- 비닐하우스 중 환경조절이 가능한 자동화 비닐온실 면적은 8,000ha(15%)

-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채소·화훼는 철골온실, 자동화온실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음

## □ 문제점

-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 지고 있음
  - 고품질 시장인 일본시장은 현대화된 온실에서 생산된 고품질 채소·화훼가 아니면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노지나 일반온실에서 재배된 작물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년중 공급이 곤란하여 경쟁력 약화 초래
  - 국내 시장에서도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관행 온실로는 품질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중국 등은 정부 보조 지원을 통하여 생산단지 조성 활발
  - 화훼생산자들은 생산시설을 중국 등으로 옮기고 있음
  - 우리나라 시설원예 농가들은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나은 온실과 재배기술에 투자해야 하나, 보조지원 없이 투자가 가능한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
  - '00년 정부 보조지원 중단으로 현대화된 신규시설 설치는 정체  
(농업종합자금제에 의한 융자지원, 금리 : 3%)
  - \* 설치비용(1ha) : 유리온실 18억원(60만원/평)  
자동화온실 6억원(20만원/평)
  - 네덜란드에서 일반적으로는 새로 건설된 유리온실의 규모는 2~6ha 수준 이고 이러한 온실이 모여 30~50ha 규모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음
  - \* 채소 온실(3~6ha), 절화온실(2~4ha)
  -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

- 소비자의 주요관심은 생산방법, 온실의 환경적 측면과 생산물의 품질, 맛, 안전성임
  - 이에 비해 생산자의 주요관심은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을 증가시키고 비생산적인(환경친화적, 안전성관련) 장비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 시설원예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국내외적으로 농업 부분의 매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젊고 유능한 후계 농업인 확보에 어려움
  - 상대적으로 고소득과 재배의 자동화가 가능한 시설원예산업 육성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재정적으로 건강한 젊은 후계농업인을 확보를 추진할 필요

<참고 1>

## 외국의 시설원예(생산) 지원 정책

### □ 일본

-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 \* 과채류 등의 가격이 급격할 경우, 가격하락분을 일부를 보전하여 농가경영을 안정(토마토, 오이, 가지 등)

### □ EU

- 농업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를 지원
  -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과 구조의 향상 등에 대한 보조 지원
  - 보조율은 투자액 기준으로 최대 40%(조건불리지역 50%, 후계자 45%)
  - \* 시설원예 신흥강국인 스페인의 경우에는 시설원예분야에 중점 지원

### □ 네덜란드

- “GREEN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저리 용자로 친환경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신규도입을 지원
  - 시중금리(약1%)이하로 장기간 지원(온실은 일반적으로 20년)
- 용자지원과 병행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보조지원

- ◇ 외국의 시설원예정책은 친환경, 에너지절감, 시설현대화, 비용절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음
  -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용자지원과 함께 보조를 통해 해당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
  - 우리나라는 시설생산분야는 농업종합자금에 의한 용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책목표의 실현성이 극히 미흡한 실정



<참고 2>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의 평가

- '91년부터 '99년까지 실시한 시설원에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752ha의 자동화온실 지원
  - 철골온실 291ha, 파이프비닐자동화온실 1,448ha, 공정육묘장 13ha 등
- 사업시행시 사업자의 경영능력, 품목선정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시설이 소규모로 분산 추진되어 생산, 유통, 출하, 컨설팅, 품질관리 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 사업초기에 첨단재배기술의 경험부족, 온실관리능력 부족과 수출 저변확보 부족 등으로 부실경영체가 다수 발생
-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첨단재배기술 및 온실관리능력의 축적과 다각적인 수출전략 등으로 사업성과 제고
  - '03년도 유리온실 등 철골온실 경영체 분석결과 '00년에 비하여 소득은 203%, 수출은 46% 증가
  - '03년도 채소·화훼 등 원예작물의 전체 수출액 2,098억원의 21%인 439억원을 유리온실 등 철골온실에서 수출하고 있어 신선농산물 수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
- 첨단원예시설자재산업, 육묘산업과 저온저장, 운송 등 수확 후 관리기술산업 등 전후방 연관사업 발달 도모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향후전망

- FTA, DDA의 진전에 따라 관세가 낮은 시설채소의 수출 여건은 좋아질 전망
  - 신선채소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시설재배면적이 매년 약 1,000ha 이상 감소, 생산량감소에 따라 수입물량도 크게 증가
    - \* '03년 기준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803천톤이며, '10년에는 1,000천톤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수입국에서 안전성규제를 크게 강화함에 따라 고품질 생산 및 안전성 관리가 수출을 좌우하는 주요사안으로 대두
-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수출 농업육성을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
  -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등 생산기반을 미리 갖추어야 향후 경쟁력 확보가 가능

### □ 추진방향

원예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생산기반구축을 통한 경영비절감·생산성 증대로 경쟁력 및 수출확대 제고

- 기존 원예시설의 에너지절감시스템을 구축등을 통한 경영비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고품질 생산기반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생산, 유통, 수출기반을 패키지화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방식에 의한 첨단시설채소 수출거점단지 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교육과 실천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이 가능한 컨설팅 센터 설립

## 다. 세부추진내용

### 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지원

#### □ 추진목표

- 농가보급형 온실(1-2W형), 철골온실 등 현대화된 온실 위주로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 추진
- 현대화된 온실 면적(약 8,000ha)의 약 10%(800ha) 지원('06년부터)
  - 에너지절감시스템 보급 : ('06)80ha → ('10)520 → ('13)800

#### □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

- 생산자조직은 참여농가수, 매출규모를 충족해야 함
  -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설의 공동설치, 공동이용 등이 필요하므로 매출규모로 지원대상을 제한
  - \* 생산자조직의 참여 농가수 5~14호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5호 이상은 매출액 5억원을 충족하여야 함
- 생산자조직은 작물, 작부체계, 시설구조, 피복재, 난방시스템, 환경조절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 \*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자조직의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지원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현장 지도기관인 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대학교수, 연구소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

- 사업계획 집행을 위한 자금은 생산자 조직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거출한 자조금과 정부의 매칭펀드(50 : 50)로 조성
  - 매출액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므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출하·공동계산을 확대
  - 사업비 : 국고(25%), 지방비(25%), 자부담(50%)

□ 친환경·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사업 메뉴(예시)

- 난방 원료의 효율화 : 경유, 벙커 C유 → 공장폐열, 천연가스
- 보온스크린 재질 개선 : 부직포 → 알루미늄 스크린
- 투과율, 내구년한이 높은 온실 피복재로 개선
- 온실내 균일한 환경조성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온수보일러로 개선
  - 난방 시스템도 튜브 레일 등 배관 방식을 중점 지원
- 온도, 광,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복합 환경조절이 가능한 환경 조절 시스템으로 개선

② 지역클러스터방식에 의한 수출거점단지 육성 지원

□ 사업목표

- 지역농업클러스터 방식으로 지자체, 생산, 유통, 수출업체가 공동참여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전국에 2개소 조성
  - 30~50ha 규모의 첨단시설채소수출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채소 수출의 견인차 역할 담당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시너지효과를 확산하여 인근지역의 기존 수출단지와 시설경영체를 통합·계열화하여 100~200ha규모의 전문수출단지로 발전



## □ 사업시행방법

- 기존단지(수출농가) 확대와 신규단지조성 등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참여 클러스터에서 선택
- 기존단지 확대는 규모화된 기존의 수출단지 및 집단화된 시설원예단지를 중심으로 시설보강 등으로 통한 수출 전문 단지로 조성
  - 신규온실 설치, 기존온실의 현대화 및 개보수, 에너지절감시설 확충, 유통시설 확충 및 보강, 집단에너지시설 확충 등
- 신규단지조성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기반정비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조성토지를 사업참여자에게 분양(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 : 토지확보, 부지조성, 주요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 사업참여자 : 온실, 유통시설 등 설치·운영
  - \* 토지소유자의 지분참여 또는 기업참여 방안도 검토
- 시설운영은 사업참여자들이 조직한 관리조직(법인)에 의하여 운영·관리
  -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시설 유지·보수, 관리조직의 운영 등에 충당

## □ 사업대상지 선정

- 생산자, 유통인, 수출업체 등 관련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조성규모, 토지확보방법, 기반조성, 시설배치계획, 소요사업비 산출 및 확보방안, 사업수지분석, 시설운영방안 등 종합적으로 계획수립
- 대상지 선정은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전문가그룹의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사업시행전에 단지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참여자를 미리 선정하여 사업시행 중 시행착오를 사전에 제거

## □ 사업참여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수출업체, 연구기관 등이 지역 농업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전에 참여 대상자를 선정
  - 온실경영 참여자는 첨단시설원에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서 여신관련 신용평가에 하자가 없어야 함
  - 수출업체는 최근 일정규모의 수출실적이 있고 대외 신인도가 있는 우수업체
  - 산지유통시설 참여자는 경영능력이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업체

## □ 기대효과

- 수출거점단지조성이 완료되는 '12년에는 시설채소(신선) 수출액을 '03년대비 약2배로 확대
  - '14년까지 시설채소 수출을 130백만불('03년 : 66)로 확대
-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개단지 조성시 연 1,050명(직원 50명, 작업인부 1,000명)
-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 도모
- 원예시설자재산업, 육묘산업 등 전후방 연관사업 발달 도모

## □ 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시설채소 수출거점단지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타당성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실시
  - 입지선정기준, 사업규모, 사업시행방법, 사업수지분석, 지원방법, 수출증대방안, 시설물운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③ 시설원예 컨설팅센터 설치 지원

### □ 사업목표

- 전문생산단지, 수출거점단지 등을 중심으로 첨단재배·경영 기술 교육이 가능한 시설원예 컨설팅 센터 3개소 설치 지원
  - 시설원예 주산지에 과채류 2개소, 화훼류 1개소 등 컨설팅센터 3개소 설치를 추진
-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용 온실, 실험·실습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원예 선도농 및 전문생산단지와 함께 향후 구축될 수출거점단지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능 수행
  - 생산분야 뿐만아니라 경영교육도 실시하는 시설원예 종합훈련센터로 운영
- 교육은 현장문제 해결과정, 기본과정, 선진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원예 선도농의 기술, 경영능력 향상(년간 4,000명교육)
  - 단기(2~5일) : 현장문제 해결 중심교육(3,000명/년)
  - 중기(15~30일) : 재배기술·경영 기본과정(900명/년)
  - 장기(1작기이상) : 선진전문인력 후계인력 양성프로그램(300명/년)

## □ 사업시행방법

- '05년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 시·도(도농업기술원), 수출거점단지 등이 컨설팅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컨설팅 및 교육 인력 확보방법, 부지확보, 기존 농업지도와의 연계 방안, 시설배치계획, 소요사업비 산출 및 확보방안, 사업수지분석, 시설운영방안 등 종합적으로 계획수립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도농업기술원, 기반공사, 대학교수, 외국인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활용
  - 도농업기술원, 지방대학 등의 기숙사, 부지 등 기존 시설 활용
    - \* 경남도는 농업기술원에 농업인 실습온실을 설치하여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수출 및 선도농가들에게 실습 교육 실습(외부전문가를 고용하여 교육)
- 입지조건, 수출실적, 수출거점단지 등의 조성계획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전문가그룹의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시행능력과 함께 향후 교육전문인력, 운영비 확보 등 센터 운영 계획을 평가하여 부실화 방지

## □ 사업 규모 및 사업비

- 컨설팅센터, 실험·실습실, 실습용 온실, 기숙사 등 3,000평 규모(1개소당)
  - 시설원예농가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2,000평 이상의 실습용온실 설치
- 사업비 : 150억원(50억원/개소 × 3개소)
  - 지원조건 : 국고(80%), 지방비(20%)
- 컨설팅 설치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되, 운영비용은 시·도에서 부담
  - \* 네덜란드 PTC는 사단법인 형태, 지자체 중심으로 설립, 농업인, 농업관련 기업 대표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스템구축</li> <li>○ 지역농업클러스터방식에 의한 수출거점 육성</li> <li>○ 시설원예전문 컨설팅센터 건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li> <li>○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 ('05~'06)</li> <li>○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스템 보급</li> <li>○ 사업확정 및 세부 계획 수립('06)</li> <li>○ '07예산요구('06)</li> <li>○ 시범사업시행('07~)</li> <li>○ 사업확정 및 세부 계획 수립('06)</li> <li>○ '07예산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사업 지원</li> <li>○ 계속사업 시행</li> <li>○ 과채류 1개소</li> </ul>

## 2-3-23. 인삼계열화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인삼은 4~6년간의 장기재배로 타작물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고 자본회수 기간이 긴 편
  - 인삼 10a당 생산비('03)는 4,275천원으로 예정지관리 및 식재 등 초기(2년)자본투입이 생산비 70% 차지
    - \* 인삼제품은 당해연도 10%, 2년차 60%, 3년차 30% 판매되고 있음
- 농가 자본력 부족으로 포전매매가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통단계가 복잡하는 등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형성
  - 수삼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6단계, 백삼은 8단계로 복잡하여 유통비용 및 마진이 수삼 50%, 백삼 50~70%로 높은 편

#### □ 문제점

- 재배기간이 길고, 차광시설재배로 일반 농작물에 비해 병해충의 서식밀도가 높으며 여름 고온기에 병해충 발생이 많음
  - 4~6년 농사의 실농방지를 위해 예방위주로 농약을 살포
- 생산자단체가 인삼유통을 주도하여 유통구조 개선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나 자본부족 등 경제사업 여건 미흡
  - 지역인삼조합이 홍삼 전매제 폐지 이전까지 담배인삼공사의 전매사업 일선창구 역할로 자립기반 취약
- 현행 출하장려 등 정부지원사업은 단기자금으로 인삼 재배 특성과 부합되지 않아 지원효과 및 지원율 저조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농업협상 이후 고율관세인 인삼은 관세감축에 따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외국산과 경쟁심화가 예상
  -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외국산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인삼의 품질 향상,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경쟁력 제고 필요
- 예방위주의 농약사용에 따른 안전성문제를 해소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인삼을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 인삼재배 적지여부 판단, 토양분석 및 농약사용 기록이행, 농약검사 후 수매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인삼조합이 생산·가공·판매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사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제고

## 다. 세부추진 내용

### □ 사업추진 목표

- 인삼재배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 및 농업소득 증대
- 유통단계 개선 또는 축소를 통한 소비자 이익 증대
- 고품질 우량 원료삼 생산으로 인삼 수출확대

\* '13년까지 전체재배면적의 40%이상, 수매자금 20%이상 담당

### □ 계약재배 사업

- 계약주체 : 인삼농협
- 계약대상 : 4년근이상 인삼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사업신청 : 계약대상자가 인삼경작 신고시에 인삼농협에 사업신청

- 계약체결 : 인삼농협은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확인후 계약
-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원단가 : 평당 8,000원('04기준)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기간 : 6년 일시상환으로 하되, 연근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부터 수확시까지로 함
  - 지원금리 : 무이자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 전까지 재배이력관리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 수매 및 판매사업

- 수매물량 : 계약대상자의 계약물량 전량수매
  - 계약재배물량 수매이전까지는 당해년도 수매사업 계획물량을 수매
  - 조합별 수매물량 배정은 과거수매실적, 재배면적 등을 감안 배정하되 세부계획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수립시행
- 수매단가 : 연근별·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와 협의결정
- 수매조건 : 수매전 계약대상자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회수 및 자금지원 기간동안 시중금리를 부과하여 위약금을 징수하고 수매대상 제외
- 수매기간 : 당해연도 8월~11월까지
- 자금지원 : 농협은 수매 전 조합별 수매계획에 따라 자금지원

- 지원조건 : 6년 일시상환, 금리 연 3%
  - 중앙회는 수매물량의 판매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자금관리
  - 조합은 수매물량의 판매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관리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인삼농협이 수삼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
  -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인삼농협은 당해연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중앙회 보고

□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인삼계열화 사업 평가방법 및 지침을 제정하여 각 조합별로 평가 실시
  - 사업우수조합은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및 계약재배·수매자금 우선 지원
  - 사업부진조합은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조합 등 평가결과 부진조합은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는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7까지)	2단계('08~'09)	3단계('10년 이후)
○ 계열화사업	재배면적20%	30%	40% 수준

## 2-3-24. 버섯 종합배지 생산시스템 구축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03년도 기준 버섯생산량은 145천톤(9,300농가)으로 생산액은 4,810억원으로 농림업의 1.4%차지
- 식문화의 고급화와 국민소득증대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90년도부터 연평균 12.3%씩 증가
- 버섯생산의 3대요소(종균, 배지, 환경)중 배지는 농가경영에 70%를 차지하는 핵심적 요소이나 배지공급시스템이 없음

#### □ 문제점

- 양송이 배지 발효기술 수준이 미약하여 수확량이 낮고 배지 생산공급 시스템이 없어 경영비 가중 등 국내외 경쟁력이 약함  
- 수확량(평당) : 40kg(유럽 110kg)
- 국내 버섯의 약 80%가 느타리 균상재배로 재배사 이용율(연 2.5회)이 낮음 → 배지 별도 공급시 연10회 이상 이용가능
- 버섯 배지자원(볏짚)이 부족하고 대체배지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반면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경영이 어려움
- 병버섯 자동화 시설을 갖춘 대규모 소수 농가에 비해 경영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대다수 농가의 소득보전 대책이 없음

## 나. 앞으로의 추진 방향

### □ 금후전망

- 버섯생산과 소비는 고급건강식품의 이미지 상승, 웰빙 등 식문화 고급화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버섯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와 소규모 대다수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공동경영 등 비용절감(Cost down)대책이 요구됨

### □ 추진방향

- 버섯종합 배지생산 시스템 구축(각도별 1~2개소)
  - 광역 道단위 연합사업추진으로 투자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배지생산 공급시스템(공동공장)과 버섯재배(농가) 이원화 체계구축으로 기능전문화 유도 및 고품질 안전버섯 지속생산
  - 공동배지 생산 공급으로 재배노력절감 및 소규모 농가 경영합리화 도모
  - 품목의 다양화 유도로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버섯재배사 이용율 제고
- 버섯배지생산자, 재배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량버섯 배지공급위원회』 구성운영
  - 소비자의 요구(Needs)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능성 품목의 우량버섯생산 공급
  - 우량 배지공급, 생산기술, 농가경영 컨설팅 등 사후관리지도
  - 버섯의 안정성, 우수기능성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소비촉진
- 버섯배지생산분양센터 설치계획은 많은 시설투자비가 소요되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투자후 직접경영 또는 전문경영인(생산자단체) 공모위탁경영 방식채택
  - 위탁경영의 경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지도 전문기관 및 지역 버섯농업인에 대한 기술을 전수시키는 기회도 병행
  - 위탁경영체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해 공모하고, 지역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선정, 경영계약 체결

## <기대효과>

- 버섯재배기간단축(60일→20일) 및 재배사 이용율 향상
  - 재배사 이용율 : 연 느타리 1.7회 → 3회, 새송이 6회 → 10회
- 양질배지저가공급가능(현 농가구입가격 300원→250원 인하)
- 버섯배지 재배과정에서의 실패율 해소(현30% → 0%)

## 다. 세부 추진 내용

### □ 사업시행개요 및 지원범위

- 사업주관 : 광역시·도(사업시행 : 시장·군수)
  - 사업운영 : 지방자치단체 직접운영 또는 위탁경영
- 사업대상 : 시·도 광역단위 사업공모(10개 지역)
- 총사업비 : 10개소 200억원(개소당 20억원)
  - 기반조성 : 6,000평×50,000원=3억원
  - 배지센터 : 800평(30,000병/일)규모1식=8억원
  - 부속시설 및 톱밥야적장 등 : 300평=3억원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1억원
  - 시설설비(기계장치), 실험실, 운반차량, PP병 등=5억원
- 사업기간 : '05~'13('05년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타당성 검토)
  - '06)1개소→'07)1→'08)1→'09)2→'10)2→'11)1→'12)1→'13)1
- 지원조건 : 국고보조70%, 지방비30%

### □ 사업공모 및 선정방법

#### <사업공개모집>

- 공모기간 : '05. 4~'05. 6. 30.(3개월)
- 응모자격 : 시장·도지사(시·군, 생산자단체)가 지역특성과 규모에 맞는 사업을 선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응모 → 농림부



○ 사업요건

- 지역 Cluster 연계가 가능하며 자발적 참여가 우수한 지역
- 버섯산업의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화지역
- 경영 및 마케팅과 관련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된 지역

○ 지역순회 사업공모 홍보 설명회 개최('05. 3.)

<사업대상지역 선정방법>

○ 절차 차 : 시·도에서 1차 선발, 농림부 2차 최종선발

- 농림부 심의 : 사업우선순위선정, 연차별 사업대상 지역배정

○ 심사위원 : 중앙 선정심의위원구성(10명 내외)

- 시·도, 농어촌특별대책위원 및 농정심의회 가동
- 위원은 버섯분야 지원프로그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정책전문가 포함 운영

○ 사업선정기준 우선순위

- 타당성 용역완료,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등 사전준비가 완비되어 조기착공이 가능한 지역
- 기존 사업과 연계가 좋고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특화가 가능하고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가 되는 지역
- \* 위탁경영체 선정시는 다수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전문성이 있는 우수 경영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관리철저

□ 지원방법 및 재정관리

○ 선발된 사업지역(생산자단체)과 행정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

○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자격 있는 시공업자를 투명하게 선정하여 사업시행
-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시설물 등록 및 소유권등기>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 건축물관리대장등록 및 소유권등기
- 시·도(시·군)에서는 지원시설의 건축물과 장비, 기계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 <사후관리기간 및 처분제한>

- 지원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준공 후 10년, 주요장비 및 기계류 구입후 7년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전용, 양도, 교환, 임대,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간 내 처분제한
- 지원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양도, 교환, 임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장관 승인
- 입지 및 운영여건의 불가피한 변화에 따른 지원시설물의 이전은 당해 시장·도지사가 적격여부 검토 후 승인

### <시설물 관리 및 운영활성화 현장 지도·점검>

- 사업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
  - 재산관리 및 운영장부 비치, 사업경영실적기록 및 분석평가, 시설관리 및 경영교육참가

- 시장·도지사는 지원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 지원시설에 대해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별 지도·점검계획 및 운영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 시장·도지사는 상·하반기 2회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경영실태조사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 □ 생산배지공급 및 사후관리

- 종자산업법의 규정준수하고 검증된 무병 우량배지생산·공급
- 배지생산공급자는 행정·지도·농협, 농가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우량버섯배지공급위원회』를 구성운영
  - 품질평가 및 적정공급 가격결정, 생산기술 사후관리 및 컨설팅
  - 배지공급은 지역의 기존 재배농가를 우선하여 결정
  - 배지공급 후 이품종 등 하자발생시 공급자의 보상수준 등 결정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버섯종합 배지 생산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계획수립 (10개소)</li> <li>○ 사업선정('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경제성 평가 및 설계</li> <li>- 행정기관: 재정지원 프로그램 작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추진 ('06~'08: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1개소</li> <li>- 시범사업평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업추진 (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2개소</li> <li>- '10:2개소</li> <li>- '11:1개소</li> <li>- '12:1개소</li> <li>- '13:1개소</li> </ul> </li> <li>○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li> </ul>

## 2-3-25. 녹차 신품종 증식 묘포장 설치·운영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03년 기준 녹차재배는 2.1천ha(3,201농가)로서 지역특화산업, 웰빙, 농촌관광 등과 연계되어 매년 증가추세임
  - '95)667ha → ('00)1,505 → ('03)2,088(313%증가)
- 대부분 다원이 교잡된 재래종(실생묘)임
  - 재래종면적 : 1,691ha(81%), 신품종 면적 : 397ha(19)
- 신품종(삼목) 차나무 묘목은 고가로 다원 조성비 과다
  - 신품종 묘목비 : 1ha 24백만원(30,000본×800원)

#### □ 문제점

- 현재 재배되는 재래종(실생묘) 차나무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차 제품의 다양화와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생엽생산량(10a) : 503kg(일본 881kg)
- 신품종(삼목)으로 갱신코자 하나 대량생산 묘목 증식포가 없음
- 양묘를 위해서는 많은 면적의 묘포장이 필요하고, 양묘기간이 2~3년 장기간 소요됨(묘포 1ha→본포 10ha 식재)

### 나. 앞으로의 추진 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녹차수요는 국민건강증진 욕구와 웰빙산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농촌관광과 연계되어 지역특화산업(지역브랜드)으로 발전
- DDA, FTA 등 대응 하는 녹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품종(삼목) 갱신을 위한 우량묘목 증식포 설치·운영으로 안정적 지속생산기반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

## □ 추진방향

- 신품종 모수의 과학적 대량생산을 위한 증식묘포시설 설치
  - 철골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 차나무 신품종의 연중 삼목 체계 구축
- 기후적인 제약 해소를 통한 급속 증식과 지역적응이 좋은 지역에 증식 묘포장 설치 · 운영
  - 전남 목포·보성, 경남 하동, 제주도 지역
- 사업대상기관은 녹차분야 연구생산능력이 우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제한
- 생산묘목 공급 및 사후관리는 종자산업법에 의거 실행
  - 적법하게 유통되는 신품종 삼목 공급을 지원하여 우량 녹차묘목유통 체계 확립
  - 건전묘 재식을 통한 GAP 등 고품질 녹차생산체계 조기정착
- 생산성 저위 다원을 고품질 생산다원으로 개편을 유도하여 고품질 지속 생산기반구축
- 묘목생산자는 행정 · 지도 · 농협, 농가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우량묘목공급위원회』를 구성운영
  - 품질평가 및 적정공급 가격결정, 묘목공급 후 책임관리
  - 묘목공급은 기존 저위다원의 갱신용으로 최우선 공급하고 신규다원조성 및 면적확대농가 공급은 지양

## <기대효과>

- 우량삼목묘 저가공급
  - 現 7~800원 → 3~400, ha당 12백만원절감
- 우량품종 증식 가속화 및 다원갱신 조기달성
  - 1기(3년) 40ha갱신×4개소→160ha

## 다. 세부 추진 내용

### □ 사업시행개요 및 지원범위

- 사업시행 및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육종기관
  - 목포시험장, 전남 보성차시험장, 경남 · 제주도농업기술원
- 사업대상 : 4개소(전남 보성 · 목포, 경남 하동, 제주)
- 총사업비 : 4개소 20억원 / 개소당1ha, 5억원
  - 묘포장설치 3,000평×10만원=3억원
  - 관리 및 운영비 등=2억원
- 사업기간 : '05~'07('05년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타당성 검토)
  - ('06) 2개소, ('07) 2개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수립기간 : '05. 3~'05. 5. 30(3개월)
- 수립기관 : 국립 목포시험장,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 지역특성과 규모에 맞는 우량녹차 삼목생산 · 보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응모
- 사업계획 수립요건
  - 지역녹차산업 Cluster와 연계하고 연도별 우량삼목 대량생산 증식 · 보급 · 운영계획
  - 증식 묘포장 부지확보여부
  - 현재 연구운영인력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활용계획
  - 녹차산업의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화지역육성계획
-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지역별 전문가 세미나 개최
  - 녹차산업 전문가(재배생산기술, 육종, 가공 등), 농업인, 생산자단체 참여 폭넓은 의견수렴 시행계획 반영

## □ 사업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방법

### <사업대상기관 심의선정>

- 농림부 종합심의 : 사업우선순위선정, 연도별 사업대상배정
- 심사위원 : 중앙 선정심의위원구성(10명 내외)
  - 농·축산분야 지원프로그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정책 전문가로 구성운영
- 사업선정기준 우선순위
  - 타당성 연구완료,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연구운영인력 등 사전준비가 완비되어 조기사업시행이 가능한 기관
  - 연도별 묘목생산 및 보급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기관
  - 다수의 농업인이 신·품종갱신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지역

### <지원방법 및 재정관리>

- 선발된 사업지역(기관)과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
- 중·장기재정계획 반영
  -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 묘목 증식시설 관리

- 사업자는 지원시설물 및 장비 등 물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
- 지원시설물의 사후관리기간은 준공후 10년, 주요장비 및 기계류 구입 후 7년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전용, 양도, 교환, 임대,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간 내 처분제한
  - 입지 및 운영여건 등 불가피한 변화에 따라 지원시설물을 이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장관 승인

## □ 묘목증식 시설운영

- 사업자는 묘목증식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
  - 재산관리대장 비치, 사업경영실적기록 및 분석평가, 시설관리 및 기술 경영교육참가
- 도지사(농촌진흥청장)는 지원시설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지원시설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계획 및 운영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별 현장지도·점검 실시
- 도지사(농촌진흥청장)는 상·하반기 2회 지원시설에 대한 경영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경영실태조사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 □ 생산묘목공급 및 사후관리

- 종자산업법 규정준수하고 검증된 무병 우량묘목을 생산하여 품질보증실시
- 묘목생산자는 행정·지도·농협, 농가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우량묘목공급위원회』를 구성운영
  - 품질평가 및 적정공급 가격 및 연차별 농가공급 우선순위 결정
  - 묘목공급 후 이품종, 잠복병해충 등 하자발생시 공급자의 보상수준 등 결정
- 묘목공급은 기존 저위다원의 갱신용으로 최우선 공급하고 신규 다원조성 및 면적확대농가 공급은 지양
- 농가공급 묘목은 병충해가 없는 우량묘목 이어야 하며, 공급자는 수확기까지 사후관리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녹차 신제품 증식 묘포장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계획수립 (4개소)</li> <li>○ 사업선정('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설치 설계, 운영·공급 계획수립</li> <li>- 행정기관:재정 지원프로그램 작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06~'07: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2개소설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업추진('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묘목공급</li> <li>○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li> </ul> </li> </ul>

## 2-3-26. 송아지생산기지조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초지 등 조사료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 생산·공급으로 한우번식기반 확보를 위해 '02년부터 추진
  - 지원대상 : 초지 등 조사료 10ha이상 확보한 한우사육농가
  - 지원내용 : 축사, 기반시설, 초지조성, 보완 및 비배관리 등 지원(기금보조20%, 기금융자40%, 지방비30%, 자부담10%)
  - 추진실적 : ('02)21개소/54억원 → ('03)22/76
- 지역단위 한우사업 추진체와 연계, 일정수준 송아지를 지속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DDA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역에 송아지 집중 생산기지 조성 필요
  - DDA 차기협상 결과에 따라 농가 불안심리로 암소도축 등 번식기반 축소 우려
  - 초지 등 번식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우량송아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최근 소 사육두수 증가세 등을 감안하여 '06년에 사업 중단

#### 다. 세부 추진내용

- 초지 등 번식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 송아지생산기지로 집중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송아지생산기반 구축
- 한우산업의 규모화, 조직화에 따라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연계하여 지역단위 한우산업발전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시 한우브랜드경영체와의 연계여부 비중 확대
- 최근 사육두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06년에 사업 중단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한우브랜드경영체 연계	-대상자 평가기준에 추진체 연계여부 비중 확대	-사육두수 증가추세를 감안 '06년도 사업 중단	

## 2-3-27. 가 축 계 열 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급 과부족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발생시 시장가격 급락으로 안정적인 경영영위 불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 FTA체결 등에 따른 관세장벽 완화로 수입이 늘어날 전망
-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생산·가공·유통 일관경영에 대한 지속 지원 및 기타 축종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일원화시켜 수급 변동에 대한 손익부담 최소화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육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한 계열화업체 시설·운영자금 지원
- 양돈·오리는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현재 참여율이 70%로 높은 양계는 시설 개·보수 위주로 지원
- 계열화업체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육성 및 활성화 도모
-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확립을 통한 품질균일화 및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
- 계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표준계약서, 표준모델 설정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추진전략	· 계열화참여율 확대: 돼지 16%, 닭 70%, 오리 30%	· 계열화참여율 확대: 돼지 20%, 닭 75%, 오리 50%	· 계열화참여율 확대: 돼지 30%, 닭 80%, 오리 50%

## 2-3-28. 경주마생산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산경주마 사육기반확대 조성으로 경주마 자급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93년부터 시작

○ 지원대상 : 공동육성조련시설(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제주마 DNA 분석사업(제주축산진흥원)

\* 지원기준 : 공동육성조련시설 : 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20%, 자담 30%

□ 그동안 경주마생산사업 지원결과 연간 자급률 목표 75% 달성

○ 자급추이 : ('93) 8.6% → ('00) 61% → ('01) 71.5 → ('02) 75

□ 자급률 확보에도 불구하고 경주능력은 목표에 크게 미흡

○ 1,200m : ('04) 1:16.5 → ('07) 1:16.2 → ('10) 1:15.3

○ 2,000m : ('04) 2:11.5 → ('07) 2:10.6 → ('10) 2:09.1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국내산마 경주질 개선을 위한 농가지원 강화로 경주마 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농가에 대한 우수 씨암말 확보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경주마로 농가소득 증대 유도

○ DDA 등 경마여건변화에 대응 안정적인 경주마 수급 및 소득 안정 장치 구축

## 다. 세부추진내용

- 국내 번식자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생산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전능력 우수씨암말 도입 추진
  - 일정한 수준이상의 씨암말 도입자금지원 및 능력부진 씨암말 도태 추진
- 생산된 자마의 최적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육성기반시설 확충지원
  - 경주마 능력향상을 위한 조련시설 확보 지원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①우수씨암말 도입	3,000만원 수준 도입	4,000만원 수준 도입	5,000만원 수준 도입
②육성기반 시설확충	전체농가의 30% 확충	전체농가중 60% 확충	전체농가 확충

## 2-3-29. 양봉산업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양봉 사육군수는 '03.12월 현재 1,872천군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증가
  - '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98년부터는 년평균 14.6% 증가
- 사육군수 증가로 벌꿀 생산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03년도 생산량은 31천톤, 생산액은 2,307억원으로 추정
- 종전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던 벌꿀의 소비는 정체된 반면, 식품원료(감미료), 강장제·제약 첨가제 등의 수요가 증가
  -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 벌꿀 이외의 양봉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

#### □ 문제점

- 밀원부족으로 벌꿀 생산의 70~80%를 아까시나무 꿀에 의존하고 있어 아까시나무 개화장애 발생시 심각한 양봉농가 피해 초래
  - '04년도 전체 꿀 생산량은 아까시나무 개화장애로 '03년의 30~40% (11천톤)수준임
  - 최근에는 아까시나무의 황화현상 및 아까시잎 흑파리 발생으로 아까시아 대체 밀원 발굴 시급
- 꿀벌의 열성잡종화로 봉군당 꿀 생산량이 양봉선진국과 비교하여 50%으로 수준으로 생산성이 크게 낮음
  - 잡종화로 인해 수밀력·산란력 저하 및 내병성 약화

< 국가별 1군당 벌꿀 생산량 >

(단위 : kg/1군)

구 분	한 국	일 본	중 국	미 국	캐나다	호 주
생산량	18.3	23.3	37.1	38.3	61.5	65.0
(지수)	(100)	(127)	(203)	(209)	(336)	(355)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앞으로의 전망

- 향후 WTO/DDA 및 FTA 협상시 TRQ 관리 폐지 및 관세율 인하 등 대외환경 변화시 저가의 벌꿀 수입량 증가로 수급불균형 및 양봉농가의 경영 타격 예상
  - 그 동안 TRQ 품목으로 수입물량을 제한해옴에 따라 대외 가격 경쟁력이 다른 축산물에 비해 낮은 상태임

□ 추진방향

- 체계적인 밀원식물 식재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추진
- 잡종화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 국내 꿀벌 품종의 개량을 통해 생산성 향상

다. 세부 추진내용

□ 초본 밀원식물 식재 및 관리방안 강구

- 자연상태의 밀원에 의존한 양봉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채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휴경지, 둔치 등에 지역 특성에 맞는 밀원식물을 파종·관리
- 밀원 조성에 대한 교육과 기술보급을 통한 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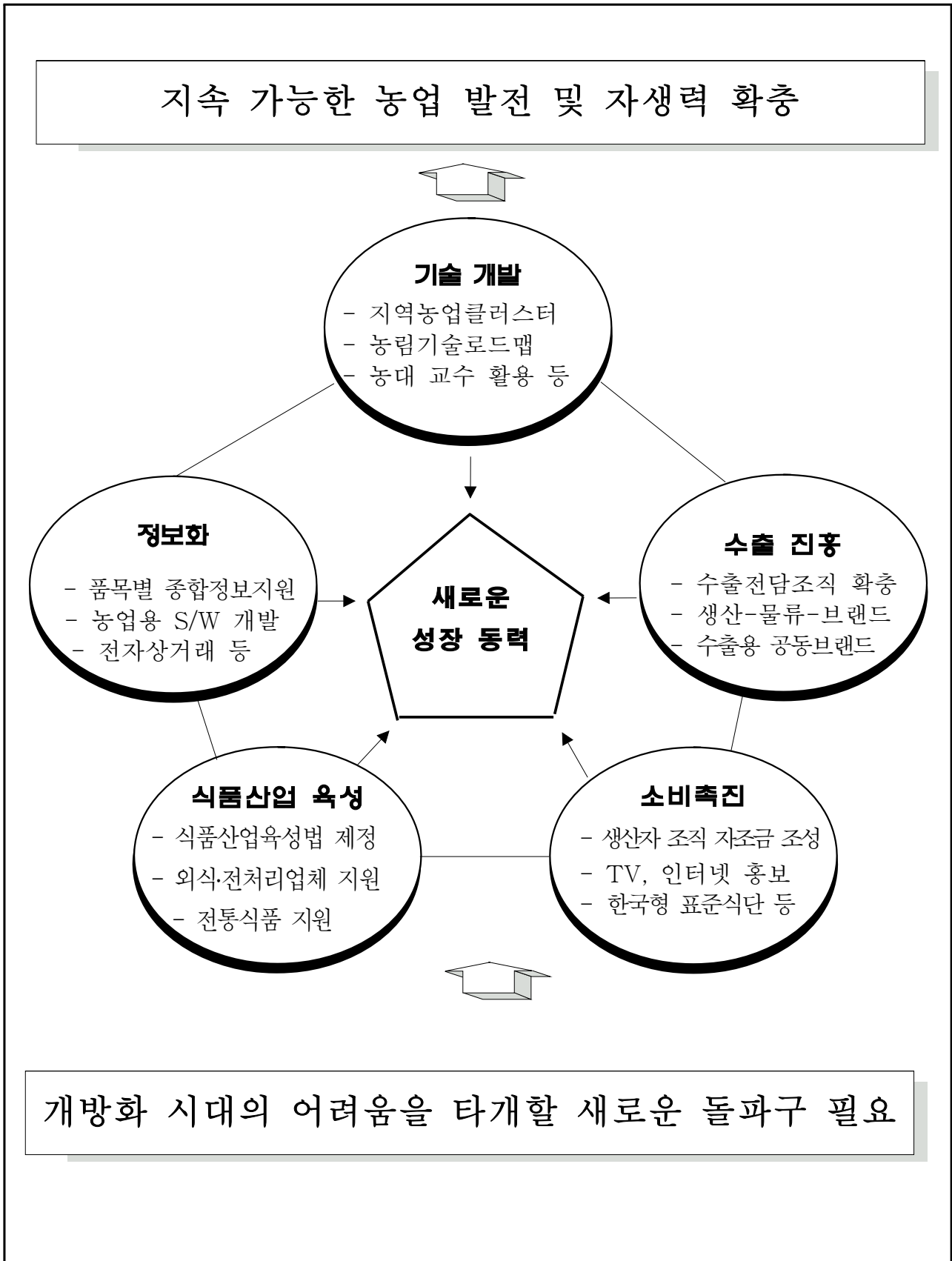
□ 꿀벌 품종개량 및 농가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 우수꿀벌에 대한 형질평가를 거쳐 우수계통 선발
- 선발품종의 대량생산기술 및 꿀벌의 신품종육성 연구·개발
- 선발품종의 지역적응시험 및 농가보급체계 수립

라. 추진일정

구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밀원조성사업	○ 밀원조성계획 수립	○초본 밀원식물파종·관리	○밀원 조성에 대한 교육, 기술보급
○ 꿀벌품종개량	○ 국내 꿀벌의 품종 및 생산성 조사	○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품종별 형질평가 및 우수계통 선별 - 꿀벌계통의 순계보존 기술개발 ○ 신품종 육성	○ 우수 꿀벌 품종 농가 보급

### 3.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 3-1. 농업혁신을 주도할 기술개발 촉진

- ◇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농업 혁신체계 마련
- ◇ 농림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R&D투자방향과 실행전략 수립
- ◇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 보급기능을 대폭 확충

- 지자체 및 지방대학·산업체·연구기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인력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
  - 지역특화작목개발, 교육·기술 컨설팅, 신기술 창업 지원, 지역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 수행
  -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대한 R&D 예산 등 재정적 지원 확대
- 현재 기술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농림 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핵심 기술분야를 중점 선정
  - 농림기술로드맵을 기초로 기술개발 실행전략을 수립, 농림 기술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
  - 생명공학, 수출지원, 농가소득제고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R&D투자를 확대하되, 생산성 제고 분야는 대폭 축소

- 수확후관리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과 생명공학을 활용한 실용화·산업화 기술에 중점
  - 친환경농업, 안전성 확보, 수확후(post-harvest)관리기술 품질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중점
    - 미생물 농약 및 천적을 활용한 방제기술, 축분자원화 기술 등
  - 전통농업에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용화·산업화 기술개발에도 역점
    - 가축질병예방 백신개발, 형질전환 동식물개발, GMO작물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술개발 등
  - 건강·기능성 식품에 적합한 농산물 발굴 및 가공기술, 전통 식품의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추진
-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보급 기능을 대폭 확충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애로기술 조사(연1회 이상)를 실시하고, 관련 기술을 일선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보급
  - 농가에 대한 특화기술보급은 『농촌진흥청 → 도기술원 → 시군센터 → 농업인』 체제에 전문가인 농과대학교수의 참여를 활성화
  -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술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림기술사이버시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술거래 촉진

### 3-1-1. 농림기술개발사업

#### 가. 현황 및 보완과제

##### □ 현황

- '94년부터 영농현장의 애로기술해결을 위해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계('94-'03)	'94~'02 실적	'03
3,910억원	3,489	421

- '94~'03년까지 3,005과제선정 지원

- 첨단기술 : 1,209과제, 현장애로기술 : 1,669, 벤처형기술 : 127

##### 《주요 산업화 과제》

- 감귤껍질에서 심혈관질환 예방·치료제 개발(생명공학연→바이오맥스)
- 도축혈액을 이용한 철분강화 유제품개발(한식연→오리엔탈제약)
-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완전처리시스템개발(건국대→새물바이오텍)
- 이온수 세척으로 밥맛 좋고 변질 없는 씻어나온쌀 개발(한식연→라이스텍)

##### < 주요 추진성과 >

- '95~'03까지 연구완료된 2,223과제 실용화·산업화 추진
  - 산업체·농가이전 : 423(19%), 이전추진 : 802(36), 교육지도 등 998(45)
  - \* 특허출원 1,851건, 특허등록 476건, 논문발표 4,939건, 학술지게재 7,320건
  - \* 국내 농업관련 연구개발 구축에 크게 기여(실험기자재 확충, 연구인력 양성 등)
- 국과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4년연속('00~'03) A등급 평가

##### □ 보완과제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미흡
- 신제품육성 등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집중 투자가 미흡 ('00년 국과위 조사·분석 평가결과)

## 나. 세부추진내용

### □ 농림기술로드맵을 작성, 내실 있게 추진

- 농림분야 기술 및 시장환경분석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도출 및 투자우선순위(APH) 설정
- 미래유망기술 중 핵심기술을 도출, 기술로드맵 작성, 기술개발 추진

### □ 농림기술개발정책을 농업인 등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체제로 전환하여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 농가소득향상 및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기술위주로 기술개발정책을 추진하되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자원 배분 - 기술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중점
- BT 등 신기술과 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에 접목, 고부가 신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수량을 높여나가는 기술분야는 투자 축소
-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도가 높고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는 지원대상에 포함

### □ 농림기술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한 성과분석과 환류기능(Feedback)을 강화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

- 농림기술개발 전주기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성과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중심의 기술혁신체제 구축

### □ 산·학·연 연구협력 지원체제 강화

- 농촌진흥청·산림청 등과 연구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지방대학·산업체·연구기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지원

## □ 기술개발 성과 활용 촉진지원 강화

### ① 기술이전·산업화 역량 강화

- 일선 농촌지도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된 기술의 농가보급 및 산업체 이전 촉진
- 농업인, 기업체 등 기술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를 알선
- 지방농과계대학, 농업관련 민간연구소 등과 협력, 『지역기술 이전종합연계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강화

### ②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 강화

- 농림기술 사이버시장(기술복덕방)운영 활성화
  - 기술이전 계약실적 및 현장 활용실적 조사 분석(매년 12월)
  - 한국기술거래소 및 민간기술거래 기업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농림기술 연구성과 홍보 추진
- 개발된 기술의 성과 홍보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농림과학기술 박람회 개최 추진('04년부터 격년제로 개최)

## 다.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림기술개발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현장중심의 기술개발 보급	○ 농림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사업추진체계 개선, 유망 기술예측 및 기술개발 추진  - 기술개발 보급체계 개선 등	○ 중점연구개발방향 설정 및 연구개발 집중 BT, 신제품, 친환경농업 등 - 기술수요자 중심 투자 확대  -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 농업 클러스터 육성	○ BT 등 첨단과학기술 위주 중점개발로 고부가 농림업 실현 - 지역농업 클러스터 중점 육성  - 개발된 기술의 보급체계 확립

## 3-1-2. 농업과학기술 개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DDA 협상과 국가간 FTA의 확대 등 세계적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임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와 식품의 안전성,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로 농산물의 생산방식 및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BT·IT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의 지식·기술 혁명이 가속화 되는 추세임
- 전원·휴식 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 □ 문제점

- DDA 농업협상, FTA 체결 등 시장개방 대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
-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술개발 미흡
-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품목 상품화 및 수확후 관리 기술 개발 요구 증대 필요
- 농림 R&D예산은 농림예산의 2.7% 수준에 불과하여 획기적인 투자확대가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개방화·국제화의 가속화로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
- 세계 각국이 농산물 품질과 환경보전정책을 중시하고 국제 환경협약 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국제경쟁력을 좌우
- 전통농업에 IT, BT, 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식주도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 추진방향

-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강화
-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신기능성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을 개발
- 신 성장동력과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수출전략 품목 및 적용기술을 집중 개발
- 가공, 저장, 유통 등 수확 후 관리 및 상품성 향상기술을 중점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 농가소득에 직결되고 영농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화 연구를 강화

## 다. 세부추진내용

### □ 고품질 쌀 및 밭작물 생산기술 개발

- 주곡인 쌀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기능성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 밥맛이 좋고 안전성 및 영양가가 높은 친환경 고급쌀 생산기술 등
- 고품질 안전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로 경쟁력 제고
  - 품종 혼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및 완전미율을 향상
- 밭작물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등 재배법을 개선하고 기능성 신소재 자원개발 및 이용연구를 강화

### □ 고품질 원예·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 고품질 품종과 안전생산기술 개발로 외국산과 품질을 차별화
  - 대체작목 및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과 적용기술을 중점 개발
  - 마늘 우량종구, 수출화훼류 등 고품질 품종을 집중 육성
- 저장, 가공, 유통 등 수확후 고품질 유지관리 기술 개발
- 난방비 등 에너지절감 기술, 시설구조 개선 및 복합환경기술 등 안전생력재배 기술 확립
- 축산물은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사양기술 개발 및 체계화
- 외국 축산물과의 품질차별화를 위한 판별기술 개발 및 유통규격 확립

### □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

- 농경지 등 농업환경 모니터링으로 오염물질의 동태분석과 지속적 지력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 작물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미생물 농약 및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확립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축산분뇨 및 농산 부산물 자원화기술 개발

- 유기농업 정착을 위한 농자재, 농법, 기준설정 등 주변기술 체계화

#### □ 물관리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연구 강화

- 물 관리, 토양 비파괴 지하수 측정, 생물학적 수질개선 등 물 절약 및 농용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을 중점 개발

- 농경지에서의 온실가스(CO<sub>2</sub>) 저감, 농경지의 메탄·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연구를 강화

####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역연구기반 조성

- 첨단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업생산의 자동화·로봇화 기술개발

-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 후 처리 및 비파괴 판정기술 개발

- 저투입 정밀농업 및 생 에너지 기술개발로 친환경농업 실천

- 지방의 자체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통한 지역특화기술 촉진을 위해 연구기반 시설 및 장비를 지원

#### □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보존·활용

-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소득화·산업화 기술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및 농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연구 강화

- 농산물의 기능성·가공식품 개발

#### □ 국내·외 연구 및 산·학·연 협력 강화

- 선진국과의 전략적 공동연구를 통하여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

- 실용화 기술개발과 현장애로기술 조기해결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쌀 고품질 안전 다수성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기능성 품종 육성</li> <li>- 완전미율 향상을 위한 재배법 개선</li> <li>- 품종혼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식미관련 유전자 탐색 및 효율적 미질 특성 검정기술 개발</li> <li>- 고품질쌀 생산기술 및 수확후 관리기술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우량식미 관련 유전자 집적 및 재조합</li> <li>- 고품질쌀 생산종합기술 체계 확립 : 지역별 품종, 재배, 수확후 관리기술 종합 투입</li> </ul>
○ 발작물 기능성과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 신소재 자원 개발 및 이용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재해 및 병해 저항성의 효율적 선발 기술 확립</li> <li>- 특수용도, 유용형질 중간모본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투입 고효율 재배기술 모델 개발</li> </ul>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품종 육성</li> <li>-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li> <li>- FTA 후속대책 추진 (포도, 마늘, 화훼 등)</li> <li>- 전처리 및 훈증기술</li> <li>- 수확후 생리장해 방지 기술</li> <li>- 에너지절감 시스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품종 육성</li> <li>- 병해복합저항성</li> <li>- 수출규격품 생산기술 개발</li> <li>- 예냉, 저온유통</li> <li>- 비파괴 품질관정 기계화</li> <li>- 복합 제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품종육성</li> <li>- 형질전환 우량품종</li> <li>- 저투입,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li> <li>- 원예작물 수확기계 기술</li> <li>- CA, MA</li> <li>- 생체계측 제어</li> </ul>
○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양질 조사료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li> <li>- 안전성 평가기준 설정</li> <li>- 국가단위 우량종축 선발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맛인증중점관리기준 설정</li> <li>- HACCP 확립, 안전성 확보</li> <li>- 국가단위 개량체제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고품질 축산물 생산</li> <li>- 소비단계 HACCP</li> <li>- 국제단위 평가참여</li> </ul>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친환경농업기술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사료작물 품종 육성</li> <li>- 토양 및 수질보존을 위한 기초기반연구 추진</li> <li>-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li> <li>- 유기농업의 기술체계화</li> <li>- 유기성 자원의 선별 체계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료 유통체계 구축 및 유기조사료 생산</li> <li>- 한국형 유기농업 및 유기축산 모델 작성</li> <li>- 친환경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도입 및 시행</li> <li>- 유기성 자원의 활용 기준 설정</li> <li>-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생산성 예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조사료 생산예측 및 최적경영모델 설정</li> <li>-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유통체계 개선</li> <li>- 유기성 자원의 순환 및 관리체계 확립</li> </ul>
○ 물관리 및 농용 수질개선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내 양수분 분포 양상 파악</li> <li>- 토양수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li> <li>- 농업용수 수질 모니터링</li> <li>- 단일화된 수질기준안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재배지 작물별 토성별 물수모량 산정</li> <li>- 농업용 지하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탐사기술 개발</li> <li>- 농경지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 산정</li> <li>- 작물별 권역별 지하수 활용 수자원량 산정</li> <li>- 농업용수 오염특성 구명</li> <li>- 오염원 발생저감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 특성에 따른 토양내 물의 이동 특성 해석</li> <li>- 농업 수자원 산정을 위한 모델 개발</li> <li>-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유역관리기술 개발</li> </ul>
○ 농업기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산물 생산작업의 부분기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 기계화시스템</li> <li>- 내외부 품질평가 기계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화·로봇화, 농산물 공장시스템, 물관리 자동화</li> </ul>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지역연구기반조성	-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한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 국제경쟁력 및 수출 농업강화를 위한 지방 농업연구 필수 연구 시설 및 장비지원	- 첨단 생명 공학연구 필수 연구시설·장비 지원
○ 공익적 평가 및 농촌어메니티자원 개발	- 주관적 평가 및 전통 지식, 기술 조사발굴  - 실태조사 및 보조도구 개발  - 농산식품 일반 및 미량 성분 분석  - 생산-소비연계 실태 분석	- 가치평가 계량화 및 어메니티자원 산업화  - 지표 및 환경평가 기술 개발  - 기능성 및 전통식품 고급화  - 소비패턴변화 및 D/B화	- 공익기능자원화 및 어메니티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정책자료 및 건강관리 시스템  - 기능성함유 실용화 및 안전농산물 소비지침 구축  - 예측 프로그램 및 전략 도출
○ 농업기술공동연구	- 지역농업활성화 연구 - 첨단기초기술연구	- 첨단기초기술과 농업 과의 접목연구 - 현장애로해결 연구 - WTO/DDA대응 기술 개발	-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 부가가치 생명산업육성 - WTO/DDA대응 기술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 국제협력사업 확대	- 유전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확대	- 선진국 농업연구기관 과의 협력 추진	- 북방권 국가와의 협력 강화

### 3-1-3. 농업생명공학 연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업 BT 산업은 지대한 잠재력으로 21세기 신산업으로 부상
- 선진국에서는 유용물질생산 등 고부가 신성장분야에 집중 투자
  - \* 미국 322조원('04), 일본 5조원('04), 한국 6,400억원('04)
- GM작물 상품화 가속 및 재배면적 급속히 증가

##### □ 문제점

- 관련 예산확보 미흡 → 바이오그린21사업 목표 달성 차질 우려
  - \* 지금까지 투입 : 4년간('01~'04) 목표 총 2,363억의 49%
- 농업 현안문제 해결 및 산업화 전환 종합 전략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생명공학 산업 비중이 의약 분야에서 농업식량분야로 이동
  - 농업/식량 관련산업 비중 : ('00) 10% → ('05) 27
- GM농산물 시장의 급속한 성장
  - 벼, 밀 등 17작물 76종 상품화('03년 현재 OECD보고)

##### □ 추진방향

- 농촌진흥청 자체 기본연구사업과 산·학·연 공동 바이오그린 21사업의 2개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진행
  - 농촌진흥청 인프라 + 대학 아이디어 + 산업체 경영마인드
  - \* 역할분담 : 농촌진흥청(재원확보 및 총괄), 대학교(특성화), 연구소(실용화 촉진), 벤처 등 산업체(산업화)

- 농업생명공학육성 방향의 수정·보완
  - 목표 예산 확보에 총력 및 우선순위 등 대체전략 수립
  - 농업(농업의 어려움과 한계 극복), 국가(국민소득 2만불 달성 BT산업 창출), 국민(웰빙 충족)을 위한 3대 기본 연구방향 설정
  - 상품화를 겨냥한 패키지형 사업 추진시스템 도입
- \* 세계 5위권 농업생명공학 강국, 21C 바이오산업 주도

#### 다. 세부추진내용

- 농업생물자원의 유전체 분석연구로 특정기능 신규유전자와 기능성 단백질을 대량으로 확보, 생체 유전정보 이용체계 구축
- 기존 농업기술에 접목 가능한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연구강화로 분자유종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
- 형질전환기술로 산업·의료용 유용물질 생산과 소재 개발연구를 확대하여 농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전환
- GMO의 환경·인체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환경 위해성 평가 및 판별기술을 개발

#### < 분야별 추진내용 >

연구분야	추진내용
농업생물자원 다양성확보	○ 농업생물자원의 국가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농업생물자원 수집, 특성평가 및 정보 전산화(3개)
농업생물자원의 유전체 분석	○ 대량 염기서열 분석, 유전자 기능분석 발현단백질 대량분석, 생체 유전정보 이용체계 구축(4개)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개발	○ 동·식·미생물·곤충의 생리·생태·기능 해석,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법 개발(5개)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촉진	○ 형질전환 작물 및 동물 개발, 신기능성 소재 개발, DNA 마커를 이용한 작물 및 가축육종 기술개발(5개)
바이오 신약 및 인공장기 생산	○ 바이오 신약·장기생산용 형질 전환 및 무균 복제 돼지 개발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평가기술	○ GMO 검정기술, GMO 위해성평가기술, GMO 위해 가능성 제거기술 개발(3개)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원천기반 확립	2단계('06~'08) 실용화기반 확립	3단계('09~ ) 산업화
농업생물 자원다양성 확보	국가관리체계 구축	법률, 제도 정비,	시설, 기반 완비	국가관리체계 확립
	유전자원 수집	210천점	230천점	240천점 이상
	특성평가	50천점	80천	120천점 이상
유전체 분석	유전체 구조분석	벼 구조분석 완료, 미생물 3종 완료	벼, 미생물 5종 완료 배추, 한우, 돼지 60%	벼, 배추, 돼지, 한우, 미생물 7종 완료
	유전자 대량 확보	5,000개	15,000개	25,000개 이상 (특허 2,000개 이상)
	단백질 기능분석(벼)	1,500점	3,500점	5,000점 이상 (특허 100점 이상)
기반기술 확보	SCI 논문 발표	150편	300편	500편 이상
	유전자 및 신물질 특허	200개 이상	400개 이상	700개 이상 (신기능성 30종)
	생명공학기법 특허	5건	20건	30건 이상
실용화 촉진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식량, 특용, 원예작물 및 소·돼지 등 주요 가축)	70종 (식량 18, 특용 7, 원예 37, 가축 8)	100종 (식량 30, 특용 20, 원예 40, 가축 10)	150품종 이상 (식량 50, 특용 30, 원예 55, 가축 15)
	신기능성 물질 산업화	5종	10종	20종 이상
	조기진단 분자표지 개발	병해 진단 DNA 마커 등 30종	60종	100종 이상
생명공학 산물 평가	GMO 검정기술 개발	수입 GM 전산정보망 구축	고감도 고속 정량 분석 기술 개발	수입 농산물의 검정 시스템 완비
	위해성 평가모델 확립	위해성 평가실험 기준 설정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OECD 수준의 평가 기술 확보
	안전성향상 기술 특허	무벡터 형질전환 기술특허 등 2건	기술특허 6건	기술특허 10건

### 3-1-4. 농업기술 농가보급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업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실용화 촉진
- 전문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

##### □ 문제점

- 농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급격히 심화됨에 따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력 부족
- WTO/DDA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의로의 전환이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인력과 지식, 기술·정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농업도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관광과 여가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촌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
-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을 촉진하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집중 양성

#### 다. 세부추진내용

- 기술보급 대상과 방법을 차별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전업농가, 일반농가,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기술 및 정보의 지원
  -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적정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 사이버를 통한 영농상담, 교육, 핵심고객관리 기술지원 확대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확산을 위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
- 지역별로 특화된 소득작목 기술을 집중지원하고 개발기술을 종합화한 현장적용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원을 확충
-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학습단체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도직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회 모임을 적극 지원
- 농촌의 다원적 가치 발굴·보존 및 토종자원의 활용 등 산업 자원화를 통해 농외 신소득원 창출 및 농촌활력화 도모
  -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농촌관광 기술개발 등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농촌노인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을 강화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개발기술농가보급 시범	-연구개발비의 10%투입	-연구개발비의 15%투입	-연구개발비의 20%투입
○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농업후계인력양성체계 구축	-농업인전문교육 강화 -농업후계인력지원 강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 -사이버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복지증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328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85개소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농촌노인 여가 및 부업 활동지원시범 40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확대 420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150개소 설치 완료 -농촌노인 여가 및 부업 활동지원 확대 80개소  -농촌생활건강시범촌 육성 240개소 -보조도구 및 시설지원 : 500개소 지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읍면당 1개소 설치 -농촌전통테마마을 품질 관리 프로그램 보급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사업 다양화  -농촌생활건강시범촌 1마을 1개소 육성('13) -보조도구 및 시설지원 : 1,500 개소 지원

### 3-1-5. 농업기술개발보급의 정보화 촉진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업기술개발·보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관리의 정보화 및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유통·가공 등의 분야에서 정보화의 역할이 중요시
- 농업을 기술집약적 지식정보 기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첨단기술과 정보기술 접목의 필요성이 증대

##### □ 문제점

- 농장경영관리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유통·가공 분야에서 정보기술 활용도가 낮음
- 정보화 용역사업 등으로 부분별 시스템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용도 촉진을 위한 관련분야간 통합·연계화가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정보기술의 농업분야 접목이 가속화
-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농업인의 맞춤형 기술정보 수요 증대

##### □ 추진방향

- 농업기술정보의 체계적인 DB화로 대국민 정보서비스 향상
- 재배, 환경, 경영기술 등에 IT접목으로 농업기술 개발·보급 혁신
- 농업연구·기술보급업무 정보화 인프라 확충과 사업관리 정보화 추진
- 영농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화 정보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대

## 다. 세부추진내용

- 재배·사양기술의 정보화로 정밀농업의 조기실현
  - 작물생장시뮬레이션을 응용한 작황 및 생산량 예측
  - 생산환경 정보관리, 최적작물 생산관리시스템 개발 이용
- 농업환경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 농업토양 및 기상 정보의 실용화 이용체계 구축
  - 병해충 예찰정보의 네트워크 운영
  - 농촌공익기능 자원정보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이용
-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경영·유통 정보화 촉진
  - 정보네트워크화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종합지원 체계 구축
  - 농가경영 혁신 및 영농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이용
  -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관리 정보화
- 농가의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사이버 기술보급체계 구축
  -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및 신속한 정보갱신 추진
  - 원격영농상담 시스템의 전국 네트워크화 및 이용 활성화
  - 사이버 농업경영자과정 운영 및 확대 발전
- 연구·기술보급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정보화 추진
  - 농업과학지식관리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기술개발보급 성과관리 체계 시스템화
- 정보화 인프라의 체계적 확충과 사무자동화 및 교육확대
  - 농업과학기술 정보망의 지속적 확충과 운영 효율화
  - 자료관리시스템 등 사무자동화 기반의 지속적 확충
  - 농촌진흥공무원 정보화·통계교육 지속적 추진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5~'06)	2단계('07~'08)	3단계('09~ )
○ 재배·사양기술 정보화 추진	○ 재배·사양기술 정보 DB화 및 시스템 개발	○ 작황 및 생산량 예측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 정보기술 이용 정밀 농업 실현
○ 농업환경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활용	○ 수요자 중심의 재배기술 DB화	○ 재배·사양기술정보 서비스 운영	○ 작물 최적관리 정밀진단·분석 지원시스템
○ 경영·유통 정보화 촉진	○ 농업환경정보 DB화 및 시스템 개발	○ 농업환경정보 실용화 이용체계 구축	○ 생산 의사 결정, 병해충 예찰 등 실용화 확대 운영
○ 사이버 기술보급 체계 구축	○ 생산환경정보 응용모델	○ 가뭄·재해관리시스템	○ 농촌종합계획 수립지원
○ 연구·기술보급사업 관리 정보화 촉진	○ 농촌공익·복지지원	○ 농촌공익지원·복지관리	○ 경영·유통정보 운영 지원
○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사무자동화 추진	○ 경영·유통정보 DB화 및 시스템 개발	○ 경영·유통정보 운영 체계 구축	○ 경영연구지원시스템
	○ 경영상담 통합DB	○ 경영컨설팅 종합지원	
	○ 홈페이지 개선	○ 홈페이지 정보 지속갱신	○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축·운영	○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전국 네트워크화	○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및 사이버농업경영자 과정 지속적 확대 운영
	○ 사이버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 확대발전 운영	○ 모바일 기반 기술 정보 포털서비스
	○ 농업인 정보화교육 기반 구축	○ 모바일 기반 상담 시스템	
	○ eCRM 기반 기술 정보 서비스	○ 모바일 기반 기술 정보 DB화	
	○ 농업과학지식관리 기반 구축 및 운영	○ 연구·기술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연계, 지식 공유 등 운영확대
	○ 성과관리 시스템	○ 기술개발 피드백 관리	○ 연구의사결정 지원
	○ 농업과학기술정보망 확충	○ 정보망의 지속적 고도화·확충	○ 연구결과 자료관리
	○ 자료관리시스템구축	○ 사무자동화 운영체계 확대 개선	○ 정보화 인프라 지속적 확충
	○ 정보화·통계교육	○ 정보화 교육 확대	

### 3-1-6. 종자관리 사업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보급종 생산을 위해 상위 단계인 원원종, 원종을 각 지자체에서 생산
- 벼의 경우 종자소요량의 33%수준을 공급(정선최대 능력 15,000톤수준)
- 품종보호 대상작물 연차별 확대에 따른 출원 품종증가
- 보급종 적정 신청 및 공급, 품종보호 출원, 특성조사 및 등록 등 업무 전산화 필요
- 감자 원원종, 원종, 보급종 등 저장시설 노후

##### □ 문제점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보급종 확대공급(33%→50%수준)이 필요하나 시설·장비 등 부족
  - 종자공급량 ('04)15,000톤→('07)22,500 (증 7,500톤)
- 기존 보급종 정선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 시설 현대화 필요
- UPOV(국제신품종보호연맹) 가입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증가로 검사시설, 장비 부족
- 보급종 신청/공급, 품종보호 출원, 특성조사 및 등록 전산화 미흡
- 감자 보급종 생산을 위한 자치단체 시설 노후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품종의 보급종 공급능력 확대 필요
- 고품질 보급종 생산량 및 생산능력 확대 추진
  -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확대 추진

- 품종보호 대상작물 연차별 확대(2009년까지)에 따른 출원작물 증가 대응 인원, 시설, 장비 등 확보
  - 출원품종심사관 증원, DNA Marker 개발 장비, 특성검정 시설 등
- 보급종 신청/공급, 품종보호 출원, 특성조사, 등록 등 업무 전산화 지속 추진
- 감자 보급종 생산을 위한 자치단체 시설 교체
  - 감자 저장고 신축, 원종장 이전 등

#### 다. 세부 추진 내용 및 일정

- '07년까지 전국 보급종소요량의 50%수준인 22,500톤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2년 1기의 갱신체계구축
  - 15,000톤('04)수준의 정선능력 확대를 위해 정선시설 현대화 및 확대 추진

##### <벼 보급종 연차별 확대공급계획>

구 분	'03년	'04	'05	'06	'07이후
공급계획량	13,464톤	15,000	17,000	20,000	22,500
갱신율(추정)	26.8%	33	38	44	50

- 2009년까지 품종심사관 및 특성조사요원 증원 15명, 특성검정 시설, 장비 확보

##### <연도별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현황>

지정연도	'98	'00	'01	'02	'04	'06	'08	'09
작물수	27	30	31	25	42	31	23	전작물

- 품종보호 DB구축('05년), 영상분석 S/W보완(계속), 홈페이지 보완(계속), 기존 종자관리 통합시스템 보완(계속)
- 감자 보급종 저장고 신축('05년 완료)
- 강원도 감자원종장 이전('06년 완료)



### 3-2.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 농업과 식품산업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식품산업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Food-chain산업으로 발전

\* 현재는 안전 규제 중심으로 체계적인 육성정책은 부족한 실정

□ (가칭)「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05)

○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식문화 세계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포괄

< 주요 내용(안) >

- 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식재료 산업 등 지원, 전통가공산업육성, 식품관련 인증획득지원, 통계조사,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등

□ 원료조달-식품생산 과정에서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산업 연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식품관련업체(식품제조, 외식, 식재료업체)에 대해 우수 농산물 사용과 연계하여 시설현대화, 원료조달비 등을 지원

- 중소 식품업체의 시설 규모화, 포장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

○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에 적합한 원료 농산물 발굴과 기능성 검증을 위한 산·학·연 공동의 연구개발 지원

○ 식품 분야별 생산 규모, 원료 수급, 소비계층 등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 식품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 전통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전통 식문화의 세계화를 지원
  - 농산물 가공공장(03:623개소)·특산단지(681)는 신규 지원보다는 기존 시설의 현대화, TV 홍보 등 마케팅 지원 등으로 내실있게 운영
  - 한식·전통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업체간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전통 식문화를 세계화
    - '04년 : 우리식문화 해외 홍보전 정례화, '05년 : 해외 한식업체 현황 조사, '06년 이후 한식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 전통식품 名人제도는 주류 중심에서 장류, 한과류 등으로 다양화 하고,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
  - 민속주·농민주의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지역별로 전통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우리의 전통주에 대한 홍보 행사를 정례화하고,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의 민속주와 특산물을 Package로 홍보
    - 전통주·민속주 등 판매방법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관계부처 협의)
      - \* 예시 : 민속주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으로 확대 등
-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및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제도 홍보 및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판매 촉진 지원

### 3-2-1. 외식 산업 및 식재료 산업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외식업, 식자재업, 식품가공업 등 대량수요처의 농산물소비 역할 및 기능은 점차 증대
  - 대량수요처 소비현황('01년 기준) : 주요 농축산물의 23%소비
- 소득증가, 여성사회 활동증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외식 산업이 연평균 11.7% 증가
  - 시장규모 : ('90) 11조원 → ('00) 36 → ('02) 41
  - 대량수요처별 예상성장률('99~'05) : 외식업 10%, 식자재업 6%, 식품가공업 2%
- 외식산업 및 급식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농산물을 단순가공하여 식품조리·제조 원료를 제공하는 전처리업체 및 시장증가
  - 시장규모 : ('96) 8조원 → ('00) 10 → ('03) 12
  - 단체급식 및 식품제조업체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전처리 식재료의 구입을 선호하고, 대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음
  - 외식업체의 매출액에서 식재료의 비율 35% 점유
-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외국계 외식업체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
  - 시장규모 : ('99) 8,172억원 → ('02) 15,265(연평균 23.2% 증가)

## □ 문제점

- 식재료유통 전문업체에서 저가의 수입농산물 구매증가 추세
  - 저가의 중국 등 냉동채소와 육류수입이 증가
    - \* 중국산 동결채소류 수입 : ('99) 1,951톤 → ('02) 12,736(553% 증가)
  - 국산 식자재의 높은 가격, 불안정한 공급, 구매정보 및 표준화 미비 등으로 이용 기피
- 전처리산업의 인프라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안정적 성장 애로
  - 일부 식재료업체를 제외하고 영세한 규모이며 세척기 등 소규모 시설로 대부분 수작업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향후 전망

- 전처리농산물은 식자재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외식업체 등은 전처리 농산물 이용시 약 30%의 유통비용 절감효과 및 농산물 소비확대가 기대

### □ 추진방향

- 식품산업과 국내농업생산기반과 연계를 강화
  -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도모
- 한식외식을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보완·개선하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전통 식문화 유지·발전
- 전처리 등 식자재산업 발전으로 인한 가공시간 단축과 인건비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도모
- 나아가 우리식문화의 해외수출 여력을 길러 전통 식문화의 세계화 및 우리농산물의 수출기반 마련
- 한식프랜차이즈 해외진출지원 및 해외 한식레스토랑 네트워크 구축

## 다. 세부추진내용

### □ 한식외식 및 농산물 식재료 산업육성

○ 사업목적 :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과 식품산업간의 연계성 강화로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Food-chain System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

○ 사업기간 : 2005~2013(9년)

○ 사업비 : 총사업비 1,345억원(융자 1,016, 보조 72, 자부담 257)

○ 사업내용

<한식 외식산업 운영자금 지원>

- 사업규모 : 한식외식업 사업장 매년 10개소 지원

- 지원대상자 : 한식 외식업체(프랜차이즈 포함) 및 단체급식업체

-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농산물 전처리 운영자금 지원>

- 사업규모 : 민간 농산물 전처리 사업장 매년 5개소 지원

- 지원대상자 :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생산자단체와 연계·운영하는 민간 농산물 전처리 사업자

-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4%,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원재료 구입액 중 국내농산물을 50%이상 취급하는 업체

○ 지원범위 : 국산농산물 수매, 마케팅·홍보, 장비현대화 등 운영자금

○ 한식외식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우대 지원

- 해외진출 한식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하여 한식외식산업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를 업체당 10억까지 확대

○ 「외식 및 식재료산업 육성방안」 연구 추진('05년)

- 한식 외식업 및 식재료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전략과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

· 한식 외식업 및 전처리산업 기초조사 연구

·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 관련 법령과 제도 지원 방안

## □ 한식레스토랑 네트워크 구축사업

- 국내 한식레스토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식재료의 산지 직거래로 연결하는 방안 연구('06)
  - 국내 한식레스토랑 네트워크 구축과 산지 직거래 등이 내실화 된 후 해외 한식레스토랑 네트워크 사업 추진('07~'08)
- 해외의 한식레스토랑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한식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장류·전통주류 등 연관산업의 해외수출 확대 유도
- 사업내용 : 해외 한식레스토랑 현황조사 및 네트워크 방안 연구('07)
  - 전세계를 6개 권역(북미, 남미, 중국, 일본, EU, 동남아)으로 구분하고, 연 2개 지역씩 지역 한식 레스토랑 네트워크 구축('08~'12)
    - \*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된 지역부터 전문요리기술교육(국내·국외)을 실시하고, 한식 홍보·전시행사를 개최
  - 범세계적인 한식 레스토랑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공유·교환 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인 통합총회(연 1회) 개최
    - \* 지역별 한식교육 및 홍보·전시행사 지속 지원
    - \* 지역별·통합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과 한식레스토랑을 상호연계 유도(우수식품 정보제공, 상품전시회 등 개최)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식·식재료산업 육성 -국산농산물 활용도가 높은 한식프랜차이즈 및 중간재 공급처인 전처리 육성</li> <li>○ 한식레스토랑 네트워크 구축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계획수립</li> <li>○ 시범사업추진('05)</li> <li>○ 외식 및 전처리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보완을 통한</li> <li>○ 내실화('06-'08)</li> <li>○ 국내 한식레스토랑 구축 연구·용역('06)</li> <li>○ 국내 한식레스토랑 구축 내실화('07~'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업체 확대</li> <li>○ 해외 한식레스토랑 실태 조사 연구·용역실시('09)</li> <li>○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2개 권역씩</li> <li>-네트워크 구축지역에 대하여 전문요리 교육 및 한식홍보지원통합 네트워크 구축('13년 이후)</li> <li>-전세계 단위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 총회 개최</li> <li>-교육·홍보 내실화</li> </ul> </li> </ul>

## 3-2-2. 새로운 식품개발 및 원료 발굴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식품가공·제조관련 연구지원 상황
  - 농림기술개발사업(기획연구, 현장애로, 벤처형 중소기업)으로 지원
  - 지원현황 : 449과제, 499억원('94~'03)
  - \* 기술개발 전체 : 3,005여 과제, 3,717억원
- 국산 농산물, 장류 등 전통식품의 기능성이 연구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성 연구 및 상품화 부족
- 김치 등 전통식품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나 전통을 살리면서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음식개발이 필요

#### □ 문제점

- 세계적으로 국가 및 기업의 농식품 기술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기업의 R&D 투자가 부족
  - 식품업체 매출액 대비 R&D비율 : 일본상위 3사(7%), 국내상위 3사(1%)
- 우리농식품 중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구멍이 미흡하여 건강기능 식품으로 판매 불가 ('03. 8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 식품의 소비패턴 변화와 다양화에 대응한 식품개발이 부족하여 외국의 유명 식품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음
- 식품의 신소재·원료, 안전, 저장, 제조공정 및 제조기계 등 식품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



## 나. 추진방향

-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경쟁력있는 식품의 개발(기술적 우위가 있는 새로운 식품 개발)
- 국산 농식품(한약재 포함)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능성 구명, 기능식품으로 인정 및 상품화하여 세계적인 건강 식품으로 육성
-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농식품기술개발 지원 확대

## 다. 세부추진내용

### □ 경쟁력있는 식품기술개발 지원 확대

- 국산 농식품중 기술적 우위가 있는 경쟁력 있는 식품개발 추진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농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 BT실용화, 식품가공, 식품안전성확보, 유통(수확후관리포함), 친환경·자원재활용, 기계화, 자동화, 품질고급화 등 7대 핵심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농림업관련 중소기업의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 원료농산물 등 농식품의 기능성 구명과 기능식품의 상품화 지원

- 농식품 중 기능성이 높은 품목(원료 포함)을 선정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능성 연구 지원
-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등록 및 상품화 지원
  -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기획연구과제(3년, 10억원이내) 및 첨단기술개발과제(3년, 5억)로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기술개발 (R&amp;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기술개발 R&amp;D 지원계획 수립</li> <li>○ 농림기술개발 과제 응모 및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농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대핵심기술개발</li> <li>-현장적용기술개발</li> <li>-농림업관련 중소기업체 기술개발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설치·운영</li> <li>○ 지역별 기술혁신 연구센터 설치·운영</li> </ul>

### 3-2-3. 식품산업 관련제도 개선 및 인프라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소득수준향상,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등으로 식품산업이 국민경제 및 국민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국가 GDP 대비 산업비중 : 농업 3%, 식품산업 13%
  - 농식품산업중 식품산업 비중 : ('90) 46% → ('95) 56 → ('02) 65
  - \* 식품소비패턴이 과거 「생산 → 유통 → 소비」 구조에서 최근에는 「생산 → 유통 → “식품/외식” → 소비」구조로 변화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강화 및 육성을 통하여 국내농산물 소비촉진 및 국민식생활의 합리화 유도 필요
  - 고품질 안전농산물보다는 저가·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향
- 농식품의 소비·유통, 소비자의 수요 및 식품산업의 성장 전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미흡
- 그 동안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민·민속주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단체)이 보다 쉽게 가공산업 및 주류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추진
  - 시설기준완화 및 알콜도수 제한폐지 등
  - '04. 12월말현재 166개 업체가 면허를 취득하여 약 145개 업체가 가동 중

##### □ 문제점

-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이 규제위주로 이루어졌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체계 구축, 가공식품 표준화 및 우수농산물 활용 유도 등 제도 미흡

- 농업-식품산업간 연계강화 및 국민식생활의 합리화 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식품의 소비·유통경로의 체계적인 정보·통계수집 시스템 미비
- 전통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에 대하여 주세, 주류 제조 및 판매 규제완화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향후 식품산업분야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며, 소비자들은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식품산업의 성장전망(예 : 외식산업) : ('91) 12.5조원 → ('03) 35조
-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전통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가능한 제도개발 및 기존 제도의 내실화 추진
- (가칭)「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발전적으로 개편,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와 육성방안을 망라한 법 제정
- 「지리적 표시등록제」는 명칭보호를 보다 분명히 하고, 제도 홍보와 등록제품의 판매 홍보지원을 강화
- 성장하는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식품의 공동 발전·육성을 위하여 소비·유통단계별로 체계적인 통계자료 조사
- 식품의 품질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식품규격의 표준화(국내외) 및 인증제도 확대 추진
- 농민·민속주 제조면허관련 규제완화 지속추진
  - 소규모 생산 농민·민속주 세율 차등적용 추진
  - 우체국외에 농협 등으로 판매기관 확대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 (가칭)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 현행 규제위주의 정책이 집중된 식품산업 분야에 대해 적절한 지원 방안과 제도를 법제화하여, 식품산업의 안정적·지속적 발전과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 및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

#### 〈 법안 주요 내용(안) 〉

- 가공산업 및 식품산업육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식품산업육성심의회 및 지역식품산업육성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산지가공공장·전통식품산업(명인제, 품질인증제 등)의 지속적 육성
- 외식산업·식재료산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육성·지원
- 신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시설현대화, 경영개선지원,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지원, 수출지원, 식품산업 통계조사 등 산업인프라 강화
- 소비자에 대한 유통·영양 등의 정보제공, 식생활교육 실시,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지침 등의 개발 보급
- 전통식품의 현대화·세계화, 식문화 홍보 및 해외전파

### □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육성 지원

-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산업 등의 지원·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등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관련 기술개발(R&D) 체계의 구축, 식품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등 산업의 인프라(Infra)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식재료업체 등에 대한 시설의 현대화 또는 개보수지원,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추진

## □ 식품산업 통계체계 구축

- 식품산업육성에 필요한 통계조사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통계수집체계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제공
  - 종합적인 식품산업 통계연구 및 통계자료 발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 기업체, 연구계 등에 대한 정보네트워크구축 및 모니터링

## □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제 활성화

- 국제규범상 허용된 「지리적 표시제」는 마크보호와 명칭보호를 병행하여, 지역적 명칭을 토대로 한 농식품의 실질적 보호효과 제고
  - 상표법 개정을 통한 명칭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제도 도입
- '13년까지 20여개의 등록품목확보
- 제도홍보 및 등록품목에 대한 전시·판매 지원 등의 병행 추진

## □ 농민·민속주 등 전통주 규제완화(주세법 관련)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대하여 낮은 세율 적용 등 차등과세를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약주·과실주(30%), 증류주·리크류주(72%) 등을 저율 주세로 차등화 추진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공제율(2/102) 상향조정 추진
-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 폐지
  - 전통주등 국내산 주류에만 표시하는 출고가격 표시제 폐지

## □ 전통가공식품 Codex 규격화 추진

- 인삼, 된장, 고추장 및 간장 등 전통식품의 Codex규격화를 통해 우리 고유식품의 국제화·현대화를 추진
  - Codex 규격화를 위한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 강화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가칭)농산물가공및 식품산업육성법 제 정 추진	-전문가(업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으로 컨소시엄 구성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추진	- 법 시행 및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식품산업 육성지원	-제도적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육성 -시설개보수,경영지원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 -농산물의활용도제고
○식품산업 통계수집 체계 구축	- 기본조사 및 연구	-기초통계조사 시스템 조사 및 구축 · 조사대상·범위설정 및 시스템 구축 -통계조사 세분화 ('06) -통계수집 및 운영('07 -)	-통계수집 및 운영
○지리적표시등록제도 활성화	-상표법개정으로 피해구제제도 등 도입	-등록 및 판매확대등 제도활성화 추진	-제도운영
○전통가공식품 Codex 규격화 추진 -인삼 Codex -된장,고추장 Codex -간장 Codex	-8단계중 4단계진행 -2단계 및 4단계진행 -4단계 진행중	-규격화 완료('08) -1-7단계 완료 -규격화 완료('08)	-규격화 완료('10)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가공식품 KS규 격 제도개선	-식품규격 기준 등 제도개선	-식품규격 기준 등 제도시행  -인증품 및 KS규격 확대 및 홍보강화	-인증품 및 KS규격 확대 및 홍보강화

\* Codex규격화는 1~8단계의 과정으로 단계별 1년 정도 소요되어 총 7~8년 소요

### 3-3. 본격적인 수출농업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 '13년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목표로 시장별, 품목별로 과거와 차별화된 전략적 수출마케팅을 중점 추진

#### □ 농식품 수출 배가를 위해 새로운 수출 전략 수립·추진

- 바이어 중심의 수출 방식에서 해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 신규 수출 수요를 적극 창출
  - 해외농업무역관을 중심으로 외국 소비자 대상의 판매촉진기능 활성화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종묘선정부터 생산·수확후 관리, 해외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개발수출지원사업 추진
- 외국 대형유통업체 등이 전문생산단지 등과 장기 계약을 통해 한국산 농산물 해외 공급기지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 추진
- 해외 판촉 활동도 박람회 참가, 판촉전, 해외광고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방식으로 방향 전환

#### □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목표로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 체계를 강화

-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생산단지, 수출 전문 APC 등을 계열화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 수출기지로 육성
  - 기존 전문생산단지('03:108개)를 우수단지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규모화 추진



- 수출물류비는 대형 수출업체 중심으로 지원하고, 최소 지원기준 ('03 : 수출실적 10만불이상)도 단계적으로 상향
- 수출용 공동대표브랜드는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출 전략품목을('04 : 3품목 → '08 : 11) 대상으로 추진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품위관리·규격화
- 한·일 FTA에 대비한 「대일본 농산물 공급전략」 마련
  - 「한·일 FTA 전담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마련
    - 농림식품수출입조합, 식품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운영·의견수렴
- 수출지원조직을 확충하여 수출업체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
  - 유통공사 내에 해외마케팅, 수출 농산물 품질·안전성 확보, 수출 컨설팅을 전담할 조직을 확충
    - 해외농업무역관 확충내지는 기능을 보강하여, 현지시장개척기능을 중점 수행
  - 농업인이 겪는 수출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WTO 규정 범위내에서 유통공사가 농산물 수출보험을 대행 관리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 초기에는 수출서류작성 대행, 수출품 가격 산정 등을 수행하되, 향후에는 보험인수·보험액산정·손실지원 등도 대행으로 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의 생산·유통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기술지원단」 운영

### 3-3-1. 수출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설재배 및 기술발달로 인한 농산물 품질향상과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힘입어 최근 들어 수출실적이 꾸준히 증가
  - 과거 10년간 농림축산물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5.9%로, 구제역으로 수출이 급감한 돈육 제외시 연평균 6.4% 증가 기록
  - 2003년 기준 농림축산물 전체 수출액은 1,860천만불,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508백만불 수준
- 그러나,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생산기반 미흡 등으로 수출증가세의 대폭 신장에는 한계
  - 전문화된 수출단지가 부족하고 영농 규모가 영세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품질 향상에 애로
  - 수입 상대국의 검역·식품 검사 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성 관리 시스템 미비,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가 인식 부족 등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향후 전망

-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 미국산 농산물 등과 경쟁이 심화되어 가격·품질·마케팅 측면에서 차별화 되지 못한 농산물은 점진적으로 수출감소 예상

## □ 추진 방향

- 수출농산물 공급기반 정비·육성을 통한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
- 공동대표브랜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농산물 표준 규격화 추진
-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 원예전문생산단지 활성화 및 신규단지 조성으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원예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제정 및 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04)
  - 『원예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전문생산단지(現108개소) 지정, 사후관리,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
  - 수출실적, 단지 규모, 시설수준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중심으로 원예 전문생산단지 평가시스템을 마련
  - 정부 지원을 우수단지 중심으로 차등화하여 수출 단지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
-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원예 수출전문단지 확충 추진
  - 연중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채소류 수출거점단지 조성 추진 ('13년까지 2개소 조성)
  - 일관 생산·수출이 가능한 대규모 화훼수출단지를 신설
    - \* '05년까지 매년 1개소 신설
  - 과실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생산기반 정비로 단지 규모화·집단지 지원

□ 수출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출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

○ 광양·마산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로 수출물류비 절감 지원

- 광양, 마산 물류센터는 해당 지자체와 수출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효율화방안 강구

○ 수출전문단지 등 품목별 주산지를 거점으로 수출전문 APC를 확충하여 수출물류의 품목별 계열화를 지원

- 수출생산단지 및 산지 APC에 대한 품목별·지역별 D/B 구축

- 생산·유통 여건을 분석하여 품목별 생산-물류 계열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 따라 수출물류센터 신규 조성 또는 기존 APC의 수출물류 기능 강화 등을 추진

○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냉장컨테이너 운영 사업 확대 실시

- 노후된 컨테이너를 교체하고 대일 수출지원을 위해 운영 횟수를 확대

□ 고품질·규격 농산물 생산 및 해외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제 시행

○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연500만불 이상 수출품목)이 가능하고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공동대표 브랜드(Whimori) 사업 추진

\* 대상품목(안)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배, 사과, 감귤, 단감, 국화, 장미, 백합, 양란

- '04년 3개 품목(파프리카, 국화, 대미배)에 대한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사업여건 평가를 토대로 대상품목 확대 추진

- 국제적 수준의 생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고품질·안전 농산물 이미지 구축
  - 수출농가·업체에 대한 ID 등록 실시, GAP 시행 및 생산이력정보 제공으로 브랜드 상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
- 공동대표브랜드의 현행 품위기준을 토대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규격화 사업 추진
  - 현행의 브랜드 품위기준을 품종별, 크기별, 포장 단위별로 세분화하여 품목 공통의 수출 표준규격으로 발전
  - 품목별 자조회, 농협 등과 공동으로 품목별 재배·선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수출컨설팅과 접목하여 수출농산물 규격화를 지원
-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개발수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
  - 해외 시장 조사 및 국내 생산가능성 분석을 통해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 관련 정보 제공 및 수출컨설팅 등으로 국내 공급 여건 조성
    - 지역별 재배 현황 등 생산관련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농협 등과 공동으로 생산농가 수출연합체 구성 등 공급 시스템을 구축
    - 해외 재배 기술자 초청 컨설팅 등 참여 농가에 대한 수출컨설팅 집중 실시로 재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 개발수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수출 희망 농가 및 수출업체의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 시장테스트, 바이어 알선, 해외 마케팅 등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원예전문 생산단지 정비	원예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제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우수단지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수출 공급기지로서의 기능 정착
○ 채소 및 과실류 수출단지 조성	품목별 대책에 반영		
○ 화훼수출단지 조성	'04년 1개소 신설 '05년 1개소 신설		
○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광양, 마산 수출물류센터 개장 및 시범운영	광양, 마산 2개소 운영평가 및 수출물류센터 추가 건설	수출물류센터 추가 건설
○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운영	시범사업 추진(3개 품목)  브랜드 품위기준 설정	브랜드 관리 시스템 보완 및 대상 품목 확대 ('08년 11개 품목) 대상 품목 표준규격화사업 추진	품목별 여건에 따라 브랜드의 민간 이양 추진
○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개발수출지원	개발수출 지원 체계 구축	신규품목 개발 및 지속지원 실시	신규품목 개발 및 지속지원 실시
○ 수출컨설팅 확대 실시	수출컨설팅 조직 보강 - 「해외기술지원단」 구성	컨설팅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보완	

## 3-3-2. 해외시장개척활동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개척 사업 추진

\* 해외시장개척사업 주요 내용

- ① 박람회 참가 지원
- ② 해외 바이어 알선 및 해외 판촉 지원
- ③ TV 광고, 식문화 홍보 등 홍보 사업
- ④ 수출관련 정보 제공 및 사이버 무역(e-trade) 지원

#### □ 문제점

-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식문화 전파가 필요
- 그러나, 전문 수출업체가 부족하고 업체의 마케팅 마인드도 부족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마케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향후 전망

- 개방 확대로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출에 대한 관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WTO/DDA협상이 수출보조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수단 중 WTO에서 허용보조로 인정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 추진 방향

- 국가별·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수출마케팅으로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추진
- 우리 식문화의 해외 전파로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를 견인
- 수출지원 조직·기능 보강으로 수출 애로사항 해소

## 다. 세부추진내용

### □ 국가별·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 실시

- 한일 FTA를 계기로 일본 수입대상국 상위 그룹 진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공동대표브랜드 제품의 수출 및 홍보를 통해 저품질 이미지 개선
  - 농식품 로드쇼, TV 광고, 유통업체 직접 수출 등 소비자 대상 마케팅 강화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친밀감 제고
  - 품목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 \* 김치, 인삼 : 한국산이 종주국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고가수출에 따른 약점을 극복
    - \* 채소, 화훼 : 일본산에 이어 2번째 품질·신선도·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중국산과 차별화



- 중국·대만·동남아 등 중화권 중심의 신흥시장 개척 강화
  - 국제 농산물 박람회 지속 참가 및 정기적 홍보 행사 개최로 우리 농산물 알리기에 주력
  - 인지도가 높은 농식품(인삼, 라면, 과자 등)과의 연계 홍보로 신선 식품의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
  - 중국산 과실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응, 배·사과·단감 수출 지원을 위한 과실류 홍보 행사 확대
- 우리 식문화의 해외 전파로 전통식품 등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
  - 김치·인삼의 세계화·차별화 전략 지속 추진
    - 김치 세계일류상품화 연구 개발 등 고품질 김치 개발을 위한 R&D 지원 확대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기술 우위 유지
    - 발효 김치 및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적극 발굴하고, 학술세미나,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한국산 차별화 부각
    - 현지 요리학교, 레스토랑 등과 제휴하여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 요리를 개발·보급하여 유럽 등지에서의 신규 수요를 창출
  - 식문화 홍보 강화로 전통식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
    - 일본·대만 등지의 한류열풍을 전통식품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식문화 홍보 전략 추진
    - 문화적 이질감이 큰 서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화·스포츠 연계 마케팅을 통해 전통식품 진출의 발판을 마련

##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 조직 및 기능 보장

○ 시장 요구에 맞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 기능·조직을 개편하고, 해외 현지 마케팅 대행·지원을 위해 해외 농업 무역관 확충 추진

- 유통공사내 품질·안전관리, 수출컨설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장별 해외마케팅이 가능하도록 마케팅 담당 조직을 개편('04)
- '04년 하반기 상하이 농업무역관 개관에 이어, 향후 러시아 등 수출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무역관 신설 추진
- 농업무역관의 인력 및 조직을 보장, 신규 개발 상품의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 수출업체의 지사 업무 대행

○ 농산물 수출 정보서비스 강화

- 종합무역정보망(Kati.net)에 대한 고객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의 수요에 맞는 정보서비스 제공
- 해외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입국 통관 및 식품 검사 기준에 대한 국가별 수출 설명회 개최
- 정보 수요자 D/B 구축으로 품목별·지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
- 해외 현지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농업무역관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박람회 참가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04년 22회)	수출연계 가능한 신규 박람회 발굴 및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확대	수출연계 가능한 신규 박람회 발굴 및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확대
○ 농산물 해외 홍보	TV광고, 인쇄 매체 광고 등 홍보 ('04년 14종)	해외 홍보 확대	해외 홍보 확대
○ 소비자 대상 직접마케팅	현지 유통업체 연계 관측행사 ('04년 29회)	관측행사 확대	관측행사 확대
○ 식문화 홍보	식문화 해외 홍보 ('04년 8종)	식문화 전과 품목 추가 개발 및 메뉴화 추진	우리 음식의 세계화
○ 한국 농식품 국제로드쇼	일본지역 로드쇼 개최	개최 지역 및 개최 회수 확대	개최 결과를 토대로 행사 규모 확대 추진
○ 수출지원 조직 확충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직개편 상해 농업무역관 신설	농업무역관 업무 개발 및 농업무역관 확충 추진	
○ 수출정보 제공 기능 강화	종합무역정보망 평가 및 개선안 마련 인삼, 김치 홈페이지 개편	종합무역정보망에 대한 정기적 전문가 평가 및 개편 추진 국가별 수출설명회 개최	

### 3-3-3.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선농산물의 선별·포장·운송비 등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
- 경쟁력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여 우리농산물의 수출확대를 도모
  - 지원대상업체 : 부류의 수출실적 10만불(US \$)이상인 업체

##### □ 문제점

-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
- DDA협상결과 수출보조에 해당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의 감축 또는 중단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저하 예상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향후 전망

- DDA/FTA 협상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감축될 우려가 있음

##### □ 추진방향

- 경쟁력있는 수출업체 위주로 지원하여 규모화를 유도
- DDA, FTA 협상에 대비한 지원책 마련
- 지원가능한 수출진흥사업 분야의 예산액 지원규모를 확대

## 다. 세부추진내용

### □ 수출 물류비 지원의 제도 개선 추진

- 최소 지원기준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출 업체 규모화
  - '05년부터 매년 수출업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마련
- DDA, FTA 등으로 물류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04. 10)를 토대로 물류비 지원 개선방안 마련
  - 개도국 유지, 점진적 감축이나 폐지 등을 감안한 대책강구
  - 해외수요 기반조성과 수출증대를 위한 판촉활동 강화
  - 품목별 수출입조합 및 생산자 단체육성·지도강화 등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 수출물류비 지원 개선	DDA 대비 물류비 지원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완료('04 하반기)	물류비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 (DDA, FTA 대비)	평가분석을 통한 지원 품목 조정

### 3-4. 농식품 소비촉진으로 확고한 내수기반 구축

◇ 정부-지자체-생산자가 연계하여 소비촉진 활동을 강화

□ 농산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추진

○ 홍보 대상별로 특징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추진

- 청소년층 : 캐릭터, 게임 등 선호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
- 주부층 : 다양한 요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중년층 : 우리 식품의 기능성·영양성 등 건강 효과를 강조

○ 본격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시스템 구축

- 농림부에 전담조직 설치('03), 유통공사에 홍보전담기구 설치('04)

□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

- 정 부 : 종합적인 홍보전략수립·조정, 지원 제도 및 자금 운영
- 지자체 : 향토축제, 농촌관광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 생산자단체 : 자조금 조성을 통해 자율적인 판촉 활동 강화 등

□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강화

-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조례제정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지자체부터 우선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공급지원 추진
- 농산물 영양성(또는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식생활 지침, 표준식단 개발·보급 등 국민 식생활 개선

### 3-4-1. 학교우유 급식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학교우유급식은 청소년의 체위향상과 우유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81년부터 축산발전기금으로 보조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절반수준인 3,969천명이 자부담 및 보조 급식
- 보조급식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210천명에게 정부지원 무상 급식  
\* 백색우유 단가 235원/200ml, 연간 300일 기준(유상 180일)
- 우유급식량 : 1일 794톤(보조42, 유상752), 연간 148천톤(보조13, 유상135)
- 시중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시판 360원/개 의 65% 수준)

#### 〈학교우유급식 실시현황〉

(단위 천명)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체 학생수	7,792	4,164	1,859	1,746	23
급식 인원수	3,969	3,294	395	264	16
비율(%)	50.9	79.1	21.2	15.1	71.8

##### □ 문제점

- 학교우유 급식율이 초등학교는 높으나, 중·고등학교는 매우 저조
- 초등학생(210천명)에게만 보조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실시 필요
- 학교우유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백색시유보다 가공유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우유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의 체위 향상에 꼭 필요한 제품임
- 그러나, 학생들의 우유 소비 기피 및 탄산음료, 두유 등 대체음료의 소비증가 등으로 우유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 전망

### □ 추진방향

- 청소년·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의 우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유년기에 우유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다각적인 대책 강구
-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중·고교 중식비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토록 지원예산의 연차적인 반영 추진

## 다. 세부 추진내용

- 낙농진흥회, 농협중앙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유 소비촉진 홍보 적극 추진
  - 인기연예인,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TV(라디오) 공익광고 지속 추진
  - 우유 다큐멘터리 제작·방영(3부작), 114 안내전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우유테마 콘서트, 여성낙농가 홍보 요원 교육, 전시회·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소비자 관심 유도
- 초·중·고 교과서에 우유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우유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
  - 초·중·고 교과서 집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추진



- 현장체험 대상자를 지역 영양사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 \* 방학 등을 이용, 2~3일간, 목장·유가공 공장견학, 설명회 등 현장 체험
  - 교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버 홍보자료 제공하여 교육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 관련 사이트 : 멀티 클래스(t.multiclass.co.kr), 티-나라, 에듀 포 유 등
  - 초·중·고 교과서 반영자료 작성을 위한 조사·분석용역 실시
    - \*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추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급식을 중·고교 학생까지 확대토록 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
-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급식을 중·고등학교 기초 생활 수급자(급식비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지원
    - \* ('04) 210천명 → ('05) 279(중학생 69) → ('06 이후) 352(고등학생 73)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학교우유급식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비홍보로 우유급식을 향상 - 초·중·고 우유 급식율 : 52%	○ 교과과정에 우유교육 내용 체계적으로 수록 교육 ○ 우유급식 대상자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 초·중·고 우유 급식율 : 55%	○ 우유홍보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배부 ○ 우유급식 대상자 지속적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강화 - 초·중·고 우유 급식율 : 60%

## 3-4-2.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국내 농산물 소비확대와 과잉생산물 처리방안의 일환 및 품질과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 형성
  - 학교급식법개정 및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NGO, 시민단체 등에서 학교 급식의 직영,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무상급식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수입산 식자재 사용학교 비율 : 평균 46%
-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추진중
-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분위기 확산
  - 조례에서 소요경비 지원 조건으로 “안전한 우수농산물 공급”을 권장

#### □ 문 제 점

-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국내산 농산물보다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사용함에 따라 급식의 안전성문제와 국내산 농산물 소비위축 우려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기존부터 추진하여온 정부쌀 저가공급과 극빈·불우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계속 추진
  - 정부쌀 저가 공급(판매가의 50%) : '04지원 61천톤, 584억원
  - 우유 무상공급지원(210천명, 1일 42톤) : '04 지원 : 13천톤 148억원
- WTO농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산 농산물 사용확대 유도

## 다. 세부추진내용

### □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 구입지원 시범사업 추진

- 지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조례제정 및 쌀 저가공급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지자체부터 지원
  -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저가·저급의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대체 공급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우선 시·도별 1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결과를 평가·분석하여 확대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
  - 사업비 부담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기 고장 농산물 사용운동 전개

- 지자체·학교·농협·농민단체 등의 제휴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 수집·전파

- 지역 농산물 우선사용 및 계약재배 지속 추진
  - 1품목 이상 지역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계약재배 추진
  - 소비물량이 규모화된 품목과 저장성이 강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지역 농협에서 계획생산 조달·납품 추진
- 물량의 규모화로 계약재배 내실화
  - 식단의 표준화 등을 통한 물류의 편의성 증대
- 농협의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식재료 공급방안 모색
- 자기고장 쌀 운동 전개(지자체 지원사업)
  - (사 례)
    - 김포시 : 지정업체를 통하여 김포쌀 구입시 정부미 구입가격과 차액 보전(지자체 100%)
    - 여주군 : 농협을 통하여 여주쌀 구매시 정부미 구입단가만 부담 (차액은 지자체가 보전)
- 우수 농산물 생산현황을 정보화하여 학교급식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 제공
  - 우수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생산, 가격현황을 일선 식재료 구매 기관·업체 등에 제공
    - 지역별·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현황 자료
    - 지역별·품목별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자 현황 자료
    - 우수 가공물(전통식품 품질인증, KS제품 등) 생산자 현황 자료
    - 우수 축산물 생산자 현황 자료 등
  - 우수 농산물 생산자 현황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를 활용토록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유도('04~ )

## 라. 추진 일정

추진 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농산물 생산 현황을 정보화하여 학교급식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 제공</li> <li>○ 지자체·학교·농협·농민단체 등의 제휴 시스템 구축('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지역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자기 교장 농산물 사용 운동 전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계획수립('06)</li> <li>○ 시범사업 추진('07)</li> <li>○ 사업내용보완 및 내실화('0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사용 유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속</li> </ul>

### 3-4-3. 농산물 소비 홍보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수급상 문제되는 개별품목 위주로 소비촉진 및 홍보행사 추진
  - 쌀 : LOVE米 캠페인, 러브미 홍보대사 위촉, TV-CF
  - 축산물 : 소고기·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우유사랑 대축제
  - 화훼 및 기타품목 : 꽃 메신저 위촉, 친환경농산물 CF 홍보 등
- 홍보방식도 민간 전문기획사에 아웃소싱, 상업광고방식 적극 도입 등 홍보매체·방법 다양화
  - TV, Radio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CF광고
  - 쌀 홍보대사 운영, 꽃메신저 위촉,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등 다양한 Event 행사 개최

##### □ 문제점

- 수급상황에 따른 개별품목 마케팅 위주로 홍보가 진행되어 체계적인 홍보 부족
  - 소규모 단순 판매위주 행사, 각 기관별 홍보시점 중복 등 상호 조정·협력기능 부족
- 어린이·청소년 등으로 홍보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상층에 적합한 차별화된 홍보는 아직 미흡한 수준
- 소비자의 감성에 접근할 수 있고 시대감각에 맞는 소재도 부족
  - 공산품에 비해 홍보내용과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소비자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소재 부족으로 홍보효과가 떨어짐.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종합적인 홍보전략 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홍보 실시
    - 장단기 계획에 의한 단계별 체계화 된 홍보
    - 연령별, 지역별 소비계층 분석을 통한 계층별 홍보
  - 농식품 소비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으로 안정적인 농식품 소비기반 확보
    - 소비자 감성에 접근하고 시대감각에 맞는 홍보소재 발굴
  - 홍보효과가 큰 TV특집 방송, 공익광고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 이미지 홍보 등 확대
  - 일회성·이벤트성홍보 보다는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 등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 신뢰 구축
    - 시장 영향력을 지닌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 \* 전문 용역기관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홍보프로그램 개발·시행

## 다. 세부추진내용

- 장·단기 홍보계획에 의한 단계별 홍보 실시
  - 단기 : 소비시장 분석, 추진체계 정비, 다양한 홍보프로그램 발굴 등
  - 중장기 : 안정적인 농식품 소비기반 확보 홍보, 홍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 우리농식품 이미지 강화, 시장 영향력을 지닌 파워브랜드 육성 등

□ 품목별 소비촉진 홍보 방안

○ 농·축산물 : 품목별 홍보전략에 따른 홍보 실시

- 중점홍보 분야 : 쌀(Love米), 화훼(꽃 생활화), 친환경농산물·신선채소·과일(건강·안전, 고급이미지 홍보), 축산물(품질고급화, 브랜드화 홍보) 등

○ 전통가공식품 : 품목 특성,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 차별화된 홍보 실시

- 해외시장 인정 품목(김치, 인삼 등) : 국가브랜드로 개발 해외 홍보
- 성장가능 품목
  - 한 과 : 어린이·청소년 등 기호에 맞는 신제품 개발 홍보
  - 전통주 : 제품 고급화, 명품화 후 국내외 시장개척 등
- 기타 가공식품 : 우리농산물 만을 사용한 전통식품이라는 이미지 홍보로 소비기반 구축

□ TV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실시

- 우리농식품 TV 연속기획물 제작, 우리농산물 우수성 캠페인, GAP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가공식품 KS 제도 TV CF 홍보 등

□ 연령별·지역별 소비계층 분석을 통한 계층별 홍보

- 어린이·청소년층 :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선호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
- 주부층 : 다양한 요리프로그램, 표준식단, 건전식생활 홍보 등
- 중·장년층 : 우리식품의 안전, 영양, 기능성 등 건강효과 강조
- 도시소비자 :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등과 연계 홍보



□ 기타 다양한 홍보방법 개발·시행

- 인터넷 등 On-line 활용 : 미니홈피, 요리포털사이트, 우리 농산물 아바타 소품 개발
- 소비자단체, 청소년, 주부의 모니터 요원화 등 민간주도 소비홍보 방안
- 기타 소비촉진홍보 추진 : 우리술 페스티벌, 국제행사 활용 홍보 등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단계별 홍보 실시	추진체제 정비, 홍보 프로그램 발굴	소비시장 분석, 효과적인 홍보방법 개발·시행, 홍보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우리농식품 이미지·공감대 형성 홍보, 파워브랜드 육성 홍보
○ TV등 영상매체 활용 홍보	영상매체 활용 홍보 방법 개발 -TV특집다큐 등	TV연속 기획물 제작 홍보, 우리농산물 우수성 캠페인, GAP 홍보	다양한 영상 매체활용 지속 홍보
○ 계층별 홍보	연령층별 소비패턴 분석, 계층별 효율적 홍보프로그램 발굴	어린이, 청소년, 주부층, 중장년층 대상 홍보 시행	해외 소비자 대상 홍보 - 우리 식문화홍보 등
○ 기타 다양한 홍보 방법 개발	-	인터넷 등 On-line 활용 홍보	소비자단체 등 민간 주도 소비홍보 실시

### 3-4-4. 축산물 소비홍보

#### 가.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전단, 포스터제작·배포 및 소비촉진시식회, 세미나 개최
- 가격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임시적·단편적인 홍보실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기능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소비자단체에 축산물 소비행사 및 부대비용을 전환하여 우리 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장기적인 소비기반 구축
  -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사업 위주 추진
- 가능한 정부 직접 홍보를 지양하고 축산자조금 지원단체를 통해 자조금으로 추진토록 단계적으로 방향 전환

#### 다. 세부추진내용

- 소비자단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 홍보전개
  - 안전식생활 교육 및 HACCP 적용업체 축산물이용촉진 캠페인, 축산물구입·소비형태와 육류 구분방법 등 교육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강화 및 자조금 사업병행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자조금 사업병행	○좌 동	○좌 동

### 3-4-5. 한국형 식생활지침 등 개발·보급

#### 가. 현황 및 문제점

- 식문화 패턴의 서구화로 우리 농식품을 이용한 한국형 식생활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 '95) 106.5 kg, '03) 83.2 kg
- 전통식생활이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 및 적정영양 공급을 위한 한국형 식단 개발이 요구됨
- 기존의 식생활지침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지침으로 다양한 계층 및 구체적인 식단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 우리 농식품을 활용한 한국형 식단을 소비자의 요구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보급하여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및 건전한 국민 식생활 유도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국민의 건강도모와 우리 농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계층별·용도별로 적합한 한국형 식단 개발·보급
- 수요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학교, 식당, 백화점, 소매유통점 등에 보급하여 활용도를 제고
- 농업인, 농촌 청소년, 노인층 등을 위한 식생활 지침 개발 보급

## 다. 세부추진내용

### □ 실용적인 한국형 표준식단 개발·보급

- 식단관련 자료의 검토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 농촌진흥청개발 식단, 국민건강식단 등 보급되고 있는 식단정보 및 자료를 비교분석
  - 현행 정보제공 자료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만족도 조사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식단 작성(개발) 지침 마련
- 농촌진흥청(농촌자원개발연구소), 식품영양재단, 식품과학회 및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연구팀 구성
- 연령별·용도별로 다양한 한국형 식단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연령대별 :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용 등
  - 용도별 : 수험생, 다이어트, 피부미용, 임신·수유부, 스포츠, 건강증진, 학교급식 등
  - 계절별 과실·채소류, 지역특산물, 김치·장류 등 전통음식을 활용한 표준식단 및 조리방법 등을 포함
- 농업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및 용도별 맞춤식단 개발
  - 농업인의 식생활실태, 건강상태 조사분석 및 식생활지침 개발
  - 농작업별 노동 강도와 노동시간, 에너지 대사량, 작업(유해)환경 등을 고려한 농작업 유형별 맞춤 식단 개발

□ 종합적 식품영양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한국형 식생활지침의 개발, 소비자에 식생활변화 조사연구 및 식품영양 정보제공 등을 포괄하는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 인터넷상 「(가칭)식품영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식생활 지침 및 식품영양관련 정보를 제공
  -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중앙-지방정부와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포럼 구성·운영
  - 소비자의 소비행태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식생활지침의 개량·보급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한국형 식생활지침 개발 보급	○ 지원근거 입법추진	○ 기본계획 수립 ○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연구범위 설정 ('05)	○ 한국형 식생활지침개발 및 보급('06-) ○ 확대개발 및 보급

### 3-4-6. 농촌가공산업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에 '03까지 1,101개소, 2,911억원을 지원하여 산물로만 유통되던 농산물을 가공처리함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 3,600억원 이상의 국산농산물 가공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
  - 1일 7,600여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연간 지급임금 832억원)
  - 신제품 개발 등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현대화된 가공공장 건설, 기존 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현대화 중점지원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 지역농산물을 산지 소재 가공업체에서 소비함에 따른 유통단계 대폭 축소 및 유통비용 획기적 절감
    - \* 지원업체(1,101개소)중 관리업체는 558, 관리해제 543(퇴출 219, 기간경과 324)
    - \* 관리업체 558업체(가동 514, 건설중 9, 가동중단 35)
  
- 농촌특산단지조성에 '03까지 1,528개소, 1,895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
  - 정부지원 1,528개소중 665개소 운영, 863개소 경영난 부도 등으로 퇴출
    - \* 부업단지('67~'90)로 지원한 951개소중 208개소(22%)와 특산단지('91~'03)로 지원한 577개소중 457개소(79%)가 운영
  - 최근 지원실적 : ('00) 8개소/39억원 → ('02) 6/9 → ('03) 3/13
    - \* 주요품목 : 목공예·죽제품 등 민속공예품(60.5%), 모시·삼베 등 섬유직물(12.3%), 비닐·종이상자 등 농산자재(11.3%), 석재(8.4%) 등

## □ 문제점

-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생산단계의 문제점
  - 낮은 가동율, 품목다양화, 신제품 개발능력 미흡
- 원료 조달 및 선택에 따른 문제점
  - 원료 구입비 부족 및 계절성 구매에 따른 일시적 자금 압박, 연중 안정적인 조달 곤란, 국산농산물 사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열위 등
- 마케팅 단계에서의 문제점
  - 제품 차별화 미흡, 소비지 판매망 구축의 한계, 업체간 경쟁 심화, 마케팅 파워(영업력) 취약, 대기업 및 유사업체의 진입 등
- 경영능력 및 시설·설비 투자 등의 문제점
  - 소비자 정보 부족, 회계·세무·경영관리 능력 미흡, ‘일단 시작’, ‘일단 크게’ 등의 시장·기술·재무분석이 결여된 투자 등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정부지원 가공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로 시장경쟁력이 매우 취약
  - 초기 단계의 적정투자, 제품의 차별화, 생산비 절감, 판로확보, 경영관리상 등 전반적으로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어려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나, 모든 가공업체를 정책시행의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투자 소요
- 가공업체의 구조조정 유도 및 동종 또는 이업종간 제휴 또는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업체 중심의 선별적 지원으로 투자 효율화 추진
-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에 중점 지원하여 경영활성화와 민간기업과의 경쟁력 향상 유도
-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율적 국토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역할 강화

## 다. 세부 추진내용

-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목표 설정 : 업체별 매출규모 및 국산농산물  
매입능력 확대

지 표	'97실적	'03실적(A)	육성 목표			
			'08(B)	B/A	'13(C)	C/A
○ 업체별 평균 매출액	백만원 597	1,316	2,000	배 1.5	3,000	배 2.3
○ 업체별 국산농산물 매입능력	389	714	1,100	1.5	1,500	2.1

\* '97~'03년 까지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선형계획법에 의하여 육성목표 설정( $Y=aX+b$ )

- 제품차별화 전략에 대한 지원으로 경영활성화 유도

- PDCA 원칙에 입각한 상품화 기술개발 연구 지원방안 강구
-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PDCA원칙 : 아이템선정→제품개발→**상품화 기술개발**→가공시설설치→  
제품생산→제품판매→소비자 의견반영→**제품의 품질개선**

- 원가절감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및 자체노력으로 경쟁력 제고

- 국내원료의 이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
-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재배 등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 시설자동화 지원, 생산인력난 해소 방안, 노무·세무·회계·경영관리 교육기회 확충으로 자체 경영합리화 촉진

- 지역별, 단체별 연합 또는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마케팅 능력제고

- 지역산 가공원료 공동확보, 지역내 경영·기술지원 클러스트 형성, 공동 판매 방안 등
- 농협, 신지식농업인회 등 생산자단체의 품질관리·브랜드 개발 등 공동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의 역할 제고
  - 시·도별, 시·군별 지역내 농산물 가공산업발전 종합지원계획 수립 유도 및 우수 지자체에 집중적인 지원
  - 지역가공산업발전을 위한 산·관·학 클러스트 적극 활용
    - \* 광주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시범사업 형식으로 운영
  - 농협가공업체의 자체 구조조정 및 민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방안 모색 등 경쟁력 제고 방안 지원
- 농산물가공업체 평가 내실화 및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정부지원 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를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농산물 가공산업 전면적 경영평가 실시('95년도 중)
  - 평가 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정책지원 방안 강구
    - 시설·운영지원 : 연간 30억원 수준 지원예산 확보
    - 원료수매 지원 : 연간 1,000억원 수준 확보 및 인센티브 적용
- 전통식품 및 국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홍보강화
  - 전통식품 베스트 5 선발행사,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우리 술 페스티벌, 향토 문화 행사, 우수 브랜드전 및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등
  - 우리 농산물 및 농식품의 우수성, 안전성 TV 매체 홍보 실시 등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자체의 해외 농산물특판전 등과 연계하여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13)
○ 농촌가공산업 육성 지원	○ 가공산업 현황 및 경영 진단 등 평가 실시 ○ 인센티브 적용 지원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 지원 예산 확보	○ 평가시스템에 의한 인센티브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 지역별, 단체 연합·공동 마케팅 시스템 구축 ○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평가시스템 및 지역별, 단체별 공동마케팅 시스템 정착 ○ 시장기능에 의한 일반 업체와의 경쟁체제 구축 ○ 수출활성화 지원

### 3-5. 농업경영·IT 접목으로 과학영농과 영농효율화를 뒷받침

- ◇ IT를 활용한 지식기반 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
- ◇ 농업경영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경영 효율화 도모

□ 품종, 재배 기술, 시장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종합정보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품목별 종합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기술, 수급 동향, 소비자 기호, 수출입 정보 등을 One Stop으로 제공

- 인터넷, PDA, 휴대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 제공

○ 농업정보활용, 경영정보시스템 이용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경영효율화 유도

- 농업정보 119대학 및 정보화 선도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 확대

□ 농업용 S/W를 적극 개발·보급하여 경영효율 제고

○ 온도·습도, 햇빛, 양액 등 정밀 자동제어 기술을 중점 지원

- 시설채소, 화훼, 버섯 등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

○ 품목별 경영 및 회계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지원

- 경영분석 및 평가, 생산이력 관리, 비료·농약 등의 최적 사용 유도

□ 농식품안전 정보체계구축 및 종합정보서비스

○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위생)·유통·소비와 국경검역이 연계된 농축식품 안전(Traceability) 정보체계 구현

○ 농축식품안전 DB, 농축산물식별코드(RFID), 가축방역GIS정보, 국경검역정보 등의 정보표준화를 통한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운영

□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물류 정보화를 적극 지원

-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지원 강화
  - 홈페이지 운영, 홍보, 대금 결제 및 배송정보 제공 등
- 위치추적 기능 등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화를 적극 추진
  - 물류정보망, 산지와 소비지간 자동 주문 및 배송시스템 구축 등

□ 연구기관, 농업계학교, 농가, 지역사회 등을 연결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구축·운영

- 온라인을 통해 영농, 행정, e-Learning 학습체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혁신 지원
- 지역별로 정보화선도자를 발굴하여 정보화 확산 핵심세력으로 육성

□ 정책지원자금 지원농가에 대한 경영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으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지원 효과 극대화

- 농업정책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여 정책결정 및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활용
- 농가이력 DB 구축으로 중복지원 방지 및 대상농가의 체계적 관리
  - 우선적으로 직접지불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농지, 농업용수, 토양 등 농업자원 정보화 추진 강화

- 농지관리 및 토양분석에서 농작물 작황·생태환경·토양오염·용수관리 등으로 활용범위 확대

### 3-5-1.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농업경영 선진화

#### 1. 농업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보활용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은 품목정보, 동호인회, 인터넷방송 등 정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출하지원시스템(Chulha.net)은 도매시장의 시황과 전망 등 유통관련정보 제공
  - 평균 접속건수(일) : ('02) 5천건 → ('03) 8천건 → ('04.6) 13천건

###### □ 문제점

-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보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인의 실질적인 정보콘텐츠 이용이 미흡
- 품목별 가격과 전문가 분석정보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이용이 어렵고 품목이 제한되어 이용자 편의 저하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농업인도 농업관련지식과 정보를 농업경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또한, 동일 품목생산자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나눔으로써 농가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 추진방향

-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품목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
-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등이 제공하는 농업정보를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보수집 및 검색기능 강화

## 다. 세부추진내용

- 품목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One Stop으로 정보제공
  - 농산물 생산에서 재배·유통과정의 정보(생산, 기술, 가격, 거래량, 수출입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대상품목 : ('04) 20품목 → ('05) 30 → ('06) 40 → … → ('13) 91
    - 작목 및 수요자 중심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체계구축(농진청)
  -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관들이 상호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 농업인 정보이용실태 등 조사를 위해 조사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근거규정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설치
-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정보의 수집과 분류를 위한 통합지식검색시스템 구축
  - 웹상에 산재해 있는 방대한 농업정보를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전문 지식검색시스템 도입 운영
  - 맞춤형 농업기술경영정보서비스 및 영농현장애로기술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관리지원시스템 구축
  - 쌍방향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참여형 커뮤니티, 지식인 디렉토리, 대화형 검색 등 지식공유의 장 마련
- 농업인 정보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제공방식의 다양화
  - 영농현장에서 민원처리결과, 농산물출하·가격·기상속보·가축질병 등 정보를 휴대단말기(PDA),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인터넷 방송을 통해 농업정책, 유통속보, 기술경영 등 VOD 서비스 실시
  - 지역유선방송, 케이블TV, 디지털 위성방송(SkyLife) 등을 이용하여 농산물 홍보, 판매, 교육 등 콘텐츠 연계 제공
- 도매시장 반입량과 산지 출하예상량 등 유통관련 물류정보의 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과 연계하여 검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내실화</li> <li>○ 농림 지식검색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 CP확충</li> <li>○ 단계별 전략계획 (ISP)수립</li> <li>○ 지식검색시스템 구축 ('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검색시스템 운영 및 확충('06~'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검색시스템 운영 ('09~)</li> </ul>

## 2. 농업인 정보화 교육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8부터 농업인 대상 정보화교육을 기초-중급-전문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정보119 농가방문교육, 이동 정보화교육 등 직접 찾아가는 현장교육도 병행하여 추진
  - '03까지 농업인 31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05목표 : 40만명)

#### □ 문제점

-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지속 실시로 기초적인 정보화 능력향상과 정보화마인드 확산에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나타냈으나, 실제 영농에 정보화를 접목하여 경영효율화와 농가소득증대효과 측면에서는 다소 부진
  - 차별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교육콘텐츠도 부족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지식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모르는 농업인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농업개방화에 대비 영농에 정보화를 접목한 농업경영효율화 및 과학화 실현은 불가피한 상태
  -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해야 함

## □ 추진방향

- 정보화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차별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하고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기초교육은 축소해 나가고 영농에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 확대

## 다. 세부추진내용

### □ 정보화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2013 : 20만명)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모를 통해 우수한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과정별 교육비 차등 지원
  - 이론, 실습, 세미나, 워크샵, 현장견학 등 다양한 학습방법 도입
  -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효과, 만족도 등 검증
- 농업경영체의 회계·경영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전문교육 중점 실시
  - 농림수산정보센터(농가경영장부), 농진청(농업경영SW) 등의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부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경영마인드 고취
  - 농업회계처리기준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농업회계 프로그램 개발과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 농업정보119, 정보화선도자 등 현장중심의 교육 확대

- 농업계 대학의 농업정보119 활성화로 지역정보화 촉진 유도
  - 농업정보119 기구화, 119요원 전문화, 농가방문교육 내실화 등 강구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해당지역에서 농업정보화의 중심적 역할 및 기능 강화
- 정보화에 앞서가는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육성('2013 : 1,500명)
  -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미래 지식농업을 이끌어갈 리더로 양성
  - 인근농가교육, 마을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메신저 등 역할 담당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e-Learning 학습체제 구축

○ 경영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버교육 콘텐츠 확충

-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 벤처농업육성, 농촌마을개발, 농산물전자상거래 등
-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농진청, 농업연수부, 농협 등)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

○ 농업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온라인 사이버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유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통한 농업 경영에 정보화 접목	○ 농업정보119, 정보화 선도자 등 현장중심의 교육확대  ○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농진청)	○ 정보화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e-Learning 학습체제 구축

### 3. 농업경영 S/W 및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진청, 대학, 민간 등에서 양돈, 낙농, 한우, 양계 등 약 200여종 품목별 농업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장부기록 관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농가경영장부, 척척농장비서 등)도 개발하여 기관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 보급
  - 최근, 농진청에서 웹기반 경영관리프로그램 개발(낙농, 과수 등)

##### □ 문제점

- 그동안 다수의 농업용SW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현장 사용자 중심의 개발이 미흡하고 농가의 프로그램 사용능력과 인식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함
  - 농업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SW개발에 어려움 야기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농업의 규모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업도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투명한 기록관리(DB화)와 철저한 경영시스템 도입이 중요한 성공요소로 작용

##### □ 추진방향

- 농가경영개선 및 소득향상과 연계 가능한 농장경영S/W구축 사업 추진
- 농업경영에 정보화를 접목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SW를 개발·보급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우수 농업경영체에 대해 우선 지원(개발비 자부담 50%)

## 다. 세부추진내용

### □ 품목별 경영 및 회계 관리프로그램 개발 보급

-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희망농가에 보급
  - 기존에 개발 보급한 농업용SW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 단순한 자료관리보다는 자료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이 지원되도록 개발
  - 농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작업, 판매관리 등을 회계처리와 연계
- 철저한 프로그램 사후관리와 교육을 통해 이용편의성 제고
  - 프로그램 개발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보급, 유지보수 등 과정별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평가를 통해 효과 검증
  - 농업정보119, 정보화선도자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 대한 현장교육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교육지원 체계를 강화
- 전문가 경영컨설팅 제도와 연계하여 합리적 농업경영을 유도
  - 농업용SW를 활용하는 농가의 경영기록정보DB를 이용한 농가경영진단 및 농산물이력관리정보 등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 농업경영체 및 산지유통조직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현대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합한 ERP, SCM 등 e-비즈니스 시스템 도입
  - 참다래, 도드람, 부경양돈 등 기 구축사례를 분석하여 최적의 표준모델 제시
  - 웹서비스 기술을 도입하여 맞춤형 협업기반을 구축하고 시스템간 통합 연계
  - 규모화되고 능력이 있는 경영체, 유통조직 대상으로 사업공모('05 : 3개소)
  - 총 개발비의 50% 자부담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책임운영 유도
-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정보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경영체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
  - 산자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와 공조하고 민간업체와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강화, 세제지원 등으로 정보화도입에 대한 부담 해소

- 농가에 대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우수농가 중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운영부실농가의 과감한 정리작업 추진
  - 홈페이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31.5%) 팜모아 등록제외 및 홈페이지 구축 후 매출이 없는 농가(44.0%) 퇴출방안 등 검토
  - 홈페이지 등급부여 평가기준보완과 재평가를 통해 농가등급 조정
- 홈페이지 운영기능개선과 팜모아(Farmmoa.com)사이트 개편을 통해 본인관리농가(50.9%)의 홈페이지 운영편의 제고
  - 문자전송, CRM, 마일리지, 고객평가제도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 제공
  - 팜모아는 농가에 대한 종합지원사이트로써 메뉴체계 전면 개편

\* 단, 통합몰(A-peace.com) 사이트 개선작업과 병행하여 개편방향 모색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우수농가홈페이지 구축지원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 우수경영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등 기반안정 및 자립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극대화

## 3-5-2.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200여개 119조 농림 투융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과거 농어촌 구조개선대책('92-'02)의 투융자사업(62조원)에서 나타난 부적격자지원,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
- 그동안 농지원부나 논농업직불제 등 부분적으로 농지 등에 관하여 정보화가 이루어졌으나, 대상농가별, 사업별 DB구축은 미흡한 상태

#### < 추진경위 >

-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로드맵 보고('04. 4)
- 장관보고 및 기본계획 확정('04. 6)
- 금년도 마스터플랜 및 파일럿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전용('04. 8, 550백만원)
-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추진을 위한 작업단 구성('04. 8)
-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을 위한 워크샵 개최('04. 11)
-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04. 12)

#### □ 문제점

- 농림사업의 계획수립에서부터 평가·환류까지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처리
  - 농림사업의 정책대상인 농업인에게 자금 신청에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과다 소요
  - 시·도, 시·군에서는 사업별로 수작업 처리에 의한 취합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

- 사업대상자 선정시 대상자의 정책자금지원 실적 등 농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중복지원 등 편중지원 문제 발생
- 각 사업별로 자금집행등 진행사항이 모니터링 되지 않아 사업진행상의 효율적 점검, 위험요소 조기 진단에 어려움
-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와 환류기능이 미흡하여 한번 시작한 사업은 성과에 무관하게 계속되는 사례발생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119조 투·융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함으로써 농림사업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요구 증가
- 수매제와 같은 가격지지 농정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직접지불제와 같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지정책으로 농정이 전환 되면서 농가에 대한 DB 구축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 추진방향

- 농림 투·융자사업의 단계별 진행사항 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유도
  - 대상자선정 및 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한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 정보화 추진의 기본틀을 구축하는 한편 기구축 DB와의 연계성을 통해 구축이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
  - 업무처리의 객관화·투명화뿐만 아니라 업무간소화로 연결되도록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농림사업 계획수립부터 평가환류까지 업무과정을 정보화 처리
  - 농림사업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등 정책대상자가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기본DB, 평가관리DB 등을 구축하여 자료제공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기존DB와의 연계 및 입력되는 부분 중 중복되는 부분은 표준화(코드화)하여 업무간소화로 연결되도록 추진
    - \* 농가기본DB는 향후 도입예정인 농가등록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농가등록제 : '05년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반영)
  
- 정보시스템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기존의 구축된 DB와의 연계를 통해 추진이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
  - 마스터플랜 수립 및 2개 시범사업(논농업직불제, 물류표준화) 추진('04.11~'05. 4)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전체사업으로 확대추진('05이후)
  - 이를 위해 관련기관, 민간전문가로 T/F 구성·운영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림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농림사업 통합정보 시스템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 추진	○ 농림사업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성과평가 연계강화

### 3-5-3. 농지, 농업용수, 토양 등 농업자원 정보화

#### 1. 농지정보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지의 소유 및 경작실태, 농업노동력 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정보 구축하여 운영
  - 143만 농가 농지원부 및 1,550만 필지 농지조서
-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현황에 대한 주제도를 구축하여 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전용업무, 농지이용실태조사, 영농규모화사업 등 농지관리업무에 활용
  - 전국 234개 시군구 : ('03까지)76개완료→('04)32개→('05이후)126개

###### □ 문제점

- 시군구 농지관리업무 담당자의 업무과중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자료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등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어려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농지정보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농지정보 수요 증가
-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연계하여 과학적인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수립을 위한 정보화 욕구 증가
- 영농규모화 사업에 매매정보 수집·제공, 알선 및 신탁 업무 등 농지은행기능을 추가하여 농지 유통화 촉진



□ 추진방향

- 토지종합정보체계 및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
- 농지자료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자료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 지원 확대

다. 세부추진내용

□ 연속지적도 기반에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연속지적도 기반에 농업진흥지역도·농지전용현황도 등 농지주제도 구축
  - 전국 234개 시군구 : ('03까지)76개완료→('04)32개→('04이후)126개
  -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 및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행자부)과 연계 구축
- 공간자료와 속성자료 연계하여 농업진흥지역관리·농지전용업무·농지이용실태조사업무·직접지불제 등 농지관리업무 효율화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농촌행정시스템 운영지원

- 자료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전국 234개 시군구 자료정비 지원
  - 농지원부 발급자료 신뢰성 향상
- 전국 시군구/읍면동 농지관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교육

□ 농촌개발관련 각종 주제도 유지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 농지관리 및 농촌개발관련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지정리현황도 등 농지주제도 유지관리
- 조건불리지역추출 · 농지이용계획수립 · 농촌지역종합개발 계획수립 등 농업정책자료로 활용

라. 추진일정(로드맵)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2008)	3단계('09~)
○ 농업진흥지역도 등 주제도 구축	○ 32개 시군구	○ 126개 시군구	○ 시스템 유지관리
○ 농지원부시스템	○ 50개 시군구 운영 및 자료정비지원	○ 108개 시군구 운영 및 자료정비지원 ○ 농지은행관련업무 등 활용성 확대	○ 시스템 유지관리 활용성 확대
○ 농촌지형정보체계	○ 주제도 활용시스템 구축 및 변동자료 처리	○ 주제도 변동자료 처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주제도 변동자료 처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

## 2. 농촌용수 물관리 정보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1세기 물 부족시대에 대비, 농촌용수의 합리적 개발·이용·보전을 위한 과학적·체계적 물관리 필요성 대두
  -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확정('99.12.30)
  - 건교부는 “수량부문”, 환경부는 “수질부문” 정보화 추진
  - 농림부는 “농촌용수 부문” 정보화 추진 업무 분장
- 현, 농업용 수리시설물 65천여개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대부분 경험에 의해 관리되므로 많은 인력과 경비 소요

#### □ 문제점

- '91년부터 전국 464개 용수구역별로 농촌용수 관련 DB를 구축했으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 시설물 관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자료의 표준화 미비로 타부처 시스템과의 정보공유도 불가능
  - 국무총리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국가NGIS 기본계획」연계하기 위한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 생산기반정보 DB와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않아 농림부 농정 정책 수립방향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DB 자료가 원시데이터(raw data)수준으로 구축되어 각종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함께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활용도가 저하 (가공 데이터 구축 필요)
- 농업용 저수지는 전체 농업용수의 60%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뭄 및 홍수 대비 체계적인 저수지의 저수위 측정자료 확보 미비
  - 대부분 수위계측기 없이 사람의 목측에 의해 관측(설치비율 1%미만)
  - \* 당초 농림부 투융자계획 수립시 자동수위계 설치비 미반영

-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의 48%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용수에 대한 시·공간적 물 흐름 정보 구축 필요
  - 실시간 자동수위계측시스템과 전국 464개 용수구역별 용수 수급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관개네트워크 구축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조정 및 국가NGIS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정보화 기술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 확대 가능성
- 물관련 부처(건교부, 환경부 등)간 정보공유 추진
  - 표준화된 자료의 생산 및 관리를 통한 물관련 부처간 정보 공유로 자료의 중복생산 방지
- 농촌용수 관련 DB/GIS의 통합시스템 구축
  - 기능별(지표수, 지하수, 수질 등)로 추진되어온 DB/GIS 작업을농촌용수 자원정보시스템으로 집중시켜 통합 관리
- 통합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권역별 농촌종합개발 수립
  - 권역별 종합계획에 따라 단위사업을 검토·연계함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수립지원

## 다. 세부추진내용

- 국가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과 NGIS 기본계획 등과 연계 추진
  - 시스템 구축 방향, 자료의 표준화지침, 기본도 선정 등
    - 기본도 변경 : (당초) 1/25,000 → (변경) 1/5,000
- 물 관련기관간 정보공유를 물관리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2002.12월에 확정된 건교부 「물관리정보 표준화 기본계획」 따라 추진
  - 농촌용수관련 공유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개발

- 생산기반정보 DB와 통합 연계 운영을 통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진흥지역, 시설물 이력정보 DB와 연계 활용
- 관련기관, 지자체와 대 농민정보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과 정보 인프라 조성
  -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정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용자 교육 실시 등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기반 조성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시스템구축	○ 자원조사실시('05) ○ DB구축 ○ 시스템개발	○ DB구축('08년) ○ 시스템개발('06년)	○ DB갱신·보완 ○ 시스템보완
○ 기관간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 공유데이터구축 ○ 공유시스템개발	○ 공유데이터구축('06년) ○ 공유시스템개발('06년)	○ 공유데이터갱신·보완
○ 지자체,농민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개발	○ 홈페이지구축('06년) -홈페이지운영('07년)	○ 홈페이지 운영
○ 정보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체계구축	○ H/W조성	○ S/W 및 서버조성('07년)  ○ 유지관리팀 구성운영 ( '07년)	○ 시스템 및 DB 등 유지관리

### 3. 농업환경 정보DB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와 연계한 필지단위 토양환경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 곤충, 농업해충 표본 및 관련영상·문헌자료 통합관리 및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 문제점

- 농업기술센터와 효율적인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토양검정 정보가 신속히 갱신되지 않음
- 곤충 및 해충관련 정보량에 비해 보호정보의 관리프로그램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업토양정보를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농업적 활용성을 극대화 하도록 추진
- 곤충표본(약33만점) 및 농업해충 영상·문헌자료의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의 년차별 체계구축

#### 다. 세부추진내용

##### 농업토양환경 정보DB화 및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 세부정밀토양도 및 농업토양관련정보(물리적주제도, 토지이용추천, 적지적작, 적성등급 등)
- 행정구역별 농업토양통계정보, 필지별 토양관리처방정보 등

□ 곤충(해충)자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DB화

- 농업해충 문헌자료 DB개발
- 농업해충 표본, 이미지, 문헌검색시스템 개발
- 곤충표본, 이미지 및 문헌자료 상시관리시스템 개발(분류 코드, 자료입출력 및 추가수정 등)
- 곤충표본관 및 곤충자원 포털시스템 개선보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업토양환경 정보 및 곤충 자원 DB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작성</li> <li>○ 농업토양정보 종합 관리시스템 작성 (40개시군)</li> <li>○ 지적도 연계시스템 구축(5개시군)</li> <li>○ 곤충자원포털 시스템구축('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작성 보완('05~'06)</li> <li>○ 농업토양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완성('05)</li> <li>○ 지적도 연계시스템 구축확대('05~'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도 연계시스템 완성</li> </ul>

## 4.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 공간 확충

### 4-1. 경제림 육성 및 산림의 효율적 이용

- ◇ 경제림을 집중 육성하여 국산재 공급기반 구축
- ◇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

#### □ 산지 자원화를 위해 경제림을 집중 육성

- 인공 조림지 180만ha를 육성하여 국산재 공급기반 구축
- 경영목적에 따라 조림 및 육림 방법을 차별화
  - 펄프, 보드류 등 소경제 생산목적의 산림은 단벌기(短伐期) 경영 유도
  - 건축, 가구 등 대경제는 벌기령을 상향조정하여 장벌기 경영을 유도

#### □ 숲가꾸기 5개년 계획('04~'08)을 수립하여 우선 시급한 100만ha (연간 20만ha)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집중 실시

- 산림의 자원가치와 생태 환경적 편익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숲가꾸기 추진
-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 조직 등 지원체계 보강
  - 산림자원관리법(가칭) 제정 및 산주 부담금 감면 등 추진
  - 숲가꾸기 기술 개발 및 산림사업 이력 전산화 추진

#### □ 전국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체계를 구축

- 기능에 따른 차별화된 산림관리로 다양한 기능의 최적 발휘
  - 6대 기능 : 수원함양, 재해방지, 생활환경, 산림휴양, 생태보전, 목재생산
- 임도를 지속 확충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06년까지 완료

## 4-1-1. 경제림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70년대 치산녹화사업 추진으로 국토의 완전녹화를 달성하고, '80년대부터 산지자원화 정책 추진
- 「제4차 산림기본계획」 및 「21세기 산림비전」에 경제림 조성 목표('30년까지 350만ha)를 제시하고 실태조사 실시('98~'01년)

#### □ 문제점

- 녹화는 되었으나 30년생 이하의 나무가 전체 산림면적의 65% 차지 - ha당 입목축적이 73m<sup>3</sup>으로 산림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
- 목재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나 공급여건이 불투명하고, 국산재는 시장 형성이 미흡하고 품질이 낮아 활용도 저하
- 사유림은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투자의 장기성 등으로 대부분 방치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목재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나 공급여건은 더욱 악화 될 것임 - 목재자급률이 6%에 불과하여 목재수요의 대부분을 수입목재 의존
- 국제적으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점차 증진될 전망

#### □ 추진방향

- 「경제림 육성단지」를 지정하여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
- 육림사업을 확대하고 생태적인 조림·육림사업 방법 정착
- 조림권장 수종 및 주요 수종별 조림방향 재정비



## 다. 세부 추진내용

### □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

- '04년까지 「고급재생산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별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집중 실시
  - 사유림은 임업진흥권역을 중심으로 지정
  - 국유림은 「경제림 육성을 위한 산림실태조사」와 기존의 산별·권역별 시범사업단지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정
- '07년까지 경제림 육성단지별로 경영계획 수립 등 제도 정착 도모
- '30년까지 임업경제 여건과 임지 생산력 등을 감안하여 확대 지정

### □ 조림·육림사업 확대

-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연 20천ha→ 30천ha)
  - 경제림 확보와 영급구조 개선을 위해 조림 확대
- 산림의 가치와 건강도 제고를 위한 천연림보육, 간벌 등 육림사업 확대
  - 간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사업 확대
  -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 추진
    - 산림경관을 핵심 자연경관으로 육성
    - 방재개념을 도입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
    - 병해충 및 재해우려 지역의 집중 관리
    - 목재생산 이용계획에 따라 투자·관리를 차별화
- 숲가꾸기지원팀 구성 운영
  -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임업지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 사업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점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지방청, 지방자치단체의 숲가꾸기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및 현장과의 교류 실시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특색사업 확대
  - 울진 금강소나무림, 장성 편백림, 암년도 해송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숲 육성
- 리기다소나무림 등에 대한 계획적 수종개량 및 육림관리
  - 임지생산성, 임지의 용도 등을 감안 별채수준 결정
  - 일정량의 원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별채
  - 갱신은 임상형태 및 토양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추진(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한 작업요령 적용)
  - 별채지는 임지여건과 산주 희망에 따라 경제수, 유실수 등 식재
- 향토수종인 소나무·참나무를 집중 육성

## □ 조림·육림 사업방법 개선

- 자연친화적인 생태적 조림·육림방법 개발·보급
  -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조림방법과 복층림·혼효림 등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
  - 수종별·단계별로 세분화된 육림기술 개발
- 경영목적에 따라 조림·육림방법 차별화
  - 펄프, 보드류 등 소경제 생산목적의 산림은 단벌기 경영
  - 건축, 토목, 가구용재 등 대경제 생산목적의 산림은 지역특성과 이용목적에 맞게 벌기령을 상향조정하여 장벌기 경영유도
  - 표고자목 경영임지는 맹아갱신으로 참나무림 조성
  - 수실, 수액, 약용수종 등 특용수 재배 산림도 병행 조성
- 설계·감리제도 확대 및 조림·육림사업 설계 강화
  - 조림·육림사업 설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현행 산림사업 모니터링 제도를 산림건설탕제도로 개선

## □ 조림수종 정비

- 조림수종을 기후대별 대표수종으로 단순화하고, 수종별 조림방향 정비(축소, 확대 등) 및 침·활엽수의 균형이 맞도록 조림
  - 임지 적응력이 높고 경제적 가치가 큰 수종을 주수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등 8개 수종)
  - 특수용재 생산, 산림생태계 안정적 관리, 자연친화적 자원조성 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부수종(12개 수종)을 조림

□ 한계농지에 대한 산림자원 조성 촉진

- 한계농지의 산림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한계농지에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류 등 장기성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허용
  - 한계농지에 나무를 심고 가꿀 경우 지목은 농지로 계속 존치하되, 벌채허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손쉽게 벌채·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조림 유도
- 농산촌 관광자원 조성과 연계하여 산림 조성 촉진

□ 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 확립

- 활엽수 채종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개량종자를 생산 공급
  -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우량종자 공급방안 수립
-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종묘 국가관리체계 확립 및 산림식물에 대한 신품종 심사체계 강화
  - 종자 국가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종자직영 채취를 확대
  - 불량 산림용 종자의 유입방지 대책 강구
  - 야생화, 난 등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산림식물 등록품목 관리계획 수립
- 양묘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신품종 개발 보급 촉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경제림 육성	- 고급재생산단지 지정 - 설계감리 제도 도입	- 단지별 관리계획수립 - 조림·육림 사업 방법 개선 및 예산 확대	- 단지별 산림관리 계획에 따라 조림·육림사업 집중 실행
○ 종묘관리체계 개선	- 묘목생산기반 조성 (시설 묘포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건전묘 생산 확충	- 우량 종자 안정적인 생산·보급

## 4-1-2. 경제림 육성기반 정비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산촌의 인력난에 대처하고 임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도 시설 확충, 임업기계화 및 임업기능인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임도 총연장('03년) : 15,510km(임도밀도 2.4m/ha)
  - 임업기능인 영림단 양성('03년) : 512개 단 5,969명

#### □ 문제점

- 임도망 조기 확충을 위해 낮은 단비로 많은 물량의 임도를 시설한 결과 집중호우시 일부 임도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
- 임업기계화는 지형적 여건과 빈약한 산림자원, 임도의 미비 및 전문 기술 인력의 부족 등으로 부진한 실정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견실한 임도시설 필요
  - '30년까지 41,600km(임도 밀도 8.5m/ha)
- 임업기계화 촉진 및 전문 노동력의 확보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기술적으로 우수한 산림사업 수행

#### □ 추진방향

- 인력난에 대처하고 임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임도의 대대적인 구조 개량사업 추진
- 임업기계화 및 전문기능 인력 양성의 지속적인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따라 건설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

-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단비를 현실화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설한 임도를 경제림 육성단지 등을 중심으로 시설
  - 국고보조 임도는 ‘간선임도 설치계획’이 수립된 노선에 한하여 설치
- 자원가치 또는 경영방식에 따라 시설규모·형태 등 차등화
  - 민유임도의 경우 산주부담금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
  - ‘05년부터 국유임도 유지는 민간에 위탁하여 사후관리 강화
-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 확대
  - 생태·환경적으로 건설한 임도시설을 위한 기준 정비 및 단비 현실화
  - 국유임도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임도시설 감리제 확대
  - ‘06년까지 기존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을 완료
- 임도시설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기존 임도는 철저한 유지·관리로 피해방지, 경관유지 및 활용도 제고
  - 재해발생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임도관리원을 배치하고 ‘임도관리 민간인 모니터링’ 제도 실시
  - 임도시설 DB 및 GIS를 이용한 임도노선 선정 등 임도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관리

### □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작업시스템 개발의 지속적 추진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임업기계화 촉진
  - 경제림 육성단지내에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지정·운영(10개소)
  -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10개소)
  - 전문화된 임업기능인력 양성으로 기계·장비의 활용도 제고
  - 산악지형과 중·소경제 생산에 적합한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외국의 고성능 장비 국산화 추진
  - 임업기계·장비 실연회를 매년 개최하여 임업의 기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유공자 표창 등 실시

□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화 유도**

- 임업기능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 간벌 등 육림사업에 대비하여 기능인 영림단을 신규 조직
  - 산림사업의 기능인 영림단 실행 비율을 제고하여 전문화 촉진
  - 임업기능인 훈련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화된 교육기능 강화하여 전문훈련기관으로 육성
  - 임업기능인의 교육·훈련지원을 확대하고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임도시설 확충(누계)	136km (15,646km)	1,580km (17,226km)	3,230km (20,456km)
○ 임업 기계장비 보급	31천대	124천대(155천대)	155천대(310천대)
- 임업기계화시범단지	- (5개소)	3개소(8개소)	5개소(13개소)
- 임업기계지원센터 설립	1개소(5개소)	4개소(9개소)	5개소(14개소)
○ 임업기능인영림단 육성	879명	3,516명(4,395명)	4,395명(8,790명)

### 4-1-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국가 및 현장차원에서 이의 실천을 위한 정책 추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른 예산구조 개선과 조기 정착을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실천 노력 강화
- 기능별 산림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산림가치 제고 필요

##### □ 문제점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설정이 미흡
- 산림생태계를 고려하는 등 산림경영 비용이 증대됨에 따른 예산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다양한 국민수요 부응에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국제적으로 UNFF, 몬트리올 프로세스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국가적 실천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적으로는 생태·환경적인 산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따라서 국가 및 현장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천을 강화하고 산림통합관리권역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천 노력 강화
- 전국 산림을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산림관리

## 다. 세부추진내용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의 패러다임 확립과 실천 노력 강화
  - 목재생산 중심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현장에서 실천 강화
  - 조림·육림·벌채 등을 생태계를 고려한 저비용 구조로 전환
  - 산림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참여 보장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라 예산구조 개선
  - '07년까지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예산편성시 반영
-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천 노력 강화
  -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7개 기준 27개 지표를 우선 선정하여 활용
  - 산림자원 조사체계 및 영림계획 수립 등에 반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우리나라 적용가능한 기준과 지표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의 건강도와 활력도 등을 공표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인증제도 시범 실시
  - 경영시범림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도입 방안 도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천 노력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국제기구 등에 제출



- 현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기반 및 평가체계 구축
  - 전국의 3개 경영시범림을 통해 기준과 지표의 적용가능성 등 연구
  - 경영시범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공무원, 임업·환경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역협의체 구성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식 제고
  - 산림윤리강령 제정 및 최적 산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실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산림을 권역별 통합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통합관리 권역’ 설정 및 시범사업 추진
  - 전국 산림을 경제적·생태적 특성에 따라 17개 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 및 관리목표 마련
  - 산림통합관리권역에 대한 지자체·임업인 등 의견 수렴
  - 권역구분에 사용된 관련인자 등에 대한 DB 구축

## □ 산림의 기능별 관리체계 구축

-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기능 구분 및 관리체계 구축
  - 일반국민·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산림지리정보 시스템(FGIS)를 활용하여 기능 구분
- 산림기능 구분에 따른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 산림기능을 6개 기능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의 타당성 및 중첩되는 산림기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특정지역의 주된 산림기능 확정
  - '04년에 1개 국유림관리소(홍천)의 산림기능구분도를 제작하고 '06년부터 현지검토 및 시범적용

## □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 확립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체계 조기 확립
  - 산지이용 수요를 보전·준보전산지 구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
  -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보전
  -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자연경관 유지, 재해예방 및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 유도
  - 채석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의 중단·방치된 채광 및 채석지는 자연친화적으로 복구
- 산지이용 구분 정비
  - 산지관리 정책방향과 산지이용수요 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지이용 구분에 반영
  - 생태·환경 목적의 보전산지 확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기존 산지이용구분 조정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 세부추진 방안 및 평가체계 구축	- 기준과 지표 선정 및 전국 단위 모니터링 실시 - 시범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정착화 및 사업발굴

#### 4-1-4. 임업경쟁력 제고 및 임업인 소득증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우리 산림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68%로 간벌·소경재가 대부분으로 재질 및 제재수율이 낮아 이용이 저조
  - 건조, 방부·방충 기술 미흡으로 수요자는 외재를 선호
- 그동안의 임업은 ‘소득’ 보다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어왔고, 산림소유규모의 영세성과 저수익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
- 임산물 수출은 값싼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 저하

###### □ 문제점

- 목재자원이 빈약하여 목재자원 보유국의 수출규제 및 수입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내재 공급에 차질 우려
- 밤, 표고 등 일부 품목 외의 다양한 소득품목 개발이 미흡하고, 수출시장의 편중화, 품목의 집중화 등으로 경쟁력 열세
  - 일본·중국 등 상위 5개국 91%, 밤·송이 등이 75%를 차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그동안 치산녹화 및 산지자원화 추진으로 국산재 이용시기가 도래
- 목재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정적인 목재수급기반 마련 및 목재자원 보유국의 무기화에 대비한 목재자원 비축
- 국산재 이용·가공 기술의 개발, 간벌재 이용 촉진 및 목재문화진흥을 통한 목재수요 확대 등 목재산업 육성

- 밤·표고를 소득 주력품목으로 육성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조경수·분재·야생화 등 관상(觀賞)자원을 새로운 소득 품목으로 개발

#### 다. 세부추진내용

##### □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인 수급기반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벌채시기가 도래한 국산재의 수요처 확보 및 유통체계 개선
  - 국내목재의 수종별·영급별 임목축적을 조사하여 장기 안정적 목재 공급량 분석
  - 목재수입의 용도별, 국가별, 수입체계, 수입대행업체 등 실태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정책 대응력 제고
- 산지목재비축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 벌기령이 경과한 산림내의 임목을 벌채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와 계약체결 후 지원
  - 독립가·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정착 도모
- 자원절약 등을 위해 간벌 등으로 발생하는 산물 수집비용 지원
  - 「경제림 육성단지」 내 육림사업으로 생산된 산물
  - 산불·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지에 대한 산림사업으로 생산된 산물
  - 수원함양보안림 등 법정제한림내 산림사업으로 생산된 산물 등
- 여주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사내 분사제 도입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동해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운영조직을 간소화·최소화하여 조기에 정상 운영 추진
- 목재집하장은 간벌재 가공·유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경쟁력 제고

## □ 이용·가공기술 개발과 수요 촉진 등 목재산업 육성

- 목조주택 대중화를 위한 기준과 규격 개발 등을 통해 저변 확대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목공예업체를 단지화하고, 목공예품의 산업화를 촉진
- 목재방부·방충 처리기준을 표준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부·방충처리의 필요성, 효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을 OECD 기준에 맞게 환경친화적으로 개정
- 제재목, 목탄·목초액, 칩, 원주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지원 확대
- 제재 및 보드류 산업 등에 대한 국산재 수집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조건 개선
- 목재방음벽, 담장, 보도블럭 등 야외시설물을 새로운 국산재 수요산업으로 육성

## □ 목재문화진흥을 통한 목재수요 확대

-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수요 증가에 따라 목제품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목제품 야외전시장 조성 추진
  - 목제품, 목조주택, 목재조형물·구조물을 종합 전시하고 목재산업체 홍보관 등을 배치하여 목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
- 목재문화포럼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연구 강화

□ 산림소득 전략품목 육성

- 밤·표고산업육성 종합대책 추진
- 새로운 유망 소득품목인 장뇌삼, 약용식물 및 개발 잠재 가치가 큰 송이, 산머루, 오갈피 등의 집약 재배를 위한 생산단지 조성
- 조경수·분재 등 산림관상자원의 수요촉진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개최 확대 등(분재·난대전 등)
- 단기소득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임산물 수출 확대

- 수출환경 변화에 적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 DDA협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수출 임산물 생산기반 안정화
  - 수출 임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로 수출환경 변화에 대처
-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수출품목 개발을 위한 지원
  - 수출시장 다양화를 위한 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한국산 임산물의 우수성 및 차별성 홍보강화로 이미지 확립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목재수급 기반구축	목재자급율 6%	6%('05년) 유지	10%로 확대('10)
○ 목재산업육성	목재건축산업실태조사	기타 목재산업 실태조사	-
○ 목제품 야외전시장	전시장 조성 설계	3개소 조성	권역당 1개소 조성
○ 기술개발, 품질관리	기술개발 및 제도 보완	제도정착 및 품질관리확대	-
○ 산림소득품목육성	생산기반조성	유망소득품목 개발 보급	유망소득품목지속 지원
○ 임산물 수출확대	수출기반 정비	수출기반 안정화	수출확대 지속 지원

## 4-1-5. 남북 및 국제 산림협력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북한 산림면적의 18%인 163만ha가 황폐지
  - 조림대상 153만ha, 사방대상 10만ha(인공위성 영상분석, '99. 5)
- 안정적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7개국에 98천ha 조림 실시('93말)
  - 호주, 뉴질랜드, 인니, 베트남, 솔로몬, 중국, 파라과이

#### □ 문제점

- 북한 산림 황폐화에 따라 홍수 및 가뭄피해로 산림의 환경·생태자원 상실에 의한 한반도 국토 이질화 심화
- 대외협력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외교통상부, KOICA전담)
- 중국·몽골 등의 황폐산림의 복구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
- 현재 연간 1만ha 수준의 해외조림으로는 장기계획상 목표달성이 어렵고,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간으로 참여업체의 부담 가중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북한 황폐산림 복구는 민간차원에서 당국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 사막화방지사업, 전문가과견, 공무원 초청훈련 등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산림환경 협력을 강화
- 산림자원 보유국 등과의 양자협력의 내실화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 남북한 산림협력 강화

- 임진강유역 등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묘목, 양묘장 복구 및 금강산관광특구 병해충방제 및 산림복구
  -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북한측 상류지역의 황폐산림을 지원하는 ‘임진강유역 황폐산림 복구사업’ 적극 추진
  -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산림청·강원도 및 민간단체 공동사업에서 황폐지 복구를 포함하는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 단순히 묘목과 자재를 지원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양묘장 복구 및 복구기술 전수 등을 병행하여 자체묘목 공급과 복구능력 배양
- 국제적 관심사인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사업 추진
- 장기적으로 북한 황폐산림 실태 공동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 황폐지에 대한 사방사업과 조림대책 추진
  - 농산촌 대체연료 공급대책 수립 병행 추진

### □ 국제 산림협력 강화

- 다자간 국제회의에 전문가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
  - UN 산림포럼의 「산림협약」 제정논의에 적극 참여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등 국제규범화 대응계획 마련
  - 국제협력 경험자 및 어학능통자 위주로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 자원보유국 및 개발도상국가와 협력 강화
  - 양자간 임업협력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
-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추진
  - 개도국 공무원 초청훈련, 전문가 파견, KOICA 프로젝트사업 확대 등



-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 사막화방지사업에 참여
  - 사막 녹화수종 및 황폐지 복원기술 등 중국·몽골과의 입업협력 강화
  - 사막화방지협약,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 □ 해외조림 및 산림개발 지원

- 해외조림사업을 내실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해외조림 진출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자율(3%) 인하, 개발조사비 등 국고보조 지원 및 담보물 취득요건 완화 추진
- 에너지·목재 다소비 업체(탄소배출업체)에 해외조림 참여 유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남북산림협력	-남북협력기금 지원 8억원	-남북협력기금 지원 80억원	-남북협력기금 지원 94억원
○ 사막화방지사업 (몽골 남고비사막)	-녹색자금 지원 1억원	-녹색자금 지원 24억원	-녹색자금 지원 25억원
○ 해외조림 확대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율 10% ※ '03년까지 10만ha	해외조림율('07) 14% ※ '07년까지 14만ha	해외조림율('13) 26% ※ '13까지 25만ha

## 4-1-6. 임업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산림분야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산림정책과 임업을 주도할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필요
- 국가과학기술 혁신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기반기술과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실용화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필요
- 산림분야의 사회적 수요 증대 및 현안과제에 대비하고 국제적 논의대응에 필요한 정책연구 강화
- 21세기 지식·정보·경제사회를 주도할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개발 요구

#### □ 문제점

- 산림과학기술개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래수요의 정확한 예측에 의한 연구추진이 필요하나 완벽한 미래수요 예측 곤란
- 연구개발 기간의 장기성, 기술개발 성과 중 외부효과 비중이 높아 민간부문 연구투자가 미흡하여 국가주도 불가피
- 세계적 경쟁력을 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추진 체계의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제4차 산림기본계획, 산림비전21, 농림과학기술 중장기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연계된 R&D 종합계획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2006~2015) 수립 추진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 배분으로 기술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 임업기반기술의 고도화 및 신기술 접목으로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산·학·연 협력강화로 민간투자 유도 및 임업기술의 산업화 촉진
- 연구개발의 중심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주도적 역량 강화

## 다. 세부 추진내용

### □ 산림과학기술개발 방향 설정

-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우량품종 육성, 자연친화적 생력화 산림육성기술개발, 고품질 고부가 단기소득원 발굴 보급을 통한 산림생산성 향상으로 산림의 경제기능 제고
-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생활녹지 조성, 산림재해 방재, 수자원 함양 및 산림휴양 기능증진 기술개발로 산림의 환경기능 제고
- 생물공학을 이용한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촉진, 국산재의 신수요 창출 및 목재자원의 순환이용 기술개발로 임업의 첨단산업화
- 산림자원정보의 체계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 및 평가체계 구축, 산림분야 국제논의와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으로 산림정책 지원기술 개발 강화

## □ 산림과학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

### ○ 연구기획·평가·예산 배분 기능 강화

- 수요자와 현장 위주의 연구 기획·추진
- 정확한 미래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과제의 사전심사제도 강화
- 우수연구과제 및 연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확대

### ○ 기본계획 추진에 알맞은 연구조직 운영

- 지역연구 활성화 및 특화를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직역량 강화  
(4개 시험장을 4개 연구소 체계로 개편)
- 현안과제에 대한 신속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한 탄력적 조직 운영
-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물 품질시험팀 신설

### ○ 산·학·연·관 역할분담 및 공동연구 확대

-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원)·대학·기업 참여 연구과제 확대
- 지역 산림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 산림과학기술개발 인프라 강화

### ○ 연구개발 재원 확대 및 연구기반 현대화

-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현대화·첨단화

### ○ 체계적 연구지식의 구축, 중복투자 방지, 정보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 구축

### ○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

-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범정부차원 이공계 육성대책과 연계 추진
- 중국 임업과학연구원, 독일 연방임업연구원 등 외국 연구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연구자 교류를 통한 전문가 양성

○ 산림과학기술개발의 실용화·현장화 및 교육훈련 강화

- 기술보급 및 정보활성화를 위한 임업기술컨설팅제 도입
-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술장터’ 운영, 연구성과에 대한 현장설명회 등으로 새로운 임업기술정보의 보급 확대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 위탁교육 등 교육기회 확대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산림과학기술 기본 계획 수립	- 중점연구 분야 및 핵심기술 선정	- 정밀기술지도 작성 - 기술수준별·단계별 달성도 평가 지표개발	- 예상 산물 생산
○ 추진체계 구축	- 예산배분의 선택적 집중 - 연구부서간 연계강화	- 연구과제 사전심사 제도 강화 - 연구단계별 평가제 도입 - 연구와 정책간의 연계 강화	- 평가제의 선진화 - 인센티브제도 확대 - 연구기획 전문가 pool 운영
○ 산림과학기술개발 인프라 강화	- Post-doc 및 인턴연 구원 제도 활성화	- 정보화 개념도 작성 - 연구시설·장비 현대화 - 개발기술 보급 채널 다양화	- 연구네트워크 구축·운용 - 사이버 연수시스템 구축

## 4-2. 산림경영 개선

- ◇ 국산재 이용 촉진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
- ◇ 산림경영과 산지소유를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차별화

-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영세성·저수익성의 사유림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경영의욕이 있는 독립가·임업후계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산림조합은 산주에 대한 기술·정보제공 기능위주로 개편
- 국산재 수집·이용을 촉진하고 폐목재 활용('02년 32%)을 촉진
  - 국산재 수요에 대비하여 주요 수종의 이용·가공기술 개발
  - 환경개선 및 자원절약을 위해 폐목재 및 간벌재 수집비 지원
  - 목재수요 촉진과 목재문화 진흥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
    - 목제품 야외전시장 조성, 목재 방음벽·담장 등 국산재 신수요 창출
- 재해예방과 위험분산을 위한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방댐 등 산림 수해방지시설을 확충('12년까지 4,000개)
  -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 관리체계 확립
- 민간부문의 산림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제도 개선
  - 산림경영기간 종합토지세 및 경영산림의 상속세 면제 추진 검토
  - 산림경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단순 소유자는 지원 배제
    - 용자는 경영체별 종합지원, 조림·육림 등 공익성 사업은 무이자 지원

## 4-2-1. 사유림경영 촉진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소유규모의 영세성, 부채산주의 증가 및 생산기반 미비로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곤란
  -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 2.1ha(1ha미만 전체 산주의 65.1%)
  - 부채산주 비율 : ('97) 46% → ('99) 47% → ('02) 48%
- 독립가는 고령화, 임업후계자는 단기임산물 분야에 집중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농산촌 인구감소로 신규 후계자가 부족하여 사유림 임업 선도주체 육성에 어려움

#### □ 문제점

- 전업적 임업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0ha이상의 산주가 전체 산림 소유자의 0.3%(6,270명), 전체 사유림 면적의 18%에 불과
  - \* 독립가, 임업후계자의 산림면적 : 133천ha(전체 사유림면적의 3%)
- 영세규모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산주에 대한 산림사업 홍보 미흡 및 체계적인 임업기술지도 부재로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욕이 전반적으로 저조
- 임업의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창출에 부합하는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개발 및 소득 안전망 구축이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산림의 다양한 환경서비스기능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사유림의 경제적 가치 및 환경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임.
- 산림관리의 장기성 및 저수익성으로 인하여 사유림 투자가 침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산림의 질적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

## □ 추진방향

- 발전가능성과 경영의욕이 있는 전문화된 산림경영인을 사유림 경영주체로 육성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
- 산림경영이 부진한 사유림을 대상으로 대리경영 및 협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사업 안내 및 임업기술지도 강화

## 다. 세부추진내용

### □ 「전문임업인」을 중심으로 경영 규모화 및 전문화 촉진

- 산림소유 규모가 10ha 이상 산주들을 중심으로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 일정한 산림면적 이상을 소유한 독립가와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후계자를 사유림 경영주체로 육성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경우 경영인 육성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제반 산림사업 대상자 선발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
- 산림조합은 산주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하고, 임업인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편
  - 임업기술지도사업에 대한 목표관리제 추진 및 기술지도원 업무평가 용역실시 후 임업기술지도원 제도개선 마련
  - 산림조합 개혁 방안을 확정·추진하고 시·군 조합은 대리경영 지도 지원 및 산림사업 전문시행조직으로 육성

### □ 세제·금융은 임업의 장기·저수익성을 보완하고 사유림경영의 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산림경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임업인에게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단순 소유자에게는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차별화
- 산림경영기간 동안의 종합토지세 면제 및 경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상속세,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 회사 등 법인체의 산림경영 참여 및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 용자는 품목별·기능별 지원에서 경영체별 종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익성이 큰 조림·육림·임도는 무이자 지원 추진



## □ 소득안전망 구축 및 신규투자재원 발굴

- 산림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산림재해보상체계 마련
- 산림의 공익적 특성에 따른 임업소득 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직불제 도입 추진
- 산림의 직·간접적 혜택을 재원화하여 산림에 재투자하는 방안 마련
  - 목적세로서 수원함양세 및 탄소흡수세 신설 추진
  - 수계관리기금의 일정부분을 산림에 재투자하는 방안 강구
    - \* 수계관리기금을 산림사업에 재투자하는 근거 이미 마련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4년 개정)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전문 임업인 확대 육성	- 독립가 : 5명 선발 - 임업후계자 : 45명 선발	- 독립가 : 매년 10명 선발 - 임업후계자 : 매년 190명 선발 - 대리경영사업의 실적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 협업체 개선대책 추진 - 산주와의 만남행사 개최	- 독립가 : 40명 선발 - 임업후계자 : 700명 선발 - 대리경영, 협업경영업체 육성 : 매년 10개씩 지원
○ 세 제 · 금 융 조건의 지속적 개선	- 5~5.5%대의 정책자금을 4%로 인하	- 정책자금을 15%대로 인하 - 경영산림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추진 - 기업 산림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 상속세,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 소득 안전 망 구축	-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 강구 - 법령정비, 재정·인력 확보	- 산림부문에 산림재해 공제 시범실시 후 전면 도입(단기소득 임산물 우선 실시)
○ 신규투자재원 발굴	- 수계관리기금을 산림부문 투자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강구 - 녹색자금을 활용한 녹색교육 추진	- 수계관리기금 산림사업 활용 대책 마련 - 녹색자금을 활용, 임업인 복지 증진사업 지원	- 목적세 신설로 통해 마련된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 모델 제시

## 4-2-2.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많은 기상특성과 경사가 급하고 토질의 응집력이 낮은 지형·지질의 특성상 산사태에 취약
  - 최근 5년간 연평균 산사태발생 : 964ha(인명 피해 16명)
- 산불은 최근 5년간 평균 540건이 발생하여 연간 약 6천ha의 산림피해

#### □ 문제점

- 사방댐 등 사방시설은 산사태 방지에 필수적이거나 재정 형편상 대폭 확대가 어렵고, 지자체의 사방 전문조직이 축소(폐지)
  -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8개소(88명)에 불과하며 강원, 충남의 경우 '98년 사방복구 조직이 폐지됨
- 산불방지의 공익적 중요도가 높음에도 국고지원은 미흡한 실정
  - 국고보조율 30%, 감시원 인건비(연간 400억원)를 지방비에 의존
-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말 비상근무가 확대되어 공무원 동원에 의한 산불예방 및 진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 산불과 '02년 “루사”와 같은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산사태 피해도 더욱 늘어나는 추세
- 건조일수의 지속으로 산불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대형화 되는 반면 농산촌 인력부족 등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

## □ 추진방향

- 과학적인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산지피해 최소화
- 시·도 등의 산림재해관리조직 및 인원 확충
- 산불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산불대응체계 확립
- 산불전문진화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등 전문인력 및 첨단장비 확충으로 효율적인 진화체계 구축

## 다. 세부추진내용

### □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관리 강화

-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이용하여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를 조사하고 산사태 위험지 도면 제작
- 산사태 위험지 도면을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 제공
  - 거주지 또는 주변산림의 산사태 위험도를 인터넷으로 제공
  - 시장·군수는 기상예보에 따라 산사태 예보 발령 근거로 활용
-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해 재해위험지(산사태위험지)로 지정하고 예방사방 실시
-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인력을 88명에서 130명으로 확충

### □ 사방댐 등 사방시설 확충

- 사방댐 시설시 최근의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사방댐 등 사방사업 물량 확대 및 설계기준 강화
  - 규모를 현행 30~50m에서 20~100m로 확대
  - 사방댐과 접속되는 하류는 야계사방과 연계 시공

- 전국 사방사업 대상지 일제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사방시설 확충 장기계획인 「범국민적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예방사방 실시
- 사방사업 실행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홍보 강화
  - 기존 사방댐은 준설을 실시하여 재해예방능력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사방사업 공감대 형성

## □ 과학적인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

- 산불관리종합시스템 구축
  -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 시스템 구축 및 산불위험예보 및 확산예측모델 개발
  - 중앙과 지방의 산불대책본부 및 헬기·진화대를 연결하는 산림종합무선 통신망 구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 방송광고, 114안내, 산불방지 CI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 산악관련단체·시민단체 등과 주민이 참여하는 예방활동 강화
- 논·밭두렁, 도로변 등 산불취약지 가연물 사전제거 사업을 국고지원으로 추진
- 지상과 공중에서의 입체적 조기감시체계 구축
  - 산불취약지 입산요로 및 주요 등산로에 감시인력 고정 배치
  - 무인감시카메라를 대폭 확충하여 첨단 감시체계 유지

○ 효과적인 초동진화체계 확립

-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한 기관간 공조체제 및 지휘체계 강화
- 시·군당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40명까지 확대하고, 특·광역시로 확대
  - ('03) 12 → ('04) 16 → ('05) 20 → ('09) 40명
- 헬기 및 격납고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배치·운영
-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및 진화안전장비 등 확충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사망사업			
- 사망땀(개소)	1,521	840	1,770
- 야계사망(km)	4,395	280	414
○ 산불예방			
- 인력지원 확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기관당 16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점진적으로 확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기관당 40명
- 장비확충	- 헬기 40대 - 무인카메라 135대 - 산불진화차 717대 - 무선중계기 60개	- 장비의 지속 확충 - 무선중계기 72개소	- 진화헬기 48대 - 무인카메라 200대 - 산불진화차 869대 - 간이중계기 설치확대

- 산사태위험지도 제작 및 web-site 구축 : '04~'05(2개년)
- 산사태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연구용역 추진 : '03년 완료

### 4-3.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고

- ◇ 산림의 생태적·사회적 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관리 강화
- ◇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공간 확충

-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및 산림의 녹색댐·탄소저장기능 제고
  -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를 산림생태계의 축으로 보전·관리
  - 산림식물자원에 대한 조사확대 및 정보관리 강화
  - 5대강 유역 수자원 함양림 116만ha를 생태적으로 중점관리
  
- 국·공유림에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국민의 숲』을 조성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형 “도시산림공원” 조성
    - 단체의 숲, 자원봉사의 숲, 사회환원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등
  -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으로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 도시 녹지를 1인당 6㎡에서 9㎡(FAO권고)으로 확충
  
-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촌진흥
  - 산림 휴양공간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07년까지 자연휴양림을 92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
  -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비하여 산악레포츠 등 전문 휴양림 도입
    - ‘07년까지 도시근교에 산림공원 30개소, 종합산림휴양단지 9개소 조성
  - 전통·녹색자원을 보유한 산촌을 거주공간 및 녹색관광 거점화
  - 백두대간 등 주요 등산로보전·관리 강화(국가탐방로 지정 등)

### 4-3-1.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로서 산림생태계의 보고(寶庫)
- 산림병해충은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등 2013년까지 산림병해충 1,175천ha 방제계획
- 국립수목원 창설('99년)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정('01년)

##### □ 문 제 점

- 백두대간 지역에 광산, 도로, 위락단지 조성 등으로 훼손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 가고 있는 실정
- 산림병해충 조기방제를 위한 예찰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항공방제의 어려움
- 자생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산업화가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관리 및 복원사업 추진으로 백두대간의 훼손이 줄어들 전망
- 산림병해충 피해는 줄어들 것이나 소나무재선충과 돌발해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생물다양성협약('92.6월) 발효이후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주장과 유출방지 강화

## □ 추진방향

-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보호지역 지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산림생태계 복원 및 훼손지 복구 강화
- 비무장지대의 보전·관리 적극 참여하고 남북간 공동사업 추진
- 환경친화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 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 강화 및 유용식물자원의 자원화 촉진

## 다. 세부추진 내용

### □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안림 관리 강화

- 사유림 매수시 보안림을 우선 매수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보안리 기능 제고
-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안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단속 철저

### □ 보호수 관리제도를 ‘전통산림자원보호’ 제도로 확대

- 전통숲, 향토숲, 우량 소나무림 등 보전 가치가 큰 산림자원을 전통산림자원으로 지정하고 DB 구축 등 체계적으로 관리
- 보호수 등 전통 산림자원에 대한 외과수술, 병해충 방제, 수목 활력 증진사업 등 보호·복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 수목보호기술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수목진단과 치료, 보호 등을 제공하는 ‘나무의사 제도’ 도입

### □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복원 강화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보호지역 지정



- 보호지역 안의 산림소득사업과 산촌육성, 훼손지 복원 추진
- 농·임산물 특화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주민지원
- 농가주택·농림축산시설 등 농산촌 지역부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대한 행위제한을 최소화
- 추후 법률개정시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희귀식물 자원 서식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 산림생태계 및 훼손실태 조사 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 추진
- 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 사유림은 국가에서 매수

#### □ 비무장지대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강화

-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사방복구’ 등은 우선 추진하고, 산불·병해충방제 등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등에 관한 남북한 공동조사 제안 등
- 효율적·지속적 보전·관리를 위해 UNEP, UNDP, FAO 및 주변국가와 북한 전문가, 민간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기초사 지역의 생태계 변화과정을 모니터링, 생태계 복원기술 정립

#### □ 산림병해충 방제는 생물학적 방제 확대

- 과학적·생태적 산림병해충 방제체계 구축
  - 돌발 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예찰조사 강화
  - 생태적으로 피해가 적은 환경친화적인 장제기술 개발·보급
- 주요 산림 병해충 방제 전략
  - 솔잎혹파리는 나무주사, 항공엽면시비 등 지역실정에 맞게 방제
  - 솔껍질깍지벌레는 단목벌채를 지양하고 나무주사 위주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개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

○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

- 밤나무 해충은 적기에 항공방제를 지원하여 방제효과 제고
- 돌발해충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전면적 방제 원칙으로 추진

□ 산림식물자원에 대한 조사 확대 및 정보관리 강화

- 식물종의 지역별 분포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총량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자원식물 총량 파악
-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식물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 식물명 표준화를 위한 국가식물목록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국가표준식물목록’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 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 강화

- 희귀·특산식물 서식지 분포조사 확대 및 자생지에서 환경·생태적 복원
  - 보존이 시급한 식물종을 선정하여 보존 우선순위 검토
  - 서식지 분포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험림 지정 확대
- 한반도 특산식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자생식물 종자보존 확대
  - 분류학적, 지리적 분포를 고려한 우리 고유의 특산식물종 확정
- 수목원·식물원 등 보전시설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확충
  -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토 자생식물종의 수집·증식 등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사립수목원에 대한 지정지원 강화
- 특성화된 생태숲 조성을 확대하여 훼손된 숲 복원기법 개발 등 산림생태계 연구의 전진기지로 활용
- 접근이 용이하고 천연보호림 및 야생동식물 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철원평야 등)에 산림생태공원 조성 추진
  - 탐방안내소, 식생복원시설, 초본 및 수목관찰시설 등 설치·운영

## □ 유용 식물자원 수집 확대 및 자원화 촉진

- 유용 자생식물자원 및 해외 유용식물자원 수집 확대
  - 국제 종자교류프로그램(Index Seminum) 등을 통해 자원수집 확대
  - 원산지, 용도 등을 DB화 하여 해외 식물자원의 이용기반 구축
- 우리 꽃길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생식물 식재사업을 확대
- 자생식물연구보전센터 설립 등을 통해 자원화 지원체계 강화
- 재배기술 개발 등 자생식물의 산업화 촉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보호수정비	- 외과수술 200본	- 외과수술 650본	- 외과수술 3,850본
○ 백두대간 보전·관리	- 백두대간보호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 보전지역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보호지역 산촌육성, 훼손지복구	- 보호지역 산촌육성 및 훼손지 복구
○ 비무장지대 보전·관리	- 종합보고서 수립 참여	- 수해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Net Work 구축 및 모니터링 추진
○ 산림병해충방제	(197천ha 방제) 소나무재선충박멸 5개년계획 실행	(239천ha 방제) 소나무재선충, 솔껍질 딱지벌레 총력방제	(936천ha 방제) 소나무3대병해충 밀도 저하에 총력
○ 산림식물자원의 보전 관리체계구축	- 식물자원의 정보관리 (관련 정보 D/B화)	- 식물자원의 보전관리	- 유용식물자원의 수집 확대 및 자원화 촉진

## 4-3-2. 산림의 맑은물 공급 및 탄소흡수·저장 기능 확충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3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맑은물공급종합대책」 수립·추진
  - 제1단계 5대강 유역 수원함양산림종합대책('95~'99, 330천ha) 및 제2단계 종합대책 수립('00~'07, 682천ha)
-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 산림의 유용성이 크게 대두

####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열악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자부담 기피로 수원함양림 등에 산림사업 실행이 부진
  - 5대강유역 수원함양림 101만ha 중 연간 사업실적은 계획대비 2% 수준
- 연간 약 2,249천톤의 폐목재가 발생하나 이중 32%인 718천톤만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공감대 형성이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강수량 1,267억톤의 약 24%만 사용하는 실정으로 물수요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어서 물 부족이 예상
  - 2011년 18억t, 2020년 26억t의 물 부족 예상
-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등 탄소흡수·저장기능을 갖고 있는 산림의 가치와 목재의 이용이 증대될 전망
  - '03년 배출권거래량이 71백만톤 기록, 지난해 29백만톤의 2배이상 급증(평균 톤당 거래가격도 \$4에서 \$6으로 상승)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의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준비할 시점

## □ 추진방향

-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원에 의한 적극적인 산림사업 실행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
  - 산림의 저수능력 증가(193억톤 → 237억톤 : 23%증가)
- 산림의 수질정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숲가꾸기 산물의 수집 및 활용
-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과 산업가공 폐목재 재활용을 촉진
- 탄소배출 기업의 산림조성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정보제공 등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 구축

## 다. 세부 추진계획

### □ 5대강 유역의 수원함양림 101만ha를 중점 관리

- 유역내 조림·육림·사방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간 연계성 강화
- 수원함양림을 확대 지정하고 연차별로 국가 매수 추진
- 산림수계보전과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과학적인 사업방법 정립
  - 참나무 등 수원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뛰어난 수종 식재 확대
  - 복층림·혼효림 조성 및 하층식생 생육 촉진 등 건전한 생태계 유도

### □ 폐목재 재활용 촉진 및 임산바이오매스의 활용 추진

- 폐목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보드류산업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폐목재 구입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폐목재 재활용을 제고
- 친환경 폐목질 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폐목질 자원의 기술 및시스템 개발” 연구
- '03년에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임산바이오매스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 지원
- 산림바이오매스의 용도 및 이용가공기술 개발
-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운반 및 가공 생산성 제고 추진

라. 추진 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합 계	1,600	6,100	9,288
○ 5대강유역 산림관리	18,500	74,000	92,500
- 조 립(ha)	1,500	6,000	7,500
- 육 립(ha)	17,000	68,000	85,000
○ 폐목재 구입지원	20만톤	23만톤	38 톤 이상
○ 임산Biomass 활용	- 활용방안 연구	- 시범사업 실시	- 전국에 도입 추진

### 4-3-3.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관리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국유림은 전체 산림의 22%(1,448천ha)를 차지
  - 백두대간보호지역(397천ha)의 53%, 수원함양보안림(154천ha)의 77%
-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숲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국유림의 다목적 기능 발휘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대
-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원리에 맞게 국유림을 국민의 복지 증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적극 활용 필요

##### □ 문제점

- 공공성이 강한 국유림이 전체 산림의 22%에 불과하여 산림의 환경적, 공익적 기능 및 국토 보전의 효율성 극대화에 어려움
- 국유림은 그동안 자연휴양림 등 제한적인 공간만 국민에게 개방되고 국유림 관리에 국민 참여와 민간자본 유치가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수원함양·휴양문화 등 국민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국토 보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0년까지 국유림을 30%까지 확대
- 국민 참여에 의한 숲 조성 및 관리 욕구가 증대하고 국유림 숲가꾸기 체험 및 휴양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산림체험,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 제고
- 기업체 등의 참여를 통한 국유림 관리 투자재원 확보 및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유도

## 다. 세부추진내용

### □ 국유림 확대집단화

- 사유림 및 법정제한림을 매수하여 국유림 확대집단화
  - 백두대간 지역 등 거점지역 및 보안림, 법정제한지역에 편입된 사유림을 우선 매수
  - 울릉도 국유림 관리와 연계하여 보존가치가 큰 주변 사유림 매수
  - 무주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복구 및 은닉재산 환수
  - 대부지(사용허가지)·분수림 관리 강화
- 국유림 현장 관리조직의 운영 활성화
  -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조사, 조림·육림 등 각종 산림사업 실행시 외부전문가 활용 및 민간모니터링 제도 확대
  - 책임경영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영팀제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사유입목 매수를 통한 국가직영임지 확보
  - 2011년까지 사유입목매수 : 4,283천m<sup>3</sup>(1,064억원)

### □ 국민참여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국유림 관리모델 도입

- 단체의 숲
  - 학교, 단체 등이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개방된 국유림
  - 숲가꾸기형 및 산림보호형 등으로 구분 실시
- 자원봉사의 숲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국유림
  - 숲가꾸기형, 산림보호형 및 학습지도형 등으로 구분 실시
- 사회환원의 숲
  - 산림사업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이 국유림에 수목원·자연휴양림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
  - 참여 법인·기업체에는 진입로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활동에 적합한 국유림을 동호회 등의 신청을 받아 관리 의무 부담 조건으로 활동을 허용하는 국유림
- 청소년 산림체험 행사와 연계하는 등 우수 단체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사유림 매수	- 국유림 22.7%(1,454천ha)	- 24.1%로 확대	- 30%로 확대('20까지)
○ 사유입목 매수	- 목표량의 40.0% 매수	- 76.4%('05) 매수	- 100% 매수('11까지)
○ 국민 참여형 국유림 관리	- 법·제도 정비 등 기반 구축	- 국민 참여형 국유림 시범 운영	-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4-3-4. 도시 숲 확충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급속한 도시화로 생활권내 도시숲 면적은 선진국에 비해 빈약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반영
  - \* 공약사항 : 전국 1만개 학교 숲 조성 및 생활권 도시 숲, 생태공원을 확대하는 한편 가로수 4만5천km를 거리 숲으로 전환

#### □ 문제점

- 도시내 녹지부족으로 생활환경의 악화와 생태적 안정성 미약
- 지자체 마다 도시숲 조성을 희망하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
- 도시숲 조성 및 확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권 내 녹지조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전망

#### □ 추진방향

-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도시숲 조성
- 친자연적인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기반 조성
- 도시숲 만들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다. 세부추진내용

### □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 ○ 다양한 형태의 도시녹지 공간 확충

- 도시내 자투리 국유지 등을 도시숲으로 조성
- 담장 허물기를 통한 인구 밀집지역의 녹색량 확대
- 방치되고 있는 기존의 도시인근 숲을 산림공원으로 전환
- 학교에 숲을 조성하여 교육·문화의 장으로 활용
-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하여 도시내 거점 숲과 도시외곽 산림을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 중심축으로 조성
- 생태형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 장소로 제공

### □ 도시숲 자원관리체계 강화

#### ○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

- 민간부문 도시숲 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 시민·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녹화캠페인 개최
- 도시숲 조성·관리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 도시숲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전국 도시숲 자원실태조사를 시·구 단위로 실시
- 도시숲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숲 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
- 목표 도시숲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도시숲 총량제 도입 추진
- 도시숲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유형별 관리제도' 도입
- 도시숲의 효율적인 조성과 합리적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조성및보전에관한법률(가칭)' 제정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6)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숲 조성</li> <li>○ 도시숲 조사</li> <li>○ 시민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지 도시숲 조성</li> <li>- 도시숲 실태조사</li> <li>- 도시 녹화캠페인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li> <li>- 실태조사 및 제도 정비</li> <li>- 지원프로그램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지까지 확대</li> <li>- 녹색 총량제 도입</li> <li>- 생활권 숲 조성 확대</li> </ul>

## 4-3-5 산림휴양 · 문화 진흥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전국에 92개소의 자연휴양림 조성 · 운영
  - 휴양림 이용자 : ('95) 2,079 → (2000) 3,798 → (2003) 4,345천명
- 등산로 현황(2002) : 총 1,074개 산 2,286개 노선 8,726Km
  - 국내외를 통한 등산이 가장 대중적인 산림휴양활동으로 각광
- 산림교육 · 문화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휴양 · 문화관련 사이트 및 네트워크 체계 보완 필요

#### □ 문제점

- 자연휴양림은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며, 성수기 및 주말에만 이용이 집중
- 등산로는 과도한 이용으로 산림훼손 가속화 및 이용만족도 저하
- 청소년 정서순화를 위한 자연학습 프로그램 및 전문가 부족
- 산림휴양 · 문화관련 정보제공 체계가 미흡

### 나. 앞으로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주 5일근무제 확산으로 자연휴양림 체재형 휴양객이 증가
-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등 새로운 유형의 산림휴양활동과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공간의 수요가 점차 늘 것으로 전망
- 산악 · 해안 · 산림문화 체험 등 다양한 휴양수요 증가

## □ 추진방향

-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하고 산림휴양자원 및 휴양객 안전관리 강화
- 전문화된 다양한 휴양공간 조성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 전국 등산로를 휴식공간으로 관리하고 백두대간 등 주요 등산로를 「국가등산로」로 지정 관리
- 산림문화 진흥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 개발
- 녹색수업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교육·문화 전문인력 양성
- 산림학교운영 활성화 및 확대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 산림휴양 시설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야외 휴양수요에 대처

- 권역별 휴양수요에 맞추어 신규 조성하고 기존시설은 보완
  - 6대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 수도권, 부산·경남권 등 자연휴양림 수가 적은 권역에 집중 육성
  - 잠재수요 및 가동률이 높은 자연휴양림 위주로 시설보완
- 산악, 해안, 승마, 산림문화체험 등 다양한 전문 휴양림 조성
  -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등 산지레포츠 전용 휴양림 조성
  - 승마 관련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모델사업으로 추진 후 확대
  - 음악, 미술, 문학, 목가공 DIY 등을 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
  - 수상레포츠 전문 자연휴양림 조성 모델사업 실행 후 확대

- 도시근교 등에 당일형 가족 휴식공간, 산림욕장 및 피크닉 공원, 종합적인 산림휴양문화단지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 도시내 인근지역의 국·공유지 적극 활용 조성
  - 하이킹 도로,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다목적 잔디광장 등 산림휴양 활동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 도입

#### □ 등산로 복구 등 보전·관리 강화

- 등산로 훼손실태 파악 및 백두대간 등산로 등 주요 등산로 부터 단계적으로 훼손된 등산로 복구 및 구조개량 추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 관리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각 주체별 파트너십 강화
- 백두대간 마루금등산로 등 주요 등산로를 「국가등산로」로 지정
- 단기, 중기, 종주형 등 다양한 탐방코스 개발하여 국토순례 및 숲체험 등 다양한 체험 기능 강화
- 산림휴양시설 타당성 평가대상 시설 및 평가기준 작성,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주체와 시기, 의견수렴 절차 등 평가 방법 마련

#### □ 산림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산림교육 활성화

- 휴양림·수목원·산림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산림학교 녹색수업 및 숲해설 운영 확대
- 도시지역 산림에 다양한 숲 체험·해설 등 인프라 조성
  - 산림·도시·자연공원과 숲해설가 및 자기안내식 숲해설 활용
-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의 산림교육서비스 확대

□ 산림문화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 산림문화 유산의 수집·정리 및 산림문화자료실 설치 운영
- 산림 관련 축제를 지역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육성
  - 양양 송이 축제, 영월 동강 뗏목 축제, 봉화 춘양목 축제 등
- 산림교육·문화 전문인력 양성
  - 숲해설가, 산림생태탐방 가이드, 산악가이드 등 자격제도 도입
- 주요 대도시에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조성 운영('12까지 3개소)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자연휴양림 확대 조성	- 산림휴양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제도 정비	- 산림욕장 조성(59개소) - 자연휴양림 조성(31개소)	- 종합산림휴양단지 확충, 고향의숲 정비
○ 등산로보전·관리	- 등산학교 운영 - 등산로 훼손실태조사	- 등산로 단계별 정비(500km) - 국가등산로 지정·관리	- 등산로 D/B구축 - 국가등산로 네트워크
○ 산림의 교육·문화기능 활성화	- 산림학교 시범운영(5개소)	- 산림학교 20개소로 확대 - 녹색수업 확대 - 전문인력 양성(2천명)	-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조성(3개소) - 산림휴양자원 D/B 구축



## 4-3-6. 산촌을 살기좋은 거주공간으로 개발

###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촌은 국토의 46%, 산림면적의 58%를 차지하여 국토 관리 및 산림경영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 그동안 국토개발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
- 산촌지역의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주변 산림경영에 어려움 발생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산촌은 국민 휴양과 자연학습 장소 및 수자원 함양, 국토의 보전 등 공익기능 제고와 국가의 균형발전 기대

#### □ 추진.방향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과 연결하고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의 중심적 역할을 위한 산촌 육성
-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확충하여 살기좋은 산촌 조성

#### 다. 세부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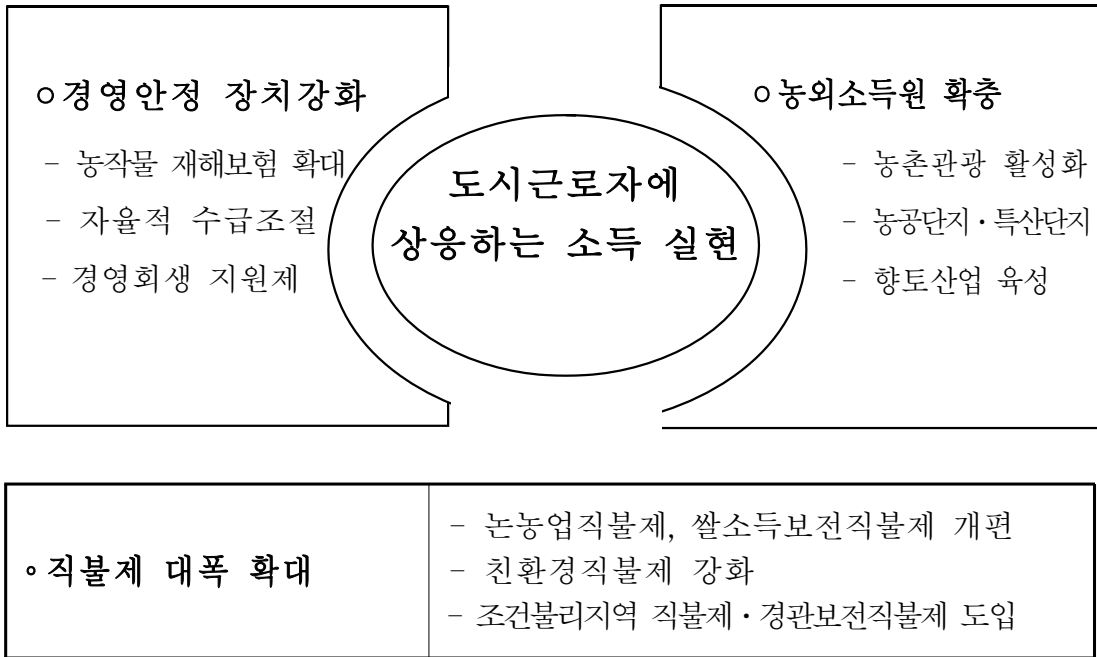
- 산촌 정주환경 개선 등 친환경적으로 추진('07까지 193마을)
- 임산물 등 소득원을 발굴·브랜드화하여 농가소득 증대
- 산촌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도자 양성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 강화
- 산촌의 다양한 휴양·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추진
- 산촌의 경관과 목가성을 활용한 녹색관광 도입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확충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산촌개발사업 추진	8개도(100%) 15마을(5%)	125마을(45%)	275마을(100%)
○ 산촌녹색관광 육성 -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		1식(50%) 50마을(25%)	2식(100%) 200마을(100%)

## IV.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 《비전과 전략》



### 《 로 드 맵 》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 )
<b>직불제 대폭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투융자 비중: 10.8%</li> <li>○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li> <li>○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실시(31천h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5%로 확대('08)</li> <li>○ 경관보전직불제('05)</li> <li>○ 생산중립직불제('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8%로 확대('13)</li> </ul>
<b>경영안정 장치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li> <li>*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전국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li> <li>* 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li> <li>○ 국가재보험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13)</li> <li>○ 소득안정계정 도입('09)</li> </ul>
<b>농외소득원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관광마을 : 32개</li> <li>○ 농공단지 : 304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개소('05)</li> <li>○ 도농교류촉진법 제정('05)</li> <li>○ 314개소로 확대('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개소로 확대('13)</li> <li>○ 394개소로 확대('13)</li> </ul>

## 1. 직접지불제 대폭 확충

◇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확대

○ 직불금을 '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수준으로 확대

### 농가소득안정 유형

□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체계적으로 연계·개편하여 쌀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추진

○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도 가격과의 차이의 일정 수준을 직접지불로 보전

○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은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 직불로 구성

- 고정형 직불(허용보조)은 쌀 가격 및 쌀 생산 여부와 관련 없이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현행 논농업직불제를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하여 운영

- 변동형 직불(감축보조)은 당해년도 쌀 가격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개편하여 추진

□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DDA 협상 및 쌀협상 결과 등을 감안하여 확정

- 가격, 생산량 변동에 따른 농가의 소득변동에 품목단위 직불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토
- 농가등록제에 등록된 농가와 정부가 농업소득의 일부를 농가계정에 공동 적립하고, 재해·가격하락 등으로 소득 감소시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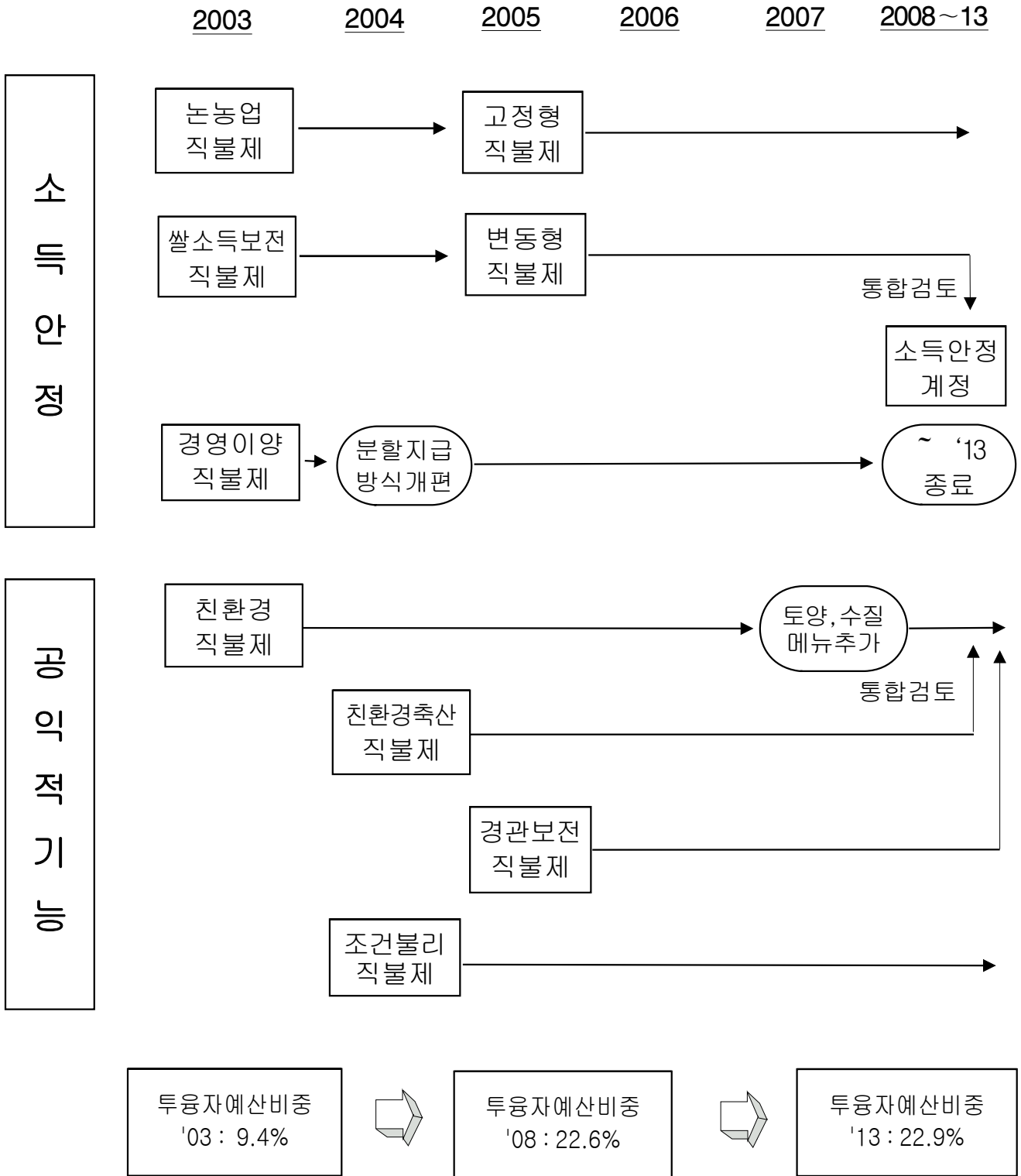
### 공익적 기능 제고 유형

- 친환경직불제는 토양, 수질보전 등 메뉴방식의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확충
- 논·밭으로 분리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가로 지급대상을 확대
- 중장기적으로 메뉴방식의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 개발·도입
  - 지급요건은 ①재배과정에서 비료·농약의 사용절감 ②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③겨울철 피복작물 재배 ④수질정화 작목 재배 ⑤경사지 토양의 침식방지 등 검토
  - 지급단가는 일반농법과의 소득차이,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축산분뇨 자원화, 조사료포 확보, 사육밀도 완화 등을 조건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04)
- 향후 친환경축산 직불제 이행농가가 생산하는 축산물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부여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친환경직불제의 메뉴의 하나로 편입

## 농촌지역 활성화 유형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마을단위의 발전계획과 연계,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마을기금을 통해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상향식 발전 유도
  - 경사도, 경지율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농업생산 조건이 불리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 '04년부터 시범사업(31천ha)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에 활용
    -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 마을공동기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직불금 전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안 검토
  
-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경관을 발굴하고 마을·지역단위와의 경관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05)
  - 마을단위로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예: 맥류, 메밀, 유채, 화훼류 등)을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액 지급
    - 경관작물 재배는 경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일정 면적규모 이상을 연접하여 재배
  - 중앙정부는 대표적 경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시·군은 기준에 적합한 경관을 발굴하여 신청

# 직불제 연차별 확충 계획



## 1-1-1. 쌀 농가 소득보전 방안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2001년부터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여 지원
  - 논의 형상과 다원적 기능유지, 친환경영농실천의무등 지급요건을 부과하고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는 저투입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소득차이(524천원/ha)를 기준
    - \* 지원단가 : ('01) 20~25만원/ha → ('02) 40~50
- 쌀의 수급불균형 추세와 DDA협상이후 예상되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농업인부금을 납부하고 약정체결을 한 농가에 대하여 기준가격보다 수확기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80%)을 보전

#### □ 문제점

- 매년 논직불제 단가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쌀재배농가 대부분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02년산에 이어 '03년산 생산량 감소 등으로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전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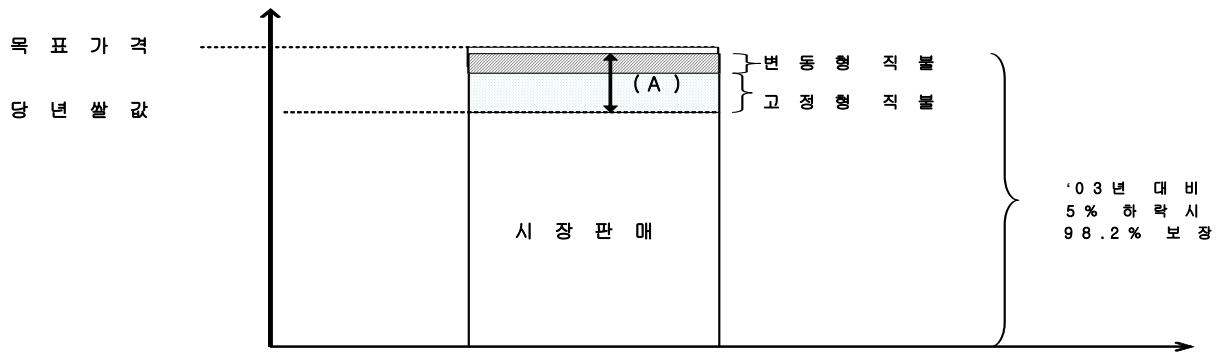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쌀협상 및 DDA 협상 이후로 나뉘져 2차례의 개방충격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쌀값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편 필요

## 다. 세부 추진 내용

- 쌀 농가의 최근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 가격과의 차이의 80%(A)를 보전하는 쌀 소득보전대책 발표 (11. 11)



\* A : (목표 가격 - 당년 쌀 값)의 일정부분

- 목표가격은 '01~'03년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03년 논농업직불을 감안하여 결정(170천원/80kg)
  - 목표가격은 3년간('05~'07년) 고정하여 3년 단위로 조정
- \* '03년 산지쌀값(162천원) 대비 5% 하락시 167천원 수취(목표가격의 98.2%)
- 직접지불은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나누어서 지급
  - 고정형직불 : 쌀값하락과 관계없이 60만원/ha 지급
  - 변동형직불 : 목표가격과 당년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0%가 고정형직불금보다 클 경우 추가 지급

라. 추진일정

세부사업	1단계('04~'05)	2단계('06~DDA 발효)	3단계(DDA 발효~ )
○ 쌀농가소득 안정방안 - 고정형직불 - 변동형직불	○ 소득안정방안 세부 시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소득안정방안 세부 시행방안 수립 및 농업인,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 소득안정방안 시행	-

## 1-1-2. 적정 벼재배면적 유지 대책 (쌀 생산조정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다양한 적정 벼재배면적 유지대책을 통해 '04년도 벼 재배 면적은 1,001천ha로 '02년 대비 52천ha 감소
  - 예산 사업 : 쌀생산조정제, 논콩재배사업
    - 생산조정 사업량 : ('04) 27천ha (810억원) → ('05) 26 (791)
    - 논콩재배 사업량 : ('03) 3,721ha (355억원) → ('04) 6,222 (668)
  - 비예산사업 : 밭벼재배억제, 논에 타작물재배유도 등
    - \* 벼재배면적 : ('02) 1,053천ha → ('03) 1,016(△37) → ('04) 1,001(△15)
- 금년말 재고는 710만석, '05년말 재고는 기상조건의 호조 및 지속적인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1,046만석으로 전망
  -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아울러, '05년산부터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시행, 공공비축제 도입 및 WTO/DDA 협상과 시장개방폭 확대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매년 추가로 벼 재배면적 감축 필요

#### □ 문제점

- 생산조정제 사업은 200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06년도 이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대책 필요
  -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사료작물·논콩 등 타작물재배 별도 대책 검토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14년 벼 재배면적은 '04년보다 15~25% 감소된 750~850천ha로 전망되며, 쌀 소비감소를 고려할 때 연간 20만톤 수준의 재고처리가 필요

### □ 추진방향

- 생산조정제 사업면적은 현 수준으로 3년간 유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 시행여부를 검토
  - DDA 및 쌀 관세화협상 결과에 따라 수급여건이 유동적이므로 '05년 상반기까지 지속시행 여부를 검토
- 논콩 재배사업, 논에 타작물재배 등 농지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적정 벼재배면적 유지 대책 추진
  - 논에 타작물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도·홍보 지속

## 다. 세부추진내용

### □ 생산조정제는 현재 약정체결된 면적으로 3년간('03~'05) 유지

- '05년까지 26천ha 수준의 생산조정제 실시
- '05년 상반기까지 여건변화에 따른 생산조정 지속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06년도부터 반영

### □ 논콩 재배사업은 매년 벼 재배면적 유지 대책에 따라 당분간 사업량 확대 추진

- 논콩재배사업면적은 연차적으로 확대
  - 사업량 : ('03) 3.7천ha → ('04) 7 → ('05~'08)10 → ('09~) 10
  - \* 향후 AMS등을 고려하여 논콩직불제 도입 등 검토

□ 밭벼재배 감축,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 등을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

○ 밭벼재배면적은 찰벼재배 및 자가소비량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 추진

- 재배면적 : ('04) 18천ha →('05) 15(△3) →('09) 10(△5) →('13) 5(△5)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 )
○ 생산조정제	27천ha 유지	26천ha 유지('05) (지속실시여부 검토)	-
○ 논콩재배사업	7천ha수준까지 확대	10천ha까지 확대	10천ha 유지
○ 밭벼재배면적	18천ha	11천ha(△7)	5천ha(△6)
○ 논에 타작물재배 · 휴경 등	4천ha (제도 개선)	4천ha (제도 개선)	매년4천ha (제도 개선)

### 1-1-3. 소득안정계정 도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가격변동과 하락의 피해는 규모가 크고 투자가 많은 전업농의 경우가 더욱 커서 전업농에 대한 소득안전망 확충이 필요
- 품목별 직불제는 AMS 감축, 소득 보전효과 지속성 등의 문제점으로 한계가 있어 경영체 단위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도입 필요

##### □ 문제점

- 경영체 단위 직불제 실시를 위해서는 농가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
  -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덕적해이 발생 우려
- WTO농업협정상 허용하고 있는 규정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 소득보전의 실효성이 적음
  - 평균소득의 30%를 초과한 소득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손실의 70% 이하로 보상가능(농업협정 부속서 2의 7)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소득 파악을 위한 기장제도 정비 등 제도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
- 경영체단위 직불제에는 계정방식과 보험방식이 있으나 개방에 따른 추세적 소득감소 하에서는 보험성립이 어려워 계정방식으로 도입 검토
  - 소득안정계정 도입 후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제와 통합여부 고려

## 다. 세부 추진 내용

- 농가의 완전한 소득과약을 전제로 하는 소득안정계정(캐나다의 NISA)보다 완화된 형태로 소득안정계정 도입
- 농가와 정부 공동으로 기여금을 각출하여 개별 농가명의로의 소득안정계정을 개설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시 적립금내에서 인출
  - 농가의 불입금은 해당농가의 경영규모별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정부는 농가 불입금의 일정 비율만큼 계정별로 입금
  -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하락이나 재해 등으로 당해연도 수입이 하락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계정 인출권 부여
- \* 캐나다 NISA 방식: 이전 5개년간 기준 농업소득보다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일정비율 이상 하락시 계정에서 인출
- 농가 경영규모별 적립 상한액을 설정
  - 수입감소로 인한 계정인출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할 경우 농가 적립금과 일정금액의 이자만 지급하고 정부 적립금은 미지급
  - 일정규모 이상의 중상층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농가소득과약 인프라가 완비될 경우 캐나다 방식의 소득안정계정 도입 검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가소득안정	○ 제도도입에 필요한 사전준비 작업과약 - 캐나다 소득안정계정 도입 가능성 검토 ○ 연구용역 추진 - 농가등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 영농기장 등 관련 제도 정비 ○ 농가 등록제 법제화	○ 소득안정계정 도입

## 1-1-4. 친환경 실천농가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직불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와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 실시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육성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 '99~'01년중 상수원 보호구역 등 등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보조
    - 매년 약 10,400ha에 57억원씩 지원(지급단가 : 524천원/ha)
  - '02년부터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중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 최근 친환경농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직불단가가 인상되면서 직불제 신청농가가 급증
  - 단 가 : ('02) 524천원/ha → ('04) 유기·전환 794, 무농약 674
  - 신청현황 : ('02) 5,274ha → ('04) 12,827ha

#### □ 문제점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와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가별·필지별 지원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외부경제효과가 낮고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
  - 지원단가가 낮고, 지원기간(3년)도 짧아 직불제가 친환경농업 진입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친환경직불제가 생산위험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 등의 현실화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지역개념으로 확대하고 저투입까지 대상을 확대
- 장기적으로는 수질보전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확대, 메뉴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다. 세부추진 내용

- 논부문과 밭부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친환경직불 예산 체제를 친환경직불제로 통합
  -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3→4년)을 통하여 친환경직불제가 생산위험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친환경직불제의 지급대상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산물 외에 저투입농업까지 확대하여 농업전체의 친환경수준을 향상
    -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의 외부효과 제고 및 이행점검을 위해 마을, 들녘, 일정규모이상의 집단화된 농지, 작목반 등으로 확대
    - 지급요건 등은 i) 토양관리처방서(신청시)에 의한 시비량준수, ii)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및 잔류허용기준의 1/2이내, iii) 농지의 지력증진 의무 등을 검토
- \* 저투입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5년)
- 친환경직불제 등 친환경적 요소가 있는 직불제를 추가 도입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로 통합, 메뉴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사회안전망 확충	○ 지급대상을 저투입 농업수준으로 확대 방안 마련	○ 지급대상을 저농약 및 저투입 단계 등으로 확대 ○ 지급단가 인상, 지급 기간 확대	○ 친환경직불제 대상을 다양화 하여 메뉴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1-1-5.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생산자 중심의 양적확대 위주 축산에서 소비자·국민과 함께 하고,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으로 변화 필요
- 축산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으나 가축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 발생, 축산분뇨 처리미흡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을 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DDA 협상을 앞두고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등 축산분야에 있어 직접지불제 확충 필요
- 농가에서 친환경 축산업을 경영하는데는 상당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관행적인 가축생산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
- 친환경 축산을 통해 발생하는 농촌 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은 축산농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다음 세대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시범사업('04~'05) 실시후 그 결과를 평가, 보완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2013년까지 축산업 등록 농가중 20%이상 참여유도
  - 유기축산 수혜농가에 대한 추가 직불 검토

다. 세부추진내용

< 기본방향 >

-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참여
-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준수)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또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일부 지원

□ 시범사업을 통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정착

<지급요건 및 기준>

- 기본 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내 지급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내 추가 지급  
(인센티브만 참여불가)

	세 부 요 건	직불금 지급기준
기 본 프 로 그 램	<b>(한육우·젓소)</b> ① 조사료포 확보 (처리기준면적 60%이상) ② 발생된 분뇨의 60%이상 사료포 환원	○{(처리기준면적~확보필요면적) -농가평균보유면적}×570원/평 * 소득차(10a당)=171,500원 (쌀-사료작물)
	<b>(돼지·닭)</b> ① 분뇨발생량 감축 (사육밀도를 등록제 기준대비 20~30% 완화) ② 발생 분뇨를 퇴·액비로 판매, 농지 공급 등 처리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 (20~30%)}×두당소득×50% - 두당소득 : 돼지 50천원, 닭 1.5
	<b>(공통 부대요건)</b> ①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 ②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③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인 센 티 브	①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 등 식재·관리	○조경수 구입비용 (30천원/그루이내)×50%

## < 지급요건 위반시 제재기준 >

- 위반사실 발생횟수에 따라 규제
  - 1회 : 시정지시 및 직불금 20%감액, 2회 : 사업취소
  - 축산분뇨처리(오분법)·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가축전염병 예방법), 항생제 사용(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등
- 친환경축산시스템 정착을 위해 추진계획을 단기·중기·장기로 시기를 나누어 기반확립단계('04~'05), 도약단계('06~'08), 정착단계('09~'13)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기반확립단계('04~'05)는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보완
    -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04. 6~'05.3)
    -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에 대한 시장우대 방안 마련('05.4)
  - 도약단계('06~'08)는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이행평가 보완
    - 축산농가 영농장부 작성과 병행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이행평가 및 세부프로그램 보완
    - 축산환경부하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착수 및 친환경축산업 발전 프로그램 개발
  - 정착단계('09~'13)는 친환경축산업 시스템으로 전환과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 추진
- 동물복지, 조방화 등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마련('09~)
  - EU 등 축산선진국의 동물복지, 조방화 등 직접지불제 추진 사례 분석 연구용역 실시
  - 국내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조방화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마련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①사업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수립</li> <li>○ 시범사업추진</li> <li>○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연구용역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평가 및 세부 프로그램 보완</li> <li>○ 직불제 등 다양화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복지, 조방화 등 직접지불제도입방안 마련</li> </ul>
②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성과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율확대</li> </ul>

## 1-1-6.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조건불리지역은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문화·의료 등 사회복지 지원도 부족하여 이·탈농 증가로 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 지역공동화가 우려
  -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 농업의 공익적기능 유지차원에서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01.4.18)
  - 정책토론회 개최('02.2~4), 3개 사례면 도상연습('02.4~6), 399개 오지면 구역도제작('02.4~12), 조건불리 연구용역 추진('03예산 : 5억원)
- 조건불리직불제 시범사업 시행('04년 예산 100억)
  - 전문가 토론회·현장점검('04년 1월~4월), 사업시행지침 확정(5월), 사업대상 521개 법정리, 32천ha 선정(8월)
  - '06년 본사업 실시대비 모니터링·평가에 대한 연구용역 및 전국의 읍·면지역 법정리의 경지경사도 측정을 추진

#### □ 문제점

- 농업생산성이 낮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업농의 규모화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
- 현행 논직불제를 논·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생산중립직불제(고정형 직불)로 확대 개편시 중복지원에 대한 비판 가능성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 쌀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시 전반적인 농업수익을 감소로 이·탈농 증가 및 휴경지 확대 등 조건불리지역 농촌의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
- 전체 농정의 틀내에서 낙후지역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구조조정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 농업생산이 아닌 환경보존,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등 지역(마을)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여 구조조정 저해요인을 최소화
    - 생산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 관리의무 등만 부과하고, 마을협약 및 기금조성 등 마을중심으로 운용
- 조건불리지역지원은 구조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보완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
  - 논농업 등 평야지역 중심의 규모화정책과 중산간 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
    - \* 기존 지역개발시책의 대부분은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되고 소득개발 등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활성화 효과에 한계

## 다. 세부 추진 내용

- 2년간('04~'05)시범사업후 '06년부터 전국단위 본사업 추진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04.9~'05.2) 실시
  - '04년~'05년중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의 경지경사도 조사 추진
    - 총 1,420개 읍면('02년 399개 완료, '04년 200개, '05년 821개)
    - \* '04사업대상 : 521개 법정리, 대상면적 32,826ha, 농가수 30,925호



### 《 '04~'05년 2년간 시범사업 추진내용 》

- '04예산 : 100억 (521개 법정리, 32천ha, 31천농가)
- 지급대상 : ① 경지율(22% 미만), ② 경사도 14%이상 면적이 50%이상인 지역의 농지(밭) 및 초지를 대상으로 시행
- 지급단가 : ha당 밭·과수원 400천원, 초지 200천원
- 지급하한 : 0.1ha, 호당 지급상한 : 200백만원
- 지급요건 : 마을협약·공동기금조성(30%이상), 농지관리의무

□ 구분지표, 지급단가 및 조건 등 본사업 세부시행지침은 '05년중 시범사업 시행성과에 대한 종합평가후 확정

□ 본사업대상은 법정리 단위로 논·밭을 대상으로 실시

○ 조건불리직불제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취지를 감안, 논과 밭을 대상으로 추진

○ 대상면적은 시범사업 및 경사도 측정사업 완료후 최종 확정

- 기존 종합대책에 42만ha (내륙 : 40만ha 제주도 : 2만ha) 반영

\* 내륙면적은 399개 오지면 경지면적(472천ha)중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7%이상이 50%이상 법정리 면적 212천ha의 2배수준 적용

\*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중산간 보전지구(해발 200m~600m)면적

○ 시범사업에서 누락된 도서지역은 '05년말까지 전국 읍면의 경지경사도 조사를 완료한후 '06년 전국단위 본사업 시행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 오지개발촉진법상 오지면 선정대상에서 도서지역은 제외

- 도서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 해당되며, 도서법상 지정·고시된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은 총 410개 도서면

- 사업대상 구분지표도 시범사업 결과를 감안하여 현행 경지율, 경사도의 지역경제 여건 및 인구감소율 등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시범사업은 ① 경지율 (22%미만), ② 경사도 (경사도14%이상 면적이 50%이상)만을 구분지표로 설정
  - 법정리별 경지율과 경사도 등을 적용하고,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경작지 소재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
- 지급단가는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의 소득격차 수준을 기준으로 보전하되 구체적인 지급단가는 쌀 협상 및 DDA 협상 이후 타직불제 개편방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급조건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활성화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고,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
  - 농지관리의무와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토록 하여 자발적인 마을발전의 계기를 도모하되, 기금조성 비율은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마을공동기금(시범사업 30%이상)은 주민들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기금조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 마을단위의 자발적 발전계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
    - 일본의 중산간지역직불제와 같은 방법으로 '03년 강원도 시범사업 실시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

- 지급조건중 선택사항은 마을발전계획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을 선택하되,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항목 추가 가능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지원, 농촌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등), 꽃길조성, 토양유실방지 농업, 사료·녹비작물 재배 등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설치, 토지개량
- 조건불리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와는 달리 지역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지자체의 일부 재정부담이 필요
- 지방재정 여건, 타사업 분담예 및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농가소득안정	○ 시범사업추진(2년) ○ 모니터링, 효과분석 ○ 경지경사도 측정	○ 본사업 추진('06)	○ 평가 및 보완

## 1-1-7.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업외적인 개발수요에 의한 난개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과소화로 경작포기지, 공·폐가 등 경관저해요인 증가
  - 농촌지역에 도시적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절·성토와 산림훼손,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산발적 건축물 입지 등
  -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과소화 등으로 경작포기지, 공·폐가 등이 방치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 및 농촌경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와 국민적 관심 증대
  - 납세자들의 농촌경관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음(1인당 연간 29,700원 지불 의사, 농업농촌의 경관가치 7,451억원, 2001 농촌진흥청)
  - 양질의 농촌경관이야말로 소비자로부터 가장 높은 수요가 있는 자원(농촌경제연구원)

#### □ 문제점

- 급증하는 농촌관광 수요에 의해 경관보전에 역행하는 난개발 우려
  - 농촌경관 자원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나 이에 대한 대책 부재
- ☞ 경관관련 제도로써 건교부 소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이 있음
- 경관을 가꾸는 노력은 제도, 사업, 주민 참여 등이 연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

- 부처별,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지구지정에 의한 규제방식 등으로는 실질적인 농촌경관자원 관리에 한계
  - 계획심의를 통한 규제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여 농촌경관관리에 한계 내포
  - 정책대상을 설정하여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식 도입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농촌경관 자원은 공공재적 특성으로 보전을 위해 정책개입 필요
  - 농촌다운 경관을 유지, 보전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농가의 노력에 대해 직접지불형태로 소득보조 제공
- 그린투어리즘, 도·농교류 촉진에는 양질의 농촌경관이 기반자원인 만큼 농촌경관 보전은 농촌활성화의 토대로 역할
  - 농촌어메니티 향상으로 국민만족도 제고,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 경관형성기본계획과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이나 마을에서의 경관보전협약에 의한 보존 및 개발 유도

### □ 추진방향

-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 및 농촌활성화에 기여
  - 협약기간을 정하여 협약기간동안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의무 이행시, 연도별로 직접지불금을 지급
-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소득손실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
  -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마을의 계획을 심사·평가한 후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 다. 세부 추진내용

### ○ 경관보전직접지불 시범사업 도입

- '05부터 3개년간 농촌경관이 수려한 지역중 시범사업 대상지구 선정 추진
- 농촌주민의 자발적인 경관관리 노력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마을단위로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예:메밀, 유채, 화훼류 등)을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소득손실액 지급
- 마을별로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와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평가에 기초하여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재배는 경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일정면적규모 이상을 연접하여 재배
- 중앙정부(70%), 지자체(30%) 매칭으로 비용 분담

### ○ 경관보전협약 제도의 도입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여 구속력을 유지
-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 주민의 자발적인 농촌경관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 '경관콩쿨'이나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차원에서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경관관리 제도화

- 경관조례 및 경관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나 협약이 체결된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하는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 강원도는 경관형성조례를 제정(2000.6)하여 공공사업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개발사업에 경관형성기본계획과 경관형성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함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 기본방향 설정 ○ 시범사업 실시	○ 세부시행방안 마련 ○ 시범사업 평가·보완	○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2. 경영안정 장치 강화

### 2-1. 경영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대상 재해를 최대한 확대하고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축소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재해유형을 대폭 확대

- 전업화 수준, 재해발생위험 정도,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 '04년부터 포도·단감·복숭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 '13년까지 수도작, 시설원예 등 30개 이상으로 확대
- 병충해 등을 제외한 모든 재해로 보험대상 재해 확대
  - '08년까지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포함
  - 농가별 평균 생산량 산정방법을 강구한 후 All-Risk방식 도입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 농가 보험료부담 완화

#### □ 이상기후 등 거대 재해에 대비, 국가재보험제 도입('05)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등을 일원화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08)

-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을 포괄하여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 마련
- 품목별 피해통계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으로 보험기반 구축 및 농업재해복구 지원과의 연계강화



- ◇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재해복구 지원 수준을 현실화
- ◇ 일시적 경영위기의 극복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상설화

□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시설 확충

-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추진
  - 이상홍수시 인적·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 배수장 등의 수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
-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11년까지 조기완료
  - 배수개선 목표를 지표배수개선으로 축소조정(235천ha → 188)

□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충하고, 농가의 조기 회생을 중점 지원

- 재해복구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 농경지 및 농업시설 복구비는 표준규격시설 및 실제 복구단가로 현실화
- 재해복구 정부보조율 상향조정 및 용자금리 인하 추진
  - 농경지복구 및 농림시설복구시 보조율을 100%, 50%로 각각 상향조정
- 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04년부터 「경영회생지원제」 상설화('04)
  - \* 운영규모 : 2,000억원, 금리 : 3%,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

## 2-1-1.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2001년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실시로 농가경영안정 도모
  -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01.3월)
  - 사과·배 주산지 중심 시범사업 실시('01년), 포도·단감·감귤·복숭아 추가 확대('02), 사과·배 전국으로 확대('03년),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전국적으로 확대('04)
-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보험가입 활성화
  - 지원액 : ('01) 4,646백만원 → ('02) 8,890 → ('03)16,224→ ('04)44,805
  - 농가부담비율 : ('01) 61.0% → ('02) 41.0 → ('03) 36.5 → ('04) 30

#### □ 문제점

- 농가들은 소득수준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간 보험사들은 보험 요율이 낮다며 현실화를 요구
  - 보험요율 : ('01) 3.67 % → ('02) 2.95 → ('03) 5.57 → ('04) 6.43
  - 가 입 율 : ('01) 17.6% → ('02) 18.3 → ('03) 15.2 → ('04) 18.2
-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보험기초자료 미비
  - 피해통계 축적, 손해평가 방법 정립, 전업화, 농가호응도 일정수준 도달, 위험분산 기능 등 보험성립요건 성숙 필요
- '02~'03년 연이은 거대재해 발생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재보험 불참 등 사업추진 애로
  - '02 : 7천여 농가에 348억원 지급, 268억원 적자(농협 △27, 보험사 △241)
  - '03 : 10천여 농가에 499억원 지급, 327억원 적자(정부 △284, 농협 △43)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업인 홍보를 통해 보험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제고
  - 보험제도의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도덕적해이 방지
-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
  -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점진적으로 확대
  - 가축공제 등 유사사업 일원화
  - 농업시설 및 시설작물 보험대상에 추가
-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업 운영비 등 지원 확대
- 이상기후에 의한 거대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장치 마련
  -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보험 재원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설치

## 다. 세부추진내용

- 재해보험사업의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검토
  - 관련기관 및 보험전문가로 구성된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 T/F팀을 구성·운영('04.7~12)
  - 국가재보험 모델 설정, 객관적 손해평가 방안 강구, 민간보험사 참여 방안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 \* T/F팀 요원 : 민간보험사(삼성·LG·현대), 관계부처(재경부·예산처), 보험전문기관(보험개발원·농촌경제연구원·전남대), 재해보험사업자(농협)

-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책자 배포('04.10)
  - 재해보험 관련 이해자료 및 문답자료를 농업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본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
-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농작물재해보험기금설치 및 운영비 전액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05년부터 시행
  - 국가재보험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을 위한 재보험 운용계획수립 등
- 제도개선 T/F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실시('05)
  - 민영보험사들의 동사업 재 참여를 통한 선진적인 경영안정망 구축 등
  - \* 다수의 민영보험사들이 거대 자연재해의 위험을 분담
-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 '04년 현재 사과·배등 과수 6개 품목에 대해서 전국확대 실시 중
  - 수도작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06~'07)
  -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보험조직 정비('06)
  - 중장기적으로 30여개 이상으로 보험품목 확대, 가축공제 등 유사사업과 일원화, 농업재해지원과 연계 강화
- 보험 대상재해 범위를 현행 태풍·우박에서 폭설·가뭄 등까지 확대
  - 피해통계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 보험기반 조성('04~'13)
- 농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비 전액지원('05이후)
  - 지원율 : ('01)50% → ('02)70 → ('03)80 → ('04)100[정부90,농협10] → ('05P)100

## 라. 추진일정

### □ 보험상품 단계별 개발전략

○ 1단계 : 1년간 보험사전준비(피해통계자료수집 및 손해평가방법 개발)

- KREI, 농협,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설계반 구성

○ 2단계 : 2년간 주산지 위주 시범사업실시

○ 3단계 : 전국확대

- 시범사업 품목중에서 확대 가능한 2~3개 품목 선정

추진전략	1단계('04)	2단계('05)	3단계('06~'08)	4단계('09~ )
○보험품목수(누계)	6	6	11	32
-보험준비	-	1	6	24
-시범사업	-	-	8	23
-전국확대	6	6	7	22
○재해범위확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좌 동	가뭄·폭설추가	농업시설 등 추가
○제도개선	- 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농작물재해 보험 제도개선 T/F 운영 · 사업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검토 - 관련법령 정비	- T/F에서 검토된 제도개선 사항 도입 시행 · 국가재보험제도 실시 · 민간보험사 참여를 통한 사업 활성화 - 보험전문인력 확보	- 재해보험 조직 정비 -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발전 · 가축공제 등 유사 사업 일원화 검토	- 농업재해 지원과 연계검토 - 농업시설 및 시설 작물 추가

## 2-1-2. 가축공제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재해와 사고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7년부터 추진
  - 대상축종 : 소(한우, 젃소, 육우), 말, 돼지, 닭, 오리
  - 보장내용 :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에 의한 폐사, 부상 등의 손해에 대해 시가의 80%~100% 보상
  - 납입공제료 : 농가부담 50%, 보조지원 50%(송아지는 60%)
- 최근 재해발생 증가로 공제에 대한 농가 인식이 개선되어 가입 증가
  - '03년 가입실적 : 2,138만두, 115억원 지원
    - \* 축종별 가입율('03) : 소 7.0%, 돼지 43.4, 닭 17.4, 말 3.8
  - 금년도에는 가입두수를 확대(3,384만두, 144억원)하여 확대 추진중
- 돼지콜레라 등 법정 전염병, 소득 및 생산비 보장성 상품 등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 요구 증가 추세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DDA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를 위하여 양축농가의 경영·소득안정 장치 구축 필요
  - 농가에 대한 생산기반 지원은 점차 축소(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 경영위험분산 등 경영·소득안정을 위한 접근 필요
    - \*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WTO허용보조에 해당되는 재해보험제도를 세계 각국이 강화하는 추세

## 다. 세부추진내용

### □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범위 확대로 가입 확대

- 사슴, 양봉, 꿩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가입수요를 조사하여 가입대상 축종 다양화
- 질병과 안정적인 경영 유도를 위한 생산비 보장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보장범위 확대

### □ 경쟁체제 도입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 농협중앙회외 민간보험사 참여 유도로 활성화 도모
- 공제상품별, 축종별 특성 등에 따라 공제료 지원을 차등

### □ 대규모 농가 가입률 제고 적극 추진

-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지원대상에 없는 대규모 농장의 적극 가입 유도

### □ 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및 서비스 강화

- 사업주관기관(농협)의 사전 질병예방활동을 통해 사고위험 분산 등 부가서비스를 확대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①공제상품개발	○가입월령조정(3→2)	○대상축종확대 (사슴, 꿩 등)	○질병, 생산비보장 등 상품개발
②안정적공제추진	○무료진료 등 서비스 강화	○상품별 보조율 차등 ○민간보험사 참여	
③가입율확대	○가입율 15%이상	○가입율 30%이상	○가입율 60%이상

### 2-1-3. 농업재해관리대책 추진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현행 재해지원제도가 피해농가의 영농재개와 생계안전을 위한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농업부문의 피해 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어 피해농가의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가부채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재해발생회수 및 복구소요액>

- 발생회수 : ('99) 8회 → ('00) 13 → ('01) 19 → ('02) 14 → ('03) 15
- 복구소요액 : ('99) 4천억원 → ('00) 2 → ('01) 8 → ('02) 15 → ('03) 10

##### □ 문제점

- 최근 빈번한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피해농가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 비교적 소득비중이 큰 원예·축산 등 전업화 규모화되어 시설투자가 많은 농업시설의 피해가 증가되어 농가부채 요인이 되고 있음
- 농작물 대파대 및 농림시설복구비 등의 복구지원단가가 실제 복구단가에 비해 낮고 농기계 피해가 지원되지 않고 있음
- 복구비중 용자 및 자부담 비율이 높아 피해농가의 복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소규모 농림시설 : 보조 35%, 용자 55%, 자담 10%
  - 대규모 농림시설 : 보조 - 용자 70%, 자담 30%
- 5ha이상 규모화된 전업농가는 생계지원 등 간접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부시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는 5ha미만 농가에 한하여 지원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예측 불가능한 대형재해 발생우려로 농업부문 피해 증가예상

#### ○ 최근연속 4년간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

- 대규모 재해발생 현황 : '01년 대설,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 '04년 대설

#### ○ 고소득을 위한 시설재배증가 등으로 피해발생시 복구소요액 증가 및 피해농업인의 복구비지원기준 현실화 요구

### □ 재해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을 현실화 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 발전시켜 실제 피해에 상응 하는 보전이 되도록 추진

#### ○ 재해복구지원단가 인상 지속 추진

- 농작물 대과대 및 가축입식비, 농림시설 복구단가를 실제복구단가로 인상 추진

#### ○ 농경지 및 농업시설의 보조율 상향 조정

- 규모에 관계없이 년차적으로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피해농가의 복구부담 경감  
· 농림시설의 보조율 : (현행) 35 → (조정) 50% 수준

#### ○ 재해복구융자금 금리 인하 등 융자조건 개선

- 재해복구융자금리를 농가부채 금리 수준으로 인하 추진

### □ 재해지원제도 개선

#### ○ 생계비등 간접지원을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면적 기준으로 지원

#### ○ 복구지원제도 개선 : (현행) 先복구 後지원 → (개선) 先지원 後복구

### □ 농작물재해보험확대 발전 추진

#### ○ 사과·배 등 과수이외에 벼, 원예작물로 점차 확대 추진

## 다. 세부 추진내용

### □ 재해예방대책 추진강화

- 기상특보 신속 전파 및 농작물·농림시설관리요령 홍보
- 재해단계별 예방 위주의 대책 추진강화

### □ 재해복구지원단가 현실화

- 농작물 대파대 및 가축입식비 등의 지원기준단가 인상 추진
- 농기계 및 육묘포장 등의 복구지원 기준단가 신설

### □ 농경지 및 농림시설의 보조율 상향 조정

- 농경지 복구 보조율 상향 조정 : (현행) 60% → (조정) 100%
- 농림시설 복구 보조율 상향 조정 : (현행) 35% → (조정) 50%
- \* 규모에 따른 대규모 농가의 보조율 차등지원 철폐

### □ 재해복구융자금 금리인하 등 용자조건 개선

- 용자조건 : (현행) 연리 4%, 5년거치 10년상환  
→ (개선) 연리 1.5% 수준, 5년거치 15년 상환

### □ 농업재해지원제도 개선 추진

-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면적 기준으로 간접 지원  
- 5ha이상 전업농가에게도 생계비 등 간접지원 방안 강구
- 피해농가 조기영농재개를 위해 『선지원』제도 지속추진

### □ 농작물재해보험확대 추진

- 사과·배 등 과수이외의 벼, 채소류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개발확대

## 라. 추진일정

- 재해지원 현실화 및 제도개선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03~'07)

## 2-2. 가격 하락에 대비한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정착

◇ 계약재배·출하사업을 내실화하고, '13년까지 34개 주요 품목의 생산자조직중심으로 자조금 단체 결성을 추진

- 계약재배·출하사업은 참여주체 다양화, 계약방식 개선 등 내실화
  - 사업주체는 공동마케팅조직, 가공식품업체 등으로 다양화
  - 0.3ha이상 농가, 생산량의 50%이상 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 소규모 농가(0.3ha 미만)는 작목반 단위로 참여 허용
  - 공동마케팅조직, 우수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계약재배자금 우선 지원
    - 계약 재배자금 지원품목제한도 폐지
  
- 품목대표 조직의 자조금 단체화를 촉진하고 사업 범위를 단계적 확대
  - 사업실적, 조직화 연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100%에서 200%까지 단계적으로 차등화
    - 자조금 조성은 연간 출하량의 1% 범위내에서 3%까지 확대 추진
  - 품목대표조직의 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초기) 교육·홍보·판촉, (발전) 브랜드 상품화·품질관리, (정착) 자율수급안정
  - 재배지역이 전국에 산재된 품목은 시·도단위 자조금 단체를 인정하여 전국단위 조직체로 발전 유도
    - 자조금에 국비 및 지방비 일부를 매칭펀드로 지원(지방비 20, 국비 30, 자부담 50)
  
- 유통명령 대상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유통명령 범위를 최소화 하여 운영
  - 유통명령 대상품목 요청자격·절차 등 기준을 강화
  - 유통명령 요청시 중장기적인 수급 조절계획을 포함하고 농가의 DB구축 의무화

## 2-2-1. 농산물 자조금

### 가. 현황 및 문제점

- '04년 현재 총 14개 품목의 자조금단체가 구성되어 자조금을 조성 중이나, 품목별 생산자조직화 여건 미흡 등 자조금단체 결성이 부진
- 대상품목은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
- 자조금조성액은 단체구성원의 연간출하량의 1%이내이며 정부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 정부지원분은 시장개척활동, 가격안정, 공동상표연구개발, 사무국 운영경비, 홍보 등에 사용
  - \* 자조금단체('04) : 참다래, 파프리카, 겨울배추, 고랭지채소, 감귤, 사과, 시설포도, 배, 단감, 난, 팽이버섯, 양파, 당근, 친환경인증 농산물

#### <자조금 지원현황('03)>

(단위 : 백만원)

품 목	조성액	보 조	비 고
사 과	68	34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감 귤	1,618	809	(사)제주감귤협의회
참다래	200	100	
시설포도	64	32	(사)한국포도회
난	114	57	(사)한국난재배자협회
파프리카	310	155	
겨울배추	210	105	
고랭지채소	12	6	(사)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
8품목	2,598	1,298	

- 품목대표조직은 대표성이 약하고 리더십, 기획력, 회원조직 참여 부족으로 전국적 단일법인 구성이 어려움

- 대표조직 역할에 대한 회원조직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음
  - 출하경로가 다양한 농산물의 특성상 자조금 거출이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 등이 발생하여 자조금 조성이 부진
- 자조금사업이 이벤트성 판촉 홍보가 사업비의 70%이상을 차지
  - 품질향상 지도·교육·수급조절 등 회원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업 비중이 매우 낮음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자조금조성, 유통협약 등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활동 활성화 유도
  - 품목별 생산자조직화를 적극 유도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소비촉진 활동 등 확대
- 자조금단체 결성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자조금단체 인정 기준 및 절차 개선, 지역단위 자조금단체 지원제도 도입, 자조금 사업 평가제를 통한 지원 차등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기획 및 재정능력 등 자조금단체의 사업구조 기준 강화
  - 자조금단체 심사기준에 실질적 사무국 기능 의무화, 기획 업무담당자 여부, 회원자격 개방성, 자발적 거출구조 등 포함
    - 사무국은 주회원조직 사무소에 업무전담자 배치 등 실질적이고 독립적 사무가능여부

- 전국단위 조직의 기준인 생산점유비는 현행(30%) 유지하되 참여농가 등 최소기준은 상향조정
  - 다만, 품목별 세분화, 소규모화를 방지하기 위해 3년 총생산액이 300억원 이하, 참여농가가 100농가 이하인 경우 자조금지원 제한
- 현장방문 심사 등 자조금단체 승인절차 강화
  - 사전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산지유통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자조금단체 승인기준 심사표에 따라 현장방문 심사(담당과)
  - 정례적으로 산지유통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자조금지원 단체인정 여부 심사하여 확정 (상하반기 1회씩, 4월 또는 9월)
- 품목대표조직의 지속적인 사업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자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조금사업 평가제 도입
  - 평가결과에 따라 자조금 매칭펀드비율을 차등 지원
    - 자조금조성을 연간 출하량의 1% 이내에서 품목특성에 따라 최대 3%까지 상향조정
    - 조직화 규모, 활동실적 등을 평가,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현행 100%에서 200%까지 단계적 차등화
      - \* 평가항목 : 사업실적, 자조금 조성규모, 생산량대비 점유비율 및 회원 확보노력, 회원농가 DB구축
  - 정부 보조금의 용도를 소비촉진, 수출 등 수급조절분야에 중점
- 재배지역이 광역화된 품목은 주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시·도단위 자조금단체부터 결성하여 전국단위 조직화 검토
  - 지역단위 자조금 사업은 자치단체 차원의 사업검증을 거쳐 지원
    - 지원율 : (1-2년차) 지방비 50%, 자조금 50%
    - (3년차이후) 국비 25, 지방비 25, 자조금 50%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산물 자조금	-개선방안마련	-자조금구성 품목별 생산자조직 확대 · ('04)14개→('05)20  -자조금 한도 확대 및 정부지원 차별화 (농안법시행령 개정)	-품목별 자율적 수급 조절 정착 · '13) 34품목

## 2-2-2. 농산물 유통명령조절제

### 가. 현황 및 문제점

- '03년에 현저한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의 요청으로 발하는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
  - 명령대상품목은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산물로서 생산지역의 집중도(상위 10대시군 재배면적 점유비 50%이상)가 높은 농산물
  - 유통명령발동은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거친 후 요청
    - 유통명령요청서 :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명령이행 확인방법 및 위반자 제재조치
  - 필요한 경우에 유통명령이행과 관련한 부대비용, 홍보 및 유통명령이행추진단 운영자금 지원
- '03년에 처음으로 감귤에 대해 실시하여 466억원의 농가 소득증대효과를 거두었으며
  - '04년에도 10.11부터 감귤을 대상으로 실시중
- 유통명령 요청자격 요건이 느슨하여 유통조절명령요청이 동일 품목에 대해 반복될 우려
  - 유통명령 실효성확보, 요청단체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능력 미약
    - 유통조절위원회는 임시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수급조절 조직으로 한계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수입개방, 과잉 생산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급격한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장치로 정착
  - 이를 위해 유통명령의 발동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명령 이행 등 유통명령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 유통명령범위를 가급적 최소화하여 운영
  - 사전에 충분한 수급조절을 추진하여 명령발동 여건을 미조성

## 다. 세부추진내용

- 유통조절 대상품목 요건을 강화
  - 품목별 생산지역집중도를 고려하여 대상요건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 품목별 생산지역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구성원의 생산량요건을 상황조정
- 유통조절명령 요청자격, 절차 등 기준을 강화
  - 유통명령요청자격 중 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품목 일정비율의 생산자동의 요건 신설 검토
  -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시 소비자의 이해관계인을 대폭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유통명령 발동요청시 중장기적인 수급조절계획 포함

- 유통명령요청시 해당품목에 대한 당해연도 및 중장기적인 수급조절계획을 반드시 포함
  - 유통명령요청시 해당품목에 대한 수급조절계획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명령발동여부를 판단

□ 중장기적으로 신청요건에 해당 농가의 DB구축의무화

- 농가의 자율수급조절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유통명령의 이행을 제고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유통명령	- 유통명령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방안 마련	- 유통명령 추진 생 산자단체 지원	-유통명령 추진 생산 자단체 지원

### 2-2-3. 축산 자조활동자금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02.5.13) 됨으로써 의무자조금제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령·시행규칙 공포('02.11.14)
  - '92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추진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참여 미흡
- 축산단체에서 농가로부터 일정액을 거출받아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정부는 조성액의 100%범위 이내에서 보조 지원
  -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시 농가는 의무적으로 거출금 납부 (납부거부시 도축업자는 도축 거부)
-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2개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상호협약하여 공동으로 설치
  - 대상 축종 : 소·돼지·닭 등 14개 축종
- 양돈은 '04.4월부터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실시중이며
  - 한우는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한 대의원 선출('04.8~11월)
  - 낙농·육계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의견 수렴 중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민간자율수급조절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구축 필요
  - 생산자 자율적으로 수급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자조활동사업 확대
-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대상축종확대 : ('03) 4개축종 → ('13) 10개축종
  - 축산자조활동자금의 거출참여 확대 유도 : 사료, 동물약품업체 등

## 다. 세부추진내용

### □ 원활한 사업 추진 유도

- 자조활동자금의 운영취지를 감안하여 공동추진시 단체간 협조 및 원활한 협의 유도
  - 축산단체간 의무자조금 미합의시 해당축종 생산자단체 중심 임의 자조금 추진 유도

### □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조활동사업 품목 확대

- 의무자조금 대상축종 확대 : ('04)양돈 → ('05)양돈, 한우, 낙농, 육계 등
- 기타 축종도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 및 소비기반 확보 유도

### □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령 개정 검토

-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법령 개정
  -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9월, 11월)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초안 작성('05.2)
  -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추진
- 자조활동사업 시행 과정을 점검하여 제도개선 등 보완 추진
  - 대의원 총수, 수납기관의 수수료 조정
  -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및 보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①임의자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수립</li> <li>○ 소요예산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종확대(꿀벌·사슴 등)</li> <li>○ 일부 축종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종확대 및 정착</li> </ul>
②의무자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축종실시</li> <li>○ 제도개선</li> <li>○ 대의원선출 등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자조금사업 정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자조금사업 정착</li> </ul>

## 2-2-4. 축산물 자급수급조절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 ◇ 돼지 사육두수는 905만두이며, 농가수는 13천호로서 연간 80만톤 가량의 돼지고기가 생산·유통
  - 국내 1인당 소비량은 17kg 정도로서 육류중 소비량이 가장 큼
- ◇ 닭 사육두수는 10,211만수이며, 농가수는 135천호로서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농가수는 감소하여 규모화, 전업화 추세
  - 국내 1인당 소비량은 7.9kg 정도로서 백색육인 닭고기 선호도가 높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량 증가로 자급율은 감소추세
- '97년 돈육과 계육의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 정부에서는 생산·유통시설 및 품질개선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양돈·가금산업의 발전을 도모
  - 양돈·양계단지 조성, 경쟁력 제고사업, 도축·가공시설 확충 및 수출 지원
- 대일 수출중단으로 비선호 부위의 재고 증가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국내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출중단에 따른 규격돈 생산의욕 저하로 돼지고기 품질저하 및 목심 등 소비감소로 재고물량 증가
- 가금육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계절에 따른 소비영향으로 쉽게 공급 과잉되는 등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음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내수위주의 안정적인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대일 수출재개시까지는 사육두수의 조절 및 수출국의 다변화를 유도하여 수급안정 도모
- 가금육의 수출 및 내수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체계 구축으로 가격안정 유도
- 안전하고 고품질의 돈·가금육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수급안정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연 4회)
  -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위원장 : 농협 축산담당 상무)
- 소비촉진 활동 전개
  - TV·라디오·신문·잡지 광고 및 지하철광고
  - TV 기획프로그램 제작·방영
  - Pork Festival, 구구데이, 오리데이 등 소비촉진 행사 전개
- 안·등심 수출부위 및 삼계탕 등 유통가공 지원
  - 대일 수출재개, 필리핀·러시아 등 해외 수출선 다변화 추진 및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부위의 다양한 요리방법 개발 및 홍보 추진
  - 단체급식용 냉동 가공품 개발·보급

□ 농가 경영안정 계도활동 강화

- 홍보리후렛, 포스터 등 농가 계도 활동 강화
  - 자율적인 사육두수 조절로 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경영개선 및 생산성 향상 기술교육 강화

- 규격돈 생산기술 및 경영·회계, 브랜드육성 체계 교육 실시
- 수출용 규격닭 생산을 위한 농가 기술 지원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홍보강화</li> <li>○ 수출다변화 추진</li> <li>○ 계열농가 정예화 및 민간자율 수급 조절 유도</li> <li>○ 고품질 돈·가금육 생산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사육두수 조절을 통한 내수시장 안정 유도</li> <li>○ 계열화 업체 확대 및 정예화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li> </ul>



## 2-2-5.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위해 '98년 시범사업을 거쳐 '00년부터 추진
  - 지원대상 : 국내 한우암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송아지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126만원)이하로 하락시 최대 26만원까지 보전금 지급
    - \* 계약자(농가) 및 지자체 각각 두당 1만원씩 부담금 납부
  - 가입실적 : ('00)73천호/206천두 → ('01)126/384 → ('02)150/570 → ('03)141/592
- 동 사업은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여 송아지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득보전'사업으로 시장의 직접적인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 일본의 경우 동 사업과 유사한 '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를 수입자유화 1년전인 '9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어, 일본 소산업 기반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정착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WTO의 감축대상보조로 DDA 협상시 최소보조허용한도(De-minimis) 축소에 대비, 민간기금화 또는 보험화 등 개선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DDA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송아지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장치 구축 필요
  - DDA 차기협상 결과에 따라 농가 불안심리로 암소도축 등 번식기반 축소 우려
  - 농가의 송아지 지속 생산이 가능토록 소득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다. 세부 추진내용

- 생산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생산비 변화에 따른 적정 안정기준가격 설정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DDA 협상결과 최소허용보조한도(De-minimis)축소에 대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재원의 민간기금화나 보험화 전환여부 검토
  - 민간중심의 소득보전사업 추진으로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민간기금화, 보험화 검토	- 사업추진 개선 방안 검토	-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민간화 추진 및 문제점 개선

## 2-2-6. 우량 암소 및 송아지 경매시장 설치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전국 85개 가축시장에서 276천두의 한우 거래('03년 기준)
  - 거래두수 : 송아지 138천두, 암소 90천두
-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가축개량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개량된 우량송아지 및 암소를 매매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은 부족

#### □ 문제점

- 개량된 우량 송아지 및 암소 매매체계 미 구축으로 우량 송아지 유통부진과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및 개량촉진 둔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WTO/DDA, FTA 협상체결로 고품질의 쇠고기 수입증가 되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심화 전망

#### □ 추진방향

- 고급육 생산 및 가축개량 촉진을 위해 우량 송아지 및 암소 거래시장 활성화

## 다. 세부추진계획

- 전국의 40개 축협 가축시장을 활용하여 우량송아지 및 암소 경매장 설치 유도(송아지 경매장 31개, 암소 경매장 21개소)
  - 경매 출하축에 대해 유전평가능력, 혈통증명 등을 사전 평가 실시
  - 경매장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사이버 경매제도 도입 검토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우량암소·송아지 경매시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우시장별 경매 시설 설치 수요조사</li> <li>· 희망 우시장별 경매 제도 도입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량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우량축에 대한 심사서 발급</li> <li>· 경매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경매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li> </ul>

## 2-2-7. 농업관측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생산액이 많고 가격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기상 정보, 재배면적, 작황, 예상생산량,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 시장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미래정보를 예측 제공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 단기관측 : 1~2개월후의 수급과 가격전망 등을 매월 발표
    -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26개 농축산물
  - 중기관측 : 향후 1·5년간 동향위주의 전망 분기별 발표
  - 장기관측 : 5~10년의 중장기 전망, 매년 1월말 년1회 발표

#### □ 문제점

- 산지정보 수집체계 미흡 및 국내정보에 치중
  - 생산지 조사 위주로 되어있어 농업인에게 필요한 소비자 및 유통 정보제공이 미흡
  - 해외정보 수집 부족으로 관측의 정확도 제고에 한계⇒ 소비, 유통(저장), 해외정보 수집 강화 필요
- 전화·팩스 위주의 자료수집과 수동입력에 의한 비효율적
  - 표본농가 및 모니터에 대한 조사가 전화 및 팩스로 이루어져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조사체계 및 자료입력의 디지털화 필요(PDA활용 등)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농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농축산물의 재배면적, 작황, 예상생산량, 해외시장동향 등 미래 예측정보 제공 필요

- 특히, DDA협상, FTA체결 등 국제농업환경여건 변화에 농업인 등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농업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필요
- 앞으로 농업인 등의 관측정보 활용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산지·해외·소비자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 신뢰 높은 관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수집, 가공·분석, 관측정보분산 등 관측사업 부문별 기능강화는 필수적인 사항임

#### □ 추진방향

- 관측사업의 Digital화 등 농업관측기능 강화
  - 관측정보 수집의 디지털화 및 수집기능 강화
  - 정보분석 및 가공업무의 전문화
  - 정보분산의 포탈화 및 맞춤형

#### 다. 세부추진내용

- 관측품목 확대 : (현재) 26개품목 → ('08까지) 31개품목
  - 농업인 등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측대상 품목의 지속적 확충('06년이후)
- 표본농가 및 모니터 재정비, 소비자패널 구축
  - 재배농가변화, 주산지이동 등에 따라 표본농가 재정비('04완료)
  - 소비자정보 수집을 위한 패널구축('04년, 1,000명)
  - 소비자패널을 통한 품목별, 분기별 소비자정보수집 분석('05이후)
- 산지정보수집 체계 디지털화 개발
  - PDA활용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04년 60대 보급)
  - 지속적인 PDA보급 확충('05년 100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수집체계 기능 강화('05년이후)

○ 해외정보 수집기능 확대 및 정보교류협약 추진

- 우리나라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농업국의 농업동향파악을 위한 해외모니터 지속적 확충(중국, 칠레, 호주, 미국 등)
- 주요선진국의 농업관측 분석기법 및 정보교류협력 추진 등

○ 저장·물류정보수집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장·물류정보수집체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05년)
- 연구결과에 따라 정보수집 시스템개발 및 정보수집('06년이후)

○ 관측정보 제공을 위한 GIS(지리정보) 시스템개발 및 운영

- GIS 프로그램개발 및 채소류 관련정보 제공('05년)
- 채소류 이외에 다른품목 확대 및 통계정보, 기상정보 등 농업관련정보 통합제공('06년이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3)	2단계('04~'05)	3단계('06~ )
○ 농업관측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정보수집강화</li> <li>· 시스템개발,유지</li> <li>· 분석기능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정보수집강화</li> <li>· 시스템개발,유지</li> <li>· 분석기능강화</li> <li>· 정보수집·분산 기능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정보수집강화</li> <li>· 시스템개발,유지</li> <li>· 분석기능강화</li> <li>· 대상품목 확대 등</li> </ul>

## 2-2-8. 채소수급안정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채소류의 수급 및 농가소득안정, 산지농협 판매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노지채소 '95년, 시설채소 '01년)
  - 사업자금 : 농안기금(80%), 농협(20%) 공동 조성
  - '04년 사업비 : 8,022억원(농안기금 5,917, 농특 500, 농협 1,605)
-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조절
  - 대상품목 : 12개품목(노지 7, 시설 5)
  - '04년 사업계획량 : 750톤(노지 550, 시설 200)

#### □ 문제점

- 정밀한 사업평가 없이 계약재배 물량 확대에만 치중
- 사업주체가 농협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경쟁력에 취약
- 계약에 의한 사업보다는 농가 편의위주의 사업추진으로 계약문화 미정착
- 물량위주의 계약재배로 친환경·고품질 채소생산과 연계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DDA 협상타결에 따른 관세 추가인하 및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하여 채소류에 대한 피해예상
  - 특히 마늘, 고추, 양파 등 고율관세 품목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사업규모를 확대하되, '05~'06까지는 현행 자금규모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개선·보완 및 사업내실화 후 '07부터 규모 확대 검토



## 다. 세부추진내용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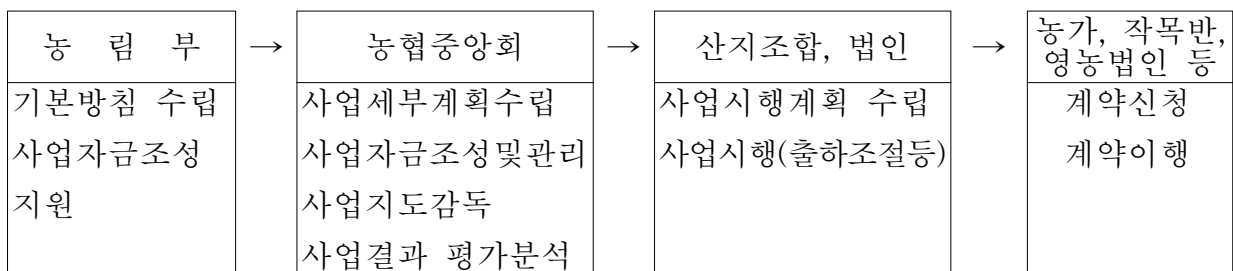
-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출하조절실시로 수급 및 가격안정도모
- 계약재배를 통한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 생산자단체의 산지시장 주도화 시장교섭능력 배양

### □ 사업내용

#### ○ 사업방식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사업농협 등에 지원
- 사업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계약(약정)을 체결
- 가격동향에 따라 계약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 사업추진 체계



- 사업대상품목 : 12개품목(노지채소 : 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시설채소 :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 사업대상자 :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추진 방법 : 노지채소(계약재배), 시설채소(출하약정재배)

○ 가격폭등락시 수급안정 방안(노지채소)

구 분	무·배추등	마늘, 양파, 고추
가격폭락시	○ 수매·폐기, 저온저장	○ 수매비축
가격폭등시	○ 저온저장물량 방출 ○ 예비료 공급 ○ 직거래 확대	○ 수매물량 방출 ○ 직거래 확대

□ 중장기 추진목표 및 개선방향

- 채소수급안정사업의 규모를 적정생산량의 23%까지 확대
  -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 ('03) 10% → ('13) 20%
  -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 ('03) 19% → ('10) 35%
- '13년까지 장기 사업목표는 농업·농촌종합대책 계획대로 유지 하되 당분간 사업물량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지원 중단
  - 산지농협의 판매·마케팅, 산지유통 능력의 제고 없이 사업물량 확대는 비효율적이므로 '06년까지 사업 내실화 선행후 '07년부터 사업 확대
- 계약재배사업의 각종 평가를 통하여 사업주체별 차등화, 마케팅, 공동선별·공동계산 등 산지유통개선과 연계 추진되도록 정비
  - 농협에 평가 전담기구 신설('04.8) 등 평가체계 확립
  -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 평가 시행('04. 10월), 시설채소는 '05년부터 시행
    - \* 사업전·후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 외부 전문컨설팅을 이용한 사업체계 정밀진단을 통하여 사업성과가 효율화·계량화 되도록 객관적인 평가제도 확립
- 계약재배 주체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급안정과 함께 산지유통 주체로 육성 추진
  - 지자체, 공동마케팅조직, 소비자 대형유통업체, 출하조직 등 사업자금 차입 여건을 가진 조직체에 문호를 개방('05년부터)하여 경쟁 유도

- 계약재배 사업참여 농가를 규모화·전문화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계약농가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계약 문화 정착
  - 사업 참여농가의 최소 재배면적 및 물량 확대를 단계별로 상향 조정
    - 사업참여규모 : ('04년) 비저장성품목 0.2ha이상, 저장성품목 0.1ha이상  
('05년) 비저장성품목 0.3ha이상, 저장성품목 0.2ha이상 ('06년) 0.3ha이상
    - 생산량 대비 계약물량 비중 확대 : ('04) 30%이상 → ('08) 50%이상
    - 사업체의 최소 참여기준물량 설정 : ('04) 200톤 → ('05) 300톤(고추, 마늘은 50톤)
  - 위약농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 ('03) 1년 → ('04) 2년 → ('05) 3년
  - 계약이행 우수농가(3년이상 연속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기상재해시 적립금범위내에서 경영비 지원 : ('04) 50% → ('08) 100%
  - 계약농가 관리체계 확립 : ('04) 전산시스템 구축 → ('05) DB화 정착  
⇒ 위약율(최근5개년이동평균) : ('03) 8% → ('08) 5%
- 계약재배와 친환경재배를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 공급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05년부터)
  - 친환경재배농가·작목반의 계약재배 참여를 유도하고, 판매 차별화

## 라. 추진 일정

추진 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채소수급안정사업	적정생산량의 12% -노지 11%, 시설20%	적정생산량의 16% -노지 13%, 시설 30%	적정생산량의 23% -노지 20%, 시설 35%

## 2-3. 경영회생지원제 운영 내실화

- '04년부터 부채문제의 악순환을 막고 경영회생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제」를 상설화
  - 운용규모 확대('03 : 500 → '04 : 2,000억원) 및 지원조건 개선(금리 : 4% → 3, 상환기간 : 3년거치 5년 → 3년거치 7년)
  - \*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03년도에 시범사업 실시(계획 500억원 지원 221억원(44.2%))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금 확대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내실화 도모
  - 전업농에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준전업농(전업농의 2/3수준) 내지 5천만원 이상 농업용부채 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용 대출금 이외에 사료대·종묘·비료대 등 경제사업 채무도 지원범위에 포함
- 농신보 보증지원방식을 개선하여 회생가능 농가의 부담 완화
  - 1억원까지 농신보 간이신용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채대책특례 보증 적용(현재 : 5천만원) 검토 등

## 2-3-1.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건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03년부터 시범도입 추진
- 지원규모 및 조건('04) : 2,000억원, 연리 3.0%,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 문제점

- '0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건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지원대상 자격 및 자금지원범위 등의 제한에 따른 상시적 회생지원체제 미흡으로 농업인의 경영위기 대처 및 부채문제 해결에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WTO/DDA 농업협상 등에 따라 농가소득 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다수 발생 우려
-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 일시적 경영위기 처한 농업인에 대한 회생지원을 통해 농가부채문제 상시 해결 시스템 구축

### 다. 세부추진내용

-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 개정시 제5조의 2 신설('04.3.5)
-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상설화(자금지원 매년 2,000억원)

□ 자금지원 방법

- 경영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농업인 : 인수 희망자에게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대출기관은 자금지원, 경영회생계획 이행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

□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지침 보완을 통한 회생자금지원 활성화

- 지원대상 농업인 및 지원대상 자금범위 확대 등

□ 농업경영회생 제도개선으로 농가부채문제를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발전

- 회생불능 농업인의 부채 인계 및 조정 등을 통한 해결 방안 강구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4)	2단계(2005~)
○ 상시적 농업경영 회생프로그램 도입	○ 농업경영회생지원 제도 상설화 ○ 농업경영회생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	○ 부채문제를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정착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확대 - 회생불능 농업인의 부채 문제 해결 방안 강구

## 2-3-2. 채무조정프로그램 마련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경영회생제도를 상설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회생불능으로 판정받은 농업인 등에 대한 별도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없음
  - \* 신용불량자(농업인 포함) 중 다중채무자는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를 이용 채무조정 가능
  - \* 신용회복 상담결과 고정소득 및 신용불량 미등록 등 상담부적격 사유로 상담자 6817천명 중 441천명(64.8%)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04.8.31 기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지원제도, 개인(법인)의 도산 및 파산제도가 동법률에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임(개인채무자회생법, '04.9.23 시행)

### 다. 세부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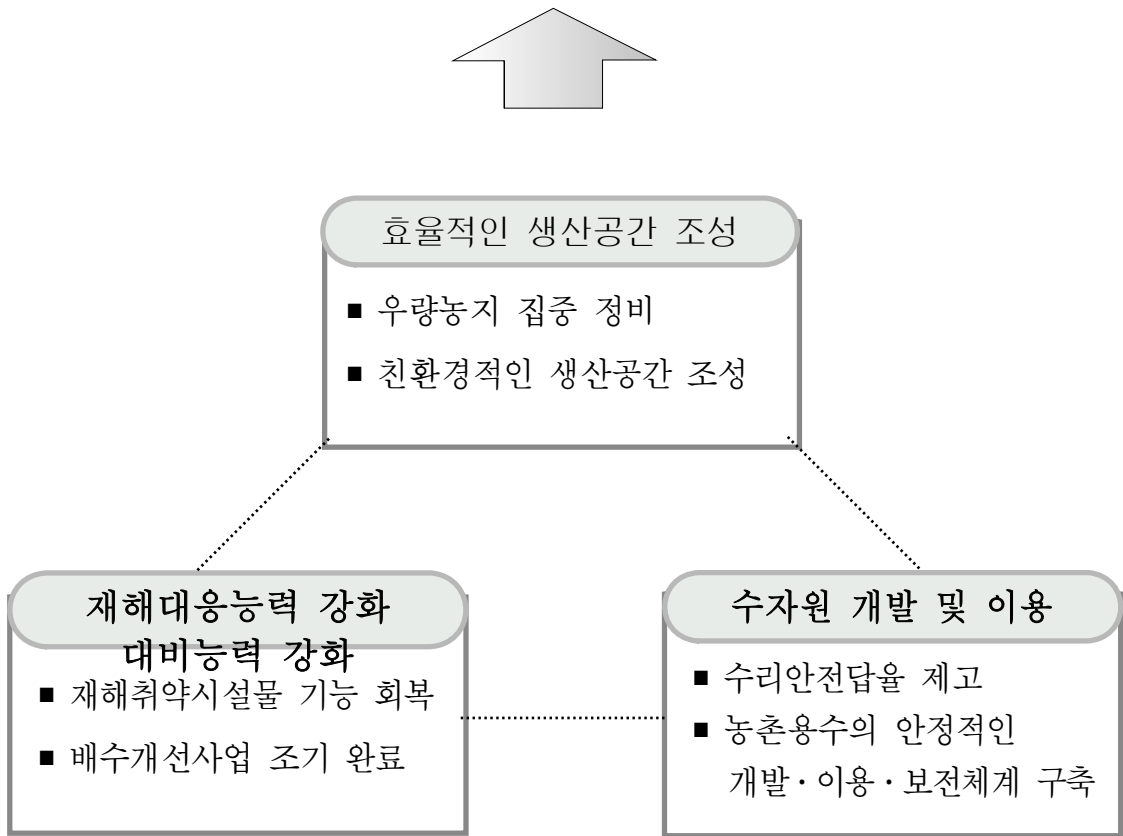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중 회생불능 농업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보완
  - 지원대상 농업인 및 지원대상 자금 등에 대한 사업지침 보완
-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분석·검토
  - 농협과 합동 작업반 구성·운영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 검토 등
  - 농업인(농업경영체 포함)에 대한 별도의 채무조정프로그램 마련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4)	2단계(2005~)
○ 농업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 농업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등 검토 및 관련 법률 검토 - 농협과 합동작업반 구성·운영	○ 농업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등

## 2-4. 자연재해 예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 친환경 농업 생산공간 조성 및 재해 대비 철저



- 농촌다움을 갖춘 친환경적인 농업 생산기반 조성
- 농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여 생산기반 정비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



◇ 농촌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우량농지 중심으로 내실화

-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효율화 · 내실화
- 식량의 자급기반과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대비 능력 강화
  -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추진
    - 이상홍수시 인적·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 배수장 등의 수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
    - 저수지 제방붕괴시 하류지역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대처 계획 수립
  - 매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11년까지 조기완료
    - 배수개선 목표를 지표배수개선으로 축소 조정(235천ha → 188)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농업생산기반정비
  -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조성 및 관광·레저 공간 등 부대시설을 설치
    - 저수지, 방조제 주변에 순환도로,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수상레저시설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 배수장 등의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리모델링하여 기능 개선
  - 관광·레저·체육시설 개발에 民資와 지방비를 유치하여 개발이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

## 2-4-1. 재해대비 시설안전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노후 및 재해취약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시설물 기능회복 및 재해대비
  -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 8,279개소 중 '03년까지 61%인 5,354개소 개보수 추진
  - 기능회복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03년까지 1,460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퇴적토 39백만m<sup>3</sup>(1,758개 저수지)준설 및 용수확보
- 태풍, 해일 등에 취약한 노후 방조제·배수갑문·부대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
  - '03까지 개보수 대상 방조제 3,490개소중 1,000개소 완료(29%)
-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는 저지대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예방
  - '03년말 현재 전체 논 1,138천ha중 상습침수 농경지는 188천ha이며, '04년까지 128천ha(68%)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0천ha는 '11년까지 배수개선 추진계획
- 이상홍수로 인한 저수지 붕괴시 하류지역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기능보강 및 비상대처계획수립
  - 이상호우에도 안전하도록 개정된 '재해대비 수리시설 설계기준('03.2)에 따라 물넘이 확장, 제당 더쌓기 등 시설기능 보강
  -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필요한 저수용량 100만톤이상 저수지 440개소중 피해잠재성이 큰 저수용량 300만톤이상 저수지 120개소에 대하여 우선 비상대처계획 수립

## □ 문 제 점

-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수리시설 및 농경지의 피해가 증가 추세
  - 농업기반공사관리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 시설물 12,830개소 중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46% (6,400개소) 차지
  - 용수로 60,533km중 토공수로가 54%(32,749km) 차지
  - 그 동안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영농 기반조성에는 아직 미흡
    - '02년 제15호태풍 "루사" 등으로 수리시설 7,148개소가 파손되거나 붕괴되어 4,897억원의 피해 발생
    - 수리시설/농경지 수해복구를 위해 최근 12년간('92~'03) 2조 6천억원의 예산 투입
    - 저수지·배수장 3,880개소 중 64%가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
- 수리시설에 대한 양적개발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나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는 미흡
  - 정보산업기술을 활용한 용수이용·관리체계가 미흡
  - 기상정보, 급수상황, 수요예측·방류 등 종합물관리기반이 미흡
- 수세폐지로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현장 수리시설 관리원의 노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로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 미흡
- 배수개선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대책사업이나 '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침수농경지 188천ha을 '11년까지 완료하는데 차질 예상
  -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낮아 투자규모 축소가 예측
  - '05~'11까지 개발목표는 60천ha이나 계획된 투자금액으로는 67% 수준인 41천ha 개발가능
    - 목표달성을 위한 소요예산 현실화 및 목표기간 연장 필요
- 자연재해로 인하여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될시 하류지역의 피해를 감안하면, 저수용량 100만톤이상~300만톤미만 저수지에 대하여도 비상대처계획수립이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증가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므로 재해대비 차원의 사업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저수지, 배수장 등 기존 수리시설물의 시설개보수 및 보강을 통한 안전성 강화 필요
  - 저지대 상습침수농경지는 피해 증가로 조기에 방재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 추세
- 농업개방 등 국내외적인 여건과 그 동안의 생산기반정비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사업기간 단축, 투자규모 확대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배수개선 및 국가관리방조제는 국고 100%이며, 재해대책 사업임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투자규모가 결정되므로 중앙차원의 재해대책에 한계
  - 지자체의 투자순위가 후순위로 한도액 배정의 한계로 사업축소가 예상됨

### □ 추진방향

- 수리시설별 설계기준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에 대한 보강 추진
  - 노후 배수갑문 등 수문은 시설교체 및 전동화하여 신속한 대응
  - 홍수량 배제 능력이 부족한 시설은 확장 등 안전대책 추진
  - 주요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개보수 추진
  - 시설규모가 크고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적기 정밀안전진단 및 과학적·체계적 계측관리로 재해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

- 침수피해가 심한 저지대 농경지를 대상으로 상습농경지, 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예상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수개선사업 추진
  - 공사중인 지구는 배수장부터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등 완공위주의 예산 지원
  - 노후화되었거나 홍수량 배제용량이 부족한 배수장은 시설 보강
  - '11까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배수개선사업 소요예산 현실화
  - 재해예방사업은 정책방향에 맞게 정부에서 중점관리 필요
- 이상홍수시 저수지 제방 붕괴에 대비하여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계획수립
  - 재해사전대책으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계획수립
  - 비상시 활용이 용이하게 인명보호 위주의 계획수립
- 피해 잠재성이 큰 저수지부터 우선 추진
  - 저수지 하류지역에 도시, 관광지 등 인구밀집지역
  - 비상대처계획을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피해최소화
  - 지자체의 지방방재계획에 반영
  -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수계단위로 수립

#### 다. 세부 추진내용

-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 및 개보수 확대 추진
  - 예정지조사, 기본조사를 통하여 재해잠재성을 평가한 후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 및 사업추진
  - 이상홍수 등 재해대비 능력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보강 추진
  - 개보수는 저수지 등 재해위험이 높은 수원공 위주로 추진하고, 용수로는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연생태계 보호

-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조기 해소
  - 노후 및 홍수배제능력 부족시설은 인근 신규지구에 포함하여 개발
  - '11년까지 배수개선을 완료하여 상습침수지역 해소
- 피해잠재성이 큰 저수용량 300백만톤이상 저수지부터 우선 비상대처계획 수립
  - 저수용량 300만톤 미만 저수지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 하도록 하여 비상시에 대비
- 농업기반시설 1, 2종 시설(19,654개소)중 시설규모가 크고,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 1종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
  -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방조제 시설(197개소)에 대한 재해예방 계측시스템 설치(74%) 및 정기적 계측 실시
  - 저수용량 100만m<sup>3</sup>이상, 유역면적 1,000ha 이상인 저수지 200개소에 대한 수문량 검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시설안전 및 재해 대비	수리시설개보수율 62% 방조제개보수율 31%	66%로 확대 40%로 확대	71%로 확대('13) 76%로 확대('13)
○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확보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큰 1종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측기시설설치 6% 수준	진단 미실시 1종시설 및 2종 시설까지 확대 계측기시설설치 37%로 확대 저수지 수문조사 완료	1종시설 재진단 및 2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계측기시설설치 74%로 확대
○ 배수개선투자규모 확대	배수개선을 72%('05)	86%('08)로 확대	91%로 확대('09) 사업완료('11)
○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수립	10% 추진('04), 27%('05)	77%('08)로 확대	93%로 확대('09) 사업완료('10)

## 2-4-2. 수자원 개발 및 이용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논면적 1,138천ha의 77%인 880천ha를 수리답으로 조성
  - 10년빈도 가뭄에 대비한 수리안전답은 434천ha(38%)
- '03~'13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 중심으로 용수개발 추진

#### □ 문제점

- 영농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 증가와 농촌지역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생활·공업·환경용수 등 다양한 용수수요 증가
  - 수확량 증가, 직파재배 등 영농방법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소비량 증가(30%)로 기존 수리시설의 급수능력 부족 초래
  - 논 용수 이외에 밭용수,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환경·공업용수에 대한 용수공급이 미흡
- 개발여건 불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 반영 등이 미흡하여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 사업비가 관정, 소규모양수시설 비용기준으로 책정되어 실소요 사업비 반영이 미흡
  -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 향상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사전 대응키 위한 사업량 반영 미흡

- 최근 쌀 수급 불균형과 관련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시설의 외면적 확대보다는 우량농지 중심으로 내실화 할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안정적인 밭작물의 용수 수요와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 환경,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 증가
  - 가뭄, 홍수 등 기상재해의 심화와 더불어 직파재배, 수확량 증가 등에 따른 용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단순 영농목적의 농업용수에서 영농, 생활, 환경용수 등을 반영한 다목적 용수 확보로 발전

### □ 추진방향

- 물부족 시대에 대비하여 물걱정 없는 안전영농 실현과 농촌 지역 생활, 환경,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종합개발 추진
  -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 중심으로 용수개발을 추진
  - 양적 위주의 신규 용수개발에서 내한능력과 시설물 안전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보강개발로 전환
  - 직파재배 등 영농방법 변화로 부족해지는 용수량 증대를 위해 기존 수리시설 보강 및 재개발 추진
-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주 집중지원 등으로 조기에 마무리
  -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기간 장기화 및 투자효율 저하 방지 강화
  - 용수개발은 시행중인 사업지구 단가에 맞도록 투자비 현실화 단계적 추진



## ○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체계 재정립

- 농촌용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농촌용수이용재편사업” 추진
- 기존의 공사관리구역내 수리시설개보수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시·군관리구역내 기존시설의 보강을 포함한 “농촌용수 공급 및 이용체계 일원화 사업” 추진

## 다. 세부 추진내용

- 우량농지 위주로 개발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완료되는 ‘13년까지 수리답율을 82%까지 제고(900천ha)
  - 10년빈도 수리안전답율은 55%까지 제고(604천ha)
  - 농업진흥지역내의 천수답 19천ha는 ‘13까지 완료
- 시행중인 용수개발 지구는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시설관리 능력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능보강 위주 개발 전환
- 논 중심의 농업용수 위주 개발에서 밭용수 및 생활·공업·환경유지용수 등 농촌용수 종합개발로 전환
- 늘어나는 용수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시설의 보강과 급수체계 개선을 통해 농촌용수의 안정적인 개발·이용·보전 체계 구축
  - 기존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능력을 검토하여 저수지 더쌓기 등 보강을 통한 용수공급능력 확대
  - 노후시설은 기능회복을 위한 단순한 보강에서 물관리 편의와 인력·용수절약이 가능하도록 현대화
- 농촌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체계 개선
  - 농촌용수의 여유수계(시설)와 인근 물부족 수계(시설)를 연결, 상호 보완적인 용수공급체계로 개선하여 수계간, 시설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농촌용수이용재편사업추진
  - \* 총대상 13천ha중 ‘13년까지 12천ha추진
  - \* ‘05부터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확보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수리답을 및 안전답을 제고	○ 수리답을 77% 수리안전답을 39%	○ 수리답을 80% 수리안전답을 45%	○ 수리답을 82% 수리안전답을 55%
○ 수자원 개발 및 이용	기존시설의 기능보강 등 급수체계 개선을 통한 농촌용수의 개발, 보전, 이용체계 구축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 중심으로 수리안전답을 제고 추진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 중심으로 수리안전답을 제고 추진

### 2-4-3. 안정영농을 위한 기반정비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경지정리,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정비를 통하여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영농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농업노동력 감소에 기여
  - 농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도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
- 대규모 수계의 평야지 중심으로 광역단위화 하여 용수개발, 경지정리, 간척,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70년부터 총 22개지구 283천ha를 대상) 추진
  - '03까지 15개지구 162천ha(57%) 완료
  - 나머지 7개지구 121천ha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
-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확충을 위하여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용수 개발 및 농산물 운반을 위한 농로개설 등 밭 기반정비 추진
  - 전체 밭 724천ha중 10ha이상 집단화된 밭은 180천ha이며, 이중 30ha이상 집단화된 밭 110천ha를 1단계 목표로 하고 있음
  - '03년까지 59천ha(54%)를 완료, '04년에 5천ha 추진 중, 남은 46천ha는 '13년까지 추진계획
-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 서남해안 간척지를 개발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조성
  - 대상면적 136천ha중 '03까지 77천ha(민간시행 40천ha포함)를 완료 하고, 새만금·화옹 등 13지구 59천ha에 대하여 공사 시행 중
  - \* 대단위 간척 : 새만금 등 3지구 41천ha, 서남해안간척 : 화옹 등 10지구 18천ha
  - '97년 신규 간척사업 중단 선언 후 이미 착공된 지구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

## □ 문제점

- 쌀전업농육성정책 달성을 위해 기계화·규모화 영농기반조성이 필요한 반면, 쌀 산업여건 및 농업·농촌 재정투자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생산기반정비 투융자 축소
  - 경지정리,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분야에 대한 농민의 요구 증가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구는 담수호 조성으로 수자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양수장·용수로설치 등의 내부개발 사업기간 장기화로 사업효과 미흡
  - 착공한지 오래된 지구는 물가상승, 지역여건 변화 등에 의한 사업비 증액 불가피
-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확충을 위하여 밭기반정비 사업 투자규모 확대가 필요하나 '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목표면적 110천ha을 '13년까지 완료하는데 차질이 예상
  -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낮고, 지방비 부담(20%)이 있어 투자규모 축소가 예상
  - 토양유실방지 등 추가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나 정부지원단가의 제약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 쌀자급의 안정화 및 농산물개방 확대 등 농정여건 변화로 서남해안간척 등 농지조성사업에 회의적 인식 확산
  - 농지조성보다는 관광·산업용지, 환경생태공간조성 등의 수요 증가
- 수질, 갯벌보전 등 환경보전 논리의 강화와 인위적 환경변화에 대한 거부감
  - 간척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 환경단체 등의 새만금사업 반대운동 전개 등

- 농업용으로 조성된 간척지에 대하여 타용도 전환 요구
  - 영산강Ⅲ지구 간척지에 복합레저 관광단지 유치 구상 등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농업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처, 농지감소 및 휴경화, 북한에 대한 식량공급, 국제 곡물시장가격의 불안정 등을 감안할 때 농업에 대한 생산기반정비는 필수적
- 쌀생산 과잉 등 최근의 농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지기반정비의 확대보다는 우량농지 중심으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여론 대두 전망
  - 식량의 자급기반과 농업·농촌의 다면적·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업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도모
  -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시행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
- 엘리뇨, 라니냐 등 기상이변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가 경영위기관리 차원에서의 생산기반정비 수요 증대 예상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방조제 축조 및 간척 사업 등 대형사업의 신규착공은 어려울 전망
  -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활성화, 농외소득 증대 등을 내세워 관광, 산업용지 등 간척농지의 타용도 전환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예산의 한정성에 따라 생산기반정비 투자규모 축소 논란 전망
  -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농촌의 복지 증진 수요 증가등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 계획 수립시 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투자규모 축소문제 대두

## □ 추진방향

- 보전가치가 높고 집단화된 우량농지 위주로 경지정리, 농로 포장 등 기반정비 사업 지속추진
- 농업·농촌의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추진
- 받기반정비는 주산단지 및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 마늘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마늘주산단지에 받기반정비 추진
  - 사업효과가 높고 여건이 양호한 주산단지 위주로 추진
  - 농산물 저장, 가공 등 유통시설과 연계하여 추진
- 대단위농업개발 및 간척사업은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
  - 신규착수는 억제하고, 시행중 지구는 부분준공 위주로 사업효과 조기 가시화
  - 지역주민들에게 조기 분양하여 주민 민원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
  - 친환경 간척이용모델을 개발하여 시행중 또는 완료지구에 적용
  -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
- 대규모 담수호 수질보전대책 추진
  - 수질 연구조사 실시 → 대책수립 중(화옹, 시화, 해남, 고흥지구 등)
-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 규모는 중기적으로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농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투자규모 축소 검토

## 다. 세부 추진내용

-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계화경작로, 대구획경지정리, 받기반정비 등 농지 정비
  - 일반경지정리는 '04년 봄마무리까지 추진후 대구획 경지정리에 통합
  - 농지 및 농로 협소, 용·배수로 미흡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 위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지속추진
- 집단화되고 주산단지 조성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받기반정비 추진
  - 50ha이상 집단화된 지역 위주로 우선 추진
  - 50ha이하 집단화된 지역은 주민호응도, 지자체 의지 등을 감안하여 추진
  - '13년까지 30ha이상 집단화된 밭에 대한 기반정비 추진
- **농업·농촌의 변화에 부응하는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도 생산성제고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현재 진행중인 7지구의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사업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부분준공 위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지원
  - 신규착공 공구는 계획 검토 단계부터 농업인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
- '70~'80년대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지구를 대상으로 집단화 우량농지 종합재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만으로도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자립이 가능토록 보전
  - 용·배수 및 영농체계 등을 현재의 기준과 부합되도록 정비
- **간척농지 조성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추진**
  - 수질, 생태계 등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철저한 환경 관리
  -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 기법에 관한 연구결과의 현장보급 확대
  - 시행 중 지구는 수질보전대책을 수립·강구하고, 상류 하천유역의 수질개선대책 우선 추진

- 내부간척지는 당초 사업취지를 살려 농지위주로 개발하되, 어도·습지·저류지·철새도래지 등 수서·야생 동물 이동·서식공간 등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친환경 관광공간 조성
- 자연학습장, 철새관찰시설 등 체험공간 조성
- 간척지내 농지이외 시설은 환경문제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설치 허용
  - 농업·농촌발전 및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방향의 간척지의 배분·이용 전향적 반영 추진
- 논 조성 위주 사업계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종합개발 계획으로 조정 시행
  - 단순 논 조성에서 벗어나 논·밭 조성 및 환경생태공간 조성 등 다양화
  - 농산물 집하장, 농기계 보관·수리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구조 개선시설 위주로 검토
-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계획을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공동연구 추진 및 다양하고 광범위한 견해 수렴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대구획경지정리 (목표 164천ha)	대구획정리 92천ha(56%)	대구획정리 14천ha(64%)	대구획정리 9천ha(70%)
○ 대단위농업개발	○ 7지구 계속추진	○ 7지구 계속추진	○ 7지구 계속추진
○ 경작로확포장 (목표 35천km)	경작로확포장 15천km (43%)	경작로확포장 4천km (54%)	경작로확포장 4천km (66%)
○ 생산기반종합정비 (4지구)	공정율 61%	공정율 100%	
○ 밭기반정비 투자규모 확대	밭기반정비율 58%('04), 63%('05)	74%('08)로 확대	76%로 확대('09) 사업마무리('13)
○ 간척농지조성	○ 10지구 18천ha 시행 - 1지구 2.4천ha 완료	○ 9지구 16천ha 시행 - 7지구 7.9천ha 완료	○ 2지구 8.1천ha 완료



## 2-4-4. 농업용수 등 자원관리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지하수자원의 보전과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위하여 지하수 관리, 해수침투조사, 수맥조사 등 실시
- 「국가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99.12.30)」 농촌용수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 2011년 구축완료 목표로 '02부터 추진. '04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464개 용수구역에 대한 자원기초조사 등 실시
- 환경오염원(휴·폐광산, 비위생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농경지로 유입되어 오염피해 농산물이 증가하는 등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위협
  - 환경부·산자부·농진청 오염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오염원 주변농경지 88천ha를 조사, 그 결과 173개 지역에 대한 오염 개연성 확인
- 농촌의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오염원 증가로 농업용수 수질오염이 날로 확산
  - 농업용 주요 저수지(492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조사 결과, 18%(87개소) 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8mg/ℓ)을 초과
- 기상 이변에 의한 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 시급
  - 1977년 이후 25개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해가 7개년이며, 특히 2001년에는 90년만의 가뭄이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 심화

## □ 문제점

- 통합적인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미흡
  -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미 반영
  - 기 개발된 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물관리정보화 체계 구축 부진
  -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관련기관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비 조기예산 지원 필요
- 퇴수 침투 관측시설 설치비가 낮음
  - 관측정의 적정 유치를 선정하여 착정을 위한 비용 반영
- 농지오염도조사는 환경부·농진청·농기공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대책사업은 전무한 실정
  - 기준초과 오염농경지에 대해 휴경, 작목전환, 토양개량제 살포, 객토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유입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 미흡
- 오염농경지에서 재배된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일부 위해성 판정으로 국민건강 위협초래
  - 카드뮴, 구리, 납 등의 중금속이 인체에 누적될 경우 병·장애 유발
  -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개선을 위한 지원 미흡
- 쌀재고 증가 등 농업환경 변화로 신규 용수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
- 수질 악화시 농산물 품질 불신으로 국민건강·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농촌지역 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활성화
  -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환경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최소화
  - 국가 NGIS 기본계획과 연계한 새로운 수요 증가
- 시스템 구축 완료후 각 그룹에 다양한 정보 제공 가능
  - 행정기관, 실무 물관리자, 국민에 실시간 정보제공
  - 용수구역·행정구역별로 부존량, 수요·공급량, 물부족 상황에 따른 최적의 용수계획 수립
- 국민의 삶의 질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 및 수질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요구가 지속적 증가
- 가뭄, 홍수 등 기상재해의 심화와 더불어 직파재배, 조기이앙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의한 용수수요 증가와 국민 식생활 패턴변화에 의한 밭작물 수요 증가로 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요구에 따른 환경용수 및 생활·공업용수와 지역 개발과 연계된 경관유지, 레저 및 관광, 위락시설 등에 소요되는 용수 수요도 증가 예상

### □ 추진방향

- 지하수개발을 위한 조사는 축소하고 관리위주로 전환
  - 수맥조사량은 줄여나가고 기존시설의 관리는 확대
- 지하수관정의 관리를 종전의 점관리에서 면적 관리로 전환
  - 개별관리에서 구역단위로 확대하여 총괄관리 시행

-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강화
  - 사용자(end user) 위주(지자체, 국민)의 S/W개발 등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사업성과 활용성 제고
  - 농촌용수 구역의 지표수와 연계하여 수자원의 종합정보화 추진
- 수자원의 신규개발 보다는 기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악화된 수자원 개발 여건에 능동적 대처 필요
- 관련기관간 물관리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투자 방지
- 생산기반정보DB와 통합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
- 농지오염 우려지구 및 기준초과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 대책 수립 및 환경개선 추진
  - 전국 농경지 일원의 오염개연성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로 농지오염 우려지구 및 기준초과지구 파악
    - '02~'04년 : 농지오염방지조사(농지관리기금) 실시('04년말 완료)
  - 안전(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지환경관리
- 수질조사 결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 추진
  -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병행 추진

#### 다.세부 추진내용

- 지하수관리사업은 대상규모 조정과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촉진
  - 사업대상지구를 조정(464→261지구) 지구당 시행면적을 확대하여 시·군당 평균 조사기간을 3.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추진
  - 성과활용을 위한 시스템은 '05년까지 Web조회 프로그램 등 개발 완료 및 본격운영 추진

- 해수침투조사는 지자체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 완료되는 '11년에 192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은 지자체에 인계
- 수맥조사는 지자체 수요를 재조사후 사업량 조정 검토
  - 최근의 가뭄상습지 면적, 지하수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물관리정보화 마스터플랜」 및 수개단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국가 NGIS 기본계획 등과 연계 추진
  - 시스템 구축방향, 표준화 지침, 기본도 선정 등
- **관련기관(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등)간 공동활용 체계 구축**
  - 농업용수 관련 메타데이터 구축 및 공유시스템 개발
- **생산기반정보 DB와 통합연계 운영을 통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진흥지역, 시설물 이력관리 등 생산기반정보 DB 현황 파악 및 연계방안 수립
  - 관련기관, 지자체 및 대농민 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수질측정망 500지점(492개시설)에 대해 매년 수질오염원과 수질조사(2~4회/연) 및 수질변화추이를 평가·분석하여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초자료 확보
  - 수질조사 횟수 확대 : 연 2~4회 조사 → 연 4회 이상 조사
- **격년제로 전국 농업용수원(약 18천개시설)에 대한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전국 농업용수 수질현황 파악**
- 자연정화공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과 상류 오염원정화 대책 병행 추진
  -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지구 '04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방향 정립
  - '13년까지 매년 10억원 수준을 투자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정착된 후 점차 투자규모 확대

- 사전 예방적 수질 관리
  -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제도 및 홍보 강화
  - 농촌지역 하수 처리율 향상, 축산분뇨 자원화, 친환경농업 확대로 오염물질 배출 감축
- 농경지 오염도 조사를 거쳐 농지오염 우려 지구 및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대책 수립 및 환경개선 추진(52지구)
  - 농지오염도 조사결과는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오염물질 유출방지사업 추진 및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활용
    - 환경부·농진청의 조사결과 및 산자부의 광해방지사업 추진 현황을 복원·개선대책사업에 활용
    - 오염조사결과를 농관원에 통보하여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지로 활용
  - 산자부에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으로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광해방지사업 하류 농경지에 대해 우선 대책추진
  - 사업초기단계 오염농경지 개선 시범사업 실시
  - 전문가, 지자체 및 대농민 의견수렴
  - 개선공법 등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 안전(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지환경관리
    - 오염농경지 개선지구 및 오염개연성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토양·농작물)으로문제가능성 사전대처
    - 안전농산물 생산환경의 유지·보전을 위한 대농민 교육 및 홍보
    - 농지환경관리시스템(DB/GIS)의 운영·관리로 효율적인 농지환경관리
- 농지전용, 밭작물 재배확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유 수자원을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연결수로를 설치하여 수자원 불균형 해소
- 유역면적이 작아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 해안가 및 도서지역에 풍수기 하천수 등을 양수저류하여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수자원 효율적 이용
- '03년에 수립한 전국 464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이용체계 개편계획을 기초로 '05~'13년까지 (9년간) 26지구 11,200ha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통합적 지하수 관리체계구축	○ 구축 진도 5%(계획 464지구 중 24)	○ 구축 진도 20%(93지구) ○ 시스템개발완료('05년)	○ '13년까지 구축진도 50% 수준 추진 (63시군 224지구)
○ 해수침투관측망 설치	○ 설치 진도 58%(계획 192개소 중 111)	○ 설치진도 78%(149개소)	○ 설치진도 100%(192개소 완료) ○ '11년 완료 및 지자체에 인계예정
○ 물 관리 정보화 시스템구축	○ 자원조사실시 ○ DB구축 ○ 시스템 개발	○ 자원조사실시('05년) ○ DB구축('08년) ○ 시스템개발('06년)	○ DB갱신·보완 ○ 시스템보완
○ 물 관리 정보화 기관간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	○ 공유데이터구축 ○ 공유시스템개발	○ 공유데이터구축('06년) ○ 공유시스템개발('06년)	○ 홈페이지 운영
○ 물 관리 정보화 지자체, 농민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개발	○ 홈페이지 구축('06년) - 홈페이지 운영('07년)	○ 홈페이지 운영
○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지구 선정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 사업착수 및 시행
○ 수질조사 횟수 확대	○ 400지점 : 2회/연 ○ 100지점 : 4회/연	○ 500지점 : 4회/연 ○ 격년 18천개 전수조사	○ 좌 동
○ 수질개선	○ 시범지구('03완공) 사후평가(모니터링)	○ 완공지구 매년 사후 모니터링 실시 매년 1지구씩 착수	○ 완공지구 매년 사후 모니터링 실시 매년 1지구씩 착수
○ 오염농경지조사 및 개선		○ 오염농경지 개선 (13지구)	○ 오염농경지 개선 (39지구)
○ 농지환경관리	○ 농지오염정보화시스템 (1식)	○ 농지환경관리시스템 운영	○ 농지환경관리시스템 운영

## 2-4-5.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 가. 농업기계화 발전과정 및 주요특징

#### □ 60~70년대 : 식량증산을 위한 기계화 촉진

- 방제기, 양수기 등 재해대책기종 중점 공급
- 1978.12월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제정, 제도적기반 조성

#### □ 80~90년대 : 일관기계화 촉진(보조공급)

- '81년~'99년까지 공동이용조직 육성
  - 53천개소 설치, 196천대의 농기계 공급
- '92~'99년까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 53.6천호를 대상, 93천대의 농기계 공급
- '93~'97년까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
  - 200만원 기준으로 50%보조(200만원 초과시 100만원)

#### □ 2000년대 : 생산비절감 기계화 촉진(융자공급)

- '00년부터 융자를 통한 구입자금 지속 지원
    - 연리 3%로 농기계 가격의 70% 융자(쌀전업농은 90%)
    - 적정 농기계 구입유도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제 활용('03년)
  - 이용율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중고농기계거래 활성화 지원
    - '03년부터 임대사업 시작, 대당 24ha 작업
      - 경기도는 '99년 시작, 농협 농기계은행은 '92년 시작
    - '02년부터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중고농기계 융자제도 개선
- ⇒ '03말 238만대 보유, 20년만에 벼농사 기계화 달성



## □ 농업기계화 현황

- 지속적인 농업기계화촉진으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농업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
  - 농가인구 : ('80) 1,083만명 → ('03) 353만명(△67%)
  - 벼 10a당 노동투하시간 : ('80) 92.8시간 → ('90) 59.4 → ('03) 26.5(71%감소)
    - \* 과거의 모내기과 벼베기 일손돕기 운동이 거의 상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짐
- 농기계구입자금은 '00년부터 70% 수준 융자지원
  - 연리 3%, 1년거치 4~7년 상환
-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 등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로 수리 불편해소 및 이용율 제고에 크게 기여
  - '01년부터 농기계 A/S실태 종합평가, 미흡시 경고등 제재조치
  - 농기계 공급후 일정기간 동안 무상수리 및 부품공급 의무화
- 원활한 산업인력제공, 농기계수출확대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농기계 수출실적 : ('90) 14백만불 → ('00) 135 → ('03) 225

## □ 미흡한 점

- 농기계 이용율이 낮음(이앙기 및 콤파인)
  - 소형농기계 중심의 양적 보급에 치중
- 벼농사는 어느정도 기계화되었으나, 밭농사 기계화는 미흡한 실정임
  - 벼농사 기계화율 : 88.9%(경운·이앙·수확 98%수준, 건조 48%)
  - 밭농사 기계화율 : 47%(파종·이식 0.7%, 비닐피복 42, 수확 17)
- 농업인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시책 추진이 다소 미흡
-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A/S체제 개편과 농기계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농기계 시장규모 축소, 대형농기계 보급확대 등을 감안 A/S체제 개선 필요
  - 농기계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수출확대 등 산업활성화가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농기계 수요는 신규수요보다는 대체수요 및 중고농기계 위주로 발생
  - 트랙터, 콤바인 중심의 대형농기계 대체수요 시장과 소형농기계 시장으로 구분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임대농기계 및 중고농기계 수요 증가
- 국내 수요 제한 및 개방화 확대 등으로 농기계 생산 방식 변화
  - 경쟁력 있는 농기계(트랙터 등) 중심으로 수출비중 확대
  - 중·소형 농기계는 생산비절감 등을 위해 해외에서 생산
- 농기계 대리점의 대형화 및 A/S 경쟁 가속화
  - 대형농기계는 대리점 중심, 소형농기계는 양관점 등을 통해 공급
  - 농기계 품질 및 A/S경쟁 가속화

### □ 기계화 추진방향

-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로 농업인 보호
  - 안전검정제 도입 및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 농기계 확대 등
-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통한 생산비 인하에 기여
  - 농기계 공급제도 개선, 임대사업 대폭 확대 및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
  - 발작물·친환경농업 기계화 촉진
- A/S체계 개편으로 농업인 수리불편 최소화
- 농기계산업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기계 생산공급 여건 마련

## 다. 세부추진내용

### □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 '05년부터 안전검정제 도입
  -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기계는 안전검정을 거쳐 구입자금 지원(61개기종)
- 안전장치 부착대상 농기계 및 안전장치 확대('04.11.18, 촉진법시행령 개정)
  - 7개기종, 9개장치 → 9개기종, 11개장치
- 형식승인제 도입 검토 등 안전관리강화 제도개선 추진

###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지원제도 개선으로 농기계 이용을 제고

-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및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로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을 제고를 유도
  - 농기계임대사업 대폭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등으로 사업활성화
  - 중고 농기계 용자조건 개선 등으로 중고 농기계 거래 활성화
    - '02~'03년동안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20개소 설치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으로 과잉투자 억제 유도
  -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의 일부 규격 용자지원액 하향 조정
  -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한 구입자금 지원 확대

### □ 첨단 고성능 농기계 및 발작물용 농기계 개발 보급 촉진

- 한국인 체형에 적합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고성능 농기계 개발 보급
- BT(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이용 개발한 농기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 건조, 선별, 포장 등 수확후 관리작업의 기계화촉진으로 상품성과 부가가치 향상
  - 발작물용 및 축산용 농기계는 지속적으로 90% 용자지원

□ 친환경 정밀기계화 추진

- 에너지 절감형 농기계 및 친환경농업육성 농기계 구입자금 우대 지원
  - 비료, 농약사용량을 줄일수 있는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
  - \* “친환경 수도작정밀농업 변량형 농작업시스템” 개발중(기계화연구소)

□ 농기계 유통체계 개선 및 사후봉사사업소의 대형화 유도

- 사후봉사사업자의 등급조정 및 종합화·광역화 유도
  - ‘06.4월까지 사후봉사사업자의 등급조정 완료)
  - 부품확보 자금 우대지원 등으로 사후봉사사업자의 종합화·광역화 유도
- 제조업체간 A/S 경쟁 유도로 A/S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제조업체 자율에 의한 무상수리기간 연장 유도
  - 부품관리전산화 및 수리장비 현대화 촉진
- 농기계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제도 홍보 강화(제조물책임법 등)
  -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농림부령 제1482호, '04.11.18)
    - 사후봉사사업소 등급 조정 : 5단계(종합, 시·도·군(읍·면), (읍·면) → 3단계(대·중·소형)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설치 의무화 및 기술인력 확보기준 상향 조정
    - 농기계 무상수리기간 연장
      - 밃선 등 주요부품 : 2년 → 2년이상, 기타 부품 1년 → 1년이상

□ 농기계 수출 활성화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 유도

- 국제농기계 박람회 개최비 지속 지원
  - 주요국가의 기계화사업 관련 정보수집 제공
- 농림기술개발사업 등을 이용 연구개발비 지원
- 산·학·관·연 공동연구 강화 등 연구개발 실용화 촉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벼농사기계화 (건조 포함)	90%	92%로 확대	95%로 확대
○ 밭농사기계화	47%	50%로 확대	54%로 확대

## 2-4-6. 노지채소 농기계 임대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DDA이후 시장개방확대시 작업단계별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로 채소산업의 안정적 정착육 유도 필요
- 노지채소부문 기계화는 영농규모가 적고 재배작목이 다양하여 기계시장수요의 경제성이 낮아 민간업체 기계개발사업의 소극적
- 노지채소 기계화는 경운·정지·방제 등 범용부문은 90%이상으로 기계화율이 높으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파종·수확은 극히 낮음
  - 기계화율 : 경운·정지 95%, 방제 90, 파종·이식 0.7, 수확 7.2
  - \* 작목별 기계화율 : 벼농사 99%(건조작업 포함 89%), 밭 47%
- 시장규모가 경제성이 낮은 노지채소 기계화는 기계개발 촉진과 보급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기계보급지원사업 필요
  - 경영규모화, 기계개발, 기계화 재배기술개발, 기계화 적응품종개발, 농가보급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농기계 보급지원사업으로 기계화율 제고
  - 마늘은 파종·수확 등 작업단계별 기계보급(생산비 12% 절감)
  - 고추는 정식·수확기 및 일시수확형 품종개발 보급(생산비 10% 절감)
  - 양파·배추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시스템 보급(생산비 25% 절감)
- 농기계보급은 개별농가보다 산지유통조직과 연계된 생산자 조직 구성원(작목반)에 공동이용 우선 보급
- 기계개발은 농업공학연구소에서 모델, 실용 기계는 민간업체 담당

## 다. 세부추진내용

### □ 품목별 기계화 목표

- 고추 : '08년까지 재배면적의 5%, '13년까지 25% 기계화
- 마늘 : '08년까지 재배면적의 60% 기계화, '13년까지 지속 유지
  - '07년까지는 마늘산업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보급대상 기종 및 기계화목표 등을 재검토하여 계속지원 여부결정
- 양파 : '08년까지 재배면적의 10%, '13년까지 25% 기계화
- 배추 : '08년까지 재배면적의 4%, '13년까지 20% 기계화

### □ 추진방법

- 국내개발기종 및 도입기종을 대상으로 농가실증시험을 거쳐 '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보급(배추는 '07년부터)
-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08년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 기 추진 중인 마늘은 '07년까지 마늘산업종합대책으로 추진

### □ 연도별 투자계획

- 총 투자계획 : 1,123억원(국고 337, 지방비 225, 자부담 561)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대, 억원)

	계	'06	'07	'08	'09	'10	'11	'12	'13
사업량	18,110	150	902	2,763	2,763	2,793	2,873	2,923	2,943
총사업비	1,123	38	101	145	145	156	168	181	189
국고보조	337	11	30	44	44	47	50	54	57
지방비	225	8	20	29	29	31	34	36	38
자부담	561	19	51	72	72	78	84	91	94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지원대상 기종

- 고추 : 정식기 및 수확기
- 마늘 :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쪽선별기, 줄기절단기, 주아선별기, 주아씨마늘선별기
- 양파 : 정식기, 수확기 및 일관수확기계(수확, 선별, 운반)
- 배추 : 두둑성형기, 정식기, 중경제초기, 붐방제기, 수확기
  - set단위 공급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농업인 희망에 따라 기종별 공급도 가능(사업시행지침에 검토 반영)

□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단, 지방자치단체 구입시는 국고 50%, 지방비 50%

□ 품목별, 기종별 보급계획

- 고추 : 정식기는 '06년까지 개발 완료하여 '07년부터 보급 추진
  - 수확기는 일시수확형 또는 수확시기 절감형 품종의 농가보급과 기계개발을 연계하여 보급추진
- 마늘 :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쪽선별기 및 줄기절단기 등 기 개발된 기종 중심으로 지원하되 기계성능은 지속보완
  - 주아선별기 등 신규 개발되는 기계는 보급대상 기종으로 추가
- 양파 : 정식기 '06년, 수확기 '07년부터 보급하고 일관수확 시스템은 '06년부터 시범도입 보급
- 배추 : 보행용 정식기 개발, 시제품 제작, 현장적용시험 등을 거쳐 '07년부터 보급

## □ 지원방법

- 자치단체 및 지역농협에서 구입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등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이용사업 실시
  -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이 공동이용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구입을 희망할 경우에도 구입지원
- 자치단체 및 지역농협은 임대사업 규정을 제정하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조직에 공동이용 임대지원

## □ 지원대상 농기계 및 A/S지원

- 작물별 대상기종을 정부지원 사업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공학연구소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함
  - 『다른 기계·설비의 고정부착물이 아닌 독립된 형태의 농기계』
- 지원대상 농기계를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 농업인 판매가격 및 A/S계획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출
- 농기계조합은 공급업체별 판매가격 및 A/S계획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가 A/S 등에 문제발생시 지원대상 제외

## □ 농기계 개발촉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 작업단계별 기계모델은 농진청 농업공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



- 농진청은 개발모델을 민간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실용기계를 개발토록 하고 농가실증시험 등은 공동으로 추진하여 기계 개발 촉진
- 기 개발된 기종에 대해서도 민·관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성능보완시험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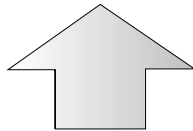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기계 보급	수요조사 및 기계화 지원체계 확립	타당성 검토,시범보급 신기계 개발(농진청)	보급 추진

### 3. 다양한 농외소득원 적극 발굴

농외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

\* 2013년까지 농외소득비중을 67%까지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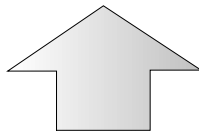
- 지역특화 관광마을 조성
-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 강화

농공단지 활성화

- 농공단지 조성 확대
- 농공단지의 지역특화산업 단지화 유도

향토산업 육성

-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
- 지역브랜드 개발 및 품질 강화



- 농촌관광 붐 조성 및 농업·농촌의 Amenity 증진과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관광자원화
- 농공단지에 지역특산물 가공업체 적극유치로 다양한 일거리 창출
- 전통기술, 토산품 등을 발굴하여 상품화·고품질화 추진

### 3-1. 농촌 어메니티 증진 등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지원하여 농촌 관광의 거점으로 활용
  - 시·군당 5~7개 마을을 거점마을로 육성하고, 거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 '13년까지 총 1,000개의 특색 있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추진
  - 농촌관광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농촌관광 붐 조성 및 마을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
- 농촌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개
  - 농촌관광 포털사이트를 확충하여 인터넷상의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TV 및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 실시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 학습 장려
    - 교과과정에 농촌체험학습을 포함시키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농촌 관광마을 초청행사 정례화
  - 「1社1村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도·농 자매결연 촉진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농촌관광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05)
    - 농촌관광마을 조성 및 인력육성, 숙박시설 관련규정 등 체계적으로 정비
  - 농업기반공사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농촌관광 컨설팅, 교육, 홍보업무 등을 전담
  - 전국 또는 지역단위에서 농촌관광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 3-1-1. 농촌관광 활성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에 따라 증가되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촌관광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창출을 위한 마케팅활동 등 전개
  - '02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지원('04까지 76개소 조성)
  -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털사이트 개설·운영
  - 휴가 및 방학철을 맞아 초등학생 농촌체험기 공모, 초등학교교사 농촌체험마을 초청 등 농촌관광 마케팅 실시
  - 농촌관광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 문제점

- 농촌관광은 아직 초기단계로 도시민 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공급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
  - 숙박시설, 관광안내소, 마을안내관 등 기초적 관광인프라 미비
  -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마케팅활동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촌관광의 지속적인 증가 및 다양한 패턴의 관광 수요 전망
  - 국내관광총량 : ('02) 4억명 → ('05) 5.1억명 → ('11) 6.1억명
  - 농 촌 관 광 : ('01) 31백만명 → ('05) 68 → ('08) 100 → ('11) 146
  - \*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관광수요예측 추정 결과
-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농촌관광 수용능력의 지속적 확충
-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

## 나. 세부추진내용

- '13까지 1,000개소의 농촌관광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의 거점으로 활용
  - \* 녹색농촌체험마을 850, 전통테마마을 150
- 농촌관광 붐 조성을 위한 **농촌관광 홍보 및 지원시스템 구축**
  -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및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콘텐츠 확충·운영
  -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시민상 제정, 농산어촌관광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학습 장려**
  - 교과과정에 농촌체험내용을 포함시키고, 녹색수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 방학기간 중 교사 등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마을 초청 행사 정례화
-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개최 및 그린투어포럼 개최 등을 통해 농촌관광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심제고 유도
- 관계부처 합동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 제정을 통해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정보보유 및 마을 적극 지원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업추진방향, 마을사후관리 등을 협의하고 정례적으로 마을별 실태조사 및 공동개선방안 강구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촌관광마을조성	· 32개마을 추가 조성	· 538개로 확대('08)	· 1,000개소로 확대('13)
○ 농촌관광 지원 체계구축	· 다양한 농촌관광홍보,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초등학교대상 농촌체험기 공모전 및 체험행사 등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관한통합지침」 제정시행 및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운영		

## 3-1-2. 농산어촌 경관지표 개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OECD 농업환경지표에 대응하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정책, 지표 등 논리적 근거 마련
  - 생물다양성 보전협약, UN Habitat 국제회의 등에 대응한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농촌경관의 보전 및 다양한 실천방안과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정책, 지표 등 논리적 근거 마련 미흡
  -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 및 확대 근거자료 제공
- 농촌경관, 마을환경계획 등 경관생태학적 측면의 보전방안 필요
  - 환경친화형 생태마을, 농촌경관 보전, 관광자원화, 주민참여를 통한 농촌가꾸기 실현
-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을 통해 어메니티 자원을 농가소득과 연계한 자원화·소득화 추진
  -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자연·환경·문화 등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수요가 급증
  - 다양한 마을특성에 기초한 테마선정 및 권역특성별 어메니티 계획 모델 개발을 통한 도·농 공존의 삶의 터전 조성

#### □ 문제점

- UN의 「생물다양성협약」 체결('92) 이후 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보전·이용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농산어촌의 소생태권 및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과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이 미약한 실정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촌경관의 유지보전을 위한 농촌경관지표 및 생태지도 제작
- 자원별, 권역별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 콘텐츠를 활용한 체계적 개발 도모

## 다. 세부추진내용

- 농촌경관 지표 및 생태지도 제작
  - 농산어촌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농촌마을의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경관조사, 분석, 평가, 기준 마련
    - OECD 농업환경지표, 경관보전직불제 등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의 유지·관리방안 마련
  - 농촌경관지표를 활용한 경관도 및 생태지도 작성
    - 어메니티자원도(Amenity Map) 병행 구축
- 농촌 경관의 체계적 개발
  - 농촌권역별 어메니티계획 모델 18유형 개발('06-'07)
  - 어메니티계획 모델 18유형 보급 및 어메니티자원 콘텐츠 활용방안 마련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촌경관지표개발		—('06)	
○ 농촌경관지침 및 Map 작성			—('09)
○ 농촌어메니티 계획 모델 개발			—('09)

### 3-2.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 지역의 특유한 전통고유기술, 토산품, 관광문화상품 등 향토 지적재산을 발굴하고 산업화로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 지자체 중심으로 학계, 산업체 등이 공동 협력하여 향토 지적재산을 조사·발굴
  - 향토지적재산을 상품화하여 향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농촌진흥청, 농관원 등을 통한 연구 및 품질의 차별성 입증
    - \* 상품화 사례 : 향토제품, 숯, 머드팩, 야생화 향수, 김치 스파게티 등
-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역 브랜드 개발 및 품질 관리 강화
  - 지자체와 전문업체간 제휴로 고유브랜드 개발
  - 지리적 표시제의 확대 추진 및 자치단체의 상표권 등록 등 권리화 지원
- 지역 전통 및 특산품과 관련된 향토문화축제를 발굴 지원
  - 관광상품성이 큰 향토축제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
  - 방문객 만족도, 외국인 수용태세,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 3-2-1. 향토산업육성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최근 새롭게 부각
  - 향토산업과 관련된 사업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
    - 지역특산단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지역특화사업, 지리적표시제 등
    - \* 향토산업이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특색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31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에 근거 마련
- 향토산업 대상
  - 전통고유기술 : 전통민속주, 전통음식, 전통도자기 및 염료 등
  - 지역특산품 : 한산모시, 안동포, 농특산물, 강화화문석 등
  - 관광문화상품 : 안동하회탈, 향토음식(전주비빔밥, 마산아구찜), 지역축제(무주반딧불축제, 청도소축제) 등

##### □ 문제점

- 향토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소재(자원)가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육성 미흡
- 기업규모의 영세성, 판로부재, 선도인력 부족등으로 향토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한계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발전이 무엇보다 중요, 향토산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인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관광과 향토산업을 결합하여 다양하게 제공 할 경우 성공가능한 산업임

### □ 추진방향

- 지역의 특유한 전통 고유기술, 토산품, 관광문화상품 등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로 연결하여 부가가치 창출**
  - 지자체 중심으로 학계·산업체 등이 공동 협력하여 향토자원 조사 발굴
  - 농가소득증대와 직결되는 농산물의 향토상품화에 중점 지원
    - 농가생산 부존자원 활용과 고용증대 효과 있는 상품 위주 개발
-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지자체와 전문업체간 제휴로 고유브랜드 개발
    - \* 사례 : 함평 나비브랜드 “나르다”, 충남 농산물 “으뜸Q” 등
  - 지리적 표시제의 확대추진 및 상표권 등록 등 권리화 지원
- 지역전통 및 특산품과 관련된 **향토문화축제를 발굴 지원**
  - 관광상품성이 큰 향토축제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
    - \* '03년 30개 향토문화축제에 총 1.6천만명이 방문(경제효과 6천억원 수준)
- 향토산업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인식제고와 선도인력 육성
  - 향토산업 성공사례 집중 홍보, 향토산업 전문가 양성 등
- 향토산업을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복합상품화 추진**
  - 도시민에게 체험·문화·향토음식·관광공간을 함께 제공
-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 정립을 통한 관계부처 역할분담체계 확립

## 다. 세부 추진내용

- 제도적 기반정립 및 향토산업 육성방안 마련
  -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 정립
  - 중·장기 향토산업육성방안 마련
- 향토자원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 지원
  -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하여 2014년까지 200개 과제 발굴
  - 향토자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 향토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가 전체적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지자체별로 경쟁력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표준화된 DB구축 지원
  - 단순 특허기술 뿐만 아니라 품종, 기기, 가공방법, 관련연구진 연구논문 등을 집적화하여 표준화된 DB와 연계
  - 향토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연구분야, 응용기술개발분야, 응용컨설팅분야 및 관련학회,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Pool 구축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향토산업육성 - '14까지 200개 과제 육성으로 지역향토산업 발전	○ 향토산업 육성방안 마련	○ 향토자원 조사 발굴 및 DB 구축 ○ 향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14까지 200개 과제 선정

### 3-3. 소득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농공단지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 단지로 발전

○ 농촌주민의 취업기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 확대

\* 농공단지 확충 계획 : ('03) 297개소 → ('13) 394

○ 지역 특성에 맞는 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산물 가공·

유통업체 적극 유치

- 일반단지도 입주업체 선정시 현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

□ 특산단지는 지자체 주도하에 목공예·죽세품·모시 등 지역

이미지가 강한 소수 정예품목 중심으로 활성화

○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매 촉진

□ 농촌관광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과정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제품 판매 촉진

### 3-3-1. 농공단지조성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촌 취업기회를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4~'14까지 400개소 농공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1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
  - '03까지 315개소를 지정하고 이중 297개소 완료
    - '04년계획 : 30개소 302억원 (신규 12, 계속 10, 준공 8)
    - 단지조성비는 시·군의 재정자립도, 공업집적도, 공장면적을 종합 평가하여 평당 3~10만원 차등 지원
    - \* 지원규모(평당) : 일반 3만원, 추가지원 8만원, 우선지원농어촌 10만원
- 농공단지조성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3년말 총 생산액 20조 2,096억원('02년 대비 5.9% 증가)

##### □ 문제점

- 농공단지의 분양 및 가동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취업자가 대부분 비농업인 이어서 농외소득 증대 효과에 한계
  - \* 총 고용인원 113천명중 현지주민 80천명(농업인 22천명, 28%)
- 지역 부존자원과 연계된 농·축산물 가공 등 지역특화산업단지 육성 미흡
  - \* '03까지 완료된 농공단지 297개소 중 지역특화단지는 8개소에 불과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 애로
  - \* 휴폐업 업체중 자금부족 원인 : 60.7%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지자체로부터 기업유치에 대한 의욕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고속도로 등 개통으로 도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도권 등 도심지 기업이 농공단지로 입주 희망
- 농공단지의 지속적인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 추진방향

- 지자체 및 입주업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년 10개소 수준 준공

\* '05부터 균특사업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적정수준 요구하도록 협의·조정

-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농축산물 생산과의 연계성 강화
-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확대로 경영 안정  
⇒ 산업자원부와 협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 활성화 위주로 지원제도 개선

\* 관계부처 : 기획예산처, 환경부, 농림부, 건교부, 산자부

## 다. 세부 추진내용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 완화로 향토자원 등 지역부존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 입지 선정기준 현실화 및 입주업체에 대한 용자한도 상향조정 등 통합지침을 합리적으로 정비·보완하여 단지조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향토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 성장·발전의 거점화 추진
  - 향토산업 등 기초지자체의 부존자원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산업단지 지원 확대
  -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제도도입 취지에 적합토록 「향토산업전문단지」로 육성하여 낙후지역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유도
-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 구축
  -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등 강화 및 산·학·연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
  - 관리기본계획, 분양가 승인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
- 단지 조성·리모델링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시설이 노후화된 농공단지 재정비(리모델링)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켜 양질의 농공단지 공급을 확대
  - 관련부처간 정책협의 기능강화 및 전국농공단지 연합회의 구성('04.12) 등 단지의 지역혁신 거점화 추진
  - \* 농어촌지역 기업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방안 수립('05 상반기)

## 라.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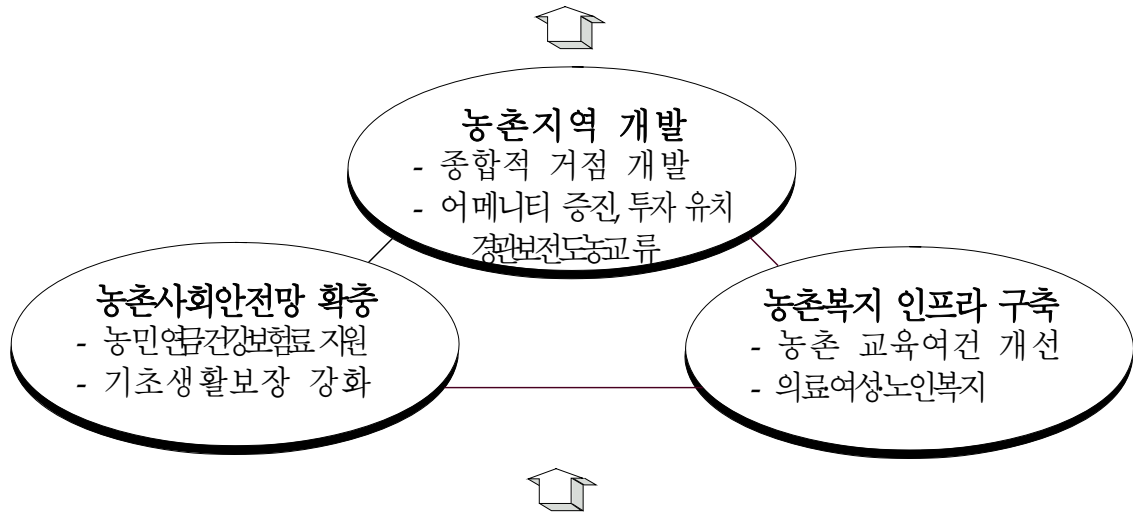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공단지 조성 확대추진 -'14까지 400개소	○ 농공단지조성 304개소 완료(누계 76%) ○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공단지 40개소 조성 - 누계 344개소(86.0%)	○ 농공단지 50개소 조성 - 누계 394개소(98.5%)

## V.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 비전과 전략 》

도·농균형발전으로 살기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구현

\* 2013년 전체인구의 20%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위원회 : 범정부적 지원 시스템
- 농어촌특별세 : 복지 및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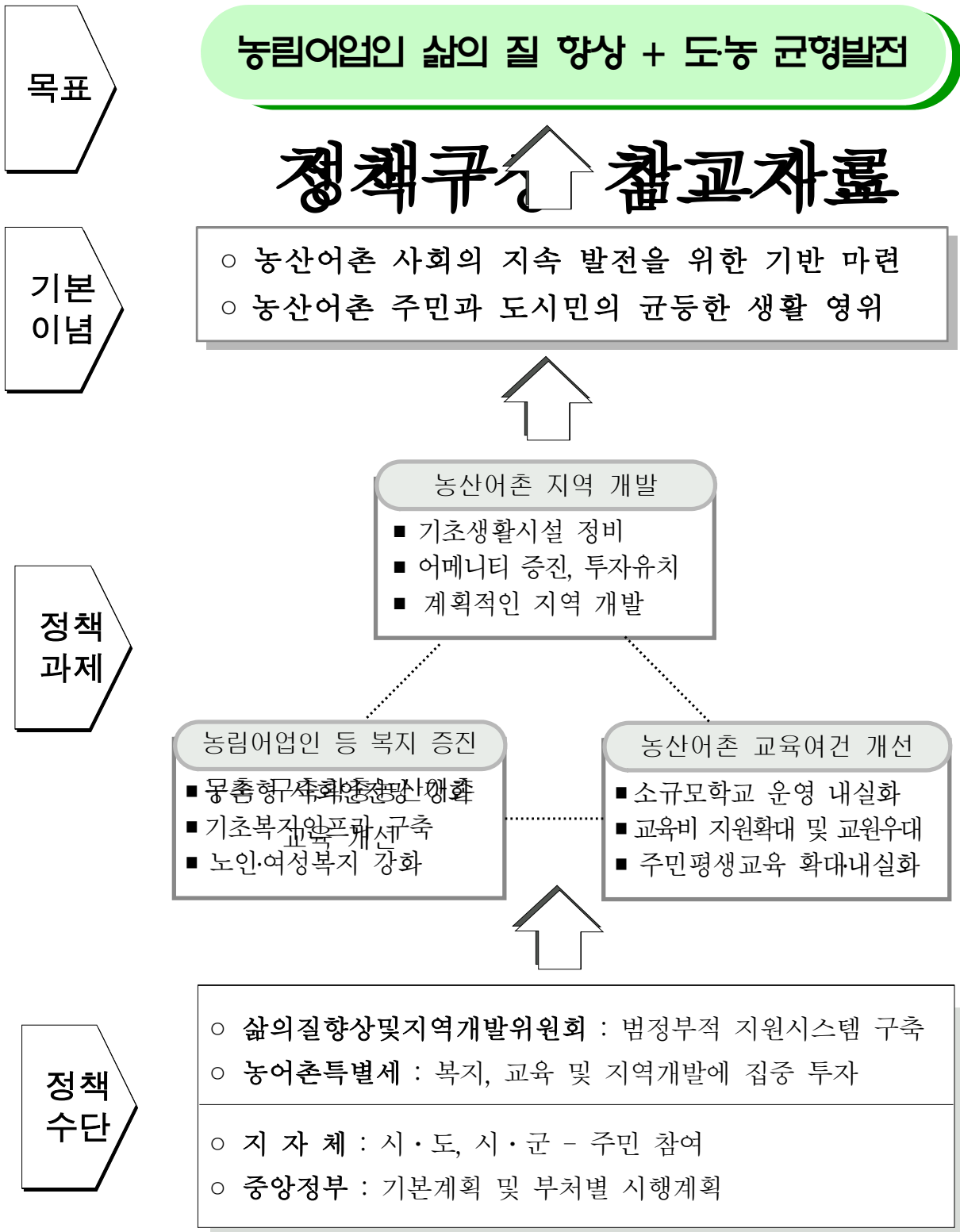
### 《 로드 맵 》

	1단계 (2004)	2단계 (2005~2008)	3단계 (2009~ )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 경감율 : 30%</li> <li>○ 국민연금 보험료 : 10등급 표준소득월액 12등급 보험료의 50%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로 확대('06)</li> <li>○ 표준소득월액 15등급 보험료의 50%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로 확대</li> </ul>
교육·의료·복지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생 교육비 지원 : 1.5ha미만 농가('03 : 1ha)</li> <li>○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5ha미만 농가</li> <li>○ 여성농업인센터 : 27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농가로 확대('05)</li> <li>○ 2ha미만 농가로 확대('05)</li> <li>○ 34개소('05), 163개소('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농가로 확대('10)</li> </ul>
농촌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도읍육성 : 매년 20개소</li> <li>○ 농촌마을종합개발 : 16개 권역</li> <li>○ 주택용자조건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개('05)</li> <li>○ 경관협약 시행('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개소로 확대('13)</li> <li>○ 1,000개권역으로 확대('13)</li> </ul>



# 1. 범정부적 농촌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시행 >



## 1-1-1. 범정부적 농촌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 농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설치·운영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15개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 25인
    - 기능 : 농촌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정책 총괄·조정, 기본계획 심의, 기본계획 및 부처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위원장 : 농림부장관) 설치·운영
  - 농촌 복지·교육·지역개발 실태조사 실시(매 5년)
    - KREI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추진방안 마련(2004.7.)
    - 전문조사기관에서 실태조사 실시(2004.8.~11)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결과 반영 및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각 부문별로 기본계획수립(매 5년)
  - 부처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군계획 수립
    - 시행계획(매년) : 기본계획에 의거 관계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제출
    - 시·도계획(매 5년) :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수립
    - 시·군계획(매 5년) : 시·군계획에 따라 자체 수립

-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방안 마련
  -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농어민 복지 및 교육, 지역 개발 분야에 집중 지원
    - \* 향후 10년간('04.7.1~'14.6.30) 농특세 투용자 규모 : 약 20조원(추정)
  - 농특세사업 이외의 복지·교육·지역개발 관련사업은 일반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적정 역할 분담 추진
  -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교육·지역개발 수요를 파악
  -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자체 계획간의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 농촌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 시책 마련
  - 농촌의 복지실태 파악,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시책 수립
    - 농촌형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 농촌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 기초생활여건 개선,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 1-1-2. 농촌정책개발연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촌개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환경개선 등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사업분야 연구 수행
  - 농촌생활환경정비·농촌개발 전략 및 정비모델 개발 추진
  -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정비 추진을 위하여 시험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추진
  - 농지오염도, 지하수 자원조사 등 농촌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 추진

#### □ 문제점

- '94~'03까지 22개 연구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생산기반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체 과제의 70% 이상 차지
  - 계획설계기준, 수리구조물 표준도, 신기술 연구 결과를 실무에 반영하는 등 생산기반분야의 선진기술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은 미흡
- 농정 패러다임 변화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농촌지역개발 관련 연구 확대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국내외 농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촌 지역개발, 농업인 복지, 농촌 교육여건 개선 등 농촌개발 정책 지원
  - 농촌지역의 계획적 개발방안 및 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농외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 농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방안, 친환경적 경관정비기술 개발 및 보급
  - 농업인 복지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 농촌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 농업생산기능 위주의 생산기반정비를 지역개발과 연계,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생산기반정비기술 개발 및 보급
-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농촌공간을 휴식·휴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정비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친환경정비 활성화 도모
  - 친환경농업 지원체계, 재해와 한해 극복기술 개발 및 편리한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관개시설의 첨단화 기술 개발

#### 다. 세부 추진내용

- 농촌 지역개발, 농촌관광, 도시자본 등 미래의 농촌개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 확대
- 소도읍·면소재지 및 마을을 연계한 농촌지역의 계획적 개발방안 및 주민역량 증대를 위한 인력육성 관련 연구 확대
  - 도·농 교류, 농촌 투자 유치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촌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진 관련 연구 확대
  - 고령화에 대응한 전원형 실버단지, 귀농·귀촌 거주단지 정비모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 농촌의 자연환경·경관보전 방안 및 친환경적 경관정비 기술연구 개발 확대
- 농업인 복지 및 농촌 교육여건 향상 관련 연구 확대
- 농업인 복지 및 농촌 교육 관련 제도·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지원 연구 확대

- 지역과 시설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생산기반정비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 수리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정비 및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법 및 기술 개발 연구 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농업단지 조성 방안 및 친환경 정비 기술과 연계한 재해대비 기술 개발 연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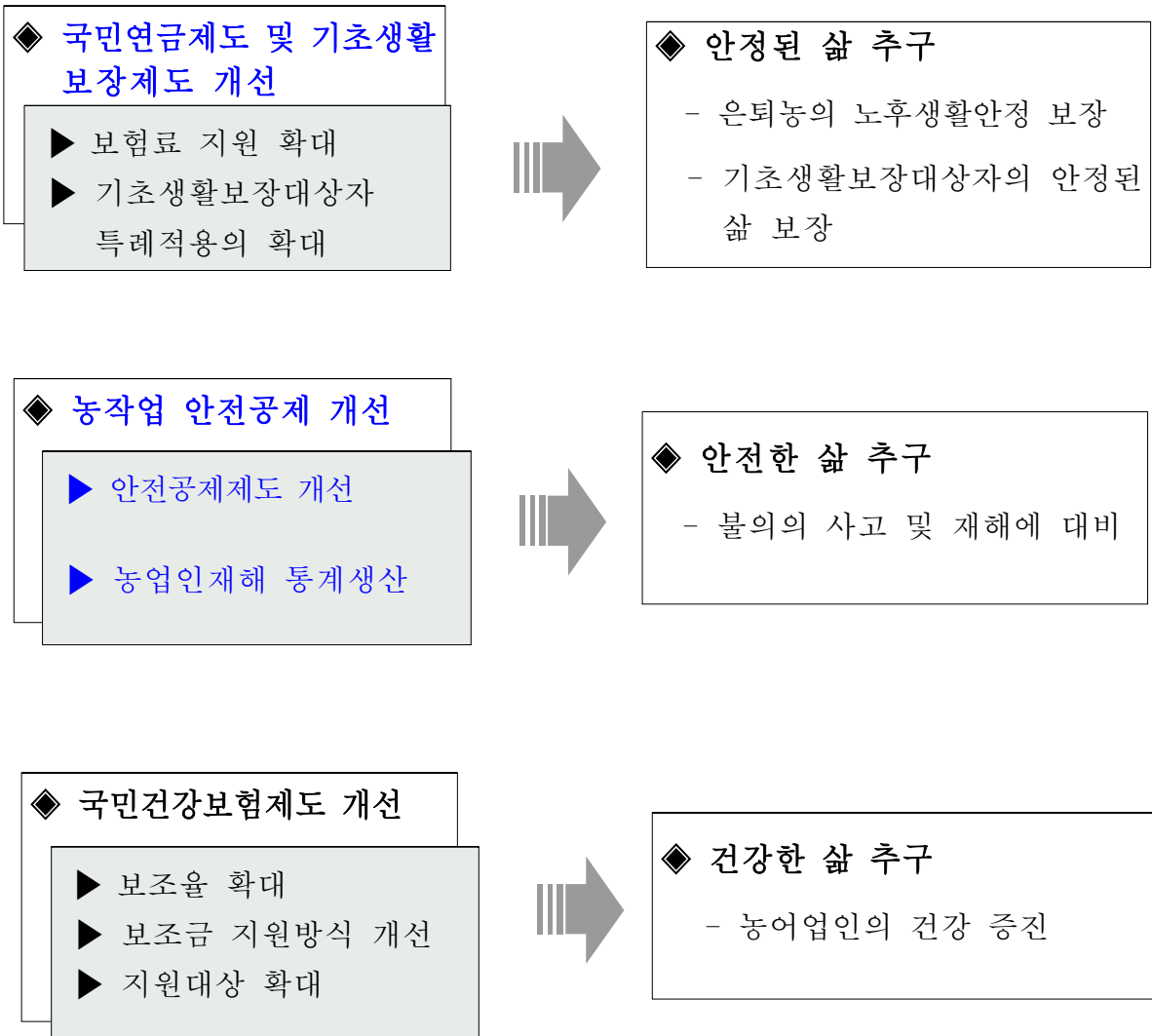
##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촌지역개발 및 농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개발 및 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li> <li>○ 도농교류, 도시자본 유치,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촌 활성화 방안</li> <li>○ 경관보전 및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 연구</li> <li>○ 농촌지역(마을)의 친환경 기술 개발 연구 및 보급</li> <li>○ 복지, 교육관련 법·제도 정비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지역정책·실행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li> <li>○ 지역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 도시자본 유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증대 방안 연구</li> <li>○ 경관보전 및 직불제 확대방안</li> <li>○ 농촌지역(마을)의 친환경 기술 개발 연구 및 보급</li> <li>○ 복지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지역정책·실행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li> <li>○ 도농교류, 도시자본유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외지역특화산업화</li> <li>○ 경관보전 및 농촌지역 자연환경·경관 관련 직불제 연구</li> <li>○ 농촌지역(마을)의 친환경 정비 기술 개발 연구 및 보급</li> <li>○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연구</li> </ul>
○ 농촌기반정비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농촌관광기반 정비기술 개발</li> <li>○ 친환경농업 및 재해대비 기술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농촌관광기반 정비기술 개발</li> <li>○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재해대비 기술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농촌관광기반 구축 연구</li> <li>○ 친환경농업 정착</li> </ul>

## 2.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농업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정책규상 참고자료



◇ 도시근로자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을 농어업인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은퇴농의 노후생활안정 도모

○ '04년부터 보험료 지원 표준소득월액 등급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 보험료지원 표준소득월액 등급상향 : ('03) 22만원 → ('04) 44 → ('09이후) 57

- 1인당 년 지원액 : ('03) 86천원 → ('04.7) 최고 152 → ('09) 최고 307

□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경감율 22%외에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50%까지 연차적으로 특별 지원

○ 경감 비율 : ('03) 22% → ('04) 30 → ('05) 40 → ('06) 50

○ 월 경감보험료 : 8,500원 → 16,690원 → 25,000원 → 35,550원

□ 농작업 재해보상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안전공제의 사망 또는 장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사망·1급장해 9,000만원)하고, 상해 공제료 지원 수준도 확대

\* 공제료 지원수준 : ('03) 평균 공제료(22천원)의 50% → ('09) 평균 공제료 (86천원)의 50%



## 2-1-1.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복지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가 소득의 감소 및 농촌 노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노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95.7월 농어민연금 제도 도입시부터 농특세로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노후대책으로서 국민연금의 지원효과 미흡
  - '04. 7월 최저등급 표준소득월액 보험료에서 12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실질적인 지원효과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연금보험료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은퇴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하여 연금가입 표준소득월액 등급 상향 조정을 통한 연금수령액 증액 도모

### 다. 세부추진내용

- 보험료 지원 표준소득월액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보험료 지원 표준소득월액 등급 상향 : ('03년) 22만원 → ('04.7) 44 → ('05) 44 → ('09) 57
  - 1인당 연간 지원액 : ('03년) 86천원 → (04.) 최고 152 → ('05) 최고 224 → ('09) 307
  - 대상인원 : 농어민국민연금 지원자 수 375천명('04. 5월말 현재)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어민연금보험료 확대 지원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표준소득월액 44만원 보험료의 50% 한도내)	좌 동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표준소득월액 57만원 보험료의 50% 한도내)

## 2-1-2.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88.1), 도시지역 확대 실시('99.4)
-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지역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경감지원 중(30%)
  - \* 도서벽지 거주 50% 경감 중
- 시의 洞지역 중 녹지지역 및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경감 지원
- 보험료 부과시 농업인의 특성반영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도모
- 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 다. 세부 추진내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을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
  - 보험료 경감을 : ('03년) 납입보험료의 22% 경감 → ('04년) 30% 경감 → ('05년) 40% 경감 → ('06년~) 50% 경감
  - 가구당 연간 경감액(평균) : ('03년) 102천원 → ('04) 210 → ('05) 294 → ('06) 404
  - \* 대상 : 농어업인 606천명('04년 기준)

○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은 현재 20%인 부과표준소득 산정시 특례를 단계별로 확대 추진
- 농업인 경작농지에 대한 부과표준 소득산정시 특례적용 추진
- 부과표준 재산액 산정시 농업용 트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추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어업인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부과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의 30% 지원('04)</li> <li>○ 보험료의 40% ('05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의 50%('06년) 지원</li> <li>○ 부과방식 개선 추진</li> <li>- 농업인 경작농지와 농업용트럭은 부과표준 소득 산정시 특례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료의 50% 지원</li> </ul>

## 2-1-3. 농업인 안전공제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업인이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 농업인안전공제금 지급('03년) : 14천건, 133억원
- 농업인 안전공제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50%)하여 가입 촉진 유도
  - 보상수준 : 사망시 1,000만원, 1급장해시 2,500만원(5년 분할지급)
  - 가입율 : 농림업경제 활동인구(188만명)의 37% 수준(697천건)
  - 평균공제료 : 26,400원
  - 사업규모 : 9,200백만원

#### □ 문제점

- 일반적인 보험체계와 달리 사망공제금이 1급장해공제금 보다 크게 낮음
- 농업인 안전공제는 일반적인 보험체계와 달리 사망공제금이 1급장해공제금 보다 크게 낮으며 보상수준도 산재보험에 비해 크게 미흡
  - \* 농가 평균소득(2,650만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 보험료 : 371,602원(고용주 100% 부담)
    - 보험금 : 사망 9,000만원, 1급장해 10,000만원
- 농업인 안전공제의 가입율이 조합원의 30%미만에서 정체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재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
  - 안정적인 영농작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
- 사망 및 장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이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입율을 제고

## 다. 세부추진내용

- 사망공제금이 장해공제금 보다 크게 낮은 현행 공제금 체계를 개편, 일반보험과 같이 사망시에 1급장해 수준의 공제금을 지급
  - \* ('04년) 사망 1,000만원, 1급장해 2,500 → ('13년까지) 사망 9,000, 1급장해 9,000
- 가입율을 현행 조합원의 29% 수준에서 40%수준으로 제고 (960천건)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확대	·보상수준 : 사망시 1,000만원 수준 ·가입율 : 조합원29%	·안전공제 기준으로 사망시와 1급장애시의 보상금 동일화 ·가입율:조합원 38%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상지원 ·가입율:조합원 40%

## 2-1-4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모든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중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원

#### □ 문제점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 인정액에서 다음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해 차감하는 특례적용이 일부 도입('04. 6)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
  -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지급받는 친환경농업소득 보조금 및 논농업소득 보조금
  -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 기준의 특례)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에 의하여 농어민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특례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조정

다. 세부추진내용

□ 농어민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농어촌 주민의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특례적용 확대

- 농어촌 주민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농업 소득 보조금, 보육료, 대출 이자비용 등 공제범위의 단계적 확대

○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마련

- 농지는 소득평가 대상 재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산출 소득만 적용하는  
 방안 마련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례범위 확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특례적용 일부 도입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하는 특례적용 확대	

### 3. 교육 · 의료 등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 교육의료 수준 제고 및 노인·여성복지 실현

# 정책구현 참고자료

#### ◆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 ▶ 소규모 학교운영의 내실화
- ▶ 교육비 지원 및 우수교원 확보
- ▶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 ◆ 농어촌 교육의 질 향상

- 도·농 교육격차 해소

#### ◆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 ▶ 의료서비스 질/접근성 향상
- ▶ 업무상재해 관리체계 구축
- ▶ 농업인 건강노동생활 지원



#### ◆ 건강하고 안전한 삶 추구

- 농어촌 주민 건강 증진

#### ◆ 농촌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 ▶ 여성농업인 센터 확대
- ▶ 농가도우미제도 개선
- ▶ 노인복지지원사업 확대
- ▶ 영유아 보육비 및 시설 지원



#### ◆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3-1. 농촌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 농촌에서도 자녀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교육비 부담 등 자녀교육문제로 젊은 농가의 대다수가 이농·탈농 희망

- 소규모학교 운영의 내실화, 교과과정 및 수업운영방법 개선, 우수교육성 등을 통한 농촌 교육의 질 향상
  - 소규모학교를 통학거리 내에 있는 인근학교와 하나의 학교群 (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
  - 방과 후 지도프로그램, 「방학캠프」 운영,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농촌 우수교육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농촌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
  -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전액 지원
    - ('04) 1.5ha미만농가 자녀 → ('05) 전 농가자녀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인원 확대
    - ('04) 26천명 → ('05) 27천명
  -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교육비 지원 : 특수학급 설치 409개교('07까지), 순회교육 90개소 ('09까지)
  - 농촌학교 시설 현대화 및 교육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 우수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인센티브 강화

○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편입학제 확대
- 사택 확충 및 시설현대화 등 근무여건 개선
- 농촌 학교 근무수당 신설, 승진상 우대 등 농촌 근무 인센티브 부여

□ 학생의 적성을 반영한 직업교육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 인력 양성

○ 지식·정보사회 및 평생학습사회에 맞도록 학교 체제 개편

- 매년 10개 농업계고 학과개편, 1개교 특성화고 지정, 종합고를 통합고로 개편 추진
- 산학연계 및 학교기업 시범운영(5개교)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농촌 영유아 교육·보육시설 확충 및 양육비 지원

- 농촌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보육시설 확대
- 농업인의 0~5세 영유아 양육비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단계적 확대

□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 '04년부터 '13년까지 총 1만명의 농어민 직업훈련 실시

- 훈련 기간 중에는 5~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
- 훈련인원 : ('03까지) 13,584명 → ('04-'13까지) 1만명

### 3-1-1. 농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교육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수 감소, 학교규모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
  - 초등학교의 복식수업, 중학교의 상치교사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및 수업부실 초래
    - \* 최근 3년간 학생 변동수 : 농산어촌 47천명 감소, 시지역 74천명 증가
    - \* 소규모학교(100명이하)는 농어촌 전체 5,194교의 47.0%인 2,420교를 차지
    - \* 농어촌 학교에는 전체 학생의 15.9% (1,243천명), 교원의 21.9%(81천명) 소재
  - 복식수업 및 1인당 분장사무의 과다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가중
    - \* 복식학급 수(1,908개교) : 강원 9.5%, 전남 6.6%, 경북 5.9%, 전북 2.6%
- 농촌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도·농간 학력격차 등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지역사회 학교에서 멀어지게 하여 이농의 원인으로 작용
  -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

#### < 도·농간 국어과목 학업성취도 비교 >

구 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서울시	2.08	2.03	2.11
광역시	2.15	2.12	2.18
중·소도시	2.13	2.06	2.14
읍·면지역	2.00	1.88	1.85

\* 변환점수 사용 : 과목간 상이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전환(3점)  
 \* 2001.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집(1%) 결과

- 학교 외의 학습기회 부족 및 열악한 교육환경의 악순환
  - 지역내 교육·학습시설 미비로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여건이 열악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보충적인 학습기회도 부족
  - 농촌학교의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학생들이 도시로 떠나는 악순환 반복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소규모학교의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 학교군(중심학교) 선정·육성,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독자적인 작은 학교 발전 등
- 농촌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하여 방과 후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이나 도시로의 우수인재의 유출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고교 육성
  - 郡 단위 1개교를 우수고교로 집중 육성하여 농촌 고등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농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 현상 방지
  - 농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시키고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비율 확대

## 다. 세부 추진내용

-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 지원체제 구축
  - ‘단독운영모델’에서 ‘협력운영모델’로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활동의 다양화 도모
    - 통학 거리 내에 있는 2~3개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 군(School Complex) 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

○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확대

- 자율적 통합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현대화, 통학버스 등 우선 지원

○ 독자적인 운영이 바람직한 학교는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전

- 소규모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지원

○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농촌의 특성에 적합한 복식수업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지원

- 다양한 학습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교과별 콘텐츠 개발·지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활용

○ 방학캠프(도시문화체험) 운영지원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의 도시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 교육소외 지역 및 계층 지원, 지역교육청 단위 순회강사 확보, 악기 등 교재·교구 지원

□ 1郡 1고교를 선정하여 농촌 우수고교 집중 육성

- 학습에 필요한 최신의 각종 시설과 학습자료, 기숙학사 지원,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등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 농촌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확대

- 특별전형 정원 외 모집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 학교군 구성 운영 ○ 통합운영학교 지원 ○ 독자적인 작은학교 운영	○ 계속지원
○ 교과과정 및 수업운영방법 개선	○ 연구학교 운영 ○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 보급 ○ 방과후 교육활동	○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연수 ○ 원격교육개발컨텐츠개발 및 활용 ○ 영어보조교사배치 ○ 방학캠프운영지원	○ 계속지원 ○ 계속지원
○ 우수고교 육성 (88개교)	○ 7개교 지원	○ 61개교 지원	○ 20개교 지원
○ 농촌학생 대학 입시특별전형 확대	○ 특별전형 정원의 모집비율 3%→4%	○ 특별전형 정원의 모집비율 4% → 5%	

## 3-1-2. 농촌지역의 교육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교육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의 취학전 유치원 유아에 대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장애도·농간 학습능력의 격차 원인이 되고 있음
  - 농어촌의 유아 보육여건 미흡 및 양육부담 등으로 젊은층의 출산 기피 및 탈농 심화
  - \*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 : 28%
-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복지시설 부족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제한

< 특수학교 설치현황(2003. 9. 1 현재) >

구분	도시		농어촌		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특수학교	114교	82.6%	24교	17.4%	138교

-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수준이 낮고 학교규모도 작아 급식비 부담이 크며, 지원대상도 초등학교로만 한정됨
- 학생수가 증가하는 대도시 위주로 교육재정이 투자되어 농촌 지역은 낙후된 교육시설로 도시와의 교육 격차 심화
  -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부족, 교육 정보 인프라, 학교 도서관 및 방과 후 주민들의 교양관련 시설 및 지역문화공간 활용 부족
-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 내 평생교육 진흥 시책 부족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 농촌 만5세아, 저소득층 만3·4세아의 유아육기회 확대, 유치원 종일반 운영 인건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교육비 지원
  - 급식비 부담이 많은 농촌지역 학교에 식품비 지원
  - 통학버스 구입비 및 운영경비 지원하여 통학불편 해소
- 농촌학교의 시설 현대화 및 교육 정보화 구축
  - 학교도서관 활성화(신설 및 리모델링), 학교시설 현대화 지원 등
- 농촌지역 학교와 지역사회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주민의 평생교육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 취업기회 제공 및 기초역량 제고

## 다. 세부 추진내용

- 농촌지역 국·공·사립 유치원에 취원 중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및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 농촌 만 5세아 무상교육,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
- 유치원의 종일반 확대, 환경 개선비 및 종일반 강사 인건비 지원



- 농촌지역의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지원 및 순회교육비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학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 급식비 지원대상을 '06부터 농촌지역의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
  - 급식비 지원수준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실화시킴
-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농촌 전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학불편 해소
  - 통학버스 구입비·임차비 지원
- 농촌 학교 다목적실 확충, e-Learning 체제, 학교 도서관 현대화
  - 다목적실 확충 및 리모델링 지속 추진
  - 교육정보 인프라구축·관리
  - 학교 도서관의 현대화 및 장서 확충,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배치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촌학교 지원
  -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개방
  - 일반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장애아교육여건개선		○편의시설 확충(~'07) ○순회교육비지원(~'09)	
○급식비 지원	○초등학교일부지원	○지원 확대 (초등 : 전액, 중·고 : 1/3)	○계속 지원
○통학편의제공		○통학버스 구입비, 임차비 지원(~'09)	
○학교시설 지원	○교육정보인프라 구축	○대상학교현황조사 및 다목적실 확충 ○교육정보인프라관리 ○학교도서관현대화	○계속 지원  ○계속 지원
○평생교육시책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시스템 마련	○계속 지원

### 3-1-3. 우수교원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교육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문화·복지시설 낙후, 가족과의 별거, 교통불편 등으로 대다수 교원들이 농촌학교 근무를 기피하여 농촌 교육의 질 저하
  - 대다수 교원의 도시지역 근무 선호와 교대 졸업생의 임용시험 기피로 농촌지역의 초등교원 부족현상 발생
  - \* '04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6개도 미달(446명)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촌 학교 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우수교원의 배치로 학생의 교육권 보장
- 초등교원 수급의 안정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우수 교사 유인

#### 다. 세부 추진내용

##### □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우수교원 확보
  -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한 우수 교원 확보, 교원 초빙제 및 순환 근무제 확대
- 교원 근무여건 개선
  - 교직원 사택 확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 가족과 함께 농촌에 거주하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복식수업 담당수당, 순회교사 수당 신설 및 도서벽지수당 인상
  - 교원 해외연수 및 자기개발 기회를 우선 부여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우수교원확보 및 근무여건개선	○ 교원확보 지원	○ 근무여건개선	○ 계속 지원

### 3-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용자로 농어촌 지역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학기당 15천명
  -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 용자
  - 대상자 선발 및 용자금 상환방법
    - 시·도 및 대학의 협조를 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최종 심사·지급
    - 졸업 후 1년 거치, 용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 지원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제1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등
- 그 동안의 추진상황
  - UR타결이후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94년 2학기 부터 지원 시작
  - '02.5.20 「중산층·서민 생활향상 관계 장관회의」에서 용자 규모를 학기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5천명으로 확대
  - '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림부로 소관을 이관하고 등록금 전액 용자

##### □ 문제점

-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인원 확대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어려운 농가경제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 학자금 용자 상환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대학등록금을 보조 지원하는 방안 마련

## 다. 세부 추진내용

-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용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 지원
  - ('03) 매학기당 200만원 한도 → ('04이후) 매학기별 등록금 한도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지원
- 학생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05년부터 지원 인원수 유지
  - 대상인원 : ('04) 26천명 → ('05이후) 27천명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소관변경	○ 교육부 → 농림부		
○ 지원단가인상	○ 학기당 200만원 → 등록금전액		
○ 지원대상확대 및 예산보조		○ 14천명 → 20천명	○ 계속지원

## 3-1-5. 농업계 고교 특성화·내실화(교육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지역의 실업계고교 입학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및 진학 기피
-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농업계 고교를 산업환경 변화와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직업교육으로 개편 시급
  - '95~'03까지 농특세로 267억원 투자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업 기초인력 양성차원에서 농촌지역의 농업계 고교를 지식·정보사회 및 평생학습사회에 맞도록 재편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직업교육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촌 교육복지 구현

### 다. 세부추진 내용

- 농업계 고교 다양화·특성화 지원
  - 농업계고 학과개편, 특성화고 지정(매년 10개학과 1개고)
  - 농촌지역 종합고를 통합형고로 개편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 및 학생 취업 지원
  - 산학연계 및 학교기업 시범운영(5개교)
  -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시범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다.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학과 개편 ○ 특성화고 지정 ○ 통합형고 개편 ○ 산학연계 시범운영	○ 800학과 ○ 7교 ○ 10교 시범운영 ○ 5교	○ 계속 지원	○ 계속 지원

### 3-1-6.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고교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지원대상 :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87천명)
  - 지원액 : 당해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국고 30%,지방비 70)
    - \* 실업계 712천원, 인문계 764
- 지원근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등
- 그 동안의 추진상황
  - '90년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 1~2학년 대상 지원
  - '91년 실업계고교 전학년 대상 지원
  - '03년 실업 인문계고교 전학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 \* '05예산 : 766억원(국비 247, 지방비 519), 지방이양사업

##### □ 문제점

-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이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과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로 농촌의 활력이 더욱 저하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학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확대가 필요함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WTO DDA협상, FTA 진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의 활력증진 차원에서 현행 농지 소유규모 1.5ha 미만의 지원대상을 전 농가로 확대

## 다. 세부추진 내용

-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전농가로 확대지원
  - 지원대상 확대 : ('04) 농지소유 1.5ha 미만 → ('05) 전 농가
  - \* '04년 한·칠레 FTA 비준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을 농지소유 1ha미만에서 1.5ha미만으로 확대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04~'05)	2단계 ('06~'08)	3단계 ('09~ )
○ 지원대상 확대	○ 농지소유 1.5ha 미만 ○ 전농가로 확대('05)		
○ 지원금액 증액	○ 입학금+ 수업료		



### 3-1-7.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문광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농간의 문화 복지 격차 심화에 대비하여 '94~'03까지 농어촌 지역에 농특세 361억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57관(275억원) 건립 및 도서 구입비 지원(86억원)
  - '03년 기준 농어촌 공공도서관 198개(전국 : 471개)
  - 지방자치단체는 취약한 재정 여건으로(부지확보, 건립 후 운영비 부담 등) 농어촌 지역 도서관 건립에는 소극적
  - \* 1관당 인구수 : 한국('02년) 104,394, 일본('01년) 47,023, 프랑스('00) 14,820
  - \* 1인당 장서수 : 한국('02년) 0.64, 일본('01년) 2.37, 프랑스('00년) 2.75, 미국('00년) 2.99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및 농어민의 평생교육, 문화복지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수요 증가

#### 다. 세부 추진내용

- 2011년까지 258개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전국 : 750개)
- 농어촌 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자료 구입비의 지원으로 농어촌의 문화 복지 기반을 조성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어촌도서관 건립 도서구입비 지원	농어촌도서관 건립 도서구입비 지원	농어촌도서관 건립 도서구입비 지원

### 3-1-8.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영세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
  - 지원대상 :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
- 지원근거 : 대통령지시사항('84.11. 3) \* '86년부터 지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제23조 등
- 지원내용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 지원일수 및 단가 : 연간 260일, 3,090원/1일

##### □ 문제점

- 급식비 지원단가가 낮아 양질의 급식 제공이 어려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급식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 다. 세부추진 내용

- 급식 대상이 충분한 영양 제공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단가 인상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06	'09
○ 지원단가 인상	○ 단가인상(3,183원)	○ 단가인상(3,819원)

### 3-1-9.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노동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농예상 농어민 및 영세농어민에 대하여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전업 및 재취업 지원하고 있으나 훈련 인원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
  - '95~'03년중 예산 474억원 지원
  - 교육실적 : ('99년) 5,397명 → ('00년) 3,018 → ('01년) 2,593 → ('02년) 1,700 → ('03년) 876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어민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실시 필요

#### 다. 세부추진내용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1~12개월 직업훈련 실시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시설, 시·도립 직업학교, 사설학원 등
  - 훈련과정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모든 과정
  - 대상인원 : '03년이후 매년 1,000명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 : 월평균 20만원 수준(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상 표준훈련비 단가)
  - 훈련수당 : 월 5만원, 우선직종수당 월 20만원
  - \* '04년 : 훈련목표 1,000명(예산 1,344백만원)

### 3-2. 농촌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 ◇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경감을 위한 농업인 지원 및 연구사업 확충
- ◇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보강

-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의료기관(보건소)의 시설·장비 보강
  - '09까지 농촌지역의 노후 공공보건기관 2,130개소(보건소 13, 보건지소 791, 보건진료소 1,326) 신축 및 133개 보건소 증축
  - 노후 의료장비 개선 및 보강(1,420개소) 및 방문보건차량 지원 등
  - 보건의료원(병원겸용 보건소)의 응급시설 인력 및 장비 보강
-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 농촌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야간 진료, 응급 의료 등 지방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23개 지방의료원)
  -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병, 의원)선정 추진
    - \* 응급의료 취약군 : 28개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5개군 포함)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및 사고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직업성질환에 대한 원인·증상구명, 치료·재활방안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지원사업과 전문치료기관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안전관리센터 신설
  - 직업성질환 및 사고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지역 거점 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인 업무상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 확대
- 건강관리센터, 목욕실 등 농업인 건강증진시설 확충
  - 1마을 1건강관리실 설치목표로 지속적 확대('03 : 744개소)
  - 건강관리실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순회방문 지원

### 3-2-1. 농촌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복지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촌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농가소득 정체 등 농촌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 공공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관리, 건강증진사업 필요성 증가
- '94년~'03년까지 농특세로 농촌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 보강에 3,418억원 투자
  - \* 지원현황('03년기준) : 보건소 136개소, 보건지소 1,254, 보건진료소 등 128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촌 보건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 및 장비 현대화(한방 물리치료 등)
- 읍·면에 위치해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강화에 중점
  - 보건진료소 등 시설·장비·인력 보강

#### 다. 세부 추진내용

-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시설신축(기관수) : 보건소 13, 보건지소 791, 보건진료소 1,326
  - 시설증축(기관수) : 보건소 133
  - 의료장비 보강(기관수) : 보건지소 등 1,420

### 3-2-2. 농촌 의료인프라 확충(복지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악화

- 의료기관의 도시 집중과 농촌지역 의료기관의 시설 낙후, 전문 의료인력의 근무 기피 등으로 의료환경이 열악

##### ○ 농촌 인구의 고령화, 지역의 산재성으로 응급의료기관 수요가 높은 편이나 응급의료 인프라는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농업인에게 불리함

- 농촌 지역 84개 군 중 56개(67%)군에 응급의료기관 소재

#### < 도·농간의 의료 기관 현황 >

구 분		전국(A)	농·어촌 지역	
			현황(B)	점유도(B/A)
의료기관	종합병원	283	18	6.4%
	병 원	944	174	18.4%
	의 원	41,693	3,819	9.2%
	총 계	42,920	4,011	9.3%
병 상 수		295,823	34,109	11.5%
의료인력	의 사	62,915	6,950	11.0%
	간 호 사	99,609	13,112	13.2%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센터	93	3	3.2%
	지역응급의료기관	310	80	25.8%

\* 2003. 12월. 보건복지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응급의료기관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확충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보건의료원에 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를 설치
- 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 및 운영 지원으로 24시간 응급 전담의에 의한 양질의 응급의료 제공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민간병원을 인수, 공공병원화 추진
  - 기존 공공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여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
- 민간병원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민간병원의 적정서비스 수준을 유지

## 다. 세부 추진내용

### ① 농촌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 기존 14개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기존 민간병원 중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인수하여 공공 병원화
-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민간병원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병원의 적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

### ② 농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 인프라 확보
  - 보건의료원의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비용 보조
  - 응급의료취약 농촌(군지역) 지역 응급의료기관 건립 용자
  - 응급의료 장비 구입 및 시설 설치
  - 농촌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전담의 인건비 보조
- 공중보건 의사 배치 및 농어촌 근무 동기부여 방안 강구
-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및 확충

### 3-2-3. 농업인 재해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부증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 및 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예방활동 미흡
  - 농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연구·지원 사업 부족
  - 농작업 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농업인 교육 부재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 미비
  - 건강관리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상시적으로 이용이 어려우며 기존 마을 건강관리실의 경우 전문 운영프로그램 미비
- 농업여건 변화로 인한 작업부담강화, 유해작업환경 증가로 농림어업인의 직업성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 증가
  - 국내 농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1.6배이며, 감소경향을 보이는 타 산업과 달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2001 노동부).
  - ☞ 농부증, 비닐하우스증의 발현율이 높으며,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질환, 동물원성 발열성질환, 만성농약중독으로 인한 면역저하 등의 직업성질환이 보고됨
  - \* 근골격계질환율 : 농업인이 비농업인의 2배(농진청, '02)
-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환경 개선사업 및 마을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마을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 : '96~'04년간 884개소 (전체마을의 2%)
  - 농작업환경개선 시범 사업 : '01~'03년간 13.5억
- 농업인의 건강지원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업무상재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리센터의 부재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업인의 농부중 등 농작업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의 설치 확대 및 운영내실화
  - 읍·면에 건강기구 등을 구비한 건강관리센터 설치
    - ('04) 884개소 → ('09) 1,745
  - 마을주민의 건강·보건을 담당하는 건강관리센터로의 기능 확대
  - 건강관리실의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보건의료전문가 순회방문 지원
- 농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유해 작업환경의 구명, 안전기준 설정, 평가방법개발, 경감방안에 대한 전면적 연구 수행
  - 유해요인 경감을 위한 작업개선, 개인보호구 보급 등의 지원사업 확대
  - 유해작업환경의 상시적 관리를 위한 농림어업안전관리자의 양성 및 운영체계 도입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및 안전사고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농업인 업무상재해 관리체계 구축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및 사고의 발생현황 파악 및 경감지원 연구, 전문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등을 지원할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센터 구축
  - 농업인의 건강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생활건강촌(Safe Farm Zone) 육성 지원

## 다. 세부 추진내용

### ①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국민의 관리실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 건강관리 기구의 구입 및 시설 설치 지원
  - 건강관리실의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건강관리실 순회방문 교육 전문가의 인건비 보조
  - 찜질방, 목욕실 등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자금 지원
  - 노후시설의 보수지 지원
- 마을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건강관리센터로의 기능 확대 방안 강구

### ② 농업인 직업성질환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 육성

- 농부증 등 농업인의 질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 확대
  - 농부증 등 직업성질환의 원인구명·질환분류·치료·재활에 대한 의학적 연구, 신규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지역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질환의 구명 및 경감방안 연구 등
  - 유해 작업환경의 개선 및 개인 보호구의 개발
  - 노약자 및 여성을 위한 농작업 보조도구의 개발
  - 다양한 유해 농작업 관리를 위한 작업 지침서 개발
-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작업 보조장비 보급 확대
  - 노약자 및 여성농업인의 작업편이를 위한 환경개선 및 보조도구 지원
  - 생산 작목별 기능성 보조장비의 보급
  - 작목별 출하조제 작업장의 효율적인 작업개선 시스템 지원

### ③ 농업인 업무상재해 관리체계 구축

####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센터 설치

- 업무상 재해예방관리(유해요인평가, 작업개선, 건강관리, 안전교육 등) 및 직업성질환관리(관련질환연구, 질환발생 중앙DB화, 역학조사 등)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
- 농업인 안전보건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판정 및 유발요인 관리 전문('06 ~ 계속)

#### ○ 농촌생활건강촌(Safe Farm Zone) 육성 지원

- 농림어업인의 작업안전 및 건강사업의 총괄적 지원
- 지역의료기관 및 학계의 참여아래 농림어업인의 작업안전 및 건강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투입, 조정, 사업평가 수행
- 농림어업인을 위한 직업성질환 및 사고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등 one-stop 서비스 지원
- 농업인 건강증진지원사업(건강관리실, 작업환경개선사업, 거점병원 등)을 세이프팜존에 집중 지원하여 사업효과 거양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업인의 건강노동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실 지원 : 884개소('96~'04)</li> <li>· 보조도구 및 시설지원 : 200개소('01~'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실 지원 총 1,500개소 지원</li> <li>· 보조도구 및 시설지원 : 100개소 지원</li> <li>· 농촌생활건강촌 160 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실 지원 1마을 1개소 확보</li> <li>· 보조도구 및 시설지원 : 1500 개소 지원</li> <li>· 농촌생활건강촌 1,000개소</li> </ul>

### 3-2-4. 사고농가 영농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여성농업인 및 그 배우자가 사고·질병, 전문교육 등으로 일정 기간 영농을 중단하게 될 때 이를 대행해 줄 일손지원 필요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삶의질 향상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등

##### □ 문제점

- 여성농업인 및 그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고·질병, 전문교육 등에 따른 영농애로 발생시 적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농촌가정 붕괴요인으로 작용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사고농가에 대한 일손지원으로 중단없이 영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05년부터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이용,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다. 세부추진 내용

###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및 그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에 따라 영농애로를 겪는 농업인(부부)의 신청에 의하여 영농일손을 지원
  - \* 최대 10일 범위내에서 농촌평균임금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규모 : 2006년부터 매년 3만명씩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연간 128억원)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지원대상	○마사회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05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	○'06년부터 매년 3만명 지원	○ 매년 3만명 지원

### 3-3. 여성농업인 · 노인 복지 강화

- ◇ 여성 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대응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충
- ◇ 고령화 추세에 대응,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충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확대
  -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수요 충족
    - \* 설치계획 : ('03) 18개소 → ('05) 34 → ('08) 163
  -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배움, 모임, 나눔의 장으로 육성
- 산전·산후 건강 및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제」 확대
  - 도시근로여성 출산휴가기간 수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 \* 이용기간 : ('03) 30일 → ('06) 45일 → ('08) 90일
  - 지원수준을 농촌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
    - \* 지원단가 : ('03) 27천원/일 → ('04) 30 → ('06) 35
  - 출산뿐만 아니라 질병, 사고 등에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보건소를 주축으로 한 순회방문진료, 환자수송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체계” 실현
  - 영세 노인가구에 대한 재가노인복지 사업 확대
- 생산적 고령화를 위한 농촌노인의 자원화 기술 개발
  - 고령 농림어업인의 유형 분류 및 생산성(productivity) 분석
  - 은퇴농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농업 적합작목 개발 및 기술 보급

### 3-3-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및 자녀교육 등 어려운 여건과 도시생활과의 격차로 전반적인 사기 저하
  - 벼 중심 영농에서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 영농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 증대
    - 영농형태 : ('90) 논벼 69.7%, 원예 16.1% → ('03) 논벼 52.2, 원예 31.7
    -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비율 : ('80) 33.8% → ('90) 48.3% → ('03) 51.4
  -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은 타 산업부문 종사여성에 비해 1.5~2배 수준 많지만 임금수준은 높지 못함.
    - 1일 평균노동시간 : 타 부문종사여성 7.5시간, 농업종사 13.4(농번기 기준)
    - 여성농업인의 평균임금수준 : 남성의 66% 수준
-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주류화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

##### □ 문제점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보육여건 미흡
-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접근기회가 적고 사회문화교육시설 부재
- 여성농업의 다양한 단체활동 여건 미흡
-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영농생활의 고충해소를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상담서비스 기능 부재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업노동 가사노동 및 지역사회의 활동 등 농업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위상 재정립
- 유능한 여성세대의 농촌 정주를 위한 삶의 질 제고  
⇒ 여성농업인을 위한 [모임의 장], [배움의 장],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서비스 기능 수행

## 다. 세부 추진내용

- 사업내용
  - 농업인 자녀의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 농한기 여성농업인의 교양 문화 활동공간으로 활용
  - 동절기 및 하절기 농촌체험 학습장 등 다용도 학습공간으로 활용
  - 농업경영 및 농촌가정문제에 대한 여성농업인 종합상담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 2008년까지 전국 시·군당 1개소 수준인 160여개소 운영지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확대	○ 27개소('04) ○ 34개소('05)	○ 73개소('06) ○ 99개소('07) ○ 163개소('08)	○ 63개소



## 3-3-2.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촌의 과소화·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된 반면, 영유아 보육여건 미흡 및 출산 후 양육 부담으로 젊은 층의 출산 기피 및 탈농 심화
  - 타 부처의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 만으로는 농업인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벼농사 중심에서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 영농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 및 노동 투하율 증가
  - 영농형태 : ('90)논벼69.7%, 원예16.1% → ('03)논벼52.2%, 원예31.7%
- '04년부터 농업인의 영유아(0~5세)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시행 중
  - 사업목적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지원대상 : 농촌지역 거주, 농지소유 1.5ha미만 농가의 영유아(0~5세아)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49.2천명)
    - \* 타부처(여성부,교육부)의 저소득층 보육료, 교육비 지원아동을 제외한 추가적 지원
  - 지원단가 : 법정 저소득층(1층)에 지원하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5세아는 100%)를 연령별 차등지원(월 평균 102천원/1인 수준)
    - \* 여성부(교육부)는 연령별·소득계층별 지원(1층 : 정부보육료의 100%, 2층 : 60%, 3층 : 40%)
  - 지원방식 : 농업인 → 지자체 청구 → 부모통장에 입금/보육료 전액납부
    - \* 여성부 : 시설 → 지자체 청구 → 시설통장에 입금/보육료 차액납부

## □ 문제점

- 농어촌 현장에서는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 전업농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규모화된 젊은층 배제는 불합리
- 시설이용 아동만을 지원할 경우 농업인간의 위화감 조성 우려
  - 보육시설이 없고, 보육료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담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 지원대상은 당초 농업·농촌종합대책 기본계획보다 앞당겨 확대
  - 농지소유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농어가로 확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지원
-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 투융자계획('04~'13) 범위내에서 운용

## 다. 세부 추진내용

-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전체 농가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액의 보육료 지원
    - \* 타 부처 보육료 또는 교육비 기 지원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배제)
  - 사업규모 : '05년부터 전체 농가(시설 미이용 포함)로 확대
    - ('04) 1.5ha미만(49천명)→('05) 전농가(86천명)→('13) 전농가(52천명)
  - 지원단가 : 시설이용 아동은 법정 보육료의 50%(5세아는 100%)  
시설 미이용 아동은 시설이용 아동 지원액의 50%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49천명('04) 86천명('05)	81천명('06) 76천명('07) 71천명('08)	67천명('09) 63천명('10) 59천명('11) 55천명('12) 52천명('13)

### 3-3-3. 농가도우미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하고  
도우미 임금의 80% 수준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 및 농업생산성 제고
  - 지원대상 : 출산여성 농업인
  - 이용기간 : 1인당 30일 한도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근거 : 농업 농촌기본법 제14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 그 동안의 추진상황
  - '00년 농가도우미 시범사업 실시(68개 시 군, 1,290농가)
  - '02년 사업대상 지역 확대(163개 시 군, 2,452농가)
  - '03년 전국의 모든 농가로 사업지역 확대(3,200농가)
  - \* '04예산 : 2,304백만원 (국비 1,152, 지방비 1,152)

##### □ 문제점

-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가 출산에 한정되고 정부지원  
단가가 낮아 사업활성화에 애로
  - 현행 지원단가(30천원)는 농촌여성 평균임금('03년 : 38천원)의 79% 수준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및 가사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농가  
도우미 제도 개선 요구
  - 농가도우미를 질병 및 사고시로 적용범위 확장, 출산시 이용기간의  
연장, 지원단가의 확대 등 개선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04년부터 우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이용기간 연장, 지원범위 확대 등은 연차적으로 추진

## 다. 세부추진 내용

### 도우미 지원단가 현실화('04년)

- 지원단가를 농촌여성 평균임금 수준을 감안, 일부 현실화
  - ('03) 1일 27천원 ⇒ ('04) 30
  - \* '06이후 3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07년부터 5%씩 인상

### 도우미 이용기간의 연장('06년~'08년)

- 도시근로여성의 출산휴가 기간(90일)과 동일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연장

### 적용범위의 확대('06년부터)

- 농촌지역 복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경조사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지원단가 인상	○ 단가 인상 -30천원/1일	○ 35천원/1일('06)	
○ 이용기간 연장		○ '06부터 연차적으로 이용기간 연장	
○ 적용범위 확대		○ 적용범위를 출산 이외까지 확대	

### 3-3-4. 농촌여성·소외농가 이동봉사단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촌봉사를 희망하는 도시 등 전국의 유희인력을 농촌의 소외농가 등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도·농인력 연결 체계 미정립
- 농촌지역의 노령화·여성화,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가족붕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증가
- 농촌의 여성노인 단독가구, 조모자가정, 편부모가정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장애, 일손부족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지원 필요
  - 농촌 위기가정에 봉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생활환경개선, 간병·간호 봉사, 이·미용 서비스, 반찬장만지원 등 봉사 제공
- 지원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등

##### □ 문제점

- 기존 사회복지체계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과 장애농가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봉사자를 통해 농촌여성의 애로와 고충 해소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촌여성·소외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일시적인 장애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농작업에 차질이 있는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 등 지원
  - '06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업내용
  - 도시 등 전국의 농촌봉사 희망인력 조직화
  - 농촌 가정에 봉사원(유료·자원봉사)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복지 서비스 등 실시
    - \* 생활환경개선, 간병·간호봉사, 이·미용 서비스, 반찬장만지원, 병원 이동 및 목욕서비스 등 제공
  - 장애나 사고·질병 등으로 농작업에 애로가 있는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대상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지원) 등 고충해결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2006년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서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경비(연간 91,865천원/개소당)
- 지원형태 : 보조(국고 70%, 농협중앙회 30%)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라. 추진일정

추진 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이동 봉사단 확대	-	○ '06년에 5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 '06~'08: 25개소	○ '09~'13 : 60개소

### 3-3-5. 여성농업인 소규모 특화사업 창업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마을단위 여성 협업경영체 운영 등을 위한 소규모 특화사업 창업자금 지원
- 지원근거
  - 농업 농촌기본법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향상),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자본을 투자하여 여성특유의 솜씨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수공예품, 전통·건강식품, 지역명품, 직거래사업 등 지원

##### □ 문제점

-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중, 여성의 역할 증대에 부응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소득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
  - '04년부터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농진청소관)의 국고지원 중단에 따른 정책보완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우리 농촌여건에 맞고 여성특유의 소규모 특화사업 창업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여성의 역량개발 지원
- '06년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업내용
  - 생산품목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여성의 솜씨와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품목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 우리 옷, 삼베, 친환경상품, 전통·건강식품, 지역명품, 자연식품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등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2006년 시범사업으로 50명에게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 지원내용 : 창업 시설자금
- 지원형태 : 융자(1인당 50백만원 이하, 연리 3%이하)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	○ '06부터 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 3-3-6. 농촌 노인복지 증진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노인복지정책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한 획일적 시행으로 사업효과 저조
  -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등 노인취업관련 사업들이 도·농간 지역차의 고려 없이 획일적 기준 및 내용 적용
- 농촌노인의 교육·문화·여가활동 등에 관한 복지인프라가 극히 미흡
  - 노인인구 대비 노인교육기관은 극히 부족하며(노인 2,211명당 1개소), 노인욕구를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 미흡
  - 재가노인복지시설 분포 : 도시 91.6, 농촌 8.4%(복지부, '03)
- 농촌지역이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노인들을 돌볼 가족이나 젊은층이 크게 부족하고 재가복지시설도 39개로서 전체 317개의 12.3%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
  - 이동서비스차량에 의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이 필요
    - \* 노인인구비율(04.5) : 도시 6.3%, 농어촌 15.0%
    - \* '03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요구대상자는 321천명으로 추정되며, 필요한 재가복지시설은 9,200여개 정도로 추정됨
- 건강한 노인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복지비용 절감 유도
  - 65세이상 인구중 65~74세 노인비율('00) : 68.5%
  - 노인 인구의 취업률 : 30.5%(그 중 53.4%가 농업종사)
- 농업·농촌 기능유지를 위한 젊은 노인인력의 개발 및 지원
  -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농촌의 지속성 위협
    - 농촌인구비 : ('90) 25.9 → ('00) 20.0%
  - 조기 퇴직한 도시 유희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활용 가능 : 실버농업 등

## 나. 추진방향

- 농촌노인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로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여건 조성
  - 농촌형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등
- 농촌지역 노인복지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충
  -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봉사원을 육성하여 지원
  - 초고령노인, 독거노인 등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 생산적 고령화를 위한 농촌노인 인력의 자원화 기술개발
  - 농산어촌 노인 교육 및 인력개발 지원

## 다. 세부추진계획

### □ 농촌형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 농촌지역의 요양보호 노인을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보건소의 방문간호 또는 방문 진료팀이 팀을 이루어 차량을 이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간병·수발, 목욕, 이·미용 등) 제공

### □ 고령친화농업 모형개발 및 시범단지 조성

- 고령친화농업 유형별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04~'06)
  - 전원형, 소득추구형 등 6개 유형
- 지역별 은퇴농장 모델 및 고령친화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 고령친화농업 시범단지 조성 : 1개 마을당 20~50호 규모,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

## □ 지역공동체 중심의 노인보호지원체계 구축

- 지역의 노인봉사원을 육성하여 지원함으로서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노인봉사원으로 활용
  - 지역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 풀을 구축
  - 거동 불편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을 도울 경우 일정액을 보조함
- 농촌노인들이 영농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 봉사원을 일정기간동안 지원
-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서 갑작스런 사고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나 돌봐 줄 친인척이 주변에 없는 고령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지역의 건강한 노인이 이웃의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중심의 노인보호 지원체계 구축

## □ 농촌 노인 교육 및 여가 활동지원

- 마을단위의 맞춤형 노인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 마을단위로 농촌노인의 눈높이를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우수 강사를 DB화하여 인근 시군과 교류 활성화
  - 여가 및 취미활동 동아리 모임 활성화

○ 농촌노인 솜씨 박람회 등 이벤트 개최

- 권역별로 나누어 농촌노인 솜씨 박람회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농한기 농촌의 부업을 장려하고 노인의 자긍심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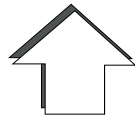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고령친화농업개발 및 시범단지 조성	○ 고령친화 농업유형 검토	○ 고령친화농업유형 개발 및 시범단지 조성	○ 고령친화농업 시범단지 조성 확대
○ 지역공동체 중심의 노인보호지원체제 구축		○ 노인봉사원 지원	○ 노인봉사원 지원
○ 노인교육 및 여가활동지원	○ 노인교육 및 솜씨 박람회 지원	○ 계속지원	○ 계속지원

## 4.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다원적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 삶의 공간, 여가·휴양공간, 친환경·신산업 공간으로 자리 매김



### 농산어촌 지역 개발

- 지역 종합 개발
- 농촌다움을 고려한 지역 특성화

### 사람·자본 유치

#### 대비능력 강화

- 각종 규제 완화
- 도·농 교류 확대

### 기초 생활여건 개선

- 주택, 교통, 생활용수 확충
- 농산어촌경관과 조화되는 주거공간 조성



- 지역주민,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종합적 접근방식 채택
  - 마을지도자 육성 등 지역개발주체 역량 강화
- 거점개발 후 인근지역으로 파급효과 확산 전략 추진

## 4-1. 거점개발형 지역개발 전략 추진

- ◇ 소도읍을 거점으로 배후지역과 함께 균형있게 개발
- ◇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

- 소도읍을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산업·문화중심지로 육성
  - 지자체의 자체 계획을 심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소도읍을 선정·집중지원(매년 20개, 총 194개 읍)
    -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
  
- 농촌의 배후마을은 생활권 등을 고려한 권역 단위로 묶어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
  -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1천개 권역)
    - 전원생활·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 자연생태보전형 등으로 특성화
  
- 농촌이 지닌 어메니티를 증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
  -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정주권 개발사업은 녹색 담 조성, 수변공간정비 등 다양한 경관개선지원사업을 병행
  - 독특한 지형과 전통적 특성 등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추진
  - 향토문화자산을 농촌 관광에 접목시키고,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가꾸기 사업에 적극 활용
    - 마을꽃길 조성, 담장 조성, 마을숲 조성, 마을안내판 설치 등

## 4-1-1 농촌마을종합개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0년대부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 등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에는 일부분 기여하였으나, 농촌의 생활환경은 아직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 '04년부터 소권역단위로 마을별 특성을 살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신규로 추진
  - 발전가능성이 있는 1,000개 소권역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지원계획 수립('04.2. 농업·농촌 종합대책)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지원
  - 농촌다움을 보전하는 전통·문화·휴양 등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비
  -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
- '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공모 및 민간 심사위원회를 구성, 대상지 선정
  - '04 예산 : 기본계획수립 40억원(36개권역) 및 1차년도 사업비 160억원(16개권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수립 및 대상지역 공모
  - 지역개발전문가 등 민간위원 2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예비계획 검토, 현지조사, 사업계획 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
  - \* 10개 시도의 67개 권역에서 사업신청, 그중 36개 권역('04착수 16, 계획수립 20)을 선정



- 지역별 잠재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개발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농기공이 민간 전문가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기본계획수립 추진
  - 금년 착수 16개소 중 8개소는 민간기관에 위탁
  - 나머지 28개소는 농기공·전문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기본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방향 자문
  - 사회 각 분야(문학, 생태, 환경, 전통문화, 지역개발, 농업, 미술, 언론, 정보통신 등) 저명인사 중심의 ‘자문위원회’와 지역개발 전문가 중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 큰 방향에서의 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 자문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 모색 등
- 지역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 실시
  - 마을지도자 워크숍(2차), 마을지도자, 시장·군수 합동워크숍(4개지역)
  - 사업대상지역 : 주민교육(36개마을) 등

## □ 문 제 점

- ‘05년이후 사업비가 균특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움(균특회계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비 확보)
-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우려
  - 잠재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신규사업으로 인한 일선 담당자의 사업이해 부족 및 주도적으로 마을개발을 선도할 마을리더 부족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대도시와의 거리, 농업에의 의존도, 지역의 잠재자원 등에 따라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지자체별로 농촌개발방식의 차별화 요구
- 지역주민·지역개발 전문가의 사업참여 활성화 예상
  - 기본계획수립 등에 민간분야 전문가(기관)의 참여 확대 필요
  - 민간의 사업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의 제도화 필요

### □ 추진방향

- 농촌마을을 지역특성을 살려 소권역 단위로 종합개발하여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쾌적함 증진
  - 농촌을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이 생활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
- 농촌지역의 잠재 자원을 특성화하여 농외소득과 연계시켜 농촌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도모
  - 3~5개 마을을 1개 권역으로 하여 잠재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특성화' 추진  
· 전통보전형, 친환경육성형, 농촌관광기반형, 지역특성화형 등
  - 중소도시와 주변 농촌마을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 사업초기에는 사업량을 확대하지 않고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 추진체계 정착 후 지자체 및 민간부분 역할 확대

## 다. 세부 추진내용

- 지역의 잠재자원과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을 통한 지역특성화 유도를 위해 지역주민 및 민간분야 전문가(기관)의 사업참여 확대
  -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 지역별 기본계획수립의 민간기관 일괄 위탁 또는 컨소시엄 확대
  - 사업내용의 평가·분석을 위한 사업시행과정 모니터링
  -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 및 현지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주민·지역개발 전문가 중심으로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을 유도
-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수렴과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운영
  - 지역별 사업대상지역 방문 및 현지간담회 등을 통해 농촌마을개발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및 공감대 형성 유도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 모색 등
- 주민교육 등 지역주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지역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실시
  - 마을리더,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 개최
- 사업추진 방향, 추진체계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신중하게 추진
  -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의 현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강화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촌마을종합 개발 추진	○ 시범사업착수 16개소  ○ 주택용자조건 협의	○ 256개소 착수 - 연간 64개소 수준	○ 1,000개소로 확대('13) - 연간 150개소 수준

## 4-1-2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에 대한 주택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및 편익·복지·환경관련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 정주권개발 계획이 수립된 770면(15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
  - \* 면당 30억원 수준 지원

#### □ 문제점

- 그간 지방양여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 마을도로정비, 상·하수도 설치, 주민 편익복지 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도시 생활기반시설에 비하여 열악하고, 빈집, 불량시설물 방치 등 농촌공간 정비에 다소 미흡
- 정주권개발사업의 경우 면 전체개발에 필요한 소요액(300억원 수준)에 비해 지원되는 예산은 10%수준인 30억원에 불과하며 기반시설인 도로정비 위주로 면 전체에 분산투자 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별 특색있는 마을 형성이나 농촌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 분야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
    -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개량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농촌의 생활환경은 아직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 지방양여금은 면별로 균등하게 정액 지원되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중지원 곤란

-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균특회계 신설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재정립 필요
- \* 정주권면은 농어촌정비법, 오지면은 오지개발촉진법, 도서면은 도서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원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지금까지 지방양여금을 지원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0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사업신청을 한 지역을 중심으로 면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 □ 추진방향

- '05부터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신청 기준에 의한 균특예산(국고보조) 지원체제로 전환, 지역실정에 따라 주민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정주권개발 계획이 수립된 770면(15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90~'04까지 1단계지원 완료계획

\* 개발대상 면당 평균 소요사업비 300억원 중 1단계로 30억원수준 지원

- 농촌다움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개선
- 농어촌 면지역의 중심생활권과 광역시 자치구의 준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및 환경시설 등을 정비·확충과 아울러, 농업인의 문화·복지·편익시설, 주차장, 소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정비와 함께 농어촌의 빈집, 불량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쾌적한 농촌 공간을 정비

- 인프라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정주권개발사업은 녹색 담 조성, 수변 공간정비 등 다양한 경관개선지원사업을 병행
- 빈집 철거 후 소공원, 마을광장 등 조성 등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농어촌주택 신축에 따른 용자중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금리 인하추진
  - 지원한도 : 20백만원 → 30백만원/호, 지원금리 5.5% → 연 3.0%
- 농어촌지역 경관에 어울리는 경관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05~’13년까지 지자체의 균특회계 예산신청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인프라 구축
  - 1개면당 20~25억원 수준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주택정비(신축, 개량 8천동), 마을도로, 상·하수도, 문화·복지·편익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과 빈집·불량시설철거 등 농촌공간정비 추진
- 재원 : 인프라구축 국고보조 100%, 주택정비 국고융자 100%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정주권면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촌정주기반 확충	○ 152개 면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구축 지원하여 770개면에 대한 1단계 완료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추진	○ 770개 면지역에 대한2 단계 생활인프라구축 지원	○ 770개 면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구축 지원

### 4-1-3.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현재의 농촌인구와 공간구조 변화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역이 재편
- 국토 전체가 고속국도 확충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농촌 주민의 생활권은 시·군 행정구역을 넘어 확대 추세
- 도시주변은 혼주화로 인구가 유지되거나 다소 증가하는 반면, 면지역은 인구감소가 지속
  - 농촌인구 ('90) 11,102천명 → (2000) 9,374천명 → (2010) 7,915천명  
\* 2010년 인구추정은 90년대 연평균 감소율 1.68% 적용
  - 면지역 평균인구 : ('90) 5,946명 → (2000) 4,606명 → (2010) 3,163명

##### □ 문제점

- 대다수의 면 소재지가 중심 기능을 상실하고, 일부 성장면만 주변 약세면의 배후지 마을을 흡수 확장하고 있으며, 조건이 불리한 농촌마을은 가옥이 소규모로 산재하거나 소멸
  - 인구 3,000명 이하인 면의 수 ('90) 152개 → (2002) 384개

인구(천명)	계	1이하	1~2	2~3	3~5	5~10	10이상
면의 수	1,217	16	104	264	426	322	85
%	100	1.3	8.5	21.7	35.0	26.5	7.0

- 최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도·농교류사업, 마을단위 농촌관광기반구축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면소재지 기능약화로 농촌발전 불균형 초래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권역단위 교육·의료행정망을 형성토록 집중 육성하여 농촌지역 주민 삶의질 향상과 생활의 중심지역할 기대
-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기반 구축
-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산업, 소규모 입지 자유형 산업, 여가문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공간으로서의 기능 수행

### □ 추진방향

- 소도읍이외의 농촌지역에 중심권역이 되는 면을 선정하고 면소재지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추진

## 다. 세부추진내용

### □ 농어촌 면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거점면을 선정하여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추진

- 면소재지가 활성화 되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 위주 정비·확충  
예] 면체육공원조성, 복지회관, 주민건강관리실, 시가지정비 등

### □ 가칭 “면소재지활성화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 대상면 선정기준 마련

- 심사기준 및 사업시행지침 등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면소재지기능보장		○ 사업시행지침 마련 ○ 선정심의회 구성 ○ 연간 20개면 수준씩 선정·지원	



#### 4-1-4.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에서는 농업소득의 한계극복과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농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테마 사업을 추진·검토 중에 있음
  - 주요 사업 아이템은 ‘자연생태공원’, ‘건강생약초단지’, ‘생태농업테마파크’ 등 다양
- 지역농업, 자연환경, 문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하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사업활성화가 되지 못함
  -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및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주 5일근무제 도입 등으로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체험·여가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므로 농업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교류의 거점시설로 활용
  - 농촌지역의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소득증대와 도·농간 교류촉진 도모

## 다. 세부 추진내용

- 도농교류의 거점시설로 '13년까지 24개 지구의 농업농촌 테마공원을 조성
  - 지역농업, 환경, 전통문화 등 특색이 있는 지역(지구)를 연간 3개소씩 선정하여 도별 2~3개의 다양한 유형의 테마공원 개발 추진
  
- 체험시설, 휴식공간, 학습·전시관, 주차장 등 기반·공공 시설은 국고와 지방비로 조성하고 숙박시설, 음식점 등 수익 시설은 민간자본 유치로 통해 조성토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라. 추진일정

추진 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	○ 9개소 착수 -연간 3개소 수준	○ 15개소로 확대

## 4-2. 기초생활여건의 종합적 개선

◇ 농촌에 거주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농가주택·교통·상하수도 등 농촌의 기초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농가주택 개량 등을 통해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주거공간 조성
  - 보다 쉽게 농촌주택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 개선
    - 주택신축 : 20백만원(연리 5.5%, 5년거치/15년상환) → 30백만원(연리 3%, 5/20)
    - 리모델링 : 5백만원(연리 4%, 3년거치/ 7년상환) → 15백만원(연리 3%, 3/10)
    - \*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주택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농촌 빈집을 매입·철거하여 마을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
    - 주차장, 마을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또는 캠핑장 등 농촌관광시설로 조성
  - 마을 회관을 개축하여 영유아 보육·건강관리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마을 다기능시설 설치
- 공공교통체계 구축, 상하수도 확충 등을 통한 농촌생활 편의 증대
  - 오지 공영버스 신규 구입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속 실시
  - 농촌주민 70%(면지역)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
    - \*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1.5%(읍 80.1%, 면 31.1%)
  - 농촌지역에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2013년까지 시·군당 1개소씩 지원하여 158개 시·군 완료
  -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다른 농촌사업과 연계한 농촌도로정비사업 추진
    - 2013년까지 농촌도로 포장율을 38.3%까지 높임

## 4-2-1. 농촌주거환경개선(행자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5~'03까지 당초계획(25만동) 대비 53%(13.4만동) 추진
  - 주택 신축 수요는 매년 2만호 수준이나 '01년 사업량은 9,730호에 불과
- 3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 : 20.4%(579천동)

#### □ 문제점

- 주택 건축비는 20평기준 약 5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일반 시중 금리가 6~7%대에서 운용되고 있어 시중 대출금리와 별 차이가 없음(지원금리 5.5%)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03 현재 전국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505천동)중 134천동이 노후된 채 방치되고 있으므로 주택개량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인 용자 지원
- 농촌마을에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기능을 대폭 확충
  - 무주택 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임대주택, 실버형 주거단지 조성 등 농촌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주택정비 방안도 아울러 강구
- 4대강 유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농촌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

## 다. 세부추진내용

### ○ 주택지원 사업의 물량 및 용자한도 확대

- 사업량 : (현행) 10천호 수준 → (개선) 15천호 수준
- 지원규모 : (현행) 20백만원 → (개선) 30백만원
- 지원조건 : (현행) 연리 5.5% → (개선) 연리 3%
- \* '04년 지원금리 3.9%로 인하

· 재원구성 : 농특세, 국민주택기금, 재투자금, 지방비, 농협자금 등

### ○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08까지 2,654개 마을에 9,051억원(지방비)을 투자

### ○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08까지 89억원(지방비)을 투자하여 29천동 정비

###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추진

- '08이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계획 수립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개정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주거환경개선	○용자조건 개선 -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농어촌주거환경 종합 계획 수립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확대 추진

## 4-2-2.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먼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 사업기간 : '94 ~ '14 (1차 : '94~'04, 2차 : '05~'14)
- 총사업비 : 12,951억원('03년까지 기투자액 : 7,103억원)
  - '04까지 : 4,751개소 785,100백만원(국고 414,990, 지방비 370,110)
- 사업규모 : 7,751개소 ('03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4,311개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03까지 지방교부금 50%)
- 지원기준 : 개소당 170백만원

(백만원)

구 분	목 표	'03까지	'04계획	'05이후
사업량	7,751개소	4,311	440	3,000
(급수인구)	(1,330천명)	(962천명)	(70천명)	(298천명)
(급수면적)	(10,643ha)	(7,203ha)	(440ha)	(3,000ha)
○ 사업비	1,295,100	710,300	74,800	510,000
- 국 고	822,990	355,150	59,840	408,000
- 지방비	472,110	355,150	14,960	102,000

## □ 문제점

- 농특세사업('04년까지) 완료 후에도 20~30호 규모의 농촌 자연마을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대책 필요
  - 제1차 10개년('94~'04)계획에서 제외된 50호 이하 자연마을
  - 노후 및 오염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 암반관정 개발 후 간이상수도 등록에 따른 부서간 업무협조 체계 미흡으로 일부 시·군에서 간이상수도 미 등록 시설 발생
  -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사전 협의된 시설은 간이상수도 등록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 전망

- 2014년까지 7,751개소 완료시 농촌면지역 인구 5,618천명의 24% 수준인 1,330천명에 대한 식수문제 해결
  - '04까지 4,751개소 완료시 1,032천명 급수

### □ 추진방향

- '04년까지 1단계사업(50호 이상 마을 대상)을 마무리하고, '05이후 부터 50호 이하 소규모 마을까지 확대하여 농촌 식수문제 해결
  - '05이후 3,000개소, 5,100억원(국고 4,080, 지방비 1,020)
- 노후화된 오염 간이급수 시설의 대체관정을 우선적으로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간이상수도 등록으로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철저한 시설관리
- 암반관정 채수량 결정시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 세척용수 등을 감안하여 관정개발

## 다. 세부추진내용

- 생활용수 공급 대상지를 소규모마을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설 기준 재정립
  - 마을규모와 용수 수요를 감안하여 시설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수중모터 펌프, 용량, 기준채수량, 정수지 규모 등
- 정기적인 암반관정개발·이용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점검시기 :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간이상수도 등록·수질검사·폐공처리·이용시설 관리 상태 등
- 물관리 종합대책 일환의 간이급수시설 개선방안 후속조치 추진(수질개선기획단)
  - 신규지구 선정시 노후 간이 급수시설의 대체 관정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우선개발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촌 생활용수공급 확대 (7,751개소)	○ 4,751개소 개발 완료 ○ 제1차 농특세사업 마무리 및 추가 개발 계획 수립 - 제1차 : 4,751개소 - 제2차 : 3,000개소	○ 연간 300개소씩 암반관정 개발 추진 ○ 상·하반기 개발·이용관리실태 점검	○ 2013까지 암반관정 7,751개소 개발 완료 (목표대비 누계 96.1%)



### 4-2-3. 농촌 생활용수 개발(환경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광역 및 지방상수도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면 단위와 그 이하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개발, 생활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2014
  - 총사업비 : 23,000억원(당초 8,000억원)
  - 사업규모 : 농촌 면 515개소
  - 지원형태 : '03까지(국고 50%, 지방비(교부세) 50%), '04부터(국고 80%, 지방비 20%)
  - \* '02까지 144개소 4,446억원 투입(농특세 2,223, 지방교부금 2,223)

구 분	목 표	2003까지	2004	2005이후
○ 사업량	515개소	169	30	316
○ 사업비	23,000억원	5,566	1,315	16,119
- 국 고	19,740	5,566	1,279	12,895
- 지방비	3,260		36	3,224

##### □ 문제점

- 농특세사업으로 당초 '94~'04까지 215개 면에 4,000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으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곤란
- '02년말 현재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율이 31%로 도시지역의 97%에 훨씬 미달됨
- 지원규모가 1개 사업당 5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설규모가 큰 지역은 지방비 부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규모 상향조정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 주민에게 수량이 풍부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율을 '02년 31%에서 2014년 70%까지 향상
-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급수혜택을 주기 위한 상수도보급체계 구성 및 청정한 상수원을 다원적으로 확대개발
  - 사업기간연장('94~'04→'94~'14) 및 사업량 확대(215→515개소)

## 다. 세부추진내용

- '04부터 매년 20개소씩 개발
- 가뭄시 제한급수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면단위로 투자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개발
- 저수지·하천 등 수원지를 개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난개발 방지 및 하천오염 예방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촌생활 용수개발 (515개소)	○ 30개소 개발	○ 140개소 개발	○ 2014까지 176개소 개발

## 4-2-4. 농촌하수도 정비(행자부, 환경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확충(행자부)

\* '95~'03까지 1,821개 마을에 4,134억원(양여금)을 투자

- 농촌의 마을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 방지

##### ○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환경부)

\* 당초 '95~'04년까지 2,411억원을 투자하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115개소 설치

#### □ 문제점

##### ○ 4대강 유역·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15천여개 자연 마을에 하수처리시설 확충 필요

- 하수도법 개정으로 특정지역내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마을하수도 시설의 시설개선도 필요하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점차 증가 예상

##### ○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노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운영부실

##### ○ 소하천정비수요는 많으나 투자 저조로 정비율이 낮아 소하천 피해율이 높음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마을 안길 확·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마을 소득원 개발사업 등과 연계 추진
- 사업이 완료된 마을하수도는 하수도 부서로 이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

## 다. 세부 추진내용

### ○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매년 500개 마을씩 지원

\* 개소당 예산 소요

- 마을하수처리시설(50톤/일 기준) : 4백만원×50톤/일 = 200백만원
- 차집관거(2.4km 기준) : 400백만원 × 2.4km = 960백만원
- 마을기반시설 : 마을당 120백만원

\* 연차별 투자액 : 500개 마을 × 50백만원 = 2,500억원

### ○ 면단위 하수도 정비 665개소 지원

\* 개소당 30억원 국고지원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촌마을하수도정비	185개 마을	2,000개 마을	3,000개 마을

## 4-2-5. 농촌폐기물처리 시설지원(환경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촌에서 생활쓰레기, 폐영농자재, 외부유입 쓰레기 등을 주로 자체 소각이나 매립에 의존하여 농촌환경 오염 심화
  -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 1.04kg('02년)
- '03까지 1,522억원(농특세)을 투입, 102개 시·군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 □ 문제점

- 매립장 1개소 건설에 평균 약 53억원이 소요되므로 현행 15억원의 국고보조는 실질 소요비용의 약 28%에 불과하여 지원 효과 미흡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에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 설치
- 시·군당 1개소씩 지원하여 160개 시·군 완료

### 다. 세부추진내용

- 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지역 폐기물 발생량 등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
  -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시설 설치
  - 소규모 비위생 매립시설 설치 억제를 통한 오염원 산재를 방지
- 국고보조 상향조정 : 현행 15억원 → 27억원
  - \* '95~'03까지 102개소에 총 5,435억원 투입, 개소당 53억원 소요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폐기물 시설확충	109개소	142	160

## 4-2-6.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행자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지역의 교통해소는 물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직접 이용되는 도로이며
- 그동안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농특세 9,929억원을 포함한 3조 8,000억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현재 포장율이 27.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촌도로 현황

도로등급	노 선 수	연장(km)	포장연장(km)	포장률(%)	미포장연장(km)
계	23,309	61,833.5	16,963.6	27.4	44,869.9
면 도	2,600	10,420.5	4,416.5	42.4	6,004.0
리 도	10,251	29,016.0	9,268.2	31.9	19,747.8
농 도	10,458	22,397.0	3,278.9	14.6	19,118.1

#### □ 문제점

- 농어촌도로는 지역발전에 중추적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도로로서 도·농간의 균형개발을 위해 사업 규모가 확대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주 재원인 양여금이 폐지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농어촌 경제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전망 : 2013년까지 포장률 38.3%로 신장('02포장률 27.4%)
- 추진방향
  - 농어촌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다른 농어촌사업과 연계추진
  - 포장도로상 위험교량정비 확대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

## 다. 세부 추진내용

- 기 수립된 중기계획대로 투자
  - 2003년 : 4,929억원(양여금 4,262, 지방비 667)을 투자 619.3km의 농어촌 도로 정비
  - 2004년 : 사업비 5,086억원으로 621km의 농어촌도로정비
  - 2005년 : 사업비 5,346억원으로 621km의 농어촌도로정비
  - 2006~2013 : 2005년 수준으로 투자
- 농어촌도로 62천km중 '13년까지 24천km 포장
  - \* 농어촌지역의 지방도와 군도를 포함시 총 95천km 중 '02까지 38천km(40%) 포장실적을 '13년까지 52천km (55%)로 제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어촌도로 포장률	('02) 27%	33%	38%
*농어촌지역 전체	('02) 40%	48%	55%

## 4-2-7. 오지 교통지원(건교부)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촌의 자가차량 증가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버스 노선 폐지가 증가하여 학생·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
  - 오지 공영버스 운영('94부터), 벽지노선 개설(30호 이상) 및 손실 보상
  - \* 벽지 버스의 경우 연간 손실 보상액이 147억원~173억원에 달함
  - \* 오지공영버스 '03까지 2,112대 지원

#### □ 문제점

- 운송사업자가 경영악화를 우려하여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 다수로 벽지노선의 경우 국비 외에도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
  - 농촌지역의 버스의 비수익노선이 전체운행노선의 48%인 6,400여개에 달하고 버스 수송 수요가 연평균 5.5%씩 감소하는 추세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버스 운행이 필요하나 운영 결손이 심각하여 민간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정부가 공영버스를 구입·운행하도록 지원
- 벽지노선은 개설·운행을 명령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 지역 대중교통의 확충



## 다. 세부 추진내용

- 시장·군수의 수요조사를 거쳐 적정성 검토 후 지원
- 벽지노선 지원 : '99~'02년까지 손실액 평균의 50% 지원
  - 매년 80억원 소요
- 공영버스 추가 지원 :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공영버스 신규 가입비 지원
  - 51백만원(차량가격) × 1,422(읍·면수) = 72,522백만원
  - 매년 73억원 소요
  - \* 현재는 25인승 기준으로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주들은 45인승 이상의 버스를 주로 구입하고 있음
- 벽지교통망 확충으로 벽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공영버스 운영으로 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700대지원	공영버스 1,422대 지원

### 4-3. 투자유치 · 인력 유입 촉진

#### ◇ 도 · 농교류 촉진 및 사람 · 자본 유치프로그램 강화

\* 과감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중점 추진
  - 각종 정보제공, 상담·알선,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 추진
  - 농촌주택 추가 소유시 양도세 면제, 지방세 중과 배제 등 세제개선을 계기로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전개
-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사람과 자본의 농촌 유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
  - 민자유치나 제3섹터 방식으로 체육·관광·레저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시·군을 발굴하여 홍보 및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시·군간 경쟁을 촉진
- 도시민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전원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농업 테마파크, 수변공간 정비 등을 통한 도시민유입을 촉진
  - 농촌에 도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정원형 실버타운, 은퇴농장 등을 조성
  - 농업관련 소재를 이용한 농업테마파크,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및 마을 소하천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 농촌지역개발, 농촌관광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향후 10년간 5,000명을 지역을 리드해 나갈 지도자 수준으로 육성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등 지역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인력육성계획 수립·추진

## 4-3-1. 농촌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혁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농촌은 인구감소와 소득정체로 농촌이 보유한 내부자본과 정부지원만으로는 자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난 20년간('80~'00) 도시인구는 연평균 1.4% 증가한 반면, 농촌(면지역) 인구는 3.4% 감소되고 농촌의 노령화·부녀화 문제도 심각

- 또한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사업성이 낮아, 도시자본의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투자유인책 마련이 절실

#### □ 문제점

- 농촌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상존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망

- 농촌을 1·2·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룬 복합산업공간으로 개발
  - 교통의 발달,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쾌적한 환경,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다양한 사업을 농촌에 유치하여 활력증진과 소득증대 도모

## □ 추진방향

- 농촌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농촌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0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 내용

-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1,000m<sup>2</sup>) 소유·임대 허용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추진 절차 간소화
- 농지에 체육·관광·복지시설 설치시 농지조성비 감면
- 민속주류 제조시설 설치기준을 종전의 1/2 수준으로 완화

## 다. 세부 추진내용

### □ 농업협동조합에 비농업인 참여제한 완화

- 비농업인도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에 의결권 없는 출자를 하고, 배당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추진

### □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위해 소유·보전·이용체계 개편

-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전용규제를 시설별 면적 기준에서 시설기준으로 전환

### □ 농촌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 앞으로도 시·군,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 농촌투자유치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관련법 개정을 추진

- 지역발전특구안에서 특구사업자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
  - 농업인출자 지분제한과 대표이사 및 집행이사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을 폐지
-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을 현행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영농규모화 재원 등으로 활용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농촌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혁	농촌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 농업협동조합에 비농업인 참여제한 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추진		

## 4-3-2 저수지 주변개발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변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주변의 접근 및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관광·휴양자원으로의 활용이 미흡
  - 기설 저수지 주변의 순환도로, 접근도로, 산책로, 주차장, 안전시설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 미비
  - 전망대, 휴게공원, 피크닉장, 야영장,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등 관광·휴양시설 미비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주 40시간 근무 확산으로 관광·휴식공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와 농촌관광·휴양인구가 증가
- 자연·환경·어메니티 등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 고조 등 도·농 교류에 대한 수요와 개선된 농촌투자환경으로 다양한 패턴의 투자 확대 전망
  - 농업용 저수지는 산간 계곡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휴양자원으로의 개발잠재력이 풍부
- 농촌의 자연경관과 지역문화적인 잠재자원을 활용, 도·농 교류 및 도시자본 유치확대 여건 조성

## 다. 세부 추진내용

- '13까지 16개지구의 저수지 주변개발을 성공적으로 정비하여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 주변의 관광자원과 도농교류 확대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도별 1~2개의 저수지 주변공간 개발 추진
  -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기본계획수립은 중앙정부, 사업시행은 지자체에서 추진
  - 순환도로, 산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 시행 후 특산품 판매장, 토속음식점, 관광농원 등 수익시설은 민간분야에서 유치하도록 유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친수공간 개발로 관광·휴양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 저수지의 홍수부지 활용, 저수지 준설사업과 연계 등 검토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저수지 주변개발	-	○ 6개소 착수 - 연간 3개소 수준	○ 16개소로 확대('13)

### 4-3-3 도농교류 활성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촌은 인구감소와 소득정체로 농촌이 보유한 내부자본과 정부지원만으로는 자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
  - \* 지난 20년간('80~'00) 도시인구는 연평균 1.4% 증가한 반면, 농촌(면지역) 인구는 3.4% 감소되고 농촌의 노령화·부녀화 문제도 심각
-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센터」를 설치('04.4.)하고 도시·농촌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1社1村운동 등 도·농 자매결연 추진
  - \* 도·농 자매결연 실적('04.11현재) : 1,373건(기업 750, 소비자단체 등 623)

##### □ 문제점

- 도시민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도·농교류에 앞장서도록 하는 보다 다양한 유인책이 아직은 미흡
  - 도시자본 농촌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개발 및 제도개선 필요
- 초기단계인 도농교류 대한 기업체, 지자체 등의 이해가 부족
  - 기업체 등의 농촌에 대한 일방적 시혜 또는 도시자본 투자유치를 무분별한 농촌지역의 개발로 오인 등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농촌지역의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농촌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주변여건 개선
  - 도시민의 소규모 농지소유 허용, 농촌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등
- 1社1村 운동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발굴, 활성화하고 농촌투자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발굴·개선



## 다. 세부 추진내용

- 「도농교류센터」가 농촌관광 및 농촌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도농교류센터가 도농교류활성화 프로그램 시행, 농촌투자 정보 제공·상담·알선 등 전담
    - \*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민간기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농촌투자유치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한계농지”, “빈집”, “폐교” 등을 활용한 투자 모델 제시
  -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농촌투자유치 우수 시·군 발굴 홍보 등 다채로운 이벤트 개최
  - 1社1村 운동, 농촌에 내집갓기 운동, 초·중·고등학생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확대 시행
    - \* 도시와 농촌학교간 자매결연 운동, 농촌주민의 도시방문 등 검토
- 농촌투자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정 및 제도개선 추진
  - 농촌관광 투자유치, 지역개발 인력육성 등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도농교류센터 기능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도농교류센터 개설 ○1사1촌 운동 등 신규 프로그램 추진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속 확대
○제도개선	○제도개선사항 추가 발굴	○제도개선 추진 - 관계부처 협의 등	○지속적으로 개선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 4-3-4 전원마을조성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1부터 정주권면의 중심(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주택단지 조성 또는 생활환경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집중 정비 (마을당 30억원 수준지원)
  - '03까지 190개소 착수하여 155개소 완료, 35개소 추진중
  - '04계획 : 44개소 추진 (신규착수 9개소, 완료 21개소 포함)

#### □ 문제점

- 산재된 자연부락을 중심마을로 흡수하고자 하였으나, 농가 경제력 취약 등으로 인위적인 공간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어 택지분양 지연
  - \* '04현재 분양율 : 95% (7,321필지중 6,945필지 분양)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앞으로의 전망

- 전원·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 주 5일제 근무확산 등에 따라 국내관광수요는 계속 증가
  - 국민 국내관광객 : ('02) 연인원 4억명 → ('05) 5 → ('11) 6
  - 국민연금시대 도래, 고속도로망 확충 등을 잘 활용하고, 농촌다움을 지켜 나간다면 쾌적한 거주·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

- 지금까지 지방양여금을 지원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국고보조)을 신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 □ 추진방향

-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지원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 20호 이상 규모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도시민 등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
  - 체재형 주말농원 : 도시민이 주말을 이용하여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농장에 간단한 주거시설을 결합한 형태
  - 은퇴농장 :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도시 은퇴자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가 있는 주거형 농장 조성
- \* '04현재 실시중인 문화마을 지구(44개소)는 현행대로 추진하여 마무리
- 농촌임대주택 프로그램 도입
  - 기존 마을공간 재정비방식과 신규단지조성을 통한 임대주택단지 개발
  - \* 기존 지역민 대상 : 거동불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차원의 임대주택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 \* 신규 유입민 대상 : 은퇴 및 전직 등을 통한 귀농자 및 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 \* 귀농 및 귀촌 대상자의 경우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 다. 세부 추진내용

- 시·도별 사업수요조사 결과 조사된 556개 마을 중 1단계로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원마을조성 추진
  - '04년 현재 추진중인 문화마을조성 42개소는 '06까지 마무리
-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 확충
  - '05~'13년까지 지자체의 균특회계 예산신청결과를 반영하여 158개소의 전원마을을 조성
    - 연간 20마을 수준으로 쾌적한 농촌 전원마을 조성
    - \* 재 원 : 국고 80%, 지방비 20% (\* 추진방식 : 2년차 지원)
    - \* 국고 지원액 : 맞춤형주거단지 15억, 은퇴농장 10억, 체재형농원 5억원 수준
- 격자형 단지조성을 지양하고 원지형을 살려 환경친화적인 마을로 조성
  -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요자의 계층에 맞는 편의시설 지원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농촌 정주기반 확충	○ 44개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추진 - 완료: 문화 21개소 - 계속: 23개소(전원2개소포함)	○ 연간 20개소수준의 전원 마을조성사업 시행하여 2년차 계속사업방식으로 추진 - 87개소 완료	○ 92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 4-3-5. 농촌지역 주체역량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FTA 확대 등 개방화, 농촌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농업분야가 점차 취약해짐에 따라 농촌관광,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을 통한 농촌활력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농촌의 역량이 부족
- 농촌관광 등과 관련한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필요
  - 농진청, 농업연수부,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교육은 농촌관광일반론 또는 개별경영단위 기술 교육 중심
- 지역리더 및 마을리더 등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net-work)화 시키고 사회적 자산(social asset)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전무함
  - 지역개발을 위한 자발적인 주도세력 육성 및 상호간 신뢰구축, 결속유지 등의 기능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지역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자질있는 인력 육성
  - 지역리더, 참여자(주민, 여성, 귀농자), 공무원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
    - \* 농촌마을종합개발 : '13까지 1,000개 권역
    - \* 농촌관광체험마을 : '13까지 1,000개 마을
- 지역개발 인력분야의 사회적 자산화
  - 지역개발인력기구 구성, 지역개발관련 新직업군 창출 등

### 다. 세부추진내용

- 농산어촌 인적자원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젊고, 능력 있는 마을인재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개발 리더십 교육 실시('09년까지 2,500명 육성)

- 마을주민·리더를 대상으로 지역개발, 농촌관광, 마케팅기법 등 기초소양 교육
-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지원에 필요한 교육
- 농촌여성, 귀농(예정)자 등을 위한 농촌개발참여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관 및 전문가, 출향인사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개발인력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간 교육내용의 조정 및 장기적인 지역개발교육추진 방안 협의
  - 지역개발인재정보시스템(인재뱅크)을 마련하여 전문가 및 출향인사의 DB구축 및 농촌마을과 네트워크 구축
- 지역개발관련 新직업군 창출
  - 지역개발분야의 최고권위자를 의미하는 지역개발마스터제도를 도입, 지역개발정책 등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
    - 지역개발마스터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리
  - 지역개발마스터, 관련전문가, 지역리더 등 지역개발분야의 인적자원을 총괄 대표하는 新직업군을 창출하여 인적자산화
    - 新직업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럼구성, 홈페이지 구축, 동호회 형성 등 지원

## 라.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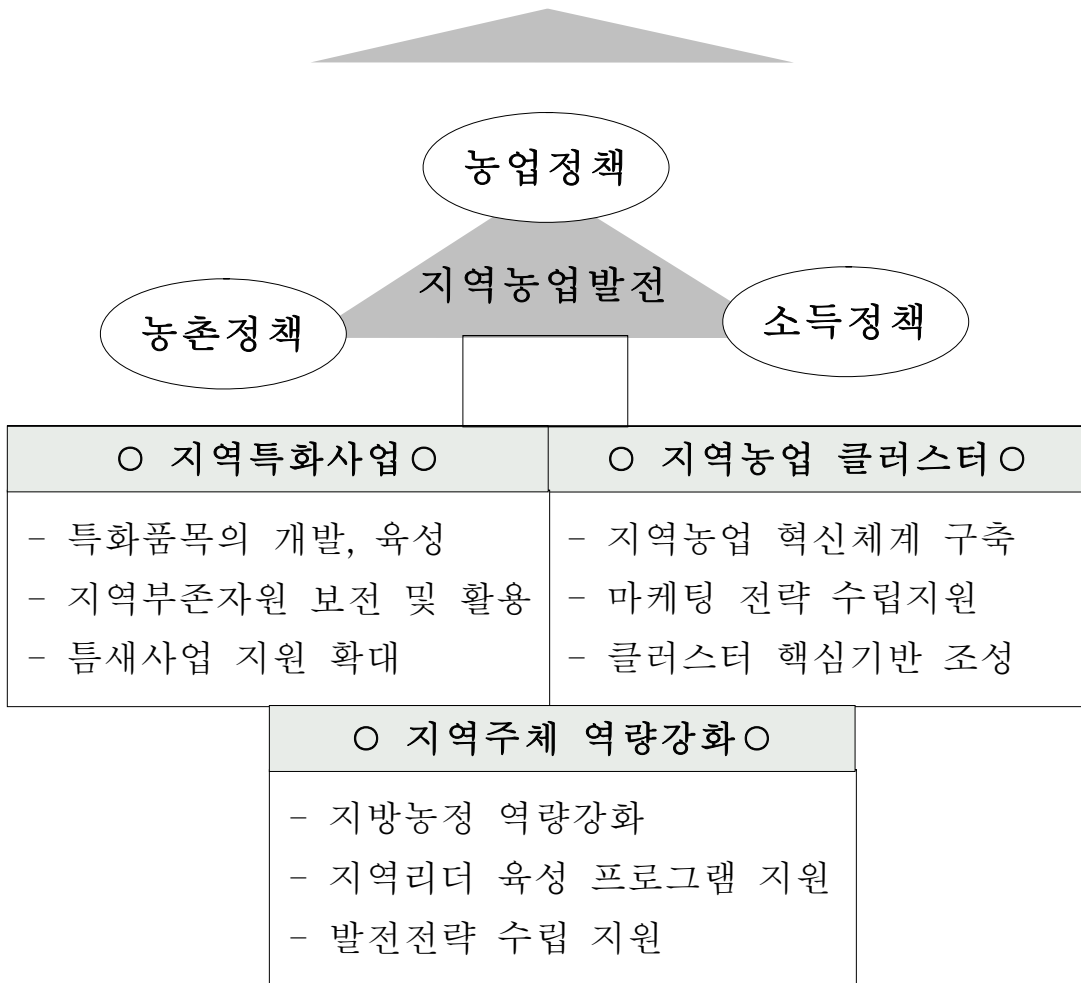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인력 육성  - 지역혁신리더 육성 - 마을리더 육성	인력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 인력육성계획 수립·추진 1,900명 1,000명	교육과정 운영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교육실시 3,100명 46,000명
지역개발인력 체계적 육성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운영		(가칭)지역개발마스터,(가칭)지역개발인력 교육기구 제도등 운영 지역개발전문가발굴, 네트워크 구축·운영 신 지역전문 직업군 창출 지원	(가칭)지역개발마스터,(가칭)지역개발인력교육기구등 운영 지역개발전문가발굴, 네트워크 운영 신 지역전문 직업군 창출 지원

## VI. 지역농업 및 남북농업 발전지원

### 1. 지역농업발전지원

- 시·도, 시·군은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
  - 지역특수시책(특화작목개발 등)은 지역농업특구, 지역특화작목 개발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
    - 예시 : 주산지 품목·소득비중이 높은 품목 발전방안,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 유지 방안 등
  - 지자체가 지역특수시책 중 중앙 정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한 예산 지원
- 지역농업의 자생적인 성장·발전 기반을 마련할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 산업자·구성주체간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기술적 측면의 혁신능력 제고
-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협의, 지역특화작목 개발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조체제 강화
  - 시·도 농어업특위, 시·도 농정심의회 등을 활성화
  -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 요구 등의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



농업·농촌종합대책의 3대 중심 정책인 농업정책, 농촌정책, 소득정책을 지역 농업을 기반으로 융화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통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 1-1.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업화의 추진

◇ 지역의 자율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특화 품목 개발 및 육성에 중점을 두되,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

- 지자체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
  - 지역특수시책(특화작목개발 등)은 지역농업특구, 지역특화작목 개발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
  - 지자체가 지역특수시책 중 중앙 정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한 예산 지원
- 지역농업의 자생적인 성장·발전 기반을 마련할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 산업간·구성 주체간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기술적 측면의 혁신능력 제고
  - 교육·훈련, 신기술 산업화 창업 지원, 특화연구개발, 기술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현장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 수행
-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협의, 지역특화작목 개발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조체제 강화

## 1-1-1. 지역특화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농림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형태의 예산 지원
  - '97~'03 : 5,167억원, '04년 : 400억원 지원(국고보조율 50%)
- 지역적으로 얼굴있는 품목 및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제고, 기존의 하향식 사업추진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 지방재원의 농업분야 투입유도 등 지자체 자율농정 활성화 등의 성과 제고

#### □ 문제점

- 농산물 시장개방확대에 따라 전통농업의 경쟁력 약화
-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특화품목 개발·육성 미흡
- 지자체의 특화품목 개발·육성 계획수립 및 추진 능력 부족
- 도시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분야 투자의지 약화 추세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농산물의 안전성, 브랜드, 품질 등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소비패턴 변화
- 신기술·신지식·신유통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차별화·브랜드화 함으로써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증가
  - 특정 소비자를 겨냥한 틈새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 노력 예상
  - 차별화된 품목의 수출노력 증대 예상
-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특화품목 중심의 연계 형성 및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 노력 증가

## □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
- 지역의 농업적 특성과 고유의 자연자원·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상호 연계개발 함으로써 농촌활력 증진
-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다. 세부추진내용

### □ 농업분야 소득증대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특화품목 개발 및 육성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전략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지원
- 신기술·신지식·신유통을 활용한 차별화·브랜드화된 상품개발 및 육성으로 수익성제고

### □ 특화품목의 연계 형성 및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전략품목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의 과정을 연계화 하고, 구성 주체간 조직화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비용절감 및 내생적(內生的) 발전 도모
  - 신상품·신수요·신시장 창출 등 시너지효과 창출
- 지역의 농업특성과 자연자원·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개성을 살린 특색있는 농촌개발로 지역활력 증진

□ 농정분권화와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량 제고

- 지역의 전략·특화품목을 개발·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 제고
- 지자체에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 자율성 부여
  -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 추진 능력 향상 및 책임성 제고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지역특화품목 육성	○ 지역특화품목 발굴·육성	○ 지역특화품목 발굴·육성 ○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연계화 및 조직화를 위한 지원 시도 ○ 지역의 농업적 특성, 자연자원·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개성을 살린 특색있는 농촌 개발지원 시도	○ 지역특화품목 발굴·육성 ○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연계화 및 조직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지원 확대

## 1-1-2.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지역 내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산업분야를 집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체계구축이 세계적으로 진행
  -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노르웨이 Agro-food cluster,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 클러스터 등
- '05년도 시범사업 10개소 , 개소당 연간 10~30억원의 지원 예정

#### □ 문제점

- 농산업은 품목의 다양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별 생산 품목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정보·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지원이 어려움
- 주산지 개념의 생산에 치중하여 관련분야간 연계성이 미약
  - 주산단지 : 고추(73시군, 387단지), 마늘(41시군, 177단지) 등
- 행정적 조건 및 지역간 과도한 경쟁의식 팽배로 효율적인 경쟁 및 협조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함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지역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업정책, 농촌정책, 소득정책의 융합을 통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
- 농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육성
  - 생산↔가공↔유통↔소비(수출) 관계를 상호 연계하고 참여 주체인 산·학·관의 경쟁과 협력체계 구축

### □ 추진방향

- 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방 농정강화 차원에서 정책추진
  - 119조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성공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 지역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지원하여 농업발전 주도
  - 지역간, 산업간, 클러스터간의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
  -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차원의 '규모의 경제'와 농산업 차원에서 '범위의 경제'를 창출하여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도모
- 지역, 품목특성, 주도세력 등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
  - 산·학·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
  - 참여 주체의 자발성을 살리고 품목적인 특성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주도세력이 형성된 곳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다. 세부추진내용

###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지역농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농업 구성 주체 및 혁신 주체간의 정보 공유, 지식확산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 및 교육프로그램
  - 구성주체간의 지리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주체들의 공동학습과 혁신창출 활동이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
- 지역의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주체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정보와 지식의 교류 및 확산을 유도하여 혁신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지원
  -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등
- 지역의 농업특성과 자연자원·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개성을 살린 특색 있는 산업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증진

### □ 클러스터 핵심기반 조성

-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지역, 품목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
  - 다양한 클러스터 유형별로 특색을 반영한, 비용우위와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생산기반구축을 유도

## □ 마케팅 능력제고 및 전략수립 지원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산품 개발과 복수 시·군에 걸친 연합 활동을 통하여 마케팅 파워의 형성 및 지역특유의 브랜드 활성화
  -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경영인 고용을 지원
  -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기 위한 지리적 표시제, 이력추적제 등을 지원
- 품목별, 지역별 특색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
- 신기술 산업화 창업지원 및 특화 연구개발사업 지원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품목별, 권역별 Clustering 및 Networking	○ Cluster 시범사업	○ 품목발굴 및 개발 - 수출산업화 병행 ○ Cluster 체계 정착 ○ 실용화-산업화 기반 확립	○ Cluster 체계 활성화 ○ 산업화 기반 정착



### 1-1-3.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R&D)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일정 지역 내에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 활용하여 특성화 산업분야를 집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체계 구축이 세계적인 추세임.
  - \* 美 실리콘밸리, 韓 테헤란밸리, 노르웨이 Agro-food cluster 등
- 전통 및 新 농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일정 지역내에 농축산물 생산경영체, 기업과 유관기관의 집적화가 시급함
- IT, BT 등 신성장 산업분야는 산업적 특성,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등으로 지역 클러스터(Cluster)가 발전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음

##### □ 문제점

- 농산업은 품목의 다양성, 기술집약, 공간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별 생산품목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정보·인적·물적자원의 집중지원이 어려움
- 주산지 개념의 생산에만 치중하여 관련분야간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함
  - 주산단지 : 고추(73시군, 387단지), 마늘(41시군, 177단지) 등
- 농업의 특성상 생산주체인 특화품목의 이동이 곤란하므로 주산단지 중심의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맞는 클러스터 모형 개발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 전 망

- 농산업의 획기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주산지 및 발전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생산↔가공↔유통↔소비(수출) 관계를 상호 연계하는 등 주력 농산품 개발 관련 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적정 클러스터 모델 발굴
  - 주산지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예) 품목 주도형(청양 구기자), 분야 주도형(양평 친환경농업), 브랜드 주도형(안성마춤), 지역 주도형(의령 수박)
  - 농업대학, 연구·지도기관 등 기술주체를 중심으로 한 R&D 주도형 클러스터
  - 지역특화형 + R&D 주도형이 융합된 혼합형 클러스터 발굴

### □ 추진방향

- 기본방향 : 클러스터 체계구축과 네트워킹
  - 품목별 주산단지 및 신규 유망품목을 지리적, 공간적 집적화를 통해 다양성과 특성화가 조화된 농산업 클러스터 체계 구축
    - 품목별 : 100품목 내외(수출 18품목 등)
    - 권역별 : 9개 도별 지역특화작목 중심
- 지역 집적과 거점간 상호연계를 통한 전국 농산업 Cluster Map을 형성하는 Networking

## 다. 세부 추진내용(중점추진사업)

### □ 농림부

-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을 총괄
- 지역특화가 미진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진청의 시범적 실시 결과에 따라 투자여부 결정

- 기존에 지역특화가 잘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진청의 시책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정책 차원에서 대규모로 투자되는 산업화 및 유통지원분야, 지역농업기반조성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투자 실시
- 지역소재 공공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농업인단체 및 지자체가 “지역농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개발과 추진을 협력함
- 신기술 산업화 창업지원 및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 지역의 농촌진흥기관 및 산·학·관·연의 연계체제 구축
  - 특화 분야 성과 제고를 위한 농업단체, 농업인과의 공동연구 강화

#### □ 농촌진흥청

- 지역특화가 미진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연구개발, 지역농업기반조성, 산업화 및 유통지원 및 전문인력육성 분야에 대해 시범적 운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지원
- 지역특화가 잘 이루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연구개발 부분과 전문인력육성 부분에는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화 및 유통지원분야 및 지역농업기반조성분야는 일부 또는 농림부에 시책건의 하여 정부정책으로 지원토록 유도
- 주산지 및 발전가능 품목별 Cluster 체계 구축
  - '04 추진중인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을 적극 활용
  - \* 지역농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전략차원에서 인력의 재구성을 추진하여 생산기술 전문가 중심에서 저장·가공, 유통, 마케팅 등의 전공자의 적극 참여를 보장

○ Cluster 품목의 산업화 기술개발

- 기 구축된 특성화대학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 \* 지역농업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현장으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연구 수행
- 클러스터 대상 품목에 대한 산업화 기술개발, 벤처기업육성 등

○ 지역별, 품목별 Cluster 및 Consulting 전문가 육성지원

- 특성화대학의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지역농업 클러스터 전문교육 기관으로 육성
- 교육훈련, 기술수요 조사 및 신기술 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등

라.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 지역농업 클러스터 총괄</li> <li>○ 품목별, 권역별 Clustering 및 Networking</li> <li>○ 농진청 : 지원사업 총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uster 육성계획 수립</li> <li>○ 예산 확보</li> <li>○ 특화사업검임연구관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및 클러스터와의 연계 방안 모색(농진청)</li> <li>○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클러스터와의 연계 방안 모색(농진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uster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분석('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품목 클러스터</li> </ul> </li> <li>○ Cluster 정상 추진 및 체계 정착</li> <li>○ 실용화-산업화 기반 확립</li> <li>○ 품목발굴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산업화 병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 기반 정착</li> <li>○ Cluster 체계 활성화</li> </ul>

## 2.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 ◇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자생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 ◇ 남북간에 서로 이익을 주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사업 확대
- ◇ 남북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한반도 식량안보 체제 구축

- 북한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 남북한 신뢰 및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위에서 현재의 긴급구호 지원(Relief)과 병행하여 북한의 농업구조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복구(Recovery) 및 개발(Development) 협력사업 점진적 확대
- 민-관 또는 민간단체 간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활성화
  -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추진
- 「농업분야 남북 당국자간 대화창구 개설」 관계부처 협의
  - 남북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농업문제 현안을 협의하고 상호 보완적인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추진
- 내실있는 북한농업연구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연구목표 및 방향과 당해연도 연구분야를 설정하고 연구진행상황을 점검
  - 농림부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자료실」을 개설하여 연구 결과의 정보공유 및 활용도 제고

## 2-1-1.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국의 붕괴, 생산체제의 비효율성, 사회간접자본 미비, 농자재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난 지속
  - 2004/05년도 곡물생산량은 424만톤으로 지난해(413만톤)에 비해 2.5% 증가 (FAO/WFP추정), 농촌진흥청은 431만톤으로 전년 425만톤 대비 1.4% 증가 추정
  - 최소 곡물소요량은 513만톤으로 수입량 40만톤(한국의 차관 포함)을 감안하더라도 49만톤의 식량이 부족(FAO/WFP 추정)
- 정부는 '95년이후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식량과 비료를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지원 또는 차관 제공
  - ('95) 쌀 15만톤, ('99~'03) 비료 121.5만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 ('00)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02) 국산쌀 40만톤, ('03) 국산쌀 40만톤 차관제공 (10년거치 30년상환, 연리 1%)
  - \* '04년도는 비료 30만톤과 쌀 40만톤 지원
- 민간차원에서도 인도적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분야별 농업지원 및 기술협력사업을 추진 중('95~'03년까지 약 3,448억원)
  - 농기계수리공장, 씨감자 양액재배, 종자개량 및 증산, 산림복구 지원 등

#### □ 문제점

- 민간단체 간 또는 정부-민간 간 정보교류,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 상호협력 체계가 미흡
- 농업분야의 당국간 대화창구가 없어 실질적인 대규모 농업협력사업 추진 및 정부역할의 한계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자생적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협력사업 지속 추진
  - 긴급구호적인 식량 및 농자재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의 농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복구 및 개발협력 사업 점진적 확대
- 남북한 상호 보완적인 지원·협력사업 추진
- 남북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반도 식량안보 체제 구축

## 다. 세부추진내용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 통일대비 중장기 농업정책, 농업분야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조정
  - 농업분야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관별·단체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방안 등 협의
- 농업분야 남북 당국자간 협의채널 확보방안 강구
  - 남북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농업분야 현안을 협의하고 상호 보완적인 대북지원 및 농업협력 활성화
    - \* 농업분야 대북 경험·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북한의 생산성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식량 및 농자재 지원 협의
    - \* 남북한 기상·병해충 발생정보 등 농업기초정보 교류 협의

## 라. 추진일정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구성('04.8)	○ 농업분야 당국자간 협상 창구 개설 ○ 체계적인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활성화	○ 남북한 상호 보완적인 대북지원 및 남북농업협력 추진(계속)

## 2-1-2. 내실있는 북한농업연구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98년 이후 대북정책 기조가 햇볕정책으로 전환되고 남북교류 협력이 점차 확대
- '98.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북한농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99년부터 북한농업연구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말까지 37개 과제 수행
  - '99(3억원, 4개과제) → '00(3, 6) → '01(3, 8) → '02(3, 8) → '03(3, 6) → '04(2, 5)
- 2002년도에는 북한농업 기초정보·변화동향 분석, 남북농업협력 추진방안 및 통일대비 정책수요 대응방안 등으로 연구분야를 나누고 중장기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

#### □ 문제점

- 북한농업 연구결과물에 대한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상호간 정보공유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결과의 활용이 미흡
- 당해연도 연구분야 선정시 민간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북한의 개혁·개방 및 체제통합에 따른 잠재적 정책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연구목표(기초연구, 협력방안, 통일대비) 아래 북한농업연구 지속 추진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분야 설정
- 연구결과 정보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 다. 세부추진내용

- 내실있는 북한농업연구 및 평가 체계 구축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연구목표 및 방향과 당해연도 연구분야를 설정하고 연구진행상황을 점검
  - 북한농업 기초연구, 남북농업협력방안 및 통일대비 농정방안 연구를 지속·체계적으로 실시
- 농림부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자료실」 개설
  - 연구용역 결과물, 대북지원 민간단체 현황, 단체별 대북지원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민간단체간 상호협력 및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 라. 추진일정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구성('04.8)</li> <li>○ 농림부 홈페이지 연구용역 자료실 구축('04.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북한농업연구 지속 추진</li> <li>○ 연구용역 사업비 확대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북한농업연구 지속 추진</li> </ul>

## VII. 농정조직 개편 및 법령 정비

### 1. 조직 개편 방향

#### 1-1. 농림부 및 소속기관

◇ 농림부를 (가칭) 「생명산업부」 또는 「농산업식품부」로 변경하여 명칭부터 소관업무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농업정책·식품정책·농촌지역개발정책을 3대 핵심기능으로 수행토록 개편

- 품목중심의 조직을 생산·유통·소득안정·지역개발 등 기능별로 재편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
  - 생산기능을 축소하고 품목 중심의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
  - 생산기능도 B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재정립
- 농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함께 농업생산·유통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전체 Food Supply Chain에 걸맞게 조직과 기능을 조정
  -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농식품(Agri-food)에 대한 ‘Farm to Table’ 원칙에 의한 안전성 관리기능(GAP 등) 강화
    - \* GAP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로서 농산식품의 생산·저장 전과정을 관리하며 소비자 만족을 지향
- 농촌지역개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농촌개발국을 대폭 개편, 농촌지역의 종합개발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촌복지를 전담
    - \*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촌개발국을 농촌정책국’으로 개편, 농업인 교육·의료·복지 등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원 확충을 담당할 「농촌사회과」 신설('04. 8)

- 소속기관은 국경검역 국내방역 품질 안전관리 등 새로운 업무 수요에 맞게 통폐합
  - 농관원, 수과원, 식검, 종자관리소를 국경검역, 국내방역지원 및 농식품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재정립
  - 국가검역·방역 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국을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와 통합, 동식물방역청 또는 동식물방역본부 신설
- 조직의 상시진단 및 기능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의 유연성 (flexibility)을 제고하고 상시혁신체제 구축
  - 상시 조직혁신기능을 담당할 전담조직 설치 등
    - \* 혁신업무 강화를 위해 농림부내 혁신인사담당관실을 설치('04. 3)하고 담당관실내 「농정혁신팀」을 구성·운영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언제나 변화하는 학습조직 실현
  - 조직·기능위주의 거시적 분석과 인력·업무 절차(BPR)·문화(행태)위주의 미시적 분석 등 종합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
    - \*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진단·변화관리 사업」에 ('04년 17개 부처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실시 중) 우리부도 참여

## 1-2. 농촌진흥청

-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을 개편
  - 본청 및 소속기관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품질고급화, 생명공학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등에 핵심역량을 집중
  - 농산물 안전성, 인삼 재배, 농촌 복지 증진, 북방 농업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연구 기능을 강화
  
- 기술 개발 및 보급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변화관리
  - 수출 및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고부가가치 작목 개발에 사업의 우선 순위 부여
  - 전통적인 생산기술분야 보다는 수확 후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생산·가공·저장·유통이 통합된 기술 지원에 중점
  - 도·농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의 자연자원과 전통문화를 테마 상품화하는 기술 지원 및 보급
  - 농촌노인, 농작업재해 예방 등 농촌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보급 강화
  
- 기술 보급체계는 대상과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경영규모,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술보급방법을 차별화하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내실화
  -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 농촌지도조직의 위상 재정립

## 1-3. 농수산물유통공사

### 가 추진상황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04.1) 및 직제개편을 통해 식품소비처를 신설('04.4)하여 농식품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 기반 구축
  - TV 영상물 제작·방영을 통한 우리 농식품 우수성 홍보 및 전시회, 이벤트, 교육 등을 통한 소비자 홍보, 가공업체 판촉지원
  - aT센터를 농산물 소비·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
    - 전시회 개최 : ('03) 48회 → ('04) 52회
  
- 수출진흥을 위한 전과정 일관지원체계 구축 및 공격적 마케팅 추진
  -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전문생산단지에 조사·평가제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단지로 육성
    - ISO 품질인증 취득지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 운영 등
  - 지역별 수출유망품목 토털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목표시장별 수출유망품목 중심으로 해외 대형마켓 입점·판촉 확대
    - ('03) 9개국 54마켓 3,849매장 → ('04.10월) 8개국 52마켓 3,866매장
  - 공동대표브랜드(Whimori)개발·운영으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 남북 농산물교류협력사업 추진
  - 정부 식량차관으로 대북 쌀(40만톤) 및 옥수수(10만톤) 지원
  
- 농수산물 유통개혁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농산물마케팅관리사, 도매시장경영관리사 등 교육 실시

## 나. 향후 추진방향

###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추진

#### ○ FTA 체결을 활용하여 국가별 수출전략 추진

- 국가별 시장개척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여 수출전략 실행
- 20대 중점 품목을 집중육성, 주요시장 점유율 우위 확보

#### ○ 해외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해외시장 집중개척

- 일본, 동남아에 농업무역관 추가 확대 및 서브무역관 설치

### □ 소비자 지향적 유통사업 추진 및 홍보역량 제고

#### ○ 공사의 기능을 ‘농수산물에서 농식품까지’ 영역 확대

- 외식업체, 단체급식, 전처리 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
- 식품산업 통계시스템 구축 등 「식품종합컨설팅센터」 운영

#### ○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전개

- ‘이미지 마케팅’을 활용, 청소년 등 미래의 소비자를 고객으로 확보

###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 확대

#### ○ 주요 농산물 수입정보 및 국내피해 분석을 위한 수입정보시스템 구축

#### ○ 쌀 공공비축제 도입에 맞추어 MMA 쌀 수입관리 기능 강화

#### ○ 계약재배, 농산물 물류기지 건설 등 남북농업 합작투자 사업 모색

### □ 유통교육원을 유통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

## 1-4. 농업기반공사

### 가. 추진현황

- 농정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경영패러다임 전환 및 현장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조직·운영체제 개편
  - 본사인력을 대폭 슬림화하여 지방조직으로 전환배치
    - (본사) 913명 → 707명(206명, 23% 감축)
  - 부사장을 사업담당이사가 겸임하고, 직제서열도 일반관리 부서보다 사업부서를 선임부서로 조정하여 핵심역량 강화
    - 관리분야 상임이사 1인 축소(6인 → 5인), 상위직(1급직) 10명 감축
  - 팀제의 전면 도입 : 현행 1,702개 부·과 → 427개 팀으로 개편
  - 「경영전략본부」 신설로 상시경영혁신 추진체제 구축
    - 도본부·지사에 혁신팀(도본부 : 농촌지원팀, 지사 고객지원팀) 운영
- 「농업·농촌종합대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정책사업 기능강화를 위한 제1단계 조직개편 추진
  -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핵심주력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기능 확대 (농촌종합계획처 운영)
  - 농지은행제도 추진기반 구축(농지은행사업본부 운영)

## 나. 향후 추진방향

### □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립(계획기간 : '05~'09)

- 공사 중장기 비전과 기업전략·사업전략·기능전략 등 수립 후 조직개편 추진

### □ 상시 기능혁신 및 개혁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경영혁신 지속 추진

- 지방조직 경영컨설팅 지속추진으로 지방조직 효율화 및 활성화  
- 93개 지사중 '04년 22개 완료, '05년 71개 추진
- 경영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방조직 강화방안 지속 추진

### □ 정부의 농정 로드맵에 맞추어 기능혁신 본격 추진

- 공사명칭변경, 농지은행, 직불제 확대 등에 따른 공사법 개정('05)
- 공사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강구

### □ 농업·농촌종합대책 사업에 인력 Pool 운영 등 조직역량 집중

- 전문인력 육성 등 농촌지역종합개발, 도농교류 촉진 등 신규정책 추진체계 구축
- 축소되는 분야의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 신규사업분야로 전환

### □ 핵심사업 발전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 추진

- 농촌지역종합개발, 농촌관광, 농지은행, 다양한 직접지불제 등 신규정책사업 활성화기반 마련('05 하반기)

### □ 농업용수관리 일원화, 재해대비 노후수리시설물 기능보강 대책 추진

- 시·군 관리지역(359천ha)의 공사관리지역 편입('13년까지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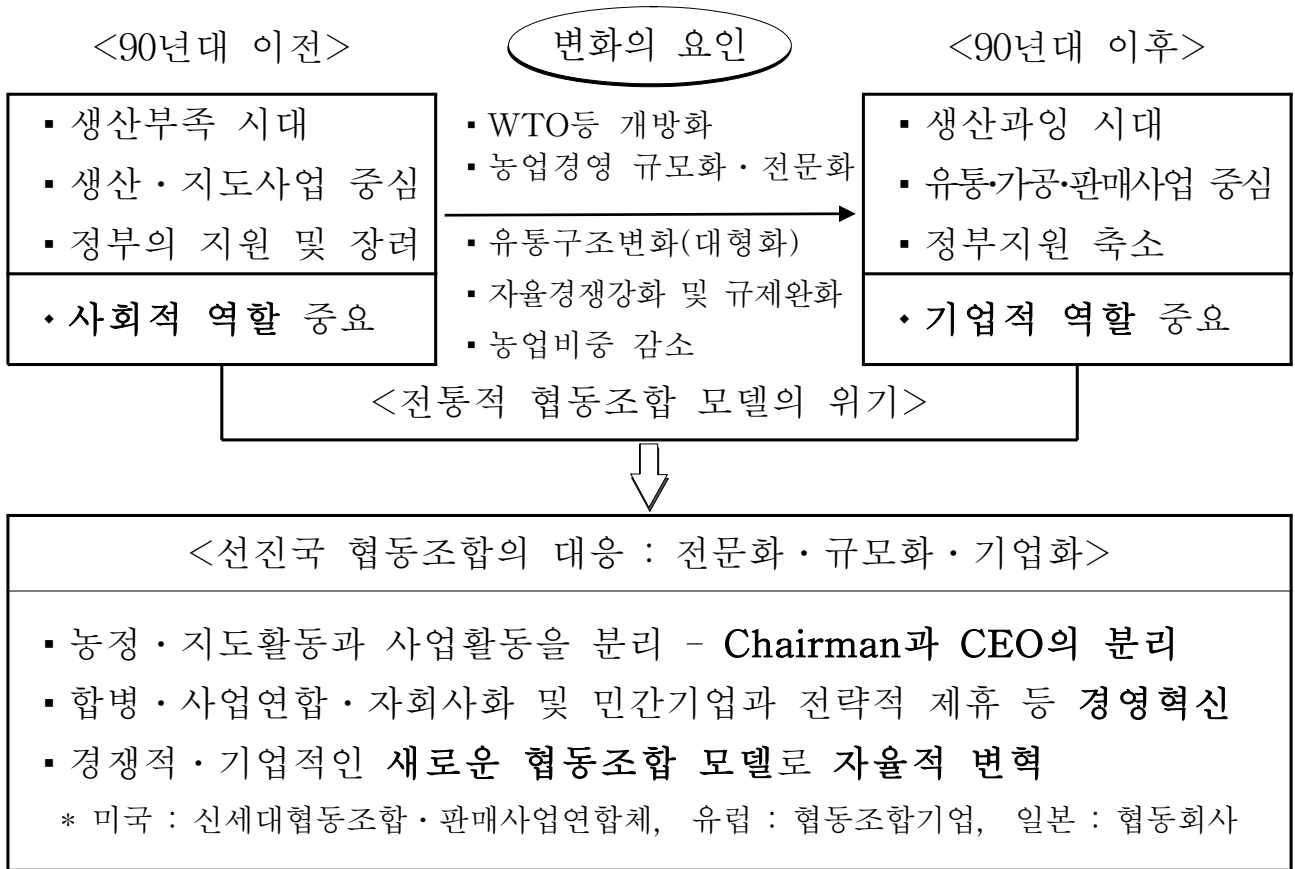
## 1-5.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협동조합 개편

- 일선 조합은 농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의 중심축으로서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육성
  - 조합간 판매사업 연합을 제도화하여 농산물 판매기능 강화
    - 농협법에 조합간 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각종 인허가 및 세제상 혜택을 조합과 동일하게 부여
  - 전문경영인으로서 상임이사 도입을 확대하고,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
  - 부실조합 구조조정의 지속추진 및 조합간 자율합병 인센티브를 강화, 합병을 통한 조합 규모화 추진
- 중앙회는 신용·경제사업의 별도법인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중앙회는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교육지원사업 전담 전무이사제 도입 및 인사권 등 경영권을 대표이사·전무이사에게 위양
  - 일선조합은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일선조합 조합장의 연임제한, 일정규모 이상 조합 상임이사도입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제 도입, 조합장 선거의 지역선관위 위탁,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법인격 부여 등
  - 중장기적으로는 중앙회를 지도사업 전담조직으로 하고, 신용·경제 사업부문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분리

# 1-5-1. 협동조합 개혁

## 가. 농협개혁 필요성과 방향

□ 미국·EU 등 선진국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기업화하는 자기변신을 지속



□ 반면,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영세한 영농규모 등 더욱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규모화·전문화 등 개혁의 정도는 미흡

○ 읍·면단위 영세구조, 높은 정부의존도, 비전문가에 의한 경영으로 농협에 거는 기대와 실제 역할간 괴리 문제가 심각

\* '03년 중앙회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한 구미장천농협·파주교하농협에서 최근 조합경영불만으로 조합원에 의한 해산의결사태 발생

## <환경변화와 바람직한 농협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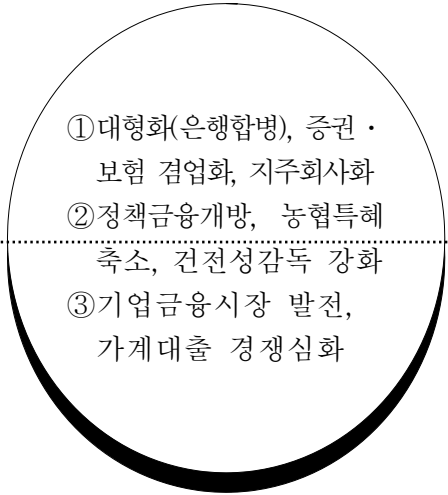
### ①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지주회사화 등 경쟁심화

<현 재>

<금융시장 여건변화>

<개혁방향>

- <중앙회>**
- 높은 정부 의존도
  - 정책자금의 총대출의 31%
  - 공금고가 총예수금의 36%
  - BIS기준적용 특혜
  - 일선조합과 경합관계
  - 시·군지부, 중복점포
- <조 합>**
- 소규모·고금리
  - 전문성 부족



- <중앙회>**
-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 책임경영체제 구축
  - 전문성 제고
  - 단계적 신·경분리
  - 일선조합과 보완관계
  - 중앙회 : 도시, 조합 : 농촌
- <조 합>**
- 합병 등 규모화
  - 전문경영인 영입



- 중앙회 신용부문은 세계일류 협동조합 종합금융지주회사로 발전
- 조합 신용부문은 농업금융에 특화된 지역경제 선도금융기관으로 발전

### ②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및 대량유통 확산

<현 재>

<유통시장 여건변화>

<개혁방향>

- 영세·소규모로 시장교섭력 미약
- 지도사업과 혼재



- 사업연합·합병 등 규모화
- 자회사화 및 전문경영인제 도입



- 농산물 유통의 50%이상을 농협이 담당, 농산물유통 전문계열그룹으로 발전
- 조합은 산지마케팅 주체, 중앙회는 일선조합 마케팅 지원

## 나. 현행 농협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 농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농협이 유통·판매사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과 함께 농협개혁 요구가 지속

\* '03년 중앙회에서 최우수등급으로 평가한 구미장천농협, 파주교하농협에서 최근 조합경영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원에 의한 해산의결사태까지 발생

□ 중앙회가 조합원의 실익제고를 위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 급변하는 금융·유통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경영권한까지 회장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

○ 신용사업은 규모에 비해 높은 정부의존도 등 실제 경쟁력은 타은행에 비해 부족(예수금의 36%, 대출금의 31%를 정부·지자체에 의존)

○ 경제사업은 자본금 및 전문성 부족으로 만성적 적자('03년 : △1,837억원)

□ 일선조합은 영세한 사업구조 및 비전문적 경영형태에 대한 혁신 없이는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

○ 사업규모가 영세한 조합은 조합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농업인에게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 경제사업도 영세한 사업물량으로 시장교섭력을 갖는데 한계

○ 선출직 조합장이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는 한 경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곤란

## 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경과

◇ 과거의 정부와는 달리 「자율개혁 원칙」에 따라 농협,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상호협의를 거쳐 법 개정방향을 정립

□ '99년 농협법 개정 당시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법 부칙 제16조)

○ 이에 따라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한국금융연구원) 결과를 국회에 제출('02.6)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i) 1단계 : 현 체제 내에서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ii) 2단계 : 자본금 확충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

○ 정부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국회 제출 후 2년 내 실시('04.6)토록 한 규정에 따라 1단계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을 추진

□ 협동조합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개혁 원칙을 정립하고, 중앙회 내에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03.4)

○ 농민단체, 조합장 등 농협 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여 10여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 개정방향을 정부에 건의('03.9)

○ 정부는 건의안을 바탕으로 농협, 농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농협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04.6.29)

□ 농협법 개정안 국회통과('04.12.9)

○ 정부안 및 강기갑의원 대표발의안을 반영한 상임위 대안 채택

## 라. 농협법 개정 주요내용

### <농협중앙회>

#### ① 사업규모에 걸맞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 중앙회는 ① 회원조합의 권익보호를 위한 운동체이자, ② 신용·유통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
  - 1,335개 조합을 대표하는 연합체인 동시에, 200조원(회원조합 포함) 수준의 은행, 업계 4위 보험회사, 8조원 수준의 유통회사
    - 유통업체·은행은 급격한 유통·금융시장 여건 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문 CEO영입, 신경영기법 발굴 등 무한한 자기혁신 노력을 진행중
  - 회원조합의 대표로서 회장의 권한과 거대한 사업체의 경영자로서 대표이사(전무이사)의 권한이 재정립될 필요
    - 현재는 모든 권한이 회장에 집중되어 경영비효율, 전문경영 미흡 등 문제
-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회장의 권한은 유지·강화하되, 사업은 전문경영인 책임 하에 경영토록 지배구조를 개편
  -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총회·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강화
    - 농협의견을 수용하여 대표이사 추천권은 현행대로 회장 권한으로 유지하되, 이사회 의 대표이사 해임건의권을 추가로 보장
  -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경영권과 독립성 보장으로 책임경영 촉진
    - 소관분야 집행간부 등 직원 인사권, 소관분야 대표권 등

## ② 책임경영에 부응하는 이사회 체제 개편

- 이사회 내에 농업·축산·신용 등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 감독체제를 구축하고 운영을 효율화
  - 다만, 수협과 달리 중앙회 전체차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토록 소이사회 결정을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frac{2}{3}$ 이상에서  $\frac{1}{2}$ 이상으로 변경하여 법률·회계·유통 등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
  - 이사의 과반수를 조합장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도 유지
  - 감사업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현행의 감사제도를 없애고 이사회내 사외이사 및 조합장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도입

## ③ 중앙회에 의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지도사업비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수
  - 일부에서는 3년 내 신·경 분리 실시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전제조건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는 현실적으로 곤란
- 농협으로 하여금 법 시행후 1년내 자본금 확충 등 세부추진 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추진
  -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대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

## <일선조합>

### ①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 현재 조합이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는 상임이사 도입은 전문 경영이 필요한 규모화된 조합부터 의무 적용토록 개선
  - 당초 전 조합에 적용하도록 추진하였으나, 현실 여건 및 농협 의견 등을 수용하여 일정규모 이상(대통령령) 조합으로 완화
  -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간평가 실시
-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되는 상임조합장부터 연임을 2회(연속 12년)로 제한하되 중임은 허용
  - 일부 농민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문제를 제기하나, 조합장의 직업화, 혼탁·과열선거 초래 등 부작용 방지 필요
  - 신협외의 경우 명예직인 조합장도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협(1회) 및 산림조합(2회)도 법개정을 추진 중
- 지난 4월 총선시 공명선거 문화가 조합장 선거('05년 456개, '06년 689개)에도 지속되도록 지역조합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
  -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선거의 여파가 조합경영에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수협, 산림조합도 동일)

\* '02년 이후 조합장 선거관련 민·형사상 소송 : 39건

### ② 조합 규모화를 촉진하는 선진 제도 도입

- 중앙회 총회와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별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
  - 다만, 소규모 조합의 권익대변 등을 위해 농협의견을 수용하여 중앙회장·감사 선거시에는 적용을 배제



- 협동조합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95년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원칙에 부합됨을 선언
  - \* 일본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독일 · 영국 등에서도 이미 도입 시행중

### ③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조합간 경제사업 연합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여 연합자회사화 할 수 있는 제도신설
  - 경제사업의 규모화 · 전문화 촉진을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0%인 출자제한을 자기 자본까지로 완화
- 국가 및 지자체가 품목조합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의 준회원 가입도 허용
  - 경제사업을 위주로 운영하는 품목조합의 활성화 및 품목별 연합사업을 통한 사업 규모화를 위한 지원확대
- 조합의 결산 잉여금 배당시 출자에 비례한 배당보다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도록 개선
  - 출자배당을 제한하고,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우선시하는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95년 ICA 총회에서 제시)
    - 조합원의 자발적 조합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 기대
- 일선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출자 발행을 허용
  - 지자체 · 도시민의 출자유치로 자본금 확충 및 유통회사 등의 우선출자와 농산물 판로확대를 연계

## 마.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

- 중앙회는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강화 및 조직·인력 슬림화에 중점
  - 농산물 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이 활성화된 조합을 중심으로 중앙회가 각종 무이자자금을 집중지원하고, 평가시도 우대
  - 신용-경제사업간 순환보직을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전문성을 제고
  - 중앙회 본부 인력을 감축하여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인력 슬림화 지속 추진
    - 일선조합과 중복되는 중앙회 읍·면소재 신용 점포도 단계적으로 정리
  
- 일선조합은 산지유통활성화 및 합병 등 구조조정에 역점
  - 품목조합 중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추진
  - 농산물 상품화시설(APC·RPC)을 확충·내실화하고, 공동 선별·계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중점추진
  - 금년말까지 「지역농협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수립, 조합이 스스로 합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마련
  - 기타, 상호금융 금리인하 및 임직원 급여체계 개편 등을 추진

## 마. 향후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해 농업인 실익증대	○ 농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법이외 개혁과제에 대한 로드맵 수립	○ 농협법 하위규정 개정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 농협개혁과제 추진 ○ 부실조합 구조조정	○ 농협개혁과제 완성

## 1-5-2.농업협동조합 건전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일선조합을 규모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7년 농협 합병촉진법 제정·시행하면서 합병조합에 합병비용 지원
  - '97~'03년까지 271개 조합 합병, 279억원 지원
-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02년부터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220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하고, 적기시정조치
  - 220개 조합중 47개 합병, 11개 퇴출(계약이전), 88개 정상화
- '99년 하반기부터 일선조합의 반발을 우려 자율합병으로 전환 후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47개)외에 자율합병은 극히 부진
  - 자율합병수 : ('97) 64개 → ('98) 83 → ('99) 72개 → ('00이후) 2개

#### □ 문제점

- 아직도 상당수 조합들이 면단위 규모로 영세하여 경제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고, 저금리·자금잉여 등으로 신용사업 경쟁력도 저하
  - \* '02년말 현재 읍·면 조합은 731개로 전체 조합(1,366개)의 53.5% 차지
-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과 경영관리능력 부족,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대규모 부실 발생위험 상존
- 일선조합 규모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조합임직원들의 이해관계로 획기적인 조치없이 자율합병 기대 곤란

###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업인구 감소 및 농업인 고령화로 조합기반 약화
- 생활권역의 광역화 및 농업의 규모화·전문화 진전
- 대규모 유통업체의 출현 등으로 전문화·규모화된 사업추진 필요
- 국내 금융기관의 생존차원의 합병 및 종합금융화로 경쟁 심화
- 부실조합 정리 및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으로 조합자립기반 마련

## 다. 세부추진내용

- 지역농협은 생활권·경제권 중심으로 권역별 합병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1군 1조합체제로 발전
- 지역축협은 경쟁력이 없는 조합을 인근 지역축협과 합병
- 품목조합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도단위, 권역별 또는 전국 단위로 합병 유도
- 부실조합은 원칙적으로 합병 또는 계약이전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부실우려조합은 강도높은 경영개선조치 및 적기자금지원으로 정상화
- 일선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기준 및 추진체계 강화 시행
- 신속한 부실조사를 통해 부실원인 규명 및 책임 추궁
- 광역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기준 상향 검토 등 제도개선 추진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 )
① 광역합병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법 개정</li> <li>·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법령 개정</li> </ul>	
② 일선조합의 규모화·광역화를 위한 합병지원 및 부실조합 완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조합 정리·정상화 추진</li> <li>· 부실책임 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추진</li> <li>· 지역농협중장기 합병지원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조합 자금지원 확대 및 경영관리 강화</li> <li>· 설립인가기준 미달조합 실태 조사 후 인가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조합 도단위 광역합병 추진</li> <li>· 조합 부실 완전 제거, 정상화</li> </ul>

## 2. 법령 정비 계획

### □ '07년 이전까지 주요 법률 제·개정 완료

- 『농업·농촌기본법』, 『양곡관리법』, 『농지법』, 『협동조합법』 등 주요 법령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기타 경쟁 제한적 규제완화, 도시자본 유치 촉진 등 대책관련 법령도 로드맵에 따라 정비

### < 주요 법령정비 계획 >

추진 년도	법 률	주 요 내 용 안
'04	①FTA특별법 제정 ②부채경감특별법개정 ③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④농협법 개정 ⑤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FTA특별기금 설치 등 ○정책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등 금리인하, 기간연장 등 ○범 정부지원시스템 구축, 복지 및 지역개발강화 등 ○조합장 선거관리 강화, 중앙회 신·경분리 등 ○정부재보험제, 재보험 재원 확보
'05이후	①농업·농촌기본법 개정 ②농지법 개정 ③농업기반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개정 ④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법률 개정 ⑤도농교류촉진법 제정 ⑥식품산업육성법 제정 ⑦가축분뇨관리및이용 에관한법률제정 ⑧쌀소득보전기금법개정 ⑨양곡관리법 개정 ⑩품질관리법 개정 ⑪산림자원관리법 제정	○농업·농촌 종합대책 내용 반영('05)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등 ○농지은행제 도입 등('05) ○도매시장 비상장 및 매취 거래 확대 등('05) ○농촌관광 진흥관련 내용 등('05)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포괄(외식산업, 전처리산업 등 포함 지원) ○축산폐수관리 및 자원화('05) ○고정직접지불제, 변동직접지불제, 목표가격 등('05) ○공공비축제 도입 등 ○GAP 도입기반, 지리적표시제 법적 보호 강화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 산림영향 평가 등('05)

## < '04년 정비계획 법령 주요내용안 >

### ○ 농협법 개정('04)

- 일선 조합은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에 역점, 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준비에 중점 등

###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04)

- 거대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재보험제도 도입 및 재보험 재원 확보

## < '05~'06년 정비계획 법령 주요내용안 >

###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05)

- DDA협상 이후 달라지는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지원내용 전반을 반영

### ○ 농지법 개정('05)

- 외부자본의 농촌유입, 영농규모화가 가능하도록 농지소유·이용규제 등 제도개선

### ○ 식품산업육성법 제정('05)

-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포괄(외식산업, 전처리산업 등 포함 지원)

### ○ 양곡관리법 개정('05)

- 추곡수매제 대신 공공비축제 도입
- 정부 주도의 유통 및 수급조절 기능을 민간중심으로 개편

###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

- 급격한 농지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농지알선, 신탁기능 등을 담당할 농지은행 제도 도입 근거마련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05)

- 도매시장 종사자의 비상장 거래 확대, 도매시장 법인의 매취거래 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규제 완화

### ○ 품질관리법 개정('05)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기반 마련, 지리적표시제도 법적 보호요건 강화 등

###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05)

-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 전국 또는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마케팅 전개 등

### 3.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

#### 가. 과거 투융자의 문제점 및 과제

##### — < 과거 실적 > —

◇ UR협상에 대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생산기반 정비, 유통개선, 규모화 등 농업SOC 구축에 중점 투융자

\* 투융자 규모('92~'03) : 69조원(보조 45조원, 융자 24)

□ 투융자에 따른 생산성 증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정체되어 부채문제 심화

\* 소비자지출 감소효과('92~'01) : 약 15조원

\* 농가소득('95불변) : ('95) 21,803천원 → ('99) 22,323 → ('03) 26,878

\* 농가부채 : ('92) 5,683천원 → ('03) 26,619

□ 일부 사업의 경우 형성·집행·평가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해 투융자의 효율성 저하요인으로 지적

○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지자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

○ 농가의 경영능력, 수익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체계 미흡으로 부적격자 선정 등 일부 부실초래

□ 향후, 투융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순위 조정 등 투융자 방향전환과 함께 심사·평가시스템 혁신 필요

○ 사업형성·집행단계부터 농업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 제고

○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성, 경영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투융자의 부실화 예방

○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

## 나.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

### (1) 기본방향

- 지방자치의 발전, 농가의 경영마인드 확산 및 생산·유통 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농정여건에 맞는 투융자시스템 구축
  -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지자체·중앙정부 등 관련 농정 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선심사 후지원」 원칙에 따라 투융자 부실화 방지에 중점
  - 모든 농가에 대한 평균적·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경쟁 가능한 농가 중심의 정책지원 집중
-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조정·일몰·통폐합 등 엄격한 피드백 제도화

### (2) 사업추진시스템의 효율화

#### ① 사업개발 및 형성단계

- 신규사업 개발 및 기존사업의 통폐합시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하여 현장 적응성 제고
  - 실·국별 전문가위원회 상설기구화, 3개 시·군 이상의 의견수렴 원칙 등
-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일정 규모이상(총사업비 500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부터 정착까지 조언하는 전임 자문관계 운용



## ② 사업집행단계

- 사업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1~2년간의 의무적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전문기관 등 외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피드백
- 사업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분석 후 제도보완 등 개선조치 추진
- 사업집행중 PCRМ을 활용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체감도 평가 실시
  - 의견수렴 등이 가능하도록 실·국별로 지역별·계층별 PCRМ 구축

## ③ 사업평가단계

- 개별사업을 시책·정책별로 그룹화하여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도를 측정하는 성과평가 실시
  -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등급화하여 예산 및 정책조정에 반영

### (3)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선정기준과 평가표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
- 정부선정사업은 각 실국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시·군(시·도) 선정사업은 시·군(시·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사

- 용자사업은 「선심사 후지원」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대출기관이 재무·비재무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경영능력과 사업성을 평가
  -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 금융원리에 따라 집중 지원이 가능한 농업종합자금을 계속 확대
- 보조와 용자가 병행되는 사업은 현재 행정기관이 선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 확정전에 대출기관의 심사를 선행토록 개선
  - 대출기관이 보조금액을 감안하여 용자사업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용자가 포함된 보조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전액 용자사업으로 전환 검토
- 농가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실질적인 경영·기술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애로 조기진단·조치
  - 사업지원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영컨설팅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대출성과 분석 및 경영진단 등 금융서비스도 제공

- ◇ '04.5월부터 「투용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을 시행
- ◇ 사업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 보장 및 재정평가담당관실 신설

<붙임>

##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 세부내용

### ① 사업개발 및 형성단계(신규사업, 기존사업 통폐합시)

절차	추진내용
① 과제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은 관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b>공모</b>(농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 제안)</li> <li>* 우수 과제로 최종 채택된 경우 사업성과에 따라 별도 포상 추진</li> </ul>
②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신규사업 및 통폐합 사업은 실국별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검토, 조정</li> <li>* 신규사업 확정전 단계에서는 <b>현장</b>(농업인, 시·군담당자) 및 <b>전문가의 의견</b>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제도화</li> <li>○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b>전임 자문관제</b> 도입</li> </ul>
③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 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시군농정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b>3개군 이상</b>에서 의견을 수렴</li> <li>○ PCRМ을 이용하여 <b>적정성, 만족도</b>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li> </ul>
④ 사업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적용 가능성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b>농림업무 심사평가위원회</b>에서 1차 심의</li> <li>○ 1차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b>농림사업심의위원회</b> (위원장 : 차관)에서 최종 확정</li> </ul>

## ② 집행단계

절차	추진내용
①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1~2년간 의무적으로 시범사업 실시</li> <li>* 사업이 시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상연습 (1~2개월) 실시 후 본 사업 실시</li> </ul>
② 시범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종료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b>외부평가</b> 실시</li> <li>○ 사업부서는 자체 PCRМ을 활용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b>체감도 평가</b> 실시</li> <li>○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문가위원회 및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심의</li> </ul>
③ 본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한해 본사업 실시</li> <li>○ 사업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사전교육</li> </ul>
④ 모니터링 및 사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PCRМ을 활용하여 현장의견 수렴</li> <li>○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 전임자문관으로부터 수시로 자문 의뢰</li> <li>* 사업집행 단계는 현장의견 <b>모니터링</b>, 사업자문 제도화에 역점</li> </ul>

### ③ 평가단계

절차	추진내용
① 사업부서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담당자는 2월말까지 성과달성도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는 투융자 사업별로 설정된 평가지표(소득 등 농업인 관점에서 설정)의 달성도를 측정·분석</li> <li>* 농업인 등 고객중심의 사업평가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li> </ul> </li> </ul>
② 평가총괄과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총괄과는 실국 자체평가 결과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li> <li>○ 평가결과 사업별 등급(S,A,B,C) 및 정책조정(안) 제시</li> </ul>
③ 범정부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평가보고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확정</li> <li>○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li> </ul>
④ 평가결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된 종합평가보고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li> <li>○ 평가결과는 D/B화하여 업무추진 및 차기평가 활용</li> </ul>
⑤ 평가결과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가이드라인 설정 및 정책조정 (A:정상추진, B:예산 및 사업조정, C:일몰, 통폐합)</li> <li>* 평가단계에서는 평가결과의 피드백 강화에 역점</li> <li>○ 사업부서에 심의기관의 의견에 대한 조치의무 부여</li> </ul>

## Ⅷ. 중장기 투융자 계획

### 1. 중장기 투융자 계획

#### 투융자 방향

- 그간의 농업·농촌 투융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
  -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
  - 농업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지원분야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
  -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부채유발을 최소화
    - 농가경영 컨설팅과 연계하고, 융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 농립예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융자를 뒷받침
  - 농업예산의 1/3수준인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여 농업예산 구조를 건실화
    - 일반회계의 비중을 확대하여 농특회계의 차입규모를 축소
  - 농특세는 농어촌 교육, 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지원
    - 부처별로 분산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조정기능을 강화
- 투융자 계획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 3년 단위로 평가·조정
  -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투융자 효율 저하를 방지

## 총 투융자 규모

□ 향후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

- 예산 96조원(80%), 기금 23조원(20)
- 보조 89조원(75%), 융자 30조원(25)

□ 전반기 5년간('04~'08)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원 수준

- 예산 40조원(78%), 기금 11조원(22)
- 보조 37조원(74%), 융자 14조원(26)

\* 전반기 5년간 투융자 소요 51조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 총 투융자 규모 >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04~'08	%	'09~'13	%
예 산	9,630	3,994	41.5	5,636	58.5
- 보조	8,011	3,293		4,718	
- 융자	1,619	701		918	
기 금	2,299	1,057	46.0	1,242	54.0
- 보조	913	418		495	
- 융자	1,386	639		747	
합 계	11,929	5,051	42.3	6,878	57.7
지 방 비	1,663	660		1,003	
자 부 담	621	325		296	

## 분야별 투융자 규모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는 투융자 비중을 확대하고, 생산기반 정비분야는 축소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03) 20.7% → ('08) 26.2 → ('13) 30.0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03) 8.6% → ('08) 14.4 → ('13) 17.2
- 생산기반정비 : ('03) 32.6% → ('08) 15.7 → ('13) 8.8

□ 직접지불사업 투융자 비중 대폭 확대

- 직접지불사업 : ('03) 9.4% → ('08) 22.6 → ('13) 22.9

(단위 : 백억원, %)

분 야 별	'03		'08		'13	
		%		%		%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191	24.8	311	28.5	479	32.2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	20.7	285	26.2	447	30.0
※ 직접지불 사업	72	9.4	247	22.6	341	22.9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	8.6	157	14.4	256	17.2
○ 농산물 유통혁신	52	6.7	102	9.3	95	6.4
○ 산림자원 육성	50	6.5	66	6.0	81	5.4
○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	32.6	171	15.7	132	8.8
합 계	771	100.0	1,092	100.0	1,489	100.0